

# 전근대 수원 자료집(5)

비변사등록(국역·원문)

2015. 3. 6

## 일러두기

### 1. 수록 지역

행정 구역상 현재의 수원은 역사 전통과 유리된 구획이기 때문에, 본 자료집에서는 수원의 역사 자료를 집성하기 위하여 ‘수원 문화권’ 개념을 설정하여 현 행정 구역상 화성, 오산, 남양 지역까지 포함하였다.

### 2. 수록 범위

본 자료집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서비스하는 국역 『비변사등록』의 검색결과를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

### 3. 수록 방식

- (1) 기사를 내용에 따라 주제별로 분류하였다. 다시 분류 안에서는 시간순서로 배열하였다.
- (2) 기사에 내용에 대하여 2줄 이내로 요약문을 달아 기사의 요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 주요 어휘와 구절에 밑줄을 긋고 굵게 표시하였다.
- (4) ‘수원 문화권’ 과 관련 없는 내용은 생략한 뒤 ‘(…)’ 표시하였다.

### 4. 분류 방식

수집된 자료는 기왕의 연대기 자료 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수원 문화권’의 특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분류하였다.

#### ○ 항목 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세부내역
1	정치	왕실   종사   행행(능행·은행·강무)   의식   산릉·천릉
	행정	중앙행정   지방행정   인사(선발, 임면, 관리)
	사법	재판   행형   치안   정변·민란   파면
	군사	군정   중앙군   지방군   특수군   금화(禁火)   군역   병참(兵站)   통신(通信)[봉수]   관방   전쟁.
	인물	수원인, 수원부사(유사)
2	경제	재정   재정일반   전세   공물(貢物)   역(役)   진상   잡세   창고   국용(國用)   군자   상공(上供)   전매(專賣)
	상업	상업일반   상인   시장   상품   무역(貿易)

		교통	육운   수운   마정(목장)  역참  역원
		농수산업	○양전   경영형태   토지매매   권농  농사 ○농업기술   수리   개간   농작 ○임업   목축   양잠   면직   과수원예   특용작물 ○어업   염업
		광공업	○광산   채광   제련 ○관청수공   사영수공   농촌수공   장인   수공업품
		건설	건축   토목   보수
3	사회	가족	가족   친족   가산   성명   호구   호적
		신분	양반   중인   상민   신랑역천   천인   신분변동
		향촌	취락   지방자치   사회조직   장지(葬地)
		의식주	○관복   상복   예복   장신구 ○주부식   주류   기호식품   기명제물 ○가옥   가구   택지   주거
		윤리·풍속	강상   사회기강 예속   풍속   연회   구휼(진휼)
4	문화	사상	유학   불교   교육(서원·향교·과거)   토속신앙
		과학	자연재해(가뭄·홍수)   의학   약학   보건   수레
		지리·경관	산천   여정   역사지리
		예술	음악   미술   문학   서예
5	화성	성문	長安門, 八達門, 蒼龍門, 華西門, 華虹門
		시설	西將臺, 東將臺, 東北角樓(=訪花隨柳亭) 西南角樓(=華陽樓), 東北鋪樓(=角巾臺)
		행궁	○新豐樓(鎮南樓), 左翊門, 中陽門(重鑰門), 奉壽堂(壯南軒)○洛南軒[藏春閣], 得中亭[得間門], 老來堂[難老門], 歌風門○長樂堂, 景龍館[3판문 至樂門], 福內堂[동행각 維福門, 서별당의 九如門, 외행각 북쪽 求福門], 維與宅[초명 隱若軒, 拱晨樓, 附舍門. / 向春門(서), 延暉門·維與門(북), 嘉漁門·慶華門(남), 賓曦門(동)] 未老閑亭(일명六面亭). ○于華館(八達館), 講武堂, 華請館(동헌), 祝釐堂(내아) 臥護軒, 內舖舍[미복원], 分奉常寺 ○華寧殿, 壯勇營(壯勇衛) 禦牧軒(영조글씨), 拱樓屢
		원행	○穩穩舍(과천) 萬安橋(안양), 彌勒峴(지지대고개, =遲遲峴, =沙斤峴), 遲遲臺, 槐木亭橋, 만석거, 芰荷洞, 大有坪, 觀吉野 ○梅橋(초명 梅山橋), 上柳川, 萬和峴, 建章洞, 眞木亭(橋), 下柳川, 皇橋, 甕峰, 大皇橋, 迢瞻峴, 安寧里, 迢觀橋, 만년제
		제언	祝萬堤(서호), 萬年堤, 萬石渠, 坤申堤 杵池(=方下池, 남곡면) 南池, 北池

## 목 차

### II. 남양(南陽)

1. 정치(政治) .....	1
(1) 왕실 .....	1
(2) 행정 .....	3
(3) 사법 .....	21
(4) 군사 .....	43
2. 경제(經濟) .....	130
(1) 재정 .....	130
(2) 교통 .....	170
(3) 농수산업 .....	189
3. 사회(社會) .....	192
(1) 가족 .....	192
(2) 윤리·풍속 .....	193

## II. 남양(南陽)

### 1. 정치(政治)

#### (1) 왕실

##### 정치/왕실

장기간 陣中에 있는 王世子를 호위할 사람들을 통지하여 속히 보내도록 청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비변사의 '방금 문학 이래의 치계를 보니 「왕세자께서 장기간 진중에 있으신데 만일 교전이 벌어진 때에는 호의가 극히 부족합니다」고 하였습니다. 보고 나니 우려를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장계에서 요구한 대로 병조로 하여금 허수·박형·김유·최정현·권주 등에게 서둘러 통지하고 말을 내주어서 속히 들여보내어 진중에서 호위하도록 함이 어떠하겠습니까?"라는 계사에 대하여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따라서 비변사의 계사에 의거하여 이들에게 즉시 명령을 하달하여 들여보내겠습니다. 하오나 지금 허수·김유·권주는 서울에 있으므로 하루 이틀 내로 우선 보내겠으나 박형은 남양(南陽)에 가고 최정현은 수원(水原)에 있습니다. 각 고을에 통지하여 이들을 서둘러 올려보내도록 경기감사에게 분부하소서. 다만 최정현은 아직 상중이라고 하니 기복(起復)하여 들여보냄이 어떠하겠습니까?"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되 해조로 하여금 옷가지와 비용을 주도록 하라."하였다.

兵曹啓曰，備邊司啓辭，卽見文學李稷馳啓，王世子長在陳中，而交鋒之際，陪衛極爲孤單云，聞不勝憂慮，許遂朴洞·金瑜·崔廷顯·權靄等依狀啓，令兵曹急急知委，給馬入送，使之陪衛陳上何如，傳曰，依啓事傳教矣，各人等，當依備局啓辭，卽爲知委入送，而許遂金瑜·權靄，則時在京中，一二日內，爲先發送，朴洞則時在南陽地，崔廷顯則時在水原地，此人等，京畿監司處，分付，行會各邑，使之急急上送，但聞崔廷顯，則方在喪中云，起服入送何如，傳曰，依啓，令該曹衣資給之。

<비변사등록 8책, 인조 22년 1644년 05월 07일(음)>

##### 정치/왕실

章陵 행차 때에 경유한 邑의 舊還 면제와 儒生 應製와 校卒의 활쏘기를 거행을 전교하다

전교하기를, "이번의 장릉(章陵) 참배로 인해 다행히 한 해에 재차 원침(園寢)을 배알하게 되었는데, 경유한 길이 과천(果川)·시흥(始興)·양천(陽川)·김포(金浦)·부평(富平)·인천(仁川)·안산(安山)·광주(廣州)·남양(南陽)·수원(水原)으로 모두 10개 읍이다. 행행을 바라보는 우리 백성의 마음을 어찌 한갓 우모(羽旄)만 바라보게 할 수 있겠는가? 주참(晝站)과 숙참(宿站)에서 읍의 부로를 불러서 묻고 또 지나는 다른 지방 읍의 수령을 불러 묻고서 혹 백성의 말로 인해 도신에게 넘겨 품처하게 하고 혹 수령이 아뢴 말로 인해 묘당에서 회계하라고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김포는 선조(先朝) 갑인년 이후로 처음 숙참을 담당하게 되었으니 주민에게 특별한 예로 별도로 혜택을 베풀라. 양천 역시 감면하는 혜택을 내리고 노인에게 대한 가자 역시 연교(筵敎)에 따라 시행하며, 구환(舊還) 가운데 가장 오래된 연도의 몫을 탕감하라. 부평·안산의 가장 오래된 구환 1년분을 탕감하고 올해 환곡의 모조(耗條)를 특별히 면제하라. 인천·남양은 거동하는 길의 읍이라고는 하나 처음으로 우모를 보게 된 곳이니 지나는 곳의 백성이 지고 있는 구환으로서 환곡 장부에 기재된 것은 원근을

따지지 말고 지방관이 추려내서 백성을 모아 놓고 효유한 뒤 문권을 불태우게 하라. 시흥·과천·광주만 누락시킬 수 없다. 더구나 처음 지나는 곳이 있는데 어떻게 달리하겠는가? 출궁하고 환궁할 때 행차가 지나는 곳의 백성이 지고 있는 구환 문권을 불태우는 것을 인천·**남양**의 예에 따라 하라. 그 가운데 **수원부의 구포(鷗浦)** 역시 처음 지나는 길인데, 기유년 이후로 주민의 노고가 편중되게 많았다. 구환은 문권을 불태우고 환곡의 모조는 탕감하여 특별히 돌보고 염려하는 뜻을 보이라. 행차가 지나는 지방의 벼가 혹 짓밟힌 곳이 있으면 해도에서 소출 수량으로 환산해 주도록 묘당에서 행회하게 하라. 유생의 응제(應製)와 장교·군졸의 활쏘기와 총 쏘기를 작년의 하교에 따라 거행하라고 역시 분부하라.” 하였다.

傳曰，今因章陵展拜，幸於一歲中再謁園寢，而路出果川·始興·陽川·金浦·富平·仁川·安山·廣州·南陽·**水原**凡爲十邑，以吾民望幸之心，豈容使之徒瞻羽毛，晝站宿站，召問邑中父老，且過他方之邑，召問邑宰，或因民人之言，付之道臣稟處，或因守宰之奏，許令廟堂回啓，而金浦初當宿站，於先朝甲寅之後，民人等拔例另施，陽川亦有鑄惠之舉，而老人加資，亦依筵教施行，舊還最久年條蕩滌，富平·安山舊還最久一年條蕩滌，當年還耗特除，仁川·**南陽**雖曰輦路邑，卽初見羽旄之地也，所過處民人所負舊還之載於還簿者，無論遠近，令地方官抄出，聚會民人，曉諭後燒券，始興·果川·廣州不可獨漏，況有初過之處，亦豈異同，出還宮時輦路民人之所負舊還燒券，依仁川·**南陽**例爲之，其中**水原府鷗浦**，亦爲初過之輦路，而已酉以後，民人等自多編勞，舊還則焚券，還耗則蕩滌，以示特爲軫念之意，輦路地方禾穀，或有踐踏處，令該道，折給所出之數事，令廟堂行會，儒生應製，校卒射放，依昨年下教舉行事，亦爲分付。

<비변사등록 186책, 정조 21년 1797년 08월18일(음)>

## (2) 행정

### 정치/행정

南漢山城의 수축을 위해 役軍 및 廣州牧使 陸紱欽과 南陽府使 柳琳을 차출을 청하다

아뢰기를, "남한산성(南漢山城)을 방금 수축하려 하니, 요량할 사무를 하루도 지체시킬 수 없습니다. 본주(本州)의 목사(牧使)는 반드시 역군과 축성이 익숙한 자를 가려서 맡겨야만 성취(成就)시킬 수 있습니다. 광주목사(廣州牧使) 목서흠(陸紱欽)과 남양부사(南陽府使) 유림(柳琳)은 모두 치민(治民)을 잘하여 바뀌서는 안될 듯하오나, 광주와 남양은 지계(地界)가 연달았고 1일의 일정에 지나지 않아 영송에, 대단한 폐해는 주지 않을 것입니다. 서흠(紱欽)은 백면유생으로 군무가 그 특장(特長)이 아니며 유림(柳琳)은 무리를 이끌어 역사를 독려하는 데에 본래 익숙합니다. 지금 농무는 한가하고 풀을 베고 흙을 걷는 일 등이 시급한 때입니다. 바꾸어 차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啓曰, 南漢山城, 方爲修築, 料理庶務, 未可一日稽遲而必須本州牧使, 諳委役軍築城之事者然後, 可以就緒, 廣州牧使陸紱欽, 南陽府使柳琳, 俱善於治民, 似不可替易, 而第廣州與南陽, 地界相接, 不過一日之程, 迎送不至大段貽弊, 紱欽白面儒生, 軍務非其所長, 柳琳則禦衆董役, 曾所熟諳, 而卽今農務已歇, 刈草採葛等事, 此時爲急, 換差何如, 答曰, 依啓.

<비변사등록 3책, 인조 2년 1624년 06월 27일(음)>

### 정치/행정

鄉薦을 거행하지 않거나 합당하지 않은 인물을 추천한 監司의 推考 등을 청하다

아뢰기를, "정원의 계사에 '지금 경상감사가 올려보낸 향천(鄉薦: 고을 인물을 추천함) 단자에 관한 장계를 보고 당초의 비국 계사를 살펴보니, 각도에 통보한 것은 작년 11월이었고 연초로 시한을 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경상도의 장계만이 지금 비로소 도착하였고 그 나머지 여러 도에서는 아직도 거행하지 않았으니, 일이 매우 지연되었습니다. 또 경상도 각 고을의 단자 가운데에는 한 수령이 추천한 자가 자그만치 8인이나 되고 70이 가까운 사람을 무예로 추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비국의 계사 가운데 비록 나이와 수를 한정하지 말라는 말은 있었으나, 한 고을 안에 재능과 품행이 탁월한 자가 어찌 이와 같이 많을 수 있으며, 나이 70이 가까와 기력이 떨어진 사람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본도가 이러하니 빠른 도의 경우도 알만합니다. 막중한 천거문제를 비단 지연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한 착실성을 결여하였으니, 참으로 온당치 않은 일입니다. 마땅히 다시 신척하는 일이 있어야 할 듯합니다. 묘당으로 하여금 여쭙어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로 윤희한다고 하셨습니다. 신 등이 엿드려 당초의 비국 계사를 본즉 보통 향천의 경우에 견줄 일이 아닙니다. 이 조치는 매우 중대하여 대체로 건원(建元: 한무제 연호)의 현량방정(賢良方正)이나 동경(東京: 후한의 낙양)의 효렴(孝廉)을 선발한 규례와 흡사합니다. 이는 즉위 초두에 하는 매우 성대한 조치입니다. 방백인 자는 마땅히 이 뜻을 본받아 받들어 행하여, 성조에서 예를 다하여 현자를 구하는 뜻을 받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연초를 시한으로 삼았음에 8월이 거의 다 지나 경기·영남 양도의 계본이 지금에야 비로소 도착하였으니, 이도 지나치게 늦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여러 도의 경우는 아직도 소식이 없으니, 태만한 책임이 돌아갈 곳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더구나 그때의 계사에는 감사가 그 적합한 자를 자세히 살펴서 예우하여 보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계문의 경우는 각 고을의 단자만을 거두어 곧 바로 올려보냈을 뿐이며 별로 취사선택한 사실이 없으니, 조정에서 분부한 뜻과 다릅니다.

이 역시 크게 방심한 일이니, 여러 도의 감사를 모두 가장 무거운 벌로 추고하는 것이 의당 하옵니다. 기력이 다한 사람도 천장(薦狀) 안에 있고 정읍(井邑)은 사방이 백리 이내임에도 추천된 사람이 자그만치 8인이나 됩니다. 영평후(營平侯:한나라 조충국(趙充國))의 계략과 복파(伏波:후한의 마월(馬援))의 씩씩함이 아니라면, 70이 된 사람을 장수 선발하는 일에 끼워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사목(事目)에 나이를 구애받지 말라고 하였으니, 지금에 와서 그 허물을 추궁하는 것은 타당치 못한 듯합니다. 많은 인사가 무성하게 태어나는 곳은 오직 여남(汝南)을 손꼽았고 동경의 여러 장수는 반이 **남양(南陽)**에서 태어났으니, 진정 인재가 있다면 굳이 많음을 꺼릴 것이 없습니다. 인재의 성쇠는 고금이 비록 다르나, 인물을 선택하는 도리에 있어서는 그 이치가 같습니다. 처음에 제한을 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어찌 미리 억측하여 그 책임이 아니라 하고 먼저 제재를 가할 뜻을 보일 수야 있겠습니까? 본래 재가된 사목에 의하여 나이와 인원의 다소에 구애받지 말고 세밀히 선택하되, 사사로운 뜻에 따르지 말고 서둘러 아뢰라고 여러 도의 감사에게 다시 통보하여 신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생각건대 사람을 임용함에 있어 원근은 논하지 말고 오직 재능이 있는 자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조종조(祖宗朝)의 위대한 재상과 명인은 대부분 초야에서 나왔습니다. 선조 때를 말씀드리더라도, 조정에 등용된 이의 반이 호·령(湖嶺)의 인재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경우를 본다면 지방의 조사(朝士)로서 조정의 반열에 비인 자가 10에 겨우 2~3이고 대각(臺閣)에는 거의 없다시피 하니, 인재의 성쇠가 내외로 갈마드는 차이가 아니라면 어찌 고금이 크게 다를 수 있겠습니까? 호·령 및 타도의 문사와 출신은 무려 수백 명이나 되나, 혹은 백발이 되도록 경전을 연구하고 혹은 문필에 종사하면서 갖가지 고생을 하다가 요행히 과거에 급제하더라도 침체되거나 물러나 초야에 묻히고 마니, 어로(魚魯)도 구분하지 못하는 호화 자제들과는 그 영고성쇠를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어찌 왕이된 자가 현자를 맞아들이는데 일정한 지역이 없는 도리이겠습니까? 3백 고을에 음관(蔭官)이 반 이상이니, 휘장을 내리고 문필에 종사하는 무리들이 어찌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신 등의 생각에는 지금 이 특별 추천이 있을 때, 지방의 문관으로서 재능과 품행이 있으면서도 침체된 자를 다 함께 찾아내어 그 행실과 장점을 기록하여 사실에 따라 아뢰고 이로써 임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당할 듯합니다. 감히 이에 아울러 여쭙니다."하니 아뢴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啓曰, 以政院啓辭, 今見慶尙監司鄉薦單子上送狀啓, 取考當初備局啓辭, 則行會各道, 在於上年十一月以歲首定限, 而獨慶尙道狀啓今始來到, 其餘諸道, 尙不舉行, 事甚稽緩, 且慶尙道各官單子中, 或有一守令所薦, 多至於八人者, 或有年迫七十而被薦於武藝者, 備局啓辭中, 雖有勿拘年齒不必定數之語, 一境之內才行卓異者, 豈至於如此之多, 而年迫七十, 膂力既愆之人, 將焉用哉, 本道若此, 他道可知, 莫重薦舉之事, 非但稽緩, 亦欠着實, 誠爲未妥, 似當有更爲申飭之舉, 令廟堂稟處何如, 傳曰, 允事傳教矣, 臣等伏見當初備局啓辭, 非如尋常鄉薦之比, 舉措甚重, 略似建元賢良方正及東京孝廉之規, 嗣服之初, 甚盛舉也, 爲方伯者, 所當體念奉行, 以承聖朝側席籲俊之意, 而歲首爲限, 仲夏將盡, 京畿·嶺南兩道啓本, 今始來到, 亦云太脫, 其他諸道, 尙無形影, 怠慢之責, 合有所歸, 況其時啓辭中, 有監司詳察其可者, 禮以送之云, 今此, 啓聞, 只收取各邑單子, 直爲上送而已, 別無取舍於其間, 與朝廷分, 付之意有異, 此亦放過之大者, 諸道監司竝從重推考宜當, 至於膂力既愆之人, 亦在剡章之中, 井邑百里之內, 至薦八人之多, 非營平方略, 伏波夔鑠, 則七十之人, 不可與論於擇將之列, 然事日, 旣曰, 不拘年齒, 到今追咎, 似未妥當, 多士蔚興, 獨稱汝南東京諸將, 半出**南陽**, 則苟有其人, 不必嫌多, 人才盛衰, 古今雖異, 取人之道, 其理則同, 初不爲限, 何可預爲臆詐, 謂非其人而先示裁抑之意乎, 一遵元啓下事目, 勿拘年齒, 勿拘多少, 唯在精擇, 毋循私意, 急速啓聞之意, 諸道監司

處，更爲行會申飭何如，且念國家用人，毋論遠近，唯才是取，故祖宗朝碩輔名人，多出於草野之中，以宣祖朝言之，登庸朝著，半是湖嶺人才，以今觀之，外方朝士，齒跡朝班者十僅二三，臺閣之上，絕無而僅有，若非人才之盛衰有內外循環之異，則何古今之太不同也，湖嶺及他道，文士出身，無慮累百，或白首窮經，或從事鉛槧，辛苦萬端，幸得科第，而陸沈乾沒，不得與膏粱子弟不辨魚魯者，較其榮悴，此豈王者立賢無方之道哉，三百州縣蔭官，強半，下帷操觚之輩，寧不稱冤，臣等之意，今此別薦之時，外方文官，有才行沈滯者，亦一體訪問，錄其實行及所長，從實啓聞，以備收用之地，似爲宜當，敢此竝稟，答曰，依啓。

<비변사등록 14책, 효종 1년 1650년 05월 20일(음)>

### 정치/행정

#### 草芝萬戶를 옮겨 설치하고 監牧하는 일에 대해 아뢰다

아뢰기를, "초지만호(草芝萬戶)를 옮겨 설치하는 일을 지난번 탐전에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신 등이 물리나와 문서를 상고하니, 경기의 제물(濟物)과 초지 두 곳의 만호는 일찍이 혁파되었고 그곳에 소속되었던 수군은 신설된 철곳(鐵串)으로 옮겨 주었습니다. 영종만호(永宗萬戶)는 남양(南陽)의 작은 포구 옆에 치우쳐 있어 바다와의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가장 긴요치 않은 곳입니다. 이것으로 옮겨 설치하되, 전의 호칭을 고치지 말고 그대로 감목(監牧)을 겸하도록 하고 다시 형편을 살펴 그 직품을 올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만호가 신설된 곳을 감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해조로 하여금 그의 사람됨을 살펴서 혹은 체직시키고 혹은 그대로 두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뜻으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啓曰，草芝萬戶移設事，頃日榻前定奪，而臣等退考文書，則京畿濟物草芝兩處萬戶，曾已革罷，以其所屬水軍，移紹於新設鐵串矣，永宗萬戶，僻在於南陽小浦之邊，距海頗遠，最爲不緊，以此移設，勿改前號，仍兼監牧，更爲觀勢，陞其職品，而萬戶之可堪新設與否，令該曹，審察其爲人，或遞或仍宜當，以此分付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16책, 효종 4년 1653년 03월 03일(음)>

### 정치/행정

#### 총융사가 관할하는 수원 등 5개읍의 영장을 무신으로 차출할 것을 건의하다

(...) 특진관(特進官) 구인기(具仁璽)가 아뢰기를, "신이 총융사(摠戎使)의 직임은 맡고 있으나 형세에 구애되어 열읍(列邑)을 순력(巡歷)하지 못해 군무(軍務)의 모든 일에 허술함이 많아 매우 민망합니다. 영장(營將)을 겸한 수령(守令)은 전부터 반드시 영장에 합당한 사람으로 차출해 보낸 뜻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신이 관할(管轄)하는 다섯 영 가운데 수원(水原)은 으레 비국에서 의논해 친거하고, 장단(長湍)은 무신(武臣)을 차출해 보내지만 이밖의 파주(坡州)·남양(南陽) 통진(通津) 세 영의 군무의 일은 착실하지 못함이 많으니, 전과 같이 무신으로 차출해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였다.

지사(知事) 허적은 아뢰기를 "군무(軍務)를 정돈하는 것은 본디 수령의 능력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으니, 반드시 문무에 구애될 필요는 없는데 다만 구인기의 뜻이 즉시 세 고을 수령을 교체하는데 있는지 아니면 궐원(闕員)을 기다려 차출해 보내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후 파주 등 세 고을의 영장을 겸한 수령은 그 궐원이 있기를 기다려 전례를 상고해 각별히 가려 보내야 하겠다." 하였다. (...)

(…) 特進官具仁壑所啓，臣忝受摠戎使之任，而拘於事勢，不得巡歷列邑，軍務凡事多有虛疏，極以爲悶矣，兼營將守令，自前必以營將可合人差送，意非偶然，今者臣所管五營中，**水原**則例自備局議薦，長湍則差送武臣，而此外坡州·**南陽**·通津三營軍務之事，多不着實，依前以武臣差送何如，知事許積曰，整頓軍務，固在守令爲人能否之如何，不必拘於文武，而但未知具仁壑之意，在於卽爲遞改三邑守令耶，抑欲待其有闕差送乎，具仁壑曰，臣意亦欲待闕差送耳，上曰，此後如坡州等三邑，兼營將守令，隨其有闕，考其前例，各別擇送可也，(…)

<비변사등록 20책, 현종 1년 1660년 11월 22일(음)>

## 정치/행정

### 摠戎使 李基夏가 **水原·南陽·長湍**의 三營에 武官을 各別히 選別해 보낼 것을 건의하다

이달 28일 삼복(三覆)에 관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총융사 이기하(李基夏)가 아뢰기를, "신이 지난번 순행(巡行)하여 **수원(水原)**에 도착하니 **수원**은 곧 무향(武鄉)입니다. 장교는 약간 군법(軍法)을 익혔고 부사도 군무에 뜻을 두어 착실히 거행한 일이 많았으나 오히려 허술한 곳도 없지 않았습니니다. **남양(南陽)**은 본래 음관(蔭官)으로서 군무(軍務)에 숙달(熟達)하지 아니하여 비록 진흥시키려 하나 미치지 못하는 바가 있다하니 이는 사세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장단(長湍)의 경우는 본래 문·무관을 교대로 차출하는 읍으로서 지금 잔폐한 고을이 되어 수습할 수 없습니다. 이는 모두 신이 직접 본 바로서 걱정이 되는 일입니다. 신이 돌아와 대신을 뽑고 이 문제를 말하니 대신도 생각한 바가 있으면 아뢰는 것이 무방하다 하였습니다. 신의 의견으로는 3개 영을 모두 무관으로 각별히 선발하여 보내는 것이 사리에 맞을 듯합니다. 마침 하문을 받들어 감히 이를 아뢰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바는 의견이 없지 않으니 해사로 하여금 여쭙어 처리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하였다.

今十一月二十八日三覆入侍時摠戎使李基夏所啓，臣頃者巡到**水原**，則**水原**卽武鄉，將校稍習軍法，府使亦留意於軍務，多有着實舉行之事，而猶不無疏漏之處，**南陽**則本以蔭官，不閑戎事，雖欲修學，有所不逮云，此則事勢固然，長湍則素是文武交差之邑，而今爲弊邑，莫可收拾，此皆臣所目見而悶慮者，臣歸見大臣，言及此事，則大臣亦以爲既有所懷，陳達無妨云，以臣意見，三營皆以武弁，各別擇送，似合事宜，適承下詢，敢此仰達矣，上曰，所達不無意見，令該司稟處可也.

<비변사등록 48책, 숙종 20년 1694년 11월 29일(음)>

## 정치/행정

### **水原·長湍·南陽** 3營將을 武官으로 各別히 選擇하여 보내는 일에 대해 아뢰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총융사 이기하(李基夏)가 아뢴 바 있는 본영 소속의 3영장(營將)을 모두 무관으로 각별히 선택하여 보낼 것을 해사로 하여금 여쭙어 처리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명하셨습니다. 본영 소속 3영장 가운데 **수원**은 경기 지척의 중요한 진(鎭)입니다. 과거 묘당에서 문신·남행(南行)·무신을 막론하고 인망과 재국(才局)이 적합한 사람을 각별히 천망하여 제수하였으니 무관의 자리로 정하기가 어려우나 무신 가운데 인재가 적합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끔 차출해 보내도 불가할 것은 없습니다. 장단은 현재 문·무관 교대로 차출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교대로 차출할 때에 적임자를 구하지 못하면 역시 군정은 향상되지 못합니다. **남양**의 경우에 있어서는 과거 무신을 차출하여 보낸 일이 있었는데 장단의 예에 의하여 무신 가운데 능력과 인망이 뚜렷한 사람을 사이사이 차출해 보내어 성과를

지켜보는 것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뜻으로 해조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司啓辭以摠戎使李基夏所啓，本營所屬三營將，皆以武弁各別擇送事，令該司稟處可也事命下矣，本營所屬三營將中水原，則乃畿輔咫尺重鎮，從前自廟堂不論文·南·武，以地望才局可合人，各別擬薦差除，則有難定以爲武弁之窠，而武臣中如有人才可合者，則間間差送，亦無不可，長湍則卽今亦用文·武交差之法，若於交差時不得其人，則亦不以修舉軍政，而至於南陽，則自前未嘗有武臣差送之事矣，依長湍例，以武臣中才望顯著之人，相間差送，以觀來效無妨，以此意分付議曹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48책, 숙종 20년 1694년 12월 13일(음)>

## 정치/행정

### 尹檠에게 正卿을 더 追贈하고 諡號를 내릴 것을 청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이번 6월 16일 주강(晝講) 입시 때에 참찬관(參贊官) 김진규(金鎭圭)가 아뢰기를 '예로부터 나라가 있으면 반드시 충절(忠節)을 포장(褒獎)하는 것을 급선무로 삼았으며, 더군다나 지금 춘추(春秋)의 대의(大義)를 진강(進講)함은 군신(君臣)·부자(父子)의 윤리(倫理)를 밝히는데 있으며, 종주국(宗主國)을 높이고 이적(夷狄)을 물리치는 것은 성인(聖人)께서 단정한 뜻입니다. 그러니 충(忠)을 표창하고 의(義)를 높이는 일에 힘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일찍이 선조조(宣祖朝) 때 교리(校理) 윤섬(尹暹)은 이일(李鎰)의 종사관(從事官)으로서 상주(尙州)의 전진(戰陣)에서 순절하였으니 나라에서 정려(旌閭)를 내려 표창하고 증시(贈諡)의 은전을 베풀었습니다. 그의 손자는 윤계(尹檠)·윤집(尹集)인데 윤집은 척화신(斥和臣)으로 심양(瀋陽)에 가서 의(義)를 지켜 굽히지 않고 죽어 나라에서 특별히 증시하였습니. 윤계는 병자년(인조 14년 (1636)) 겨울에 전(前) 응교(應校)로서 남양(南陽)의 수령으로 나갔는데 아내를 얻기 위해 보은(報恩) 땅에 갔다가 오랑캐의 변을 듣고서 바빠 달려서 3일이 못되어 임소(任所)로 돌아와 의병(義兵)을 일으켜 근왕(勤王)하기를 도모하였으나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오랑캐 군사가 갑자기 이르러 군사가 무너져 붙잡혔는데, 시종 꾸짖고 굽히지 않으니, 오랑캐가 노하여 죽이고 그 혀를 잘랐습니다. 그 늠름한 충절이 이와 같았기 때문에 효종(孝宗)께서 하교하시어 안고경(顔杲卿:당나라 현종(玄宗) 때의 충신)에게 비교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양세(兩世) 삼충(三忠)은 더욱 귀하다.'하시고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추증하기를 명하셨으며, 또 정표(旌表)하였으니, 나라에서 높이 보답함이 지극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생각건대 윤계가 수립한 충절이 그의 할아버지가 동생보다 못하지 않은데도 유독 시호를 내리지 않았으니, 이는 아마도 포장하는 도리가 부족한 듯합니다. 이제 만약 정경(正卿)을 더 추증하고 인하여 시호를 내리어 세 신하가 고루 은전(恩典)을 입게 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의 이르기를, "일체로 시호를 내리는 것이 좋겠다."하였다.

특진관(特進官) 민진후(閔鎭厚)가 아뢰기를, "윤계의 충절은 마땅히 시호를 내려야 마땅하나 시호를 내리는 것은 바로 국가의 더 없이 큰 전례(典禮)인데 단지 연신(筵臣)의 말로써 갑자기 시행하기를 명하는 것은 온당치 못할 듯하니, 해조로 하여금 아뢰어 처리하게 하거나 혹은 묘당에 물어서 처리해야 마땅할 듯합니다."하니, 임금의 이르기를, "해조로 하여금 아뢰어 처리하게 함이 좋겠다."하였다.

또 아뢰기를, "신이 이미 윤계(尹檠)의 일을 앙달하였는데 또 이어서 아뢴 것이 있습니다. 병자년 난리에 필선(弼善) 윤전(尹焜)은 분사(分司)로서 강도(江都)에 들어갔는데, 성이 함

락되자 적을 꾸짖고 굽히지 않다가 해를 당해 난리가 끝난 후 영원히 강도의 충렬사(忠烈祠)에 배향(配享)되었으니 바로 고(故) 상신(相臣) 김상용(金尙容)을 주벽(主壁)으로 향사하는 사당이며 동시에 순절한 여러 신하들을 배향하는 곳입니다. 윤전과 함께 배향된 이시직(李時稷)은 벼슬이 정(正)이요, 송시영(宋時榮)은 벼슬이 주부(主簿)였는데 지난해 모두 정2품을 가하여 시호를 내렸으나 윤전만은 도승지를 추증하여 시호가 없습니다. 함께 순절하여 동시에 배향된 사람인데 승장(崇獎)함에 다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더군다나 윤전은 일찍이 시종신(侍從臣)이었으니 벼슬이 주부보다 높은데 유독 시호를 받지 못하였으니 그것이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윤전에게도 역시 정경(正卿)을 추증(追贈)하여 시호를 내리면 충신을 포장하는 도리에 합당할 듯합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해조로 하여금 아뢰어 처리하게 함이 옳다.'라는 일로 하명하셨습니다. 윤계·윤전 두 신하는 적을 꾸짖으며 굽히지 않다가 마침내 해를 입었으니 그 늠름한 충절은 실로 옛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데 시호 내리는 은전이 아직껏 빠졌으니 나라에서 충절을 포승(褒崇)하는 도리에 부족함이 있는 듯합니다. 연신(筵臣)이 증직과 시호를 청함이 참으로 마땅하니, 마땅히 일체로 증직하고 시호를 내려 표창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증직을 더하고 시호를 내리는 일은 사체가 막중하여 본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묘당으로 하여금 아뢰어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禮曹啓曰, 今六月十六日晝講入侍時, 參贊官金鎮圭所啓, 自古有國, 必以褒獎忠節, 爲急先之務, 況卽今進春秋大義, 在於明君臣父子之倫, 尊周攘夷尤是聖人之所斷意也, 然則其於表忠崇義之事, 不可不加勉也明矣, 曾在宣廟朝校理尹暹, 以李鎰從事官, 殉節於尙州戰陣, 朝家施以旌表贈諡之典, 其孫曰, 榮·集而集, 以斥和臣往瀋陽, 秉義不屈而死, 朝家特爲贈諡矣, 榮則丙子冬間, 以前應敎出守南陽, 而爲娶妻往報恩地, 聞虜警疾馳, 未三日還任所, 謀舉義兵, 勤王事未集, 而虜兵猝至, 軍潰被執, 終始憤罵不屈, 虜怒而殺之, 斷其舌, 忠節之凜烈如此, 故孝廟下敎, 至比於顏杲卿, 又曰, 兩世三忠, 尤可貴也, 命贈吏曹參判, 又爲旌表, 朝家之所以崇報, 可謂至矣, 而第念榮之所樹立, 不下於其祖及弟, 易名之典, 獨不及爲, 此恐歉於褒獎之道, 今若加贈正卿, 仍爲贈諡, 俾令三臣均蒙恩典, 似爲合宜矣, 上曰, 一體賜諡可也, 特進官閔鎮厚曰, 尹榮忠節, 固宜有易名之典, 而贈諡, 乃國家莫大之典, 只以筵臣之言, 遽命施行, 似爲未安, 令該曹稟處, 或詢廟堂而處之恐宜矣, 上曰, 令該曹稟處可也.

又所啓, 臣旣以尹榮事仰達, 而又有繼陳者矣, 丙子之亂, 弼善尹烜, 以分司入江都及城陷, 罵賊不屈而被害, 事定永配食江都之忠烈祠, 乃故相臣金尙容, 主享之祠, 而同時殉節諸臣之所配享也, 烜同享之李時稷官正, 宋時榮官主簿而頃年, 皆加贈正二品而賜諡, 烜只贈都承旨而無諡, 以一體殉節同享之人, 而所以崇獎者不宜有異, 況烜, 嘗爲侍從, 則官位高於主簿, 而獨未蒙易名之典, 亦未知其得當, 烜亦加贈正卿而賜諡, 則似合於褒忠之道矣, 上曰, 令該曹稟處可也之事命下矣, 尹榮·尹烜兩臣, 罵賊不屈, 終至被害, 其忠節之凜凜, 實無愧於古人, 而易名之典, 尙今闕焉, 恐有歉於朝家褒忠崇節之道, 筵臣之達請贈諡, 誠爲得宜, 似當特爲一體加贈賜諡, 以示表章之舉, 而加贈賜諡之典, 事體俱爲審重, 非本曹所可擅便, 令廟堂稟處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52책, 숙종 28년 1702년 06월 22일(음)>

## 정치/행정

여러 上疏와 狀啓 중 처리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의 條列로 만들어 別單에 써서 들여보내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 1. 전첨사(前僉夏) 홍만상(洪萬相)이 상소하여 남양(南陽) 대부도(大阜島) 형편을 논하고, 마음에 두고서 배치를 청하였다. 한결같이 강도(江都)에 설치하

여 베푼 예의 일이다. 대부분은 진실로 마땅히 수습되어야 하지만, 한결같이 강도의 제도와 같이 하는 것은 그 세로 보아 쉽지 않으므로 가볍게 의론하기 어려움이 있다. (…)

司啓曰, (…)  
一, 前僉使洪萬相上疏, 論南陽大阜島形便, 請加意制置, 一如江都設施之例事也, 大阜, 固當收拾, 而一如江都之制, 其勢未易, 有難輕議, (…)

<비변사등록 59책, 숙종 34년 1708년 02월 03일(음)>

## 정치/행정

### 이번 試券의 折封 이하를 單子로 써 들일 것인지에 대한 문 의와 반포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입격시권(入格試券)을 절봉(折封) 이하는 단자(單子)를 써들여서 반포하는 것이 예(例)입니다. 이번에 시권(試券:시험 답안지)도 절봉 이하를 단자를 써들일 것인지를 감히 묻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규례가 이와 같으니 단자를 써들여서 먼저 반포하고 향거(鄉居) 여부(與否)에 대하여는 비국에 물어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유(幼) 홍계만(洪啓萬) 광주(廣州)

김태검(金泰儉) 개성부(開城府)

윤광리(尹光理) 초계(草溪)

진(進) 이진 의(李鎭儀) 평산(平山)

생(生) 신희원(申孝源) 평산(平山)

진(進) 송재화(宋載和) 회덕(懷德)

정석태(鄭錫台) 양근(楊根)

한사춘(韓師春) 청산(靑山)

정광영(鄭光寧) 양성(陽城)

정지유(丁志有) 예천(醴泉)

박도명(朴道鳴) 남양(南陽)

김한최(金漢最) 서산(瑞山)

황재희(黃再禧) 양주(楊州)

권익명(權益明) 금천(衿川)

정취하(鄭就河) 창평(昌平)

政院啓曰, 入格試券, 折封以下則例爲單子書 入而頒布矣, 今此試券, 折封已下, 單子書入, 仍爲敢 稟, 傳曰, 規例如此, 單子書入, 爲先頒布, 鄉居與否, 問于備局以啓,

幼 洪啓萬 廣州

金泰儉 開城府

尹光理 草溪

進 李鎭儀 平山

生 申孝源 平山

進 宋載和 懷德

鄭錫台 楊根

韓師春 靑山

鄭光寧 陽城

丁志有 醴泉

朴道鳴 南陽

金漢最 瑞山

黃再僖 楊州

權益明 衿川

鄭就河 昌平

<비변사등록 99책, 영조 12년 1736년 04월28일(음)>

### 정치/행정

京畿의 兵馬重鎮인 水原 및 南陽府使의 不在를 서둘러 처리할 것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水原)과 남양(南陽)은 다 같이 기보(畿輔:경기와 같은 뜻)의 병마 중진(兵馬重鎮)으로서 수원은 방어사의 진영이고 남양은 영장(營將)의 진영이며 남양은 또 수원의 원정(原定) 겸관(兼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원은 전 부사(前府使) 김태연(金泰衍)의 실랑이로 인하여 전에도 오래 자리를 비웠었는데 요사이는 또 궤과(闕窠)가 되어 밀부(密符)를 반납한 뒤에는 군민(軍民)을 주관하는 사람이 없게 되었고 원정의 겸관인 남양부사 한배규(韓配奎)도 현재 나문(拿問) 중에 있으므로 비단 영진(營鎭)이 오래 비었을 뿐만 아니라 수원에는 겸관까지 아울러서 없게 되었으니 일의 허술함이 이 보다 더 심할 수 없습니다. 수원의 신 부사 심악(沈錫)은 고산(高山)의 역관(驛館)에서 아직 올라오지 않고 있으니 우선 각별히 재촉하여 올라오게 하고 남양부사 한배규는 조사하는 일이 끝나는 조만(早晚)을 알 수 없으므로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 우선 개차(改差:교체)하고 그 후 임을 해조로 하여금 구전(口傳)으로 극히 가려서 임명하여 내일 안으로 하직하게 하여 수원까지 겸찰(兼察)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렇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辭, 水原·南陽俱是畿輔兵馬重鎮, 水原卽 防禦之營, 南陽卽營將之任, 南陽又是水原之原定 兼官, 而水原因前府使金泰衍撕捱, 前既久曠, 近又 作闕, 密符還納之後, 兵民無主管之人, 原定兼官南 陽府使韓配奎亦方被拿行查, 不但營鎭之久曠, 在 水原亦與兼官而無之, 事之虛疎莫此爲甚, 水原新 府使沈錫, 自高山驛館時未上來, 爲先各別催促, 而 南陽府使韓配奎, 查事出場未知早晚, 有不可等待, 爲先改差其代, 令該曹口傳, 極擇差出, 明日內使之 辭朝, 以爲兼察水原之地爲宜, 以此分付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105책, 영조 15년 1739년 07월21일(음)>

### 정치/행정

領議政 金在魯 등이 南陽府使 鄭弘濟를 유임시키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또 아뢰기를, “이것은 경기감사 홍경보(洪景輔)의 장계입니다. 도내의 흉황은 연해(沿海)가 더욱 심한 실상과 남양부사(南陽府使) 정홍제(鄭弘濟)의 치적(治績)에 대하여 상세히 진달하고 이르기, 그가 지금 만기가 되어 교체하게 되었는데 온 경내 백성이 그가 떠나는 것을 애석하게 여겨 감영에 와서 그의 유임을 청하여 날마다 법석을 이루고 있다고 말하고 임기가 만료하여 후임을 내는 것은 비록 금석(金石)같은 법도이지만 전에도 이럴 때에는 많이 변통하여 잉임(仍任)시킨 준례가 있으니 맥추(麥秋) 한하고 잉임시키는 일을 묘당에서 품처(稟處:임금에게 아뢰고 처리함)하게 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수령의 잉임은 의당 해조에 품처를 청해야 하나 해조에서 방색할 것을 염려하여 도리어 묘당에 품처를 청한 것은 사체로 보아 미안한 일이고 지금은 설진(設賑)할 때와는 같지 않으며 임기가 다한 수령의 잉임은 포장(褒獎)하는 도리도 아니요 또 법외(法外)의 일이니 경기감사는 추고하고 잉임하는 일은 물시(勿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좌의정 송인명(宋寅明)이 말하기를, “신의 생각으로는 경기감사는 추고하고 정홍제는 기왕 잘 다스린다고 하니 잉임하는 일을 시행토록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경기감사는 추고하고 **남양부사**는 맥추 한하고 잉임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又所啓, 此卽京畿監司洪景輔狀啓也, 備陳 道內凶荒濱海尤甚之狀及**南陽府使**鄭弘濟善治 之績, 以爲今將瓜遞, 一境之民, 咸惜其去, 請留營門, 逐日紛紜, 瓜滿出代, 雖是金石之典, 在前如此之時, 亦多有變通仍任之例, 限麥秋仍事, 請令廟堂稟處 矣, 守令仍任, 當請該曹稟處, 而爲慮該曹之必防塞, 反請令廟堂稟處, 事體固已未安, 卽今非如設賑 之時, 而瓜滿守令之仍任, 旣非褒勸之道, 又是法典 之外, 畿伯推考仍任事, 勿施何如, 左議政宋曰, 臣 意則畿伯推考, 鄭弘濟旣善治仍任事, 許施似宜矣, 上曰, 畿伯推考, **南陽府使**限麥秋仍任可也.

<비변사등록 111책, 영조 18년 1742년 09월03일(음)>

### 정치/행정

京畿御史 李彝章 등이 牧子와 관련하여 牧官과 **南陽府使** 간의 다툼의 처리에 대해 아뢰다

○ 또 아뢰기를, “양민(良民)들이 목자(牧子)에 투속(投屬)하거나 목자가 잘못 양역(良役)에 이름이 들어 있는 것은 서로 폐단이 되어 목관(牧官:목장의 감독관)과 주토관(主土官)이 늘 서로 힐난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법문에 본래 명백하게 나타나 있는데 목자의 자손들은 사역(使役)에 응하지 못하더라도 양역을 침해할 수 없고 양민이 목안(牧案)에 들어갔을 때 목관이 그대로 덮어두는 것도 해당 법률이 있으니, 그들이 힐난하는 것은 올바르게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목관은 사복시(司僕寺)에 소속되고, 사복시는 즉 도제조(道提調)의 아문이니, 조금이라도 다투는 일이 있을 때는 목관이 본시(本寺)에 번거로이 호소하면 바로 초기(草記)하여 파직합니다. 신이 **남양선생안(南陽先生案)**을 보니, 목자의 일로 인하여 파직된 사람이 10명에 2~3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양민이 투속하는 폐단이 날로 더하고 달로 늘어났습니다. 신이 출도(出道)한 후 관문(關文)을 보내 감목관(監牧官)을 부르고 **남양부사**와 동시에 호적(戶籍)을 고준(考準:서류를 원본 대조함)하게 하였는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양역(良役)에 응하여 함부로 목자로 칭한 사람을 일일이 조사하자 그 수효는 75호에 달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무릅쓰고 투속한 것이 한정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일은 양조(兩造:원고와 피고)를 대면하여 변별한 후에 시비를 알 수 있는데 그 허실(虛實)을 조사하지 않고 바로 파직한다면 참으로 어찌하겠습니까! **남양부사**는 직위와 명망이 있는 사람이 많이 부임하였는데도 오히려 이와 같으니, 먼 지방의 최잔한 수령이 어찌 횡액을 당할 일이 없을 줄 알겠습니까! 지금부터 서로 다투는 일이 있을 때는 본사(本司)에서 초기하여 죄를 간청하여 나문하고 사실을 조사하여 처리하더라도 곧바로 파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사리에 타당할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비국으로 하여금 등대할 때 품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又所啓, 良民之投屬牧子, 牧子之誤簽良役, 互 爲弊端, 牧官與主土之官, 每每爭詰, 國家法文, 本 自昭著, 牧子子枝, 則雖未及應役者, 不得混侵良役, 良民之投入牧案, 而牧官掩置者, 亦有應律, 其所爭 詰, 不難辨正, 而牧官屬於司僕, 司僕卽都提調衙門, 小有爭端, 則牧官煩訴於本寺, 直爲草記, 罷職矣, 臣 取見**南陽先生案**, 則因牧子事坐罷者, 十居二三, 以 此之故, 良民投屬之弊, 日加月增, 臣出道後, 發關招 致監·牧官, 使與**南陽府使**, 眼同考準戶籍, 其父祖應 良役, 而冒稱牧子者, 一一查出則, 其數至於七十五戶, 卽此觀之, 亦可見冒屬之無節矣,

凡事，兩造對辨然後，可知是非，而不覈虛實，直爲罷職，誠涉如何，**南陽府使**，有地望者，多爲之，而猶尙如此，則遠方疲殘守令，安知無橫罹之患乎，從今以後，如有相爭之事，則本寺雖草記，請罪拿問，覈實以處之，俾不得直罷，似合事宜矣，上曰，令備局登對時，稟處可也。  
<비변사등록 120책, 영조 25년 1749년 12월16일(음)>

### 정치/행정

**左議政 金若魯** 등이 입시하여 **逃亡한 사람의 軍役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 또 아뢰기를, “경기어사 이이장(李彝章)이 올린 서계(書啓) 말미에 ‘도망한 사람이 10년이 지날 경우, 그 후임을 정하는 것은 바꿀 수 없는 법입니다. 그리고 어사가 염탐한 것은 그 기한 내이라도 전례(前例)가 있습니다. 지금 이 **남양(南陽)**과 **김포(金浦)**에서 도망한 사람들은 그 기한 내를 막론하고 신이 가지고 온 성책(成冊)을 도신에게 주어 즉시 그 대탈(代頤)을 하도록 하기를 청합니다.’ 고 하였습니다. 도망한 지 10년이 지난 후에 허탈(許頤:면제해 줌)하는 것은 법의 뜻에 소재가 있고, 어사가 간청한 것은 백성의 마음을 위로하는 데에서 나온 것이지만 어사가 일시적인 행차에 그 도망한 것이 사실인가를 자세히 알기 어려운 것이니, 한꺼번에 대탈을 한다면 이후로는 군역(軍役)을 피하려고 피한 간민(奸民)들이 어사의 행차를 만나면 어지러이 핑계를 대어 도망하는 폐단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도의 도신에게 다시 자세히 조사하여 그 중 도망한 것이 확실하고 과연 인족(隣族)을 침해한 부류들을 엄하게 조사하고 그 대탈을 허용하여 허실(虛實)이 서로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된 바가 옳으니, 그리 하라.” 하였다.

又所啓，京畿御史李彝章書啓末端以爲，逃亡過十年後代定，自是不易之法，而御史廉問，則雖限內，亦有前例，今此**南陽**·**金浦**逃亡，毋論限內，臣所 持來成冊，出付道臣，卽令代頤，爲請矣，逃亡十年後 許頤，法意有在，御史所請，雖出於慰悅民情，而御史 以一時過來之行，其逃亡之的實，亦難詳知，一併代 頤，則此後奸民之謀避軍役者，如值御史之行，則紛 然假託，逃亡之弊，亦不可不慮，令本道道臣，更加詳 查，其中逃亡的實，而果侵隣族之類，嚴覈，許其代頤，俾無虛實相蒙之弊，何如，上曰，所達是矣，依爲之。

<비변사등록 120책, 영조 25년 1749년 12월27일(음)>

### 정치/행정

**居下를 받은 南陽府使 鄭運喆을 대신할 인물을 口傳差出하여 속히 보낼 것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거하(居下)인 **남양부사(南陽府使)** 정운철(鄭運喆)의 후임을 어제 연석에서 당일의 정사(政事)에서 차출하여 떠나보내게 하기로 진달하여 윤희를 얻어 정청(政廳)에 분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조참판 조운규(趙雲逵)가 차당(次堂)으로서는 폄출(貶黜)된 자리를 차출할 수 없다 하고 거행하지 않습니다. 재읍(災邑)의 민사(民事)가 하루가 급하니 궐원(闕員)된 **남양부사** 후임을 즉시 해조로 하여금 각별히 가려 구전차출(口傳差出)하여 며칠 안으로 독촉하여 내려 보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南陽府使**鄭運喆居下代，昨日筵中，以當日政差出發送之意，陳達蒙允，分付政廳，而吏曹參判趙雲逵，謂以次堂，不可差出貶窠，不爲舉行，災邑民事，一日爲急，**南陽府使**有闕代，卽令該曹，另擇口傳差出，不多日內催促下送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129책, 영조 31년 1755년 12월21일(음)>

## 정치/행정

### 京畿道臣에게 인구 수를 상세히 조사하게 하라고 전교하다

○ 전교하기를, “지금 경기 도신의 각 고을 진정 계본(賑政啓本)을 보니 남양(南陽)은 일곱 번째 돌림[巡]에 2천 5백 14구(口), 여덟 번째 돌림에 1천 9백 92구, 아홉 번째 돌림에 1천 9백 87구였는데, 처음 접수된 주민에게 환곡을 주는 것은 사세가 참으로 그러하나 열 번째 돌림에 다시 1천 9백 92구가 되어 교묘하게도 여덟 번째 돌림과 부합한 것은 그 까닭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통진(通津)은 여섯 번째 돌림에 7백 4구, 일곱 번째 돌림에 6백 69구, 여덟 번째 돌림에 6백 70구이고, 안산(安山)은 여섯·여덟·아홉 번째 돌림에 4백 80여 구이나 오직 일곱 번째 돌림은 4백 90여 구이며, 음죽(陰竹)은 여섯·여덟 번째 돌림의 70여 구 중에서 일곱 번째 돌림만 3백 80구이고, 진위(振威)는 여섯 번째 돌림에 6백 62구, 일곱 번째 돌림에 60구, 여덟 번째 돌림에 6백 26구인데 그 중에 인구가 영성(零星)하여 차등이 있는 것은 괴이한 일이 아니지만 더러는 적고 더러는 많아 일정하지 않은 것은 왜 그러느냐? 혹 사세가 그렇다면 그것은 그래도 가하겠으나 만약 정밀하게 가려내지 않아 이와 같다면 조심성 있게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도신에게 상세히 조사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傳曰，今覽京畿道臣各邑賑政啓本，南陽，則七巡，二千五百十四口，八巡，一千九百九十二口，九巡，一千九百八十七口，初付之民，若付還穀，則其勢固然，而十巡，復以一千九百九十二口，巧符於八巡，其故焉在，通津，六巡，七百四口，七巡，六百六十九口，八巡，六百七十，安山，六·八·九巡，四百八十餘口，惟七巡，四百九十餘口，陰竹，六·八巡，七十餘口中，七巡，三百八十口，振威，六巡，六百六十二口，七巡，六十口，八巡，六百二十六口，其中人口零星，差等者，不是異事，或少或多不一者何，或以事勢而然，則容或可也，若不精抄，而若此，不謹可知，令道臣詳查以聞。

<비변사등록 143책, 영조 39년 1763년 04월09일(음)>

## 정치/행정

### 南陽府使 姜游의 上疏를 廟堂에 내려 將臣들과 논의하여 처리하겠다고 비답하다

○ 남양부사(南陽府使) 강유(姜游)의 소에 답하기를, “소를 보고 모두 알았다. 그대가 진달한 바를 지도(地圖)를 살피며 비교해 보았으나, 멀리에서 형편(形便)을 헤아리기 어렵다. 원소(原疏)를 지도와 아울러 묘당에 내려 여러 장신(將臣)과 익히 협의하여 획일(劃一) 복계(覆啓)하게 하여 참작 처리하게 하겠다.” 하였다.

答南陽府使姜游疏曰，省疏具悉，將爾所陳，按圖校看，而形便有難遙度，原疏竝地圖，下廟堂，與諸將 臣爛商，使之畫一覆啓，以爲參量裁處之地。

<비변사등록 163책, 정조 5년 1781년 12월24일(음)>

## 정치/행정

### 강화유수 宋載經이 각읍의 이전미와 정퇴조에 대해 건의하다

○ 이번 2월 25일 차대에 입시하였을 때에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이 아뢰기를, (...) 또 아뢰기를, “이는 강화유수 송재경(宋載經)의 장계인데 경기 각읍(各邑)에서 계묘(癸卯)·갑진년(甲辰年) 이전미(移轉米)의 병오년(丙午年) 정퇴조(停退條) 중에서 5분의 1을 받아 올리라는 영(令)은 계하(啓下)하여 지령한 것인데 통진(通津)·남양(南陽)·고양(高陽)·교하

(交河) 등에서는 모두 준봉(準捧)하지 않았으니 4읍 수령의 죄를 묘당에서 품처하게 하기를 청하였습니다. 통진 등 4읍 수령은 지난번 경기감사의 장문(狀聞)으로 인하여 이미 처분이 있었으니 이 장계는 접어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

今二月二十五日次對入侍時，領議政金所 啓，(…) 又所啓，此江華留守宋載經狀啓，而京畿各邑 癸卯·甲辰移轉米丙午停退條中，五分一捧上之令，是啓下行會，而通津·**南陽**·高陽·交河等邑俱未準 捧四邑守令之罪，請令廟堂稟處矣，通津等四邑 守令，頃因畿伯狀聞，已有處分，此狀啓置之何 如，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172책, 정조 12년 1788년 02월25일(음)>

### 정치/행정

**回鑾 때 馬兵이 목숨을 잃은 일로 訓練大將 徐有大 등을 論罪하는 일을 아뢰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어제 회란(回鑾) 때 훈국(訓局)의 별대(別隊) 마병(馬兵)이 탄 배가 기울어서 마병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너무나 경악하였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배가 작고 사람이 많아 위험을 무릅쓰고 앞을 다룬 때문입니다. 대장이 된 자가 만일 미리 단속을 하고 더욱 금했다라면 어찌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훈련대장 서유대(徐有大)를 나문하여 정죄하고, 해 차지(該次知)와 모든 장관(將官)을 함께 먼저 도태(淘汰)시킨 뒤 잡아들여 중중 감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한다. 특별히 분부하여 거듭 신칙하고 또 별정차원(別定差員)에게 명하였으니 힘이 미치고 미치지 않고를 논하지 말아야 했다. 배를 잘 선택하지 않고 다투어 건너는 것을 금하지 못한 당해 차사원(差使員)을 이름을 물어 나문하여 처리하라. 별정차사원 **남양부사(南陽府使) 왕한정(王漢禎)**을 파직하라. 가전별초(駕前別抄)와 가후금군(駕後禁軍)은 모두 뒤떨어지게 한 뒤 해가 진 뒤 편리한 대로 건너게 하며, 별대 마병에 이르러서는 별장이 있는 곳에 그때 별도로 보내고, 기사(旗使)는 뒤떨어지게 하여 형편을 보아 건너게 했다. 그런데 해대(該隊)가 유독 명을 어기고 위험하게 함께 건너다가 이대하(隊下)의 군사 1명이 상하기에 이르렀으니 더욱 극히 놀랍다. 빠져죽은 사람은 본영에서 특별히恤典(恤典)을 더하고 해 별장(該別將)은 나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니 우선 정배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司啓曰，明日回鑾時，訓局別隊馬兵所騎船 隻傾圮，馬兵一名致傷，聽聞所及，萬萬驚愕，此必船 小人多，冒危爭先，爲大將者苟能預爲約束，另加禁 戢，則寧有是哉，訓練大將徐有大，拿問定罪，該次知 諸將官，一竝先汰後拿，從重勸處何如，答曰，允，特 教申飭，又命別定差員，則無論力之及與不及，不善 擇船，不禁爭渡，當該差使員，問名拿問處之，別定差 使員**南陽府使**王漢禎，罷職，駕前別抄，駕後禁軍，皆 令落後，限日暮從便渡，至於別隊馬兵，則別將處伊時別送，令旗使之落後，觀勢渡涉，該隊之乃獨違令 涉險，具(且?)此隊下軍一名之致傷，尤極該然，滄死人，令 本營，另加恤典，該別將，不可拿問而止，爲先定配可 也。

<비변사등록 173책, 정조 12년 1788년 09월08일(음)>

### 정치/행정

**江民이 호소하는 弊端에 대해서는 해당 衙門에서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것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신 김문순(金文淳)이 일찍이 한성부의 당상으로 있을 때에 하고에 의하여 우윤 임시철(林著喆)과 함께 강상(江上)으로 나뉘서 나가 퇴압(頽壓)된 민호(民戶)로 수리(修理)해야 할 것을 일일이 살펴본 뒤에 팔강(八江)의 부로(父老)들을 초집(招

集)하고 제반 질고(疾苦)를 물어보니 퇴압된 민호는 거의 모두 은혜를 입어 안정을 찾아 한 사람도 거처를 잃고 떠도는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 그 하나는 각강(各江) 염선(鹽船)의 선인(船人) 김중철(金重哲) 등이 말하기를 ‘소금을 생산하는 곳에서는 관(官)에서 세금을 받는 일이 없는데 재작년에 남양(南陽) 관청에서 세곡선가(稅穀船價)라 핑계하고 전에 없던 염세(鹽稅)를 만들어 매 석당 1푼[分]씩 받고 있는데 1년을 통산(通算)하면 몇 천냥이 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이번 이 폐막을 물은 거조는 민은(民隱)을 진념하시는 덕의(德意)에서 나온 것이므로 크고 작고를 물론하고 다 입록(入錄)하였는데 그 중에는 세액(稅額)에 관계된 일, 쟁송(爭訟)에 관계된 일, 창시(創始)에 관계된 일, 사결(查決)에 관계된 일 등이 있어 상세히 그 내력과 전말을 상고한 연후에야 결절(決折)할 수 있으므로 각해아문(各該衙門)과 경기감영으로 하여금 상세히 조사 구핵(究覈)하고 논리(論理)하여 보고하게 한 뒤에 품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司啓曰，臣文淳，曾任京兆堂上時，依下教，與右尹林蒼喆，分往江上，頽壓民戶之修葺者，一一審察，仍又招集八江父老，詢問諸般疾苦，則頽壓民戶，舉皆蒙恩安頓，無一人失所，棲屑之歎，(...) 其一，各江鹽船船人金重哲等，以爲產鹽之處，官無收稅之事矣，再昨年南陽官諉之稅穀船價，創設無前之鹽稅，每石收捧一分，通計一年，將至累千云矣，今此詢摸之舉，寔出於軫念民隱之德意，無論巨細，盡爲入錄，而其中有事關稅額者，有事關爭訟者，有事關創始者，有事關查決者，詳考其來歷顛末，然後可以決折，令各該衙門及畿營，詳細查究，論理報來後，稟處何如。

<비변사등록 175책, 정조 13년 1789년 12월12일(음)>

#### 정치/행정

##### 諭書와 密書를 환수하지 않은 當該 承旨를 파직할 것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남양(南陽)에 방영(防營:방어사를 둔 병영)을 그만두는 일은 이미 연중(筵中)에서 정탈하여 윤희를 받았습니다. 그 부사(府使)가 받은 유서(諭書)와 밀부(密符)는 당연히 승정원에서 즉시 품지하여 환수하여야 되는 데도 지금 이미 1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덮어두고 있다고 합니다. 밀부는 사체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데, 승정원의 하는 일이 소홀함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당해 승지에게 파직의 전형(典刑)을 실시하고 유서와 밀부는 승정원에서 즉시 환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南陽防營置之事，已於筵中定奪蒙允矣，該府使所授諭書密符，所當自政院卽爲稟旨還收，而今已過朔，尙今掩置云，密符事體何等嚴重，而政院舉行未免疎忽，當該承旨施以罷職之典，諭書密符，令政院卽爲還收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181책, 정조 17년 1793년 04월15일(음)>

#### 정치/행정

##### 左議政 金履素가 입시하여 京畿 36邑 暗行御史의 別單에 대해 논의하다

이달 16일에 약방(藥房)과 시·원임대신과 각신(閣臣)이 문안[承候] 차 입시하였는데, 이·병조판서와 유사당상과 어사가 함께 입시하였을 때, 좌의정 김이소(金履素)가 아뢰기를, (...) 이치중이 아뢰기를, “인천부사 이형필(李衡弼), 남양부사(南陽府使) 이익진(李翼晉), 양천현감(陽川縣監) 심공엽(沈公燁), 교하군수(交河郡守) 정재운(丁載運), 풍덕부사(豐德府使) 이문혁(李文赫), 양주목사(楊州牧使) 한광근(韓光近), 죽산부사(竹山府使) 유인철(柳仁喆), 광주부윤(廣州府尹) 서미수(徐美修), 수원판관(水原判官) 정동협(鄭東協), 진위현감

(振威縣監) 오재두(吳在斗), 용인현감(龍仁縣監) 서이수(徐理修), 가평군수(加平郡守) 유득공(柳得恭), 영평현령(永平縣令) 박규순(朴奎淳), 포천현감(抱川縣監) 조중진(趙重鎭), 여주목사(驪州牧使) 유강(柳綱), 이천부사(利川府使) 남인로(南仁老), 음죽현감(陰竹縣監) 윤명기(尹命基), 양지현감(陽智縣監) 홍욱호(洪旭浩) 등은, 혹은 치적을 낸다는 소문이 있기는 하나 특별히 우수한 치적은 없고, 혹은 잘못된 정치를 했다고 하나 또한 드러난 죄는 없습니다. 김포전군수(金浦前郡守) 유한준(柳漢雋)은 전에 이미 처벌을 받았으니 아울러 그냥 두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리하라. 서미수(徐美修)가 자기의 집을 관아처럼 삼은 것은 병때문에 관아를 비우고 싶지 않아서 그러하였겠지마는 실로 조심하였다면 어찌 이렇게야 했겠는가? 우선 중중추고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今十一月十六日藥房, 時前任大臣·閣臣承候 入侍, 吏·兵判·有司堂上·御史同爲入侍時, 左議 政金所啓, 卽見京畿三十六邑暗行御史書別 單, (…)  
致中曰, 仁川府使李衡弼·**南陽府使**李翼晉·陽川縣監沈公燁·交河郡守丁載 運·豐德府使李文嫻·楊州牧使韓光近·竹山府使柳仁喆·廣州府尹徐美修·**本原**判官鄭東協·振威縣監 吳在斗·龍仁縣監徐理修·加平郡守柳得恭·永平縣 令朴奎淳·抱川縣監趙重鎭·驪州牧使柳綱·利川府 使南寅老·陰竹縣監尹命基·陽智縣監洪旭浩等或 有治聲, 別無優異之績, 或有疵政, 而亦無顯著之罪, 金浦前郡守俞漢雋, 則前已被勘, 竝置之何如, 上 曰, 依爲之, 徐美修之以家爲官, 不欲瘼曠, 苟能小心, 寧或若是, 爲先從重推考可也, (…)

<비변사등록 182책, 정조 18년 1794년 11월18일(음)>

## 정치/행정

### 故 **南陽府使** 具統을 復薦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상언(上言)에 대한 병조(兵曹) 회계(回啓)의 관부(判付)에서 묘당에서 품처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상언을 가져다 보니 전(前) 선전관(宣傳官) 구재숙(具載肅)이 그 아버지 고(故) **남양부사(南陽府使)** 구담(具統)이 재직 시에 공화(公貨)를 포부(逋負:포함(逋欠))한 죄로 잔배(竄配)되어, 부자(父子)를 선전관청(宣傳官廳)에서 아울러 발천(拔薦:천거에서 뽑)하는 벌전(罰典)으로 시행하였는데 그 뒤에 특은(特恩)으로 그 아버지는 죄명(罪名)이 생전(生前)에 탕척(蕩滌)되었으나 아직도 복천(復薦:천장(薦狀)을 복구함)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견책(譴責)을 받고서 멀리 귀양 갔을 때에는 비록 예(例)대로 삭천(削薦)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 뒤에 은교(恩教)가 측달(惻怛)하셔서 죄명을 차례로 탕척하였으니 격례(格例)로 논하면 복천 되었어야 마땅할 듯한데 지금 사망한 지 이미 오래 된 뒤에도 그 아들과 함께 아직도 삭천을 당한 중에 있습니다. 사리(事理)로 헤아려 마땅히 진념(軫念)하는 일이 있어야 하겠으니 해청(該廳)에 분부하여 복천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允)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兵曹上言回啓判付, 有令廟堂稟處之命矣, 取見其上言, 則前宣傳官具載肅, 以其父故 **南陽府使**統在任時, 公貨逋負之罪竄配, 而父子自宣傳官廳, 竝施拔薦之罰, 伊後因特恩, 其父罪名蕩滌於生前, 而尙未復薦云矣, 當其被譴遠謫之時, 雖有依例削薦之舉, 而其後恩教惻怛, 罪名次第蕩滌, 則論以格例, 似當復薦, 而今於身故已久之後, 竝與其子, 而尙在被削之中, 揆諸事理, 宜有軫念, 分付該廳, 使之復薦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195책, 순조 4년 1804년 09월19일(음)>

### 정치/행정

#### 慈山府使 申在明을 罷黜하고 拿問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자산부사(慈山府使) 신재명(申在明)이 휴가를 받아 상경하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본읍(本邑)은 다른 고을에 비해 더욱 중요한 곳입니다. 즉각 고을로 돌아가게 하였으나, 신병이 있다고 하면서 즉시 출발하지 않고 하룻밤을 넘기니 너무도 놀랍습니다. 우선 파출하고, 그의 죄상은 해부에서 나문하여 엄히 감죄하게 하고, 그 후임을 남양부사(南陽府使) 김처한(金處漢)을 옮겨 차임하여 즉시 하직인사를 하게하고 말을 지급하여 내려 보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윤희한다. 하직인사는 그만두고 부임하게 하라.” 하였다.

司啓曰, 慈山府使申在明受由上京, 故此時本邑, 比他邑尤爲繁重, 使之卽刻還官, 則謂有身病, 不卽發行, 以致經宿者, 萬萬駭然, 爲先罷黜, 其罪狀, 令該府, 拿問嚴勘, 其代, 以南陽府使 金處漢移差, 使之卽爲辭朝, 給馬下送, 何如, 答曰, 允. 除朝辭, 赴任,

<비변사등록 201책, 순조 11년 1811년 12월24일(음)>

### 정치/행정

#### 南陽府使의 후임을 口傳으로 差出하도록 할 것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옮겨 제수한 남양부사 김처한(金處漢)의 후임을 해조에서 서울에 있는 별 사정이 없는 사람으로 잘 가려 구전으로 차출하여 당일 하직인사를 하게하고 재촉하여 부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南陽府使 金處漢移拜之代, 令該曹, 以在京無故人極擇, 口傳差出, 使之當日辭朝, 催促赴任, 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01책, 순조 11년 1811년 12월24일(음)>

### 정치/행정

#### 道臣이 罷黜한 坡州牧使와 南陽府使의 후임에 대해 政官을 牌招해 差出할 것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과주목사(坡州牧使)와 남양부사(南陽府使)는 도신이 이미 장계하여 파출(罷黜)하였습니다. 양읍(兩邑)은 본래 폐단이 쌓인 고을로서 거기다 또 더욱 심한 재해를 당하고 있는데, 더구나 또 한창 조세를 독촉하고 있으니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게 될까 염려됩니다. 원 장계를 계하(啓下)하거든 정관을 패초하여 정사를 열어 각별히 가려 차출(差出)하게 하고 하비(下批)하기를 기다려 재촉해서 내려 보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坡州牧使·南陽府使, 道臣既已狀啓罷黜矣, 兩邑本以積弊之邑, 且當尤甚之災, 況又催科方張, 剗曠爲悶, 待原狀啓啓下, 政官牌招開政, 各別擇差, 待下批使之催促下送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04책, 순조 14년 1814년 10월30일(음)>

### 정치/행정

#### 水原府 校吏 등의 詢癘에 대해 回啓하다

비변사에서 달(達)하기를, “수원부 교리(水原府校吏) 등에게 폐막을 물은 별단(別單)에 대한 판부(判付) 내에, ‘화성부(華城府)는 우리 선대왕(先大王)께서 경영하신 곳인데 지난날

보살피고 애호한 바가 과연 어떠하였는가? 이 별단은 묘당에서 좋은 방향으로 품처하여 실효가 있게 하라. 서북에 둔전을 설치한 것은 화성부의 양식을 넉넉하게 하려는 뜻에서였는데, 양반의 가호(家戶)에서 널리 차지하여 폐단을 일으키는 것은 진실로 매우 놀랍고 한탄스럽다. 지금 이후로는 양반의 가호는 일체 금지하고 오직 상민과 장리(將吏) 장리(將吏): 군관(軍官)의 통칭. 단기 · 졸예(卒隸)에게만 경작을 허락하는 뜻으로 절목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화성유수(華城留守)에게 분부하는 것이 좋겠다.’ 고 영을 내리셨습니다. 그 별단을 보니, 그 하나는, 평신진(平薪鎭)의 군전(軍錢)과 토세(土稅)는 본부(本府)의 첨사(僉使)에게 소속되었으니, 각도(各道)와 각영(各營)의 사례에 따라 본부에서 자벽(自辟) 자벽(自辟): 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아래 관원을 추천하여 벼슬시키는 일. 단기 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혜진(該鎭)이 본부에 소속되었다고 하여 자벽으로 하는 것은 비단 일이 관방(官方) 관방(官方): 관제(官制). 단기 에 관계될 뿐 아니라 이곳은 호서의 독진(獨鎭)이므로 사체가 줄지에 의논할 수 없으니, 덮어두어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풍도(楓島)는 인민(人民)은 본래부터 본부에 소속되었고 토세는 남양(南陽)의 대부 목관(大阜牧官)이 거두어들였는데, 세금 납부는 증가하고 섬의 백성들은 점점 흩어져서 조선(漕船)과 세선(稅船)을 호송해야 할 곳이 장차 텅 비게 될 우려가 있으니, 지금부터 본 섬의 토세도 본부에 소속시켜서 섬의 백성들을 정착시키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 섬의 토세를 애초에 정한 것은 피곡(皮穀) 5~6석이라고 하였는데, 나중에는 첨가되어 그 수량이 몇 곱절이 되었다고 합니다. 5~6석에서 몇 곱절이 되었다고 해도, 모두 합한 수량은 10여 석 안팎에 지나지 않으니, 섬의 백성들이 점차 흩어지게 된 것이 말이 혹 실상을 지나친 듯하고 또 수량도 매우 적으니 역시 덮어두어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견보고(鑣補庫)의 돈 2천 냥을 을사년(乙巳年: 정조9, 1785)부터 빚으로 놓아 장리(將吏)에게서 이식(利殖)을 취하였는데, 40여 년 사이에 사람이 흩어지거나 죽은 것이 많아 귀록(鬼錄: 허위 기록)이 되어 이웃과 친족에게 침징하였는데 폐단이 굳어 고치기가 어려우니, 위 항목의 본전(本錢)은 신사년(辛巳年: 순조21, 1821)의 사례에 따라 탕감하고, 이식제도 좋은 방편으로 급대(給代)해 달라는 일입니다. 본고(本庫)의 식리(殖利)는 전에 빌려준 것은 이미 귀록이 되었고, 마땅히 거두어들여야 할 것은 매년 침징을 하니 아전과 백성이 지탱하기 어려울 것은 사세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빚을 탕감하고 급대하는 것도 가볍게 논의할 바가 아니니, 수신(守臣)에게 좋은 방향으로 논보하게 하여 다시 품처해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본부(本府)에 각진(各塵)을 설치한 것은 주민들을 위하는 성덕(盛德)에서 나온 것이나 만근에는 쇠잔하여 전포는 비고 사람은 흩어져서 안도하게 할 대책이 없기 때문에 바야흐로 생저(生苧: 생모시)를 사들여 표백(漂白)을 하여 경전(京塵)과 난전(亂塵)에 팔고 있는데 특별히 금지하지 않음으로써 화성 백성들의 생업에 일조가 되게 해달라는 일입니다. 생저를 표백하는 일은 본래 경전 백성들의 생계 수단이었었는데, 여기에서 뺏아서 저기에 주는 것은 비단 일의 체모에 장애가 될 뿐 아니라 일시(一視: 똑같이 대함)의 정사(政事)로서도 가볍게 허락할 수 없으니, 덮어두어야 하겠습니다. 서북의 둔전에서 양반의 가호(家戶)가 폐단을 일으키는 일에 대해서는 관하(判下)하신 영지(永旨)가 엄중할 뿐 아니라, 이미 본사에서 해부(該府)에 관문(關文)을 보냈습니다. 절목(節目)을 만들어 거행한 다음에 상황을 곧바로 장달하라는 뜻으로 수신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리하라고 답하였다.

司達曰, 水原府校吏等詢瘼別單, 判付內, 華城一府, 卽我先大王經始之地, 而昔日之顧恤愛護, 果何如, 此別單, 自廟堂從長稟處, 俾有實效, 至於西北屯設始, 卽爲一府裕食之道, 則班戶之廣占作弊者, 誠極駭惋, 從今以後, 班戶則一切禁斷, 惟以常民與將吏卒隸, 許其耕作之意, 成

節目施行事，分付華城留守處可也事令下矣，取見其別單，則其一，平薪鎮軍錢土稅，既屬本府僉使，亦依各道各營例，許令本府自辟事也，該鎮之屬之本府，作為自辟，非但事係官方，且是湖西獨鎮，則事體不可遽議置之，其一，楓島人民，則自來屬之本府，土稅則自南陽大阜牧官收捧，而稅納增加，島民漸散，漕稅船護送之地，將有空虛之慮，自今本島土稅，亦屬本府，以為島民奠接之地事也，該島土稅之當初定稅，謂之皮穀五六石，而末乃添加，厥數倍蓰云，倍蓰於五六石，則都數不過為十餘石內外，島民之漸至渙散者，言或過實，且數爻極其零星，亦為置之，其一，蠲補庫錢二千兩，自乙巳放債，取殖於將吏，而四十餘年之間，人多散亡，便成鬼錄，侵隣侵族，弊痼難醫，上項本錢，依辛巳年例蕩滅，利條亦為從長給代事也，本庫殖利前貸，已成鬼錄，當捧每患侵徵，吏民難支，勢所使然，而至於蕩債給代，亦非輕議，令守臣從長論報，更為稟處，其一，本府各塵設始，蓋出於為居民之盛德，而挽近凋殘，塵空人散，奠接沒策，方營貿取生苧曝白，以賣京塵亂塵，特許勿禁，以為華民生利之一助事也，生苧曝白事，自是京塵民聊賴之資，則奪此與彼，非但有礙事面，一視之政，不可輕許置之，至於西北屯之班戶作弊，判下令旨，不啻嚴重，已自本司行關該府矣，成節目舉行後，形止，即為狀達之意，分付守臣處何如，答曰，依。

<비변사등록 216책, 순조 28년 1828년 03월18일(음)>

#### 정치/행정

**진홀을 위해 돈을 바친 남양의 대부도에 사는 金益振에게 첨사에 임명할 것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경기감사 이희준(李義準)의 보고를 보니, 남양부(南陽府) 대부도(大阜島)에 사는 절충(折衝) 김익진(金益振)이 돈 2천 냥을 바쳐서 자원하여 진홀을 돕겠다고 하였다 합니다. 대개 흉년에 진홀을 돕는 사람에게는 상격(常格)을 너넉하게 더하여 격려하여 권장하지 않은 적이 없으나, 간혹 유사에서 즉시 봉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신뢰하는 바가 없게 됩니다. 이는 주부자(朱夫子:주희(朱熹))가 바쳐서 도운 인호(人戶)에게 상을 주도록 아뢰기를, 백성들에게 신의를 얻어야 장래에 흑시라도 재해로 손상됨이 있으면 쉽게 권유할 수 있다고 한 까닭입니다. 이번에 대부도의 백성들이 바친 2천 켈미의 돈은 곡물의 본색과 비교하면 비록 차이가 있지만 섬에 사는 산업(產業)으로 논하면 이것도 적지 않으니, 일이 지극히 가상합니다. 너넉하고 특별한 상을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며 풍문을 듣고 흥기함이 있게 할 부류이니, 절충 김익진을 해조에서 좋은 곳의 임기 만료 가 가까운 첨사에 자리를 만들어 임명해서 보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即見京畿監司李義準所報，則南陽府大阜島居折衝金益振，納錢二千兩，自願補賑云矣，凡係荒年，補賑之人，未嘗不優加賞格，使之激勸，而或因有司之未即奉行，以致民人之無所徵信，此所以朱夫子奏乞推賞獻助人戶，謂其庶幾取信於民，將來或有災傷，易為勸諭者也，今此大阜民所納二千緡錢，較諸穀物本色，雖曰有間，論以島居產業，此亦不些，事極嘉尚，合施優異，俾有聞風興起之類，折衝金益振，令該曹善地瓜近僉使，作窠差送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20책, 순조 32년 1832년 10월20일(음)>

#### 정치/행정

**異樣船의 出沒을 자세히 보고하지 않은 南陽府使 姜潤을 戴罪舉行하게 하라고 전교하다**

경기감사 민태호(閔台鎬)가 장계하여, “변방의 정황은 얼마나 신속하게 보고해야 할 일인데, 문첩(文牒)이 지체되고 이양선(異樣船)과 범죽선(帆竹船)의 수효조차 또한 구별하지 못

하였습니다. 거행한 것으로 따져보면 더욱 몹시 지체시키고 소홀한 행동입니다. **남양부사(南陽府使)** 강윤(姜潤)을 먼저 파출(罷黜)하고, 그 죄상(罪狀)은 유사(攸司)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변방의 정황을 보고하는 일을 이처럼 지체시키고 소홀하게 한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체직(遞職)하는 것 역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파출은 그만두고 우선 죄명(罪名)을 지닌 채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以京畿監司閔台鎬狀啓，邊報何等迅急，而文牒遲滯，異船帆竹數爻，又無區別，揆以舉行，尤極駭忽，**南陽府使**姜潤，爲先罷黜，其罪狀，令攸司稟處事，傳曰，邊報之如是稽忽，萬萬可駭，而此時遞任，亦不可不念，罷黜安徐，姑令戴罪舉行。

<비변사등록 256책, 고종 12년 1875년 12월28일(음)>

### 정치/행정

**南陽府使**를 常格에 구애받지 말고 口傳으로 擇差할 것을 청하다

○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남양부사(南陽府使)**가 이제 막 내직(內職)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헛되이 자리를 비워 두는 것은 실로 걱정스러우니, 해조에서 일상 격식에 구애받지 말고 구전으로 각별히 택하여 차임하게 해서 수일 안으로 내려 보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한다고 답하였다.

府啓曰，**南陽府使**，纔已內移矣，此時瘵曠，實屬可悶，令該曹勿拘常格，口傳各別擇差，使之不日下送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57책, 고종 13년 1876년 08월20일(음)>

### (3) 사법

#### 정치/사법

##### 京畿暗行御史 鄭弘溟의 狀啓에 따라 善治守令을 褒賞하다

아뢰기를, "엿드려 경기암행어사 정홍명(鄭弘溟)의 장계를 보니 '도내 선치수령(善治守令) 가운데 여주목사(驪州牧使) 윤이지(尹履之)는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아끼고 다스림에 있어 법도(法度)가 있으며, 과주목사(坡州牧使) 박효립(朴孝立)은 간약(簡約)하고 병폐(病弊)를 제거하여 일경(一境)이 편안하며, 양근군수(楊根郡守) 이의전(李義傳), 통진현감(通津縣監) 홍무적(洪茂績)은 벼슬살이를 청고(淸苦)하게 하여 사방에서 칭찬하며, 평구찰방(平丘察訪) 이영인(李榮仁)은 역졸(驛卒)을 어루만지고 아껴 유망(流亡:떠돌이)하였던 자가 다시 모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마땅히 포상(褒賞)의 은전(恩典)이 있어야 할 듯하나 은명(恩命)에 관계되므로 삼가 예재(睿裁)를 기다립니다. 양주목사(場州牧使) 유순익(柳舜翼)은 다스림에 게으르고 또 군관(軍官)의 말썽도 있었으며 남양부사(南陽府使) 강홍중(姜弘重)은 능히 듣고 살피지 못하여 서리(胥吏)가 농간을 부렸습니다. 유순익(柳舜翼)은 대간(臺諫)의 논계를 입어 이미 체차(遞差)되었으며, 강홍중(姜弘重)도 파출(罷黜)하는 것이 의당하옵니다. 금년의 기근(飢饉)은 여러 도가 다 마찬가지로이나 기내(畿內)가 더욱 심합니다. 재해(災害)가 가장 심한 곳의 부세(賦稅)를 견감하여 주거나 맥추(麥秋)로 연기하여 특히 너그럽게 구휼하는 은전(恩典)을 보여야 할 것이므로 호조와 선혜청으로 하여금 상의하여 곧 시행하는 것이 의당하옵니다. 선행청에 봉납(捧納)하여야 할 추등(秋等) 8두 외에 조예가(皂隸價)로 4승(升)을 가정(加定)하였다 합니다. 지금 들으니 각관(各官)에서 5~6승 또는 6~7승을 더 수봉(收捧)하는 경우도 있다하니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본도 감사로 하여금 조사해서 그 멋대로 받아들인 관원(官員)을 적발하여 계문(啓聞)하고 중벌(重罰)로 다스리게 하는 것이 의당하옵니다. 또 조예가(皂隸價) 4승은 추등(秋等)에만 가정(加定)하고 춘등(春等)에는 가정(加定)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청·강원 양도에 지회(知會)하였으니 경기도 또한 더 수봉(收捧)하지 말아 똑같이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옵니다. 절호(絶戶)의 진전(陳田:묵은 밭)에 차역(差役:역으로 차출함)하는 폐단 시존(時存)의 민호(民戶)에 첩징(疊徵:2중 징수)하는 경우를 벗어날 수 없는데 이는 곧 민간이 가장 칭원(稱冤)하는 바입니다. 본도(本道)로 하여금 그 진결(陳結)은 감면하고, 은결(隱結)과 누결(漏結)을 찾아내어 보충하게 하는 것이 의당할 것이옵니다. 요역(搖役)을 배정(配定)함에 있어 진결(陳結)의 다과에 따르지 않고 읍명(邑名)의 대·중·소만을 가지고 차등(差等)을 삼으면 작은 읍이 지나치게 무거움은 당연한 일입니다. 감사(監司)로 하여금 각별히 살피게 하여 균등하게 차역(差役)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옵니다. 양전(量田:토지의 측량)에 관한 문제는 마땅히 시기를 기다려서 거행해야 하겠습니까. 서울의 얼음(氷)이 떨어져 기읍(畿邑)에서 가져다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곧 근년의 큰 병폐입니다. 금년에는 빙고(氷庫) 문제를 이미 착실히 거행하였으니 아마도 지난날의 병폐는 없을 것입니다. 역로(驛路)에 관한 문제는 병조로 하여금 그 세 가지 병폐를 살펴 따로 복계(覆啓)하도록 하여 시행하는 것이 의당하므로 감히 아뢰입니다."하니, 답하기를, "아뢴대로 하라. 윤이지(尹履之) 등에게 표리(表裏) 1승(襲)씩을 사급(賜給)하라."하였다.

啓曰, 伏見京畿暗行御史鄭弘溟狀啓, 則道內善治守令中, 驪州牧使尹履之, 奉公恤民, 爲治有法, 坡州牧使朴孝立, 簡約除弊, 闔境晏然, 楊根郡守李義傳, 通津縣監洪茂績, 居官淸苦, 四隣稱譽, 平丘察訪李榮仁, 撫恤驛卒, 流亡還集云, 此人等似當有褒異之典, 而係干恩命, 恭俊

睿裁, 楊州牧使柳舜翼, 爲治老倦, 且有軍官作弊之事, **南陽府使**姜弘重, 不能聰察, 吏緣爲奸, 而柳舜翼則因臺諫所啓, 已爲遞差, 姜弘重則罷黜宜當, 今年飢荒, 諸道同然, 而畿內尤甚, 其被災最重處, 或量減賦稅, 或令延待麥秋, 特示寬恤之典, 令戶曹與宣惠廳, 商議, 劃卽施行宜當, 宣惠廳應納秋等八斗之外, 阜隸價加定四升云, 今聞各官, 或有加捧五六升六七升者云, 事甚可駭, 令本道監司查問, 摘撥其濫捧官, 啓聞重處宜當, 且阜隸價四升, 只於秋等加定, 而春等則不爲加定之意, 已爲知會於忠清江原兩道, 京畿亦勿加捧, 一體施行為當, 絕戶陳田差役之弊, 未免疊徵於時存之戶, 此乃民間之最所稱冤者, 令本道減其陳結而以隱漏結卜, 查出充補宜當, 至於徭役分定之時, 不從田結多寡, 而只以邑名大中小爲差, 則小邑之偏重, 在所當然是白昆, 令監司各別, 詳察, 以均差役爲當, 量田一事, 自當待時舉行, 京水乏絕, 取用畿邑, 此乃近年之大弊, 今年氷庫一事, 已爲着實舉行, 必無曩時之弊, 驛路一事, 令兵曹察其三弊, 別爲覆啓施行宜當, 敢啓, 答曰, 依啓, 尹履之等表裏一襲賜給.

<비변사등록 3책, 인조 2년 1624년 01월 27일(음)>

### 정치/사법

**本道 監司가 各站의 支持하지 않은 관아의 守令 및 夫馬差使員 등을 조사하도록 청하다**

아뢰기를, "경기도사 이유달(李惟達)의 장계에, 각참(各站)의 지대(支持:출장관원의 숙식 등 편의제공)를 하지 않은 광주(廣州)·양천(陽川)·인천(仁川)·안산(安山)·김포(金浦)·**남양(南陽)**·여주(驪州)·양지(陽智)·죽산(竹山) 등 관아의 수령(守令) 및 부마차사원(夫馬差使員)과 평구찰방(平丘察訪)은 모두 중벌을 시행해야 할 것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 공무(公務)로 인하거나 다른 사정으로 미치지 못한 경우가 없지 않을 것이니 통틀어 벌을 시행하면 횡리(橫罹:횡액에 걸림)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선 본도 감사로 하여금 조사, 계문(啓聞)토록 한 뒤에 처치하는 것이 의당하여 감히 아뢰입니다."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啓曰, 京畿都事李惟達狀啓, 各站闕支持, 廣州·陽川·仁川·安山·金浦·**南陽**·驪州·陽智·竹山等官, 守令及夫馬差使員平丘察訪, 所當竝施重罰, 而其間或不無因公者, 他勢有所未及者, 若一滾施罰, 則必有橫罹之患, 姑令本道監司, 查覈啓聞後, 處置宜當, 敢啓, 答曰, 允.

<비변사등록 3책, 인조 2년 1624년 02월 15일(음)>

### 정치/사법

**點馬시 뇌물을 받은 司僕寺의 書吏들을 엄히 처벌하고 點馬官을 罷職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근래에 외방 백성이 날로 더욱 곤고해진 것은 거개 경각사(京各司)에서 사방으로 나가 침탈함이 꺼리낌이 없는데서 연유하고 있는데 이는 지극한 폐단이 되고 있으니 엄한 법으로 무겁게 다스리는 도리가 있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요사이 들으니 이번에 점마관(點馬官)이 돌아온 뒤에 점마관을 수행한 사복시의 서리(書吏)와 이마(理馬)·양마(養馬)들에게 뇌물로 바칠 돈과 물품을 각 목장의 목자(牧子)들이 바리에 싣고 끌일 사이 없이 서울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는 대체로 점마(點馬)할 때에 서리 등이 목자한테 돈을 요구하여 사전에 수기(手記:약속어음)를 받아두었기 때문에 그때에 미처 챙겨서 바치지 못한 수량을 이렇듯 추후에 싣고 온 것입니다. 기내(畿內) 목장의 목자들의 생활이 지극히 곤란한 것은 감목관(監牧官)이 여러가지 뜯어내기 때문에 살 수 없게 된 것인데 이제는 또 이렇듯 수많은 돈과 물품을 옥박질러서 거두어들이므로 각자가 가산을 저당잡히고 소와 말 심지어 개와 닭까지 팔게 되니 원망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마을에 널렸다 합니다. 본사에서 형

조에 분부하여 사복시의 수행 서리 이지화(李枝華)와 양마·이마 등을 우선 엄히 가두게 하고 남양(南陽)의 대부(大阜)와 수원(水原)의 홍원(洪原) 두 목장에서 목자 몇 명이 돈을 싣고 서울로 들어오는 자를 모조리 잡아 가두고 추문하게 하니 그들의 납공(納供)에 대부의 목자 등이 바치기로 한 수기의 액수는 5백여 냥이고 홍원의 목자 등이 바치기로 한 수기의 액수는 4백 50여 냥이라 하였는데 이지화 등도 감히 저뢰(抵賴)하거나 숨기지 못하고 모두 자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약간의 액수는 죽은 말 가죽의 값이니 본사에 납입하여야 하고 또 그 전물(錢物)을 미처 실어오지 못하여 주고 받지 못한 것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평문(平問: 형을 가하지 않고 물음)한 처지에서 납공한 것이니 그 실지 수효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또 경기의 다른 목장은 미처 사핵하지 못하였으나 함부로 토색(討索)한 뇌물의 폐단은 여기에 근거하여 알 수 있습니다. 사복시 소속들은 항상 후한 요미(料米)를 먹어 생활이 넉넉한데도 범람하고 방종하기가 이에 이르렀으니 그 정상을 생각해 보면 지극히 통약스럽습니다. 근일 임금께서 백성의 측은한 사정을 깊이 진념하여 궁차인(宮差人)이 외방에서 작폐(作弊)한 것이나 경외의 정비(情費: 잘 봐달라고 얹어주는 돈) 등 폐단을 일체 통금하고 경중에 따라 논죄하라고 누차 엄한 하교가 계셨는데도 이런 일이 터졌으니 의당 무겁게 처치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점마(點馬)의 행사에 각 목장의 목자들이 전물을 거두어 사복시의 아전들에게 뇌물로 준 일은 오래 내려온 적폐(積弊)로서 오늘날에 비롯된 일이 아니므로 우선 참작하여 서리·이마·양마 등은 해조로 하여금 각별히 이차 엄형을 가한 후에 절도(絶島)에 정배하여 징증(懲戡)할 수 있도록 하게하며, 주었던 전물은 찾아서 본 목장의 목자들에게 일일이 내주고 이 뒤로 점마할 때에 다시 이런 버릇을 답습하면 특별히 중률로 논단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이들 수행 하배(下輩)가 뇌물을 토색하는 일은 의례히 관원의 이목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나 당해 점마관은 검찰을 잘못된 실수를 면할 수 없으니 파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보고대로 하되 토색한 돈이 1천 냥에 이르는데 지금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고 돌리고, 율(律)이 도배(鳥配)에 그친다면 어찌 이러한 이치가 있겠느냐? 불가불 별도로 처단하여야겠으니 다시 상의하여 아뢰라."하였다.

司啓辭，近日外方民生之日益困苦，多由於京各司四出侵剝，無所忌畏，此爲極弊，宜有嚴法重處之道矣，近聞今番點馬官還回之後，隨行司僕書吏·理馬·養馬等處，賂給錢物，各牧場牧子馱載絡續，入到京中，蓋在點馬之時，書吏等牧子處需索錢物，先受手記，故其時未及備納之數，有此追後載來也，畿內牧場內，牧子等生理至殘，因監牧官之徵斂多端，本不能聊生，今因此數多錢物之督迫收斂，各自典賣家產牛馬以至鷄犬，怨號之聲，遍於村里云，自本司分付刑曹，司僕隨行書吏李枝華養馬·理馬等，爲先嚴囚，南陽大阜·水原洪原兩牧場牧子數名，載錢來京者，一併捉囚推問，則其所納供，以爲大阜牧子等賂錢手記，爲五百餘兩，洪原牧子等賂錢手記，爲四百五十餘兩，李枝華等不敢抵諱，竝爲遲晚，其中若干數，以遺馬皮價，當納於本寺，且其錢物有未及載到，而未及授受者云，平問之下，其所納招，安保其以實數，且京畿他牧場，雖未及查覈，而其濫索賂物之弊，據此可知矣，大僕所屬等，常食厚料，生業自足，而其所濫縱，至於如此，究其情狀，殊極痛駭，近日自上深軫民隱，以宮差之作弊外方者，及京外人情之弊，一切痛禁，隨輕重論罪事，屢有嚴教矣，此既現發，所當重處，而自前點馬之行，各牧場牧子等收斂錢物，賂給司僕吏輩，流來積久之弊，非今日創有之事，姑爲斟酌書吏·理馬·養馬等，令該曹各別嚴刑二次後，絕島定配，以爲懲戡之地，所給錢物，使之推還於本牧場牧子等處，一一出給，日後點馬之時，復踵此習，則別用重律，論斷爲當，此等隨行下輩討賂之事，例在於官員耳目之外，而當該點馬，難免不能糾檢之失，罷職何如，答曰，依啓，索賂

之錢，多至千兩，而誘以非今創有之事，律止烏配，寧有是理，不可不 別樣處斷，更爲議啓。

<비변사등록 61책, 숙종 37년 1711년 12월 01일(음) >

### 정치/사법

#### 작년 환자와 군량곡을 받지 못해 居末과 之次가 된 守令의 처벌을 논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각도의 작년 환자[還上]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못한 장계가 지금에야 계하(啓下)되었습니다. 환자를 받아들이지 못한 거말(居末)의 목천현감(木川縣監)성한(成儻), 담양부사(潭陽府使) 심중량(沈仲良), 양산군수(梁山郡守) 신세웅(申世雄), **남양부사(南陽府使)** 권엽(權爓)과, 군량곡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말의 보령현감(保寧縣監) 정중호(鄭重虎)는 모두 사목(事目)에 의거해서 감영에 잡아다 곤장을 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미 교체되어 돌아간 자는 금부로 하여금 거행케 하되 담양부사 심중량은 일찍이 2품의 직위를 거쳤으므로 사목대로 파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를 받아들이지 못한 그 지차(之次:다음)의 덕산현감(德山縣監) 이덕소(李德邵), 임실현감(任實縣監) 이만성(李萬成), 김해부사(金海府使) 유하(柳澗), 광주부윤(廣州府尹) 이택(李澤)과, 군량곡을 받아들이지 못한 지차의 결성현감(結成縣監) 유봉명(柳鳳鳴)은 모두 추고하여 경계시켜야 할 것입니다.

평안도의 거말 고을인 강계(江界)와 거말 진(鎭)인 벌등포(伐登浦)는 해당 부사와 만호, 지차는 고을 이름을 드러내어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함경도의 거말인 경원(慶源)의 해당 부사와 지차인 온성(穩城)의 해당 부사도 드러내어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본도로 하여금 거말을 초출(抄出)하여 곤장을 치고 지차는 추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양부사** 권엽은 일찍이 2품의 직위를 거쳤으니 사목대로 파직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본도 감사 최석항(崔錫恒)의 보고서 내에 '**남양**은 피해 우심한 중에 포함되었고 받아들이지[收捧] 못한 것도 과다하지 않습니다. 이를 거말로 벌을 논하는 데는 아마 참작하여 처분하는 도리가 있어야 할 듯하니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케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피해 고을 수령으로서 받아들이지 못한 사소한 수량때문에 파직을 논하기에 이른다는 것은 자못 폐단이 있는 일입니다. 권엽은 우선 중한 율에 따라 추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辭，各道上年還上捧未捧狀啓，今始 啓下矣，還上未捧居末，木川縣監成儻·潭陽府使沈仲良·梁山郡守申世雄·**南陽府使**權爓，軍餉未 捧居末，保寧縣監鄭重虎，竝依事目，拿致監營決杖，已遞歸者，令禁府舉行，而潭陽府使沈仲良，曾經二品職，依事目罷職，還上未捧之次，德山縣監李德邵·任實縣監李萬成·金海府使柳澗·廣州府尹李澤，軍餉未捧之次，結城縣監柳鳳鳴，竝推考 警責，平安道居末邑之江界，鎭之伐登浦，當該府使與萬戶，及之次邑名，不爲指名現出，咸鏡道居末慶源，當該府使，之次穩城，當該府使，亦不指名 現出，令本道抄出居末決杖，之次推考，**南陽府使** 權爓，曾經二品職，亦當依事目罷職，而本道監司崔錫恒啓本內，以爲**南陽**則入於被災尤甚之中，其所未捧，亦不過多，居末論罰一款，恐或有參量處分之道，令廟堂，稟處矣，災邑守令之以些少未捧，至於論罷，殊涉有弊，權爓，今姑從重推考，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69책, 숙종 42년 1716년 11월 17일(음) >

### 정치/사법

#### 左議政 徐命均등이 各邑에서 價錢을 盜食하고 麤布를 매입하여 상납하는 문제를 아뢰다

○ 또 아뢰기를, “순목필(純木疋)을 내게 한 후 각 읍에서는 간혹 돈을 올려보내기도 하므

로 색리(色吏)들은 병조의 서리(書吏)와 합동하여 그 돈을 도식(盜食)하고 그 대가로 추포(麤布)를 매입하여 상납한다는 말이 성행하고 있으므로 그 사실을 물어보니 **남양(南陽)**, 과천(果川), 이천(利川), 양주(楊州), 곡산(谷山), 해미(海美), 양천(陽川), 고성(固城) 등 8개 읍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자, 임금은 이르기를, “옛날에 세 받쭈 되는 나무를 세워놓고 그 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길 사람을 모집하였으니, 이것은 모두 법령을 반드시 시행하려고 한 것입니다. 신법(新法)을 시행할 때 어찌 이와 같이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구별을 하지 말고 당해 수령들을 모두 체포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할 것이다.”

하므로, 병조판서 조상경은 아뢰기를, “수령들이 일부러 법을 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은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려고 한 것이지만 자신도 모르게 법을 범한 것입니다.” 하자, 임금은 이르기를, “조정에서는 법망을 시행하는 것이 가할 것이다. 수령들이 이와 같이 법을 범해도 도신이 그들에게 경고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당해 도신은 엄중히 추고하는 것이 가할 것이다.” 하였다.

又所啓，純木令出後，各邑或以錢上送，而色吏 符同兵曹書吏，盜食價錢，買取麤布上納云云之說，盛行，故問之則乃**南陽·果川·利川·楊州·谷山·海美·陽川**，固城等八邑云矣，上曰，古者立三丈之木，而募 民徙之者，蓋欲法令之必行也，新法之初，豈可如此，此不可區別，當該守令，竝拿處可也，兵曹判書趙尙 綱曰，守令非故欲違令也，其意則出於便民，而自不 覺其爲犯法之歸矣，上曰，朝廷則舉綱可也，守(令脫)之 犯法如此，而道臣不爲申飭，當該道臣從重推考，可也。

<비변사등록 97책, 영조 11년 1735년 03월07일(음)>

## 정치/사법

### 軍布를 換納한 **南陽府使 魚必遠**을 罷職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지난 겨울 사정을 참작하여 돈과 포[木]를 각각 반으로 나누어 군포를 징수함을 변통할 때 외방에서 혹은 돈으로 반을 납부하여 중간에 포로 바꾼 보고서[陳省]는 두 건을 만들어 보낸 것은 금고(禁錮)로 논하는 일로 아뢰어 의논하여 결정하여 조정의 명령을 널리 공포하였습니다. **남양부사** 어필원(魚必遠)은 지난 번 군포를 환납한 일로 병조에서 초기(草記)를 올려 나포해 신문하였는데 의금부에서 관례에 따라 사면을 아뢰어, 이에 죄를 용서하라는 명(命)이 있었습니다. 이미 유지(宥旨:赦罪하라는 思命)에 연결되니, 이 일을 방면(放免)한다면 비록 정식(定式)대로 직접 죄인을 처분하지 못할지라도 외방에 이 폐단은 갈수록 심해져 각별히 엄하게 방지할 수 없으니 입법 초에 온전히 요행으로 면하면 후일을 위해 징계하고 면려함이 없으니 **남양부사** 어필원을 파직함이 어떠합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司啓辭，前冬錢木參半變通時，外方或有以錢 參捧，中間換木陳省，兩件成送者，論以禁錮事稟定行會矣，**南陽府使**魚必遠，頃以軍布換納事，因兵 曹草記拿問，而金吾因赦循例仰稟乃有分揀之 命矣，既係宥旨前事而蒙放，則雖不可依定式直 勘，而外方此弊，愈往愈甚，不可不各別嚴防，立法之 初，全然倖免，則無以懲礪日後，**南陽府使**魚必遠罷 職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99책, 영조 12년 1736년 04월23일(음)>

## 정치/사법

### 宣祖의 下敎에 따라 侍從을 거친 守令에게 杖刑을 가하는 문제를 논하다

○ 같은 날 입시할 때 좌의정 김재로가 아뢰기를, “지난 번 전광감사(全光監司) 윤득화(尹

得和)가 ‘3개읍의 수령의(杖刑)을 결행하려고 할 때 순천부사(順天府使) 이광식(李光滉)이 일찍 시종(侍從:玉堂·臺諫·檢閱·法書의 總稱)을 거쳤으므로 장계를 올려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올 봄에 남술(濫率)한 수령은 이미 선조(先朝)에서 받은 하교를 준행하여 시종에 구애받지 말고 장형을 결행하였으며 환자미에 대한 말등(末等)을 차지한 사람에게 장형을 결정할 때는 처음과 같이 시행하였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아뢰오니 성상께서 비국의 전례를 참고하여 다시 아뢰 후 법으로 정하라고 하명하였습니다. 그후 전례를 참고해보니 선조(先朝) 계미년(1703)에 평강현감(平康縣監) 유명응(兪命凝)이 시종을 지냈으나 영문(營門)에서 장형을 결행하였습니다. 그후 그는 체직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영문에서 허락하지 않고 그를 만류하여 임지에서 일을 보게 하였습니다. 그후 농사철에 종자(種子)를 부치지 못한 수령들의 죄를 정할 때 그 많은 수령들을 파직하는 것은 폐단이 있고 장형으로 결행하려고 하면 제신(諸臣)들이 염치심(廉恥心)을 고취하는 방법으로 행실을 닦자고 아뢰므로 장형을 결행하지 못하고 엄중히 추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명응도 이 일로 인하여 사직장계(辭職狀啓)를 올리고 감사도 장계로 보고하기에 이르렀으며 조정에서는 성상(聖上)의 명령으로 인하여 장형을 결정하여 부끄럽게 그 직책에 있는 것을 비난하고 도신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술년(1706)에는 비국에서 아뢰기를 ‘남술(濫率)한 수령들을 색출하여 장형을 결행하기로 임금이 재결하였으며 그 중 2품 수령들은 체통이 자별하여 일찍 대시(臺侍)를 거치는 사람과 2품 수령들도 일률로 장형을 시행하지 않고 파직을 논하는 것을 법으로 정하여 시행하라고 윤허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자년(1708)에는 또 이 일에 대하여 연중에서 논란을 벌일 때 제신들의 말이 제각기 달라 옥당(玉堂)에서는 장형을 결행한 후 비록 파직을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그대로 연임할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성상께서는 옥당에서 하는 말이 크게 잘못되었다고 하고 또 수령들 가운데 일찍 대시(臺侍)를 지낸 사람들은 전례에 의하여 장형을 결행하라고 하명하였다. 기해년(1719)에 경종(景宗)이 대리청정(代理聽政)할 때는 대소(臺疏)로 인하여 남술(濫率)한 수령을 조사하여 치죄하라고 하므로 대신들은 연석에서 아뢰어 남술수령은 장형을 결행한 후 다시 본직으로 돌아가게 하고 일찍 시종을 거친 수령과 2품직에 있는 사람들은 파출(罷黜)하라고 하므로 최근 **남양부사(南陽府使)** 임형(任炯)도 장계를 올려 파직하고 이후로는 이 예에 의하여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자년(1708)에는 시종을 막론하고 장형을 결행하라는 하교가 있는 이후 그 동안 방식을 개정하는 일이 없었고 기해년(1719) 연중에서 아뢰 될 때도 이와 같이 하였습니다. 이것은 불찰(不察)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후에는 이것이 한 예가 되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의론이 매우 많으며 선배들도 많은 말을 하였습니다. 장형을 결행하는 것은 염치심이 있도록 도운 것이 아닙니다. 전후에 걸쳐 자주 명령을 바꾸었던 것도 그 의론이 한결같지 않는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무자년(1708)에 예조판서였던 고 상신(故相臣) 조상우(趙相愚)는 왕부(王府:義禁府)로 송치하여 장형을 결행한 후 다시 본직으로 보내자는 말을 하였고, 신의 의견도 이와 같아 조상우의 견해와 남모르게 맞았습니다. 대개 장형을 결행하는 것은 선조(先朝)에서 최후에 하교를 받은 것을 준행한 것이므로 굳게 정하여 고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의금부[王府]에서 장형을 결행하는 것은 조금 특별한 것을 보여준 것이므로 그것은 무방한 일입니다. 이와 같이 처리한 후에 이후부터 논의가 정착되어 다시 고치는 폐단이 없었으니 제신들에게 물어 처리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라고 하자, 임금은 이르기를, “우상의 의견은 어떠한가?”

라고 하므로, 우의정 송인명은 아뢰기를, “신의 의견으로는 무자년(1708)에 하교한 것이 명백하므로 지금은 오직 이 하교를 준행할 뿐이며 반드시 변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

다.” 라고 하자, 임금은 이르기를, “제신들도 제각기 의견을 말씀해 보라.”

라고 하므로, 호조판서 윤유(尹游)는 아뢰기를

“신의 의견으로는 좌상(左相)의 의견과 같습니다. 전(傳)에 이르기를 ‘저자에서 때를 때려 경계한다’ 고 하였으니, 영문(營門)에서 장형을 당한 것은 참으로 사대부의 수치입니다. 조정에서 시종(侍從)을 예우하는 것이 자별하니 이것이 어찌 구분하는 도리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의금부[王府]로 송치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였고, 풍원군(豊原君) 조현명(趙顯命)은 아뢰기를, “신의 의견도 그들을 의금부로 송치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으며, 이조판서 송진명(宋眞明)은 아뢰기를, “신의 의견도 좌의정(左相)의 말과 같습니다.” 라고 하였고, 형조판서 이유(李瑜)는 아뢰기를, “2품 무신(武臣)과 방어사(防禦使)는 이미 구별하였다면 시종도 구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으며, 형조참판 김시형(金始炯)은 아뢰기를, “선조(先朝)에서 간혹 파직시킬 때 이런 점에서 시종들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을 잊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엄치심을 기루는 것은 장형을 결행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만일 장형을 결행하는 것을 일정한 방식으로 정한다면 영문(營門)에서도 그 하교와 유시를 받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일의 대체가 중대한 일이니 어찌 의금부와 차이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므로, 임금은 이르기를, “선조에서 이미 처분을 하였으므로 다만 한결같이 이 하교를 받들어야 할 것이다. 조금 전 물어볼 때 의견이 있었다. 환상미 받치지 못한 것을 남술과 비교한다면 이것이 어찌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장형을 결행하는 법은 저 사람에게는 시행하고 이 사람에게는 시행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마음속으로 항시 의심을 갖고 있었으나 지금은 크게 깨닫고 있다. 최근에는 모든 일에 있어서 옛날의 법을 따르지 않아 기강이 더욱 무너지고 있으므로 2품 이상은 비록 대신이라도 즉 대부(大夫)와 같다. 형벌이 대부에게 가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구별이 있어야 할 것이며 시종은 시종으로 있을 때 시종으로 예우하고 수령으로 있을 때 수령으로 대접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도신(道臣)도 중국의 변왕(藩王)과 같으므로 도신의 권한을 중하게 여긴 후에 국가의 체면이 자연히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도신과 수령이 만일 기율을 어지럽히면 비록 군률(軍律)이라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니 어찌 평일에 장형을 결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근래에는 삼사(三司)의 신하들이 이런 점을 말한 사람이 많다. 이것은 안면(顔面)을 빙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명신록(名臣錄)에서 말한 ‘만일 이 법이 행해지면 장차 나에게 미친다’ 는 뜻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 오늘 제신들은 모두 안면을 빙자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풍원군(豊原君)도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의금부[王府]의 말을 위하고 있으니 이것은 풍원군에게 바란 것이 아니다. 그리고 호조판서가 말한 ‘수치스럽다’ 는 것은 더욱 아니다. 임금의 명령으로 죄를 부여한 것이니 어찌 욕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호조판서가 말한 ‘추고하여 장형을 결행하자’ 는 말은 한결같이 선조(先朝)의 하교대로 법으로 정하는 것이 가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同日入侍時，左議政金所啓，頃日全光監 司尹得和，以三邑守令決杖中，順天府使李光湜，曾經侍從，有所狀稟，春間濫率守令，既遵先朝受教，使之勿拘侍從決杖，而還上居末決杖，則便同創始，何以爲之事，稟達，自上有考出備局前例，更稟定式之命矣，前例考出，則先朝癸未年，平康縣監 俞命凝以曾經侍從，決杖營門後，欲爲遞歸，而營門不許，則仍留察任，其後未付種守令定罪時，許多守令罷職有弊，欲爲決杖，則諸臣以厲廉恥之道陳達，不施決杖，從重推考，俞命凝，因此又爲辭狀，而監司至有狀聞之舉，朝家以因君命決杖，而恥居其職爲非，飭

責道臣矣，至丙戌年，備局啓辭，濫率 守令查出決杖事定奪，而其中二品守令，事體自別，曾經臺侍及守令二品之人，亦不可一體施杖，論以 罷職，定式施行事允下矣，至戊子年，又以此事，論 難於筵中，諸臣所達各異，而玉堂則以決杖之後，雖不罷職，必無仍在之理爲達，其時上教，大以玉 堂之言爲非，仍有守令中曾經臺侍者，依前決杖之 命矣，至己亥年，景廟代理時，因臺疏，又有濫率守 令查治之舉，大臣筵奏，以爲濫率守令決杖還任，曾經侍從及二品職者罷黜，故近者南陽府使任澗，亦狀罷，此後將依此爲之云云，戊子年，勿拘侍從，決 杖事下教之後，其間元無改定式之事，而已亥 筵稟乃如此，此則似出於不察，而厥後仍以爲例矣，此事議論甚多，而先輩亦多言，決杖非養廉之道，前 後頻數改令，亦由於議論之不齊，而戊子年，禮曹判 書故相臣趙相愚，以拿致王府，決杖還任爲言，臣 意本亦如此，與趙相愚之見暗合矣，蓋決杖則遵 先祖最後受教，牢定勿改，而特決杖於王府，以示 稍別無妨，如是處之然後，此後議論可定，而無更爲 變改之弊，下詢而處之何如，上曰，右相之意何 如，右議政宋曰，臣意則戊子下教，既已明白，在 今之道，惟當奉此遵行而已，不必變通矣，上曰，諸 臣亦達之，戶曹判書尹游曰，臣意亦如左相之意矣，傳曰，若撻于市營門決杖，實爲士夫之羞辱，朝家 之待遇侍從自別，此豈無區別之道乎，拿致王府處 之似宜矣，豐原君趙顯命曰，臣之淺見，亦以拿致 王府爲穩當矣，吏曹判書朱眞明曰，臣之淺見亦如 左相所達矣，刑曹判書李瑜曰，武臣二品及防禦使 既爲區別，則侍從亦爲區別矣，刑曹參判金始炯曰，先朝間有罷職之時，此可見禮貌侍從之意，今以養 廉恥之義，不爲決杖則已，若以決杖定式，則營門亦 奉教諭書，事體之重，何問王府乎，上曰，先朝既有處分，則只當一依此奉行，而俄者詢問其有 意矣，還上未捧比濫率，則豈不尤重，而決杖之法，獨 施之於彼，而不施之於此云者，心常疑之矣，今始廓 然悟矣，近來凡事，不遵舊典，紀綱愈壞，二品以上則 雖武臣，卽大夫也，刑不上大夫，則此可以區別，而侍 從則爲侍從之時，可待以侍從，而爲守令之時，則只 可待以守令，且道臣，猶中國之藩王，道臣權重然後，國體亦自尊矣，道臣之於守令，若當亂犯律，則雖軍 律亦可用，豈不能決杖於平時乎，近來三司之臣，多 以此爲言者，不但顧藉顏面如此，名臣錄所謂，此法 若行，必將及我之意，予以爲非矣，今日諸臣，皆不能 無顧藉，而豐原亦不免隨衆，爲王府之言，非所望 於豐原也，戶判羞辱之說尤非矣，以君命罪之，豈 可謂之辱乎，戶判推考決杖事，一依先朝下教，定 式可也。

<비변사등록 100책, 영조 12년 1736년 07월17일(음)>

## 정치/사법

京畿 良丁御史 金尙魯가 직임을 기피한 南陽 幼學 洪壽涵을 定配를 논의하다

이번 2월 5일 대신과 비국 당상이 청대(請對)하여 경기 양정 어사 김상로(金尙魯)를 함께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김상로가 아뢰기를, “이번 추천된 고을의 군정(軍丁) 도고(逃故:도망과 사망)를 사정(查正)할 때에 과거 삼남(三南)의 양전(量田) 때에 도유사(都有司)를 선발한 전례에 따라서 그 고을 유생(儒生) 중에서 약간 위풍(威風)이 있는 자를 별존위(別尊位)로 차정(差定)하여 방면을 나누어 조사하게 하였는데 그 중에 남양(南陽) 유학(幼學) 홍수함(洪壽涵)은 차첩(差帖:하급 관리의 임명 사령서)을 받고서 그 직임을 기피하여 서둘러 상경하여 전 감찰(監察)인 동생 홍일함(洪一涵)의 집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즉시 내려오도록 여러 차례 독촉하고 또 일함에게도 도리와 체통을 들어 효유하고 책망하였으나 수함은 서울 사대부(士大夫)의 세도를 믿고 먼 지방으로 전향(轉向)했다고 둘러대고 두 달이 넘도록 버티면서 끝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는 우선 숨어 있으면서 신의 복명(復命) 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니 몹시 한심스럽습니다. 신은 삼남의 도유사는 대부분 조신(朝臣)들이 차정(差定)되었다는 말은 들었으나 수함처럼 도피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은 들

지 못했습니다. 신이 피열(疲劣)한 탓으로 호령이 한 존위에게도 행해지지 못한 것이니 이는 곧 신의 죄이오나 이 한 가지 일만으로도 조정의 기강(紀綱)이 문란함을 살필 수 없겠습니까. 이것을 그냥 덮어두면 앞으로 국법의 준엄함을 보이고 후일의 폐단을 막을 수 없겠기에 신이 이 일을 방금 순영(巡營)에 이문(移文) 하였으나 근래에는 반드시 계하 공사(啓下公事: 임금의 재가를 받은 공사)라야 비로소 거행합니다. 홍수함을 본도로 하여금 정배(定配: 곳을 정하여 죄인을 유배하는 것)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아뢰는 대로 정배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今二月初五日大臣·備局堂上請對, 京畿良丁 御史金尙魯同爲引見入侍時, 良丁御史金尙魯所啓, 今番往邑軍丁逃故查正之時, 依昔年三 南量田時都有司之例, 擇其邑儒生中稍有風力者, 差定別尊位, 使之分面掌查事, 而其中南陽幼學洪 壽涵, 受見差帖之後, 厭避其任, 汲汲上京, 隱匿於其 弟前監察一涵之家, 故屢加催督, 使卽下來, 又對一 涵, 諭之以道理, 責之以事體, 而壽涵, 以有勢於京中 士夫之故, 稱以轉向遠外, 相持兩月, 終不來現, 此不 遇姑爲隱避, 以待臣復命之期也, 事之寒心, 莫此 爲甚, 臣聞三南都有司, 卽朝士多見差, 而未聞有一 人之逃避如壽涵之爲, 臣固疲劣, 號令不能行於一 尊位, 此卽臣罪, 而於此一事, 亦可以觀紀綱矣, 此而不治, 將無以示國法而防後弊, 故臣以此事, 纔已 移文於巡營, 而近來事, 必有啓下公事然後, 始卽 舉行矣, 洪壽涵, 令本道施以定配之律何如, 上曰, 依所達定配可也.

<비변사등록 101책, 영조 13년 1737년 02월06일(음)>

#### 정치/사법

京畿 良丁御史 金尙魯가 女人을 군역에 충원시킨 前前南陽府使 魚必遠의 拿問을 청하다

○ 같은 날 입시하였을 때에 임금이 이르기를, “일찍이 여인(女人)을 군역(軍役)에 충원시킨 자가 있어서 엄중히 처단한 적이 있다. 그런데 지금 서계(書啓: 왕에게 올리는 복명서)를 보니 또 이런 일이 생겼으니 참으로 몹시 해괴하다. 당해 수령은 여자인 줄 알면서 강제로 충원시킨 것인가? 아니면 몰라서 뒤섞어 충원시킨 것인가?”

하니, 어사 김상로가 아뢰기를, “수령으로서 어찌 알고서 강제로 충원시킬 이치가 있겠습니까? 애당초 용모 파기(容貌疤記)는 없고 이보(里報: 마을의 보고)에만 의존하여 곧바로 충원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그 때의 수령은 누구였는가?” 하니, 김상로가 아뢰기를

“남양(南陽) 전전 부사(府使) 어필원(魚必遠)이 있을 때의 일입니다. 여인을 군역에 충원시킨 것은 몹시 놀랍고 해괴한 일입니다. 수령이 알고 알지 못함을 논할 것 없이 이미 발각되어 서계하였으니 엄중히 처단하여 후일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아뢰는 것이 참으로 옳다. 군정(軍政)은 막중한 일인데 여인을 충원시킨 폐단이 생겼으니 몹시 해괴한 일이다. 어필원을 해부로 하여금 나문(拿問)하여 엄중히 처단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同日入侍時, 上曰, 曾有以女人充軍役者, 故 嚴處之矣, 今觀書啓, 亦有此事, 誠極怪駭, 當該守令, 知之而勒定耶, 不知而混充耶, 御史金尙魯曰, 爲守 令者, 豈有知之而勒充女人之理乎, 初不捧疤, 而只 憑里報, 直爲充填, 故致有此事矣, 上曰, 其時守令 誰也, 尙魯曰, 南陽前前府史魚必遠時事, 而女人充 定, 事極驚駭, 勿論守令之知不知, 旣已現發登諸書 啓之後, 不可不嚴處懲後矣, 上曰, 所達誠然矣, 軍政 事重, 而致有女人充役之弊, 事甚該然, 魚必遠, 今該府拿問嚴處可也.

<비변사등록 101책, 영조 13년 1737년 02월06일(음)>

## 정치/사법

右議政 宋寅明이 災結을 私用한 南陽府使 韓配奎의 查處를 건의하다

○ 또 아뢰기를, “일전에 헌신(憲臣:사헌부 관원)의 상소를 보니 남양부사(南陽府使) 한배규(韓配奎)의 탐학(貪虐)스런 실상을 극론(極論)하였습니다. 도신과 어사가 연해 한배규의 선치(善治)를 포계(褒啓)하였는데 헌신의 말은 이러하니 헌신의 말이 옳다면 포계가 실실(失實)한 것이 되고 포계가 옳다면 헌신의 말이 실실한 것이 되어 둘 중의 하나는 반드시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 헌신의 상소에서는 재결(災結)을 사용(私用)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더욱 관계된 바가 중하므로 그만 둘 수 없습니다. 남양부사 한배규를 나문(拿問)사처(查處)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又所啓, 日前見憲臣疏, 則盛論南陽府使韓配奎貪虐之狀, 道臣·御史, 連以配奎善治褒啓, 而臺言如此, 臺言是則褒啓必失實, 褒啓是則臺言必失實, 二者必居一於此矣, 且臺疏中以私用災結爲言, 此則尤有關係, 不可置之, 南陽府使韓配奎宜拿問查處矣, 上曰, 依爲之.

<비변사등록 105책, 영조 15년 1739년 07월06일(음)>

## 정치/사법

唐津 등의 奴主 辨別의 일과 관련하여 當該 掌隸院 堂上을 罷職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의 계사에, “근래 간사한 무리가 비리(非理)로 소송하기를 좋아해서 혹 중복으로 팔거나 혹 양인(良人)을 억압하여 천인(賤人)으로 삼아 요행을 바라는 자가 매우 많고 법사(法司)의 관원은 법을 무시하고 결정을 내려 궁한 백성이 지탱하기 어려운 폐단에 이르게 하니 드러나는 대로 엄중히 응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감사 이기진(李箕鎭)의 보고를 보면 남양부사(南陽府使) 유정(柳挺)의 보고를 일일이 들어 말하기를, ‘당진(唐津)에 거주하는 서항일(徐恒一)이 남양에 거주하는 마당(麻堂)과 노주변별(奴主辨別) 문제로 형조에 제소하여 서항일이 패소한 뒤에 또다시 장예원(掌隸院)에 제소하여 장예원에서 마당을 찾아 붙들어 미처 변별하기 전에 30일 동안 송정(訟庭)에 나아가지 않으면 으레 입안(立案:관의 인증서)이 된다 해서 갑자기 서항일에게 결정해 주었고, 남양에 관문(關文)을 보내 마당을 붙들어 주게 하라’ 고 하였으며 이어서 서항일이 중복으로 팔아 양인에게 억압하여 천인으로 만든 상황을 말하였습니다. 소송 처리의 잘잘못이 어떠한지는 알 수 없으나 크고 작은 소송에 있어 지방에 있는 송척(訟隻:소송 상대자)은 황해도에서 변별하게 하고, 다른 고을의 백성은 찾아 붙들어 갈 수 없음은 곧 조가의 금령입니다. 그런데 형조에서 이미 결정한 소송을 장예원에서 가져다 지방의 송척을 찾아 붙들어 왔고 또 다시 쌍방의 변론도 기다리지 않고 30일 송정에 나가지 않았다는 법조문만을 빙자해서 처음부터 피차의 문서는 상고치 아니하고 소송하기를 좋아한다는 한 쪽의 말만 가지고 갑자기 결정해 주어 뜻한 바대로 이루어지게 하였으니 비리로 양인을 억압한 간사한 행위는 매우 놀랍습니다. 장예원의 당해 당상은 파직하고, 서항일은 형조로 하여금 전에 결정한 입안을 상고하게 하여 과연 비리가 있다면 율에 의하여 처벌 응징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司啓辭, 近來奸細輩之非理好訟, 或重複放賣, 或壓良爲賤, 希望僥倖者極其紛然, 而法司官員, 法外聽斷, 以致窮民難支之弊, 不可不隨現嚴懲, 卽見京畿監司李箕鎭所報, 則枚舉南陽府使柳挺報狀, 以爲唐津居徐恒一與南陽居麻堂, 奴主辨別事, 相訟刑曹, 恒一見落後, 又復移呈掌隸院, 自隸院推捉麻堂, 未及對卞而以三十日不就訟, 例成立案, 遽然決給於恒一, 行關南陽,

使之捉給麻堂云，而仍及恒 一重複放賣，壓良爲賤之狀矣，訟理曲直，雖未知如何，而大小詞訟隻在外方者，使之就卞於該道，外邑 民人毋得推捉事，既是朝禁，則隸院之攬取秋曹 已決之訟，推捉外方訟隻，而又復不待兩造對卞，憑 藉三十日不就訟之法文，初不相考彼此文書，而以好訟一邊之言，遽然決給，致令得售，其非理壓良之 奸計者，極爲可駭，當該隸院堂上罷職，恒一則令秋 曹，考見前決立案，果爲非理，則依律勘罪徵勸事，分 付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113책, 영조 21년 1745년 01월11일(음)>

### 정치/사법

#### 軍餉未를 제대로 거두지 못한 守令과 邊將을 처벌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의 기사에, “각도 군향(軍餉)을 수봉치 못한 수령과 변장(邊將)에 있어 거말(居末: 가장 말단(末端)을 차지함)은 나문하고 거이(居二)는 결장(決杖)하고 거삼(居三)은 추고하며, 원환상(元還上)을 수봉치 못한 거말은 결장하고 거이는 추고한다고 전에 정탈하였습니 다. 평안도 장계를 상고해 보면 군향의 거말은 장차둔 차지(長者屯次知) 청성첨사(淸城僉使) 박도원(朴道元)이요, 거이는 용천부사(龍川府使) 유춘복(柳春馥)이며 거삼은 선사포첨사(宣沙浦僉事) 박도면(朴道勉)입니다. 원환상 거말은 용천부사 유춘복이요, 거이는 양하만 호(楊下萬戶) 박지택(朴枝澤)입니다. 경기는 새환상과 군향은 아울러 수에 맞게 수봉하였으나 계해년의 환상으로서 수봉치 못한 경우 남양부사(南陽府使) 유정(柳縉)이 거말이요, 수원부사(水原府使) 홍창한(洪昌漢)이 거이입니다. 아울러 사목에 의하여 감정(勘定)하여 처리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司啓辭，各道軍餉未捧守令邊將，居末拿問，居 二決杖，居三推考，元還上未捧居末決杖，居二推考 事，自前定奪矣，取考平安道狀啓，則軍餉居末，長 者屯次知淸江僉使朴道元，居二，龍川府使柳春馥，居三宣沙浦僉使朴道勉，元還上居末，龍川府使柳 春馥，居二楊下萬戶朴枝澤，京畿則新還上軍餉竝 準捧，而癸亥條還上未捧，南陽府使柳縉，居末，水原府使洪昌漢，居二 矣，竝依事日勘處之意，該府一體 分付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113책, 영조 21년 1745년 03월14일(음)>

### 정치/사법

#### 左議政 宋寅明이 南陽 등을 바르게 摘奸하지 못한 宣傳官의 拿問을 청하다

이번 정월 2일 여러 승지(承旨)와 옥당(玉堂)·시임 대신·원임 대신이 함께 입시하였을 때에 좌의정 송인명(宋寅明)이 아뢰기를, “지난번 남양(南陽)·수원 지방을 적간(摘奸)할 선전관(宣傳官)이 이미 성상의 하교를 직접 받았으므로 마음을 다해 봉행해야 하겠으나 두 읍의 집탈(執頭: 잘못을 드러내어 탈을 잡음)이 실상(實狀)이라고 보기가 어려워 공론이 대부분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총융사(摠戎使)가 습조(習操)할 때에 들은 것을 말하더라도 비록 대단한 집탈에는 이르지 않지만 선전관이 집탈한 것과 비교하면 역시 차이가 있다 합니다. 만일 그 집탈이 실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친히 적간하라고 보낸 일도 이러한데 다른 것을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체통에 관계되는 일이니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잡아다 심문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 당시에 하교를 하였다. 네가 만일 문관 수령이라 하여 돌보아 줌이 있으면 곤장을 치겠다고 분부하였는데, 지금 이러하니 몹시 해괴한 일이다. 그리 하라.” 하였다.

今三月初二日，諸承旨·玉堂·時原任大臣，同爲入 侍時，左議政宋所啓，頃日南陽·水原摘奸 宣傳 官，既已親承聖教，所當盡心爲之，而兩邑執頭，未 見其必爲實狀，公議固多駭之，而摠

戎使習操時所 聞言之，雖不至大段執頃，而比之宣傳官執頃，亦似 有間云，萬一非其實狀，則親遣摘奸之事，尙且如此，他何可言，體統所關，不可置之，拿問處之何如，上 曰，其時亦有下教者，汝若以文官守令，有所顧護，則 當爲決棍之意分付，而今乃如此，事極駭然，依爲之。

<비변사등록 115책, 영조 22년 1746년 03월04일(음)>

## 정치/사법

### 畿甸에서 習操를 행하지 않은 바를 摘奸하여 엄중히 推考하라고 전교하다

○ 이번 3월 28일 입직 승지와 유신(儒臣)이 입시하였을 때에 전교하기를, “용정(戎政: 병사 사무)의 허술함이 요즘보다 심한 적이 없다. 기전(畿甸)의 습조를 폐하고 행하지 않은 지가 벌써 7년이나 되었다. 습조를 행하라고 특별히 명한 것은 이런 뜻에서였으나, 도신의 보장(報狀)을 들으니 남양(南陽)·수원의 민폐를 말하며 조련의 정지를 청한 것은 뜻이 없다. 그러므로 특별히 선전관(宣傳官)을 명하여 적간(摘奸)하게 하였는데, 그 서계(書啓)를 보면 크게 탈(頗) 잡을 일이 없어 마치 정자산(鄭子産)이 교인(校人: 못을 관리하는 작은 관리)에게 속임을 당한 것처럼 도리어 수비(修備)를 칭찬하고 지나치게 의심한 것을 뉘우쳤다. 그런데 지금 총융사의 계본(啓本)을 보면 선전관의 소행이 모두 해괴한 듯하다. 지난번 대신의 진달로 인해 비록 잡아다 심문하였으나 지척인 연석(筵席)에서 직접 하교를 받들고 감히 임금을 기만(欺瞞)하는 장계를 올린 것이 지금 계본에서 모두 드러났으니 저들에게 단안(斷案: 옳고 그름을 판단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되어 다시 의논하여 처리할 여지가 없다. 비록 군율(軍律)로 처단한다 하더라도 누가 옳지 않다고 말하겠는가? 그러나 전쟁에 임한 경우와는 차이가 있으니 참작하는 도리가 있어야 하겠다. 모두 도형(徒刑) 3년이면 곳으로 귀양 보내는 율을 시행하라. 허근(許根)의 소행에 총융사가 장청한 것은 체통을 얻었다고 할 수 있으니 비국에서 즉시 품처하게 하라. 힐용(詰戎)을 계획하는 도리에 있어 정일여백(懲一勵百)하는 도리가 없을 수 없다. 당시 수령을 먼저 삭직(削職)한 뒤에 잡아다 심문하라. 전 남양부사 한사득(韓師得)과 수원부사 이제원(李濟源)은 당초 거짓 보고하여 조련을 정지시키려고 한 것은 해괴한 일이다. 이제 와서 탈 잡힘이 많고 죄상이 드러난 후에 총수(總帥)에게 보고하였고 혹 방금 부임하였다고 하여 분간함은 옳지 않으니 아울러 과직하고, 그 가운데 군기를 잘 수선(修繕)한 수령들은 해조에서 예를 상고하여 품처하게 하라. 수원 전임 부사 홍창한(洪昌漢)·정홍제(鄭弘濟)·이제원과 한사득은 이미 삭탈관직 되었으나 군기의 흠축(欠縮)이 이처럼 많음에도 도신의 잦은 체직으로 타일러 격려함이 없었으니 감률(勘律: 법률에 의해 처분)하라고 특교(特教)를 내린 본뜻이 아니다. 비국에서 등대(登對)하여 품처하게 하라. 남양의 환도(環刀)가 형편이 없음은 이미 순영(巡營)에 보고된 것이었으나 대수롭지 않게 보아 장문하거나 죄를 청한 일이 없으니 업무를 소홀히 한 일이다. 그 때의 도신을 종종추고하라.” 하였다.

今三月二十八日，入直承旨·儒臣入侍時，傳 曰，戎政之疎虞，莫甚於近日，畿甸習操，寢閣不行，已 至七年之多，特命行之者，意蓋此也，而聞道臣之報 狀，南陽·水原之稱民弊，而請其停操者，不無意思，故 特命宣傳官摘奸矣，覽其書啓，無大段執頃之事，若子産之見欺校人，反嘉修備，追悔過疑，今覽摠戎 使啓本，宣傳官所爲，俱涉駭也，頃因大臣陳達，雖 已拿問，咫尺筵席，親承下教，敢爲欺君之狀，於 今啓本綻露無餘，於渠等可謂斷案，更無議處之 端，雖施軍律，夫誰曰不可，而然與臨陣有間，宜有參 酌之道，竝施徒三年遠配之律，許根所爲，摠戎使狀 請，可謂得體，令備局卽爲稟處，其在勅詰戎之道，不可無懲一礪百之道，其時守令，先削職而後拿問，南陽前府使韓師得，水原府使李濟遠，當初瞞報，欲 寢其操者，已涉駭也，而到今

執頭夥然，現露之後，不可以或報摠帥，或到任屬耳，分揀竝罷其職，其中軍器繕修守令等，令該曹考例稟處，**水原**前府使洪昌漢·鄭弘濟·李濟遠·韓師得，既已削罷，則軍器之欠縮，若是夥然，而以道臣之數遞，其無飭勵，非特教之勘律之意，令備局登對時稟處，**南陽**環刀之無形，既已報巡營，而視若尋常，亦無狀聞請罪之舉，其涉不察，伊時道臣，從重推考。

<비변사등록 115책, 영조 22년 1746년 03월28일(음)>

### 정치/사법

#### 領議政 金在魯가 **南陽府** 環刀의 일로 監司와 府使를 罷職하는 문제를 아뢰다

○ 같은 날 입시하였을 때에 영의정 김재로가 아뢰기를, “신이 총융사(摠戎使) 구성임(具聖任)의 장계를 보니 **남양부(南陽府)**의 군기(軍器) 중에 환도(環刀) 문제는 몹시 한심스럽습니다. 그 때 부사(府使) 유정(柳挺)이 점고(點考)하여 발각하여 감영에 보고하였으면 따라서 총융청에도 아울러 보고하여 즉시 조사하여 개조(改造)하게 했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도신에게만 보고하여 제사(題辭)를 받아 방치하였을 뿐이고 본디 당해 군문(軍門)에는 보고도 하지 않았으니 몹시 잘못되었습니다. 도신도 낱말이 들어 장문(狀聞)했어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총융청에 보고하여 처리하게 했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범연히 빙고(憑考:여러 가지를 비추어 상고함)를 위해 도부(到付)라고 제사(題辭)하여 보냈으니 역시 매우 소홀한 것입니다. 도신은 비록 추고하라는 하교가 있습니다만 너무 가벼움을 면치 못하고, 유정 역시 버려두고 논죄(論罪)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은 그 당시 감사와 부사를 함께 파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주달(奏達)한 것이 체통을 얻었으니 그리하라.” 하였다.

同日入侍時，領議政金所啓，臣見摠戎使具聖任狀啓，**南陽府**軍器中環刀事，極可寒心矣，其時府使柳挺，既已點考發覺，狀報監營，則依當竝報摠廳，以爲登時查治改造之地，而只報道臣受題以置而已，元無報該軍門，極爲非矣，道臣亦當枚舉狀聞，不然則當令報摠廳處置，而泛以憑考次到付題送者，亦極疎忽，道臣雖有推考之教，而未免太輕，柳挺亦不可置而不論，臣謂其時監司·府使，竝罷職宜矣，上曰，所達得體，依爲之。

<비변사등록 115책, 영조 22년 1746년 03월06일(윤)>

### 정치/사법

#### 前慶州府尹 鄭弘濟의 일을 잘못 처리한 該府堂上을 贖을 받고 發配할 것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속대전(續大典)』에 ‘대법 결장(決杖:장형(杖刑)을 가함)을 해야 할 자는 비록 시종신(侍從臣)이라 하더라도 가리지 말고, 겸방어사(兼防禦使)는 곧 2품이니 다만 그 직위만 과한다’ 하였습시다. 선조(先朝)때 광주부윤(廣州府尹)이 어떤 일에 연좌되어 결장을 하게 되었는데 대신이 당조(唐朝)의 옛 일과 형벌은 대부에게까지 올라가지 아니한다는 뜻을 인용하여 고쳐서 다른 벌을 시행하도록 청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당저조(當寧朝:현왕조)에 전 풍덕부사(豐德府使) 이여적(李汝迪)과 전 영해부사(寧海府使) 한이조(韓灝朝)는 모두 2품을 지냈으므로 혹 비변사의 계사(啓辭)로 인하여 혹 의금부의 여쭙으로 인하여 모두 결장하고 파직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 경주부윤 정홍제(鄭弘濟)가 전임 **남양(南陽)**때의 일로 장도(杖徒)의 율에 처하였으나 해부 당상이 마침 맞이하는 바가 있어 여쭙지 못하였습니다. 2품 실직(實職)을 지냈고 『속대전』과 전례가 또 이와 같으니 해부에서 결장은 면제하고 속전(贖錢)을 받고 귀양을 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續大典，凡應決杖者雖侍從勿揀，兼防禦使，係是二品，只罷其職云，先朝廣州府尹坐事當杖，大臣引唐朝舊事，及刑不上大夫之義，請改施他罰而允下，當寧朝，前豐德府使李汝迪·前寧海府使韓頤朝，皆以曾經二品，或因備局啓辭，或因金吾啓稟，皆有決杖罷職之命矣，即今前慶州府尹鄭弘濟，以前任南陽時事，勘以杖徒之律，而該府堂上適有所遭，不得啓稟，既往二品實職，續典與前例又如此，令該府除杖收續（贖）發配，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116책, 영조 22년 1746년 09월29일(음)>

## 정치/사법

**京畿御史 李彝章 등이 小民을 侵虐한 南陽의 土人 洪熙逸 등을 처벌하는 문제를 아뢰다**

이번 12월 14일 유신과 어사가 입시하였을 때 어사 이이장(李彝章)이 아뢰기를, “시골의 토호(土豪)들이 백성들을 침해하는 일은 참으로 고질적인 폐단이 되어 있습니다. 남양(南陽) 토인(土人) 홍희일(洪熙逸)·홍희적(洪熙績) 등은 토호 중에서도 가장 심한 사람들입니다. 밭을 갈고 풀을 김매는 것도 이웃 마을의 사람들과 농우(農牛)를 마음대로 징발하여 사용하고 집에 이엉을 잇거나 울타리를 보수할 때도 모두 백성들의 힘을 이용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소금을 굶는 사람까지 침해하여 요구하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 관청이 비어 있을 때는 관청 문에 와 앉아서 관속들에게 재촉하여 사적으로 매질을 하여 그들이 하는 일은 극히 놀라우므로 출도(出道)한 후에 체포하려 하였으나 그 두 사람은 모두 도주하여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온 고을 사람들이 전하는 말은 한결같이 소문이 자자하여, 이런 사람은 엄하게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도신에게 분부하여 엄히 형벌하고 먼 곳으로 유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강호(強豪)들의 폐단을 언제나 마음속으로 통탄스럽게 생각하였는데 지금 아뢰는 말을 들으니, 이런 사람들을 엄하게 징계하지 않는다면 백성들이 어떻게 지탱할 수 있겠는가! 본도에게 모두 엄히 형벌하고 먼 곳으로 유배하도록 하라. 왕자(王者)가 백성을 위하는 것이 어찌 한결같았다고 하겠는가! 이 일로 미루어 보면 다른 도도 알 수 있다. 아! 나라의 백성들이 한결같이 강호들에게 맡겨져 그들이 근심하여도 엄하게 다스리지 못하니, 이것이 어찌 백성들을 도랑에 밀어 넣는 것과 다르겠는가! 기전(畿甸)과 제도(諸道)에 이것으로 분부하여 더욱 심한 강호들에게는 이 법률을 시행하고 신문(申聞)하게 하라. 한 도의 강호들을 도신이 어찌 모르겠으며, 한 읍의 강호들을 수령이 어찌 모르겠는가! 혹 형편에 구애되거나 혹은 정리에 구애되거나 혹은 비방을 면하게 하려 하여, 한 도를 맡기며 한 읍을 맡긴 뜻을 돌아보지 않고 경내(境內)에 호랑이를 기르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하전(夏鼯:임금의 거처)에서 맡긴 뜻이겠는가! 이와 같이 하고한 후에 어사가 염탐할 때 다시 심한 강호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을 엄하게 징계할 뿐 아니라 당해 도신과 수령들도 중죄로 다스릴 것을 비국에게 제도에 엄히 신칙하도록 하라.” 하였다.

今十二月十四日，儒臣·御史入侍時，御史李彝章所啓，鄉曲土豪之侵虐小民，誠爲痼弊，南陽土人洪熙逸·熙績等，即土豪之最甚者，耕田·鋤草，擅發隣里之人牛，蓋屋修籬，皆藉民力，甚至於侵虐鹽漢，徵求無厭，空官時，則來坐官門，催促官屬，私行鞭扑，其所行事，極爲駭痛，故出道後推捉，則兩人皆逃避不現，而一邑傳說，藉藉如一，如此之類，不可不嚴懲，分付道臣，嚴刑遠配，何如，上曰，豪強之弊，心常痛之，今聞所陳，此等之類，若不嚴懲，民何支堪，令本道，竝嚴刑遠配，王者爲民，豈視一，以此推之，他道可知，噫國之赤子，一任豪強，其嗷嗷而不能嚴治，此奚異於納諸溝中，畿甸及諸道，以此分付，尤甚豪強者，此律施行，使之申聞，而一道之豪強，道臣其豈不知，一邑之豪強，守令亦豈不知，而或拘於形勢，或拘於顏情，

或欲免訾謗，不顧寄一道寄百里之意，養虎境內，是豈廈氈委寄之意哉，若是下教之後，御史廉問之時，復有尤甚豪強者，則非徒嚴懲其人，當該道 臣·守令，亦爲重繩，令備局嚴飭諸道。

<비변사등록 120책, 영조 25년 1749년 12월16일(음)>

## 정치/사법

### 각 道에서 軍餉을 올리지 않은 守令 등을 규정에 따라 처벌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의 달사에, “각도 군향(軍餉)을 수봉치 못한 수령·변장으로서 거말(居末)은 나문(拿問)하고 거이(居二)는 결장하며 거삼(居三)은 추고하고 원환상(元還上)의 거말은 결장하고 거이는 추고하는 것으로 『속전(續典)』에 실려 있습니다. 교제창(交濟倉)의 곡물도 군향의 예에 의하여 시행할 것도 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각도의 봉미봉(俸米俸) 장달을 상고해 보면 경기의 목은 군향으로서 거말은 교동수사(喬桐水使) 이경철(李景喆)이요, 목은 환상의 거말은 지평현감(砥平縣監) 이명오(李明吾)요, 거이는 남양부사(南陽府使) 유세덕(柳世德)입니다. 강원도의 새 환상 거말은 회양부사(淮陽府使) 유우기(兪宇基)요, 거이는 금성현령(金城縣令) 정박(鄭樸)입니다. 경상도의 목은 환상 거말은 예안현감(禮安縣監) 박처후(朴處厚)입니다. 평안도의 군향 거말은 이산부사(理山府使) 민성수(閔聖洙)요, 거이는 정탄권관(汀灘權管) 이정억(李廷億)이며 거삼은 토성첨사(兎城僉使) 한순발(韓順發)이요, 원환상 거말은 차령첨사(車嶺僉使) 정우빈(鄭禹賓)이며 거이는 이산부사 민성수입니다. 함경도의 군향 거말은 이동만호(梨洞萬戶) 유필형(兪必亨)이요, 거이는 고원군수(高原郡守) 윤필덕(尹弼德)이며 거삼은 쌍청권관(雙靑權管) 정시기(鄭時起)입니다. 교제창 곡물의 거말은 경성판관(鏡城判官) 유동원(柳東垣)이요, 거이는 경원부사(慶源府使) 이석좌(李錫佐)이며 원환상 거말은 수성찰방(輸城察訪) 김윤장(金潤章)이요, 거이는 경원부사 이석좌라고 하였습니다. 정하여진 규칙에 의하여 등을 나누어 죄를 과해야 하겠으나 일찍이 을묘년의 대경(大慶) 때에 군향 거말은 일찍이 사령(赦令)으로 인해서 씻어준 예가 없음으로 해서 사목에 의하여 나문(拿問)하고 거이와 거삼 및 환상의 거말·거이는 사령 전 일이므로 분간하도록 계청하였습니다. 지금 역시 막 사령을 지냈습니다. 군량을 수봉치 못한 거이·거삼 및 환상을 수봉치 못한 거말·거이는 아울러 분간하고, 경기의 군량을 수봉치 못한 거말 교동 전부사 이경철은 나문하고 평안도의 군향 거말 이동만호 유필형 및 교제창 곡물 거말 경성판관 유동원은 나문해야 하겠으나 서북의 작년 연사(年事)가 참혹하리만큼 흉년이 들어 약간 수봉치 못한 일은 참작하여 용서가 있어야 하겠고 변경지역의 교체는 폐단이 있습니다. 일찍이 이러한 해에는 혹 등을 낮추어 죄를 논한 예가 있습니다. 민성수·유필형·유동원을 아울러 본도에서 영문으로 나치(拿致)해서 결장(決杖)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리하라고 답하였다.

司達辭，各道軍餉未捧守令邊將，居末拿問，居二決杖，居三推考，元還上居末決杖，居二推考事，載於續典，交濟倉穀依軍餉例施行事，亦有定式矣，取考各道捧未捧狀本，則京畿舊軍餉居末喬桐水使李景喆，舊還上居末砥平縣監李明吾，居二南陽府使柳世德，江原道新還上居末淮陽府使兪宇基，居二金城縣令鄭樸，慶尙道舊還上居末禮安縣監朴處厚，平安道軍餉居末理山府使閔聖洙，居二於汀灘權管李挺億，居三兎城僉使韓順發，元還上居末車嶺僉使鄭禹賓，居二理山府使閔聖洙，咸鏡道軍餉居末梨洞萬戶兪必亨，居二高原郡守尹弼德，居三雙靑權管鄭時起，交濟倉穀居末鏡城判官柳東垣，居二慶源府使李錫佐，元還上居末輸城察訪金潤章，居二慶源府使李錫佐云，所當依定式，分等科罪，而曾於乙卯大慶時，軍餉居末，以曾無因赦蕩滌之例，依事目拿問，居二居三及還上居末居二，係是宥旨前事，啓請分揀矣，今亦纔經赦典，

軍餉未捧 居二居三及還上未捧居末居二，竝分揀，京畿軍餉 未捧居末，喬桐前府使李景喆拿問，平安道軍餉居 末理山府使閔聖洙，咸鏡道軍餉居末梨洞萬戶兪 必亨，交濟倉穀居末鏡城判官柳東垣，所當拿問，而 西北昨年年事慘凶，若干未捧，容有參怨之道，邊地 遞易，亦有弊，曾前如此之年，或有減等論罪之例，閔 聖洙·兪必亨·柳東垣，竝令自本道，拿致營門，決杖何 如，答曰，依。

<비변사등록 123책, 영조 27년 1751년 07월13일(음)>

### 정치/사법

**右議政 申晩 등이 諸道兵使와 討捕使를 從重推考하고 도적을 잡도록 嚴飭할 것을 아뢰다**

○ 이번 윤9월 5일 약방의 입진에 대신과 비국 당상이 함께 입시하였을 때에 우의정 신만(申晩)이 아뢰기를, “제도(諸道)에 도둑이 횡행하는 일이 요즈음 같은 때가 없는데 기호(畿湖)가 더욱 심합니다. 비록 제도의 장보(狀報)로 보더라도 도둑을 맞은 것은 많으나 도둑을 잡았다는 것은 하나도 없으니 이는 병사(兵使)가 잘 검칙(檢飭)하지 못하고 토포사(討捕使)가 기포(讖捕)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도의 병사와 토포사를 아울러 우선 중중추고하고, 각별히 엄칙(嚴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리하라. 일찍이 하교(下敎)하였거니와 매독(買犢)의 정사가 먼저이고 서치(鋤治)의 정사가 그 다음이다. 예날 공성(孔聖)께서 노공(魯公)에게 말하지 않았더냐? ‘비록 상(賞)을 준다 해도 도둑질하지 않는다.’ 고 성인(聖人)의 말이 절실하다. 이로 미루어보면 바로 내가 부덕(不德)하여 수령이 우후(虞詡)의 정사를 알지 못하고, 영장(營將)이 용맹해야 할 데에는 용맹하지 않고 용맹해서는 안 되는 데에는 용맹하여 흑백(黑白)을 분간하지 못한다. 겸영장(兼營將)과 수령의 매독하는 정사와 서치하는 정사를 무릎을 포개고 관망(觀望)만 할 터이니 이런 뜻으로 일체로 엄칙(嚴飭)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今閏九月初五日藥房入診，大臣備堂同爲入 侍時，右議政申所啓，諸道竊發之患，莫如近日，而畿湖之間爲甚，雖以諸道狀報見之，被盜雖多，捕 捉絕無，此可見兵使之不善檢飭，而討捕使之不能 讖捕也，諸道兵使及討捕使，竝爲先從重推考，各別 嚴飭，何如，上曰，依爲之，曾已下敎，解劍買犢之政 宜先，鋤治之政宜次，昔孔聖豈不云魯公乎，雖賞之 不竊，聖言切實，以此推之，卽予否德，而爲守令者莫 知虞詡之政，爲營將者當猛而不猛，不當猛而猛，黑 白不分，兼營將·守令買犢之政，鋤治之道，俱抱膝觀 望，此意一體嚴飭可也。

<비변사등록 131책, 영조 32년 1756년 09월07일(음)>

### 정치/사법

**南陽 民人等の 上言은 備局에서 道臣에게 물어 講確한 후 登對하여 아뢰라고 전교하다**

○ 전교하기를, “지금 남양(南陽) 백성들의 상언을 보니 기내(畿內)의 백성은 다른 지역과 다른데 무명이 없는데도 세를 바쳐 이 소청이 있기까지 하였으니 그 정상의 민망함은 관동(關東)의 삼가(蔘價)와 다름이 없다. 이와 같이 하면 민폐(民弊)없이 본관(本官)이 대신 담당할 수 있겠느냐? 비국으로 하여금 도신(道臣)에게 물어 소상히 검토한 뒤에 등대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傳曰，今覽南陽民人等上言，畿民與他有異，而無 其木而納其稅，至有此請，其情可矜，無異於東蔘，若 此則可無民弊，而本官其能替當否，令備局，問于道 臣，消詳講確，登對以奏。

<비변사등록 135책, 영조 34년 1758년 08월06일(음)>

## 정치/사법

### 軍餉未捧 守令과 邊將의 상황을 보고하고, 상응하는 처벌을 요청하다

비변사의 달사에, “군향(軍餉)을 미봉(未捧:받지 못함)한 수령과 변장의 거말(居末)은 나문(拿問)하고 거이(居二)는 결장(決杖)하고 거삼(居三)은 추고하며, 환자[還上] 미봉의 거말은 결장하고 거이는 추고하는 것이 바로 법례(法例)입니다. 지금 각 도 군향과 환자의 봉미봉 장계(奉未捧狀啓)를 보니 경기의 신환자[新還上]는 여주목사(驪州牧使) 조계태(趙啓泰)가 거말이고 남양부사(南陽府使) 최성(崔晟)이 거이이며, 충청도의 신군향(新軍餉)은 거말의 태안 전 군수(泰安前郡守) 홍약필(洪若泌)이 작고하였으니 지금은 논할 것이 없겠으며, 서산 전 군수(瑞山前郡守) 송덕중(宋德中)이 거이이고 신창 전 현감(新昌前縣監) 이명계(李命啓)가 거삼이며, 신환자는 서산 전 군수 송덕중이 거말이고 해미 전 현감(海美前縣監) 이광국(李光國)이 거이이며, 평안도의 신환자는 식송만호(植松萬戶) 정도명(鄭道明)이 미봉이 많으니 당연히 거말로 논죄하여야 하겠습니다.

작년의 연사(年事)는 참혹한 흉년은 아니었는데 군향과 환자의 신봉조(新捧條)를 받지 못한 수량이 이토록 많으니 참으로 극히 해괴하며 일시의 작은 과실로 보아 넘길 수는 없겠습니다. 지금 만일 유지(有旨:사령(赦令)의 뜻) 이전의 일이라고 하여 너그럽게 용서한다면 실로 법령을 엄히 하고 후패를 막는 도리가 아니므로 당해 수령과 변장은 모두 법례에 준하여 감죄함으로써 군향과 환자를 중히 여기는 뜻을 보이고, 도신도 잘 검찰하고 신칙하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아울러 종종추고하며, 전라도 구환자[舊還上]에 있어서는 이미 특교(特教)로 인하여 정봉(停捧)하는 속에 들었으므로 아무리 미봉이 있다하더라도 논책할 수 없으니 덮어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리하라고 답하였다.

司達辭，軍餉未捧守令·邊將，居末拿問，其二決杖，居三推考，還上未捧居末決杖，居二推考，乃是法例也，今觀各道軍餉捧未捧狀本，京畿新還上，則驪州牧使趙啓泰居末，南陽府使崔晟居二，忠清道新軍餉，則居末之泰安前郡守洪若泌身故，今無可論，而瑞山前郡守宋德中居二，新昌前縣監李命啓居三，新還上，則瑞山前郡守宋德中居末，海美前縣監李光國居二，平安道新還上，則植松萬戶丁道明，多有未捧，當以居末論矣，昨年年事，既非慘凶，毋論軍餉·還上，新捧條未捧之數，若是夥然，誠極可駭，不可與一時薄過，比而同之，今若以有旨前事，有所寬恕，則誠非嚴令甲·杜後弊之道，當該守令邊將，竝令依法例勘罪，以示重餉·還之意，道臣亦難免不能檢飭之責，竝從重推考，至於全羅道舊還，則既入因特教，停捧之中，雖有未捧，不可論責，置之何如，答曰，依。

<비변사등록 138책, 영조 36년 1760년 04월17일(음)>

## 정치/사법

### 右議政 洪鳳漢 등이 軍餉·還上을 未捧한 守令 등의 처벌을 청하다

○ 이번 4월 17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우의정 홍봉한(洪鳳漢)이 아뢰기를, “이는 통제사 이태상(李泰祥)의 여러 도 군향(軍餉)과 환상의 봉미봉(捧未捧) 장문입니다. 경기의 새 환상 거말(居末)은 이천부사(利川府使) 조한필(趙漢弼)이요, 거이(居二)는 남양부사(南陽府使) 최성(崔晟)이며, 충청도의 새 환상 거말은 당진현감(唐津縣監) 김재대(金載大)요, 거이는 덕산현감(德山縣監) 성덕구(成德求)이며, 목은 환상(舊還上)의 거말은 회덕현감(懷德縣監) 김명로(金鳴魯)요, 거이는 이산현감(尼山縣監) 윤득선(尹得宣)이며, 새 군향의 거말은 덕산현감 성덕구요, 거이는 당진현감 김재대이며, 거삼은 예산현감(禮山縣監) 한경(韓警)입니다. 목은 강원도의 목은 환상의 거말은 홍천현감(洪川縣監)

홍계우(洪啓祐)요, 거이는 금성 전 현령(金城前縣令) 어정석(魚定錫)입니다. 평안도의 목은 군향의 거말은 자모산성별장(慈母山城別將) 정흥주(鄭興周)요. 거이는 오정권관(於汀權管) 박순형(朴淳亨)이며, 거삼은 식송만호(植松萬戶) 정석증(鄭錫曾)입니다. 원 환상(元還上)의 거말은 자모산성별장 정흥주요, 거이는 청강첨사(淸江僉使) 허임(許任)이며, 사진곡(私賑穀)의 거말은 오정권간 박순형이요, 거이는 영성첨사(寧城僉使) 구광익(具光翊)입니다. 통영(統營)의 새 군향 거말은 당진현감 김재대 등으로서 죄상을 아울러 묘당에서 품처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새 것과 목은 군향의 거말은 나문(拿問)하고, 거이는 결장(決杖)하고, 거삼은 추고하며, 새 것과 목은 환상의 거말은 결장하고, 거이는 추고하며, 사진곡은 원환상의 예에 의해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今四月十七日,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右議政洪所啓, 此統制使李泰祥諸道軍餉·還上捧未捧狀聞也, 京畿新還上, 居末, 利川府使趙漢弼, 居二, **南陽府使**崔晟, 忠淸道新還上, 居末, 唐津縣監金載大, 居二, 德山縣監成德求, 舊還上, 居末, 懷德縣監金鳴魯, 居二, 尼山縣監尹得宣, 新軍餉居末, 德山縣監成德求, 居二, 唐津縣監金載大, 居三, 禮山縣監韓警, 江原道舊還上, 居末, 洪川縣監洪啓祐, 居二, 金城前縣令魚定錫, 平安道舊軍餉, 居末, 慈母山城別將鄭興周, 居二, 於汀權管朴淳亨, 居三, 植松萬戶鄭錫曾, 元還上, 居末, 慈母山城別將鄭興周, 居二, 淸江僉使許任, 私賑穀居末, 於汀權管朴淳亨, 居二, 寧城僉使具光翊, 統營新軍餉, 居末, 唐津縣監金載大等罪狀, 竝請令廟堂稟處矣, 新·舊軍餉居末, 拿問, 居二, 決杖, 居三, 推考, 新·舊還上居末, 決杖, 居二, 推考私賑穀, 依元還例施行何如, 上曰, 依爲之.  
<비변사등록 140책, 영조 37년 1761년 04월20일(음)>

## 정치/사법

### 左議政 洪鳳漢 등이 還穀을 멋대로 취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청하다

○ 같은 날 입시하였을 때에 좌의정 홍봉한이 아뢰기를, “지금 환자를 신칙하라 신 성상의 하교를 받들었으므로 신이 진달할 바가 있습니다. **남양부사(南陽府使)** 최성(崔晟)은 재임 시에 창고 안의 환곡을 공용(公用)이라 칭하고 관(官)에서 가져다 쓰고는 환분(還分)으로 나눠준 항목에 옮겨 기재하였다가, 도신(道臣)의 장문으로 인하여 나처(拿處)하게 되었으나 의금부에서는 합당한 율문(律文)이 없어 부득이 가볍게 감죄하였습니다. 일이 공용에 관계되고 민원에 따라 구처(區處)한 것이 참으로 그의 공초와 같다면 그 마음을 추구하여 혹 용서할 수도 있겠으나 다만 분조(分糶)와 조역(調役)은 본래 서로 관계가 없으나 나이(挪移: 끌어다가 씬)와 번용[反用: 번질(反作)하여 씬]은 불법이 되는 것이니 후일의 폐단을 엄중히 징계하는 도리에 있어서 이미 드러난 자는 다시 엄히 감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영상과 우상의 뜻은 어떠한가?” 하였다.

영의정 신만은 말하기를, “근래에 외방 고을에서는 이런 부류의 폐단이 많으니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최성은 이미 적발되었으니 엄중히 조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우의정 윤동도는 말하기를, “이는 자의(恣意)로 쓴 것인데 자의로 쓴데 대한 율문(律文)이 없습니다. 지금 비율(比律)하여 감죄할 수 없다면 천분(擅分)·나이·번질의 세 가지 율문이 하나같이 불가할 것이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우상이 아뢴 바가 옳다. 한꺼번에 세 가지 일을 범하였으니 세 가지 형률 가운데 무거운 것에 따라 감처(勘處)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同日入侍時, 左議政洪所啓, 今承還上申 飭之聖教, 臣有可達者, **南陽府使**崔晟在任時, 庫中還穀, 謂以公用, 自官取用, 移錄於還分秩, 因道臣 狀聞, 至於拿處, 該府以無可合之律, 不得

已輕勘矣，事係公用，從民願區處，誠如渠供，則究其心，容有可恕，而分糶·調役，本不相干，攢那反用，乃所以爲不法，其在嚴懲後弊之道，已現者，不可不更爲嚴勘矣，上曰，領·右相之意何如，領議政申曰，近來外邑，多有此等之弊，事甚可駭，崔晟旣已現發，不可不嚴處矣，右議政尹曰，此是擅用，而旣無擅用之律文，今無比律，而勘罪，則擅分挪移，反作三律，無不可矣，上曰，右相所奏是矣，一犯三事，三律中，從重勘處可也。

<비변사등록 143책, 영조 39년 1763년 04월01일(음)>

## 정치/사법

### 南陽府使 王漢禎을 拿問 處罪하게 하라고 전교하다

○ 경기감사 장계에서 남양부사(南陽府使) 왕한정(王漢禎)의 죄상을 유사(攸司:法司)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기를 청한 일로 전교하기를, “이러나 저러나 불심(不審)은 면하기 어려우니 경(卿)은 추고하고 당해 부사가 한 가지 일로 두 번 보고하여 사실을 호도(糊塗)한 것은 극히 어리석은 것이니 해부(該府:의금부)로 하여금 나문(拿問) 처죄(處罪)하게 하라. 이와 같다면 본도(本道)의 제읍(諸邑)이나 타도(他道) 제읍 수령의 친집(親執:직접 맡아 함) 거행은 기필할 수 없는데 조령(朝令)이 있는 마당에 어찌 감히 이럴 수 있겠는가? 묘당에서 도백에게 신칙하여 공고(公故)가 아니면서 무단스레 대행(代行)시킨 수령은 수실(首實:사실을 자백케 함) 장문(狀聞)하게 한 뒤에 묘당에서 논죄하게 하라.” 하였다.

以京畿監司狀啓，南陽府使王漢禎罪狀，令攸司稟處事，傳曰，以此以彼，難免不審，卿則推考，該府使，一事再報，眩幻事實，極爲僮侗，令該府拿問處之，若此則本道諸邑·他道諸邑守令之親執舉行未可必，朝令之下，焉敢若是，令廟堂申飭道伯，非公故無端替行守令，使之首實狀聞論罪。

<비변사등록 172책, 정조 12년 1788년 04월10일(음)>

## 정치/사법

### 京畿監司 徐鼎修가 大同米를 실은 배를 잘 호송하지 못한 守令의 논죄를 청하다

○ 이번 6월 12일에 좌직한 승지와 일을 여쭙 각신(閣臣)이 함께 입시했을 때 경기감사(京畿監司) 서정수(徐鼎修)가 아뢰기를, “마침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에 감히 이렇게 우러러 아뢰습니다. 전라도 해남현(海南縣)의 대동미를 실은 배가 본도의 남양부(南陽府) 지방에서 침몰하였는데, 그때 전 도신 김사목(金思穆)이 곡주관(穀主官)인 해남 현감(海南縣監)을 따라 달려가서 직접 만나 의논하여 새로 반포한 정식대로 개색(改色)하여 상납하게 한 것은 정당하였으나, 배에 선적(船積)을 잘하지 못하고 호송을 신중하게 하지 못한 각 해당 수령의 청죄(請罪)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호남의 도신 정민시(鄭民始)가 장문(狀聞)하지 않았다고 하기 전에 질이 좋지 않고 축난 쌀을 다시 징수한 것은 논할 바가 아닙니다.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냈는데도 이제 한 해가 지난 뒤에야 비로소 장문하였으니 일이 매우 황송하고, 해당 도신이 이와 같이 고집하는 것도 근거가 없지 않으므로 해부의 호송 감색(護送監色)과 해현(該縣)의 기선 감색(騎船監色)과 사격(沙格) 등을 일체 나치(拿致)하지 않을 수 없으니, 지금 사실을 철저히 조사한 다음 종당에 격식을 갖추어 장문하겠습니다. 월전(月前)에 호서 도신의 장계로 인하여 태안현(泰安縣)에서 호남의 배가 침몰한 일로 청죄한 수령을 유지(宥旨)가 있기 전의 일이라 하여 분간(分揀)하라는 하교가 있었습니다. 남양에서 침몰한 일은 이미 지난 여름 대사령 이전에 해당되니, 수령을 논죄하는 한 가지 일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른바 새로 반포한 정식은 일정한 정식과는 차이가 있으니, 사체(事體)의 구차함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다. 이미 조금이나마 민폐에 유익함이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비록 우선 허락하기는 하였으나 한 가지 설을 갖추었을 뿐이요 대체(大體)가 합당한 지는 모르겠다. 이 일이 유지가 있기 이전에 범한 바에 관계됨에 있어서는 호서에서 태안의 일을 회계(回啓)한 것을 해조에서 거행함에 전혀 알지 못하였는데, 지금 어찌 다시 해조의 잘못된 것을 본받는단 말인가. 수령을 논죄하는 것은 우선 제쳐두고라도 검색과 사격이 물에서 건져낸 곡물은 또한 마땅히 한결같이 유지를 따라서 거행해야 할 것이다. 어찌 해조에서 본사(本事)의 연고를 알지 못하여 지금까지 행회하지 않았단 말인가. 가둔 검색과 사격은 오늘 안으로 속히 통지하여 놓아주도록 하고 증미(拯米)와 취재(臭載)된 곡물을 처리하는 일은 유지대로 시행하고 그 나머지는 갔다 와서 처결하도록 하라.” 하였다.

今六月十二日坐直承旨·稟事閣臣，同爲入侍時，京畿監司徐鼎修所啓，適因言端，敢此仰達矣，全羅道海南縣大同所載船隻，致敗於本道南陽府地方，而其時前道臣金思穆，因穀主官，海南縣監之馳進面議，依新頒定式，以改色上納，停當，不善裝載與不謹護送之各該守令請罪，不爲舉論矣，湖南道臣鄭民始，以不爲狀聞之前，劣縮米再徵，非所可論，屢次文移，今於經年之後，始乃狀聞，事甚惶悚，而該道臣之如是爭執，亦不無所據，故該府護送監色及該縣騎船監色沙格等，不得不一竝拿致，今方究覈查實，從當具格狀聞，而月前因湖西道臣狀聞，泰安縣湖南船致敗事，請罪之諸守令，以宥旨前事，有分揀之教矣，南陽致敗，既在於昨夏大赦之前，守令論罪一款，何以爲之乎，上曰，所謂新頒定式，與一定之式，有異，其爲事面之苟且，莫甚於此，既云有一分有益於民弊之故，雖姑許之，以備一說，大體則未知恰當，至於此事，係是宥旨前所犯，則自湖西泰安事之回啓，該曹舉行，萬萬矇然，今豈可更效該曹之做錯乎，守令論罪姑捨是，監色沙格也，拯劣谷物也，亦當一依宥旨舉行，豈其該曹未知本事之故，至今無行會乎，在囚監色沙格，今日內星火知委放送，拯米及臭載谷物區處事，依宥旨爲之，其餘，往復決處可也。

<비변사등록 178책, 정조 15년 1791년 06월15일(음)>

## 정치/사법

### 戶曹判書 趙鼎鎭이 礪山 등 세 읍의 稅船을 침몰시킨 監色과 沙格의 석방을 청하다

○ 같은 날 입시하였을 때에 호조 판서 조정진(趙鼎鎭)이 아뢰기를, “여산(礪山), 장흥(長興), 순천(順天) 세 고을의 세선(稅船)이 지난해 여름에 태안(泰安)에서 침몰하였는데, 지난해 호서의 도신이 격식을 갖추어 장문한 뒤에 검색과 사격 등이 배가 침몰한 정황을 추후에 사실을 철저히 조사하여 논계하라고 하였으므로 해도에서 철저히 조사한 장문을 기다려 다시 품처하겠다는 내용으로 복계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지금 경기 감사 서정수가 진달함으로 인하여 남양(南陽) 경내에서 해남현의 대동미를 실은 배를 침몰시킨 검색과 사격에게 유지(宥旨)를 내리기 이전의 일이라 하여 이미 방송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이번 이 여산 등 세 고을의 세선이 침몰당한 것도 유지를 내리기 이전에 해당되니,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는 정사에 있어서 달리 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 그러므로 감히 이렇게 우러러 아뢰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당초에 해조에서 회계(回啓)한 것은 제대로 살피지 못한 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니, 어찌 유지를 내리기 이전의 일과 합하여 조사하기를 청한단 말인가. 경은 추고하고 검색과 사격은 해남현의 예를 따라 논죄하지 말라.” 하였다.

同日入侍時，戶曹判書趙鼎鎭所啓，礪山·長興·順天三邑稅船，昨年夏致敗於泰安地，頃因湖

西道臣具格狀聞，以監色沙格等敗船情節，追後究覈論啓事，待該道究覆狀聞，更爲稟處之意，覆啓蒙允矣，今因京畿監司徐鼎修陳達，**南陽**境致敗海南縣大同船，監色沙格，以有旨前事，既有放送之命，今此礪山等三邑稅船致敗，亦在宥旨前，則其在一視之政，恐不可異同，故敢此仰達矣，上曰，當初該曹回啓，難免不審，豈可以有旨前事，混請查覈乎，卿則推考，監色沙格，依海南例，勿論可也。

<비변사등록 178책, 정조 15년 1791년 06월20일(음)>

### 정치/사법

#### 남양의 擊錚罪人 洪杰包 등의 原情 등에 대해 아뢰다

○ 형조(刑曹)의 계목(啓目):격쟁 죄인(擊錚罪人) 홍걸포(洪杰包) 등의 원정(原情)…… “형조의 계목에 모두 원정은 시행하지 말고 율문(律文)에 비추어 감처(勘處)하기로 아뢴바 그대로 율허하였으며, ‘**남양(南陽)** 홍걸포(洪杰包)의 사건은 옥정(獄情)은 과연 의심이 없는 듯하나, 일찍이 참판관(參判官)이 해당 방(房)의 승선(承宣)으로서 집필(執筆)을 할 적에 수응(酬應)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관삼당(判三堂)과 함께 다시 원안(原案)을 가져다가 종전의 같은 처지에서 법을 어긴 사례와 비교하여 본 다음에 별도로 의견을 갖추어서 논리(論理)하여 회계하며, (…)

刑曹啓目，擊錚罪人洪杰包等原情云云，曹啓目竝原情勿施，照律勘處，啓依允爲旡，**南陽**洪杰包段，獄情果似無疑，曾有酬應於參判卿之以該房承宣執筆之時是置，與判三堂，更取原案，以前此同一地處，屈法之比例較看，然後別具意見，論理回啓爲旡，(…)

<비변사등록 188책, 정조 22년 1798년 09월03일(음)>

### 정치/사법

#### 右議政 南公轍이 茂山府의 還穀 2천석 등을 劃給하여 사용하는 문제를 아뢰다

○ 9월 10일 약방의 입진에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우의정 남공철(南公轍)이 아뢰기를, (…)  
또 아뢰기를, “집때 경기(京畿) 안의 여러 고을에서 조홀강(照訖講)을 할 때 처음에는 정하게 받아들이지 않다가 끝에 가서 삼식년(三式年)에 준해서 넣거나 뺏습니다. 각 당해 수령에게 현고(現告)를 받아들여 보고하도록 초기(草記)하여 행회(行會)하였습니다. 경기감사 홍우섭(洪遇燮)이 보고한 것을 보면, ‘**남양부사(南陽府使)** 박기풍(朴基豐), 안산군수(安山郡守) 이헌규(李憲圭), 양근군수(楊根郡守) 박종항(朴宗恒), 마전군수(麻田郡守) 김민주(金民柱), 지평현감(砥平縣監) 이공덕(李兢德)은 강(講)에 응한 유생에게 모두 삼식년에 따라 넣거나 뺏습니다.’ 하였습니다. 강하는 유생에게 삼식년에 따라 넣거나 빼는 것은 답답해하는 탄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식(令式)을 벗어나는 일에 관계되므로, 일이 이미 지난 일에 속한다고 해서 내버려 두고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해 수령(守令)을 모두 당해 부(府)에서 나문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上)이 그리하라 하였다. (…)

今九月初十日，藥房入診，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右議政南所啓，(…)又所啓，頃以畿邑照訖，始不精捧，末乃準三式存拔之，各該守令，捧現告報來之意，草記行會矣，卽見京畿監司洪遇燮所報，則以爲**南陽府使**朴基豐，安山郡守李憲圭，楊根郡守朴宗恒，麻田郡守金民柱，砥平縣監李兢德，以應講儒生，皆以三式存拔，爲辭矣，講儒之以三式存減，不但有齟齬之歎，係是令式之外，不可以事屬既往，置而勿論，當該守令，竝令該府，拿問處之，何如，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207책, 순조 18년 1818년 09월10일(음)>

### 정치/사법

#### 抱川 등지의 水災 상황에 대한 狀啓를 지연한 京畿監司 金道喜를 推考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의 계사에, “경기감사 김도희(金道喜)의 장계를 보니, 이달 13일의 비에 포천(抱川)에서 민가(民家) 16호가 모두 떠내려갔고 남녀(男女)가 깔려 죽은 사람이 21명이라고 합니다. 장맛비가 매우 많이 와서 가난한 오막살이에서 재난을 당해 사람이 빠져죽은 것이 이렇게까지 많으니, 그 슬프고 불쌍함이 실제 보통보다 갑절이므로 특별 홀전(恤典)을 제급(題給)하고, 생전에 신역(身役)·환곡(還穀)·군포(軍布)를 탕감하는 것은 이미 다른 읍(邑)에서 시행한 예(例)가 있으니 일체로 거행하게 하고, 떠내려간 민호가 비록 매우 많지는 않으나 전부 한 마을에 관계되니 아울러 무너져 떨어진 가운데 넣어서, 그 재산이 없어져 의지할 데 없는 상황을 특별로 돌보지 않을 수 없으니 공·사간(公私間)의 각종 세역(稅役:세금과 부역) 또한 특별히 면제하게 하고, 거의 죽어가는 11명은 별도로 구제하여 치료할 밑천을 주어 전부를 살리게 하는 효과가 있게 하소서. 달포 전에 해일(海溢)이 난 뒤에 교동(喬桐) 한 읍에서 떠내려가고 쓰러지고 물에 빠져죽은 수효를 해영(該營)에서 우선 수계(修啓)하게 하고, 남양(南陽) 등 7읍진(邑鎭)에서 상해를 받은 형지(形止)를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 적간(摘奸)하여 등문(登聞)하겠다고 또한 이미 장계 가운데에 조사(措辭)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미 1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가부(可否)의 답이 없으니 소상하게 실질을 주워 모으는 사이에 비록 그 조금 날짜를 소비한 것이 이상할 것은 없지만, 전계(前啓)한 뒤에 충분히 30일이 되었으니 백성의 일에 관계되는 바를 또한 어찌 이와 같이 지체할 수 있겠습니까? 도신(道臣)을 추고(推考)하여 속히 등문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험한다고 답하였다.

司啓辭，卽見京畿監司金道喜狀啓，則今十三日之雨，抱川民家十六戶，盡爲漂流，男女壓死，爲二十一名矣，潦雨極備，窮藪罹災，民命滄沒，至於此多，其爲慘矜，實倍尋常，別恤典之題給，生前身還布之蕩滅，既有他邑已施之例，使之一體舉行，漂流之戶，雖不甚夥，係是全一村，竝入於汰落之中者，則其蕩折無依之狀，不可無拔例顧恤，公私各樣稅役，亦令特爲蠲免，幾死之十一名，另給救療之資，俾有全活之效，月前海溢之後，喬桐一邑漂頽滄溺之數爰，自該營先爲修啓，而南陽等七邑鎭受傷形止，待水退摘奸登聞之意，亦既措辭於狀啓之中矣，今已跨朔，尙無阜白，消詳撫實之際，雖無怪其少費日字，而前啓之後，洽爲三旬，民事所關，亦容豈如是稽滯，該道臣推考，使之卽速登聞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23책, 헌종 1년 1835년 06월19일(윤)>

#### (4) 군사

##### 정치/군사

###### 각 사람이 呼訴한 바에 대해 覆啓하지 않을 뜻을 아뢰다

아뢰기를, "경기(京畿) 남양(南陽)에 사는 기병(騎兵) 진승립(陳承立) 등 30명이 육군(陸軍)으로써 수군(水軍)으로 바뀌게 된 것을 억울하다는 일로 상언(上言)하였고, 개성부(開城府)의 수부(水夫) 김모을(金毛乙)·노리(老里) 등 4명은 신역(身役)을 면제받고 대흥산성(大興山城)으로 옮겨 들어가기를 원하는 일로써 상언한 것을 본사에 내렸습니다. 비단 각 사람이 호소한 바가 모두 시행해서는 부당할 뿐만 아니라, 역시 기한이 지난 후 현신(現身)하기도 하고, 혹은 끝내 형체의 그림자를 나타내지 않은 자도 있기 때문에 예에 의해 복계(覆啓)하지 않을 뜻을 감히 아뢰습니다."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啓曰, 京畿南陽居騎兵陳承立等三十名, 以陸軍換定水軍稱冤事, 上言, 及開城府水夫金毛乙老里等四名, 願除身役, 移入大興山城事上言, 啓下本司, 而不但各人所訴, 俱不當施行, 亦且過限後現身, 或有終無形影者, 故依例不爲覆啓之意, 敢啓, 答曰, 知道.

<비변사등록 32책, 숙종 2년 1676년 03월 28일(음)>

##### 정치/군사

###### 領議政 金壽恒 등이 江都와 南漢에 분속할 군병에 대해 아뢰다

이달 23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영의정 김수항(金壽恒)이 아뢰기를

"강도(江都) 본부(本府)의 군병 원수(元數)는 매우 적어 방수(防守)의 소용이 되지 못하니 반드시 다른 곳의 군병을 미리 분속(分屬)시켜야만 위급할 때 낭패(狼狽)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전에도 이러한 논의가 많이 있어 유수 이민서(李敏紱)의 상소에서도 이 일을 아뢰어 비국에 계하하셨으나 익히 검토한 뒤에 결정하려고 아직까지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비변사에 있는 문서를 상고해 보니 정축년(인조 15년(1637)) 이후에 본사에서 강도(江都)와 남한(南漢)에 분속할 군병을 별단(別單)으로 올려 재가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경기·해서·호서의 군병 역시 분속된 가운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남한은 이에 의하여 분속시켜 지금까지 준행하고 있으나 강도는 그 후에 분속한 일이 없었는데 그 까닭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와서 분속하는 것을 반드시 그때에 결정한 규례를 따를 필요는 없겠으나 군병의 총계가 1만 5천여 명은 되어야 모자랄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경기의 군읍 중 수원(水原)의 군병은 숙위군(宿衛軍)과 같은 의미가 있으니 다른 곳에 분속할 수 없으나 남양(南陽)·통진(通津)에 소속된 군병과 장단(長湍)·과주(坡州) 두 군영 중에서 가까운 고을의 군병은 모두 강도에 분속시키고, 황해도의 연안(延安)·백천(白川) 두 고을은 강도에서 아주 가깝고 충청도의 해미영(海美營)에 소속된 각 고을은 해로(海路)로 왕래하면 역시 매우 가깝고 편리하니 이런 곳의 군병을 모두 분속시키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이렇게 마련하여 별단에 써 들여 재가하여 분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고, 우의정 남구만(南九萬)이 아뢰기를, "기왕 다른 도와 다른 고을의 군병을 아울러 통솔하려면 명칭도 있어야 하고 병부(兵符)도 있어야 하니 종전에 불렀던 진무사(鎭撫使)의 칭호와 견대하는 병부가 있어야만 절제 할 수 있을 듯합니다."하니, 임금이 아뢴대로 하라고 하였다.

今六月二十三日,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金所啓, 江都本府軍兵元數甚少, 不足爲

防守之用，必以他處軍兵，預爲割屬然後，可免臨急狼狽之患，從前多有此議，留守李敏敘疏中，亦陳此事，啓下備局，而欲待熟講定奪，未及陳稟矣，考見備局所在文書，則丁丑後自本司，以江都·南漢分屬軍兵，有別單啓下之事，畿甸·海西·湖西軍兵，亦入於分屬之中矣，南漢則依此分屬，至今遵行，而江都則厥後無割屬之舉，未曉其故，到今分屬，雖不必一用其時定奪之例，軍兵都數，必得一萬五千餘名，可無不足之患，畿邑中水原軍兵，則有同宿衛之軍，不可以分屬他處，而南陽·通津·所屬軍兵及長湍·坡州·兩營中，便近邑軍兵，竝令分屬江都，而黃海道延安·白川·兩邑，去江都至近，忠清海美營所屬各邑，海路往來亦甚便近，以此等處軍兵，竝爲割屬似當，依此磨鍊別單書入，以爲啓下分付之地何如，右議政南曰，旣使兼摠他邑他道之兵，則宜有稱號，且宜有兵符，以曾前所稱鎮撫使兼帶兵符然後，似可以節制矣，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38책, 숙종 10년 1684년 06월 24일(음)>

## 정치/군사

### 江華府 소속 軍摠

강화부(江華府) 소속 군총(軍摠) 본부(本府) 장관(將官)·제색군병(諸色軍兵) 합 5천 6백 52명

경기좌영 소속(京畿左營所屬)

통진군(通津軍) 4백 18명

김포군(金浦軍) 3백 22명

양천군(陽川軍) 1백 2명

금천군(衿川軍) 1백 17명

부평군(富平軍) 5백 49명

이상 1천 5백 8명

중영(中營) 소속 파주(坡州)·적성(積城) 양읍은 장단(長湍)의 후영(後營)으로 이속(移屬)하고, 후영 소속의 풍덕(豐德)은 바꾸어 중영(中營)에 이속한다.

풍덕군(豐德軍) 5백 69명

교하군(交河軍) 1백 60명

고양군(高陽軍) 2백 43명

이상 9백 72명

우영(右營) 소속

**남양군(南陽軍)** 9백 18명

과천군(果川軍) 1백 23명

안산군(安山軍) 2백 12명

인천군(仁川軍) 3백 98명

이상 1천 6백 51명

황해도

배천군(白川軍) 5백 81명

연안군(延安軍) 1천 2백 39명

이상 1천 8백 20명

경기의 3영과 황해의 2읍 합 5천 8백 51명임. 이들은 강화에 전속하여 본부의 군병과 똑같이 조련시킨다.

공홍도(公洪道) 좌영 소속

해미군(海美軍) 2백 95명  
예산군(禮山軍) 4백 95명  
대흥군(大興軍) 4백 85명  
온양군(溫陽軍) 3백 80명  
신창군(新昌軍) 3백 6명  
면천군(沔川軍) 3백 72명  
평택군(平澤軍) 1백 79명  
당진군(唐津軍) 2백 92명  
결성군(結城軍) 4백 16명  
덕산군(德山軍) 6백 2명  
아산군(牙山軍) 5백 18명  
서산군(瑞山軍) 1천 1백 3명  
이상 5천 4백 43명

이들은 항상 왕래하며 조련할 수 없으니 비록 강화에 속했다 하더라도 그대로 본도 병영에  
예속시키고 만약 사변이 생기면 징소(徵召)를 기다릴 것 없이 영장이 영솔하여 육로를 거치  
든지해로를 거치든지 급히 강화로 달려가게 한다.

이상 도합 1만 7천 46명

江華府所屬軍摠

本府將官諸色軍兵，合伍千陸百伍拾貳名，

京畿左營屬

通津軍四百十八名

金浦軍三百二十二名

陽川軍一百二名

衿川軍一百十七名

富平軍五百四十九名

以上一千五百八名

中營所屬 坡州·積城兩邑，則移屬長湍後營，後營所屬豐德，則換爲中營，

豐德軍五百六十九名

交河軍一百六十名

高陽軍二百四十三名

以上九百七十二名

右營屬

**南陽**軍九百十八名

果川軍一百二十三名

安山軍二百十二名

仁川軍三百九十八名

以上一千六百五十一名

黃海道

白川軍五百八十一名

延安軍一千二百三十九名

以上一千八百二十名

京畿三營，黃海兩邑，合五千八百五十一名，此則

專屬江華，與本府軍兵一體操鍊，

公洪道左營屬

海美軍二百九十五名

禮山軍四百九十五名

大興軍四百八十五名

溫陽軍三百八十名

新昌軍三百六名

沔川軍三百七十二名

平澤軍一百七十九名

唐津軍二百九十二名

結城軍四百十六名

德山軍六百二名

牙山軍五百十八名

瑞山軍一千一百三名

以上五千四百四十三名

此則常時不可往來操鍊，雖江華，仍隸本道兵營，若有事變，則不待徵召，營將領率，或由陸路，或由水路，急赴江華，

都以上一萬七千四十六名

<비변사등록 38책, 숙종 10년 1684년 07월 19일(음)>

## 정치/군사

### 領議政 金壽恒 등이 摠戎使의 軍制 變通에 대해 논의하다

이번 9월 대신과 비국당상 인견 입시 때 영의정 김수항이 아뢰기를, "총융사 구일(具鎰)이 일찍이 군제(軍制)를 변통하는 일을 장계하여 비국에 내렸는데 일이 크게 변통하는데 관계 되어 충분히 강구해 처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조용히 상의하여 등대해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복계했었습니다. 총융청은 기보(畿輔)의 군병을 전담해 관장하는데 일찍이 수어청으로 옮겨 소속시킬 자의 숫자가 이미 많은데다가 근래 강도(江都)에 떼어 준 조치가 있어 남아 있는 자는 단지 수원(水原)·남양(南陽)·과주(坡州) 등 몇 고을의 군병뿐입니다. 군병 총숫자의 많고 적음을 물론하고 반드시 각 영(營)의 제도를 설치한 이후에야 군문(軍門)의 모양이 되는데 이처럼 작은 군병으로는 각 영으로 나누어 설치할 수가 없어 별도로 변통해야 할 형세입니다. 이번 구일의 장계에서 아뢴 바 그 뜻이 아주 좋아서 여러 대신의 의논 역시 그렇게 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합니다. 장초군(壯抄軍)의 예에 의해 장정을 뽑아 번갈아 번(番)을 들게 하고, 그 나머지는 보인(保人)으로 정해서 쌀 6두씩을 거두면, 번을 드는 군사는 관에서 양료(糧料)를 지급하게 되고, 쌀을 바치는 군사는 한 해가 끝나도록 한가하게 됩니다. 군사들의 뜻으로 말해도 반드시 편리하고 좋으나, 여러 의논이 혹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단지 쌀을 받아 들이는 한가지 사항에 있습니다. 대개 그들은 속오(束伍) 아병(牙兵)으로 대부분이 공·사천(公私賤)이어서 이미 본역(本役)이 있는데 다시 책임지워 쌀을 받는 것은 불편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를 여러 도에 통틀어 시행하면 참으로 불편하겠지만 본청은 전부터 아병·보인에게 쌀을 받는 규례가 있어 양인(良人)은 12두, 공사천은 6두씩인데도 별달리 원망하거나 괴로워하는 이가 없습니다. 송도의 속오에 이

르러서는 번드는 것을 괴롭게 여겨 쌀 납부하기를 스스로 원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20두를 받아들였으나 그후 15두로 감해 행해 온 지 오래입니다. 본청에 있어서는 이것이 처음 시작하는 일이 아니니 속오는 불가하게 여기지 않을 듯합니다. 다만 번드는 규정이 12개월마다 돌아와서 대신하게 되어 있으니 번서는 차례가 너무 잦은 듯합니다. 만약 9월부터 2월까지 6개월은 번을 들고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은 풀어보내면 편리할 듯합니다. 훈련대장 신여철(申汝哲)의 뜻 또한 이와 같다고 합니다. 본청의 군제를 이미 변통하지 않을 수 없다면 이렇게 변통해야 하며, 이밖에는 달리 좋은 계책이 없습니다. 구일(具鎰)로 하여금 이에 의해 절목(節目)을 마련해 묘당에 나아가 의논한 후 다시 아뢰어 정해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기전(畿甸)의 군병을 남한과 강도에 옮겨 소속시킨 후, 본청 군병의 숫자가 적어져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 끝내는 변통하지 않을 수 없다. 아뢴 바에 따라 절목을 마련하여 들이도록 하라."하였다.

今九月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金所啓, 摠戎使具鎰, 曾以軍制變通事狀啓, 啓下備局, 而事係大段變通, 不可不熟講而處之, 故從容商議, 登對定奪之意覆啓矣, 摠戎廳, 專管畿輔軍兵, 而曾前移屬於守禦廳者, 其數已多, 近又有割給江都之舉, 所餘者, 只是水原·南陽·坡州等數邑軍兵, 而毋論軍摠多寡, 必設各營之制然後可, 軍門模樣而以此些少軍兵, 無以分設各營, 別樣變通, 勢所不已, 今此具鎰狀啓所陳, 其意固好, 諸大臣之議, 亦多以此爲便, 依壯抄軍例, 抄其丁壯, 輪回上番, 其餘則定爲保人, 收米六斗, 則番上之軍, 官給糧料, 納米之軍, 終歲閑遊, 以軍情言之, 必以爲便好, 而群議之或有持難者, 只在於收米一款, 蓋以東伍牙兵, 太半公私賤, 既有本役, 又責收米, 恐涉不便故也, 但此舉, 通行於諸道, 則試爲不便, 而本廳則從前牙兵·保人收米之規, 良人則十二斗, 公私賤則六斗, 而別無怨苦之端, 至於松都東伍則以上番爲苦, 自願納米, 故初以二十斗收捧, 其後減爲十五斗, 行之既久, 在本廳則此非創始之事, 東伍, 恐無不可矣, 但上番之規, 以十二朔輪替, 則番次, 似爲太數, 若自九月至二月六朔則上番, 自三月至八月六朔則放送, 似爲便當, 訓練大將申汝哲之意, 亦如此云, 本廳軍制, 既不可不變通, 而如是變通, 則此外恐無善策, 令具鎰, 依此磨鍊節目, 就議于廟堂後, 更爲稟定施行何如, 上曰, 畿甸軍兵, 移屬南漢·江都之後, 本廳軍兵數少, 不成模樣, 則終不可不變通, 依所達, 使之磨鍊節目, 以入可也.

<비변사등록 40책, 숙종 12년 1684년 09월 07일(음)>

## 정치/군사

### 江華의 義僧에 관한 일을 아뢰다

또 아뢰기를, "작년 가을에 강화유수 신정(申暹)이 강화의 의승(義僧)에 관한 일을 경연 중에 아뢰었습니다. 또 당시 영돈녕부사 김수항(金壽恒)이 말하기를 '당초 남한산성을 쌓으면서 승도들을 부역시켰으므로 그대로 일곱 절을 설치하여 모든 도의 승려들을 배정하여 들어가 번을 서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강화의 형편은 남한산성과는 달라 외방의 의승들이 들어가 번을 설 때는 그 폐단이 적지 않을 것이니 우선 경기에 소속된 고을과 연안(延安)·배천[白川]의 승도들에게 들어가 번을 서게 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고 하였으므로 이대로 관하(判下)되었습니다. 전번에 신정이 또 이러한 뜻으로 비국에 보고하였는데 여러 의논이 모두 말하기를 '남한산성의 의승은 그 폐단이 극도에 달했는데 지금 또 강화에 설치한다면 지키는 데에는 도움이 없고 도리어 해만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방금 대신들이 지금 바야흐로 입시하였으니 다시 결정하여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 일은 어떠한가?"하였다.

영의정 남구만이 아뢰기를 "소신도 그 공사를 보았는데 남한산성의 의승을 전국에 배정하였으나 오히려 폐를 끼침이 많았습니다. 이번의 연안·배천과 남양(南陽)·풍덕(豐德) 등지는 모두 들녘에 있는 고을로서 본래 승도가 적습니다. 적은 수의 승도들도 번갈아 번을 서게 하면 반드시 힘이 미치지 못할 것이며 다만 폐단만 끼치게 될 것이니 신의 생각으로는 결코 할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만약 실효가 없을 것 같으면 당초 시행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그전의 거행조건은 다시 지워버리는 것이 옳겠다."하였다.

又所啓，上年秋江華留守申晟，以江華義僧事，陳達於筵中，其時領敦寧金，以爲當初南漢築城，以僧徒赴役，故仍爲設置七寺，以諸道僧人，分定入番，番而今此江都形勢，與南漢有異，外方義僧入審之際，其弊不貲，姑以京畿屬邑，及延·白僧徒，使之入番似可云，故以此判下矣，頃日申晟又以此意，馳報備局，而群議皆以爲南漢義僧，其弊已極，今又設置於江都，無益守護，而反有其害云，大臣今方入侍，更爲定奪分付何如，上曰，此事如何，領議政南曰，小臣亦見其公事，而南漢義僧，雖分定八路，貽弊猶多，今此延白及南陽·豐德等地，皆是野邑，僧徒本少，以數少僧人，輪回立番，必不得力，而徒爲貽弊之歸，臣意決不可爲矣，上曰，如無實效，則初不如不行之爲愈，前日舉行條件，還爲爻周可也。

<비변사등록 41책, 숙종 13년 1687년 09월 25일(음)>

#### 정치/군사

##### 摠戎廳에 소속된 南陽 고을의 군병을 守禦廳으로 옮기는 일을 건의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총융청에 소속된 남양(南陽) 고을의 군병을 수어청으로 옮길 것을 오늘 입시하였을 때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총융사는 수원진(水原鎭)에서 하는 조련의 일로 금방 나갔는데, 아마 남양의 군병들은 총융사의 전령(傳令)으로 인해 이미 수원진에 모여 대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미 모인 군병을 기일이 박두한 뒤에 놓아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남양 군병이 수어청의 조련에 미칠 수 없다면 총융청의 조련에 참여한 뒤에 수어청으로 옮겨 보내도 무방할 듯합니다. 이러한 뜻을 총융청과 수어청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辭，摠戎廳所屬，南陽一邑軍兵，移屬守禦廳事，今日入侍時，纔已定奪，而摠戎使以水原鎭習操事，今方出去，南陽軍兵，想必因摠戎廳傳令，已爲聚待於水原矣，已聚之軍，日期已迫之後，不必放送，且南陽軍既不及於守禦廳習操，則參於摠戎廳習操後，移送守禦廳，亦似無妨，以此意分付於兩廳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41책, 숙종 13년 1687년 11월 03일(음)>

#### 정치/군사

##### 領議政 南九萬 등이 楊州 軍兵을 摠戎廳으로 옮기는 일 등을 건의하다

이번 11월 초3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영의정 남구만이 아뢰기를, "광주유수 이세백(李世白)이 양주(楊州) 군병을 총융청으로 옮기는 일에 대해 장계를 올려 불편한 단서가 자못 많음을 아뢰었습니다. 이세백이 지금 입시하였으니 임금께서 그 곡절을 하문하시고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이세백이 아뢰기를, "광주(廣州)는 당초에 6영(營)이었으나 감해져 4영이 되었습니다. 지금 또 양주의 군병을 총융청으로 옮긴다면 그 숫자가 점점 감해져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또 사리에 불편한 것은 모두 장계 중에 아뢰었습니다. 이미 걱정스런 형편을 알았

기에 벌써 옮겼다는 것을 아뢰지 않을 수는 없기에 다시 이렇게 여쭙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총융청은 2영 뿐으로 모양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방금 양주영을 옮겨준 것이다. 조정 일의 성격상 일을 거꾸로 할 수는 없으니 다시 수어청으로 옮긴다면 다른 고을의 군병을 보태주는 것이 어떻겠는가?"하였다.

남구만이 아뢰기를, "**남양(南陽)**의 군병 1천 6백 명이 지금 총융청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남양** 군병을 수어청에 옮겨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였고, 우의정 이단하는 아뢰기를, "신도 외방에 있으면서 영의정 남구만과 의논하였는데 이대로 옮기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하였다.

행지돈녕부사 신여철(申汝哲)과 형조판서 서문중(徐文重)이 아뢰기를, "**남양**은 광주에 있어 역시 접경한 곳입니다. 거리는 양주와 같이 편리하고 가깝지 못하며 군병의 숫자도 양주와 같이 많지 못하나 그 빈 곳을 보충할 만합니다. 이 밖에는 달리 변통할 길이 없습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총융청에는 3영을 갖추지 않을 수 없고 수어청의 빈 곳도 그 대신을 채워주지 않을 수 없다. **남양**이 조금 멀다고는 하나 끝내 그 대신을 얻지 못하는 것보다는 낫다. **남양**을 광주에 옮겨주고 양주 군병은 그전에 결정된 대로 속오군·아병(牙兵)·잡색군(雜色軍)을 모두 총융청에 옮겨주라."하였다.

또 아뢰기를, "요전에 어사가 올린 보고서로 인해 첩문(帖文)의 연한과 석수(石數)를 한결 같이 옛 규례에 의거하라고 판하(判下)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축년 이전은 문서가 다 없어졌고 정축년 이후 사목을 상고하니 여러번 석수를 감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한결같이 정축년 이후 처음으로 정했던 수량으로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짐작해서 개정할 것입니까?"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당초에 정한 수량이 얼마인가?"하였다.

남구만이 아뢰기를 "신도 그 석수는 자세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축년과 무인년 및 현종(顯宗)경자년 이후로 여러번 고쳤습니다. 대체로 그 석수는 점점 감소되었고 연한을 50세로 감하여 정한데에 이른 것이 근래의 사목입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진홍청 당상과 상의하고 참작해서 다시 아뢰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옳겠다."하였다.

今十一月初三日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領議政南所啓，廣州留守李世白，以楊州軍兵，移屬摠戎廳事狀啓，陳其不便之端頗多，世白今方入侍，自上下詢其曲折，而處之何如，李世白曰，廣州初以六營，減爲四營，楊州軍兵，今又移屬於摠戎廳，則其數漸減，固爲可悶，且不便於事理者，皆陳於狀啓中，既知形勢之可悶，不可以既已移屬，而不爲陳達，更有此仰稟矣，上曰，摠戎廳只以二營，不成貌樣，故纔以楊州營移屬，朝家事體，不當顛倒，還移守禦廳，則以他邑軍兵，添給何如，南曰，**南陽**軍兵一千六百名，方屬於摠戎廳，以**南陽**，移屬守禦廳何如，右議政李曰，臣亦在外，與領議政南相議，依此移屬似可矣，行知敦寧府事申汝哲·刑曹判書徐文重曰，**南陽**之於廣州，亦是接界之地，道里不如楊州之便近，軍數亦不如楊州之多足，可補其空缺，此外他無變通之道矣，上曰，摠戎廳，不可不備三營，守禦空缺之代，亦不可不充給，**南陽**雖曰，稍遠，猶愈於終不得其代，以**南陽**移屬於廣州，楊州軍兵，則東伍·牙兵·雜色，依前定奪，一併移屬於摠戎廳可也。

又所啓，頃因御史書啓帖文，年限石數，一依古規事判下，而丁丑以前，則文書蕩失，考見丁丑以後事目，則累減石數，非止一再，今一依丁丑後初頭定數爲之乎，抑爲斟酌改定耶，上曰，當初定數幾何，南曰，臣亦不能詳記其石數，而丁丑·戊寅年間，及先朝庚子以後，累度變改，而概其石數，益漸減少，至於年限之減定五十，乃是近日事目矣，上曰，與賑廳堂上，詳議參酌，更爲稟定可也。

<비변사등록 41책, 숙종 13년 1687년 11월 05일(음)>

## 정치/군사

### 廣州留守 李沆 등이 守禦廳 所屬 楊州 軍兵을 摠戎廳에 移給하는 문제를 건의하다

이번 4월 초3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광주유수 이항이 아뢰기를 "요전 총융청에 군병이 적은 때문으로 수어청 소속의 양주(楊州) 군병을 총융청에 옮겨주고, 그 대신을 총융청 소속의 **남양(南陽)** 군병을 수어청에 옮겨주도록 하였는데 신의 망녕된 생각으로 불가하다고 여깁니다. 옛날 효종(孝宗) 때에 특별히 양주진을 남한산성에 이속시켰는데 이는 대체로 양주진이 남한산성과 거리가 가장 가까워 만약 급한 일이 있어 아침에 명령하면 저녁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사명(李師命)과 구일(具鑑)이 감히 망녕스레 진달하여 군병을 바꾸는 일이 있도록 하였으니 식견있는 자라면 누가 한심스럽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남한산성에 소속된 각 영(營)의 군병과 좌우 부(部)의 아병을 합하여 계산하면 그 숫자가 2만 3천 명이 되는데 잡색군을 제외하면 사실 1만여 명뿐인데 그전부터 의논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2만 명이 못되면 성첩을 지킬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이 말과 같다면 부족되는 수가 7천여 명에 이르는데 이는 새 성을 쌓기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원래의 성과 새 성의 첩(堞)을 합하면 2천 4백 20여 첩인데 1첩마다 5명씩 마련하면 남는 군병은 6백여 명에 불과합니다. 이 나머지 군병으로 4대문(大門)과 12암문(暗門)을 나누어 지키게 한다면 빈약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양주의 3천여 명의 군병을 갑자기 **남양의** 1천여 명의 군병과 바꾼다면 남한산성의 빈약함은 그전보다 더욱 심합니다. 원래 산성의 병영에 소속된 일곱 고을은 먼 곳은 4~5일 길이며 가까워도 2~3일 길이 못되지 않습니다. 또 충청도의 아병도 3~4일 거리이며 각 둔(屯)의 아병으로 영서(嶺西)에 있는 자는 거리가 서로 멀 뿐만 아니라 모두가 근거지도 없이 떠도는 백성들이므로 급한 변란에 나올 것으로 기필할 수가 없으니 이로써 살펴본다면 남한산성은 한 군데도 믿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여주영(驪州營)과 죽산영(竹山營)도 모두 2일 길인데 **남양의** 거리도 여주나 죽산에 다름이 없으니 어찌 양주처럼 군병도 많고 거리도 가까워 아침에 명령하면 저녁에 이를 수 있는 것과 같겠습니까? 성첩의 수는 더하고 군병은 적어졌는데 남한산성이 또 양주를 잃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성첩을 계산하여 나누어 지킬 수 있겠습니까? 훗날을 위한 길은 걱정과 염려가 신의 생각엔 이보다 지나칠 것이 없을 듯합니다. 입시한 대신들에게 하문하시고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고, 영의정 권대운이 아뢰기를, "양주에서 남한산성까지는 한 참[一息]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양주의 군병은 3천여 명이며 **남양의** 군병은 겨우 천여 명인데 이를 서로 바꾸어 귀속시키는 것은 참으로 부당합니다. 보장(保障)의 중요한 곳을 어찌 이같이 허술하게 하겠습니까? 양주는 그전대로 남한산성에 되돌려 주되, 총융청도 중요하여 **남양의** 한 고을만을 줄 수 없으니 다른 고을 몇 곳을 더 준다면 양쪽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하였으며, 우의정 김덕원(金德遠)이 아뢰기를, "사체는 실로 그러합니다. 그러나 경기에는 본래 병사가 없고 총융사는 곧 하나의 병사입니다. 당초에 5영(營)의 군제가 있었으나 2영은 일찍이 강화에 떼어주어 총융청에 남은 것은 3영 뿐이므로 모양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양주는 본래 총융청 소속이었는데 효종(孝宗) 때에 남한산성에 떼어준 것입니다. 정묘년(숙종 13년, 1687)엔 총융청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의논이 있었는데, 김수항(金壽恒)이 일찍이 총융사와 광주부윤을 역임하여 피차간의 형편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그 이해관계를 진달하여 총융청에 되돌려 소속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남한산성에 옮겨준다면 양주의 대신을 획급해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양** 군병의 숫자는 천여 명에 불과하

여 반드시 진무영(鎭撫營)소속 몇 고을의 군병을 더 주어야만 양주 군병의 숫자와 대등할 수가 있고 3영의 군제도 모양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무영이 이 몇 고을의 군병을 잃게 되면 그 이해관계가 어떠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은 꼭 동쪽을 깨뜨려 서쪽을 보충하는 것 같아 초기의 변동을 자세히 살펴서 하지 않으면 후일에 반드시 난처한 근심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편리 여부를 총융사와 진무사에게 자세히 물어보고 조용히 처리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하였고, 좌의정 목래선(睦來善)이 아뢰기를, "신이 병자년에 남한산성에 들어갔으므로 그 형편의 대략을 아는데, 양주의 군병은 산성에 거뒀었으나 기타 산성 소속의 먼 진영(鎭營)의 군병은 들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양주진은 도로 남한산성에 바꾸어 주고 그 대신은 남양과 몇 고을의 군병을 총융청에 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였으며, 영의정 권대운이 아뢰기를, "강화에는 진무사가 설립된 뒤에 황해도 여러 고을의 군병을 많이 주었으니 비록 세 고을을 덜어 총융청에 귀속시키더라도 부족한 근심은 없겠습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당초에 잘 변동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전 유수들도 연달아 다투는 것이 있었다. 총융사와 진무사가 상의하여 품달하고 처리케 하라."하였다.

今四月初三日，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廣州留守李沆所啓，向以摠戎廳軍兵數少之故，守禦廳所屬楊州軍兵，移給於摠戎廳，而其代以摠戎廳所屬南陽軍兵，移給於守禦廳，臣之妄料，竊以爲不可也，昔在孝廟朝，特令楊州鎭移屬本城，蓋以楊州之鎭，去本城最近，脫有緩急，朝令夕至之故也，李師命具鎡，乃敢妄陳，致有軍兵移易之舉，識者孰不寒心，本城所屬各營軍兵及左右部牙兵，合而計之則其數當爲二萬三千餘名，而除却雜色軍，則其實一萬餘名也，從前議者，以爲非二萬人，則莫可守堞，誠若此言，則不足之數，至於七千餘名，此則新城未築前之說也，元城新城之堞，合爲二千四百二十餘堞，以每堞五各磨鍊，則餘軍不過六百餘名，以此餘軍，分守於四大門及十二暗門，決知其單弱，而今以楊州三千餘名之軍，猝換南陽一千餘名之軍，本城單弱，比前益甚，其原城營所屬七邑，遠則四五日程，近亦不下於二三日程，湖西牙兵，亦在三四日之地，各屯牙兵之在嶺西者，非但道里之相遠，舉皆無根着流離之民，臨急赴難，實未必，由此觀之，南漢無一可恃矣，驪州營·竹山營，亦皆二日程，南陽道里之遠，無異於驪州竹山，豈若楊州之兵多而地近，朝令而夕至哉，城堞則有加，軍兵則有減，南漢若失楊州，則將何以計堞分守乎，異時之深憂遠慮，臣恐無過於此矣，下詢于入侍大臣而處之，何如，領議政權曰，南漢之於楊州，相距不過一息，且楊州兵三千餘名，南陽兵僅千餘名，則其所換屬，誠爲不當，保障重地，何可若是其虛疏乎，楊州則依前還屬於南漢，而摠戎廳亦重，不可只給南陽一邑，若加給他邑數處，則似爲兩便矣，右議政金曰，事體則誠然，而但京畿本無兵使，摠戎使，卽一兵使也，當初有五營之制，而二營則曾已割屬於江華，摠戎廳所存，只是三營故不成貌樣，楊州本屬摠戎廳，而孝宗朝割給於南漢矣，丁卯年間，有還給摠戎廳之議，而金壽恒曾經摠戎使及廣州府尹，詳知彼此形勢，故陳白利害，還屬於摠戎廳，今又移給於南漢，則楊州之代，不可不割給，而南陽軍兵其數不過千餘名，必須加給鎭撫營所屬數邑軍兵，然後可當楊州軍兵之數，而三營兵制，可以成樣，鎭撫營失此數邑，亦未知其利害之如何，茲事比如破東補西，初期變通，若不詳審，則後必有難處之患，以其便否，詳問於摠戎使及鎭撫使，從容處之似可矣，左議政陸曰，臣於丙子，入於南漢故概知其形勢矣，楊州軍則收入山城，其他所屬遠營軍則皆不得入楊州鎭，則還爲換給於南漢，其代以南陽及數邑軍兵量給於摠戎廳，似好矣，領議政權曰，江華則設立鎭撫使後，多給黃海道諸邑軍，雖捐此三邑，屬於摠戎，宜無不足之患矣，上曰，當初不善變通之故，曾前留守亦連有爭執之事，與摠戎使鎭撫使，相議稟處。

<비변사등록 43책, 숙종 15년 1689년 04월 04일(음)>

정치/군사

楊州鎭의 軍兵을 南漢山城에 還屬하고 南陽 등의 軍兵을 摠戎廳에 劃給하도록 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운운'하는 일을 계하하셨습니다. 양주진(楊州鎭)의 군병을 그전대로 남한산성에 다시 소속시키고 **남양(南陽)**과 진무영 소속인 안산(安山)·금천(衿川)·양천(陽川) 등 고을의 군병은 총융청에 떼어 줄 것을 이미 탐전에서 진달하였습니다. 이로써 수어청·총융청·진무영에 분부할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本司啓辭，云云事啓下矣，楊州鎭軍兵，依前還屬於南漢山城，**南陽**及鎭撫營所屬安山·衿川·陽川等邑軍兵，劃給於摠戎廳之意，已爲陳達於榻前，以此分付于守禦廳·摠戎廳·鎭撫營之意，敢啓，答曰，知道。

<비변사등록 43책, 숙종 15년 1689년 09월 03일(음)>

정치/군사

左議政 陸來善 등이 摠戎使 물력의 板蕩함 등에 대해 논의하다

이번 4월 23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좌의정 목래선(睦來善)이 아뢰기를, "군문의 너무 많은 폐단을 신이 이미 진달하였습니다마는 폐단이 있다 하여 혁파할 수있으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못하면 총융청처럼 한갓 이름만 있고 전연 실속이 없으니 참으로 극히 허술한 일입니다. 나라에 만에 하나 변란이 있게 되면 총융사는 경기의 군병을 영솔하여 적과 교전하여야 하니 그 책임이 실로 막중하나 물력이 판탕(板蕩)하여 거의 군문으로서의 모양새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융사 노정(盧錠)이 이점에 대하여 자주 그 폐단을 말하고 있고, 또 앞으로 만일 산릉 행행의 거동이 있으면 총융사는 혹은 여가를 따르기도 하고 혹은 서울을 지키기도 하여야 하는데 각종 군비가 모양을 이룰 길이 없으니 극히 민망하고 답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기왕 혁파하지 못할 것 같으면 이렇게 구차하게 놔둘 수는 없다. 어제 노정의 장계를 보니 그 폐단을 자세히 진술하고 또 소청도 있었다."하였다.

좌의정이 아뢰기를, "총융청의 군병 4백여 명을 강화로 넘겨줄 때에 조총과 환도(環刀)등의 물건까지 아울러 넘겨주었는데 강화에서 값아준 은자 1천 9백여 냥으로는 넘겨준 군기의 수량을 제대로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장계의 후록(後錄)에서 모두 값을 매겨 청하였으나 국고가 넉넉하지 못하니 값아줄 계책이 없습니다. 여러 군문의 각종 집기(什器)가 매우 많은데 혹 불행한 일이라도 있게 되면 그 많은 군기를 버리고 가야할 처지이니 그 여유분을 참작해서 넘겨주면 매우 편리하고 좋을 듯합니다마는 각 군문에서 혹 반대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신이 지금 외람되게 군기시(軍器寺) 도제조의 소임을 맡고 있는데 군기시에는 조총과 환도가 많이 있습니다. 만일 넘겨주러시는 명만 계신다면 신도 형편에 따라 내주겠습니다. 기치(旗幟)에 있어서는 평안 감·병영의 은화를 장사꾼에게 빌려주었다가 비단으로 이자를 붙여 대신 받아 창고에 쌓아 두었는데 교대한 관원이 비록 산매(散賣)하고자 하여도 그 값이 본전에서 부족이 생길까봐 공간을 열지 못하고 질질 끌고서 썩는대로 내버려두고 있으니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그러니 경관(京官)을 내려보내서 조사하여 그 물량을 안 뒤에 들어가야 하는 수량을 헤아려 총융청에 떼어주면 역시 편리하고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3군문을 통틀어 여유있는 군기는 참작해서 넘겨주고 군기시에 저장되어 있는 조총과 환도도 적당량을 넘겨주며 기치는 평안 감·병영에 보관되어 있는 비단 등의 물건을 떼어주는 것이 좋겠다. 다만 지금은 이것으로 혹 보수(補修)할 것도 있는데 앞

으로 개비(改備)할 때에는 어떻게 이어나가겠는가? 이 역시 염려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이다."하였다.

목래선이 아뢰기를, "신이 외방에 있을 때에 제신과 상의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아뢰합니다. 이번에 적몰(籍沒)하여 미처 처분하지 못한 전답을 총융청에 떼어 주고 둔전을 설치하여 세를 받게하면 비록 수량은 보잘것 없을 터이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하였고, 호조판서 오시복(吳始復)이 아뢰기를, "김익훈(金益勳)의 전답은 이미 어영청에서 받아냈고 김석주(金錫胄)의 전답은 일전에 입시하였을 때에 신이 진달하여 상평청에 넘겨주어 다만 이사명(李師命)·이광한(李光漢)·박빈(朴贇)의 전답만이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번에 적몰하여 미처 처분하지 못한 전답은 호조로 하여금 모두 총융청에 떼어주게 하는 것이 좋겠다."하였다.

어영대장 이의징(李義徵)이 아뢰기를, "봉화를 근실히 하고 척후를 멀리까지 하는 것은 바로 국방을 튼튼히 하는 제일의 계책이라 하겠습니까. 수원은 경기의 중진(重鎭)으로 7천의 병마를 거느려 실로 완급에 믿을 만한 곳이지만 봉수(烽燧)에 한해서는 허술함을 면치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작은 걱정이 아닙니다. 양성(陽城)의 괴태(槐台) 봉수는 수원(水原)의 천주(天柱) 봉수와 연락하고 천주 봉수는 남양(南陽)의 염불(念佛) 봉수와 연결되는데 천주에서 수원까지는 거의 50리가 되며 그 사이에는 높은 봉우리가 중첩해 있고 바라보기에 장애가 많아 설사 봉화를 올려 경보를 알리더라도 바로 알 길이 없고 반드시 봉수군이 직접 와서 알려주어야만 비로소 급한 일이 있는 줄을 알게 됩니다. 수원부의 방어사는 많은 군병을 거느리고 서울의 지척에 있으면서도 변경 소식이 위급함을 즉시 알지 못하니 어찌 매우 우려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본부의 남쪽 5리되는 곳에 독성산성(禿城山城)이 있고 그 봉우리는 주위에서 가장 높으니 만일 이곳에 봉수를 설치하면 남으로 괴태에 응하고 서로 천주를 비추므로 삼남의 경보를 알리는 일은 일각(一刻)이면 닿을 수 있으니 천주의 봉수군이 50리 길을 와서 알려주는 것을 앉아서 기다린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과는 그 완급이 천지懸隔(天地懸隔)일 뿐만이 아니겠기에 감히 이렇게 진달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 말은 참으로 옳다. 수원은 경기의 중지(重地)인데 봉수로 경보를 알리는 일은 이토록 허술하니 매우 염려스러운 일이다. 독성에 봉수를 더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하였다. (…)

今四月二十三日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左議政陸所啓，軍門太多之弊，臣曾已陳達，而以其有弊而革罷，則已，若不得罷，則如摠戎廳，徒有其名，而全無其實，誠極虛疏，國家，脫有緩急，則摠戎使，率畿內軍兵，與敵交鋒，其責任，誠爲繁重，而物力板蕩，殆不成軍門模樣，故摠戎使盧錠，數言其弊，且言前頭若有陵幸之舉，則摠戎使，當或爲隨駕，或爲留都，而各樣軍物，無路成形，極可悶慮云矣，上曰，既不可罷，則不宜如是苟且昨見盧錠狀啓，則備陳其弊，而又有請矣，左議政曰，摠戎廳軍兵四百餘名，移送江華之際，竝給烏銃環刀等物，而以江華所償銀子一千九百餘兩，無以準備其所給軍器之數，狀啓後錄中，皆爲折價以請，而國用不敷，無計覓給，諸軍門各樣什物，其數甚多，或有不幸，則許多軍器，勢將委而去之，以其有餘者，參酌移送，則似甚便好矣，然各軍門，或不無持難，而臣方待罪軍器都提調之任，該寺多有烏銃環刀，若有移給之命，則臣亦當從便給之，至若旗幟，則平安監兵營銀貨，見貨於商賈者，或以鎬段剩價代捧，積置庫中，故交代之官，雖欲散賣，恐其價之欠縮於本銀之數，不敢開庫，陳陳相因，任其腐敗，誠爲可惜，下送京官摘奸知數後，量其容入，劃給該廳，則亦似便當矣，上曰，通三軍門軍器之有裕者，參酌移給，軍器守所藏烏銃環刀，亦爲量宜移給，而旗幟，則以平安監

兵營所藏錦段等物，劃給可也，第卽今則或可以此修補，前頭改備之際，何以繼之，此亦不可不慮處也，睦曰，臣在外之時，與諸臣有相議之事，故敢達，今番籍沒，未及區處，田畝移給，該廳使之設屯收稅，則數雖零星，猶勝於無矣，戶曹判書吳始復曰，益勳田畝，既自御廳受出，錫胄田畝，臣於頃日入侍時，陳達移屬常平廳，只有李師命·李光漢·朴贊等田畝矣，上曰，今番籍沒，未及區處，田畝，令戶曹竝爲劃給該廳，可也，御營大將李義徵所啓，謹烽火遠斥候，乃是備邊之長策也，水原，以畿輔重鎮，擁七千兵馬，實爲緩急可恃之地，而烽燧一款，未免疏漏，誠非細慮也，陽城槐台之烽，相應於水原天柱之烽，天柱之烽，相應於南陽念佛之烽，而天柱之距水原，幾至五十里，其間有重峯疊嶂，障礙望眼，設有舉烽報警之事，無路卽知，必待烽軍來告，然後始知其有急，本府防禦使，既領重兵，居在京城咫尺，而邊報警急，不能卽知，豈非可慮之甚者乎，本府南距五里之內，有禿城山城，而其峯最高，若置烟臺於此，則南應槐台，西照天柱，三南報警之事，一刻便遠，與其坐待天柱烽軍之五十里來告，然後始知者，其緩急，不啻相懸，故敢此仰達矣，上曰，此語誠然矣，水原，乃是畿輔重地，而烽燧報警之事，若是疏漏，殊甚可慮，禿城烟臺，加設可也，(…)

<비변사등록 44책, 숙종 16년 1690년 04월 25일(음)>

#### 정치/군사

**水原의 軍兵은 紀律에 폐단이 있으므로 更張해야 한다는 府使 李萬元의 뜻을 아뢰다**

형조판서 윤이제(尹以濟)가 아뢰기를, "신이 지난번에 경기 지방 3영(營)을 순회, 검열한 바 있었는데, 장단(長湍)·남양(南陽) 등의 군병은 대부분 착실치 못했으니 대체로 각 읍 군병이 모일 때 정돈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원(水原)의 경우 한 고을 군병은 마·보·잡색(馬步雜色) 합하여 거의 7천 여인에 달하였고, 자못 기율(紀律)이 있어 급박한 사태에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 폐단이 없지 않아 제때에 경장(更張)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일에 염려할 점이 많습니다. 본부의 부사 이만원(李萬元)은 신으로 하여금 이러한 뜻을 아뢰어서 변통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이를 아뢰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수원부사 이만원을 올라오게 하여 묘당에 품의하여 변통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하였다.

刑曹判書尹以濟所啓，臣頃者巡閱畿內三營長湍·南陽等處，軍兵多不着實，蓋緣各邑軍兵聚會之際，不得整齊，而水原則一邑軍兵，合馬步雜色，殆至七千餘人，頗有紀律，緩急可恃，而第其中不無弊端，若不及時更張，則前頭之事，多有可慮者，本府府使李萬元，欲令臣，以此意有所陳達而變通故敢此仰達矣，上曰，水原府使李萬元，使之上來，稟議於廟堂，以爲變通之地可也.

<비변사등록 45책, 숙종 17년 1691년 11월 28일(음)>

#### 정치/군사

**同副承旨 朴泰淳 등이 南陽에 배당된 水軍을 줄여달라고 건의하다**

오늘 초3일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할 때에 동부승지 박태순(朴泰淳)이 아뢰기를 "남양(南陽)은 지역이 좁아 민호(民戶)가 4천여 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양반(兩班)·공천(公賤)을 제외하고 양민(良民)으로서 군역에 응할 수 있는 자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고을 양역(良役)의 수는 자그마치 2천여 명에 달하니 매우 유지하기 어렵고, 그 가운데 수군(水軍)은 호보(戶保)와 아울러서 6백여 명인데 수군은 군역 가운데 가장 고되고 천합니다. 육군의 자손으로는 으레 보충하지 못하고, 반드시 수군의 자손으로서 대대로 그

역을 전담하므로 세초(歲抄)를 맞이할 때마다 한정(閑丁)을 찾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래된 도망·노제(老除) 및 연한이 경과한 부류의 경우 곧 대신 보충할 수 없어 1년, 2년에 그 수가 매우 많습니다. 지난번 비국의 공사(公事)로 인하여 노제 연한이 찬 부류들에게 직접 후임을 보충하게 하니 모두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본 고을의 수군으로서 자식 손자가 있는 자는 포대기에 있을 때부터 이미 입안(立案:신역에 대한 등록)을 내어 앞으로 직접 대신할 소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 많고 제대하지 못한 자는 집안에 남정(男丁)이 없는 사람입니다. 노제하고 대신 보충하는 것이 어찌 소원이 아니겠습니까만 실로 후임을 구할 수 없는 형편이고, '오직 죽은 뒤에 군역에서 벗어날 뿐입니다.'고 하니 매우 서글픈 말이며, 그 정경은 몹시 가여웠습니다. 이는 비단 이들의 정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록 군정(軍情)으로 말하더라도 늙고 병들어 마을 출입도 임의로 할 수 없는 자를 대오(隊伍)에 편입하였으니 매우 허술합니다. 군역이 번거롭고 무거움은 비록 전국 공통의 폐단이나 작은 고을의 수군이 이와 같이 수가 많음은 실로 다른 읍에 없는 폐단입니다. 대체로 들은즉 본 고을에 수군이 본래 이처럼 많지는 않았으나 십수 년 전 다른 읍의 액수를 본 고을에 배당하여 그 폐단이 지나치게 우심(尤甚)한 것이며, 백성들이 살아가지가 어렵게 되었으니 변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고, 영의정 남구만(南九萬)이 아뢰기를, "일의 변통하기 어려움이 이릅니다. 과거에 산군(山郡)의 수군은 쓸모가 없다하여 연해에 배정하였으며, 연해에서는 또 편중되게 역이 고되다하여 도로 폐지하였습니다. **남양의 수군**은 산군에서 옮겨 배정하여 아직도 폐지하지 않은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본도에 물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본도로 하여금 사문(查問)한 후에 여쭙어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하였다.

今閏五月初三日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同副承旨朴泰淳所啓, **南陽**地方狹小, 民戶不過四千餘戶, 除兩班公賤之外, 良民之可應軍役者無多, 可知, 本邑良役之數多至於二千餘名, 已極難支, 其中水軍戶保竝六百餘名, 水軍, 在軍役中最苦且賤, 陸軍子校例不得移定, 必以水軍子孫, 世傳其役, 故每當歲抄時, 閑丁之搜得甚難, 如久遠逃亡老除過限之類, 趁不得代定, 一年二年, 其數甚多, 頃因備局公事, 老除年滿之類, 使之自得代定, 則舉皆垂涕言本邑水軍輩有子若孫者, 自在襁褓時, 已呈出立案, 以爲他日自代之地, 年老未除者, 家無男丁之人也, 老除代定, 豈非至願, 而實無得代之勢, 惟當死後免役而已云, 言之甚慙, 其情極可矜憐矣, 此不但渠輩情理如此, 雖以軍情言之, 老病而鄉里出入亦不能任意者, 名編行伍, 殊甚虛疏矣, 軍役繁重, 雖是八路通共之弊, 而小邑水軍若是數多, 實他邑所無之弊也, 概聞本邑水軍之多本不如此, 而十數年前他邑額數, 割移於本邑, 其弊殆甚民不聊生, 不可不變通矣領議政南曰, 凡事變通之難如此, 頃年果有以山郡·水軍爲無用, 移定於沿海, 而沿海又以苦役之偏爲言, 故還罷矣, 未知**南陽**水軍, 則自山郡移來, 而猶未還罷耶, 查問於本道處之, 似宜矣, 上曰, 令本道查問後稟處可也.

<비변사등록 48책, 숙종 20년 1694년 05월 03일(음)>

## 정치/군사

### 特進官 尹趾善 등이 南陽에 水軍 수를 줄이자고 건의하다

이달 초5일 주장 입시 때에 특진관 윤지선(尹趾善)이 아뢰기를, "승지 박태순(朴泰淳)이 탐전에서 아뢰 바 있는 **남양(南陽)** 수군의 수가 많아 유지하기 어려운 폐단에 대하여 조사하여 탐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경기 수사 김세익(金世翊)이 **남양**의 육군을 양성(陽城) 등의 고을과 바꾸었는데 그 수가 자그마치 6백여 명에 달하니 변통치 않을 수 없다고 치계하였으며 신조(臣曹)에서 복계하여 수·육군을 도로 바꾸는 외에 달리 좋은 방법이 없으나 일이

대단한 변통에 해당하므로 묘당으로 하여금 여쭙어 처리케 하였고, 묘당에서도 이와 같이 시행할 것을 복계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요즘 각 읍의 보고를 본즉 수·육군의 교환은 세월이 오래되어 한 사람도 당사자가 현존한 경우가 없고, 대신 보충된 양민(良民)을 갑자기 수군으로 전속시킨다면 그 가운데에는 천역(賤役)에 배정해서는 안 될 사람도 많이 있으니 그들의 호소는 한이 없을 것이며, 또 서울 군문에 나누어 지급한 자는 그 대신 수를 채워서 보낼 길이 더욱 없다 하였으니 사정이 곤란함은 과연 그 보고와 같습니다. 그리고 양성 등 고을의 군인으로 본조에 진정하는 자가 끊이지 않으니 이로써 그 고통스런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고을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도리어 여러 읍 여러 사람의 원망을 산 것입니다. 또 들은즉 연변 각 읍 수군의 수가 **남양**에 못지않은 경우도 있다 하니 이 문제를 도로 중지하느냐의 여부를 다시 대신과 상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다시 논의하여 품정하는 것이 좋다."하였다.

今十月初五日晝講入侍時特進官尹趾善所啓，承旨朴泰淳榻前陳達南陽水軍數多難支之弊，因有查問之舉，京畿水使金世翊，以南陽陸軍與陽城等邑相換，其數至於六百餘名之多，不可不變通之意馳啓，臣曹覆啓以水·陸軍還爲相換之外無他善策，而事係大段變通，令廟堂稟處爲辭，廟堂亦以此施行之意，覆啓蒙允矣，近見各邑所報，則水陸軍相換，歲月已久，無一人當身見存者，代入良民，猝然移定於水軍，其中亦多有不宜定於賤役之人，其所呼冤，罔有紀極，且有劃給於京軍門者，其代則尤無充數移送之路云，事勢之難便，果如其所報，而陽城等邑軍人之來呈本曹，相續不絕，以此可知其痛迫之狀矣，爲革一邑之弊，反致諸邑衆人之怨，且聞沿邊各邑水軍之數，不下於南陽者亦或有之云，此事之還寢與否，更議於大臣而處之，何如，上曰，更議稟定可也。

<비변사등록 48책, 숙종 20년 1694년 10월 06일(음)>

## 정치/군사

### 領議政 南九萬 등이 南陽 水軍의 폐단에 대해 건의하다

이달 13일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할 때에 영의정 남구만(南九萬)이 아뢰기를 "지난번 승지 박태순(朴泰淳)이 아뢴 바 있는 **남양** 수군의 수가 많은 폐단에 관한 문제를 병조에 계하하였고, 병조에서는 묘당으로 하여금 여쭙어 처리하기를 청하였습니다. 병판도 비국당상을 겸하였으므로 군안(軍案)을 상고하도록 하니 말하기를 '지난번 산군(山郡)의 수군을 해읍(海邑)의 육군과 바꾸었으므로 해읍의 수군의 수가 지나치게 많으니 지금에 와서는 해읍 수군의 액수를 산군에 도로 보내는 외에는 달리 변통할 방법이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에 의하여 회계한 것입니다. 병조판서 윤지선은 또 지난번에, 산군에 바꾸어 배정한 육군은 그 당시에 당사자는 이미 없는데 갑자기 수군의 고된 역에 새로이 보충된 육군으로 다시 바꾸니, 역시 매우 억울해 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므로 각 읍의 요청과 군민(軍民)의 호소는 그지없이 시끄러우니 다시 묘당으로 하여금 여쭙어 처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신이 지난번 공릉(恭陵)의 사초(莎草)를 할 때에 능 아래에 나가니 고양(高陽)·장단(長湍)·교하(交河) 등 고을 수령들은 모두 말하기를 '수년전에 **수원(水原)**의 수군이 상언(上言)하여 각 읍의 육군과 바꾸도록 요청하였으므로 조정에서 바꾸어 배속하도록 하였으며, **수원** 수군의 노고(老故)의 대신을 각 읍에 배정하여 보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년 배정되는 수는 한 고을에 8~9명 또는 10 여명이며, 앞으로의 배정은 또 얼마일지 모르나 매우 소요스러워 감당하기 어려운 폐단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수군의 역은 육군에 비하여 고되고 수월함이 현격히 다릅니다. 과거 각 읍에는 보충하는 액수가 정해져 있으니 가벼이 바꾸어 소요스러움을 빚는 폐단이 있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럼에도 병조와

묘당에서 사정을 자세히 살피지 못하고, 다만 한 수령, 한 군인의 말만을 따라 바꾸어 원망을 빚어내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조정의 일로 말하면 마땅히 군역(軍役)을 균평하게 하여 지나치게 고되고 수월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하니, 역시 수군의 원역을 고을의 대소에 따라 균일하게 배정하여 호소하는 폐단이 없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대단한 변통을 갑자기 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이번에 이 한 사람의 상언과 한 고을의 폐단 설명으로 인하여 변통을 하게 된 것인데 이에 편의하도록 하려다가 저쪽에 원망을 사서 서로 진정하여 더욱 시끄럽게 되었습니다. 만약 크게 변통할 수 없다면 차라리 그대로 앞서의 규례를 지키는 것만 못합니다. **남양** 수군은 과거 각 읍에 배정하여 이미 보충한 자 외에 금년 새로운 배정은 **수원**으로 하여금 대신 보충하도록 하고, 다시는 각 읍에 배정치 말라고 도신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우선 이와 같이 분부하는 것이 좋다."하였다.

今十月十三日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領議政南所啓, 頃者承旨朴泰淳, 陳達南陽水軍數多之弊, 啓下兵曹, 自兵曹請令廟堂稟處, 而兵判亦兼備局堂上, 故使之考出軍案, 則以爲頃者以山郡水軍換海邑陸軍, 故海邑水軍之數偏多, 到今還送, 海邑水軍之額於山郡之外, 無他善變之道云, 故依其言回啓矣, 兵曹判書尹趾善, 又於頃日以山郡換定之陸軍, 已無其時當身, 猝然以水軍苦役, 更爲相換於新定陸軍, 則亦甚冤苦, 故各邑之請報軍民呼訴, 不勝其紛紜, 請更令廟堂稟處矣, 且臣於頃日恭陵改莎草時, 進去陵下, 則高陽·長湍·交河等邑守令, 皆言數年前**水原**水軍呈上言, 請與各邑陸軍相換, 故自朝廷許其換定, 凡**水原**水軍老故之代, 分送於各邑, 使之充定, 逐年分送之數, 一邑或八九名十餘名, 前頭分送, 又未知幾許, 而極爲騷擾難堪之弊云, 凡水軍之役, 比之陸軍, 苦歇懸殊, 從前各邑自有充定之額, 不可輕易, 以致撓動之弊, 而兵曹·廟堂不能詳察事勢, 只從一守令一軍人之言, 有此換易招怨之事, 以朝家事體之言(言之)則當平均軍役, 使無偏苦偏歇之患, 亦當以水軍元額, 從邑大小, 均一分定, 俾無呼訴之弊, 而此等大段變通, 有難猝然爲之, 今於此一人上言一邑陳弊, 拈出變通, 故欲便於此, 爲怨於彼, 互相呈訴, 益加紛紜, 如不得大變通, 則無寧姑守前規之爲得, **南陽**水軍則曾前分送各邑已充定者外, 今年新分送, 則使**水原**代定, 勿更分送於各邑之意, 分付道臣處, 何如, 上曰, 今姑以此分付可也.

<비변사등록 48책, 숙종 20년 1694년 10월 15일(음)>

## 정치/군사

**特進官 金重器** 등이 **兵士**가 순회하면서 **操鍊**하는 대신 **當該 營將**이 **거행**하자고 **건의**하다

이번 9월 19일 주장에 입시하였을 때에 특진관 김중기(金重器)가 아뢰기를, "방금 유신(儒臣)이 글의 뜻으로 진달한 말은 백성을 보호하려는 지극한 뜻이 아닌 것이 없으나 소신(小臣)은 별달리 소회(所懷)가 있어 황공하여 감히 아뢰입니다. 지난 병술년에 신이 군문(軍門)을 맡고 있을 때에 순회하면서 조련을 시킨 일이 있었는데, 이는 8년을 중지했던 나머지에 있었던 일이니 군용(軍容)이 모양을 이루지 못한 것은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예를 시험하는 데 이르러 사수(射手)가 활을 당겨 화살을 쏠 줄 아는 자가 10에 1, 2도 못되었고, 포수(砲手)로서 총알을 재이고 쏘는 법을 아는 자도 거의 없다시피 하여 재이고 쏘는 법을 전연 모르는 자는 다소 아는 자의 손을 빌지 않을 수 없었으니 보기에 지극히 한심하였습니다. 순회가 끝난 뒤에 장계한 속에서 군병의 무예에 대하여 논열(論列)한 바가 없지 않았으나 상세하지 못한 점이 있었기에 한번 입대하여 진달하려고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경기감사의 장계에 대한 회계로 보면 군병의 집합이나 점열(點閱) 등을 모조

리 정지하기로 되어 있으니, 백성의 처지에 있어서는 사실 다소 폐단을 더는 혜택이 있겠으나 군정(軍政)을 다그치는 도리로 논하자면 지극히 허술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기보(畿輔)의 삼진(三鎭)은 수원(水原)·남양(南陽)·장단(長湍)인데 수원은 본래부터 독진(獨鎭)이라서 취합(聚合)이 본 고을 백성에 불과하고, 남양과 장단은 관하에 몇 고을이 있기는 하지만 멀다 해야 60~70리에 지나지 아니하니 하루는 조련하고 하루는 시사(試射)·시방(試放)을 하기로 하면 오고 가는 날까지 합하여 4일에 불과하고 4일의 식량은 1두(斗)면 족합니다. 병사(兵使)가 순회하면서 조련시킨다면 열읍에서 접대해야 하고 군병이 여러 날을 대기해야 하니 폐가 되겠지마는 각 영장으로 하여금 군병을 취합하고 점열과 조련을 시키게 한다면 그리 큰 폐단에는 이르지 않고 군정에 도움됨은 큰 것입니다. 근년의 일로 말하자면 흉년이 겹쳐 군정을 항상 폐하다시피 하였으니 군병을 조련시킬 날이 없어 앞으로 쓸모없는 군사가 될 것입니다. 병사가 순회하면서 조련시키는 일은 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당해 영장으로 하여금 거행하게 한다면 이는 며칠 사이의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집합시켜 놓고 조련시키고 시사·시방하는 일 등을 당해 영장으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고, 지경연사 김우항(金宇杭)이 아뢰기를, "군정을 오래 폐하여 염려되는 점은 장신(將臣)의 말과 같으니 농사의 참혹함이 경기가 더욱 심한데 각 읍에서 군병을 취합할 즈음에 필시 많은 날짜를 허비할 터이니 흉년의 민폐가 어찌 적겠습니까?"하였다.

김중기가 아뢰기를, "소신이 일찍이 순력해 보았기 때문에 익히 그 도로의 원근과 날짜의 다소를 알고 있습니다. 만일 당해 영장으로 하여금 거행하게 한다면 3~4일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였고, 김우항은 아뢰기를, "비록 본 고을에서 거행하게 한다 해도 필시 5, 6일은 걸릴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가난한 백성이 식량을 싸 가지고 왕래하기가 어찌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였고, 참찬관 이진수(李震壽)는 아뢰기를, "소신이 지난 병자년간에 사사 일로 영동(嶺東)에 가서 삼척영장(三陟營將)이 순점(巡點)하는 것을 직접 보았는데 군병이 오고 가고 등대하는 데에 7, 8일이나 걸렸으니 민간에 폐를 끼침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신이 서울로 돌아온 뒤에 마침 대관의 직책을 맡게 되어 그 영장을 논파(論罷)하였습니다. 금년의 흉황은 경기가 더욱 심하니 이럴 때에 군병이 식량을 싸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틀림없이 어려운 일입니다. 장신(將臣)은 비록 군정을 걱정하여 이러한 진달이 있게 된 것이나 도신(道臣)이 이미 중지하라는 뜻으로 장계하였으니 다시 변통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하였고, 김중기가 아뢰기를, "군정이 지극히 염려되었기 때문에 지난번 이러한 뜻으로 대신에게 문의하니 대신의 의견도 역시 그렇게 여기고 소신으로 하여금 혹 진달하거나 장계로 아뢰어 변통하게 하였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양달했던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근래에는 연달아 흉년이 들어 오래도록 조련을 중지하였으니 군정이 참으로 허술하다 하겠다. 장신의 말도 의견이 있는 바이니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하였다.

또 아뢰기를, "총융청(摠戎廳)은 3군문<훈련도감·어영청·금위영>과는 달라 군졸이 모두 시골에 있고 7읍의 표하군(標下軍: 지금의 본부중대와 같음)만 서울에 있으나 태반이 남의 집에서 일을 해주는 무리입니다. 요(料)를 주는 일도 없이 항상 부리는 것은 3군문과 다름이 없으니 실로 지탱할 길이 없기 때문에 중년에 보(保)를 주었던 것은 이러한 연유에서였으나 이정청(釐正廳)에서 보를 파한 뒤로는 군병들이 실망하여 금방이라도 이산(離散)할 형편이니 수습할 길이 없습니다. 작년에 수어청(守禦廳)에서는 군병에 보를 주는 뜻으로 진달

하여 변통하였습니다. 한번 과한 보를 도로 주기는 어렵겠으나 군졸로 하여금 각자 보를 정하게 한다면 하다 못해 그 자질(子姪)로 정한다 하더라도 어렵지는 않을 것이니 일이 매우 편리하고 좋겠기 때문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라."하였다.

今九月十九日晝講入侍時，特進官金重器所啓，卽者儒臣，因文義陳達之語，無非保民之至意，而小臣別有所懷，惶恐敢達矣，曾在丙戌年，臣於待罪軍門，出巡操鍊，出於八年停廢之餘，則軍容之不成貌樣，無足怪矣，至於試藝射手，彎弓而發矢者十無一二，砲手之能解藏放之法者，亦絕無而僅有，全昧藏放之法者，未免借手於稍解者，所見極爲寒心，罷巡後，狀聞中雖不無列軍兵之技藝，而亦有所未詳，故一欲入對陳達而未果矣，今以畿伯狀聞回啓見之，則軍兵聚閱等事，一併停止，在百姓則誠有一分除弊之幸，論以詰戎之政則極爲疏虞之慮矣，畿輔三鎮水原·南陽·長湍，而水原則自是獨鎮，其所聚集，不過本府之民，南陽·長湍雖有管下各邑，遠不過六七十里也，一日操鍊，一日試射放，則竝其去來，而不過四日，四日資糧一斗足矣，帥臣巡操則列邑之廚傳，軍兵之等待多日，誠爲弊矣，若使各營將，聚閱習操，則弊不至大段，而其有益於戎政則大矣，以近年言之，飢歲荐臻，戎政常廢，軍無可鍊之日，而將爲無用之兵矣，帥臣巡操，雖難爲之，而若令該營將爲之，則此不過數日間事耳，聚閱習操試射放等事，令該營將舉行何如，知事金宇杭曰，軍政久廢之可慮，誠如將臣之言，而年事之慘，畿內尤甚，各邑聚軍之際，必費許多日子，凶歲民弊，豈其少哉，金重器曰，小臣亦嘗巡歷，故習知其道里遠近，日子久連矣，若令該營將爲之，不過三四日矣，金宇杭曰，雖使本邑爲之，必費五六日，此時貧民之裹糧往來，豈不難乎，參贊官李震壽曰，小臣曾於丙子年間，以私故，往嶺東，親見三陟營將巡點之時，則軍兵之往來等待，至於七八日之久，其爲貽弊於民間不少，故小臣還京後，適忝臺職，論罷其營將矣，今年凶歉，畿輔尤甚，此時軍兵，裹糧必難，將臣雖以戎政爲憂，有此所達，而道臣既已停止之意啓聞，則有難更爲變通矣，金重器曰，軍政極爲可慮，故向以此意，問於大臣，則大臣之意，亦以爲然，令小臣，或陳達或狀聞變通，故敢此仰達矣，上曰，近來連凶，久停操鍊，軍政誠爲疏虞，將臣之言，亦有意見，令廟堂，稟處可也。

又所啓，摠戎廳，與三軍門有異，軍卒雖皆在鄉，惟七邑標下軍則在於京中，而大半仰役於人家之類也，既無給料之事，而常時使喚，則無異於三軍門，實無支保之道，故中年給保者，蓋出於此，自釐正廳罷保之後，軍兵失望，今將離散，難可收拾矣，上年守禦廳，亦以軍兵給保之意，陳達變通矣，既罷之保，今難還給，而如令軍卒，各自得定其保，則雖以其子姪定之，亦不難矣，事甚便好，故敢達，上曰，令廟堂稟處。

<미변사등록 59책, 숙종 34년 1708년 09월 20일(음)>

## 정치/군사

### 左議政 徐宗泰 등이 정지된 가을 習操를 京畿의 각 鎭에서 시행할 것을 건의하다

이번 초10일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좌의정 서종태(徐宗泰)가 아뢰기를, "총융사 김중기(金重器)의 장계에 본청의 가을 조련을 흉년으로 인하여 정지하고. 다만 장관(將官)으로 하여금 검열하게 할 것을 결정한 바 있으나, 검열만 하는 경우 연습하는 효과가 없으니, 각 영장(營將)으로 하여금 관하 군병을 진하(鎭下)에 소집하여 조련을 행하고 시험 발사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금년 경기(京畿) 백성의 사정은 실로 염려할 만합니다. 각각 그 진(鎭)에 소집하면 왕래하는 폐단은 있으나 이러한 때에 오래 군정(軍政)을 폐지함도 매우 염려가 됩니다. 장계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고, 행병조판서 민진후(閔鎭厚)가 아뢰기를, "수원(水原)은 독진(獨鎭)이요, 남양(南

陽)과 장단(長湍)은 소속된 고을로서 모두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영장으로 하여금 소집, 연습하게 하면 군졸이 왕래할 때에 비록 그 폐단은 있으나 고을마다 순회하며 간략하게 점검하는 것보다는 나을 듯싶습니다. 그러므로 총융사가 이를 요청한 것이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총융사의 장계를 보았는데 그 말이 옳으니 장계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다."하였다.

今十月初十日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左 議政徐所啓, 摠戎使金重器狀啓, 以爲本廳 秋巡操, 以年凶停止, 只令將官點視事, 既已定奪, 而點閱而已, 則無練習之效, 以使各營將, 會管下 軍兵於鎮下, 行操練試射放爲請矣, 今年畿民形 勢, 實爲可念, 聚會於各其鎮, 且有往來之弊, 而此 時曠廢軍政亦甚可慮, 依狀啓施行何如, 行兵 曹判書閔鎮厚曰, **水原**則獨鎮, **南陽**長湍屬邑, 皆 在不遠, 若使營將聚會練習, 則軍卒來往之際, 雖有其弊, 似勝於逐邑巡點之疎略, 故摠戎使, 有此 狀請云矣, 上曰, 予見摠戎使狀啓, 則其言是矣, 依施可也.

<비변사등록 60책, 숙종 36년 1710년 10월 13일(음)>

## 정치/군사

### 京畿의 해상 방위를 위해 李宇恒을 보내 永宗 등의 변통 節目을 작성하게 하다

이번 23일 약방에서 입진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제조 민진후(閔鎭厚)가 아뢰기를, "신은 외람되이 해상 방위를 관장하라는 명을 받들었으므로 감히 진달하는 바가 있습니다. 양호(兩湖)의 경우 순무사(巡撫使)가 현재 내려갔으나 경기(京畿)에 있어서는 실로 자세히 살필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이 데리고 있는 장관(將官) 전 병사(前兵使) 변시대(邊時泰)를 보내어 인천(仁川) 이하 연해 여러 곳을 살펴보게 하였더니, 돌아와 아뢰기를, '**수원(水原)**의 삼부봉(三阜峰)과 **남양(南陽)**의 화량진주봉(花梁鎭主峰)에 요망(瞭望)을 설치할 만 하고, 부평(富平)·석곶(石串)에는 방수(防守)가 있어야 하며, 대부(大阜)·덕적(德積)에는 실로 진(鎭)을 설치하기에 적합하고, 영종(永宗)은 비록 방어사의 영(營)이라 하나 모양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수원·남양·안산(安山)·인천·부평**은 모두 해변의 요해처(要害處)인데 전혀 장비가 없으니 서둘러 변통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 화량(花梁)에서 대부(大阜)까지는 5리에 지나지 않으므로 여러 논의들은 '대부에 진을 설치하였으니 화량은 마땅히 폐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들 문제는 모두 중대하니, 한 사람의 의견으로 갑자기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신과 이기하(李基夏)는 모두 군병을 거느린 사람으로서 직접 가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조정에 여쭙고 특별히 경기수사(京畿水使)를 보내어 순시하고 치계(馳啓)하도록 하려고 장신(將臣)과 상의하니, '이우항(李宇恒)은 일찍이 장임(將任)을 지냈고 다른 직무상의 일이 없으니 가서 살피게 한다면 더욱 좋다.'고 하였는데, 그 말이 실로 그렇습니다. 이우항(李宇恒)에게 분부하여 서둘러 가서 살펴보고 이어 영종참사(永宗僉使)와 상의하여 영종 및 대부·덕적 등 여러 진의 변통할 만한 것은 절목(節目)을 작성하여 가져오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하니, 임금이 아뢰는 바에 의하여 하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해상방위(海上防衛)는 주사(舟師)를 소중하게 여기나 적이 만약 해안으로 올라오는 경우 마(馬)·보군(步軍)을 사용하여 막아야 합니다. 각각 그 가까운 곳에 따라 다소에 구애하지 말고 장정(壯丁)을 선발하되 감영(監營)과 병영(兵營)의 마군(馬軍) 및 속오(束伍)처럼 결속하여 대(隊)를 편성하고, 각 군문 소속은 승호(陞戶)와 번(番)에 오른 자를 제외한 그 나머지 보인(保人)도 모두 배치(配置)할 곳을 미리 정하여서 적이 나타났다는 통보에 따라 곧 집합하여 읍진(邑鎭)의 호령을 듣고 적의 배로 하여금 감히 와서 정박(碇泊)

하지 못하게 함은 실로 좋은 대책입니다. 저 군병들도 각각 부모와 처자를 위한 계획이니 꺼리거나 원망스럽게 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명백히 효유하고 법규를 만들 수 있게 하면 위급할 즈음에 힘이 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순무사가 내려간 뒤에 감사·병사 및 수령·변장과 거둬 상의하여 조목조목 나열하여 치계(馳啓)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신이 이를 순무사에게 말하니 '이는 아주 좋으나 반드시 조정의 분부가 있어야만 봉행할 수 있다.' 하였고, 또 대신에게 문의하니, 역시 그렇다고 하며 절목(節目)을 이미 계하하였으니, 신에게 들어가서 탐전에 아뢰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아뢰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순무사가 지금 내려가서 이에 의하여 분부하는 것이 좋다." 하였다.

今十一月二十三日藥房入診入侍時，提調閔 鎭厚所啓，臣猥承海防句管之命，故敢有所達，兩湖則巡撫使今方下去，而至於京畿，則實無詳察之道，故臣委送所帶將官前兵使邊是泰，看審仁川以下沿海諸處，則歸言水原三阜峰南陽 花梁鎮主峰，可設瞭望，富平石串，宜有防守，大阜德積，實合設鎮，永宗雖曰防營，不成貌樣，水原·南陽·安山·仁川·富平，皆是海邊要害處，而蕩然無備，不可不急變通云，且花梁距大阜，不過五里，諸議以爲大阜，既已設鎮，則花梁當革罷，此等事皆係重大，不可一人之見，遽爾施行，臣與李基夏俱是將兵之人，有難身自往見，故欲稟於朝廷，別遣京畿水使，使之巡察馳啓矣，與諸將臣相議，則以爲李宇恒，曾經將任，無他職事，若令往審則尤宜云，其言誠然，分付李宇恒，從速往審，仍與永宗僉使商議，永宗及大阜德積諸鎮可變通者，仍作節目以來，似好矣，上曰，依所達爲之，又所啓，海防，固以舟師爲重，而賊若登岸，則須用馬步軍以拒之，各從所近，勿拘多少，揀其丁壯，如監兵營馬軍及東伍，則團結作隊，各軍門所屬，則除陞一戶上番者外，其餘保人，亦皆預定信地，待賊報，應聲卽集，一聽邑鎮之號令，必使賊船不敢來泊，此實長策也，彼軍兵輩，亦各爲父母妻子計，必不至厭憚怨苦，以此明白曉諭，使得作爲成法，則緩急之際，得力必多，巡撫使下去後，與監兵使及守令邊將及覆商議，論列馳啓事，分付何如，臣以此言于巡撫使，則以爲此固好矣，而必有朝家分付，然後可以奉行，又議于大臣，則亦以爲然，而節目既已啓下，令臣入奏前席，故敢達，上曰，巡撫使今方下去，依此分付可也。

<비변사등록 60책, 숙종 36년 1710년 11월 24일(음)>

## 정치/군사

### 海寇의 방비에 관하여 突騎에게 지급할 군마가 부족하여 어렵다는 것을 아뢰다

사복시 관원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비변사의 계사에 의하면, '봉조하 남구만(南九萬)의 올린 논의에, 「정예한 돌기(突騎)를 선발하여 바다를 건너 물에 오른 보적(步賊)을 막게 해야 한다는 말은 바로 나의 뜻에 맞는다. 서둘러 강구하여 거행하지 않을 수 없으니 우선 속히 논의하여 처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른바 해구(海寇)는 비록 반드시 온다는 형세는 보이지 않으나 조정에서 이를 우려하고 있으니 그 대비와 방어하는 방법을 진정 여러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가지 일도 건백(建白)하여 설치한 것이 없으니 그지없이 황공하옵니다. 그윽히 생각해 보면 해구가 만약에 침범하는 일이 있게 된다면 바람을 타고 한 걸음에 바다 건너기를 육지와 같이 하는 경우 연해 읍진(邑鎭)의 약간의 전선(戰船)과 허약하고 적은 속오군(東伍軍)으로서 어떻게 막아 차단할 희망이 있겠습니까? 불행히 해안(海岸)으로 올라오면 미리 마군(馬軍)이 있어야만 달릴 수 있는 장기(長技)로서 돌격하여 제재함은 그 형편이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 마군은 한갓 그 이름만이 남아있고 모두 잔약하므로 전진(戰陣)의 쓰임에 대비할 수 없습니다. 근년 함경도에 친기위

(親騎衛)를 설치하고 남(南)·북관(北關)에 각각 3백인을 두었는데 규모와 체제(體制)가 매우 갖추어졌고, 선발도 정밀하여 사병은 날래고 말은 건장하였으니 위급한 사태에 사용할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은즉 그 제도는 점점 누그러져서 전만 못하다 하니 올린 논의에서 요청 한 바에 의하여 본도의 감사 및 남·북 병사(南北兵使)에게 분부하여 몸소 점검하여 늙고 병약한 자는 곧 도태시키고, 다시 정장(精壯)을 모집하여 옛 인원수를 보충하고, 승용마(乘用馬)도 잔약한 것은 역시 제거하고 수시로 징용(徵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서관(西關)의 감(監)·병영(兵營) 소속의 기병(騎兵)은 그 수가 수천 명이 되는데 탈 말을 자력(自力)으로 마련하여 치돌(馳突)할 만한 것이 적으니, 이를 믿기가 어려운 듯 합니다. 역시 본도의 감사와 병사에게 분부하여 친기위절목(親騎衛節目)에 의하여 도내의 능력과 용맹이 있는 병사를 특별히 선발하고 수시로 연습하여 갑작스런 사태에 대비하되, 그 액수에 있어서는 6~7백으로 한정하여 사세(事勢)를 살피면서 시행하게 하고, 거행한 내용을 우선 계문할 것입니다. 해서(海西)에는 어영청의 별마대(別馬隊)와 금위영의 별효위(別驍衛) 각 8백여명이 있습니다. 군병은 꽤 모두 건장하고 기예도 좋으나 승용마(乘用馬)는 본래 매우 잔약하니, 이에 반드시 특별한 선처(善處)가 있어야만 힘이 될 수 있겠습니다. 본 군문에서 감영·병영과 협의 결정하여 옛 인원수에 따라 더 선발하되 건장(健壯)한 데에 힘 써 적이 침입할 수 있는 곳에 징발(徵發)하여 대기(待期)해야 합니다. 친기위의 제도는 매년 시재(試才)하여 우등(優等)한 자를 승진시키거나 임용함은 대체로 고무(鼓舞)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근래 먼 지방의 무사(武士)들은 실망하고 침울해 하니 설치한 본 뜻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북도의 친기위와 관서에 신설한 뒤에 우등한 자를 뽑아서 특별히 임용할 것을 당초의 절목에 의하여 일체 시행해야 합니다. 또 생각컨대 전마(戰馬)는 본래 매우 적으며, 지방의 병사가 비록 스스로 힘을 다하여 갖추다 하더라도 대부분 제대로 달리지 못하니 이 문제가 가장 난처한 일입니다. 여러 목장의 말을 나누어 주어 전마로 갖추게 한다면 일이 매우 편의하나 목장의 말의 수가 두루 지급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생각컨대 볼 때 나누어 주는 것을 뒤에 예로 삼아서는 부당하며, 일이 긴박하므로 아껴서도 옳지 않습니다. 사복시로 하여금 여쭙어 처리하게 하는 것이 의당하기에 감히 아됩니다.'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곧 3도 및 본 군문에 즉시 거행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지금 이 친기위(親騎衛)가 탈 말은 싸움터에 나가 적을 방어하는데 필요이므로 건장하여 잘 달릴 것이 아니면 적합치 않습니다. 각도의 목장마(牧場馬)로서 현존 숫자에서 4살[禾] 이상을 따지면 불과 2천 7백여 필입니다. 근래 말 종자는 대부분 나빠서 비록 제주(濟州)의 경우를 들어서 말하더라도 세공(歲貢) 수백필 가운데 전마(戰馬)로 적합한 것은 역시 거의 없으니, 군병에게 나누어 줄 때에 늘 구차스러움이 걱정입니다. 그러므로 금군(禁軍) 및 훈련도감의 마병(馬兵)이 타는 것은 자비(自備)를 제외하고 대부분 체구가 작아 보기에 매물스럽고 다른 목장의 경우 더욱 심합니다. 그 가운데 울산(蔚山)·강산(江山)·강화(江華)·**남양(南陽)**·철산(鐵山) 등 목장의 말이 가장 나으나 그 수를 합하여 계산하면 1천필이 못 됩니다. 해마다 끌어내어 나누어 기르고, 가려서 변마(邊馬)로 세우며, 또 연하 친병(輦下親兵)에게 나누어 주는 데에도 오히려 부족함이 있으니, 양서에 신설되는 친기위 여러 백명이 탈 것에는 실은 미칠 희망이 없습니다. 건장한 것을 가려서 주지 않는다면 족히 적진(賊陣)으로 달려 들 수 없어 도리어 실상(實狀)이 없이 되니, 일이 난처하여 걱정이 됩니다. 감히 형세가 이러함을 대강 아뢰고, 우선 당해 도에서 선정(船定)하는 문제를 거행하고 계문하기를 기다려서 다시 헤아려 여쭙어서 처리할 것을 감히 아됩니다."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司僕寺官員，以提調意啓曰，備邊司啓辭，奉 朝賀南獻議抄選精銳之突騎，以當越海下陸 之步賊云者，正合予意，不可不急講舉行，爲先斯 速議處事命下矣，所謂海寇，雖未見其有必至 之形，而朝家既以是爲憂，則其所備禦之策，固 當預先措劃，而迄未有一事建白而設置者，不勝惶恐，竊念海寇，若或有來犯之事，則乘風一蹕，涉 海如陸，以沿海邑鎮若干戰船，單寡束伍，豈能抵 當遮遏之望，不幸登岸，則預有馬軍而後，以其馳 驟之長可以衝而制之，其勢然矣，我國外方馬軍，徒存其名，悉皆疲殘，必無以備戰陣之用，頃年咸 鏡道新設親騎衛，南北關，各置三百人，規制甚備，抄擇亦精，士驍馬健，緩急可用，近聞其制頗弛，漸 不如前，宜依獻議所請，分付本道監司及南北兵 使，親自點察，亟汰老孱，更募精壯，以充其舊額，而 所騎之駑弱者，亦令斥去，以爲隨時徵用之地，西 關則監兵營所屬騎兵，其數累千，而所騎亦是自 備，鮮有可以馳突者，此則似難爲恃，亦爲分付本 道監兵使，一依親騎衛節目，道內材勇之士，別爲抄選，時行練習，以待應卒，而其額則似當以六七 百爲限，使之量察事勢而行之，舉行形止，爲先 啓聞，海西有御營廳別馬隊，禁衛營別驍衛，各八 百餘名軍兵，則頗皆壯實，技藝亦善，而所騎之馬，本甚罷駑，此須有別樣善處而後，可以得力，令本 軍門與監兵營，通議商確，或因舊加選，專以精健 爲務，俾爲受敵處徵發之用，親騎衛之制，每年試 才優等者，必加調敘，蓋爲聳動之地，而近來遠外 武士缺望鬱抑，有非設立本意，今後則北道親騎 衛與關西新設後，取其優等，另加調用事，宜依當 初節目，一體施行，且念戰馬本甚罕少，外方軍士，雖自盡力備立，而率多不堪馳驅，此事最甚難處，若以諸牧場馬分給，以備戰騎，事甚便好，而場馬 之數，恐難遍給，然念一時分給，不當仍爲後例，事 係緊切，不當有所靳固，令司僕寺稟處宜當，敢 啓，答曰，依啓，着令三道及本軍門，劃卽舉行事，命下 矣，今此親騎衛所騎之馬，係是臨陣禦敵之 用，若 非壯健善於馳突者，莫可以各道牧場馬見存 之數，計其四禾以上，不過二千七百餘匹，而近來 馬種，舉皆駑劣，雖以濟州言之，歲貢數百匹之中，可合戰馬者，亦且無幾，分給軍兵之 際，每患苟簡，故禁軍及都監馬兵所騎，除其自備之外，率多體 少，所見埋沒，至於他牧場，尤有甚焉，其中蔚山·江 華·**南陽**·鐵山等牧場之馬最勝，而其數合以計之，未 滿千匹，年年捉出分養，擇立邊馬，又爲分給輦下 親兵，猶有不足之患，則兩西新設親騎衛數百千 名所騎，實無波及之望，若不擇給壯健者，亦不足 以馳突賊陣，反爲無實之歸，事涉難處，殊甚可慮，敢此略陳形勢之如許，而姑待該道抄選一款，舉 行啓聞後，更爲商量稟處之意，敢啓，答曰，知道。

<비변사등록 60책, 숙종 36년 1710년 12월 15일(음)>

## 정치/군사

### 左議政 徐宗泰 등이 差倭의 首譯 요청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다

이번 정월 초5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좌의정 서종태(徐宗泰)가 아뢰기를 (…) 좌의정 서종태(徐宗泰)가 아뢰기를, "바야흐로 변경(邊警)을 걱정해야 할 때를 당하여 기전(畿甸)의 연해(沿海) 고을들이 가장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신이 전일 등대하였을 때에 **남양(南陽)**과 인천(仁川)에는 무신을 차송하자고 양달하였더니 **수원(水原)** 역시 바다를 끼고 있는 곳이어서 전에 장임(將任)을 지낸 일이 있는 무신으로 차송하는 것이 사 의(事宜)에 합당할 것 같다고 장신(將臣) 중에 말한 이도 있었습니다. 본사에서 초를 잡은 계사에서는 부평(富平) 안산(安山) 등 읍도 똑같이 무신으로 차송하자는 뜻으로 품달하여 하였다가 일시에 교체하는 것도 폐단이 있기 때문에 중지하였으나 묘당의 뜻은 현 재임자가 무신만 못하다는 뜻은 아니었는데 **수원**의 전 부사 이해조(李海朝)가 이 때문에 인협하여 사 직 장계를 올리기에 이르렀고 새로 제수된 부사 유집일(兪集一)도 이해조가 무신이 아니라 하여 사면하였는데 이제 또 부임하는 것은 염치에 손상이 있다고 여기고 연해 사직소를 올

리고 아직까지 숙사(肅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진(大鎭) 중지(重地)는 문무로써 차이를 두지 않았습니 다. 유집일(兪集一)은 본래 재략이 있어 중론이 모두 촉망하였기 때문에 비록 직책이 승지이고 품계도 높았으나 의중(倚重)하기 위하여 수망(首望)하였던 것입니다. 유집일(兪集一)이 이 일로 인협하는 것은 참으로 지나친 일이고 사체에도 온당치 못하 습니다. 유집일(兪集一)을 추고하고 재촉하여 부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우의정 김창집(金昌集)은 아뢰기를, "이해조(李海朝)가 교체되기 전에 신이 요상(僚相)과 상의하기를 그가 조만간 교체되어 돌아오면 후임은 무신으로 차송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으로 수작한 바 있었는데 이해조(李海朝)가 이 일로 불편하게 여겨 사직 장계를 올리 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가 전라감사로 이배(移拜)된 뒤에 무신 중에서 마침 가합한 사 람이 없었고 유집일(兪集一)은 비록 해당한 품계도 아니었으나 재략이 있기에 과연 의망하 여 차출하였는데 결국 인협하고 오래도록 숙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은 이것이 참으로 인 협할 만한 일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제(李濟)가 당초에 전라감사가 되었을 때에도 진정(賑政)이 시급하였기 때문에 재촉하여 부임하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그가 이미 서번(西藩: 평안도)으로 이배되었으나 새 감사 이해조(李海朝)는 유집일(兪集一)이 부임하여야만 비로 소 인수인계를 마치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지금 본도의 진정이 한창 급하니 유집일(兪集一)을 재촉하여 떠나보내고 이해조(李海朝)는 그가 올라오기를 기다려 재촉하여 부임하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수원부**사 유집일(兪集一)을 추고하여 빨리 부임하게 하고 이해조(李海朝)가 올라오면 그도 역시 재촉하여 하직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개성유수(開城留守)의 사호(使號:관리사의 칭호)를 등대하였을 때에 결 정하기로 회계하였으니 오늘 의정하는 것이 좋겠다."하니, 우의정 김창집(金昌集)이 아뢰기 를, "당초 개성부에서 대흥산성(大興山城)을 쌓은 뒤에 조정에서 관리사를 제수하려고 먼저 밀부(密符)까지 주었으나 지금까지 미루어 오고 결정을 지은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조태로(趙泰老)의 소진(疏陳)으로 인하여 품의 결정하라는 영이 계셨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기 왕에 밀부까지 주었고 군정(軍丁)을 본부에 전속시켰는데 유독 사(使)의 칭호만 아낀다면 과연 타당할지 모르겠습니다."하고, 좌의정 서종태(徐宗泰)는 아뢰기를, "대흥산성은 당초 에 조정에서 대대적으로 축조하여 유수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려다가 그 뒤에는 그만 버려두 게 되고 관리사의 칭호도 따라서 중간에 흐지부지 되어 버렸습니다. 대흥산성은 서울의 어 귀를 차단한 것이니 관방(關防)의 입지로는 좋으나 청석동(靑石洞) 밖에 탄 길이 있으므로 십분 요충이 되는 곳은 아닌 듯하니 강도(江都)와 남한(南漢)에 비교하면 차이가 있겠습니 다. 그러나 기왕 비변사의 예겸당상(例兼堂上)이고 밀부도 주었으며 이제는 또 본부의 민정 을 산성에 전속시켰으니 사체와 모양이 아주 중하여 모든 일이 굳이 사호(使號)를 붙이지 않더라도 도움된 바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왕 상의한 일이니 사호를 주어도 불가할 것 은 없을 듯합니다."

하고, 형조참판 조태로(趙泰老)는 아뢰기를, "사호로 결정이 되어야만 모든 사권(事權)이 적합할 수 있는데 전후로 본직에 있던 사람들이 칭호를 얻으려 한다는 말을 들을까봐 자진 하여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가라앉아 아직까지 장령(將領)의 칭호가 없었던 것입니 다. 그래서 문서의 통보에도 다만 개성영(開城營)이라고만 칭하였으니 사권과 체모에 난편 한 사단이 매우 많았습니다."

하고, 행병조판서 민진후(閔鎭厚)는 아뢰기를, "실상(實象)이 있으면 명칭이 있는 것인데 명칭과 실상에 서로 어긋남이 있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개성유수는 비국에서 의천

(議薦)하고 또 비국의 당상을 겸하고 있으며 밀부를 주고 또 대흥산성을 전관하고 있는데 유독 사호에만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신은 사실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송도(松都)는 더없이 조잔하였는데 만일 이로 인하여 체통과 모양을 크게 넓혀 혹 폐단이라도 생긴다하면 이는 염려치 않을 수 없으니 절목을 계하할 때에 자세히 살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였다.

김창집(金昌集)이 아뢰기를, "창석동은 참으로 요로(要路)이고 하나의 관방(關防)을 이루었으니 조만간의 완급(緩急)에 힘을 얻게 될 것 같은데 기왕 관방을 설치하였으면 따로 칭호가 있는 것이 전부터 행해오던 일이었으나 중간에 버려둔 것은 유수가 된 사람이 자칭하기가 겸연쩍고 난처한 때문에 조정에서도 거론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는 사호를 준다 해도 폐단을 끼칠 사단은 없을 듯합니다."

하고, 조태로(趙泰老)는 아뢰기를, "이곳의 험고함은 가히 지킬 만하고 서도의 관방으로는 대흥만한 곳이 없으니 진정 잘 지킨다면 적이 창석동은 감히 엿보지도 못하고 길을 백치(白峙)로 돌릴 것이나 백치 또한 험고하니 잘 지킬 장수만 있다면 죽히 기각(藪角)의 형세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기왕 군문의 모양을 갖추었다면 사(使)로 부른다하여 폐단은 없을 것이니 관리사의 칭호를 주는 것이 좋겠다."하였다.

조태로(趙泰老)가 아뢰기를, "교서(敎書) 이외에 별로 덧붙일 일은 없겠습니다."하고, 김창집(金昌集)은 아뢰기를, "관리청(管理廳)은 전에 훈련도감에 속했었기 때문에 대솔한 군관이 있었으나 개성유수가 관리사를 겸하게 되었으니 도감에서는 자연 관여할 일이 없게 되었으므로 군관도 없애야 합니다."하니, 임금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今正月初五日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 左議政徐所啓, 方當憂邊之日, 畿甸·沿海等邑, 最爲可慮, 故臣於頃日登對時, 以南陽·仁川, 差遣 武臣事仰達, 而水原, 亦是瀕海之地, 亦以曾經將任武 臣差送, 似合事宜, 將臣, 亦有以此爲言者, 自本司草 成啓辭, 以竝與富平·安山等邑, 一體差遣之意, 欲 爲稟達, 而一時遞易有弊, 故中止, 廟堂之意, 非謂 卽今在任者之不及於武臣也, 而水原前府使李海 朝, 以此爲嫌, 至呈辭狀, 新除授府使俞集一, 亦謂 海朝, 旣以非武臣辭免, 則今又往赴, 有傷廉隅, 連呈 辭狀, 尙不出肅, 若夫威鎮重地, 不以文武而有間, 俞 集一, 素有才略, 群議咸屬, 故雖職在承宣, 品秩亦踰, 而爲其得重而首擬矣, 集一之以此引嫌, 誠爲過當, 事體亦涉未安, 俞集一推考, 催促赴任何如, 右議政 金曰, 李海朝未遞之前, 臣與僚相相議, 待其早晚 遞歸, 以武臣差送爲宜之意, 有所酬酢矣, 海朝以此 不安, 至呈辭狀矣, 移拜湖南監司之後, 武臣適無可 合之人, 而俞集一雖非當品, 旣有才略, 故果爲擬差, 今乃引嫌, 久未出肅, 臣未知此果爲可嫌之端也, 李 濟之初爲全羅監司時, 以賑政時急之故, 促令赴任 矣, 今已移拜西藩, 而新監司李海朝, 當待俞集一赴 任後, 始可交龜上來, 卽今本道賑政方急, 俞集一爲 先催促發送, 李海朝則待其上來, 亦卽催促赴任似 宜矣, 上曰, 水原府使俞集一推考, 使之從速赴任, 李海朝上來後, 亦爲促令辭朝可也, 上曰, 開城留守使號登對時, 定奪事回啓矣, 今日 議定可也, 右議政金曰, 當初開城府, 築大興山城 後, 朝家, 擬授以管理使, 先授密符, 而至今因循, 尙 無定奪之事矣, 今因趙泰老疏陳, 有稟定之命, 臣意則以爲旣有密符, 又有軍丁, 專屬本府, 獨於 使號靳惜, 未知其得當矣, 左議政徐曰, 大興山城, 當初朝家大段設置, 使留守主管, 其後自至委置 管理使之稱, 亦仍而中寢矣, 大興遮截, 京口關防, 形 便好矣, 而青石之外, 旁有他岐, 似非十分衝要之地, 視江都·南漢, 則有間矣, 然而旣例兼壽司, 亦有密符, 今又以本府民丁, 專屬山城, 體貌固重, 凡事雖不必 待使號, 而有所增益, 旣是當初所議之事, 授以使號, 恐無不可矣, 刑曹參判趙泰老曰, 定奪使號後, 凡干 事權, 始可協宜, 而

前後在任人，以嫌於得號，不曾自言，因循寢閣，尚無將領之稱號，故文移間，只稱開城營事權，體貌甚多難便之端矣，行兵曹判書閔鎮厚曰，有實則有名，名實相乖，則事不成矣，開城留守，自備局議薦，且兼備局堂上，且授以密符，且專管大興山城，而獨於使號，有所慳惜者，臣實未曉也，但松都，凋殘莫甚，若因此而張大體貌，或生弊端，則此不可不慮，節目啓下之時，詳察爲之好矣，金曰，青石洞，儘爲要路，作一關防，早晚緩急，似可得力，而既設關防，則別有稱號，自是應行之事，而中間委置者，不過爲留守者，嫌難自請，朝家，亦不舉論故耳，到今雖授使號，似無貽弊之端矣，泰老曰，此處險阻，儘可捍守，而西路關防，無如大興，苟能堅守，則賊不敢窺青石，而路必由白峙，白峙亦甚險阻，若有能守之將，則足爲犄角之勢矣，上曰，既設軍門貌樣，則未必以稱使有弊，管理使號，授之可也，泰老曰，教書之外，別無他增加之事矣，金曰，管理廳，曾屬於訓練都監，故有所帶軍官矣，開城留守，既兼管理使，則都監，自無干豫之事，軍官，亦當減去矣，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61책, 숙종 37년 1711년 01월 08일(음)>

## 정치/군사

### 提調 閔鎮厚 등이畿甸의海防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다

이번 3월 14일 약방에서 입진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제조 민진후(閔鎮厚)가 아뢰기를, "신이 지난번 포도대장 이우항(李宇恒)으로 하여금 기진(畿甸)의 해방(海防)을 살펴보게 하기를 청하였는데 이우항(李宇恒)이 갔다 온 뒤에 신에게 말한 바가 있었으나 신이 집에 들어 앉아 오래도록 입시하지 못하여 이제야 양달하옵니다. 이우항(李宇恒)이 말하기를 '부평(富平)의 석관포(石串浦)는 조수가 빠진 뒤에나 물이 줄어들 때에는 갯벌이 평원(平原)을 이루어 결코 적의 배가 정박할 수 있는 곳이 아니므로 구태여 따로 진보를 설치하여 방수할 것이 없고 수원(水原)의 삼부포(三阜浦)는 흥천산(興天山)의 봉수(烽燧)가 있으니 중복해서 요망대(瞭望臺)를 만들 필요가 없을 뿐더러 포로(浦路)가 구불구불 돌고 물도 얕고 그 거리가 머니 더군다나 염려할 만한 곳이 아니며 남양(南陽)의 화량진(花梁鎭)이 있는 곳은 바로 요해처이고 또 대부(大阜)와 물을 사이에 두고 아울러 우뚝하여 하나의 문호(門戶)를 이룬 듯한 형세가 있으니 그곳을 철폐하고 대부에 합칠 것이 없겠으나 다만 배를 들 곳이 없으니 이것이 흠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영 앞에 항구를 만들 만한 곳이 있으니 묘당에서 본진에 분부하여 항구를 만들어 배를 두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부(大阜)와 덕적(德積) 두 섬에 진보를 설치하는 것은 참으로 좋을 계획이나 다만 대부의 서쪽에 연흥(延興)이 있고 연흥 서쪽에 자월(紫月)이 있는 것 같고 자월 서쪽의 덕적제도(德積諸島)는 거리가 멀고 가까움이 같지 아니하나 그 사이에는 각각 바다 길 있습니다. 대부의 진보 하나로는 동해와 남해로 통하는 여러 길을 방비할 수 없으니 연흥에 옮겨서 설치하고 덕적과 더불어 각기 두 바다 길목을 관할하게 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그러나 새로 설치한 두 진보는 한갓 이름만 있고 창졸간에 선척(船隻)의 조치를 취한 길이 없으니 불가불 속히 변통하여야 하겠습니다. 인천부(仁川府)의 문학산성(文鶴山城)은 들레는 비좁긴 하나 입지(立地)가 험하고 요긴하며 또 봉화대가 있어 서쪽과 남쪽으로 바다 길 막힘없이 특 트였고 제물포(濟物浦)의 구진(舊鎭)은 인천부의 서쪽 10여 리에 있고 월진(月辰) 영종(永宗) 두 섬과 맞보고 있으며 배를 들 곳도 좋으나 진보를 강화(江華)로 옮긴 뒤에는 이미 폐허가 되었으니 극히 애석합니다. 영종(永宗)에다 방어영(防禦營)을 설치하고 월진에다 행영(行營)을 두면 갑곶[甲串] 덕적(德積) 두 나루는 장애가 많으므로 인천은 바로 바다로 나가는 첫 관문이라 하겠는데 실룡루(失龍樓) 무의(無衣) 등의 섬이 점차 치패해도 수습할 길이 없습니다. 이는 스스로

올타리를 뜯어내는 것과 뭐 다르겠습니까? 지금의 계획으로는 인천을 방어영으로 하고 제물포의 옛 성을 보수하여 선척을 갈마들게 하고 화량(花梁) 연흥(延興) 영종(永宗) 덕적(德積) 등의 진보를 관할하게 하며 또 덕적에 봉화대를 설치하고 자월(紫月) 연흥 대부(大阜) 등을 경유하여 남양(南陽)의 염불봉(念佛烽)에 이르고 인천의 문학봉(文鶴烽)에 이르게 하면 경보를 알리는 방도에 있어서는 빈틈이 없다 하겠습니까. 만일 해적의 침입이 있다고 하면 4진(鎭)의 수군을 영솔하고 앞 바다를 방어하고 육진에서 사변이 생긴다면 그 고을의 군병을 거느리고 나아가 요해처를 지켜 뒤를 끊도록 하면 가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운운'하였습니다. 그 말이 근리할 것 같은데 만일 한 사람의 소견으로 단정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혹 여러 사람에게 널리 묻거나 혹 다른 장수를 다시 보내는 것도 두루 불가할 것이 없겠습니까. 제물포의 구진을 다시 설치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인천부사(仁川府使)가 우선 백성을 초집(招集)하고 문학산성도 인천부에서 수리하되 대부(大阜) 덕적(德積) 두 진보의 절목을 병조에 분부하여 빨리 만들어 덕적 등처에 보내서 봉화를 설치하게 하면 육지와는 달라 그곳 주민으로 하여금 요망하게 하여도 아무런 불편한 점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은 급히 서둘러 거행할 일이니 아울러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묘당으로 하여금 빨리 품처하게 하라."하였다. (…)

今三月十四日, 藥房入診入侍時, 提調閔鎭 厚所啓, 臣於頃日, 請令捕盜大將李宇恒, 審察畿甸海防矣, 宇恒往來之後, 有言於臣, 而屏蟄久未入 侍, 今始仰達, 宇恒以爲富平石串浦, 潮退之後及弦 水時, 泥泔成坪, 決非賊船住泊之地, 不必別設防守, 水原三阜浦, 既有興天山烽燧, 亦不必疊設瞭望, 而 浦路透迤, 水淺且遠, 尤非可慮之地, 南陽花梁鎭, 所 處正是要害, 又與 大阜, 隔水竝峙, 作爲一戶之勢, 不 宜撤罷, 合屬於大阜, 而但無藏船之處, 此爲可欠, 然 鎭廡前有可掘港處, 自廟堂分付本鎭, 使之掘港藏 船爲好, 大阜·德積兩島設鎭, 誠爲得策, 而第 大阜之西, 有延興, 延興之西, 似有紫月, 紫月之西, 有德積諸島, 相 距離遠近之不同, 而其間各有海路, 大阜一鎭, 勢不 能捍蔽東南洋諸路, 大阜鎭, 若移置延興, 使與德積, 各轄兩海路, 似爲得宜, 而第新設兩鎭, 徒有虛號, 而 無倉卒舟艦之區劃措置者, 不可不速爲變通, 仁川 府文鶴山城, 幅員雖小, 處地險要, 且有烽臺, 西南海 路通望無礙, 濟物舊鎭, 在於仁川府西十餘里, 而與 月辰·永宗兩島對峙, 藏船之處亦好, 而移鎭江華之 後, 已成廢基極爲可惜, 永宗之設防營, 月辰之置行 營, 甲串·德積兩津之阻澌, 則仁川, 乃是渡海初程, 而 自失龍樓·無衣等諸島, 漸致蕩敗, 無以收拾, 此何異 於自毀藩籬乎, 爲今之計, 莫若以仁川爲防營, 修葺 濟物舊城, 藏置舟艦, 使之管轄花梁·延興·永宗·德積 諸鎭, 又爲設烽於德積, 由紫月·延興·大阜, 至南陽念 佛烽, 應仁川文鶴烽, 則報警之道, 可以無虞, 萬一有 海寇, 則領四鎭舟師, 捍禦前洋, 有陸警, 則率其邑兵, 進守要害, 以爲致後之地, 則可以得力云云, 其言似 今有利, 而如難以一人之見致定, 則或廣詢諸人, 或 更送他將, 俱無不可, 至於濟物舊鎭, 雖難更設, 而 仁 川府使, 爲先招聚人民, 文鶴山城, 亦自本府修治, 而 大阜·德積兩鎭節目, 分付兵曹, 使之趁速成送, 德積 等處設烽, 則與陸地有異, 使其居民瞭望, 尤無難便 之端云, 柴事, 可以急先舉行, 竝令廟堂稟處何 如, 上曰, 令廟堂速稟處, (…)

<비변사등록 61책, 숙종 37년 1711년 03월17일(음) >

## 정치/군사

비변사가 提調 등이 陳達한 防守便宜를 조항에 따라 論覆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총융사 김중기(金重器)는 진달하기를 '4도(道)의 순무사가 해

방(海防)만 살피는 것은 득계(得計)가 아니니 육읍(陸邑)까지 고루 살피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하고 또 말하기를 '도성을 굳게 지키자는 논의는 비록 합치된 의견이기는 하나 역시 만전지계(萬全之計)는 아니며 북한산은 험고하니 성을 쌓는 것이 마땅하나 군량을 많이 저장하기가 쉽지 않으니 이것이 결점입니다.'하였는데 육읍으로 거리가 아주 먼 곳은 조정에서 그 지체되는 폐단을 염려하여 아울러 두루 살피게는 못하였으나 긴요한 땅에는 역시 형편대로 살피게 하였습니다. 북한산성을 쌓은 것은 조정에서 이미 정산(定算)이 있었던 바 이므로 군향과 병기 등은 형편대로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또 말하기를 '만일 해적의 침입이 있으면 필시 먼저 강도를 공취(攻取)할 터인데 바다와 접한 3면은 모두 배를 댈 만하니 심히 걱정입니다.'하고 또 말하기를 '적이 성에 오르는 것과 강을 건너는 것은 어렵고 쉬움이 자별한 만큼 천험(天險)이 튼튼한 성만 못합니다.'하였는데 강도가 허술한 걱정은 다른 재신(宰臣)의 논의에도 이미 나와 있으나 수신(守臣)이 이미 강구한 바가 있습니다. 또 말하기를 '해적이 서남쪽에서 오면 필시 서울과 가까운 곳에 배를 댈 것이므로 강도가 아니면 인천(仁川)·**남양(南陽)**·**수원(水原)**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수원**은 큰 고을로 본래부터 군병이 강하다고 일컬어져 왔으니 물론하고 인천과 **남양**에 있어서는 무변(武弁)으로 자리에 맞게 가려서 차송하고 읍중의 남정(男丁)은 모두 신역(身役)이 있으니 모름지기 대단한 변통을 가하여 공사천을 막론하고 신역을 제하고 대오(隊伍)를 편성하여 본 고을에 전속시켜 무예를 가르쳐야 하겠으나 민역의 처리가 달리는 길이 없습니다. 신이 목격한 것으로 말하더라도 양정(良丁)의 피역(避役)은 서관(西關)이 특심하여 이름을 교안(校案)에 올리고 신역을 면하고 있는 자가 큰 고을에는 혹 4, 5천 명이 넘고 적어도 1, 2천 명이 못되지는 아니하니 만일 도태하여 군역에 충정(充定)한다면 몇만 명의 장정을 얻을 수 있을 테고 그래도 부족하면 본도의 감영의 군관(軍官) 명색만도 7만여 인이 넘는데 본영에 배 1필을 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들을 참작해서 덜어내어 교생과 아울러 납포(納布)하는 병졸로 만들어 이들을 변방에 채우는 소용으로 넘기는 것이 일의 처리상 합당하겠습니다.'하였는데 인천·**남양** 등 고을에는 무신으로 가려서 보내기로 이미 품정한 바가 있으며 각읍의 군보(軍保) 등 민정을 구분하여 무예를 익혀 사변에 조용(調用)하는 일은 이미 제도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였으나 이는 권의(權宜)에서 나온 시책입니다. 모두 신역을 제해 줌에 있어서는 마치 독진(獨鎭)과 같으니 사세가 갑자기 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서관의 정액 이외의 교생이 민역을 면피(免避)하는 수는 지극히 많으므로 인족(隣族)의 폐가 있게 되고 구제할 수 없게 되었으니 일이 극히 어이없습니다. 논자들은 모두 삼남과 함께 한번 개혁하여 정리해야겠다고 합니다. 거듭 흥황을 만났고 일이 번요로워 줄연히 행하기는 쉽지 않으나 결국에는 검토하여 변통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영의 군관 따위는 근일 매우 많이 넘겨주어 옛날의 수효는 있지 아니하나 대체로 몇 만이란 숫자가 각읍에 나누어 있으면서 전연 무예를 익히지 않고 다만 사사로 배만 받는 것이 되었으니 영문이 이러하고 어떻게 열읍의 군관 숫자가 지나침을 제재하겠습니까? 이 역시 불가불 제한을 가하여야 하겠으나 이들을 다른 도에 넘겨다 쓰는 것은 민역의 처리 때문에 일이 쉽지 않습니다. 또 육로의 관액(關陔)은 험지(險地)를 등지고 지키는 것이 마땅함을 논하고 이어 말하기를 '해서(海西)의 동선령(銅仙嶺)에는 절도사로 하여금 미리 근거지를 정하게 하고 청석동(靑石洞)은 금천(金川)·평산(平山) 두 고을 중에서 한 고을은 별영(別營)으로 삼고 한 고을은 속읍(屬邑)으로 만들어 송도(松都)의 백성과 힘을 합하여 방수하게 하며 영남의 조령(鳥嶺)은 이미 성첩을 쌓았으니 다시 논할 것이 없겠으나 죽령(竹嶺)은 영장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면 걱정할 것이 없겠고 추풍령(秋風嶺)은 비록 높기는 하나 청주영장(淸州營將)을 황간(黃澗)으로 옮기고 개녕(開寧)·금산(金山) 수

음과 함께 협력하여 지키게 하여야 합니다.'하였으며 (...)

司啓目, (...) 摠戎使金重器所陳, 以爲四道巡撫, 只審海防, 非計 宜均審陸邑, 以爲綢繆之策, 又言, 堅守都城, 雖是大 同之論, 而亦非萬全之計, 北漢絕險, 築城爲宜, 而多 峙糧餉未易, 此爲其弊是如爲白置, 陸邑途里隔遠 處, 朝家, 慮其淹延之弊, 雖不得並令遍審, 而緊要 之地, 亦使隨便巡審, 北城之築, 已有朝家定算, 餉 械等事, 自當隨便措置是白乎旆, 又言, 若有海寇, 必 先取江都, 而環島三面, 皆可泊船, 深爲可憂, 又言, 賊 之登城涉江, 難易自別, 天塹不如堅城是如爲白有 置, 江都疎虞之慮, 已具於他宰之論, 守備之策, 守臣, 已有所講究是白乎旆, 又言, 海賊, 自西南來, 必落帆 於近京之地, 非江都則如仁川·**南陽**·**水原**是也, 以雄 鎮, 素稱兵精, 而至於仁南, 宜以武弁, 隨窠擇差, 邑中 男丁, 俱有身役, 必須大段變通, 勿論公私賤, 除身役 作隊, 專屬本邑, 教技藝, 而民役區處, 他無其路, 以目 擊者言之, 良丁避役, 西關特甚, 名屬校案, 避免身役 者, 大邑, 或過四五千, 少不下一二千數, 若汰定, 則可 得累萬丁壯, 如不足, 則本道監營軍官等色目, 亦過 七萬餘人, 而不過納一疋於本營者也, 參酌捐出, 並 與校生, 而爲納布之卒, 推移於實邊用, 實合事宜是 如爲白有置, 仁南等邑, 擇送武臣, 已有稟定是白 乎旆, 各邑軍保等民丁, 部分習藝, 以待臨變調用事, 已令諸道舉行, 是出於權宜之 策, 至於並除身役, 有 同獨鎮, 事勢有難遽行是白乎旆, 西關額外校生之 避役, 其數至夥, 以致隣族之弊, 無以蘇救, 事極無謂, 議者, 皆以爲並與三南, 宜有一番釐革, 而整頓是白 乎矣, 荐當災荒, 事係煩擾, 未易猝行, 而終當商確變 通是白乎旆, 監營軍官之類, 近日移給頗多, 不存舊 數是白乎乃, 大抵累萬之數, 分處各邑, 全無鍊藝, 只 歸於私自收布, 營門如此, 何以責 列邑軍官之濫數 乎, 亦不可不爲之限節, 而以此移用於他道民役之 區處, 事有未易是白乎旆, 又論陸路關阨, 據險防守 之宜, 海西之銅仙嶺, 使節度, 預定信地, 青石洞, 以金 川·平山兩 邑中, 一邑爲別營, 一邑屬之, 與松都之民, 合力防守, 嶺南之鳥嶺, 旣築城子, 不必更論, 而 竹嶺, 以營將守之, 可以無憂, 秋風, 雖峻嶺, 宜以清州營將, 移置於黃澗, 與開寧·金山數邑, 爲協守之地是如爲 白乎旆, (...)

<비변사등록 61책, 숙종 37년 1711년 05월 20일(음) >

## 정치/군사

### 特進官 尹就商이 江華의 兵器를 本廳으로 옮길 것을 건의하다

이달 16일 주장에 입시하였을 때에, 특진관 윤취상(尹就商)이 아뢰기를, "강도(江都)는 곧 보장(保障)의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군문에서 각각 군기(軍器)를 갖추어 보내두었으며, 또 장교(將校)를 보내 점검합니다. 총융청에서도 일찍이 화약 1만여근, 연환(鉛丸) 40여만개, 대연환(大鉛丸)·대조총(大鳥銃) 등을 갖추어 두었습니다. 다만 본청은 물력(物力)이 시원찮아 쌀과 배를 강도에 비축해 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급(供給)할 길이 어렵고 특별히 감관(監官)할 길이 어려워 특별히 감관(監官)을 보내지 못하고 본토(本土) 사람으로 감관과 고자(庫子)를 정하여 본청에서 그 월료(月料)를 따져 보내 지키게 하니, 수시로 별에 쪼이지 못하여 습기(濕氣)에 손상되게 하고, 한갓 앉아서 월료만 소비하니 이는 진정 변통이 되어야 할 일입니다. 또 본청 관하의 **수원(水原)**·장단(長湍)·**남양(南陽)**의 3영(營)은 모두 중진(重鎭)으로서 군병의 수가 매우 많으나 본래 변(變)에 대비한 화약과 연환을 갖추어 비축한 것이 없어, 평소 시방(試放) 할 때에도 무역해 사용하니, 앞날 갑작스런 사태에 대응할 기구를 어찌 마련하겠습니까? 강도에 있어서는 진무영(鎭撫營) 및 각 군문에서 둔것이 모두 갖추어져 조금도 부족한 걱정이 없습니다. 지금 강도에 비치한 본청의 화약·조총 등 물건을 모두 본청으로 가져와서 수를 따져서 **수원** 등 3영에 나누어 주고 본

청에 회부(會付)하게 하여 순시(巡視) 때에 점검을 받게 하고 급박한 사태에 대비하도록 하며, 나머지 수를 북한산성(北漢山城)에 옮겨 두는 것이 편의할 듯 싶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이를 아뢰입니다."하니, 임금이 보고대로 하라고 하였다.

今三月十六日晝講入侍時，特進官尹就商所 啓，江都是保障重地，故諸軍門，各備軍器送置，且遣 將校看檢，而摠戎廳，亦嘗以火藥萬餘斤鉛丸四十 萬餘箇·大鉛丸·大鳥銃等物，備置矣，但本廳，物力凋 殘，曾無米布之留儲於江都者，故難於接濟之道，不 得別送監官，以本土人，定爲監官庫子，自本廳，計送 其月料而使之典守，則不能隨時曝曬，以致傷濕，徒 然坐費廩料，此固有變通之道，而且本廳管下水原·長端(湍)·南陽三營，皆以重鎮，軍額甚夥，而元無待變藥 丸之備置者，平時試放之際，猶且貿用，他日應卒之 具，將何拮据，至於江都則鎮撫營及各軍門所置威 備，少無不足之患，今若以江都所置本廳火藥鳥銃 等物，盡數取來於本廳，較數分給於水原等三營，俾 之會付於本廳，逢點於巡歷時，以爲緩急之備，而餘 數移置於北漢山城，似涉便好，故敢此仰達，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65책, 숙종 39년 1713년 03월 19일(음) >

### 정치/군사

#### 御營大將 金錫衍 등이 式年改軍案 시행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지난달 30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접하여 입대하였을 때에 어영대장 김석연(金錫衍)이 계달하기를, "식년 개군안(式年改軍案)은 아무리 흉년을 만난다 하더라도 당년의 세전(歲前)에 거행하는 것이 준례로 되어 있습니다. 각 도는 정유 식년 개군안을 금년 가을로 물려서 행하도록 하였으나 경기 군읍은 조정에서 본래 물려서 행하도록 결정한 일이 없는데 이천(利川)·남양(南陽)·안산(安山)·진위(振威)·파주(坡州)·부평(富平) 등 6읍은 작년 10월 이내에 거행해야 할 일을 해가 지나도록 천연하고 아직껏 거행하지 않았으니 군정(軍政)에 있어 지극히 해괴한 일입니다. 모두를 추고하게 하소서. 그리고 각 도 각 읍 중에서 앞으로 개군안을 할 때에 더욱 심하게 기한을 넘기고 거행하지 않은 수령은 한결같이 논책하라는 뜻으로 각 도에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그렇게 하라고 답하였다. (...)

今八月三十日，大臣·備局堂上引接入對時，御營 大將金錫衍所達，式年改軍案，雖值凶年，趨當年歲 前舉行，已有前例，而各道則丁酉式年改軍案，雖令 退行於今秋，畿邑則自朝家，元無定奪退行之事，而利川·南陽·安山·振威·坡州·富平等六邑，則上年十 月內舉行之事，徑年遷就，尙不舉行，其在軍政，殊極 駭然，竝推考各道各邑中，前頭改軍案時，尤甚過限，趁不舉行守令，一體論責之意，申飭各道，何如，答曰，依爲之，(...)

<비변사등록 70책, 숙종 43년 1717년 09월 04일(음) >

### 정치/군사

#### 黃海監司 俞拓基가 水軍이 流亡하는 자가 많으니 騎步兵으로 變通하자고 건의하다

하직하는 감사·수령·변장(邊將)의 유대 인견(留待引見)으로 입시했을 때에 황해감사 유척기(俞拓基)가 아뢰기를, "삼가 군정(軍丁)에 관한 일로 하교하신 바가 있음을 받자옵고, 신이 감히 진달하고 싶은 바를 가지고 우러러 진달하옵니다. 신이 남양(南陽)의 수령으로 있을 때에 민호(民戶)를 상고하였더니, 겨우 5천여 호였는데, 사족(士族)·유생(儒生)·교생(校生)·목자(牧子)·공천(公賤)·사천(私賤)를 제외하면 양호(良戶)는 모두 9백여 호에 불과하였습니다. 각색의 양역(良役)은 2천 7백 명에 이르렀는데, 그 중에서 가장 괴로운 것은 수군(水軍)보다 더한 것이 없었는데, 그 수는 7백 67명이나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

록 풍년이 들어 살기 좋은 해라 하더라도 유망(流亡)하는 자들이 서로 잇달았습니다. 대개 들으니, ‘이전에 있던 수군은 원액이 많지 않았는데, 수십 년 전에 수원(水原)이 독진(獨鎭)이 된 뒤로 옮겨 붙인 자가 많아서 이와 같이 된 것인데, 혹은 20년이 넘게 도망한 자를 탈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혹은 남자를 낳고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합니다. 신이 한 유식한 사민(士民)의 말을 들었더니, ‘10여 년 전에 한 민가의 3부자가 수군의 역을 지고 있었는데, 그 아비된 사람이 밖에서 귀가해 보니, 그 처가 또 남자를 낳았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이 아이는 몇 달 안 가서 또 군인이 될 것이다. 한 집에서 네 명 수군의 번포(番布)를 바칠 길이 없으므로 형편상 반드시 유산(流散)될 것은 뻔하다. 장차 인·족(隣族)으로 하여금 피해를 입게 할 것이니, 내가 먼저 죽어서 그런 것을 모르는 것만 같지 못하다」 하고는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다’ 고 합니다. 신은 그 말을 듣고 몹시 슬퍼하였습니다. 임자(壬子)·계(癸丑) 양년에 물고(物故) 및 여러 가지 유망한 자가 도합 4백여 명이 되었습니다. 비록 약간만 충정한다 하더라도 7백 명에 이르면, 수군은 변통하는 방법이 없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만일 경기 근처 다른 고을의 기병(騎兵)과 보병(步兵) 등으로 절반을 바꾸어서 충정한다면 오히려 조금 소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히 진달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기병·보병 및 수군의 신포(身布)는 매년 얼마나 되는가?”

하니, 유척기가 아뢰기를, “기보병은 3년에 한 번 베를 바치고, 보병과 포보(砲保) 등은 각 고을의 경우 해마다 2필을 바치는데, 수군의 경우는 바치는 바가 더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바다를 넘어서 훈련을 해야 하는 역이 있고, 전선(戰船)과 짐물(什物)을 부담해야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첨사(僉使)가 된 자는 또 무휼(撫恤)을 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이 만일 수군에 정해지면 죽을 땅에 나가는 것처럼 여깁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경의 진달을 들으니, 남양의 백성들이 실로 몹시 불쌍하구나. 묘당으로 하여금 각별히 헤아려서 아뢰어 처치하게 하는 가하다.” 라고 하였다.

今三月初三日下直監司·守令·邊將留待引見 入侍時, 黃海監司俞拓基所啓, 伏承以軍丁事 有所下教, 臣敢以所欲陳者仰達, 臣待罪南陽時, 考已民戶僅爲五千餘, 而計除土族·儒校生·將校·牧子·公私賤, 則良戶都不過九百餘, 各色良役至於二千七百名, 其中最苦莫過於水軍, 而其數至於七百六十七名之多, 雖在常年樂歲, 流亡相繼, 蓋聞在前 水軍元額不多, 而數十年前, 水原爲獨鎭之後, 移屬者多, 以致如此, 或有過二十年逃亡不得頃下者, 又 或有生男而不舉者, 臣聞一有識士民之言, 則十餘年前, 有一民三父子方應水軍之役者, 自外歸家則 其妻又生男矣, 其人以爲, 此兒不過數朔, 又將爲軍 矣, 一家內四水軍番布, 將無以備納, 勢必流散則 又 將使隣族被侵, 不如吾先死而無知, 仍爲自縊而死 云, 聞來慘然矣, 壬癸兩年物故及各樣流亡, 合爲四百餘名, 雖略已充定, 至於七百名, 水軍不可無變通 之道, 今若以畿近他邑騎步兵等, 參半換定, 則猶可 以少得蘇息, 故敢達, 上曰, 騎步兵及水軍身布, 每歲幾何, 拓基曰, 騎步兵三年一納布, 步兵砲保等, 各邑則歲納三疋, 而水軍則不但所納有加, 又有越 海赴操之役, 戰船什物責應夥然, 而爲僉使者又未 必盡能撫恤, 以是之故, 民若定於水軍, 則如就死地 矣, 上曰, 聞卿所達, 南陽之民實甚可矜, 令廟堂各 別商確稟處可也.

<비변사등록 95책, 영조 10년 1734년 03월03일(음) >

## 정치/군사

이번 勅行의 上下往來의 軍衛軍을 모두 摠戎廳에서 담당하게 할 것 등을 청하다

총융청에서 아뢰기를, “이번에 나오는 칙사를 호행(護行)하는 군위군은 2백 명을 뽑아서

써야하는데 상래(上來) 때에는 신의 영(營) 소속인 **수원(水原)**에서 당차(當次)를 하고 돌아갈 때에는 수어청에서 당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어서 쓸 뜻으로 이미 계문(啓聞: 글로 임금께 아뢰)하여 행이(行移:行文移牒, 관청에서 문서로서 조회함)하였으나 수어사(守禦使)가 현재 지방에 있으니 조발(調發:군사를 각처로 보냄) 등의 일이 거행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비변사에서는 이런 군속스럽고 급한 폐단을 염려하여 이번 칙행에서는 상하왕래(上下往來) 때에 군위군은 모두 신의 군영에서 담당하고 다음 칙행에서는 상하왕래를 전담하여 군역(軍役)이 변통[推移]되도록 하는 사안은 초기(草記)로 율하(允下)되었으니 비국에서 아뢰어 임금의 재결대로 칙행이 회환(回還)할 때에 군위군도 역시 신의 군영에 속하는 **남양군병(南陽軍兵)**을 조용(調用)하는 일은 해당 영장(營將)이 있는 곳으로 분부할 사유를 아뢰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摠戎廳啓曰, 今此出來勅使護行軍威軍二百 名當爲調用, 而上來時則臣營所屬**水原**爲當次, 回還時則守禦廳爲當次之, 故依此出用之意既已 啓聞行移, 而守禦使今方在外, 調發等事, 勢難舉行, 自備邊司爲慮其窘急之弊, 今勅則上下來軍威軍, 竝令臣營擔當, 後勅則守禦廳全當上下來, 以爲推 移均役之地事草記允下矣, 依備局啓稟定奪, 勅行回還時軍威軍, 亦以臣營屬**南陽**軍兵調用事, 該營將處分付緣由敢啓, 答曰, 知道.

<비변사등록 99책, 영조 12년 1736년 01월07일(음)>

#### 정치/군사

##### 右議政 宋寅明이畿輔三鎭의春操의 중지를 건의하다

○ 또 아뢰기를, “이것은 전 총융사(摠戎使) 김흠(金滄)의 장계이온데 **기보삼진(畿輔三鎭: 광주, 양주, 남양)**의 춘조 거행을 주청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여러 도와 다르게 총융사 순조도 병사 순조에 비교될 것이 아니니 더욱 민폐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지난 겨울에 이미 춘조를 거행하였으니 이번 춘조는 우선 중지시키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렇게 하라고 일렀다.

又所啓, 此前摠戎使金滄狀啓, 而請行畿輔 三鎭春操事也, 京畿異於諸道, 摠戎使巡操, 又非兵使巡操之比, 民弊尤不可不慮, 昨冬旣行秋操, 今春 巡操, 姑令停止爲宜矣, 上曰, 依爲之.

<비변사등록 101책, 영조 13년 1737년 02월07일(음)>

#### 정치/군사

##### 南陽府의 水軍을 他邑과 바꾸지 않기를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황해감사 유척기(兪拓基)가 조정을 떠날 때 입시하여 아뢰기를 ‘**남양부(南陽府)**의 수군(水軍) 7백명은 경기도에서 가까운 타읍(他邑)의 기병, 보병 등의 역에 절반의 인원을 바꾸도록 묘당에서 아뢰어 의논하여 결정하라고 하명하였습니다. 기내(畿內)의 수군은 이미 납포(納布)하였고 또 조련(操練)에도 참여하여 가장 고통스러운 역입니다. **남양(南陽)**은 양호(良戶)의 수가 적으나 수군의 수도 7백여명으로 많습니다. 도주한 인원은 보충하기 어렵고 백성들이 역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니 진실로 염려됩니다. 지금 만일 타읍의 기병과 보병을 변통하여 바꾸면 본읍은 다행한 일이지만 연해읍은 수군의 액수가 본읍보다 적지 않으니 산읍(山邑)과 야읍(野邑)은 수군이 있는 각 진(鎭)과 거리가 멀어 본읍(本邑)보다 조련을 하러 갈 때 그 견디기 어려운 폐단이 연습과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더욱 중대하고 곤란한 일입니다. 그리고 수군의 신역(身役)도 지금 모조(某條)로 변통하기를 상의하여 조금 간편한 계획을 하고 있으므로 지금 이 청(請)은 그대로 두는 것

이 어떠하겠습니까?” 라고 하자, 윤택하다고 답하였다.

司啓辭，曾因黃海監司俞拓基辭朝入侍時，所啓南陽府七百名水軍，以近畿他邑騎步等役，參半換定事，有令廟堂稟處之命矣，畿內水軍，既納布又赴操，最是偏苦之役，南陽良戶數少，而水軍額數，至於七百餘名之多，則逃故之難充，民役之難堪，誠可悶慮，今若以他各邑騎步兵，參酌推移換定，則在本邑誠爲可幸，而沿海邑，則水軍額數，未必有下於本邑，至於山野邑，則與水軍各鎮道里尤遠，赴操之際，其爲難堪之弊，必非沿邑之比，此已重難，而水軍身役，方議某條變通，以爲稍從輕歇之計，今此所請，姑爲置之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102책, 영조 13년 1737년 09월10일(음)>

### 정치/군사

右議政 宋寅明이 唐船이 염려스러우니 將校를 파견하여 조사하도록 하자고 건의하다

○ 또 아뢰기를, “근래에 당선(唐船)이 매우 염려스럽고 경기의 서쪽 연해에 해방(海防:해안의 방비)이 더욱 허술하기 때문에 덕적도(德積島) 사건 이후 신이 훈련대장에게 장교를 파견하여 인천과 남양(南陽) 사이의 형지(形止:일어나는 일의 형편)를 자세하게 살펴오게 하였습니다. 일전에 훈국의 장교가 들어와서 두 읍의 사이에 크고 작은 여러 섬을 낱낱이 기록하여 보였는데 거이 30에 가까웠으며 그 속에 사는 백성이 많으면 수백 호 적어도 수십 호는 더 되었습니다. 그 중에 승황도(承皇島)의 민호(民戶)가 가장 많았으며 어제 또 남양부사 한배규(韓配奎)의 말을 들으니 승황도는 남양 땅에 있으며 북쪽으로 바다 속으로 쭉 들어가 해서(海西)와 호서(湖西)가 서로 연결되는 지점에서 등·래주(登萊州)가 역시 바라 보이는 속에 있으며 수로로써 말하면 여러 날의 일정(日程)은 아닌 듯하며 그리고 섬 속의 실지 호수(戶數)는 거이 6~7백 호에 이르고 모두 신역(身役)은 없으며 양향둔(糧餉屯)에서 세납으로 약간의 직석(稷石:기장 섬)이 있다고 말합니다. 왕도(王都)에서 가까운 요해처(要害處)에 주민의 수가 이렇게 많은 섬이 있는데도 아직 구획(區劃)을 실시한 일이 없으니 이는 잘못된 일입니다. 본사의 낭청을 한번 보내어서 조사하여 오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영종도에는 금양산(禁養山)이 있는데 근래에 심하게 민등산이 되었다고 하니 돌아오는 길에 함께 조사하도록 4~5일 뒤에 출발시키려 하기 때문에 감히 아뢰옵니다.” 하니, 아뢴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又所啓，近來唐船，極爲可慮，而京畿西沿，海防 尤爲虛疎，故德積島事後，臣令訓將發遣將校，審察 仁川·南陽間沿海形止而來矣，日前訓局將校還來 列書兩邑間大小諸島以示之，殆近三十，所居民人，多或累百戶，小不下數十戶，其中承皇島民戶最多，而昨又見南陽府使韓配奎言，承皇島，在南陽地，而 斗入海中去，海西湖西相連，登萊州亦在相望中，以 水路言之，似非多日程，且島中實戶，幾至六七百戶，皆無身役，以糧餉屯歲納，若干稷石云，王都至近要害之處，有此居民數多之海島，而尙無區劃設施之事，此爲可欠，欲一遣本司郎廳，摘奸而來，且永宗有 禁養山，而近甚濯濯，欲令歸路兼行摘奸，四五日後 當發送，故敢稟矣，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104책, 영조 14년 1738년 07월10일(음)>

### 정치/군사

仁川과 南陽 등지의 海坊이 허술하니 江都留守와 京畿水使에게 設陣하게 하자고 건의하다

○ 같은 날 입시 때에 우의정 송인명이 아뢰기를, “서울에서 가까운 연해(沿海) 중에 교동(喬桐)과 강화(江華)의 해로(海路)에는 비록 한 둘의 영진(營鎭)이 있지만 인천과 남양(南陽) 등의 해방(海坊)은 매우 허술합니다. 일전에 신이 본사의 낭청에게 승황도(承皇島)를

적간하라는 일로 아뢰어 의논하여 결정하여 발송을 시켰더니 낭청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승황도는 듣는 바와 다르며 여흥도와 덕적도는 두 섬의 지형이 아름답고 **덕적도**는 바로 등래 [登州·萊州]와 서로 마주 보이는 땅으로 바다가 멀지 않으며 또 해서(海西)나 호서(湖西)의 해로(海路)가 교차하는 경계지점이며 여흥도 역시 해로의 요충지로 인호(人戶)가 뛰어나 많고 배를 간수하기에 편리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인천과 **남양(南陽)** 사이에 섬들이 그 수가 극히 많은데도 한 진영(鎭營)도 시설된 곳이 없고 거개 버려지고 있으니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비국고사(備局故事)를 살펴보니 고판서 이인엽(李寅燁)이 강화유수가 되었을 때에 몸소 바다 속의 여러 섬들을 돌면서 살피고는 덕적도와 대부도 두 섬에 첨사(僉使)를 설치할 것을 장청하였는데 이 대부도는 바로 여흥도의 곁에 있는 섬입니다. 그 뒤에 또 비국당상이 두 섬에 설진(設鎭)의 의논을 힘써 주장하여 드디어 모두 첨사(僉使)를 설치하였으나 선척(船隻)과 수군(水軍)을 미처 구획하지 못하였는데 함원부원군(咸原府原君)이 경기어사로써 두 섬에 설진(設鎭)한 이후에 주적(舟賊)이 별로 제어되지 못하여 허술하고 쓸데가 없이 되었다고 장진(狀陳)하였으며, 임인·계묘년간(1722~23)에 무단히 철과(撤罷)가 되었습니다. 선조(先朝)에서 설진을 구획한 것이 반드시 범연(泛然)하지 않았을 것이니 신의 의견은 주사(舟師:수군)가 나올 곳이 없는 곳에 신설(新設)코자 하면 참으로 어렵겠지만 우선 생각해 보면 **화량(花梁)**은 삼남해로(三南海路)를 방어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인데 삼남해로에는 이미 허다한 각진(各鎭)이 있으며 그리고 화량도(花梁島)의 앞은 위치가 바다와의 거리가 좁아서 장선(藏船)이 불편하여 모두 긴요하지 못하다고 말하며 여흥(呂興)은 앞으로 조로(漕路:배로 운반하는 길)에 임(臨)하고 뒤로 대해(大海)가 있으니 지금 만약 여흥에 화량진을 이설(移設)한다면 수군(水軍)을 별도로 구획함이 없어도 서해의 해방(海防)문제는 조금 나아질 것입니다. 덕적도에는 수군진(水軍鎭)을 설치할 필요는 없고 혹시 낙점별장(落點別將:왕이 직접 점을 찍어 선임한 별장)을 별도로 설치하여 승황도 등의 여러 작은 섬들과 함께 귀속시켜 경보(警報)를 후망(候望:멀리 바라보며 경계함)하는 것을 전임토록 하면 역시 시설이 전연 없는 것보다는 나을 듯합니다. 신이 이미 직접 살피지 못하고서 어찌 감히 억논(臆論)으로 단정하셨습니까? 청하옵건대 강도유수(江都留守)와 경기수사(京畿水使)로 하여금 내년 봄을 기다려 각도[諸道]를 순심(巡審)하게 한 뒤에 각각 그들의 의견을 논열(論列:죄목을 논함)한 장문으로 아뢰어 의논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同日入侍時，右議政宋所啓，近京沿海中 喬桐·江華之路，雖有一二營鎭，而仁川·**南陽**等處海坊，尤極虛疎，日前臣以本司郎廳，摘奸承皇島事，稟定發送矣，郎廳還言承皇島，不如所聞，而呂興·德積兩島，地形最勝，德積島，卽登萊相對之地，海不甚遠，且是海西·湖西海路交界處，呂興，亦是海路要衝，而人戶頗盛，藏船亦便云，仁川·**南陽**間海島，極其數多，而無一設施，舉皆空棄，誠爲可惜，考見備局故事，則故判書李寅燁，爲江留時，躬自巡審海中諸島，狀請德積·**大阜**兩島，設僉使，**大阜**卽呂興傍島也，其後又以備堂力主兩島設鎭之議，遂竝設僉使，而船隻水軍，未及區劃，咸原府院君，以京畿御史，狀陳兩島設鎭後，舟賊別無制置之爲虛疎無用矣，壬寅·癸卯年間，又無端撤罷，先朝之區劃設鎭，必不泛然，而臣意則若欲新設舟師無出處，誠爲重難，第念花梁，爲防三南海路而設置者，而三南海路，既有許多各鎭，且花梁島坐地，去海稍間，藏船不便，皆言不緊，呂興，前臨漕路，後當大海，今若移設花梁鎭於呂興，則舟師別無區劃，而西海海防稍勝矣，德積島則不必設置水軍鎭，或別置落點別將，竝與承皇等諸小島而劃屬，使之專任候望警報，則亦似勝於全無設施，而臣既不能親審，何敢以臆論斷定，請令江都留守及京畿水使，待明春巡審諸島後，各以意見論列狀聞，以爲稟定之地，

何如，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104책, 영조 14년 1738년 11월02일(음)>

### 정치/군사

右議政 宋寅明 등이 德積島는 서울과 가깝고 중국과 정면이니 鎭堡의 復設을 건의하다

○ 또 아뢰기를, “이것은 강화유수(江華留守) 권적(權稹)과 교동수사(喬桐水使) 김유(金維)의 장계인데 덕적도(德積島)의 도면(圖面)까지 첨부하여 올려보냈습니다. 덕적도에 직접 가서 살펴본 뒤에 장계하라는 뜻으로 일찍이 아뢰어 의논하여 결정하고 알렸었는데 둘 다 직접 가지 않고 중군(中軍)을 시켜 살펴보게 한 뒤에 이제야 비로소 논열(論列)하여 장계하였는데 모두가 덕적도에는 불가불 설진(設鎭)을 해야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국가에서 양서(兩西)와 삼남(三南)의 해로(海路)에는 설진이 수없이 많으나 유독 정 서쪽인 인천(仁川)과 남양(南陽) 등지의 외양(外洋)에는 한 군데도 설진한 일이 없습니다. 여기는 서울에서 한 나절 거리이고 중국의 등주(登州)·내주(萊州)와는 정면으로 마주 대하는 곳입니다. 덕적도 인근의 작은 섬은 명칭이 소야도(蘇爺島)인데 당장(唐將) 소정방(蘇定方)이 주사(舟師)를 거느리고 와서 정박한 곳인데도 지금은 한 군데도 설진하여 경보(警報)를 알리는 일이 없습니다. 서울의 정서(正西)에서 방어(防禦)의 허술함이 이와 같으니 생각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고 판서(故判書) 이인엽(李寅燁)이 덕적도에다 진보를 설치한 것은 참으로 소견이 있는 바였으나 계묘년(癸卯年:경종 3, 1723)에 무단스레 철폐되었으므로 신의 생각으로는 기어코 복설(復設)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고, 좌참찬 조현명(趙顯命)이 아뢰기를, “이곳은 서울의 인후(咽喉)가 되는 곳이니 설진하는 일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대신이 일찍이 건백(建白)하고 통지한 뒤에는 의당 몸소 가서 살펴보아야 하는데 결국은 군관을 대신 보내겠다는 뜻으로 비국에 보고한 것은 일의 대체가 한심하고 비국에서 허가하여 제송(題送)한 것도 잘못입니다. 설진의 중대사를 군관의 말만 믿고 가벼이 논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풍원(豊原)이 진달한 바가 옳다.” 하였다.

송인명이 아뢰기를 “조령이 내린 처지에서는 의당 몸소 가 보아야 하는데 길이 험하고 먼 탓으로 늦게야 중군만 보낸 것입니다. 기왕에 이 일로 비국에 품보(稟報)한 바 있으니 자의로 대신 보낸 것과는 차이가 있으나 경책이 없을 수 없기에 바야흐로 추고를 청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둘 다 추고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송인명이 아뢰기를 “지금 만일 몸소 가서 살펴본 뒤에 실시하려 한다면 언제 시작할지 몰라 참으로 민망하나 공론이 이러하니 다시 유수와 수사로 하여금 반드시 직접 가서 살펴본 뒤에 장계하도록 하여야겠는데 김유가 이미 체직되고 새 수사 조호신(趙虎臣)에게 이미 조정 하직을 제폐하고 부임하라는 명이 있었으니 부임한 뒤에는 즉시 가서 살펴보라고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유수와 수사가 모두 직접 가서 살펴보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송인명이 아뢰기를, “설진하기로 확정된 뒤에야 절목을 따로 만들겠으나 봉화를 설치하여 보경(報警)하는 일은 그만 둘 수 없습니다. 봉화를 설치하면 해로(海路)의 어느 봉화에 접속시켜 전달이 되도록 할 것인지 이러한 정황도 헤아려보지 않을 수 없으니 장계할 때에 이러한 일도 아울러 논계하라는 뜻으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又所啓，此江華留守權稹·前喬桐水使金維狀 啓，竝德積島圖形上送者也，以德積島親往看審

後 狀聞之意，曾有稟定知委矣，竝不躬往，使其中軍 往審後今始論列狀聞，皆言，德積島不可不設鎮 矣，國家於兩西·三南海路設鎮數多，而獨於直西 仁川·南陽等地外洋，則無大段設鎮處，此於京都半日 之程，而自其處，與中國登·萊州爲正對之地，德積傍 近小島名爲蘇爺島，卽唐將蘇定邦領舟師來泊之 處，而今則無一設鎮報警之事，京都直西捍蔽之單 薄如此，念之懷然，故判書李寅燁之設鎮德積誠有 意見，而癸卯年無端撤罷，臣意必欲復設矣，左參贊 趙顯命曰，此是京城咽喉之地，宜有設鎮之舉，而大 臣曾已陳白之後，宜卽躬往看審，而乃以替送軍官之意報于備局，事體寒心，備局之許題固失之矣，設 鎮重事，似不可只憑軍官之言，而輕議矣，上曰，豐 原所達是矣，宋曰，朝家之下宜卽躬往，而以其險 遠，晚後只送中軍，旣以此報稟備局，則與直爲替送 有別，而亦不可無責，方欲請推矣，上曰，竝推考可 也，宋曰，今若更待其親往看審後方爲設施，則就 緒無期，誠爲可悶，而公議旣如此，更令留守·水使，必 卽躬往看審後狀聞，而金灘旣已遞職，新水使趙 虎臣已有除朝辭赴任之命，赴任後卽往看審 之意各別申飭何如，上曰，留守·水使皆令親往看審可 也，宋曰，設鎮事停當後可以別成節目，而設烽報 警斷不可已，若設烽燧，則當以海路何烽接連入達，此等形便亦不審量狀聞時，竝爲論理之意分 付 何如，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105책, 영조 15년 1739년 06월01일(음)>

#### 정치/군사

右議政 俞拓基가 입시하여 花梁鎮을 大阜에 설치하고 監牧의 일을 겸하게 하자고 건의하다  
 ○ 이번 11월 29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우의정 유척기(俞拓基)가 아뢰기를, “이 경기수사(京畿水使) 조호신(趙虎臣)의 장계를 보니 화량(花梁)과 대부(大阜) 두 곳의 형세를 들어 논계(論啓)한 바가 있습니다. 두 곳은 모두 남양(南陽) 땅인데 신이 연전에 남양부사로 외보(外補)되었을 때에 두 곳을 두루 보아 그 지세(地勢)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 병자란(丙子亂) 이전에는 경기수사가 바람이 온화할 때에는 대부로 옮겨와 유둔(留屯)하고 바람이 거셀 때에는 화량으로 들어가 유둔하였으나 병자란에 임시로 강도(江都)를 지키기 위하여 강화로 들어갔다가 난리가 끝난 뒤에도 그대로 교동(喬桐)에 유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부도 안에는 지금도 옛날 수사가 유방(留防)하던 곳이 있습니다. 이로 보면 화량과 대부가 모두 요해지(要害地)로서 진(鎭)을 설치할 만한 곳이기는 하나 화량은 꽤 깊고 궁벽하여 대부의 곧바로 바닷길에 당면하고 있는 것만은 못합니다. 또 30년 전에는 대부의 감목관(監牧官)을 혁파하고 따로 첨사(僉使)를 두어 감목의 일을 겸하게 하였으나 어느 때에 무슨 일로 그것마저 파해버렸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화량진(花梁鎭)을 대부로 내다가 설치하고 감목의 일을 겸하여 살피게 하는 것이 사세에 합당할 것 같으니 묘당에서 다시 검토해서 아뢰어 의논하여 결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의 대답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今十一月二十九日大臣·備局堂上引見入 侍時，右議政俞所啓，觀比京畿水使趙虎臣狀 啓，則以花梁·大阜兩處形勢有所論啓矣，兩處皆 南陽地，而臣於頃年外補南陽府使時，遍觀兩處，稔知其地勢矣，丙子亂前，則京畿水使，風和時移留於 大阜，而風高時入留於花梁矣，丙子，臨時爲守江都，經亂後仍置於喬桐，故大阜島中，尙有水使舊時留 防之處矣，以此見之，則花梁·大阜皆是要害設鎮處，而花梁，則頗深僻不如大阜之直當海路，三十年前 罷大阜監牧官，別設僉使，使之兼監牧矣，不知何時 因何事又罷，而臣意，則出置花梁鎮於大阜島，仍兼監 牧似合形便，自廟堂，更爲商確稟定何如，上曰，依 爲之。

<비변사등록 105책, 영조 15년 1739년 12월01일(음) >

## 정치/군사

### 特進官 朴纘新이 水原府에서 觀試才를 거행하자고 건의하다

이번 3월 21일 주강을 위해 입시하였을 때 특진관 박찬신(朴纘新)이 아뢰기를, “신이 수원(水原)의 일로 생각한 것이 있어 감히 아뢰려고 합니다. 신의 영(營) 소속 수영(水營)과 남양(南陽)과 장단(長湍)의 삼진(三鎭)은 작년 겨울 조련(操練)할 때 점호를 해보니 군기와 군병들이 거의 형편이 없었습니다. 군무(軍務)를 생각하니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수원(水原)은 신의 영에 소속한 병마와 본영에 소속한 병마를 합하면 모두 7,000여 병마이므로 본래 외도감(外都監)이라고 칭하는 것은 이와 같이 많은 병마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진(本鎭)은 남한(南漢)과 강도(江都) 사이에 처해 있으므로 삼남(三南)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 믿고 있는 것은 본래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나 근년 이래 군기(軍器)와 짐물(什物)이 매우 허술하여 시임부사(時任府使)인 이정(李鼎)이 이것을 혁신하는데 뜻을 두어 기어이 개수하려고 하였으므로 신의 영에서 약간 도와 주었고 부사도 여러 방법으로 물력을 모아 지금 대대적으로 개수를 하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군기에 대하여는 지금 걱정할 것이 없지만 신이 본부를 순찰할 때 장교와 군병들이 일제히 호소하므로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 관무재(觀武才)를 오랫동안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수원은 기보(畿輔)의 중지(重地)입니다. 무신년(영조 4, 1728) 역란(逆亂)이 있을 때 진(陣)이 머물러 있었고 경술년(영조 6, 1730) 영릉(寧陵)에 행차할 때와 신해년(영조 7, 1731) 천릉(遷陵)을 위해 행차할 때도 수원군(水原軍)이 도성에 유둔하고 있었으며 그후에는 결국 한번도 동가(動駕)하는 일이 없었지만 군병들의 마음이 억울한 것은 형세상 필연적이었습니다. 만일 그 호소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면 신이 어찌 연중(筵中)에서 번거롭게 아뢰 수 있겠습니까? 수원이 비록 강도 및 남한과 연도를 정하여 과거를 보는 것은 차이가 있지만 전례를 보면 임술년(숙종 8, 1682)·기사년(숙종 15, 1689)·임신년(숙종 18, 1692)·병신년(숙종 42, 1716) 등의 해에는 잇달아 관무재를 설행하였고 또 무신년(영조 4, 1728)에도 설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미년(현종 8, 1667)에 재결하고 변란 전에도 설행하였으며 양차의 능행(陵行) 때에 도성에 머물거나 무신년 역란 때 진이 머물은 후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억울한 마음이 참으로 호소하는 말과 같기 때문에 감히 이 일을 아뢰오니 묘당에 물으시어 처리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자, 임금은 이르기를, “수원과 강도가 같은 처지라면 관무재를 오랫동안 설행하지 않는 것은 비록 국가의 일이 많아서 그런 것이므로 군병들의 억울한 마음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 비국에서 아뢰어 처리하는 것이 가할 것이다.” 하였다.

今三月二十一日, 晝講入侍時, 特進官朴纘新 所啓, 臣以水原事有所懷, 敢達矣, 臣營所屬水營 南陽·長湍三鎭, 昨冬巡操時點閱, 則軍器軍兵, 殆不 成樣, 言念軍務, 誠爲寒心, 第水原則臣營所屬及本 府所屬, 合計七千餘兵馬, 故素稱外都監者, 良以此 也, 且本鎭處於南漢·江都之間, 實爲三南要衝之地, 朝家所恃, 本非偶然, 而近年以來, 軍器什物, 莫甚疎 迂, 時任府使李鼎, 留意於此, 必欲修葺, 故自臣營略 有所助, 而府使多般鳩聚物力, 今方大設修改云, 誠 爲可幸, 至於軍器等事, 今無可憂, 而臣巡到本府時, 將校軍兵等, 齊聲呼訴, 蓋聞其言, 則以觀武才久不 設行事也, 水原乃是畿輔重地, 戊申年逆亂時, 有留 陣之事, 庚戌年寧陵幸行及辛亥年遷陵幸行 時, 亦以水原軍留都, 而伊後終無一番酬勞之舉, 軍 情之抑鬱, 勢所固然, 若其所訴無所據, 則臣何敢煩 達於筵中乎, 水原雖與江都·南漢之定年設科有 異, 考見前例, 則壬

戊·己巳·壬申·丙申等年，連設觀武才，且戊申又爲設行，而此則丁未定奪，而設行於變辭之前者也，非爲兩次陵幸時留都及戊申逆亂時，留陣後慰悅之事也，其所抑鬱，誠如所訴，故敢此仰達，下詢廟堂而處之何如，上曰，水原與江都同，則觀武才之久不設行，雖緣國家之多事，而軍兵之抑鬱誠然矣，令備局稟處可也。

<비변사등록 106책, 영조 16년 1740년 03월23일(음)>

## 정치/군사

### 左議政 宋寅明이 摠戎廳의 春操를 變通하자고 건의하다

이번 2월 10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좌의정 송인명(宋寅明)이 아뢰기를, “경기감사 서명구(徐命九)가 수원부사와 남양부사(南陽府使)의 보장(報狀)을 일일이 들어 비변사에 전보(轉報)한 내용에 이르기를, ‘총융청(摠戎廳)의 춘조를 거행해야 하겠으나 지금 봄갈이를 맞이하여 일마다 거리깁니다. 전부터 춘조를 거행하면 춘조는 근래에 거행한 적이 없으니 장문하여 변통하기를 청한다’ 고 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춘조는 사실 민폐가 없지 않으나 군율(軍律) 역시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기일을 정하여 영을 반포한 후에 지금 다시 도로 거두는 것은 국가 체통에도 손상이 되므로 정지를 청하는 것을 어렵게 여긴 것이며 기백(畿伯:경기감사)이 장청(狀請)하지 않고 시험 삼아 비국에 보고한 것은 뜻이 이러해서입니다. 수규(首揆:영의정)의 생각은 ‘이미 민폐가 있음을 알았으니 우선 춘조는 정지하고 가을에 가서 거행하는 것이 옳겠다’ 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보장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감히 이에 품청(稟請)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군사의 기약은 몹시 중요하다. 남양부사와 수원부사가 비록 시종신(侍從臣)으로서 나갔다고 하나 총융사(摠戎使)의 일개 영장(營將)에 지나지 않는다. 영문(營門)에 보고한 것이 이에 이르렀으니 이는 총융사가 비록 군율을 시행하더라도 좋다. 이미 상문(上聞:임금에게 보고함)하였으니 도신에게 신칙하여 권면하지 않을 수 없다. 종종추고하고 이 보장은 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今二月初十日，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左議政宋所啓，京畿監司徐命九枚舉水原府使·南陽府使報狀，轉報備局內，以爲摠戎廳春操，當爲舉行，而今當春耕，事事妨掣，自前秋操則舉行，而春操則近來未嘗爲之，狀聞變通事爲請云矣，臣意則春操誠不無民弊，而師律亦重，既已定期頒令之後，今又還寢，國體亦涉顛倒，故難於請停，畿伯之不爲狀請，而試報備局者，意必如此也，首揆之意則以爲既知有民弊，姑停春操，待秋必行爲宜云，故持入報狀，敢此稟請矣，上曰，師期至重，南陽·水原雖云侍從，不過摠戎使·一營將，而乃報營門，至於如此，此則摠戎使雖以軍律施行，亦可矣，既已上聞之後，道臣不可不勅勵，從重推考，此報狀勿施可也。

<비변사등록 115책, 영조 22년 1746년 02월11일(음)>

## 정치/군사

### 刑曹判書 李宗城이 軍器 修補의 일과 관련해 前南陽府使 및 中軍 등의 査覈을 건의하다

지난 6월 30일 비변사 당상과 옥당의 상하번을 함께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형조판서 이종성(李宗城)이 아뢰기를, “본조에 현재 남양(南陽) 전부사 정홍제(鄭弘濟)와 중군(中軍) 허근(許根)을 사핵(査覈)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논한다면 당초 총융사(摠戎使)가 장계하여 곧바로 허근의 죄를 청한 것은 미안한 일입니다. 정홍제를 사문(査問)하여 정홍제가 허근에게 미루었다면, 허근을 처음에 조사했을 것입니다. 신이 이와 같이 초두에 아뢰려 하였으나, 본조에서 이미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어서 추핵(推覈)하게 된 것입

니다. 허균은 처음에는 다른 군기(軍器)는 모두 수리하였으나 환도(環刀)의 경우 물력이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미처 개조하지 못하고 그대로 두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양(南陽)**의 감색(監色)을 잡았습니다. 그러므로 또 이와 같이 **남양부(南陽府)**에 사문하니 새로 만든 환도 2백 자루 안에 칼날의 길이가 1자에서 1자 2치에 이르는 것이 90자루, 7치에서 9치에 이르는 것이 1백 90자루요, 모양은 쇠를 갈아 가죽대신에 쇠로한 것이 90자루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 수리하지 않았다고 한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이른바 새로 만든 것이 7치와 9치의 칼이 있다고 한 것은 역시 지극히 놀랄만한 일이어서 다만 이것으로도 처단할 수 있으나 총융사(摠戎使)의 장계(狀啓)에 ‘칼날은 길고 칼집은 짧으며, 몹시 날카로운 환도가 1백 57자루로서 이는 허균이 수리할 때에 잘 거행하지’ 못한 소치라고 하였습니다. 좀 전에 성교(聖敎)에서 효시(梟示)가 거론된 것도 몹시 날카로운 한 문제를 지적하여 발한 것이므로 죄명이 지극히 무겁습니다. 그는 발명하고 있으나 사리(事理)로 말하면 100여 자루의 칼이 지나치게 날카로우 어디에 쓰겠습니까? 날카롭다고 해서 갈아서 미봉하려 할 때에 그 비용은 적지 않을 것이니 이른바 득이 손실을 보충하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은 사실 지나치게 날카롭다는 말에 의심이 갑니다. 그러나 장신(將臣)이 이미 적간(摘奸)하여 장계하였으니 불가불 원래의 칼을 가져다 본 뒤에 그 날카로운지 여부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외읍(外邑)의 군기를 신의 조(曹)에서 가져다 볼 수는 없고, 혹 병조와 비변사에서 가져다 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사하는 일로 가져다 보는 것을 형조에서 어찌 할 수 없겠는가? 형조에서 가져다 보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今六月三十日備局堂上·玉堂上下番同爲引見 入侍, 刑曹判書李宗城所啓, 本曹方有南陽前 府使鄭弘濟·中軍許根查覈事矣, 此事以大體論之, 當初摠戎使狀啓, 直以許根請罪者未安, 若查問 於弘濟, 而弘濟推諉於許根, 則許根始當行查, 臣欲 以此仰稟於初頭, 而本曹既已始查, 故不免仍爲推 覈矣, 許根, 初則以他軍器則皆爲修補, 而環刀則物 力不逮之故, 未及改造, 仍前置之云矣, 南陽縣色捉 來捧招之後, 始以二百柄新造納招, 故又以此查問 於南陽府, 則新造環刀二百柄內, 刃長自一尺至一 尺二寸者, 九十柄, 自七寸至九寸者, 一百九十柄, 樣 磨鐵之, 以皮代鐵者, 九十柄云, 初以不爲修補爲言 者, 已爲誣罔, 而所謂, 新造者至有七寸·九寸劍, 則亦 極可駭, 只此可以勘罪, 而摠戎使狀啓中, 以刃長 鞘短割尖環刀, 一百五十七柄, 此則許根修補時, 不 善舉行之致云, 俄者聖敎, 所學梟示之議, 亦指割 尖一款而發者, 罪名至重, 而渠則發明, 以事理言之, 則一百餘柄之刀, 尖割之何用, 旣割而欲爲磨治, 彌 縫之際, 所費不貲, 所謂, 得不補失者也, 以此臣則, 固 疑其割尖之說, 而將臣旣已摘奸而狀聞, 則不可不 取見元刀然後, 可以言其割否矣, 然外邑軍器, 不可 自臣曹取見, 或自兵曹備局取見何如, 上曰, 以查 事取見, 刑曹亦何可不爲乎, 自刑曹取見可也.

<비변사등록 116책, 영조 22년 1746년 07월02일(음)>

## 정치/군사

### 兵部尙書에게 牛酒를 넘겨 보내 勞問할 것을 청하다

○ 영의정 김재로(金在魯)의 차자(笥子)에, “생각해보면 지금 정석(鼎席:정승의 자리)이 모두 비었습니다. 다만 신은 서울에 병들어 있는데, 생각이 국사에 이르니 실로 끝이 없습니다. 성상께서 걱정하시어 혹 특별히 비변사 당상을 부르거나 혹 대답을 구하여 진달하게 하니 신이 비록 정신은 흐리나 그 문의(問議)에 인하여 간략한 지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만윤(灣尹)의 치계(馳啓)는 몹시 답답하던 가운데에 일이요, 책문(柵門)을 물리려다가 그만

든 것은 비록 매우 다행한 일이나 별로 여쭙 일은 없으며, 망우초(蟒牛峭)를 살펴보는 일 역시 시행토록 한 데에서 나온 듯 싶고, 통관(通官)이 우리를 위해 주선하고 변신(邊臣)이 잘 대응하여 접대하였으므로 염려할 만한 단서는 없을 듯 합니다. 삼재(三宰:좌참찬)의 생각에는 만부(灣府)에 별달리 공문을 보내 잘 정답하여 계속 보고하게 해야한다고 하였으나 신의 생각은 만윤이 신칙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해 거행하였고, 병부(兵部)의 행차는 도로 돌아 간지 이미 오래여서 때가 늦어 미치지 못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6월에 차출해야 할 절사(節使)를 지금까지 차출하지 못하였고, 지금은 그 사사(謝使)를 겸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신의 뜻을 권하여 진달하니 곧 정관(政官)을 불러 사개(使价:사신)를 차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신(重臣)이 끝내 이를 진달하지 않아 한갓 허물만 있으니 그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이외에는 시급히 아뢰어 결정할 일이 없습니다. 감사와 병사의 치진(馳進)에 있어서는 성상의 생각이 뛰어나 실로 여러 신하의 사려(思慮)가 미칠 바가 아닙니다. 다만 병부에서 나온 일에 우리나라에 자문(咨文)을 보내는 일이 있을듯하니 빈사(僉使)를 차출해 보내는 것이 예입니다. 자문을 보내는 일이 없고 또 우리 경계에 넘어오지 않았다면 수신(帥臣)을 보내는 것도 근거할 만한 사례(事例)가 없습니다. 저자들의 오가는 기한이 신속하여 40일 내에 오가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하니, 계산해 보면 며칠 안 되어 되돌아 갈 것이므로 지금 아무리 빨리 달려도 미칠 수 있는 방도는 없을 듯 합니다. 신의 생각은 고기와 술을 가지고 국경을 넘겨 보내서 노고를 위문하려고 하였으나 다만 때에 미쳐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윤이 전대로 했을 것 같기 때문에 생각만 하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상의 하교가 계신데 신의 어두워 소완(疎緩)히 한 죄를 어찌 스스로 풀 수 있겠습니까? 남한산성의 대조련(大操鍊)은 비록 능의 행차와 농사의 흉년으로 말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은 아니나 금년 봄에 수원(水原)과 남양(南陽)의 일이 있는 뒤로부터는 수령(守令)이 된 자가 처음부터 조련의 정지는 마음에 두지도 않았고 도리어 묘당에서 혹 정지를 청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신 역시 생각하면 군사를 실하게 하는 일은 중요하고 또 혐의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기에 예에 의하여 시행을 청하겠다고 비변사 당상의 물음에 답하였고 경연에서 비변사 당상의 아뢰도 정지를 청하는 말 한마디가 없었으나 위에서 특별히 명하여 정지시켰습니다. 지금 이에 공연히 사람을 의심하여 묘당에 도모한 것으로 단정하니 그렇다면 그 부탁을 들어준 묘당은 또 어떠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장신(將臣)이 진정 군사를 실하게 하는 일을 중하게 여긴다면 의견을 진달하여 다시 청하여 시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어찌 사실의 어떠함은 묻지 아니하고 크게 수령을 의심하고 거듭 묘당을 배척해야만 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신은 적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은 병이 들어 업무를 폐하였고 편치 않은 실정이 또 이에 이르렀으니 도리에 하루도 그대로 있기가 어렵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신을 굽어 살피시고 빨리 면직을 허락하고 인하여 죄를 내려 주시면 천만 다행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 생각해 보면 사신의 차출은 이미 때가 지난 지 오래입니다. 모든 일을 전혀 거행하지 않았으니 앞으로 군속(窘束)한 걱정이 있을 것입니다. 곧 명하여 정관(政官)을 불러 겸임사신을 차출해야 합니다. 방금 우상(右相)의 사신(私信)을 보면 수신(帥臣)의 영접이 위에서 특별히 사람을 보내 노고를 위문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은 혹 이러한 염려한다면 저자가 공심(公審)에 방해가 된다고 혐의할 것이요, 또 수신과 별사(別使)를 논할 것 없이 때에 늦을 염려는 같습니다. 비록 그러나 서둘러 뒤쫓아 보낸다면 고기와 술로 노고를 위문하는 것도 아울러 분부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하였다. 답하기를, “차자를 보고 경의 정성을 모두 알았다. 칙려(飭厲:신칙하고 권장함)하

는 하교에 어찌 고집하는가? 수어사의 진달은 체(體)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말이 항상 팔 팔함은 정도 알고 있다. 경에게 아무런 뜻이 없는데 어찌 개의(介意)할 것이 있는가? 경은 안심하고 사직하지 말 것이며 또한 인구(引咎)하지도 말라. 그리고 병이 조금 나으면 곧 직무를 보아 지금 나의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 겸임사신은 승정원에서 아침이 되면 정관을 패초(牌招)하여 정사를 열도록 하겠다. 수신을 특별히 보내는 일은 나의 명령이 한결같아 수신에게 하교를 전하고 고기와 술로 노고를 위문하라고 역시 곧 금군(禁軍)을 정하여 분부하게 하라.” 하였다.

領議政金筍子云云, 伏以日今鼎席一空, 只臣 在京淹病, 念及國事, 實爲罔涯, 聖心憂勤或若特召備堂, 或許求對入達, 臣雖精神昏瞶, 因其問議, 略 有指揮矣, 今此灣尹馳啓, 出於企鬱之餘, 退柵之 還寢, 雖甚喜幸, 而別無仰稟之事, 蟒峭之看審, 亦 似出於許施之意, 而通官爲我周旋, 邊臣善爲應接, 似無可慮之端, 三宰謂意, 別關灣府, 使之善探續聞, 而臣意以爲, 灣尹不待申飭, 盡心舉行, 兵部之行, 想 必還歸已久, 後時無及, 惟是六月應差之節使, 迄今 未差, 今則明知其當兼謝使, 故勸以大臣之意陳達, 俾卽牌招政官, 差出使价, 而重臣終不陳此, 徒有咎 責, 未知其故, 此外未見其有急時稟定者, 至於監·兵 使之馳進, 聖算超越, 固非群下思慮之所及, 但兵 部之出來, 似有移咨我國之事, 則差送價使例也, 既 無移咨, 且不涉我境, 則帥臣追送, 未有可據事例, 而 彼之行期迅速, 定以四十日內往返云, 則計當不日 回旋, 今雖疾馳, 似無可及之理, 臣意, 欲令以牛酒, 越 送勞問, 而非但亦無以及時, 灣尹似已依前爲之, 故 思量不過矣, 然聖教之下, 臣之昏謬疎緩之罪, 安 得以自解乎, 南漢大操, 雖不無陵幸年事可言者, 而自有今春水原·南陽事以後, 爲守令者, 初不萌意 於停操, 反恐廟堂之或請停止, 臣亦念, 詰戎事重, 又 不能無顧嫌, 以依例請行之意, 答備堂之問, 備堂 筵奪, 亦無一言請停, 而自上特命停止, 今乃公然 疑人, 斷之以圖謀廟堂, 然則聽其圖囑之廟堂, 又當 作何如人耶, 將臣苟以戎政爲重, 則陳達意見, 更爲 請行可也, 何必不問事實之如何, 強疑守令, 重斥廟 堂, 而後爲得哉, 臣竊未曉也, 臣既病伏廢務, 而難安 之情又至於此, 理難一日仍冒, 伏乞聖明, 俯燭察 臣, 亟許鑄免, 仍降罪譴, 千萬幸甚, 仍念, 使价之差, 過 時已久, 凡事全無舉行, 將必有窘速之患, 卽命牌招 政官, 以兼使差出, 恐不可已, 卽見右相私書, 帥臣迎 接, 不如自上特遣人勞問云, 臣意或慮如是, 則彼以 有妨公審爲嫌, 且毋論帥臣·別使, 其爲後時之慮, 則 同矣, 雖然試欲急急追送, 則牛酒勞問, 竝爲分付似 好云云, 答曰, 省筍具悉卿懇, 飭勵之教何必撕捱, 守禦使陳達, 可謂得體, 語常稍峻卿亦知之, 既無意 於卿, 則亦何介意, 卿其安心勿辭, 亦勿引咎, 俟少間 卽爲視事, 用副于今小子之意, 兼使其令政院, 待朝, 政官牌招開政, 帥臣特遣, 予命則一也, 其令帥臣傳 下教, 牛酒勞問之意, 亦卽定禁軍分付焉, 答領議政金筍曰, 省筍具悉, 卿懇飭勵之教, 何必撕捱, 守禦使陳達可謂得體, 語常稍峻, 卿亦知之, 既無意於卿則, 亦何介意, 卿其安心勿辭, 亦勿引咎俟, 少間卽爲視用, 副于今小子之意, 兼使其令政院, 待朝政官牌招, 開政帥臣, 特遣予命則一也, 其令帥臣傳下教, 牛酒勞問之意, 亦卽定禁軍分付焉.

<미변사등록 116책, 영조 22년 1746년 08월18일(음)>

## 정치/군사

### 摠戎廳이 主管할 北漢 蕩春臺 節目

총융청 주관의 북한산성과 탕춘대(蕩春臺)의 절목(節目)

1. 경리청의 호칭은 오늘부터 폐지하고 총융청에 이속하여, 총융사로 하여금 북한산성과 탕춘대를 전담하여 주관하게 한다.

1. 총융청은 탕춘대에 옮겨 짓게 한다.

1. 총융청의 중군(中軍)은 북한산성의 관성장(管城將)을 겸찰하되, 전과 같이 북한산성에 머무른다.

1. 총융사가 북한산성을 구관하게 되어 있어 사체는 전과 다르다. 수어청의 예에 따라 종사관 1원을 가려서 차출한다.

1. 북한산성 및 탕춘대 수성군(守城軍)은 경리청에 당초 정한 수첩군관(守堞軍官) 2백66인, 별파진(別破陣) 2백인, 아병(牙兵) 6백35인, 의승(義僧) 3백50인, 총융청 7색 표하군(標下軍) 8백52명, 장초(壯抄) 10초(哨), 아병(牙兵) 60초, 둔장초(屯壯抄) 3초, 아병(牙兵) 3초, 군수보(軍需保) 6천5백명, 취철아병(取鐵牙兵) 80명, 모두 합하여 1만 2천 1백 30여 병(兵)이다. 이밖에 총융청과 경리청의 각색 장교·두목·기수(旗手) 원역(員役)등 6백여 인이 못되지 않는다. 이 수로 돌아가며 성첩을 지킬 수 있다. 이와 같이 거행한다.

1. 총융청에 소속된 3영중 수원진(水原鎭)은 설치목적이 중요하므로 군병을 옮겨 성을 지키는 거론할 바 못된다. 장단(長湍)·남양(南陽) 2진(鎭)은 수원진과 좀 다르다. 북한산성 및 탕춘대를 수성하는 군정이 부족할 경우에, 양진 중에서 어느 군병이든지 때에 임하여 뜻을 품하고 보충하여 수성한다. 비록 양진외의 다른 군병일지라도 조가에서 상황을 보아가며 지휘한다.

1. 북한산성에 소재한 경리청의 상·중·하 3창과 3군문의 유영(留營)에 있는 군향·군기 및 탕춘대에 소재한 경리청의 평창(平倉)군향은 아울러 총융청에 소속된다. 군향의 출납과 군기의 수보는 남한산성의 예에 따라 총융청에서 전담 구관하여 거행하게 한다.

1. 북한산성의 행궁(行宮) 및 호조창(戶曹倉)의 어공미(御供米)는 사체가 특별하여 변통하려 해도 어려운 점이 있다. 그대로 호조에 소속시켜 전과 같이 거행하게 한다.

1. 당초 북한산성을 쌓은 뒤 탕춘대에 선혜청의 창고를 짓고 식량을 비축한 것은 뜻하는 바가 있다. 지금 가벼이 폐지를 논할 수는 없으나 경리청 평창의 상창(上倉)은 전에 선혜청이 빌어 쓰도록 허용된 것이므로 그대로 선혜청에 획속(劃屬)하게 하고 본청의 탕춘창(蕩春倉)의 곡물을 이 창고에 옮겨 두고 전과 같이 선혜청에서 구관하게 한다. 선혜청의 탕춘창사는 총융청으로 소속을 바꾸고 총융청의 강창(江倉)곡물도 옮겨 두게 한다.

1. 성첩·성랑(城廊)의 수보 및 북한산성과 탕춘대의 수목을 금하여 기르는 등의 일도 총융청에서 거행하게 한다.

1. 의승(義僧)·산직(山直) 및 모집해 들이는 일 등 기타 시행할 모든 일은 앞서의 북한산성절목에 따라 총융청에서 구관하게 한다.

1. 경리청 및 3군문의 유영(留營)은 이미 폐지되었다. 이에 있는 군수(軍需)·군향·군기등 물품의 수량을 비변사에서 별단으로 계하하여 총융청에 붙이되, 남한산성의 예에 따라 연말에 비변사에 마감(磨勘:심사하여 종결지음) 한다.

1. 군향의 원수자중에 3분의1씩을 돌려가며 출납한다. 부근 기읍(畿邑)에 나누어주되, 전에 받은 백성·군병 등에게는 본소로 모두 납부하게 하되 고을에 받아 두지 못한다. 별도의 환곡에 있어서는 특별히 엄금하고 위반하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무거운 벌로 논죄한다.

1. 경리청의 원역 및 3군문 각창의 원역은 아울러 그대로 총융청에 옮겨 속하게 하되, 그중 긴요하지 않은 인원은 궤원이 생겨도 보충하지 말고 차차 줄이도록 한다.

1. 미진한 조항은 추후하여 마련한다.

摠戎廳主管北漢蕩春臺節目

一, 經理廳號, 自今革罷, 移屬摠戎廳, 令摠戎使, 專管北漢及蕩春臺爲白齊,

一, 摠戎廳, 移建於蕩春臺爲白齊,

- 一, 摠戎中軍兼察北漢管城將, 依前留住北漢爲白齊,
- 一, 摠使既管北漢, 則事體比前有別, 依守禦廳例, 從事官一員, 極擇差出爲白齊,
- 一, 北漢及蕩春守城軍段, 經理廳元定守堞軍官二百六十六人, 別破陣二百人, 牙兵六百三十五人, 義僧三百五十人, 摠戎廳七色標下軍八百五十二名, 壯抄十哨, 牙兵十哨, 屯壯抄三哨, 屯牙兵三哨, 軍需保六千五百名, 吹鐵牙兵八十名, 合爲一萬二千一百三十餘名, 此外摠·經兩廳各色將校頭目, 旗手員役等, 又不下六百餘人, 此數足以推移守堞, 以此舉行爲白齊,
- 一, 摠廳所屬三營中, 水原鎮段, 制置事面甚重, 移兵守城, 非所可議, 而至於長湍·南陽兩鎮段, 與水原稍異, 北漢及蕩春守城軍丁, 如或不足, 則兩鎮中, 某色軍兵, 臨時稟旨, 添補守城, 而雖是兩鎮外他軍兵, 自朝家, 亦可以觀勢指揮是白齊,
- 一, 北漢所在經理廳上·中·下三倉, 三軍門留營軍餉·軍器, 及蕩春臺所在經理廳平倉軍餉, 竝屬摠廳, 而軍餉糶糴, 軍器修補, 依南漢例, 令摠廳專管舉行爲白齊,
- 一, 北漢行宮及戶曹倉御供米, 事體自別, 如欲變通, 則亦有窒礙, 仍屬戶曹, 依前舉行爲白齊,
- 一, 當初北漢設築後, 惠廳之建倉於蕩春臺, 儲積糧餉, 意有所在, 今不可輕議還罷是白如乎, 經理廳平倉之上倉, 前既許借惠廳者, 仍爲劃屬惠廳, 以本廳蕩春倉餉米, 移置此倉, 依前自惠廳句管爲白遣, 惠廳蕩春倉舍, 則換屬摠廳, 而摠廳之江倉穀物, 亦令移置爲白齊,
- 一, 城堞城廊修補, 及北漢蕩春樹木禁養等事, 亦令摠廳舉行爲白齊,
- 一, 義僧山直及募入等事, 其他應行諸節, 依前北漢節目, 使摠廳句管爲白齊,
- 一, 經理廳及三軍門留營, 既已革罷, 所在軍需·軍餉·軍器等物數乏, 自備局別單啓下, 付之摠廳爲白乎矣, 依南漢例, 歲末磨勘備局爲白齊,
- 一, 軍餉元數中, 三分之一, 輪回糶糴爲白乎矣, 分給於附近畿邑, 曾前所受民人·軍兵等處, 而畢納本所, 毋得捧留爲白乎旃, 至於別還, 別爲嚴禁, 如有所犯, 則從重論罪爲白齊,
- 一, 經理廳員役, 及三軍門各倉員役, 竝仍前移屬摠廳爲白乎矣, 其中不緊額數, 待闕勿補, 次減省爲白齊,
- 一, 未盡條件追乎磨鍊爲白齊,

<비변사등록 117책, 영조 23년 1747년 05월07일(음)>

## 정치/군사

京畿監司 洪鳳漢이 南陽의 短劍 2개를 합쳐 1개의 劍으로 主조할 것을 건의하다

○ 또 아뢰기를, “신이 남양(南陽)의 군기(軍器)의 일로 부득불 아뢴 것이 있습니다. 병인년(1746)에 조정에서 단검(短劍)을 개조(改造)할 감으로 획급한 미전(米錢)을 가지고 전부사(前府使)가 재임 중에 6백 병(柄:자루)을 개조하여 비치하였고, 그 때 부사가 자체로 경비를 마련하여 새로 1백 50병을 비치하였습니다. 지금은 경비가 이미 다하였고 조정에서도 매번 획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단검을 그대로 둔다면 무용지물이 되는 데에 불과할 것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지금 남아 있는 단검의 수량을 통틀어 계산하여 그 두개의 도(刀)를 한 개의 검(劍)으로 합쳐 주조(鑄造)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아뢴 바가 나의 의견과 바로 같으니 그리하라.” 하였다.

又所啓, 臣以南陽軍器事, 不得不有所仰達矣, 丙寅年, 朝家以短劍改造次, 劃給米錢, 前府使時, 改備六百柄, 時府使自備物力, 新備百五十柄, 今則物力已盡, 朝家亦難每每劃給, 且仍置其短劍, 則將不過爲無用之物, 臣意則通計時存之數, 以其兩刀, 合鑄一劍, 似合事宜矣, 上曰, 所達, 正若予意, 依爲之.

<비변사등록 119책, 영조 25년 1749년 02월15일(음)>

정치/군사

領議政 金在魯 등이 摠戎廳의 南陽 巡操를 실행하자고 청하다

○ 같은 날 입시하였을 때에 영의정 김재로(金在魯)가 아뢰기를, “총융사가 남양(南陽)의 순시 조련을 장계하여 품하였습니다. 병사(兵事)를 강화하는 중한 업무를 능행(陵幸)이란 큰 역사를 방금 치렀다 해서 정지해서는 옳지 않으니 예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총융청에서 윤희 조련하기로 규식을 정한 뒤에 몇 번이나 하였는가?” 하였다. 총융사 구성임(具聖任)이 말하기를, “윤희 조련하기로 규례를 정한 뒤 기사년에 수원(水原)의 순회 조련을 행하였고 금년에는 남양의 차례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곧 병사를 강화하는 일이고, 또 규식을 정한 뒤에 수원에서는 행하였으니 규식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분부하라.” 하였다.

同日入侍時，領議政金所啓，摠戎使，以南陽巡操狀稟矣，詰戎重務，不可以纔經陵幸大役，而停止，使之依例設行何如，上曰，摠戎廳輪操 定式後，幾番爲之乎，摠戎使具聖任曰，輪操定式後，己巳年，行水原巡操，而今年則南陽當次矣，上曰，此乃詰戎之政，且定式之後，只行水原，依定式設行 事分付.

<비변사등록 123책, 영조 27년 1751년 08월07일(음)>

정치/군사

南·北漢 義僧의 防番變通節目 및 別單을 마련하여 들이다

○ 비변사의 계사에, “남·북한산성 의승의 방번 변통 절목(南北漢義僧防番變通節目) 및 별단(別單)을 마련하여 들임을 감히 아립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

○ 남·북한산성 의승 방번전 마련 별단(南北漢義僧防番錢磨鍊別單) (...)

북한산성 의승(北漢義僧)

경기(京畿) 6명

고양(高陽) 1명 10냥:대가 3푼을 제하면 실 9냥 9전 7푼

과천(果川) 1명 10냥:대가 3푼을 제하면 실 9냥 9전 7푼

과주(坡州) 1명 10냥:대가 7푼을 제하면 실 9냥 9전 3푼

남양(南陽) 1명 10냥:대가 7푼을 제하면 실 9냥 9전 3푼

금천(衿川) 1명 10냥:대가 3푼을 제하면 실 9냥 9전 7푼

연천(漣川) 1명 10냥:대가 1전 1푼을 제하면 실 9냥 8전 9푼 (...)

합계 6천 1백 63냥을 병조에서 받아들인 후 총 숫자를 총융청으로 이송하고, 조지서(造紙署)의 조역가(助役價) 4백 냥은 병조에서 받아들인 후 이송한다.

司啓辭，南·北漢義僧防番變通節目及別單，磨鍊書入之意，敢啓，傳曰，知道. (...)

南北漢義僧防番錢磨鍊別單 (...)

北漢義僧

京畿六名內

高陽一名十兩內 馱價三分除，實九兩九錢七分

果川一名十兩內 馱價三分除，實九兩九錢七分

坡州一名十兩內 馱價七分除，實九兩九錢三分

南陽一名十兩內 馱價七分除, 實九兩九錢三分

衿川一名十兩內 馱價三分除, 實九兩九錢七分

漣川一名十兩內 馱價一錢一分除, 實九兩八錢九分 (…)

合錢六千一百六十三兩自兵曹捧上都數移送於摠戎廳造紙署助役價四百兩自兵曹捧上後移送次  
<비변사등록 130책, 영조 32년 1756년 01월12일(음)>

### 정치/군사

摠戎廳의 習操時에도 尤甚面의 軍兵은 赴操하지 말도록 分부하라고 전교하다

○ 전교하기를, “양남은 어제 대신의 아뢰므로 하여 하교하였는데 오늘 호서 구관당상과 기백도 아뢰었다. 아, 임금이 제도(諸道)를 대함에 있어 어찌 들은 것에만 따르겠는가? 듣지 못한 서북 외에 거느리고 간 경우 외에 우심읍이 되어야 할 곳은 아울러 조련에 나아가지 말게 하라. 기전(畿甸)은 도신에게 물어보았으나 남한(南漢)의 면조(面操)는 우심읍이 없다고 하니 그대로 설행하라. 충융청은 남양(南陽)이 차례이나 바로 우심읍이다. 비록 신지(信地:관할 지역)에서 설행하지만 우심면(尤甚面)의 군병은 나오지 말게 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傳曰, 兩南昨因大臣所奏下教, 而今日湖西甸管 堂上·畿伯亦奏, 噫人君視諸道, 豈隨聞, 不聞西北外, 已領付者外, 當爲尤甚邑, 竝令勿赴, 畿甸, 則問于道臣, 南漢面操, 無尤甚邑云, 仍爲設行, 而摠戎廳, 則南陽當次, 卽尤甚邑也, 雖設行於信地, 尤甚面軍兵, 其令勿赴事分付.

<비변사등록 140책, 영조 37년 1761년 09월25일(음)>

### 정치/군사

충융사 최진해의 장계에 따라 南陽鎭의 巡操後 軍兵에게 施賞하는 일을 청하다

또 아뢰기를, “이는 충융사(摠戎使) 최진해(崔鎭海)의 장계입니다. 남양진(南陽鎭)의 금년 가을 순시 조련 후 군병에게 상으로 주는 무명과 전죽(箭竹)을 예에 의해 제급(題給)하고, 속오군(東伍軍)의 호궤(犒饋)는 해읍의 저치미(儲置米)에서 예에 의해 쓰도록 묘당에서 품지해 분부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이는 전례가 있으니 장청에 의해 시행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又所啓, 此摠戎使崔鎭海狀啓也, 以爲, 南陽鎭今秋巡操後, 軍兵賞格木箭竹, 依例題給, 東伍軍 犒饋, 以該色儲置米, 依例取用事, 令廟堂稟旨分付, 爲請矣, 此則自有前例, 依狀請許施何如, 上曰, 依爲之.

<비변사등록 140책, 영조 37년 1761년 10월09일(음)>

### 정치/군사

京畿監司 洪啓禧 등이 南陽의 牧子를 軍役に 充定하자고 건의하다

또 아뢰기를, “남양부사(南陽府使) 김치구(金致龜)가 이르기를 ‘백성은 적고 군인은 많은 데다 도민(島民)은 모두 목자(牧子:목장에서 말을 먹이는 사람)로 투입되어 양정(良丁)을 찾아 모을 길이 없다’ 하였습니다. 이는 변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니, 영의정 홍봉한이 말하기를, “목자가 너무 많다면 목군(牧軍) 자손이 아닌 자는 사정(査定)한 후에 군역(軍役)으로 충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시(該寺:사복시)에서 비국에 보고하고 처리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又所啓, 南陽府使金致龜, 以爲民少軍多, 而島民則皆投入於牧子, 良丁之搜括無路云, 此則宜

有變通矣，領議政洪曰，牧子若過多，則非牧軍子支，不可不查定後移充軍役，令該寺報備局處之好矣，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141책, 영조 38년 1762년 02월14일(음)>

## 정치/군사

**長湍의 옛營을 坡州로 옮겨 守城將을 겸하고, 臨津·長山의 別將을 守城의 두 別將으로 삼는 문제 등을 건의하다**

○ 이번 10월 13일 영의정 홍봉한이 차자를 올리기를, “엿드려 생각해 보니 관방(關防)을 설치하는 것은 국가의 중대한 일이므로 사실 가볍게 의논할 수 없겠으나 형세로 보아 그만 두지 못하고 일도 심히 어렵지 않은 것이라면 감히 일례로 침묵할 수 없는 바가 있습니다. 무릇 임진(臨津)과 장산(長山)에 성곽과 돈대를 설치하게 된 것은 기왕 성상의 독단에서 나온 것이므로 신이 사실 명을 받들고 그 일을 주관하였습니다. 문루(門樓)와 열둔(列墩)의 공사를 차례로 마친 뒤에 한두 장신(將臣)과 함께 전석(前席)에 나아가 감히 방어영(防營)을 장산으로 옮기는 뜻으로 진달하였으나 여러 의론이 일치하지 않고 또 농사가 거듭 흉년이 들어 인순하여 그대로 두고 완결 짓지 못하여 만만으로 예사롭지 않은 예산(睿算:임금의 계획)으로 하여금 처음은 있고 결말은 없게 만들었으니 세월만 헛되이 보낸 책임을 논하자면 신이 어찌 감히 회피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걸음이 있어 왕래하는 길에 그 상황을 일일이 살펴보니 성곽과 돈대가 모두 완전하고 백성들이 점차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만약 금년 봄에 총융사가 장문한 대로 두어 곳에 돈대를 더 설치하고 또 수목을 크게 기르게 하면 만에 하나 완급(緩急)이 있더라도 아마 힘을 얻을 수 있겠으나 염려되는 바는 다만 수비하는 일에 대하여 아직 계책을 정하지 못한 일입니다.

대저 장산이 비록 강을 등진 요새처이긴 하지만 지세가 치우치고 좁아 큰 진(鎭)을 수용하기 어려운데도 신이 종전에 이곳에 영(營)을 두어야 한 것은 미처 깊이 생각하지 못한 소치임을 크게 깨달았습니다. 장단(長湍)에 있어서는 그 곳으로 방어영을 옮긴 것은 당시 묘당의 의론이 어디에 근거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에 이르러 논하면 청석(靑石)의 험고(險固)와 여현(礪峴)의 관애(關隘)는 관리사(管理使)가 스스로 군병을 거느리고 가로막으면 들관저 멀리에 있는 장단에 의지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 청석과 여현 두 곳에서 방어하지 못했다면 일부이라도 방어하는 도리는 임진과 장단의 거험(據險)에 있다 하겠으나 그때에는 장단은 이미 유린을 당하여 적(賊)의 후방에 있게 될터이니 어떻게 적보다 먼저 나는 듯이 건너 두 진(鎭)에 성세(聲勢)를 합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이와 같다면 이른바 두 진에는 이미 청령(聽令)할 곳이 없게 되고 또 적을 대응할 기회조차 없어서, 장차 장강(長江)의 천참(天塹)으로 하여금 무인지경(無人之境)에 들어가는 것처럼 병자년(병자년:인조14년, 1636)·정축년(丁丑年:인조15, 1637)과 같이 될 것입니다. 또 송도(松都)에 이미 관리영(管理營)을 설치한 뒤에는 장단은 이미 경중을 논할 것조차 없는데 하물며 지금 묘당의 계획은 두 진에 중요성을 돌리고 있으므로 장단은 다만 헛된 이름만 띠고 있으니 더욱 유익함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주(坡州)에 있어서는 강을 연한 일대에 산이 둘러싸고 있으므로 비록 성을 쌓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믿을 수 있는 형세가 있고 또 그 읍치(邑治)의 진산(鎭山)은 고려 때의 봉명산성(鳳鳴山城)입니다. 지세가 깎아지른 듯이 험준하고 사방에 규봉(窺峰:넘겨다보는 봉우리)이 없기 때문에 고상신(故相臣) 유성룡(柳成龍)이 이 성을 수축(修築)하여 서울의 후면 방어영으로 만들어 인후(咽喉)를 장악하는 큰 계책으로 삼기를 청하여 도원수 권율(權慄)과

순변사(巡邊使) 이빈(李贛)이 패잔병을 수습하여 이 외로운 성을 보전하여 산돼지처럼 달려드는 왜적으로 하여금 다시 날뛰지 못하게 하고 끝내는 명나라 장수와 기각(掎角)의 형세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설사 임진과 장산이 병장(屏障)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오직 한 조각 읍성(邑城)만 가지고도 족히 험준에 의지하여 적을 방어할 수 있으니 방어사를 본래 좌주에 둔 것은 진실로 이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 두 진을 설치하고 서로의 유대(紐帶)가 긴밀하니 그 중요한 임무를 맡길 곳을 본주를 놔두고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이제는 굳이 별도로 조치할 것이 없이 다만 옛 영(營)을 좌주로 도로 옮겨 수성장(守城將)을 겸하게 하고 두 진의 별장(別將)을 성을 지키는 두 별장으로 삼아 평상시에는 두 진관(鎭管)을 본주에 소속시키고 유사시에는 본 고을의 수령이 두 진으로 나가 지키고, 인하여 강의 동쪽 여러 고을의 군사를 소집하여 그물 없듯 빙 둘러 지키게 하면, 우리가 환란(患亂)에 대비하는 도리에 적의하다 하겠고, 우리 성상께서 안정된 시대에 계시면서 위기를 염려하시는 큰 지모와 신묘한 계책도 장차 영구히 미래에 힘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방어사를 좌주에 도로 옮기려 하는 것은 옛 제도에 따르고 두 진을 지키는 장책(長策: 좋은 계책)에 지나지 않는데 강북(江北) 여러 고을을 아울러 좌주에 소속 시킨 것은 아마도 채찍이 배에 미치지 못하는[鞭下及腹] 염려가 있을 듯합니다. 그러니 경기 오른쪽 여덟 고을을 둘로 나누어서 고양(高陽)·교하(交河)·적성(積城)의 군사는 좌주에 소속시키고, 삭녕(朔寧)·마전(麻田)·연천(漣川)의 군사는 장단에 소속시키되 장단은 그대로 영장을 겸하게 하기를 한결같이 **남양(南陽)**의 예처럼 하고 이전대로 고랑(古浪)으로 하여금 위급에 다달아 항거하면서 지키는 곳으로 삼으며 좌주는 이력(履歷)을 높여 주고 사권(事權)을 중히 하여 **수원(水原)**의 규례를 대략 모방하고 충융청의 서남(西南) 관하(管下)에 각각 방어사와 영장을 두면 비로소 군제(軍制)가 더욱 갖추어지고 방어가 더욱 공고히 될 것입니다. 이는 대단하게 변통할 일도 아니고 좋도록 구처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술하는 바는 오로지 임진과 장산 두 진을 위한 것이므로 본주 산성은 여벌의 일에 속한다 하겠습니까. 읍치의 지적에 있고 옛날 쌓은 것이 아직 견고하여 비록 힘을 들이지 아니하더라도 수치(修治)할 수 있으니 이를 본주(本州)에 맡겨 편리한 대로 주선하게 하는 것도 또한 뜻하지 않은 사태에 대비하는데 일조(一助)가 될 것입니다. 구구한 얕은 소견은 단연 위와 같습니다. 비록 능히 낱알이 조리에 들어맞는다고 스스로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훈련대장 구선행(具善行)은 두 진을 설치할 때 헤아려 보았기 때문에 평상시에 논의한 바가 여기에 힘주어 주장하였고 충융사 구선복(具善復)은 주관하는 사람으로 봄 순행 때에 상하(上下)를 두루 살펴보았는데 그가 상탁(商度)한 바가 실상 신과 우연하게도 같았는데 논리(論理)하여 장청(狀請)하려고 하였으나 미처 올리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의 이 말은 하찮은 신하 한 사람만의 견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옳드려 원하건대 성명(聖明)께서 여러 대신과 비변사의 제신에게 하순(下詢)하셔 속히 재처(裁處), 재결을 바라옵니다.”

하니, 답하기를, “차자를 살펴보고 경의 처음 의견은 과연 나에게서 나왔으나 설치는 미비(未備)하다. 지금 경의 차자를 보니 조목조목 진술한 사안들이 적절하고, 여러 사람의 의논도 똑 같았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의 조치에 불과할 뿐이다. 차자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되 절목을 자세히 만들어 계하(啓下)하라. 이는 오직 책임자를 얻는 데에 달려 있으니 문관과 무관을 교차(交差)하는 자리로 만들고 대신과 상의하여 비의(備擬)하도록 정식(定式)하라.” 하였다.

今十月十三日領議政洪筍子, 伏以關防制置, 國之重事, 固何容輕議, 而若係勢不終已, 事不甚難者, 則有不敢一例泯默, 夫臨津長山之設置城墩者, 既出於聖意之獨斷, 而臣實承命主事, 及

其門 樓列墩次第訖役之後，仍與一二將臣，俱登前席，敢 以移防營於長山之意，有所陳達，而只緣諸議之參 差，且值年事之荏歎，因循置之，訖未完決，至使出尋 常萬萬之睿筭，未免爲有始無終之歸，論其玩愒 之責，臣何敢辭乎，臣於由行往來之路，歷觀形址，城 墩俱完，民居漸聚，若依今春摠戎使之狀聞，加設數 處墩臺，又爲長養樹木，則脫有緩急，庶幾得力，而所 可慮者，只是防守一款之尙未有定計也，大抵長山，雖是背江要害之處，而地勢偏隘，難容重鎮，則臣之 從前置營於此地云者，大覺其未及深思也，至於長 湍，則移設防營者，未知當時廟議之何居，而到今論 之，青石之險，礪峴之隘，管理使自當擁兵遮截，無所 藉於野地稍遠之長湍，苟使青·礪兩處，不能防遏，則 一分備禦之道，在於臨長之據險，方其時也，長湍已 被蹂躪，而在於賤後矣，其何能先於賊，而飛渡，合聲 勢於兩鎮乎，審如是則所謂兩鎮，既無聽令之所，又 失應敵之機，將使長江天塹，如入無人之境者，又如 丙丁之爲也，且松都既設管理營之後，則長湍已不 足以輕重，況今廟筭歸重於兩鎮，彼長湍之徒帶虛 號，尤知其無所益矣，至若坡州沿江一帶，岡巒周遭，雖不築城，已有可恃之形便，且其邑治之鎮山，卽高 麗時鳳鳴山城也，地勢陟絕，四無窺峯，此所以故相 臣柳成龍請其修繕，仍作京後防營，以爲扼吭之大 計，而都元帥權標及巡邊使李贊，收拾殘軍，保此孤 城，能使豕突之倭賊，不復憑凌，終成天將犄角之勢者也，假使無臨津·長山之爲其藩蔽，惟此一片邑城，亦足恃險，而禦賊，防禦使之本置此州，良以此也，矧 此兩鎮既設，綢繆政急，其所托重，捨本州何求哉，今 不必別有措置，只爲還移舊營於坡州，仍兼守城，將 以兩鎮別將，爲守城兩別將，平時則兩鎮管，屬於本 州，有事則本倅進守於兩鎮，仍爲召集江以東列邑 之軍，以爲羅絡環守之圖，則在我衣衲之備，可謂得 宜，而我聖上居安慮危之宏謨神筭，其將永賴於 方來矣，雖然防禦使之欲爲還移於坡州者，不過循舊制，守兩鎮之長策，江北諸邑之竝屬坡州，恐有鞭 不及腹之慮，畿右八邑，分而爲二，高陽·交河·積城之 軍，屬於坡州，朔寧·麻田·漣川之軍，屬於長湍，長湍則 仍兼營將，一如南陽之例，依前以古浪，爲其臨急拒 守之地，坡州尊其履歷，重其事權，略倣水原之規，使 摠營之西南管下，各有防禦使與營將，則方可以軍 制益備，關阨益鞏矣，此非大端變通之事，直是方便區處而已，而今茲所陳，專爲臨長兩鎮，則本州山城，便屬餘事，而邑居咫尺，舊築尙固，雖不費力，亦可修 治，此則付之本州，從便拮据，亦爲備不虞之一助矣，區區淺見，斷然如右，雖不能自保其一一中窾，而訓 鍊大將具善行，兩鎮設始時，審度之故，常時所論，力 主於此，摠戎使具善復，以主管之人，春巡之行，上下 周覽，其所商度者，實與臣不謀而同，至欲論理狀請，而未及上徹云，然則臣之此言，不可謂微臣一人 之獨見也，伏願聖明，下詢於諸大臣及籌司諸臣，速賜裁處焉，取進止，答曰，省筭具悉，卿懇初意 則果子，而設置則未備，今覽卿筭，條陳得宜，僉議詢 同，而亦不過一措置而已，依筭請施行節目，消詳啓 下，惟在得人，作文武交差窠，同于大臣備擬事，定式 焉。

<비변사등록 146책, 영조 40년 1764년 10월13일(음)>

## 정치/군사

副護軍 具善復 등이 坡州·長湍, 水原·南陽의 경우 南北 各 二營씩 輪回操鍊하자고 청하다 이번 10월 20일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부호군 구선복(具善復)이 아뢰기를, “본청(本廳:총융청을 지칭함) 소속 3진(鎭)은 매년 봄가을로 각 한 영(營)씩 윤회(輪回)하여 조련하기로 일찍이 정식(定式)하였습니다. 지금은 장단(長湍) 방어영(防禦營)을 파주(坡州)로 이설(移設)하고 장단은 또한 겸영장으로 하였으니 바야흐로 네 영의 제도가 되었습니다. 또 장단과 파주 두 고을의 거리는 수십 리에 불과하고 수원(水原)·남양(南陽)도 역시 그러합니다. 지금부터 이후로는 두 차례로 나누어 남북 각 두 영씩 윤회하여 조련

하도록 정식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그리하라.” 하였다.

今十月二十日,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副護軍具善復所啓, 本廳所屬三鎮, 每年春秋, 各一營式輪回操鍊事, 曾已定式矣, 今則長湍防營移 設, 坡州·長湍亦兼營將, 方爲四營之制, 且長·坡兩邑 相距, 不過數十里之間, 水原·南陽, 亦然, 自今以後, 分爲兩次, 南北各二營式輪回操鍊事, 定式施行何如, 上曰, 好矣, 依爲之.

<비변사등록 146책, 영조 40년 1764년 10월21일(음)>

## 정치/군사

### 坡州에 防營을 移設하는 節目을 正書하여 들이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파주(坡州)로 방어영(防禦營)을 이설(移設)하는 절목을 정서하여 올립니다. 감히 아뢰옵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 장단(長湍) 방어영(防禦營)을 파주(坡州)로 이설하는 절목(節目)

이번에 이 장단 방어영을 파주로 이설하는 것은 우리 성상의 깊고 원대한 계획이다. 임진(臨津) 일대는 기우(畿右) 제일의 관역(關陔)이다. 완급(緩急)에 대비하는 도리에서 임진 북쪽에 두는 것이 임진의 남쪽에 두는 긴요함만 못하다. 이 때문에 연전에 특교로 임진에 관방을 설치하고 이어 또 둔대(墩臺)를 장산(長山)에 쌓았으나 두 진(鎭)의 수어(守禦)가 아직도 갖추어지지 않았다 하여 방어영을 옮기게 된 것이다. 그리고, 본주(本州)의 군역이 적어 한 진영의 제도를 이루기 어렵다 하시고 연중(筵中)에서 성상의 확고한 결단을 내려 특명으로 본주에 있는 각 아문의 군적(軍籍)을 모두 방어영에 소속시켜 대략 수원(水原)의 예를 모방하게 하였고 이어 새로 둔전을 획급하여 오로지 군수(軍需)에 대비케 하셨다. 또 장단의 지세는 3도(道)의 요충지이므로 그대로 영장(營將)과 토포사(討捕使)를 겸하여 전영(前營)으로 삼게 하셨다. 지금부터는 강을 사이에 두고 나누어 지켜 드디어 기각(掎角)의 형세를 이루게 되었으므로 북관(北關)의 방비가 허술할 염려가 이에 완비되게 되었다. 그러므로 거행 조건을 아래에 열록(列錄)하여 영구히 준행하도록 한다.

1. 기우(畿右) 여덟 고을을 나누어 둘로 하여 고양(高陽), 교하(交河), 적성(積城)은 파주에 소속시키고, 삭녕(朔寧), 마전(麻田), 연천(漣川)은 장단에 소속시켜 장단 겸영장(兼營將)의 모든 사례(事例)는 한결같이 남양(南陽)의 예에 따라 시행한다.

1. 방어사는 종2품의 아문(衙門)이므로 육조(六曹)와는 통관(通關: 관문으로 통래함)으로 하되 병조는 본시 본병(衙門: 군사를 총괄하는 아문)이므로 서목(書目)을 갖추어 첩정(牒呈)한다. 각도 감사는 순찰사를 겸대하고 있으나 방어사는 2품직이므로 역시 일체 첩정으로 하되 본도 감영에는 서목을 갖추어 첩정하고 타도에는 서목 없이 첩정만 올린다. 본주는 방어사를 겸하였으므로 장단진(長湍鎭)과 토포사(討捕使)의 일로 공문을 보낼 때에는 통관(通關)으로 왕복하고, 우도(右道) 각읍의 군병은 비록 방어영에 매이지 않았으나 평시의 체모(體貌)는 한결 같이 수원(水原)의 예에 따라 시행한다.

1. 무릇 군무(軍務)로서 총융청에 관할된 것은 총융청과 상의하고 본도에 관할된 것은 순영(巡營)에 취의(奏)하되 혹 위급한 일이 있으면 곧바로 계문(啓聞)하고 봄과 가을에 순시할 때에 속읍의 수령으로서 군령(軍令)을 범한 자는 당상인 경우 장문(狀聞)하고 당하인 경우 곧장 이하는 스스로 단행하고 난에 임하여서는 아울러 군률로 종사하기를 한결 같이 다른 방어영의 예에 따라 시행한다.

1. 임진과 장산 두 진의 별장은 이전처럼 방어사의 절제(節制)를 받는다.

1. 이번에 방어영을 변통한 뒤에는 총융청 관하의 세 영(營)이 지금은 네 영의 체도가 되므로 봄과 가을 습조(習操)는 남과북 각 두 영씩 돌려가면서 거행하는 일을 한결같이 이번에 연중(筵中)에서 아뢴 바에 따라 시행한다.

1. 습조를 정지하였을 때의 순점(巡點) 등은 방어사와 영장이 각기 소속 고을에서 거행한다.

1. 장단에는 비록 방어영을 없앴으나 기왕 영장(營將)을 겸하였으므로 체모(體貌)가 있기 마련이니 관하 각읍에서 거행하는 범절은 한결같이 남양(南陽)의 예에 따라 시행한다.

1. 파주목(坡州牧)은 이미 방어사(防禦使)로 한 고을 백성을 전속시켰으므로 그 책임은 수원(水原)과 다름이 없으니 문관과 무관을 교대로 임명한다. 문신은 일찍이 승지를 지낸 사람으로 임명하고 무신은 일찍이 아장(亞將)을 지낸 사람으로 임명하되 묘당에 물어 의망한다. 장단은 비록 방어란 칭호를 없앴으나 영장과 토포사의 권한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므로 지금 남북을 단속한 뒤에는 더욱 특별히 가리지 않을 수 없으니 이뒤로는 반드시 문신으로 일찍이 승지를 지낸 사람과 무신으로 일찍이 곤수(關帥:병·수사)를 지낸 사람으로 의차(擬差)한다.

1. 방어사와 겸영장의 인신(印信) 각 한 개는 해조에서 만들어 보내게 한다.

1. 방어사가 거느리는 군관은 『속대전(續大典)』에 따라 3원(員)으로 정하고 영리(營吏) 등 원역(員役)은 다른 방어영의 예에 따라 정해 준다.

1. 방어영의 중군(中軍)은 이력이 있는 자를 자망(自望:자기 스스로 벼슬 아치의 후보자를 추천하는것)으로 가려 차출한다.

1. 방어사가 거느리는 군관 및 중군의 요미(料米)와 노복(奴僕)과 마필(馬匹)의 콩은 다른 방어영의 예에 따라 상진곡(常賑穀)의 모조(耗條)로 회감(會減)한다. 본진(本鎭) 군수(軍需)와 여러 장교의 각항 대솔원역(帶率員役)등의 요(料)는 추후에 형편대로 마련한다.

1. 방어영을 설치한 뒤에는 마병(馬兵)은 군제(軍制) 중에 없을 수 없는 것이니 별효사(別驍士) 2초(哨)를 설치한다. 몸이 건장하고 무예를 익힌 자를 각별히 가려 정하고 매년 한 차례씩 세 가지의 무예로 방어영에서 시험보여 취한 뒤에 총융청에 보고하고 다시 도시(都試)에 거수(居首)한 한 사람은 전시(殿試)에 직부(直赴)하는 일을 아울러 수원의 예에 따라 시행하되 군제(軍制) 별단(別單)을 계하(啓下)할 때에 일체로 써서 올린다.

1. 방어영의 여러 장교를 구근(久勤)으로 이동시키는 일과 50개월의 근무가 끝나야 승진시켜주는 등의 일은 한결같이 전례대로 시행하고, 장단 장교의 구근은 한결같이 남양(南陽)의 예에 따라 시행한다.

1. 파주는 우방영(右防營)이니 도입하고 왕래할 때에 역마를 타는 것을 좌방영(左防營)인 수원(水原)과 달리 할 수 없으며, 연로(沿路)의 공궤(供饋)와 군무(軍務)의 품보(稟報)도 한결같이 수원의 예에 따라 거행한다.

1. 방어사는 가선(嘉善)의 당상을 막론하고 비록 파직되었다 하더라도 전문(箋文)은 예에 따라 봉하여 보내며, 비록 나추(拿推)의 명이 있더라도 교대 전에는 방어영의 모든 일을 예에 따라 거행한다.

1. 방어영을 이설하면 백성을 모으는 정사가 진실로 급선무이니 방어영에서 신칙하여 거행한다. 백성을 모아 들인 뒤에는 모든 잡역은 우선 침책(侵責:침해하고 책임을 지움)하지 말고 안도하여 살게케름 한다.

1. 장단은 기왕 방어영을 없애고 영장만 겸하게 하였으니 연로에서 접대하는 절차에 방어사의 예로 하지 못한다.

1. 방어영 군사의 총 정원은 2부(部) 4사(司)를 한 영(營)의 제도로 한다. 고양, 교하, 적성에 있는 6초(哨)외의 14초(哨)는 본주(本州)에 있는 각군문·각아문의 납미군(納米軍)·납포군(納布軍)과 각처의 산지기(山直) 등 잡다한 명색(名色)을 모두 분정(分定)하여 액수를 충정(充定)한다. 각양 명색은 지금 창출간에 이정(移定)하기 어려운 바 장교와 군병의 군제(軍制)는 추후에 마련하여 별단으로 계하(啓下)한다.

1. 미진한 조건은 추후에 마련한다.

司啓曰，坡州防營移設節目，正書以入之意，敢啓，答曰，知道。

長湍防禦使移設坡州節目

今此長湍防營之移設坡州，卽我聖上深遠之謨，蓋臨津一帶，卽畿右之第一關陔，其在緩急備禦之道，置於津北，不如置於津南之爲緊，是故年前 特教，設關於臨津，繼又築墩於長山，而兩鎮守禦，猶有未備，所以有移營之舉，而本州軍額尠少，難成一營之制，乃於筵中，聖斷赫然，特命本州所在 各衙門軍籍，一併屬之防營，略倣水原之例，繼以劃給新屯，專備軍需，而長湍地勢，亦三道之要衝，仍兼營將與討捕使，作爲前營，自今以後，隔江分守，遂成掎角之勢，北關防備不虞之策，於是乎完矣，舉行條件，列錄于左，以爲永久遵行之地爲白齊，

一，畿右八邑，分而爲二，高陽·交河·積城，屬之坡州，朔寧·麻田·漣川，屬之長湍，而長湍兼營將凡干事例，一依南陽例，施行爲白齊，

一，防禦使既是從二品衙門，當通關於六曹，而兵曹則乃是本兵衙門具書目牒呈，各道監司既帶巡察使，防禦使雖曰二品職，亦當一體牒呈，而本道監營，則具書目牒呈，他道則無書目牒呈爲白遣，本州既兼防禦使與長湍鎮，以討捕使事文移之際，通關往復，右道各邑軍兵，雖不係於防營，平時體貌，一依水原例施行爲白齊，

一，凡係軍務之管於摠廳者，就議本廳，管於本道者，就議巡營爲白乎矣，或有警急，則直爲啓聞，及春秋巡歷時，屬邑守令之犯軍令者，堂上則狀聞，堂下則杖以下自斷，臨亂則竝軍律從事，一依他防營例施行爲白齊，

一，臨津·長山兩鎮別將，依前受節制於防禦使爲白齊，

一，今此防營，既已變通之後，摠戎廳所管三營，今爲四營之制是白如乎，春秋習操，南北各二營輪回舉行事，一依今番筵稟施行爲白齊，

一，習操停止之時，巡點等事，防禦使及營將，各其所屬邑舉行爲白齊，

一，長湍雖罷防營，既兼營將，則自有體貌，管下各邑舉行凡節，一依南陽例施行爲白齊，

一，坡州牧既兼防禦使，專屬一邑民人，則責任與水原無異，文武交差爲白乎矣，文臣則曾經承旨，武臣則曾經亞將之人，問于廟堂，擬望爲白遣，長湍雖祛防禦之號，營將討捕之權，則自如，今於南北團束之後，尤不可不另擇，此後則必以文之曾經承旨，武之已經闕帥者，擬差爲白齊，

一，防禦使及兼營將印信各一顆，令該曹造送爲白齊，

一，防禦使帶率軍官，依續典定以三員，營吏等員役，依他防營時例，定給爲白齊，

一，防營中軍，以有履歷者，自望擇差爲白齊，

一，防禦使帶率軍官及中軍料米與奴馬料太，依他防營例，以常賑耗會減爲白遣，本鎮軍需及諸將校各項隨率員役等廩料段，追後從便磨鍊爲白齊，

一，既設防營之後，馬兵軍制中不可無者，別驍士二哨設置爲白乎矣，身年壯健武藝閑習者，各別抄擇以定，每年一次三技武藝，自防營試取後，修報摠廳，更爲都試居首一人，直赴殿試等事，竝依水原例施行爲白乎矣，軍制別單啓下時，一體書入爲白齊，

一，防營諸將校，久勤遷轉及五十朔仕滿陞付等事，一依前例施行，長湍將校久勤，一依南陽例

施行 爲白齊，

一，坡州既是右防營，到任時及往來乘駟，與左防營 之水原，不可異同，沿路洪饋軍務稟報，一依水原 例舉行爲白齊，

一，防禦使無論嘉善堂上，雖在罷職，箋文依例封送 爲白遣，雖有拿命，交代前防營凡事，依例舉行 爲白齊，

一，防營既已移設，則募民之政，誠爲急務，自防營申 飭舉行爲白乎矣，民人募入之後，凡干雜役，姑勿 侵責，俾得以安頓奠居之地爲白齊，

一，長湍既罷防營，只兼營將，沿路接待之節，勿用防 禦使之例爲白齊，

一，防營軍摠定，以二部四司，以爲一營之制，而高陽· 交河· 積城所在六哨外十四哨段，以本州所在各 軍門各衙門納米布軍及各處山直等雜名色，一 竝派定，以爲充額之地爲白乎矣，各樣名色，今難 倉卒移定是白去乎，將校軍兵軍制，迫于磨鍊，別 單啓下爲白齊，

一，未盡條件，追後磨鍊爲白齊，

<비변사등록 146책, 영조 40년 1764년 11월11일(음)>

### 정치/군사

副護軍 具善復 등이 北漢 管城將이 中營將을 겸하게 하여 五營의 체제를 갖추자고 청하다

이번 11월 14일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부호군 구선복(具善復)이 아뢰기를, “본청에 소속된 남양(南陽), 수원(水原), 장단(長湍)은 당초에 좌영(左營)·중영(中營)·우영(右營)의 3 영의 제도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단의 방어영(防禦營)을 파주(坡州)로 옮겨 설치하고 장단을 겸영장(兼營將)으로 하면 마땅히 4 영이 되어야 하는데, 군제로 말하면 3 영의 제도에는 지나치고 5 영의 제도는 이루지 못합니다. 지금 만약 북한(北漢) 관성장(管城將)으로 중영장(中營將)을 겸하게 하고 영의 칭호를 고쳐 남양이 전영(前營)이 되고 수원이 좌영이 되고 파주가 우영이 되고 장단이 후영이 되고 북한이 중영이 되어 5 영의 제도로 완성하면 군제에는 구애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또 관성장을 각별히 가려서 차출하여 본성에 항상 머물게 하고 마음대로 이탈하지 못하도록 정식하여 시행하면 보장에서 수호하는 도리에 있어서도 타당할 것입니다. 대신에게 하문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영의정 홍봉한이 말하기를, “군제로 말하면 기왕 4 영이 된 뒤에는 마땅히 한 영을 더 넣어 5 영이 되게 하기를 한결같이 금위영, 어영청, 수어청등 여러 군문의 예처럼 하고 또 북한 군역을 승군(僧軍)을 합하여 계산하면 족히 한 영을 이루게 되지만, 총융청에 합조할 때에 중군(中軍)으로 하여금 관성장을 겸하게 한 것은 비록 편의에서 나온 것이지만 아무래도 차합니다 또 중군은 자주 교체하고 또 오래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성의 모든 일이 십분 허술하였습니다. 신이 갑술년(甲戌年:영조30, 1754) 총융사로 있을 때에 진달한 바가 있어, 그 때 대신이 변통하고자 하였으나 실행하지 못하였고 지금의 총융사가 작년에 또 진달한 바가 있어서 품처하라는 명이 있기까지 하였으나 아직까지 복주(覆奏)하지 못하였습니다. 중군은 이미 본복(本祿)이 있고 관성장도 또한 삭봉(朔俸)이 있으니 지금 별도로 관성장을 낸다 하더라도 조금도 허비되고 구애되는 연이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겸하여 사소한 의견이 있습니다. 방어사를 곤수(關帥)의 계제(階梯)로 한 것은 비록 급작스럽게 뛰어 오르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이나 법을 정하는 뜻으로 논하자면 아무래도 너무 국축(局促)함을 면치 못합니다. 이른바 각도 방어사는 그 자리가 매우 적은 가운데 금번 변통으로 또 한 자리를 잃게 되어 명성있는 무관의 진로가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 관성장을 지망(地

望)이 있고 품계와 이력이 있어 마땅히 방어사가 될 자로 차출하여 보내고 비망하여 낙점을 받는 직임으로 만들어 방어사의 이력으로 시행하게 하되 과만연한(瓜滿年限)을 계산함은 수령과 같이하고 이력삭수(履歷朔數)는 영장의 예대로 하되 의차(擬差)한 뒤에는 총융청에서 중부(中部) 천총(千摠)에게 전령하여 중·영장(中營將)의 직임을 겸하게 하고 도입한 뒤에는 마음대로 떠나지 못하게 하며 만일 병고가 있으면 다른 천총으로 교체하여 보내기를 대략 각읍 겸관(兼官)의 예에 따르면 오래 비워두는 폐단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니 군제를 정하고 일의 모양새를 중히 여기며 막힌 길을 소통하는 정사에 두루 타당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우의정의 뜻은 어떠한가?” 하였다.

우의정 김상복이 말하기를, “신도 이 의론을 듣고 좋다고 여겼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바가 진실로 좋으니 아울러 그리하라. 관성장의 삭수는 방어사의 예에 따르고 준삭(準朔:일정한 삭수에 따르는 것)이 못된 것도 진달한 바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홍봉한이 말하기를, “관성장은 결국 본 청에서 차출하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병조에서 의차(擬差)하더라도 본 청에서 자백(自辟)하는 것인 만큼 해조에서 의망할 지음 총융사와 왕복하면서 상의하여 특별히 가리도록 하는 일도 일체로 정식으로 만들고 준삭 뒤에 과만을 기다리지 아니하면 무단히 경체(徑遞)하는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이니 이 한 가지 일은 엄하게 방지하되 혹 해당 청에서 준행하지 않으면 논책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미리 신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今十一月十四日,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 時, 副護軍具善復所啓, 本廳所屬南陽·水原·長湍, 當初爲左中右三營之制矣, 見今長湍防營, 移設於 坡州, 長湍又兼營將, 則當爲四營, 而以軍制言之, 則 既過於三營之制, 而猶未成五營之制, 今若以北漢 管城將, 兼爲中營將, 改作營號, 以南陽爲前營, 水原 爲左營, 坡州爲右營, 長湍爲後營, 完成五營, 則軍制 似無掣礙之端, 且管城將, 各別擇差, 恒留本城, 不得 擅離事, 定式施行, 則在保障守護之道, 亦甚得宜, 下詢大臣處之何如, 領議政洪曰, 以軍制言之, 既 爲四營之後, 當添入一營, 作爲五營, 一如禁禦守諸 軍門之例, 且北漢軍額, 竝僧軍計之, 足成一營, 而合 候, 摠廳之時, 使中軍兼管城將者, 縱出便宜, 終涉苟 艱, 又況中軍既多數遞, 亦不長留, 故本城凡百, 十分 疎虞, 臣於甲戌年待罪摠使時, 有所陳達, 其時大臣 欲爲變通而未果, 今摠使昨年又有所達, 至命稟 處而姑未覆奏矣, 中軍既有本祿, 管城將亦有朔 廩, 今雖別出管城將, 少無耗費掣礙之端, 因此而兼 有微見, 防禦使之爲闔帥階梯者, 雖防驟躡之弊, 若 論其定法之意, 則終未免太局, 所謂各道防禦使, 其窠甚少之中, 今番變通, 又失一窠, 名武晉塗, 無以疎 通, 今此管城將, 以有地望有資歷, 當爲防禦使者, 差 送, 而作爲備望落占之職, 許以防禦使履歷施行, 而計瓜滿年限, 則視守令, 用履歷朔數則依營將擬 差後, 摠廳以中部千摠傳令, 仍兼中營將之任, 到任 後, 毋得擅離, 如有病故, 則他千摠替送, 略倣各邑兼 官之例, 以防久曠之弊, 則其於定軍制重事面疏滯 路之政, 俱似得宜矣, 上曰, 右相之意何如, 右議政 金曰, 臣聞此議, 亦以爲好矣, 上曰, 所奏誠好, 竝依爲之, 而管城將朔數, 依防禦使例, 未準朔, 亦依所 達施行可也, 洪曰, 管城將乃本廳所差下者, 今雖 自兵曹擬差, 便是本廳自辟該曹擬望之際, 與摠戎 使往復相議, 以爲另擇事, 一體定式, 準朔後, 則不待 瓜滿, 似不無無端經遞之弊, 此一款嚴加防塞, 如或 不遵該廳, 難免論責, 亦爲申飭好矣, 上曰, 依爲之.

<비변사등록 146책, 영조 40년 1764년 11월16일(음)>

## 정치/군사

**領議政 洪鳳漢 등이 水原·南陽의 秋操를 거행하자고 청하다**

○ 이번 7월 9일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이 아뢰기를, “이는 총융사 정여직(鄭汝稷)이 수원(水原)과 남양(南陽)에 추조(秋操)를 취품하는 장계입니다. 힐용(詰戎)은 본래 소중하고 경기 지방의 농사가 희망이 있으니, 예에 의거하여 조련을 행할 뜻으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今七月初九日,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洪所啓, 此摠戎使鄭汝稷, 水原·南陽秋操取稟狀啓也, 詰戎本重, 畿農將登, 依例行操之意, 分付何如, 上曰, 依爲之.

<비변사등록 148책, 영조 41년 1765년 07월09일(음)>

**정치/군사**

**領議政 徐志修가 수원과 남양의 봄철 조련을 관례에 따라 거행할 것을 청하다**

이번 1월 10일 조강에 대신과 비변사당상을 인견 입시했을 때, 영의정 서지수(徐志修)가 아뢰기를, (…) 또 아뢰기를, “이는 총융사(摠戎使) 구선행(具善行)의 장계(狀啓)입니다. 본영(本營) 소속 4진(鎭) 속오·군병(東伍軍兵)의 봄철 조련을 각 2영(營)씩 돌려가며 조련하는데, 올 봄에는 수원(水原)과 남양(南陽)의 차례입니다. 두 고을의 봄철 조련을 예대로 거행할 것을 묘당(廟堂)에서 품지(稟旨)하여 분부해 주시기를 청하였으니 장청(狀請)대로 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

今正月初十日朝講,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徐所啓, (…) 又所啓, 此摠戎使具善行狀啓也, 以爲, 本營所屬四鎭東伍·軍兵春操, 各二營輪回操鍊, 而今春 水原·南陽當次兩邑春操, 依例舉行事, 令廟堂稟旨分付爲請矣, 使之依狀請舉行何如, 上曰, 依爲之.(…)

<비변사등록 150책, 영조 43년 1767년 01월11일(음)>

**정치/군사**

**領議政 徐志修가 입시하여 水原과 南陽의 훈련을 正지하자고 건의하다**

이번 2월 5일 대신과 비변사 당상이 인견 입시했을 때, 영의정 서지수가 아뢰기를, “이는 총융사(摠戎使) 구선행(具善行)의 장계입니다. 올 봄의 순행 조련에서 활쏘기와 포 놓는 일을 시험보인 뒤에 상으로 줄 무명과 화살대 및 호궤(犒饋)할 쌀을 묘당으로 하여금 품지하도록 분부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저번 수원(水原)과 남양(南陽)은 작년 가을에 조련을 행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봄에 조련을 설행하도록 품정(稟定)하였는데, 다시 들으면 총융청에서 돌아가며 조련하는 일을 봄과 가을에 연달아 행하는 것은 근례(近例)에 없는 일이요, 또 사세(事勢) 역시 어려운 점이 있으니, 조련을 정지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러나 조련을 행하도록 했다가 또 정지하라 하면 역시 여하한 듯싶습니다. 어찌 하올지 감히 우러러 진달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사세가 그리하니 조련을 정지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今二月初五日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徐所啓, 此摠戎使具善行狀啓也, 以爲, 今春巡操試射放後, 賞格木箭竹及犒饋米事, 請令廟堂稟旨分付矣, 頃以水原·南陽, 非昨秋行操之處, 故春操設行事稟定, 而更聞摠廳輪操春·秋連行, 未有近例, 且事勢亦有難便之端, 停操爲宜, 而才令行操, 又使停止, 亦似如何, 何以爲之乎, 敢此仰達, 上曰, 事勢然矣, 停操可也.(…)

<비변사등록 150책, 영조 43년 1767년 02월06일(음)>

## 정치/군사

### 領議政 金致仁이 각 兵營의 가을 習操를 거행하자고 건의하다

○ 이번 7월 20일 약방의 입진에 대신과 비국의 유사당상이 함께 입시하였을 때에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이 아뢰기를, (….) 또 아뢰기를, “이는 황해병사 이인강(李仁康)의 올가을 습조(習操)와 점시(點視), 별무사(別武士)·향기사(鄉騎士)·무학(武學)의 도시(都試)를 취품(取稟)하는 장계, 수어사 김시묵(金時默)의 본청(本廳) 소속 속오(束伍) 아병(牙兵)의 올가을 합조를 취품하는 장계, 총융사 이장오(李章吾)의 본청(本廳) 소속 4진(鎭) 속오 군병의 올가을 윤조(輪操)를 취품하는 장계입니다. 습조와 점시, 여러 무사(武士)의 도시, 5영(營)의 합조(合操)는 모두 힐융(詰戎)의 중요한 일에 관계되니 모두 장청(狀請)에 의하여 시행토록 하고, 총융청은 지난번의 신칙하는 하교가 계셨으니 더욱 일체 거행해야 하겠으나 다만 본청의 윤조(輪操)는 수원(水原)과 남양(南陽)의 차례요, 올해 경기의 농사는 비록 풍년이 들 희망이 있으나 유독 수원과 남양 등 3~4개 고을이 한해를 가장 많이 입어 이미 흉년으로 판정이 났다고 하는데 지금 또 조련의 일을 더한다면 민정(民情)이 실로 걱정이 됩니다. 이는 일단 정지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니 이렇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今七月二十日藥房入診, 大臣·備局有司堂上, 同爲入侍時, 領議政金所啓, (….) 又所啓, 此黃海兵使李仁康, 今秋習操點視, 別 武士·鄉騎士, 武學都試, 取稟狀啓, 及守禦使金 時默, 本廳屬束伍·牙兵, 今秋合操, 取稟狀啓, 及 摠戎使李章吾, 本廳屬四鎭束伍·軍兵, 今秋輪操, 取 稟狀啓也, 習操·點視, 諸武士都試·五營合操, 俱係 詰戎重事, 竝依狀請施行, 摠戎廳, 纔有向來飭教, 尤 當一體舉行, 而但本廳輪操, 當次在於水原·南陽矣, 今年畿農, 雖有西成之望, 而獨水原·南陽等三·四邑, 最被旱災, 已判歉荒云, 今又加之以操鍊之事, 則民 情實爲可悶, 此則姑令停止, 爲宜, 以此分付何如, 上曰, 依爲之.

<비변사등록 150책, 영조 43년 1767년 07월20일(음)>

## 정치/군사

### 引見에 金致仁이 守禦使 申晦 등의 狀啓대로 습操 등의 시행을 건의하다

○ 이번 7월 초9일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 입시했을 때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이 아뢰기를,

“이것은 수어사(守禦使) 신회(申晦)의 본청(本廳) 소속 3영(三營)의 속오군(束伍軍) 및 좌·우부 아병(左右部牙兵)의 올가을 합조(合操:합동 훈련)를 취품(取稟)한 장계이고, 이것은 총융사(摠戎使) 김시묵(金時默)의 본청 소속 4진(四鎭) 속오 군병의 올가을 수원·남양(南陽)에서의 윤조(輪操:돌아가며 하는 훈련)를 취품한 장계이며, 이것은 강화유수 정상순(鄭尙淳)의 본영 군병 및 소속 4영(四營) 군병의 올가을 합조를 취품한 장계이고, 이것은 평안병사(平安兵使) 구선행(具善行)의 올가을 청북(淸北) 순조(巡操:감사의 순회 조련)를 취품한 장계이며, 이것은 충청병사 조제태(趙濟泰)의 올가을 순조 및 각 진영장(鎭營將)의 순점(巡點:순회 점검) 등 일을 취품한 장계이고, 이것은 황해병사 이방수(李邦綏)의 올가을 습조(習操:습진(習陣)과 조련)·점시(點視:점고와 시찰) 및 별무사(別武士)·향기사(鄉騎士)의 무학(武學:병법에 관한 학문) 도시(都試)를 취품한 장계입니다. 합조와 윤조·순조·순점·점시·제무사(諸武士)의 도시는 모두 군대를 조련하는 중대한 일이니 아울러 장청대로 시행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今七月初九日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領議政金所啓，此守禦使申晦，本廳屬三營束伍及左·右部牙兵，今秋合操，取稟狀啓也，此摠戎使 金時默，本廳屬四鎮束伍·軍兵，今秋水原·南陽輪操，取稟狀啓也，此江華留守鄭尙淳，本營軍兵及所屬四營軍兵，今秋合操，取稟狀啓也，此平安兵使具善行，今秋清北巡操，取稟狀啓也，此忠清兵使趙濟泰，今秋巡操及各鎮·營將巡點等事，取稟狀啓也，此黃海兵使李邦綏，今秋習操點視及別武士·鄉騎士·武學都試，取稟狀啓也，合操·輪操·巡操·巡點點視，諸武士都試，俱係詰戎重事，竝依狀請施行之意，分付何如，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152책, 영조 44년 1768년 07월10일(음)>

### 정치/군사

#### 金時默 등이 이번에 習操를 정지한 水原의 束伍軍 등을 點考할 것을 청하다

○ 같은 날 입시하였을 때에 총용사(摠戎使) 김시묵(金時默)이 아뢰기를, “제도의 수조·육조를 이미 정지하라고 명하였으니 수원·남양(南陽) 순조(巡操)도 당연히 똑같이 정지해야 하겠으나 수원은 5천의 병마(兵馬)를 4년이나 조련을 정지하였으니 군대를 조련하는 사무가 대단히 소홀합니다. 추수를 마친 후에 그 관문(官門)에 모아놓고 점고(點考)하게 하면 완전히 폐하는 것보다는 나을 듯합니다. 수원 및 남양 소속 제읍(諸邑) 속오군(束伍軍)·아병(牙兵:대장 휘하에 있는 병정)으로 이번에 조련을 정지한 자를 아울러 그 관문에서 농한기를 기다려 모아놓고 점고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의 그리하라 하였다. 김시묵이 말하기를, “또 구구한 소회가 있어 감히 이에 양달합니다. 제도 습조를 이미 정지하라고 명하였으니 영장 순점은 예에 따라 거행하는 것이 옳겠으나 순점의 폐단은 조련을 행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제도 순점도 또한 정지하게 하고 그 각 해읍으로 하여금 농한기를 기다려 관문에 모아놓고 점고하게 하면 민폐를 제거할 수 있고 용정(戎政:군정)에도 소홀히 하는 걱정이 없겠습니다. 대신에게 하순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우상의 뜻은 어떠하오?”

하였다. 우의정 이창의가 말하기를, “영장·성장 순점도 군민(軍民)에게 폐단이 많습니다. 이전부터 재해가 든 해에는 번번이 정지한 전례가 있으니 재신이 품달한 대로 각 읍에서만 돌아가며 관문에 모아놓고 점고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同日入侍時，摠戎使金時默所啓，諸道水·陸操，既命停止，則水原·南陽巡操，當一體停止矣，水原，以五千兵馬四年停操，其在詰戎之政，極爲疎漏，待穡事之畢，使其官門聚點，則似有勝於全然廢棄，水原及南陽所屬諸邑束伍·牙兵之今番停操者，竝令自其官，待農隙聚點何如，上曰，依爲之，時默曰，又有區區所懷，敢此仰達矣，諸道習操，既有停止之命，則營將巡點，自當依例舉行，而巡點之弊，無異於行操，臣意，則諸道巡點，亦令停止，使其各該邑，待農隙聚點於官門，則可除民弊，在戎政，亦無疎漏之慮，下詢大臣而處之，何如，上曰，右相之意何如，右議政李曰，營·城將巡點，亦多軍民之弊，自前災歲，輒有停止之例，依宰臣所達，只令各邑，輪回聚點於官門，似好矣，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152책, 영조 44년 1768년 07월30일(음)>

### 정치/군사

#### 左議政 韓翼耆가 금년 봄 水原과 南陽의 輪回 操鍊의 실행을 청하다

이번 1월 12일 상참에 입시하였을 때에 좌의정 한익모(韓翼謫)가 아뢰기를, “이는 총융사 김효대(金孝大)의 장계입니다. 금년 봄의 윤회 조련은 수원(水原)과 남양(南陽)이 차례에 해당합니다. 예에 의하여 설행하도록 조정에서 여쭙어 분부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윤회 조련에 정해진 법이 있으니 예에 의하여 거행하라는 뜻으로 분부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의 대답이 그리하라 하였다. (…)

今正月十二日常參入侍時，左議政韓所啓，此摠戎使金孝大狀啓也，以爲今春輪操，水原·南陽當次依例設行事，請令廟堂稟旨分付矣，輪回 操鍊，既有定式，依例舉行之意，分付何如，上曰，依 爲之.(…)

<비변사등록 155책, 영조 47년 1771년 01월13일(음)>

### 정치/군사

#### 摠戎使 金孝大가 各屯과 各邑의 壯抄牙兵의 習操을 건의하다

○ 이번 1월 24일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총융사 김효대(金孝大)가 아뢰기를, “수원(水原)과 남양(南陽)의 조련 시기가 정하여 졌는데 각 둔(屯) 각 읍의 장초 아병(壯抄牙兵) 등 군병은 속오군을 단속하는 것과 다르고 또 경기와 호서에 흩어져 있어 왕래할 즈음에는 바로 춘경(春耕)을 하게 되므로 폐단을 끼치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에 감히 이에 양달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특별히 취소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今正月二十四日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 時，摠戎使金孝大所啓，水原·南陽習操，師期已定，而至於各屯各邑壯抄牙兵等軍，異於團束東伍，且 散在畿內·湖西往來之際，正值春耕，貽弊不貲，故敢 此仰達矣，上曰，此則特拔可也.

<비변사등록 155책, 영조 47년 1771년 01월25일(음)>

### 정치/군사

#### 南陽府使 姜游가 南陽灣에 10리의 성을 쌓기를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상소를 첨부한 비변사의 계목을 계하하셔서 남양부사(南陽府使) 강유(姜游)의 상소를 보니, ‘본부의 지형은 삼면이 바다로 싸여 있어 실로 수로(水路)의 요충인데 관방(關防)을 하나도 설치하지 않았습시다. 만약 동서 두 산의 등성이에 영(營)에서 흙과 돌을 섞어 10리의 성을 쌓는다면 보장(保障)하는 바가 도리어 강도(江都)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 지도를 첨부했습니다. 대체로 남양부는 바로 경기도의 배후 병영으로서, 바다에서는 강도의 옷깃과 띠의 역할을 하고, 육지에서는 수원(水原)을 막고 가리는 역할을 합니다. 당성(唐城)의 앞바다에는 이미 중국에 조회하러 가는 옛길이 있고, 화량(花梁)의 쇠잔한 진(鎭) 또한 적의 침공을 받은 증거가 분명할 뿐만 아니라, 고을 안에 산이 있어 저절로 산등성이를 이루고 있어서 지세의 이로움으로 논하면 가히 하늘이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성을 쌓자는 논의는 실로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미리 대비하자는 계책에서 나온 것이며, 본 대로 조목조목 진달한 것 역시 생각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그저 성만 가지고는 저절로 막아질 수 없고 반드시 사졸이 있어야 하며, 사졸만 가지고 저절로 수비가 될 수 없고 반드시 쌀과 벼가 있어야 합니다. 설령 지금 청한 대로 몇 년의 기한을 정해 여기에 10리의 성을 쌓고 흙과 벽돌을 번갈아 써서 완연한 금성탕지를 만들더라도 어떤 사졸로 지키고 무슨 쌀과 벼로 대가를 지급하겠습니까? 이 한 가지 일은 아마도 깊이 헤아리지 못한 듯합니다. 대체로 경기의 남쪽은 바다로 둘러 싸인 읍이 5, 6곳

인데 유독 교동(喬桐)에만 성을 설치하여 강도의 형세를 껴안게 하였으며, 육지에 이어진 읍이 6, 7곳인데도 유독 **독성(禿城)**에만 성을 설치하여 **수원**을 막게 했습니다. 옛 사람이 설치한 뜻을 대체로 알 만하니 지금 별도의 의견을 창출하여 구차하게 곳곳에다 성을 쌓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또한 올해 경기도의 농사는 흉년을 면했다 하더라도, 춘궁기에 처한 주민의 형편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으니 어려운 때에 큰일을 하는 것 역시 염려해야 합니다. 상소의 내용은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계를 올리니, 말 한 바가 사리는 있는 듯하나 따르기는 어려우니 회계한 대로 시행하라고 하였다.

司啓日，粘連啓下是白有亦，觀此**南陽府使** 姜游上疏，則以爲本府地形，三面環海，實爲水路之要衝，而無一關防之設置，若於東西兩山之脊，營築 土石間十里之城，則其所保障，反勝江都云，而仍爲 附上其地圖矣，蓋此**南陽**之爲府，卽是畿輔之後營，以海則江都之襟帶，以陸則**水原**之障蔽，唐城前洋，既有朝天之舊路，花梁殘鎮，又著受鋒之明驗 不喻，中邑有山，自成岡脊，若論地利，可謂天作，今此 築城之議，誠出撤土之策，而條陳疏語，亦有意見是 白乎矣，第念徒城，不能自捍，必待士卒，徒卒不能自 守，必待米布，設令依今所請，定爲幾年之限，築斯十 里之城，交以土甃，宛作金湯是白良置，以何士卒而 守防，以何米布而給代乎，於此一事，恐不深量是白 遣，大抵畿之南，環海而邑者五六，獨設城於喬桐，以 拱江都之勢，連陸而邑者六七，獨置城於禿城，以塞 **水原**之衝者，古人設置之意，蓋可知矣，今不必創出 別見，層層於隨處築城是白遣，且今年畿農，雖曰免 歉，窮春民勢，轉益艱乏，時詘舉羸，亦所當念，上疏內辭意，置之何如，啓言似有理，事則難從，依回啓 施行爲良如教。

<비변사등록 164책, 정조 6년 1782년 01월15일(음)>

## 정치/군사

### 領議政 金致仁 등이 6營 장교의 久勤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 이번 12월 16일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이 아뢰기를, (….) 김치인이 아뢰기를, “그 하나는 기내(畿內)의 수어청·총융청의 6영(營) 내에서 광주(廣州) 등 5영의 장교(將校)는 구근(久勤)으로 천전(遷轉)하는 법이 있으나 유독 후영(後營)인 죽산(竹山)만이 천전하는 법이 없어 군교(軍校)들이 분주히 호소한 지 이미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향장교(鄉將校)를 변장(邊將)으로 천전하는 것은 방치(放置)한 자리[窠]에 지나지 않고 또 그 연한(年限)을 늘리면 경장교(京將校)를 천전하는 길에 심히 방해가 되지는 않을 것 같으며 또 이것도 어렵다면 다만 추후 실시한 **남양(南陽)**의 구근삭수(久勤朔數) 내에서 절반으로 고루 나눠 **남양**·죽산 두 고을로 하여금 한 자리를 함께 차지하고 돌아가면서 천전하는 일입니다. 신은 각 군문의 구근(久勤) 일에 항상 개연하고 민망하게 여겨 왔습니다. 옛날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 같은 명장들은 모두 변장에서 발신(發身)하여 나라를 위하여 힘을 다 바쳤습니다. 한번 구근의 법이 생기자 다시는 군교 배들만의 독식(獨食)하는 계제가 되지 않았고 구근의 길이 차차 넓어지자 향장교에게도 미치게 되었습니다. **남양**도 구근으로 천전하게 한 것은 오래된 일이므로 지금은 말할 것이 없겠으나 수어청과 총융청 소속의 6영 중에서 5영의 군교는 모두 구근으로 천전하는 법이 있는데 유독 죽산만이 일시(一視)의 은택을 입지 못하니 그들의 호원(呼冤)은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구근으로 천전하는 길이 많아 변장의 자리가 적어졌을 1자리를 더 만드는 것은 사실 논할 수도 없으나 **남양**의 경우는 구근을 돌아가면서 보고하게 하고 또한 종전대로 삭수(朔數)를 계산하여 천전하게 하면 **남양**의 구근은 전보다 더덜지라도 죽산의 군교에 있어서는 더는 따돌림을 당한다는 탄식은 없을 것이니 이런 내용으로 해조(該曹:병

조를 지칭함)에도 일체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의 그리하라 하였다. (…)

今十二月十六日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 時, 領議政金所啓, (…) 金曰, 其一, 畿內守禦·摠戎屬六營內, 廣州等五營 軍校, 有久勤遷轉之法, 惟後營竹山, 無遷轉之法, 軍 校輩, 奔走呼訴, 已至數十年之久, 鄉將校·邊將遷轉, 不過等棄之窠, 且又寬展其年限, 則似不甚妨於京 校遷轉之路, 此猶爲難, 則但就追設之南陽久勤朔 數內, 折半均分, 使南·竹兩邑, 共一窠而輪回事也, 臣 於各軍門久勤事, 常所慨悶, 如昔忠武公李舜臣等 名將, 皆由邊將而起, 爲國效力, 一自久勤法出, 不復 只爲軍校輩哺啜之階, 而久勤之路, 次次漸廣, 以至於鄉將校矣, 南陽久勤之又許遷轉, 事在久遠, 今不 須言, 而守禦摠戎屬六營之中, 五營軍校, 則皆有久 勤遷轉之法, 獨竹山, 未蒙一視之澤, 則渠輩呼冤, 雖無足怪, 然當此久勤多岐, 邊將窄窠之時, 加出一窠, 固非可論, 而若如南陽輪報久勤, 亦令依前計朔 數遷轉, 則南陽久勤, 比前雖遲, 在竹山軍校, 則更無 向隅之歎, 以此該曹, 一體分付何如, 上曰, 依爲之. (…)

<비변사등록 171책, 정조 11년 1787년 12월17일(음)>

### 정치/군사

左防禦使를 南陽에 소속시키고 捕討使는 신설되는 防營에 移設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전교하시기를, ‘경기도는 방어의 중요 지역으로 하루라도 자리를 비워둘 수 없다. 좌방어사를 어느 고을에 귀속해야 하는지의 당부를 대신과 병판이 상의해서 이치를 논하여 초기해 품처할 것을 묘당에 말하라. 도백이 예겸하는 유수는 정관(政官)이 문이 열리기를 기다려 패초해 개정(開政)하고, 겸유수 및 좌방어사 하비(下批)에 독성중군(禿城中軍)은 예전대로 당연히 본부 소관의 중군으로 하고, 이력은 마땅히 대흥(大興)의 전례를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계급을 좀 높여야 하는가? 직장(職掌)은 단지 집힐(緝詰)의 정사만 관장하고 토포사의 명함은 겸하지 않는가?, 아니면 토포사는 신설된 방영에서 겸대토록 하는가? 역시 묘당에서 하나를 선택해 품처하라.’ 고 명하셨습니다. 좌방영(左防營)은 의당 죽산(竹山)·장단(長湍)·부평(富平)·인천(仁川)·남양(南陽) 중으로 이설해야 되는데, 죽산은 지세가 좀 다르고, 장단은 과주에 이속된 지 이미 오래되어 다시 논의할 필요도 없고, 부평은 별다른 의의가 없고, 인천은 비록 형편이 낫다고 칭할 만하지만 처음 설치하는데 일과 힘을 쓰는 것과 같은 비용으로 볼 것 같으면 당연히 남양으로 귀속해야 합니다. 대개 그 관방(關防)과 군교(軍校)는 크게 경장하는 데에 이르지 않아서 스스로 방어영을 설치할 수 있으니, 경기좌방어사를 남양부에 이설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병조판서 이문원(李文源)에게 물었더니 그 사람의 논의도 저의 견해와 일반이었습니다. 독성 중군의 이력은 당연히 대흥 예를 활용하고, 수원부유수를 의망해 차출함에는 개성유수보다 한 자급을 더해 정2품으로 하면 중군 역시 당연히 좀 계급이 있어야 하니, 변지(邊地)보다 윗급으로 차출해 보내는 것을 정식으로 하고, 다만 집힐하는 정사만 관장토록 할 것입니다. 토포사의 경우, 이는 경기도토포사에 관계되니 아마 수원부 중군에게 부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일체로 신설되는 방영에 이설하고, 수원 한 부내의 금집(禁戢)하는 정사 역시 당연히 개성·강화 두 군영의 규례대로 수원부에서 거행하도록 아울러 분부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傳曰, 畿輔防禦重地, 不可一日曠任, 左防禦使屬之何邑當否, 大臣·兵判相議論理草記 稟處事, 言于廟堂, 道伯例兼居留, 政官待開門牌招開 政, 兼留守及左防禦使下批, 禿城中軍, 依前當爲本 府所管之中軍, 而履歷則只當用大興例乎, 抑稍尊 階級乎, 職掌則只管緝詰之

政, 而不兼討捕使名乎, 抑討捕使, 使新設之防營兼帶乎, 亦令廟堂指一稟 處事命下矣, 左防營當於竹山·長湍·富平·仁川·南陽中移設, 而竹山地勢稍異, 長湍移屬於坡州已久 不必更議, 富平別無意義, 仁川雖稱形便, 而設始似 費事力, 則當以南陽爲歸, 蓋其關防也, 軍校也, 不至於大更張, 而自可置防禦營, 京畿左防禦使, 移設於 南陽府爲宜, 問于兵曹判書臣李文源, 則其議與淺 見一般, 禿城中軍履歷, 當用大興之例, 而本府留守 差擬, 視松留加一等爲正二品, 則中軍亦當, 稍存階 級, 以邊地以上差遣定式, 而只管緝詰之政, 至於討 捕使係是京畿討捕使, 則恐不可付之水原中軍而 已, 此則一體移設於新設防營, 水原一府內禁戢之 政, 亦當依松·沁兩營例, 當自本府舉行, 竝以此分付 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181책, 정조 17년 1793년 01월16일(음)>

### 정치/군사

摠戎使 李邦一이 陽城·仁川 등에 주둔한 牙兵 2哨를 南陽에 移屬하여 習操하자고 청하다

○ 같은 날 입시에서 총융사 이방일(李邦一)이 아뢰기를, “수원에 있는 장초(壯抄) 3초(哨), 아병(牙兵) 1초(哨)를 수원부에 이속하였으니 그 대신을 형세 상 채워야 하겠는데, 기유(己酉)년에 고양(高陽) 아병을 감액하고 대신 장단(長湍) 군수보(軍需保)를 작초(作哨)로 이름을 바꾼 전례에 의거하여, 인천(仁川)·적성(積城) 등 읍에 있는 군수보를 작초(作哨)로 이름을 바꾸었으니, 과총(把摠)·초관(哨官) 역시 군정(軍丁)이 소재한 읍에서 차출해서 수원 습조(習操) 때 참조(參操)하고, 양성(陽城)·인천 등의 둔아병(屯牙兵) 2초를 남양(南陽)에 옮겨 부처 습조할 것을 정식으로 삼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 이 이르기를, “일찍이 총융사를 지낸 사람 역시 소견을 개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형조판서 이경무(李敬懋)가 아뢰기를, “신은 기해(己亥)년에 잠깐 총융사를 지냈는데 지금 요량해서 아될 수 없습니다.” 하였고, 행부사직 조심태(趙心泰)가 아뢰기를, “양성 등 읍에 둔아병이 비록 함께 훈련에 참조하더라도 정군(正軍)과는 다르고, 형세가 앞으로 남양방영(南陽防營)에 나아가 참조하는 것은, 수원에 나아가 조련에 참여할 때와 비교하면 길이 좀 멀어 이것이 매우 불편할 것입니다.” 하니 행부사직 서유대(徐有大)는 말하기를, “총융사가 아뢰바와 이견이 없습니다.” 하였다.

행부사직 이한풍(李漢豐)은 말하기를, “방영을 기왕에 남양으로 옮겼으니 지금 이 둔아병 역시 남양에 이부(移付)해 습조하는 것이 아마도 일에 마땅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묘당에서 품처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同日入侍, 摠戎使李邦一所啓, 水原所在壯抄三哨·牙兵一哨, 移屬本府, 則其代勢將填充, 依己酉高陽牙兵減額代以長湍軍需保, 換名作哨例, 以仁川·積城等邑所在軍需保, 換名作哨, 把摠·哨官, 亦以軍丁所在邑差出, 水原習操時參操, 陽城·仁川等屯牙兵二哨, 移付於南陽習操事, 定式施行何如, 上曰, 曾經摠使亦陳所見可也, 刑曹判書李敬懋曰, 臣於己亥年, 暫經摠使, 今不可料量仰達矣, 行副司直趙心泰曰, 陽城等邑屯牙兵, 雖與參操正軍有異, 勢將赴操於南陽防營, 而比之於水原赴操時程途稍遠, 此甚難便矣, 行副司直徐有大曰, 與摠戎使所奏, 別無異見矣, 行副司直李漢豐曰, 防營既已移設於南陽, 則今此屯牙兵亦爲移付於南陽習操, 恐合事宜矣, 上曰, 令廟堂稟處可也.

<비변사등록 181책, 정조 17년 1793년 02월05일(음)>

### 정치/군사

陽城·仁川 등의 牙兵 2哨를 南陽 防禦營에 이속시킬 것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총융사 이방일(李邦一)이 아뢰 바 비지(批旨) 안에 묘당에서 품처 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수원(水原)에 소재한 총융청 장초(壯抄) 3초(哨)와 아병(牙兵) 1초를 이속하는 대신, 인천(仁川)·적성(積城) 등 읍의 군수보(軍需保)를 이름을 바꿔 초(哨)로 만드는 일은 기왕에 고양(高陽)의 아병을 감액한 대신 장단(長湍) 군수보를 초로 만든 한 예는, 이것은 소청한 대로 시행한 것이고, 과총(把摠)·초관(哨官)도 역시 군정(軍丁)이 소재한 읍에서 차출하였습니다. 수원(水原)에서 습조할 때 참여해 조련하는 경우, 양성(陽城)·인천 등의 아병 2초를 남양(南陽)에 부처 습조하는 일은 신이 연석에서 물러난 뒤 여러 장신들과 같이 그 편부를 충분히 의논한 결과 훈련대장·금위대장 두 장신의 소견은 연석에서 주달한 것과 별로 다른 점이 없었습니다. 어영대장은 처음에 양성은 남양과 거리가 좀 먼 것 같다고 난색을 표했지만, 뒤 미처 들어 보니 양성은 남양과의 거리가 70~80리에 불과하고 또 남양이 기왕에 방영(防營)이 되었으니 조련에 나가는 군병을 남양에 이속시키는 것이 사리에 당연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남양에 부치지 않으면 그 형세는 불가불 장단이나 파주(坡州)에 부쳐야 되는데, 그 거리의 먼 것이 남양에 비교해 두배나 다섯 배일뿐만이 아니니, 총융사가 주달한 대로 남양 방어영에 부치도록 분부함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司啓曰，摠戎使李邦一所啓，批旨內，有令廟堂稟處之命矣，水原所在摠廳壯抄三哨牙兵一哨移屬之代，以仁川·積城等邑軍需保，換名作哨事，既有高陽牙兵減額代以長湍軍需保作哨之例，此則依所請施行，而把摠哨官亦以軍丁所在邑差出，至於水原習操時參操，陽城·仁川等牙兵二哨移付南陽習操事，臣筵退之後，與諸將臣爛商便否，則訓·禁兩將臣所見與筵上所奏，別無異同，御將初以陽城之於南陽，程途似稍遠，有所持難矣，追聞陽城距南陽不過七八十里，且南陽既爲防營，則赴操軍之移屬於南陽，事理當然云，今若不付南陽，則其勢不可不付之湍·坡兩鎮營，而其程途之遠，比諸南陽，不啻倍蓰，依摠使所奏，移付於南陽防營之意分付何如。  
<비변사등록 181책, 정조 17년 1793년 02월06일(음)>

#### 정치/군사

水原 防營의 南陽 移設은 한강 남쪽의 사정을 잘 아는 將臣을 파견하여 결정할 것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 방영을 남양으로 이설하는 일은 지난번에 초기해 윤희를 받았는데 형편이 기왕에 멀리서 헤아리기도 어렵고 여러 의논도 아직 통일되지도 않았습니 다. 전에는 관방을 처음 설치할 때는 별도로 장신을 보내 살펴보도록 하는 예가 있었습니 다. 이번에도 장신 중에 한남(漢南)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을 여러 읍에 보내 편한 지 여부 를 자세히 살펴보게 하고 돌아온 뒤에 하나를 지적하여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水原防營移設於南陽事，頃已草記蒙允，而形便既難遙度，諸議亦未歸一，在前關防設始之時，有別遣將臣看審之例矣，今番亦以將臣中，熟諳漢南事情之人，委送該邑，使之詳察便否以來後，指一決處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181책, 정조 17년 1793년 02월30일(음)>

#### 정치/군사

御營大將이 南陽에 내려가 防營의 形편을 자세하게 살펴본 뒤 稟處하라고 전교하다  
○ 전교하기를, “남양(南陽)에 방어사병영(防禦使兵營)에 대한 형편은 장신(將臣) 중에서 보내서 자세하게 살펴본 뒤에 품처하도록 묘당에서 초기(草記)하여 이미 윤희를 내렸으니, 장신은 어영대장이 내려가도록 분부하라.” 하였다.

傳曰, 南陽防營形便, 將臣中下送看審以來後稟處事, 廟堂草記既允下, 將臣則御將下去事分付.  
<비변사등록 181책, 정조 17년 1793년 03월01일(음)>

#### 정치/군사

**내일 有司堂上과 御營大將은 와서 대기하라고 전교하다**

전교하기를, “남양(南陽)에 방어사병영(防禦使兵營)을 실시(設始)하는 것이 마땅한지의 형편을 살피는 사안은 묘당의 초기(草記)로 겨우 허락이 있어서 어영대장을 내려가게 하였으니, 내일 유사당상과 어영대장이 와서 기다리도록 분부하라.” 하였다.

傳曰, 南陽防營設始當否看審形便事, 廟堂草記, 才有許施, 令御將下往, 明日有司堂上與御將來待 事分付.

<비변사등록 181책, 정조 17년 1793년 03월09일(음)>

#### 정치/군사

**副司直 尹行任이 입시하여 防營을 南陽府로 移設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 3월 22일 나와서 대기하던 여러 신하가 입시하였을 때에 부사직 윤행임(尹行任)이 아뢰기를, “신이 하교에 따라 어영대장 조심태(趙心泰)의 남양부(南陽府) 간심서계(看審書啓)를 가지고 대신에게 가서 의논을 하였더니 우의정 김이소(金履素)는 말하기를 ‘서계 속에 남양부는 본래 육군영장(陸軍營將)이라고 말하였으니 방해(防海)에 관한 문제는 처음부터 의논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육로(陸路)에 있어서는 호우(湖右)의 여러 도(道)들이 남양에 있는 도로를 거치고 있으니 여기에 방어사(防禦使)를 창설하는 것도 아마 권의(權宜)에 부합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부는 처음부터 충용청의 전영(前營)에 의지하여 있으니 급한 병마(兵馬) 문제는 당연히 충용사의 절제(節制)를 받아야 하는데 방어의 칭호는 도리어 공허하게 얽혀있어서 이 문제는 사실 큰 어려움입니다. 지금 새로 옮기는 사안의 편부(便否)에 대하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진실로 논의해야 할 것이니 묘당에 하문하여 처리하십시오.’ 하였습니다. 지금 어영대장이 진술한 형편으로 보면 해방(海防)은 이미 영종(永宗)의 방어와 교동(喬桐)의 통어(統禦)가 있어서 중첩 설치는 필요하지 않으며, 만약 당진(唐津)·면천(沔川)의 진로(津路:나루 길)와 양평(陽平)의 간도(間道)를 위하여 설치한다면 예컨대 영남·호서의 충주와 경기·황해의 김천(金川)에도 역시 방어를 설치한 일이 없는데 어찌 유독 남양에만 이 방어를 설치하겠습니까? 그리고 수원에 당초 방어사를 설치한 것은 오로지 삼남(三南)의 요충(要衝)을 위해서이고 본부가 이미 장용영(壯勇營)과 외사(外使)를 겸한 뒤로는 그 보장(保障)에 대한 증가된 중요성이 종전에 비교하여 10배 뿐만이 아니면 설치하여서는 부당한 곳에 다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의 의견은 이설(移設)하는 한가지는 그대로 두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영대장이 먼저 소견을 말하고 유사당상 및 여러 장신(將臣)들도 각각 의견을 말하는 것이 좋겠다.” 하자 어영대장 조심태(趙心泰)가 말하기를

“남양부(南陽府)에 방영(防營)을 시설함은 바다로나 육지로나 모두 편리하지 못하다는 뜻을 일전에 이미 서계로 제 의견을 대략 말씀드렸습니다. 신의 의견은 설방(設防)에 관한 문제는 그만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였다.

좌참찬 정민시(鄭民始)가 말하기를 “당초에 방영(防營)을 남양에 옮겨서 설치하려는 것은 이미 형편을 헤아려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옮길 곳이 없어서 갑작스럽게 창설(創設)한 것에 불과하였는데 지금 간심(看審)한 장신(將臣)의 의견이 이와 같고 또 시설하려는 영제(營

制)에도 편리하지 못한 단서가 많으니 남양에 방영은 그만두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하였으며, 행사직 김문순(金文淳)은 말하기를, “신의 의견도 역시 이와 같아서 별도로 다시 말할 것이 없습니다.” 하였고 호조판서 심이지(沈頤之)는 말하기를, “남양에 방영을 설치함은 수륙(水陸)에 이미 긴요함도 없으며 또 읍을 옮긴 연후에 방영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설할 때의 허다한 사력(事力)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으니 그만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수어사 이문원(李文源)이 말하기를, “남양에 방영의 설치를 신이 지난번에 주청한 것은 형편이 어떠한지를 잘 알지 못하고 그 땅이 수원에 가까움으로 시설할 즈음에 어찌면 편리할 듯 하기 때문에 경솔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간심한 장신(將臣)의 서계(書啓)를 보니 남양에 이설(移設)이 매우 긴요한 것도 없다고 하니 그렇다면 방어를 설치하는 한 가지는 그만두는 것이 이치에 합당할 듯합니다.”

하였다.

장용대장 김지묵(金持默)이 말하기를, “남양에 방어영을 설치함이 이미 긴요할 것이 없다면 그만두는 것이 아마도 무방할 듯합니다.” 하였고 형조판서 이경무(李敬懋)는 말하기를, “지금 남양에 방영을 설치하는 의논은 해방(海防)의 형편을 위한 계획일 뿐만 아니라 수원이 승급하여 유수(留守)가 된 뒤에는 옛날에 겸하였던 방어의 책임이 귀속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원이 지금 장용외사(壯勇外使)가 되면 사체(事體)가 전에 비교하여 더욱 무거워져서 사실 억지로 방어(防禦)의 칭호를 이웃 읍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무변(武弁)을 소통시키기 위하여 방어의 계제(階梯)를 만들 계획이라면 더욱 위인설관(爲人設官)은 마땅치 않습니다.”

하였으며 훈련대장 서유대(徐有大)는 말하기를, “남양에 방영(防營)을 이설하려는 의논은 대체로 수원에 방영이 없어지는 이유 때문입니다. 수원이 유수영문(留守營門)이 되면 관방(關防)을 위하는 문제는 전에 비교하여 더욱 무거워지며 또 수군방영(水軍防營)은 이미 교동(喬洞)과 영종(永宗)이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 역시 타읍에 별도로 소속시킬 필요가 없으며, 무변(武弁)을 위하여 하나의 계제를 설치함은 위인설관의 혐의에 가깝습니다.”

하였다. 총융사 이방일(李邦一)은 말하기를, “방영을 설치하는 것은 당연히 수륙(水陸)으로 긴요한 곳에 설치되는 것인데 지금 남양의 전체적인 형편으로 말한다면 육로(陸路)는 여러 읍에 끼여 있어서 처음부터 사통팔달의 곳이 아니고, 수로(水路)는 해구(海口)를 점령하고 있어서 사실은 요해(要害)에 위치하고 있으나 본부는 육군(陸軍) 영장(營將)으로서 이미 수군이 없으며 또 영종(永宗)이 바로 앞 바다 건너에 있으니 중첩 설치는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무변(武弁) 이력(履歷)의 한자리는 비록 감해짐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종전에 수원 방영이 본디 이력을 위한 자리도 아니니 또한 그 득실에 관계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선 그만두는 것이 아마 편의함에 부합할 듯합니다.” 하니 금위대장 이한풍(李漢豐)이 말하기를, “현재 남양의 형편이 수륙을 막론하고 요충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선 수원이 이미 유수대영(留守大營)으로 등급이 올라갔으면 방어영을 또 지척에 있는 남양에 이설되는 것은 의미가 없는 듯하니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여러분의 의논이 이미 이와 같고 장신이 간심한 뒤에 소견도 역시 일치하였다. 지금에 와서 향곡(餉穀)도 구획하지 못하고 교졸(校卒)도 충분하지 못한 때에 밀부(密符) 반쪽을 회수하는 것은 모두 일이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만들어 준 인신(印信)이지만 취소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남양에 방영을 신설하는 일은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훈련도정 조심태(趙心泰)가 말하기를, “신이 해방(海防)의 일로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양화진(梁花鎭)을 처음에 경기수군절도영(京畿水軍節度營)의 옛 기지(基地)에 시설한 것은 해방의 처지를 중요시한 것인 듯한데 지금은 조수(潮水)의 길이 바뀌어서 포구(浦口)가 메워졌기에 전선(戰船)은 언덕에 매달려 바다로 떠서 나가는 일은 거의 없으니 관방(關防)의 소중함으로 따진다면 참으로 너무나 소홀합니다. 신의 의견으로는 대부도(大阜島)에 이설(移設)하고 선소(船所)는 대부도나 영흥도(靈興島)를 물론하고 돌아 안은 차항(汐港:물이 두 갈래로 나누어진 항구)을 살펴서 배를 매도록하여 해로를 통제(控制)하는 것이 사의(事宜)에 부합할 듯합니다. 그리고 호서의 평신진(平薪鎭)으로 말하면 수원의 하류에 접하여 가장 연해(沿海)의 형승(形勝)을 의거하고 있는데 수원부(水原府)에 이속(移屬)시켜서 대부도와 뱃길이 서로 연결하여 성세(聲勢)가 서로 의지되어서 위급에 대비하면 제어와 보호의 방법에도 더욱 소중할 듯하기 때문에 감히 양달합니다. 묘당에 하문하셔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장신(將臣) 중에 일찍이 교동수사(喬桐水使)를 거친 사람이 소견을 진술하는 것이 좋겠다.” 하자 형조판서 이경무(李敬懋)가 말하기를, “신은 형편을 살피지 못하였기에 억측(臆測)으로는 대답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행부사직 서유대(徐有大)가 말하기를, “감목관(監牧官)은 한 사람이 줄겠지만 일찍이 옛 노인들이 서로 전하는 말을 들었는데 양화진(梁花鎭)을 대부도에 이설하고 겸목(兼牧)이 되게 하면 편리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행부사직 이방일(李邦一)이 말하기를,

“화랑진은 본디 긴요한 곳이 아니며 신이 일찍이 대부도의 형편을 보았는데 삼남의 배들이 이곳을 경유하여 왕래 하는 실지로 요충의 땅이었으며 또 근방 여러 섬에 충분히 목장을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화랑진을 대부도에 시설하고 겸감목관(兼監牧官)을 두는 것이 편의에 부합할 듯합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유사상당들도 각각 의견을 진술하라.” 하였다.

좌참찬 정민시(鄭民始)가 말하기를, “간심(看審)한 장신의 말을 들으니 ‘안흥(安興) 이상 평신(平薪)·대부(大阜)는 해로의 요충이기에 삼남의 선박이 이곳을 경유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 대부에만 목관(牧官)을 설치하면 매우 소홀함에 가깝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화양은 한 모퉁이에 있어서 매우 관건(關鑿)함이 없고 대부는 요충에 처해 있으니 관방(關防)을 설치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지금 화랑첨사(花梁僉使)를 대부에 이설하여 겸목관을 그대로 하면서 평신첨사(平薪僉使)와 함께 수원에 소속시켜서 해방(海防)이 되게 하면 수원을 호위하는 방법에 있어서 형편에 부합할 듯합니다.” 하니 행사직 김문순(金文淳)이 말하기를, “화랑진의 지리 형세는 이미 해방에 요긴함이 없고 대부는 해로의 요충이라고 하니, 그렇다면 첨사가 대부에 이설되는 것이 합당한 듯한데 어떻게 목관(牧官)의 연혁(沿革)이 관방을 공고히 하는 방법에 구애가 있겠습니까?”

하자 호조판서 심이지(沈頤之)가 말하기를, “화랑진의 형세는 너무 쇠잔하여 첨사의 설치가 사실 효력이 없고 대부는 영종(永宗)과 교동(喬桐)의 사이에 처하여 있어서 관방의 요충에 가장 알맞다면 화랑진을 대부에 옮겨서 설치하는 것이 통제(控制)하는 방법에 적합할 듯합니다.” 하였다.

부사직 윤행임(尹行任)이 말하기를, “화랑진을 옮기는 일은 신도 역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하니 수어사 이문원(李文源)이 말하기를, “대부도가 해방에 요긴하기가 이와 같다면 화랑진을 대부에 이설하는 것은 다시 의논할 것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목관(牧官) 한 자리가 축소되는 것도 생각을 해야 하니 신의 의견은 다른 겸목(兼牧)할 곳을 한 자리 다시 설치하는 것이 좋겠으니, 예컨대 단천겸목(端川兼牧) 같은 것을 별설(別設)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어장(御將)의 상주는 어장의 말일 뿐만 아니라 바로 예날 사람이 충분히 생각한 모유(謀猷)이거늘 겨우 설치되자 곧바로 혁파되는 것은 역시 계급이 낮은 대신(臺臣)의 용열(容說:영합하여 억지로 기쁘게 하는 아첨)로 그렇게 된 것에 불과하다. 하물며 지금 유경(留京)하고 있는 관방(關防)의 체모(體貌)가 지극히 엄중하고 진실로 공위(控衛)하는 방법의 유의함이 옛날에 없던 일이며 오히려 또 의리로 일어나 행하며 또 더구나 토질의 비옥이 저와 같고 땅의 넓기가 이와 같으며 이웃 수령은 부러워서 침을 흘리며 도민(島民)들은 머리를 들고 바라고들 있다고 말한다면 대부와 신평을 속진(屬鎭)으로 만들되 마치 송도(松都)의 여현(礪峴)·대흥(大興)과 같게 하고 심도(沁都)의 영종(永宗) 제도(諸島)와 같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는 관방의 시설에 관계되는 일이니 다시 유사당상에게 하나를 지적하여 초기(草記)를 만들게 하라. 목관(牧官) 한 자리가 있고 없는 것은 심히 우려할 것은 못되지만 근래에 사로(仕路)가 적체되어 있고 6품 자리의 구처에 대하여도 유의하는 처지에 있으니 이런 뜻도 함께 의논하도록 하라. 이 거조(舉條) 한 통을 역시 묘당에서 등출하여 비국낭청을 보내어 본부의 유상(留相)에게 물어서 오게 한 뒤에 함께 초기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今三月二十二日來待諸臣入侍時，副司直尹 行任所啓，臣依下教，以御營大將趙心泰南陽 府看審書啓，就議于大臣，則右議政金以爲，書 啓中，稱南陽府自是陸軍營將，則防海一款，初非擬議，至於陸路，則湖右諸路徑趨南陽問道，創此防禦，恐合權宜，而本府既仗摠廳前營，兵馬緩急，當受摠 使節制，防禦之號，還涉虛糜，此實難便之大者，顧今 新移便否未定，亶合商量，下詢廟堂處之爲辭矣，今以御將所陳形便觀之，海防則既有永宗之防禦，喬桐之統禦，不必疊設，若爲唐沔之津路·陽平之間 途而設置，則如嶺·湖之忠州·畿海之金川，亦無設防 之舉，何獨於南陽設此乎，且水原之當初設防，專爲 三南要衝，而本府既兼壯勇外使之後，其保障之增 重，比前不啻十倍，則不必更設於不當設之地，臣意 則移設一款置之，似合宜云矣，上曰，御將先陳所 見，有司堂上及諸將臣亦爲各陳意見可也，御營大 將趙心泰曰，南陽府防營設施之以海以陸，俱涉難 便之意，已於日前書啓，略陳淺見，臣意則設防一款 置之，似好矣，左參贊鄭民始曰，當初防營之移設於 南陽，既非參量形便而然，不過移送無處，遽然創設，而到今看審將臣之意如此，且欲設始營制，則多有 難便之端，南陽防營置之，似好矣，行司直金文淳曰，臣之意見亦如此，別無更陳者矣，戶曹判書沈頤之 曰，南陽之設置防營，於水於陸，既無關緊，且移邑然 後，可以設營云，然則設施之際，許多事力，亦不可不 念，置之似好矣，守禦使李文源曰，南陽之設防營，臣 之向來所奏，未諳形便之如何，而以其地近水原，設 施之際，似或便好，故率爾仰奏矣，今觀看審將臣書 啓，則移設於南陽，無甚關緊，然則設防一款置之，似 合宜矣，壯勇大將金持默曰，南陽之設防，既無緊關 則置之，恐似無妨矣，刑曹判書李敬懋曰，今此南陽 設防營之論，非獨爲海防形便之計，而水原陞爲留 守後，曾兼防禦之任，無所歸屬故耳，然而水原今爲 壯勇外使，則事體比前增重，固不必強存防禦之稱 於隣邑，而如欲爲疏通武弁防禦階梯之計，則尤不 宜爲人設官矣，訓練大將徐有大曰，南陽移設防營 之議，蓋以水原之減防營故也，水原爲 留守營門，則 其爲關防，比前尤重，且水軍防營，既有喬桐·永宗之 在於不遠之地，則亦不必別屬於他邑也，爲武弁一 階梯之設，亦近於爲人設官之嫌矣，摠戎使李邦一 曰，防營之設置者，當設於水陸緊要之處，而今以南 陽一境形便言之，陸路則介在諸邑，既非通衢之地，水路則跨據 海口，實係要害，本府以陸軍營將，既無 水軍，且永宗隔在前洋，則不必疊設，而武弁履歷之一 窠，雖似見減，在前水原防營，本非履歷窠，則亦不 關於得失，今姑置之，恐合便宜矣，禁衛 大將李漢豐 曰，今此南陽之形便，無論水陸，非但無要衝之可言，且水原既陞留守大營，則防禦 之又爲移設於咫尺 南陽，恐涉無義，置之似好矣，上曰，僉議既如此，將 臣看審之後，所見亦

物合, 及此餉穀不割, 校卒未充 之時, 收一密符半隻, 可謂都無事, 造給之印信, 何難 銷刻, **南陽**防營新設事, 置之可也, 訓練都正趙心泰 曰, 臣以海防事, 又有所仰達者矣, 概梁花鎮之在初 設始於京畿水軍節度營舊基址者, 似爲重海防之 地, 而今則潮路變遷, 浦口湮塞, 戰船掛岸, 浮出甚罕, 揆以關防所重, 誠萬萬疎虞, 臣意則移設於大島, 而 船所則毋論**大阜**靈興, 審其回抱 汊港, 使之繫船, 控 制海路, 恐合事宜, 而且以湖西平薪鎮言之, 承接水 原下流, 最據沿海形 勝, 移屬**水原**府, 以爲與**大阜**島, 檣楫相連, 聲勢相依, 以備緩急, 則控護之方, 尤似得 重, 故 敢此仰達矣, 下詢廟堂處之何如, 上曰, 將 臣中曾經喬桐水使人亦陳所見可也, 刑曹判書李 敬 懋曰, 臣既不審形便, 不敢臆對矣, 行副司直徐有 大曰, 監牧官雖減一員, 而曾聞故老之相傳, 則花梁 移設於**大阜**, 使之兼牧, 則爲便當云矣, 行副司直李 邦一曰, 花梁鎮本非緊要處, 而臣 曾見**大阜**形便, 則 三南舟楫由此往來, 實是衝要之地, 且傍近諸島, 足 可設置牧場, 花梁鎮移 設於**大阜**兼監牧官, 恐合宜 矣, 上曰, 有司堂上亦爲各陳意見, 左參贊鄭民始 曰, 聞看審將臣 之言, 安興以上平薪·**大阜**, 爲海路之 要衝, 三南船舶無不由此, **大阜**之只置牧官, 極涉疎 虞 云, 花梁則在於一隅, 無甚關緊, **大阜**則處於要衝, 合置關防, 今以花梁僉使移設於**大阜**, 仍兼 牧官, 與 平薪僉使, 屬之**水原**, 俾爲海防, 則其在拱衛**水原**之 道, 似合於形便矣, 行司直金文 淳曰, 花梁鎮地勢, 既 無緊關於海防, 而**大阜**則乃是海路要衝云, 然則僉 使之移置於**大阜**似合 宜, 何可以牧官之沿革, 有拘 於關防鞏固之道乎, 戶曹判書沈頤之曰, 花梁鎮勢 至殘, 僉使之 設置, 實難得效, 而**大阜**則處於永宗·喬 桐之間, 最爲關防之要衝, 則移置花梁鎮於**大阜**, 似 合控制之道矣, 副司直尹行任曰, 花梁移鎮一款, 臣 亦別無異見矣, 守禦使李文源曰, **大阜**之緊 關於海 防如此, 則花梁鎮之移設於**大阜**, 無容更議, 而牧官 一窠之見縮, 亦不可不念, 臣意則 從他兼牧處, 更設 一窠爲好, 如端川兼牧, 似合別設矣, 上曰, 御將所奏, 非獨御將之言, 卽古 人爛熳商度之謨猷, 而才設旋 罷, 亦不過資淺一臺臣之容說而然, 況今留京之關 防體貌, 至爲 嚴重, 苟益於控衛之方, 無於古之事, 猶 且義起而行之, 又況土沃如彼, 地廣若此, 而隣倅流 涎, 島民翹首云爾, 則以**大阜**·平薪, 作爲屬鎮, 如松都 之礪峴·大興, 沁都之永宗諸島似好, 係是關防設施, 更令有司堂上指一草記, 牧官一窠之有無, 不足深 念, 而近來仕路積滯, 六品窠 之區處, 在所留意, 此意 一體就議, 而此舉條一通, 亦自廟堂騰出, 發遣備郎, 問于本府留相以 來後, 同爲草記可也.

<비변사등록 181책, 정조 17년 1793년 03월22일(음)>

## 정치/군사

前摠戎使 李邦一의 狀請대로 水原의 牙兵 二哨를 南陽의 前營에 移付할 것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지난 날 총융사(摠戎使) 이방일(李邦一)이 아뢴 바로 인하여 비 지(批旨) 내에 묘당에서 품처하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수원**에 있는 총융청(摠戎廳)의 장 초(壯抄:군인이 될 만한 장정을 뽑음) 3초(三哨), 아병(牙兵:대장 휘하에 있는 병정) 1초 (一哨)를 옮겨 소속시킨 대신으로 인천(仁川)·적성(積城) 등 읍의 군수보(軍需保)이름을 바꾸어 초(哨)로 만드는 일은 이미 고양(高陽) 아병의 액수를 감한 대신에 장단(長湍)의 군 수보로 초를 만든 전례가 있으니 이것은 청한 대로 시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파총(把摠)· 초관(哨官)도 역시 군정(軍丁)이 있는 읍에서 차출하고, **수원**의 연습 조련을 할 때에 이르 러서는 양성(陽城)·인천(仁川) 등의 아병 2초(二哨)를 **남양(南陽)**의 연습 조련에 옮겨 부 치는 일은 여러 장신(將臣)들에게 문의하였더니 모두 말하기를 ‘아병은 곧 총수(摠帥)의 친병이어서 본래 방영(防營)에 관계하지 않습니다. **남양**이 비록 방영을 설치하지 아니하였 으나 총융청의 전영(前營)이니 **수원**의 아병 이초(二哨)를 **남양**의 전영에 옮겨 부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습니다. 둔아병(屯牙兵)을 남양에 옮겨 소속시키는 것은 대개 당해 청의 전영이 되어 방어영의 새로 설치하는 것을 기인하지 아니하니 소속을 옮기는 한 가지는 반드시 방영의 존폐로 지적해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결같이 전 총수(前總帥)의 아뢰 대로 시행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답하였다.

司啓曰，頃因總戎使李邦一所啓，批旨內 有令廟堂稟處之命矣，水原所在總廳狀（壯？）抄三哨牙兵一哨移屬之代，以仁川·積城等邑軍需保換名 作哨事，既有高陽牙兵減額代，以長湍軍需保作哨 之例，此則依所請施行，而把總哨官亦以軍丁所在 邑差出，至於水原習操時，參操陽城·仁川等牙兵二 哨，移付南陽習操事，問議於諸將臣，則皆以爲，牙兵 乃是總帥親兵，本不關於防營，南陽雖不設防，係是 總廳前營，水原牙兵二哨移付於南陽前營爲宜云，屯牙兵之移屬南陽，蓋爲該廳之前營，非因防營之 新設，則移屬一款，不必以防營之存革，有所指疑，一 依前總帥所奏施行之意，分付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181책, 정조 17년 1793년 05월27일(음)>

## 정치/군사

水原留守 趙心泰가 平薪鎭 牧場을 없애고 屯田을 설치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 이번 9월 29일 사복시제조와 수원유수(水原留守)가 입시하였을 때에 수원유수 조심태(趙心泰)가 아뢰기를, “평신진(平薪鎭)의 목장을 파하고 말을 옮겨 외영(外營)에 떼어주고 목장에는 둔전을 설치하는 것으로 일찍이 품정(稟定)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추수할 때가 닥쳤고 조세를 거둘 때가 멀지 않았으니 이런 때에 한쪽으로 결정한 뒤에야 지장이 없을 듯하기에 감히 이렇게 양달합니다.” 하니, 임금의 그리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평신진의 목장을 파하고 말을 옮기고 둔전을 설치하며 말을 외영에 떼어주는 것은 이제 이미 결정하여 윤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자(牧子) 5백명 중에서 50명을 창택(倉宅) 목장에 그대로 두는 목자로서 덜어내면 남는 일꾼이 4백 50명이 됩니다. 둔전을 설치한 뒤에는 둔군(屯軍)이 없어서는 안 되니, 이 4백 50명을 파정(把定)하여 둔군으로 삼되, 둔전을 설치한 각처에는 오래 신역(身役)을 바치고 대오(隊伍)를 만들며 농사도 동시에 짓게끔 하는 규정이 있으니, 이곳도 다른 곳의 예에 따라 둔군으로서 초(哨)를 만들고 외영에 떼어 부쳐서 절제를 받도록 하고, 신역은 쌀 6승(升)으로 정식을 마련하여 외영에서 거두어들여 군량을 넉넉하게 하는 것이 사의(事宜)에 합당할 듯하기에 감히 이렇게 양달합니다.”

하니, 임금의 그리하라 하였다.

○ 또 아뢰기를, “지금 이미 목장을 파하기로 하였으니 마필을 옮기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세 곳 목장의 원래 목마 5백 50필 중에서 창택 목장에서 기를 1백 필을 제하고 남는 말 4백 50필에 대하여 지금 막 사복시제조와 좋은 쪽으로 상의하니, 마필의 수효를 나누어서 수원(水原)과 홍원(洪原)의 목장, 남양(南陽)의 대부(大阜)·영흥(靈興)·이작(伊作)·선감(仙甘) 등 여러 섬 및 강화(江華)의 초지(草芝) 등의 목장에 이송하되, 평신진에 있는 목장을 외영에 전속케 한 뒤에는 창택 목장은 약간의 마필을 방목한다는 이유로 전처럼 사복시에서 구관하는 것은 불가한 일이니, 이것도 일체로 외영에 넘겨주어 말이 길러지는 대로 전마(戰馬)로 가져다 쓰는 것이 임시적인 편의에 합당할 듯합니다. 그리고 제도를 처음 시행할 때에 반드시 과조(科條)를 엄하게 세우고 절목(節目)을 의논해서 정하고 마적(馬籍)을 만들어 두어서 영구히 준행하게 한다면 실효가 있을 듯하기에 감히 이렇게 양달합니다.” 하니, 임금의 그리하라 하였다.(…)

今九月二十九日司僕提調·水原留守入侍時，水原留守趙心泰所啓，平薪鎮罷牧移馬，劃付外營，設置屯田事，曾有所稟定矣，今則秋穫在卽，收稅不遠，趁此時指一定奪然後，似無窒礙之端，故敢此仰達矣，上曰，依爲之。

又所啓，平薪鎮罷牧移馬設屯劃付，今已定奪蒙允，而牧子五百名中，五十名以倉宅場仍存牧子除之，則餘丁爲四百五十名矣，設屯之後，不可無屯軍，以此四百五十名把定爲屯軍，而設屯各處，例有捧身役作隊伍，以存寓農之規，此亦依他例，以屯軍作哨，劃屬外營，俾受節制，身役則以米六升磨鍊定式，自外營捧上，以裕兵食，恐合事宜，故敢此仰達矣，上曰，依爲之。

又所啓，今既罷牧，則移其馬匹，在所先務，三場原牧馬五百五十匹內，倉宅場所牧一百匹除之，餘馬四百五十匹今方與司僕提調從長相議，分數移送於水原洪原場·南陽大阜·靈興·伊作·仙甘諸島及江華草芝等場，而平薪一場專屬外營之後，倉宅場以其若干馬匹之放牧，自司僕不可如前句管，此亦一體付之外營，隨其所養，取輔戰馬，恐合權宜，而設施之初，必嚴立科條，議定節目，成置馬籍，永久遵行，則似有實效，故敢此仰達矣，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182책, 정조 18년 1794년 09월30일(음)>

### 정치/군사

#### 兼摠戎使 沈頤之가 長湍과 南陽의 馬兵의 名號과 都試에 대해 논의하다

이번 10월 20일 비국의 유사당상들이 입시했을 때 겸총용사사 심이지(沈頤之)가 아뢰기를, “신이 총용청의 일에 대해서 지금 당장 품달할 것이 있습니다. 장단(長湍)과 남양(南陽) 두 고을의 마병(馬兵)들을 매년 10월에 해당 고을에서 처음 뽑고 경영(京營)에서 합시(合試)를 보여 거수(居首)한 자를 직부(直赴)하게 합니다. 금년 봄 장단부사 서유화(徐有和)가 마병은 역천인(役賤人)이라는 이유로 응모할 때 그 칭호를 별효사(別驍士)로 고치기를 청했습니다. 그 당시 전 총용사 정민시(鄭民始)가 칭호는 별효사로 고치되 도시(都試)는 그전대로 거행하는 것으로 연석에서 여쭙어 윤희를 받았습니다. 금년 가을 도시 때가 되자 새로 응모하는 자들이 마병의 규례로 응시한다는 것을 듣고 대부분 실망하여 흩어져 가버릴 뜻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목은 별효사이지만 도시에 있어서는 마병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파주(坡州)의 예에 의하여 별효사의 규구(規矩)로 시취(試取)한다면 연석에서 여쭙어 정한 제도에 어긋나게 되고 합설(合設)하는 도시에서 남양의 마병들은 귀속할 곳이 없으니 군사제도나 과거제도에 모두 어긋나게 됩니다. 도시는 으레 이달 중에 실행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정식으로 정하지 않을 수 없으니 대신과 장신들에게 문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

今十月二十日備局有司堂上入侍時，兼摠戎使沈頤之所啓，臣於摠廳事，有及時稟達者，長湍·南陽兩邑馬兵每於十月，該邑初抄，合試於京營，直赴居首矣，今春長湍府使徐有和，以馬兵役賤人應募，請其改號別驍士，其時前摠戎使鄭民始，稱號改以別驍士，都試依前舉行事，筵稟蒙允矣，及當今秋都試，新募者聞以馬兵例，應試舉有落莫散去之意，蓋名號則驍士，都試則馬兵故也，若依坡州例，以別驍士規矩試取，則有違於筵稟定制，而合設都試之南陽馬兵無歸屬處，軍制·科制俱爲相左，都試設行例在此月之中，不可不及今定式，問議于大臣·將臣處之何如，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182책, 정조 18년 1794년 10월21일(음)>

### 정치/군사

#### 水原留守 徐有隣이 始興, 果川을 水原에 隸屬과 外營 合操를 거행하자고 청하다

이번 9월 24일 군사방 승지(軍士房承旨)가 입시하고 와서 기다리던 여러 신료가 나중에 입시하였을 때에 수원부유수 서유린(徐有隣)이 아뢰기를, “신이 본부를 맡은 지 겨우 3달 가까이 되는데, 지형과 군제에 변통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수원은 안산(安山)·용인(龍仁)·진위(振威)·시흥(始興)·과천(果川) 사이에 있으니 사면을 에워싸고 호위하는 방도로 볼 때 안산·용인·진위만 소속시키고 시흥과 과천을 소속시키지 않는 것은 이미 빙 둘러싸고 협력하여 지키는 뜻에 어긋납니다. 총융청 소속인 시흥과 과천은 수원을 건너뛰어 남양(南陽)에 예속시키기도 역시 불편하니 이제 만약 시흥과 과천을 수원에 소속시키고, 하나는 북성 협수장(北城協守將)으로 삼고 하나는 통구 유병장(通衢遊兵將)으로 삼으면 됩니다. 군총(軍摠)은, 남양은 그대로 총융청에 소속시키되 남양의 속오군 10초(哨)와 양천(陽川)의 속오군 1초를 합해 11초로 만들고, 거기에 남양의 장초군(壯抄軍) 1초를 보충하여 과주(坡州)·장단(長湍)과 똑같이 12초로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수어청의 친아병(親牙兵)은 대장을 직접 호위하는 군병으로서 성첩에 배치하는 대열에는 속하지 않으므로 별달리 정해진 인원수가 없으니 아무리 5초를 감하더라도 여전히 8초는 남아 다른 군문에 비해 수가 많습니다. 또한 현재 기내(畿內)의 군정(軍丁) 상황은 5초를 더 배정했다가 쌀을 납부하는 군병 역시 필시 편지 않은 터라 곧장 수효를 감한 뒤인데, 좌우부(左右部)에 소속된 아병(牙兵) 3초와 과하군(把下軍) 20여 명은 5영(五營)의 통제 하에 들어 있어 형편상 대오를 비우기 어려우니, 삼전도진(三田渡鎭)의 군관 2백 50인과 아병 2초를 성첩에 배치되는 군사에 들지 않고 다만 신미(身米)만 납입하는 자들 가운데 아병과 피하군으로 나누어 좌우부에 소속시키고 거둔 쌀은 그대로 본도진에 속하도록 해야 하겠습니까. 용인과 과천의 친아병을 이미 없었는데 둔전(屯田)만 그대로 둘 수는 없으니 둔전 역시 다른 곳으로 소속시켜야 하는데, 각 둔전에서 거두는 각종 곡식과 8초 아병으로부터 거두는 쌀을, 모두 수어청에서 해마다 본영(本營)으로 옮겨 소속시키는 돈 중에서 이 수만큼 쌀을 돈으로 바꾸는 몫으로 떼어주어 본영에 납부하게 하면,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는 불편한 단서가 없게 될 것입니다. 또 총융청 소속인 안산과 시흥의 장초군(壯抄軍) 2초를 옮겨오는 대신, 세 영장(營將)의 각종 표하군(標下軍)과 치중군(輜重軍)의 숫자가 일정하지는 않지만 중앙 영문(營門)의 예에 의하여 적절히 감하고 보존하면 얻을 수 있는 수는 2백 54명인데, 이들을 장초군 2초로 만든 뒤에도 여전히 미곡 3두씩을 견게 한다면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으니 좌부(左部) 장초군 13초 가운데 1초는 남양으로 넘겨주고 2초는 수원으로 넘겨주면, 3영(營)의 표하군에서 덜어낸 것이 2초이므로 좌부는 우부(右部)에 비해 1초가 줄어듭니다. 각 초 중에서 혹 약간의 수를 줄이거나 혹 군수보(軍需保) 중에서 옮겨와 13초를 갖추게 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니 이를 수어청과 총융청 두 영에 분부해야 하겠습니까. 수원은, 전에는 용인 등 3개 고을의 협수군(協守軍)이 12초였는데, 지금은 시흥·과천의 속오군 5초와 안산·시흥의 장초군 2초, 용인 등 3개 읍의 수어청 아병 8초 등 모두 합해 27초가 됩니다. 이는 1영(營) 5사(司)의 군병으로 충분합니다. 이를 외영(外營)에서 단속하도록 마련하고 제도를 정해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의 대답이 그리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총융청 소속인 시흥과 과천을 이미 외영으로 이속하고, 총융청이 소재한 두 읍의 병부(兵符) 왼쪽을 승정원에서 거둬들여 외영에 나누어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의 대답이 그리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내영(內營) 향군의 합조(合操)는 저번에 정지하라는 명을 받았는데, 외영의 합조는 이미 비국에서 통지하여 10월 안으로 택일하여 거행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감히 아뢰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외영의 합조도 아울러 정지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今九月二十四日, 軍士房承旨入侍, 來待諸臣 追後入侍時, **水原府留守徐有隣**所啓, 臣待罪本府, 才近三朔, 而地形軍制, 有不得不變通者, 蓋**水原**, 處在安山·龍仁·振威·始興·果川之間, 則其在四面 拱護之道, 只屬安山·龍仁·振威, 而不屬始興·果川, 已非環繞協守之意, 摠戎廳屬始興·果川, 越**水原**而隸於**南陽**, 亦涉不便, 今若以始興·果川, 屬之**水原**, 一作北城協守將, 一作通徵遊兵將, 若其軍摠, 則**南陽**仍屬摠廳, 而本邑束伍十哨, 陽川束伍一哨, 合爲十一哨, 又以**南陽**壯抄一哨充補, 與坡州·長湍同爲十二哨, 守禦廳親牙兵, 卽大將親衛不爲入屬於城堞排立之列, 則多寡別無定數, 雖減五哨, 尙餘八哨, 比諸他軍門, 其數夥然, 且見今畿內軍丁, 加定五哨, 納米 軍亦必難便, 直爲減數以來, 左右部所屬牙兵三哨, 把下二十餘名, 此則入於五營之制者, 勢難闕伍, 以三田渡鎮軍官二百五十人, 鎮牙兵二哨之不入於 城堞排立, 而只納身米者中, 分作牙兵把下軍, 屬之 左右部, 收米則仍屬本鎮, 龍仁·果川親牙兵, 旣已減 來, 則不可獨置其屯, 屯田亦爲移屬, 而各屯所收各穀, 八哨牙兵收米, 竝以守禦廳每年移納本營錢中, 依此數劃給米穀作錢條, 使之來納本營, 則別無給 代難便之端, 摠廳屬安山·始興壯抄二哨移來之代, 三營將各色標下輜重軍, 多寡不一, 若依京營門例, 量宜存減, 則可得二百五十四名, 以此移作壯抄二哨, 而仍令收米三斗, 則不無給代之事, 左部壯抄十三哨中, 一哨移付**南陽**, 二哨移付**水原**, 而三營標下 之除出者, 當爲二哨, 則左部比右部減一哨, 若就各 哨中或若干減數或軍需保中移錄, 以備十三哨, 似好, 竝以此分付守·摠兩營, **水原**前屬龍仁等三邑協守軍爲十二哨, 今屬始興·果川束伍五哨, 安山·始興 壯哨二哨, 龍仁等三邑守廳牙兵八哨, 合二十七哨, 足爲一營五司之軍, 此則自外營, 團束磨鍊, 定制施行, 何如, 上曰, 依爲之.

又所啓, 摠廳屬始興·果川, 旣已移屬外營, 摠廳 所在兩邑兵符左隻, 令政院收取, 頒下外營, 何如, 上曰, 依爲之.

又所啓, 內營鄉軍合操向, 伏承停止之命, 而 外營合操, 既有備局行會, 當以十月內擇日舉行, 故 敢此仰達矣, 上曰, 外營合操, 一體停止, 可也.

<비변사등록 186책, 정조 21년 1797년 09월26일(음)>

## 정치/군사

**迎華察訪 李元膺이 公貨 대출과 驛屬 復戶米를 근처 邑으로 이전 문제를 논의하다**

이달 정월 17일 **화성행궁(華城行宮)**의 거동(舉動)에 입시 때 **영화찰방(迎華察訪)** 이원응(李元膺)의 소회(所懷)에, “본 역이 신설한 뒤에 토지가 적어서 생리가 맑고 박함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작년부터 조령(朝令)으로 인하여 북쪽의 둔전 약간의 전답에 경작을 하여 먹고 있으나 마침내는 구차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각양의 공화(公貨) 중에 3천 냥을 10년을 기한으로 대출을 허락주어 매년 300냥 씩 도로 갚게 한다면 10년 안에 모두 갚을 수 있어서 거의 안심하고 의지되는 방도가 될 것입니다. 역속(驛屬)들이 받아 먹고사는 복호미(復戶米)가 먼 읍에 많이 있기 때문에 또한 실어다가 식양에 보충하기가 어려우니 가장 먼 읍은 좀 가까운 읍에 옮겨 붙여 놓으면 원수(元數)있어서도 별로 가감될 것이 없고 저들에게 있어서는 실로 이익이 될 것인데 이는 선혜청이 편리한 대로 옮겨 붙여 두는가의 여하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남양(南陽)**의 해문참(海門站)과 안성(安城)의 강복참(康福站)은 모두 궁벽한 길이라서 별로 사신[使星]의 왕래가 없으니 두 역참의 마호(馬戶)를 옮겨다가 본역에 붙인 뒤에도 남아 있는 것이 또 5호가 되니 이를 우선 임시로 혁파하고 위전(位田)은 세금을 받아 본 역에 붙여서 공용(公用)에 보충하게 하고 양성(陽城)의 개천참(開川站)에 이르러서는 진위읍내(振威邑內)로 옮겨 설치할 것이나 먼저 마위답(馬位畓)을 정하여 서로

바뀌야 비로소 옮겨 설치할 수가 있으니 혜지방관(該地方官)과 더불어 옮겨 설치하는 것에 대한 편의를 비교하여 난상토론을 한 뒤에 다시 본부 및 순영(巡營)에 논의하여 품달하여 처리할 자리로 삼았는데 이미 었드려 물으심을 받들었기에 아울러 양달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묘당으로 하여금 품달하여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今正月十七日華城行宮舉動入侍時，迎華察訪李元膺所懷，本驛新設之後，坐於土地之尠少，生理未免澹薄，雖自昨年因朝令，耕食北屯若干田畝，而終涉苟艱，各樣公貨中三千兩，限十年許貸，每年三百兩式還報，則十年內可以盡報，而庶爲聊賴之道，驛屬所受食·復戶米，多在遠邑，亦難輸來補糧，就其最遠邑，移付稍近邑，則在元數，別無加減，在渠輩實爲資益，此在惠廳從便移付之如何而已，**南陽**海門站·安城康福站俱是僻路，別無使星往來，兩站馬戶移付本驛之後，餘在尤爲五戶，此姑權罷，位田則收稅，付之本驛，以補公用，至於陽城開川站，移設振威邑內事，先定馬位畝相換，始可以移設，擬與該地方官爛商便宜後，更議於本府及巡營，以爲稟處之地，而既伏承下詢，竝此仰達矣，上曰，令廟堂稟處可也。

<비변사등록 190책, 정조 24년 1800년 01월18일(음)>

### 정치/군사

永宗津은 방어의 重地이므로 楊州·坡州 등 5읍과 돌아가며 軍校를 差送할 것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경기감사 김달순(金達淳)이 비국에 보고한 사연을 보니 영종 전 방어사(永宗前防禦使) 유상엽(柳相燁)의 청정을 날날이 들고 이르기를 ‘본진(本鎭)은 수륙(水陸)을 겸통(兼統)하는 방어영(防禦營)으로서 심도(沁都)와 함께 인후(咽喉:목)를 방수(防守)하는 곳이고 또 더구나 행재소(行在所)를 설치하였으니 중한 바가 자별하여 다른 방어영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군교(軍校)의 구근과(久勤窠)의 설치가 유독 누락이 되어, 격려하고 권장하는 방도가 도리어 양주(楊州)·장단(長湍)·**남양(南陽)**·죽산(竹山)·과주(坡州) 등읍만 못하니 군교가 원망하는 것은 참으로 마땅하다 하겠고, 사실 일시(一視)의 혜택에 흠결이 있는 일입니다. 지금 과주에 본래 있던 자리를 돌려가면서 차의(差擬)하면, 전조(銓曹)에 있어서는 별로 손해되는 것이 없고 본진에 있어서는 크게 이로운 바가 있으니, 위열(慰悅)하고 격권하는 방도에 있어서 양쪽이 다 마땅함을 얻은 것입니다’ 하였습니니다. 본진은 해방(海防)의 중지(重地)이니 군교배를 권장하여 수용하는 방도에 마땅히 다른 고을의 예와 다름이 없어야 하지만, 지금 만약 단지 과주의 구근과만 가지고 돌려가며 차정하면 치우친다는 탄식이 없지 않을 것이니 양주와 과주 등 5읍과 함께 돌려가면서 차정해 보내라고 해조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京畿監司金達淳，報備局辭緣，則枚舉永宗前防禦使柳相燁牒呈，以爲本鎭，以兼統水陸之防營，與沁都，爲咽喉控扼之地，又況設置行在之所，則所重自別，有非他防營之比，而第其軍校久勤之設，獨爲見漏，激勸之方，反不若楊州·長湍·**南陽**·竹山·坡州等邑，軍校稱冤，固其宜矣，實有欠於一視之澤，今於坡州本有之窠，輪回差擬，則在銓曹，別無所損，在本鎭，大有所益，而慰悅激勸之方，兩得其宜，爲辭矣，本鎭以海防重地，軍校輩勸獎收用之道，宜無異同於他邑之例，而今若但以坡州久勤窠輪差，則不無偏係之歎，與楊·坡等五邑，輪回差送之意，分付該曹，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196책, 순조 5년 1805년 03월13일(음)>

### 정치/군사

**南陽 東伍軍兵 등의 秋操에 대해 稟處하게 할 것을 청하다**

○ 총위영(總衛營)에서 아뢰기를, “본영 소속의 삼진(三鎭) 열읍(列邑) 가운데 **남양(南陽)** 속오군병(東伍軍兵) 등의 올 봄 조련은 조정의 명령으로 인하여 정지하였습니다. 올 가을 조련은 묘당에서 품처하고 알려서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답하였다.

總衛營啓曰, 本營所屬三鎭列邑中, **南陽**東伍軍兵等, 今春操鍊, 因朝令停止矣, 今秋操鍊, 令廟堂稟處, 使之知委舉行, 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35책, 헌종 14년 1848년 07월04일(음)>

**정치/군사**

**南陽 東伍軍兵 등의 春操에 대해 稟處하게 할 것을 청하다**

총위영(總衛營)에서 아뢰기를, “본영 소속인 삼진열읍(三鎭列邑) 가운데 **남양(南陽)** 속오군병(東伍軍兵) 등의 훈련을 작년 가을에 조정의 명령으로 정지하였습니다. 올해 봄 훈련을 묘당에서 품처하여 거행하도록 알리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답하였다.

總衛營啓曰, 本營所屬三鎭列邑中, **南陽**東伍軍兵等操鍊, 昨秋因朝令停止矣, 今年春操, 令廟堂稟處, 使之知委舉行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36책, 헌종 15년 1849년 01월04일(음)>

**정치/군사**

**總衛營의 復設할 인원과 減革해야 할 인원 등을 別單으로 써서 들이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본영의 군제를 묘당에서 총융청의 절목대로 거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장관(將官)·장교(將校)·원역(員役)·군병(軍兵)의 복역(復役)은 병오년(丙午年) 이후에 새로 설치했고, 장관의 감혁(減革)과 각 영의 옮겨온 군인을 다시 보낸 것은 모두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입니다. 군병의 급료로서 돈·무명·쌀·콩을 해조와 해영에서 초기로 추거(推去)하게 했는데, 임술년(壬戌年) 장용영(壯勇營)을 철폐한 등록(謄錄)을 취해서 보니 돈·곡식·둔토(屯土)는 모두 조치하여 처리했고 군교와 원역 역시 모두 이속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알았다. 군교와 원역을 동영(冬營)과 각 사에서 자리가 비는 대로 구처하게 하라.” 하였다.

**별단**

장관 이하 다시 설치한 질품[將官以下復設秩]

중군(中軍) 1원(員)

천총(千摠) 2원

과총(把摠) 2원

초관(哨官) 10원 1원 참군(參軍) 예겸(例兼)

경리군관(經理軍官) 3원

교련관(教鍊官) 15원

기패관(旗牌官) 2원

별부요군관(別付料軍官) 2원

서리(書吏) 10인(人)

대령서리(待令書吏) 1인

기별서리(奇別書吏) 1인  
 서사(書寫) 1인  
 서원(書員) 2명(名)  
 고직(庫直) 5명  
 사령(使令) 26명  
 구종(驅從) 2명  
 문서직(文書直) 7명  
 의막군사(依幕軍士) 2명  
 다모(茶母) 1명  
 각청방직(各廳房直) 14명  
 복마군(卜馬軍) 3명  
 뇌자(牢子) 1백 5명 유료(有料) 26명  
 순령수(巡令手) 1백 28명 유료(有料) 22명  
 취고수(吹鼓手) 1백 89명 유료 26명, 세악수(細樂手) 유료 13명  
 대기수(大旗手) 1백 56명 유료 27명  
 당보수(塘報手) 1백 29명 유료 12명  
 군막수(軍幕手) 87명 유료 15명  
 등롱수(燈籠手) 71명 유료 12명  
 별파진(別破陣) 1백 2명 유료 16명  
 아기수(兒旗手) 20명 유료 16명

**남양(南陽) · 파주(坡州) · 장단(長湍)**은 이전대로 겸영장(兼營將)으로 시행한다.

제조 이하 감하한 질품[提調以下減下秩]

제조(提調) 1원  
 종사관(從事官) 1원  
 별장(別將) 1원  
 과총(把總) 1원  
 선기장(善騎將) 3원  
 초관(哨官) 9원  
 액외장용위(額外壯勇衛) 21원  
 지구관(知穀官) 21원  
 교련관(教鍊官) 20원  
 장용위(壯勇衛) 19원  
 제본사패장(除本仕牌將) 5원  
 별무사(別武士) 15인  
 별부료무사(別付料武士) 19인,  
 약방(藥房) 1원  
 침의(針醫) 1원  
 화원(畫員) 1원  
 사자관(寫字官) 1원  
 마의(馬醫) 1인  
 서리(書吏) 17인

서사(書寫) 3인  
 기별서리(奇別書吏) 4인  
 서원(書員) 4명  
 고직(庫直) 11명  
 사령(使令) 18명  
 구종(驅從) 22명  
 각소군사(各所軍士) 9명  
 다모(茶母) 4명  
 문서직(文書直) 4명  
 각청방직(各廳房直) 10명  
 사고직(私庫直) 7명  
 사오군(使喚軍) 20명  
 역인(役人) 20명  
 양장직(兩裝直) 3명  
 복직(卜直) 6명  
 각 영에서 옮겨온 군인을 보낸 질품[各營移來軍送秩]  
 훈련도감(訓練都監) 별무사(別武士) 10인  
 무예별감(武藝別監) 1백 58인  
 마병삼초(馬兵三哨) 3백 57명  
 보군육초(步軍六哨) 7백 38명  
 좌우사표하군(左右司標下軍) 62명  
 협련군(挾輦軍) 4백 80명  
 겸내취(兼內吹) 12명  
 대기수(大旗手) 35명  
 문기수(門旗手) 30명  
 난후군(攔後軍) 20명  
 화전군(火箭軍) 10명  
 세약수(細藥手) 5명  
 사후군(伺候軍) 40명  
 금위영(禁衛營) 창인군(槍刃軍) 1백 2명  
 겸내취(兼內吹) 11명  
 세약수(細藥手) 5명  
 어영청(御營廳) 별초(別抄) 52인  
 겸내취(兼內吹) 11명  
 용호영(龍虎營) 겸내취(兼內吹) 10명  
 철현진(鐵峴鎭)은 훈련도감에 환속(還屬)함  
 노량진(鷺梁鎭)은 금위영에 환속함  
 태탄둔(苔灘屯)은 어영청에 환속함  
 신영(新營)은 훈국(訓局)에 환부(還付)하고 각 영에 옮겨온 군물(軍物)은 각 헤영으로 분송(分送)하고 본영 군물은 직방(直房)에 옮겨 둠.  
 司啓曰, 本營軍制, 廟堂依摠戎廳節目舉行事, 命下矣, 將官將校·員役·軍兵之復設, 丙午以

後新設將官之減革，各營移來軍之還送，竝別單書入，軍兵料條錢木米太，竝令該曹該營草記推去，而取考壬戌年壯勇營撤罷騰錄，則錢穀屯土，俱有措處，軍校員役，亦皆移屬，今番則何以爲之乎，敢啓，答曰，知道。軍校員役，令各營各司，隨窠區處。

別單

將官以下復設秩

中軍一員

千總二員

把總二員

哨官十員 一員參軍例兼

經理軍官三員

教鍊官十五員

旗牌官二員

別付料軍官二員

書吏十人

待令書吏三人

奇別書吏三人

書寫一人

書員二名

庫直五名

使令二十六名

驅從二名

文書直七名

依募軍士二名

茶母一名

各廳房直十四名

卜馬軍三名

牢子一百五名 有料二十六名

巡令手一百二十八名 有料二十二名

吹鼓手一百八十九名 有料二十六名 細樂手有料十三名

大旗手一百五十六名 有料二十七名

塘報手一百二十九名 有料十二名

軍幕手八十七名 有料十五名

燈籠手七十一名 有料十二名

別破陣一百二名 有料十六名

兒旗手二十名 有料

**南陽**·坡州·長湍，依前以兼營將施行。

提調以下減下秩

提調一員

從事官一員

別將一員

把總一員

善騎將三員  
哨官九員  
額外壯勇衛二十一員  
知穀官二十一員  
教鍊官二十員  
壯勇衛十九員  
除本仕牌將五員  
別武士十五人  
別付料武士十九人  
藥房一員  
針醫一員  
畫員一員  
寫字官一員  
馬醫一人  
書吏十七人  
書寫三人  
奇別書吏四人  
書員四名  
庫直十一名  
使令十八名  
驅從二十二名  
各所軍士九名  
茶母四名  
文書直四名  
各廳房直十名  
私庫直七名  
使喚軍二十名  
役人二十名  
兩裝直三名  
卜直六名  
各營移來軍還送秩  
訓練都監別武士十人  
武藝別監一百五十八人  
馬兵三哨三百五十七名  
步軍六哨七百三十八名  
左右司標下軍六十二名  
扶輦軍四百八十名  
兼內吹十二名  
大旗手三十五名  
門旗手三十名  
攔後軍二十名

大箭軍十名  
 細藥 (탈초자주:樂) 手五名  
 伺候軍四十名  
 禁衛營槍劍軍一百二名  
 兼內吹十一名  
 細藥 (탈초자주:樂) 手五名  
 御營廳別抄五十二人  
 兼內吹十一名  
 龍虎營兼內吹十名  
 鐵峴鎮, 還屬訓練都監.  
 鷺梁鎮, 還屬禁衛營.  
 苔灘屯, 還屬御營廳.  
 新營, 還付訓局, 各營移來軍物, 分送各該營, 本營軍物, 移置於直房.  
 <비변사등록 236책, 철종 즉위년 1849년 06월27일(음)>

**정치/군사**

**文殊山城과 鼎足山城 接戰 때의 將卒 論賞 別單을 써서 들이다**

○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문수산성(文殊山城)과 정족산성(鼎足山城)에서 싸울 때의 장졸(將卒)들을 삼가 하교(下敎)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어 논상(論賞)하였습니다. 별단(別單)에 써서 들입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문수산성과 정족산성에서 싸울 때의 장관(將官) 이하 별단 (…)  
 정족산성에서 접전 때의 교졸(…)

**남양(南陽)** 포수 한량 신행철(申幸哲)·유순복(兪順福) (…)

府啓曰, 文殊·鼎足兩山城接戰時將卒, 謹依下敎, 分等論賞, 別單書入之意, 敢啓, 答曰, 知道.

文殊山城鼎足山城接戰時將官以下別單 (…)

鼎足山城接戰校卒 (…)

**南陽**砲手閑良 申幸哲 兪順福 (…)

<비변사등록 251책, 고종 3년 1866년 10월24일(음)>

**정치/군사**

**鎭撫營軍制 및 제반 조치 방안을 別單으로 써서 들이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전교하신 대로 진무영(鎭撫營)의 군제와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조처의 방도를 별단에 구비하여 써서 올리겠습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진무영(鎭撫營) 별단

1. 본영의 체례(體例)를 통제사(統制使)의 전례에 따라 한다.
1. 본영은 정3품 아문으로 승격하였으니, 각처의 문건 보고와 수령 체통을 삼반예식(三班禮式)을 참고하여 시행한다.
1. 진무사가 새로 채수된 후에 하비(下批)하고, 정품(政稟)하는 것을 전례에 따라 한다.
1. 진무중군의 의차(擬差)와 임기 기한은 통제중군의 전례에 따라 시행한다.
- 1, 상영(上營)의 대솔 군관(帶率軍官) 3명 가운데 영의 대솔 군관 2명을 통영의 전례에 따

라 더 정하고, 요포(料布)는 참작하고 헤아려서 마련한다.

1. 상·중영은 모두 가족을 데려가게 하고, 군무(軍務)에 대한 일이 있다면 중군은 편리한 대로 왕래하도록 묘당과 품의(稟議)한다.

1. 경기수영(京圻水營)이 관할하는 변장(邊將)의 절제(節制)와 전최(殿最)를 모두 본영에 이속시킨다.

1. 교동(喬桐)과 영종(永宗)은 진무영 좌·우 해방장(左右海防將)으로 계하(啓下)하였는데 모두 본영의 통제를 받게 하고, 부사(府使)의 전최는 순영이 주관하며, 첨사와 해방장의 전최는 진무영이 주관한다.

1. 본영의 검률(檢律)은 전례에 따라 그대로 둔다.

1. 경영(經營)은 판관(判官)으로 하비한다.

1. 진무사는 통어사를 겸하고 있으니 병부(兵符)는 정원에서 고쳐 만들어 지급하게 하고, 판관 병부(判官兵符)는 또한 새로 만든다.

1. 상·중영 및 판관의 인신(印信)은 고쳐 주조하여 보낸다.

1. 정족산성 별장을 본영의 자벽과로 하되 집사(執事) 가운데 순차적으로 차송(差送)하고, 능료(廩料) 및 제반 비치물들은 본영에서 마땅함을 헤아려 구획한다.

1. 공도회시(公都會試)는 화성(華城)의 전례가 있으니, 문관으로 기일에 맞추어 차송(差送)한다.

1. 영종첨사의 연명(延命)은 전례에 따라 하되, 삼도(三道) 주사(舟師)와 읍 수령이 영(營) 아래에 도착하면 연명한다.

1. 영종 교속(永宗校屬)이 오래 근무하면 남양(南陽)·죽산(竹山)의 전례에 따라 그대로 시행한다.

1. 규장각 위장(衛將)을 선원각(璿源閣) 위장으로 고치고, 서리천전과(書吏遷轉窠)를 만든다.

1. 포수(砲手)의 봄, 가을 도시(都試)에서 우등으로 만점을 받은 사람은 전시(殿試)에 직부(直赴)한다.

1. 교동 도시(喬桐都試)를 전례에 따라 시행하되 본영에 전보(轉報)하고, 영종 도시(永宗都試)는 본영으로 옮겨 붙여 거수(居首)한 사람을 전시에 직부하며, 포과(砲科)을 일체로 시행한다.

1. 봄, 가을 수·육군의 큰 훈련을 전례에 따라 한다.

1. 수·육군의 훈련을 매달 한 차례 상·중영이 돌아가면서 시행하되, 등급을 나누어 상을 준 후에 본부에 수보(修報)한다.

1. 공해(公廩)와 각처의 영(營)을 세우는 재료와 철물을 영조(營造)에서 만들어 조치한 바를 내려 보낸다.

1. 돈대(墩臺) 각 곳은 본영에서 새롭게 한번 수리하고 보수한다.

1. 각종의 배와 함선, 깃발과 표지, 군기(軍器)의 기물 등을 영조(營造)에서 새롭게 만든 것으로 보낸다.

1. 상·중영 및 각 진장의 갑옷은 영조에서 만들어 보낸다.

1. 군병이 입는 군복 및 깃발과 표지의 색을 바꾸고, 다시 만드는 절차를 경영(京營)의 전례에 따라 하되, 절대로 기한을 넘기지 않고 정식(定式)으로 준행한다.

1. 각종의 배는 본부에 보고하고 기한에 맞추어 수리하되 기한을 어기지 않는다.

1. 탄환 및 군사 기물을 훈국(訓局)의 전례에 따라 매년 정밀하게 만들어 둔다.

1. 고마(雇馬)와 복마(卜馬) 및 각종 물건을 싣는 말을 본영에서 마땅함을 헤아려 세워준다.
1. 외규장각(外奎章閣)은 불에 탔고 또 보장서책(寶藏書冊)이 없으니, 다시 건립하지 않는다.
1. 옛 목장을 본영(本營)에 환속하여 군수물자를 보충하고, 인능(仁陵) 향탄전(香炭錢) 6백냥과 휘경원(徽慶園) 향탄전 5백냥을 각 능침(陵寢)의 전례에 따라 선혜청에서 구획하여 보내고, 사복시(司僕寺)가 납부하는 돈 1백 20냥을 영원히 견제(鑷除)하여 본영에 모두 속하게 한다.
1. 북일장(北一場) 사복시 세납전(稅納錢) 3백 52냥 5전 7분을 모두 본영에 속하게 한다.
1. 내사(內司) 오관(五官)의 전답을 본영에 이속시킨다.
1. 삼유영(三留營)의 쌀과 콩 및 전답둔(田畝屯)의 소 및 탄환과 군사 기물과 기계를 모두 본영에 이속시킨다.
1. 경기수영(京圻水營)과 삼도(三道)에 있는 곡식 충수 및 방전(防錢)과 양전(糧錢)을 본영에 이속시키고, 매년 모조(耗條)를 만들고 진성(陳省) 진성(陳省):지방 관아(官衙)가 상부 관사(官司)에 보내는 물품 명세서(明細書)를 말한다. 단기를 갖추어 본영에 직접 납부하도록 본부에서 정식으로 행회한다.
1. 장령전(長寧殿) 수호군(守護軍)이 받는 통진(通津)·김포(金浦) 두 고을의 결복(結卜) 60결을 본영에 이속시키고, 결가(結價)에 따라 봉상(捧上)한다.
1. 균역청에 납부할 어·염(魚鹽) 세금 6백 15냥 9전 3분을 모두 본영에 이속시킨다.
1. 군관 번미(軍官番米) 9백 14석과 번전(番錢) 7백 84냥 8전을 당년만 견감한다.
1. 포삼(包蔘) 1만 근과 세전(稅錢) 14만냥을 매년 역원(譯院)에서 수송한다.
1. 장관·장교·여러 가지 표하군(標下軍)·별파진(別破陣)의 포수(砲手)·능노군(能槽軍) 및 각 진에 소속된 군졸들의 요포(料布)를 세전(稅錢)에서 넉넉하게 마련한다.
1. 상·중영 및 본영과 관하 각 진의 변장의 누료(廩料)를 모두 세전(稅錢)에서 마땅함을 헤아려 마련한다.
1. 갑곶 조강(祖江)의 세금을 거두는 감관(監官)은 막비(幕裨) 가운데 근면한 사람으로 뽑아 차출하여 가서 세금을 감독하게 하고, 정식(定式) 이외에 함부로 거두는 폐단이 있다면 본영에서 법률에 따라 엄하게 처리한다.
1. 각종의 봉세(捧稅)를 간략하게 마련하여 성책(成冊)하여 본부에 보고하고 참고자료로 삼는다.
1. 교동(喬桐)이 주관하는 곡총(穀摠)과 번전(番錢)은 본영에 속하게 했으므로 해읍(該邑)의 상황 역시 급대(給代)의 방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세전(稅錢) 가운데에서 획급한다.
1. 교동과 영종의 군제(軍制)가 매우 소홀하여 포수와 별파진(別破陣)을 마땅함을 헤아려 설치하고, 세전(稅錢) 가운데 요포(料布)를 마련한다.
1. 세전(稅錢)과 곡모(穀耗) 등 각종의 공화(公貨)의 봉하(捧下)와 군기(軍器)와 군사물자의 준비 상황을 매년 말에 본부에 수보(修補)한다.
1. 미진한 조항은 추후에 마련한다.

府啓曰，謹依傳教，鎮撫營軍制及諸般措劃之方，另具別單書入之意，敢啓，答曰，知道。

鎮撫營別單

一，本營體例，一依統制使例爲之是白齊。

- 一，本營既陞正二品衙門，各處文報與守令體統，參互三班禮式施行是白齊。
- 一，鎮撫使新除後下批政稟，依例爲之是白齊。
- 一，鎮撫中軍擬差與芘限，一依統制中軍例施行是白齊。
- 一，上營帶率軍官三員中，營帶率軍官二員，依統營例加定，而料布參量磨鍊是白齊。
- 一，上中營竝許絮卷，有軍務事，則中軍從便來往，稟議廟堂是白齊。
- 一，京畿水營所管邊將節制與殿最，竝移屬本營是白齊。
- 一，喬桐永宗，以鎮撫營左右海防將啓下，竝令受制於本營，府使殿最，巡營主管，僉使與海防將殿最，鎮撫營主管是白齊。
- 一，本營檢律，依前仍置是白齊。
- 一，經歷以判官下批是白齊。
- 一，鎮撫使，既兼統禦使，兵符令政院改造以給，判官兵符，亦爲新造是白齊。
- 一，上中營及判官印信，改鑄以送是白齊。
- 一，鼎足山城別將，作爲本營自辟窠，執事中循次差送，廩況及諸般備置，自本營量宜區劃是白齊。
- 一，公都會試官，已有華城之例，以文官臨期差送是白齊。
- 一，永宗僉使延命依例爲之，三道舟師邑守令，若到營下，則延命是白齊。
- 一，永宗校屬久勤，依南陽·竹山例，仍行是白齊。
- 一，奎章閣衛將，改爲塔源閣衛將，作爲書吏遷轉窠是白齊。
- 一，砲手春秋都試優等沒技人，直赴殿試是白齊。
- 一，喬桐都試，依例設行，轉報本營，永宗都試，移付本營，居首人直赴殿試，砲科一體施行是白齊。
- 一，春秋水陸軍大操習，依例爲之是白齊。
- 一，水陸軍操鍊，每朔一次，上中營輪回設行，分等施賞後，修報本府是白齊。
- 一，公廩各處營建材瓦鐵物，自營造所措備下送是白齊。
- 一，墩臺各處，自本營一新修補是白齊。
- 一，各樣船艦旗幟軍器器用等物，竝自營造所新造以送是白齊。
- 一，上中營及各鎮將甲冑，自營造所造送是白齊。
- 一，軍兵所着軍服及旗幟改色改造之節，一依京營例爲之，切勿過限，定式遵行是白齊。
- 一，各樣船隻，報本府，趁限修葺，毋得違限是白齊。
- 一，藥丸及軍器，依訓局例，每年精造以置是白齊。
- 一，雇馬卜馬各種載持馬，自本營量宜立待是白齊。
- 一，管下各鎮別破陣及砲手，量宜設置是白齊。
- 一，外奎章閣，既已灰燼，且無寶藏書冊，勿爲改建是白齊。
- 一，舊牧場還屬本營，以補軍需，而仁陵香炭錢六百兩，徽慶園香炭錢五百兩，依各陵寢例，自惠廳劃送，而司僕寺所納錢一百二十兩，永爲鑷除，全屬本營是白齊。
- 一，北一場司僕寺稅納錢三百五十二兩五錢七分，全屬本營是白齊。
- 一，內司五宮田畝，移屬本營是白齊。
- 一，三留營米太及田畝屯牛與藥丸軍器機械，竝移屬本營是白齊。
- 一，京畿水營三道所在穀摠及防錢糧錢，竝移屬本營，每年耗作具陳省，直納本營事，自本府定式行會是白齊。
- 一，長寧殿守護軍所受通津·金浦兩邑結卜六十結，移屬本營，從結價捧上是白齊。

- 一, 均廳所納漁鹽收稅六百十五兩九錢三分, 全屬本營是白齊.
- 一, 軍官番米九百十四石, 番錢七百八十四兩八錢, 當年盆鑷減是白齊.
- 一, 包蓼一萬斤, 稅錢十四萬兩, 每年自譯院輸送是白齊.
- 一, 將官將校各色標下軍別破陣砲手能櫓軍及所屬各鎮軍卒料布, 以稅錢中從優磨鍊是白齊.
- 一, 上中營及本官與管下各鎮邊將廩況, 並於稅錢中, 量宜磨鍊是白齊.
- 一, 甲串祖江收稅監官, 以幕裨中勒幹人擇差, 出往監稅, 而定式外, 如有濫捧之弊自本營照律嚴處是白齊.
- 一, 各種捧稅, 從略磨鍊, 修成冊報本府, 以爲憑準之地是白齊.
- 一, 喬桐所管穀摠與番錢, 既屬本營, 則該邑事勢, 亦不可不念, 給代之方, 以稅錢中劃給是白齊.
- 一, 喬桐永宗軍制甚疎虞, 砲手別破陣, 量宜設置, 以稅錢中料布磨鍊是白齊.
- 一, 稅錢穀耗各樣公貨捧下與軍器軍物措備形止, 每年終修報本府是白齊.
- 一, 未盡條件, 追後磨鍊是白齊.

<비변사등록 251책, 고종 3년 1866년 11월16일(음)>

#### 정치/군사

**摠戎使 李周喆이 南陽府의 銃手를 試取하여 別驍士都試 榜末에 부치는 문제를 논의하다**

○ 같은 날 입시하였을 때 총용사 이주철(李周喆)이 아뢰기를, “방금 본청에 소속되어 있는 전 영장 남양 부사(南陽府使) 정순조(鄭順朝)의 보고를 보니, ‘본부는 해방의 요충지에 처해 있어서 미리 대비해야 할 계책이 더욱 자별합니다. 그러므로 바야흐로 총수(銃手) 1백 명을 모집하여 훈련시켜 힘을 얻을 바탕으로 삼고 있는데 상이 있으면 용감하게 달려드는 것은 인정상 당연한 것이니, 각 병영의 도시(都試)에서 우등한 이를 전시에 직부하게 한 전례에 의거하여 매년 가을 시험에서 우등 한 사람을 별효사(別驍士)의 도시 방목 끝에 붙이도록 하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한 과(科)의 명목을 허락해 준다면 1백 명의 힘을 모집해 얻어 해방에 믿을 바가 있게 되고 군제도 마땅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이렇게 앙달(仰達)합니다.”

하니, 임금에 그리하라 하였다.

同日入侍時, 摠戎使李周喆所啓, 卽接本廳屬前營將南陽府使鄭順朝所報, 則以爲本府, 處在海防咽喉之地, 其所備豫之策, 尤係自別, 故方募銃手百名, 以爲鍊習得力之地, 而大抵有賞則勇赴, 人情之固然, 依各兵營都試優等直赴殿試之例, 每秋試, 取優等一人, 付之別驍士都試榜末爲辭矣, 若許以一科之名, 募得百夫之力, 則海防有恃, 軍制得宜, 故敢此仰達矣, 上曰, 依爲之.

<비변사등록 252책, 고종 7년 1870년 06월29일(음)>

#### 정치/군사

**領議政 金炳學이 입시하여 摠戎廳 餉穀의 弊端을 바로잡는 방안 등을 논의하다**

○ 오늘 윤10월 10일 약방(藥房)이 입진하고 대신과 의정부 당상이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영의정 김병학(金炳學)이 아뢰기를, (...) 또 아뢰기를, “각도(道)에 다섯 진영(鎭營)을 두는 것이 곧 1영(營) 5사(司)의 제도입니다. 경기 지역은 이천(利川)이 전영장(前營將)이 되고 남양(南陽)이 좌영장(左營將)이 되고 양주(楊州)가 중영장(中營將)이 되고 장단(長湍)이 우영장(右營將)이 되고 죽산(竹山)이 후영장(後營將)이 되어, 이것이 5영이 됩니다. 그 뒤

에 이천·양주·죽산은 수어청(守禦廳)에 이속(移屬)하였고 **남양**과 장단은 총융청(摠戎廳)에 이속하였으니 기영(畿營)에 있어서는 맡아서 관장하는 바가 없이 헛되이 이름만을 띠고 있으므로 실로 사리에 맞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의 다섯 고을의 경기 영장(京畿營將)이라는 직함을 모두 감하(減下)하는 것이 좋을 듯하기에 감히 양달(仰達)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

今閏十月初十日藥房入診，大臣政府堂上引見入侍時，領議政金所啓，(…) 又所啓，各道之置五鎮營，卽一營五司之制也，京畿則利川爲前營將，**南陽**爲左營將，楊州爲中營將，長湍爲右營將，竹山爲後營將，是謂五營矣，其後利川·楊州·竹山，移屬守禦廳，**南陽**·長湍，移屬摠戎廳，則在畿營無所，職掌，虛帶名號，實涉無謂，以上五邑京畿營將之銜，竝減下恐好，故敢達矣，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252책, 고종 7년 1870년 10월10일(윤)>

### 정치/군사

**摠戎使 李周喆이 南陽 등의 別驍士 都試에 部薦閑良이 應試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하다**

○ 같은 날 입시하였을 때 총융청 이주철(李周喆)이 아뢰기를, “신의 청에 소속된 **남양**·과주·장단의 별요사(別饒士) 도시(都試)를 연전에 선천(宣薦) 한량(閑良)들이 원통하다고 해서 **남양** 전 부사(府使) 박유봉(朴有鵬)이 선천 한량과 부천(部薦) 한량들이 함께 응시하도록 하자고 논보(論報)한 일로 인하여 초기(草記)를 윤택(允)받았습니다. 그런데 선천 한량들이 응시한 뒤로, 부천 한량들은 응시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번 도시로 말해 보더라도 장단의 무사(武士)들이 궤방(闕榜)을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진실로 장려하고 권장하는 본의가 아닙니다. 예전 전례대로 단지 세 고을의 부천 한량들만 응시하게 한다는 뜻으로 정식을 삼아 시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에 감히 양달(仰達)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同日入侍時，摠戎使李周喆所啓，臣廳屬**南陽**·坡州·長湍別驍士都試，年前以宣薦閑良之稱冤，因**南陽**前府使朴有鵬論報，宣部薦閑良，通同應試之意，草記蒙允矣，自宣薦閑良應試之後，部薦閑良，不肯赴試，以今番都試言之，長湍武士，至於闕榜之境，誠非勸獎之本意，依舊例只以三邑部薦閑良應試之意，定式施行恐好，故敢此仰達矣，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252책, 고종 7년 1870년 10월10일(윤)>

### 정치/군사

**解事譯官을 擇定하여 南陽府의 異樣船을 問情하게 할 것을 청하다**

○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이양선(異樣船)이 근해에서 머물고 있는 지 이미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 경기 감영의 장계를 어제 보았는데, **남양부사(南陽府使)**가 곧 이유를 물어보려고 한다 하였습니다. 어느 나라 선박이 무슨 일로 인하여 와서 정박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이는 상세하게 곡절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처리를 아는 역관(譯官)을 해원(該院)에서 몇 명 가려 뽑도록 하여 하직인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내려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允)한다고 답하였다.

府啓曰，異樣船之逗遛內洋，已有日矣，昨見畿營狀啓，則**南陽府使**，行將問情云，未知何國船之因何事來泊，而此不可不詳問委折，解事譯官，令該院，擇定幾人，除下直下送，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53책, 고종 8년 1871년 04월10일(음)>

정치/군사

領議政 金炳學이 입시하여 이양선의 출몰과 관련하여 관방의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함

○ 5월 25일 약방의 입진(入診)에 대신과 정부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영의정 김병학(金炳學)이 아뢰기를, (….) 또 아뢰기를, “남양(南陽)의 대부도(大阜島)는 강화도·영종(永宗)과 서로 마주보고 있고, 팔미(八尾)·월미(月尾)와 서로 뒤섞여 있어 관방(關防)의 요충지로서 진실로 요긴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말을 키우는 지역으로 적을 방어하는 방도에 전혀 어두워 비류(匪類)들이 출몰할 때에 방비를 소홀히 하여 일어난 잘못이 막심합니다. 지금 만약 목(牧)을 진(鎭)으로 바꾸고 진(鎭)에서 목(牧)을 겸하게 하며, 군제(軍制)를 절제하고 마정(馬政)을 신척하게 한다면 모두 어긋나지 않게 행해져서 일거양득이 될 것입니다. 진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진장(鎭將)을 차출하여 대부도첨사(大阜島僉使)로 하비하고 중군(中軍)의 이력(履歷)을 시행하며, 남양감목관(南陽監牧官)을 혁파하고 첨사(僉使)로 만들어 아울러 관할하도록 하되, 시임 감목관은 경직(京職)으로 체부(遞付)하도록 전조(銓曹)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

今五月二十五日, 藥房入診, 大臣政府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金所啓, (….) 又所啓, 南陽大阜島, 與沁都永宗竝峙, 又與八尾月尾相錯, 關防要衝, 實係繁重, 而以其牧馬之地, 全昧禦賊之方, 匪類出沒之際, 疎虞莫甚, 今若以牧變鎭, 以鎭兼牧, 團束軍制, 操飭馬政, 則竝行不悖, 一舉兩得, 於此設鎭差出鎭將, 以大阜島僉使, 下批中軍履歷施行, 南陽監牧官革罷, 仍作僉使, 使之兼管, 而時牧官, 遞付京職事, 分付銓曹, 何如, 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253책, 고종 8년 1871년 05월25일(음)>

정치/군사

領議政 金炳學 등이 남양의 대부도 등의 해상방어와 관련한 방안 등을 논의하다

○ 7월 20일 약방의 입진에 대신과 정부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영의정 김병학(金炳學)이 아뢰기를, (….) 또 아뢰기를, “남양(南陽)의 대부도(大阜島)는 바다 길목의 요충지로서 거기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오직 목장(牧場)의 일만을 알 뿐, 방비하여 막을 방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때 소홀한 것이 실로 깊이 우려되는 바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 진영(鎭營)을 설치한 바 있었습니다. 생각건대, 허다한 건물의 설치와 허다한 비용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크게 다른데다가 부근의 섬들을 이속(移屬)시킨 뒤 서로 장애되는 일이 없지 않을 것이니, 연혁(沿革)의 편리 여부를 따지는 데 있어 시간을 소비하게 되는 것을 혐의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진장(鎭將)을 감하(減下)하고, 해도(該島)를 그대로 본부에 소속되어 있도록 한 다음 웅진(瓮津)과 태안(泰安)의 예에 의거하여 바람이 높거나 순조로움에 따라 부사(府使)가 옮겨가서 주재(駐在)하되, 관사(官舍)는 그전 것을 그대로 쓰고, 기계(器械)를 수리 보수하는 것은 본부에서 조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본부에 설치되어 있는 포병(砲兵) 1백 명을 옮겨다 바다 길목을 방수하는 데 동원하여 성지(城池)를 지키는 것을 대신하도록 하며, 장졸(將卒)들에게 지방(支放)할 비용은 목관(牧官)의 녹봉 가운데에서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부도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섬들도 해부(諧府)로 옮겨 소속시키고, 여러 섬들에 있는 각진(鎭)의 군수(軍需)는 예전대로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본 수령은 목관을 겸하게 하여 문관과 무관을 교대로 차임하되 각별히 신중하게 골라 요망(瞭望)을 삼가고 해방(該防)을 중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진영을 설치하여 옮겨 주재하게 될 동안 변방의 방비를 튼튼히 할 계책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今七月二十日, 藥房入診, 大臣政府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金所啓, (…) 又所啓, **南陽大阜島**, 以海門要衝去處, 居民輩惟知牧場之事, 全昧備禦之方, 此時疎虞, 實多深慮, 故向有所設鎮之舉, 而第念許多建置, 許多糜費, 其與始料, 大相不同, 且近島移屬之後, 不無掣礙之端, 則便否沿革之際, 未可以銷刻爲嫌, 鎮將減下該島, 因屬本府, 依瓮津泰安例, 隨其風高風和, 府使移駐而官舍仍舊貫, 修葺器械, 自本府措劃, 本府所設砲兵一百名, 使之移用防守隘口, 以代城池將卒支放之資, 就牧官廩況中磨鍊, **大阜島**所屬諸島, 亦爲移屬該府, 諸島中各鎮軍需, 依前還給, 而本倅兼管牧官, 文武交差, 各別慎擇, 俾爲謹瞭望重海防之地, 何如, 上曰, 設鎮移駐間, 俾圖邊圉之策, 可也.(…)

<비변사등록 253책, 고종 8년 1871년 07월20일(음)>

## 정치/군사

### 民瘼을矯揉할 방법을講究한 別單을 써서 들이다

○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이전에 성상(聖上)의 하교를 받고 팔도(八道)의 도신에게 도내(道內)의 폐단을 낱낱이 거론하게 하고, 이어 바로잡아 구체할 방도를 아뢰고 성책(成冊)을 만들어 올려 보내라고 행회(行會)하였습니다. 성책은 지금 이미 일제히 도착하였으니 비록 성책에 넣지 못하였더라도 무릇 시정하는 나머지에서 빠진 것 외에 들어서 시행하기 어려운 것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각도 백성의 폐막을 바로잡아 구체하는 別單(各道民瘼矯揉別單)

경기도 (…) 1. 영흥진(靈興鎭)은 **남양(南陽)** 수군(水軍) 1백 60명을 해읍에 바꿔 속하게 하였는데 본섬에 사는 백성의 읍역(邑役)을 침탈하지 말게 하겠습니다. (…)

府啓曰, 向奉聖教, 令八道道臣, 毛舉道內之弊, 仍陳矯揉之方, 修成冊上送事, 行會矣, 成冊今既齊到, 而雖未入成冊, 凡有關民瘼者, 竝講究商確, 別單書入, 至於瑣屑說弊, 發關釐正, 餘外難於聽施者, 勿爲舉論之意, 敢啓, 答曰, 知道.

各道民瘼矯揉別單

京畿道 (…) 一, 靈興·鎭南·陽水軍一百六十名, 換屬於該邑, 而本島居民, 勿侵邑役爲白齊.(…)

<비변사등록 264책, 고종 20년 1883년 01월19일(음)>

## 정치/군사

### 海防事務 閱泳穆의 上疏를 검토하여 沿界水軍의 海防營 지휘를 허락할 것 등을 청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경기(京畿) 연해(沿海)를 총관(總管)하는 해방사무(海防事務) 민영목(閔泳穆)이 상소한 것에 대한 비지(批旨)에 진술한 여러 조항은 국방(國防)에 관한 매우 급한 것이니 묘당에서 품처(稟處)하게 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그 상소의 원본을 가져다 보니 그 하나는, 지금의 관할은 단지 육군에서만 수비하여 매우 허술한 듯하니 연안의 경계에 있는 수군은 해방영(海防營)에서 지휘를 받으라고 허락해 달라는 일입니다. 해안의 요충지는 오로지 수군에게 의지하고 있는데 지금 아문(衙門)에서 관할하는 것은 수천 명도 못 되는 육군일 뿐이니 견고하게 지켜야 하는 의리로 헤아려 볼 때 어찌 소홀하지 않겠습니까. 연안의 경계에 있는 수군을 모두 통괄하는 일을 허락하라고 분부하소서. 그 하나는, 교동(喬桐)은 외딴 섬에 위치하여 군사와 향곡(餉穀)이 모두 모자라서 통어사(統禦使)로 칭하는

명색뿐이고 실질이 없어 때에 따라 변혁(變革)한 전례(前例)가 한 번만이 아니므로 참작해서 변통하게 해 달라는 일입니다. 설사 통어사의 명칭은 있지만 군사 편제나 군량과 군수 물자가 전혀 모양을 갖추지 못하여 종전에도 변혁한 것이 또한 여러 번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해방(海防)에 소속되어 있으니 응당 변통해야 할 것입니다. 수군절도사와 통어사의 직함을 감하(減下)하고, 당해 부사(府使)가 방어사(防禦使)의 자리로 시행하게 해 주소서. 그 하나는, 남양(南陽) 대부도(大阜島)는 수레와 선박이 왕래하는 요충지로서 거주민이 물 질에 익숙하니 대(臺)를 설치하고 포(砲)를 안치하되 따로 하나의 진(鎭)을 만들고 별장(別將)을 두어 본아문(本衙門)에서 자벽(自辟)하여 차송(差送)하게 해 달라는 일입니다. 이 섬은 영흥도(靈興島)와 덕적도(德積島) 사이에 끼어 있어서 실로 해문(海門)의 요충지입니다. 진을 설치하자는 논의는 필경 깊이 재량한 것이 있어서 그리하니 별장 한 자리는 당해 아문에서 자벽으로 차송하게 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연안 고을의 포군(砲軍) 원래 액수 1천 8백 70 중에 군사로 조련할만한 사람은 겨우 3분의 2이고, 그 나머지는 불 때고 심부름하는 무리인데 또한 없어서는 안 되니, 영방(營房)을 세워 두고 계기(械器)를 수집하며 차례로 조련하되 총리아문(總理衙門)의 포아병(砲牙兵), 수어영(守禦營)의 별과진(別破陣), 진무영(鎭撫營)에서 새로 조련한 군병은 때때로 조련하고 신칙하고 때에 맞추어 징발(徵發)하여 조달하게 해 달라는 일입니다. 연안 고을에 있는 포군이 무기를 정비하고 기예를 연습하며 3영(營)의 군병들을 조련하고 신칙하여 징발하고 조달하는 일은 아울러 이대로 허락하소서. 그 하나는, 경기(京畿) 연안의 한 방면의 수로(水路)는 서쪽으로 풍덕(豐德)을 경유하고 남쪽으로 통진(通津)을 경유하며, 육로(陸路)는 인천(仁川)의 제물포항(濟物浦港)과 남양(南陽)의 마산포(馬山浦)가 모두 서울로 가는 직통길입니다. 해구(海口)의 방어는 강화영에 전담하게 주고, 육지(陸地)의 수비를 담당케 할 것입니다. 해방(海防)이 현재 부평(富平)에 주둔하고 있는 만큼 그 풍덕과 남양에 응당 두 갈래의 방어지대를 설치하여 호응하고 연락하게 해야겠는데 군병이 나뉘어져 세력이 약해지니 두 곳에서 따로 본토의 용사(勇士)로 각각 2~3대(隊)로 묶어 식견과 사려가 있고 군사 일에 익숙한 사람을 선발해서 오래도록 해읍(該邑)을 맡게 하여 편의대로 훈련하게 해 달라는 일입니다. 바다와 육지의 요해처에 별도로 본토의 병사를 뽑아서 단체로 조련시키는 것은 그만둘 수 없는 일이나 두 고을의 수령(守令)을 가려서 차임하고 오래 맡기고 그런 다음에야 효과를 아낄 수 있으니 이것을 별도로 전조(銓曹)에 신칙하소서. 그 하나는, 연안을 방어하는 병사와 장리(將吏)가 대략 2천 인(人)인데 사람이 하루에 3승(升)을 먹고 하루에 3전(錢)을 쓰면 1년에 곡식이 1만 4천 4백 포(包)이고 전(錢)이 21만 6천 민(緡)이니 사목(事目)에서 확정한 포군의 군량이 8백여 석(石)과 사창(社倉)의 모곡(耗穀)이 6천 냥으로는 한 달도 지탱할 수 없으므로 사람들이 마음에 의혹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당 관청에 신칙하여 국가의 과세를 계산해서 세액(歲額)을 획부(劃付)하게 해 달라는 일입니다. 군병이 있으면 군량이 없어서는 안 되니 이는 사세로 보아 당연합니다. 이것은 바로 제일의 관건인데 돈과 곡식을 맡고 있는 관청에서 세입(歲入)과 세출(歲出)이 아직 넉넉하지 못함을 걱정하고 있으니 추이(推移)하여 획급해 주는 것은 거론하여 의논하기 곤란합니다. 그 하나는, 군량을 넉넉하게 하는 데에는 둔전(屯田)만한 것이 없는데 지금 인천·남양·장봉(長峯) 등지에 있는 목장(牧場)은 말뚝이 거의 없고, 토지는 모두 비옥하고 넓어서 개간할 만합니다. 목장을 혹 옮기거나 혹 없애서 그 땅에 둔전을 경영하라고 허락하고, 소속된 토지의 총 결수(結數)도 다 같이 이부(移付)하게 해 달라는 일입니다. 둔전의 제도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 놓고 있는 땅에서 그 실용(實用)을 거두자고 상소에서 진달한 바는 스스로 짐작하고 해야 할 것이 있으니 옮길 만하고 없앨 만

한 목장을 경시(罔寺)에서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그 하나는, 군영(軍營)과 진(鎭) 사이에 군량 자금을 비록 준다 하더라도 기계(器械)와 의장(衣裝)을 운송하는 비용을 일 년 동안 계산하면 적지 않고, 망정결(望定結)로서 외도(外道)에 있는 것이 아직도 많으니 일체 다 경기(京畿)에 소속시키고 앞뒤의 남은 수효를 통계 내어 정식(定式)한 공용(公用) 외에 다 해방(海防)에 주는 것을 해마다 상례(常例)로 삼게 해 달라는 일입니다. 원래 정한 군량의 액수(額數) 외에 기계와 의장을 운반하면 그 비용이 필경 많을 것이니 각도에 있는 망정결을 모두 경기에 보내고, 경기에서 이미 궁결(宮結)로 있는 것과 함께 없애고 정식한 공용에서 나머지를 헤아려 가져와서 당해 아문에 소속시켜 비용을 보충하게 할 것이나 이것은 토지의 정사(政事)에 관련된 것이니 호조에서 관문(關文)을 보내 통지하여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府啓曰，總管畿沿海防事務閔泳穆上疏批旨，所陳諸條，乃防務之切急者也，令廟堂稟處事，命下矣，取見其疏本，則其一，今之所轄，只是陸軍守備，殊涉疎虞，沿界水軍，許聽海防節制事也，海沿重地，專藉舟師，而現今衙門所管，不滿數千之陸軍而已，則揆以綱繆之義，安得不疎虞乎，沿界水軍，竝許統轄事分付，其一，喬桐處在孤島，兵餉俱乏統禦之稱，徒名無實，隨時沿革，往例非一，參酌通變事也，縱有統禦之號，兵制餉需，全不成樣，從前沿革，亦既屢矣，且今屬於海防，則宜合通變，水軍節度統禦之銜，減下，該府使，以防禦窠施行，其一，**南陽大阜島**，爲輪舶往來之衝，居民慣於行水，設臺安礮，另爲一鎭，寘別將，自本衙門辟差事也，此島介在靈興·德積之間，實爲海門之要衝矣，設鎭之論，必有深裁而然，別將一窠，令該衙門，自辟差送，其一，沿邑礮軍原額一千八百七十，可堪操兵者，僅三分之二，其餘則伙夫廩徒，亦不可闕，建寘營房，蒐集械器，次第組練，而總理之礮牙兵，守禦之別破陣，鎭撫之新鍊兵，以時操飭，臨時徵調事也，沿邑礮軍之繕械鍊藝，三營兵伍之操飭徵調等事，竝依此許施，其一，畿沿一面，水程則西由豐德，南由通津，陸路則仁川之濟物港，**南陽**之馬山浦，皆距京直路，海口控扼，可付沁營專當，陸地守備，海防現住富平，其豐德·**南陽**，宜更有兩枝紮隘，呼應聯絡，而兵分勢弱，就二處，另團土勇各二三隊，擇有識慮習兵事者，久任該邑，方便訓練事也，水陸要害之處，別選土兵，團束組練，係是不可已者，而兩邑守令，擇差久任，然後乃可奏效，以此另飭銓曹，其一，沿防兵士將吏，大略二千人，人日食三升，日資三錢，一歲穀一萬四千四百包，錢二十一萬六千緡，以事目所割礮糧八百餘石，社耗六千兩，支不得一月，衆情疑貳，乞勅所司，計量國課，割付歲額事也，有其兵，則餉不可缺，事勢良然，此是第一關捩也，而金穀所司之地，歲入歲下，尙患不敷，則推移措割，難以舉議，其一，贍餉莫如屯田，而今仁川·**南陽**·長峰等地牧場，馬群幾空，土皆沃衍可墾，牧場或移或罷，許於其地營屯，所屬結摠，亦竝移付事也，屯田之制，蓋古矣，就其閒地，收其實用，疏中所陳，自有斟酌，其可移與可罷之牧場，令罔寺稟處，其一，營陣之間，餉資雖給，器機衣裝輜重之費，歲計不些，望定結之在外道者尙多，一竝屬之京畿，通計前後剩數，定式公用外，悉割海防，歲以爲常事也，原定餉額外，器裝輜重，其費必多，各道望定結，竝送京畿，與京畿已在宮結，而除却定式公用，計取餘剩，屬之該衙門，俾爲補用，而係是結政也，令度支發關，知委施行之地，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65책, 고종 21년 1884년 04월21일(음)>

### 정치/군사

海西와 湖西의 水軍의 지휘는 海防衙門에서, 德積등 5鎭의 殿最는 畿營에서 句管할 것 등을 청하다

○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통어사(統禦使)를 감하(減下)한 뒤에 경기(京畿) 연해(沿海)의

수군(水軍)을 이미 해방아문(海防衙門)에 속하게 하였습니다. 해서(海西)와 호서(湖西)의 수군을 일체 지휘하게 하고, 덕적(德積)·덕포(德浦)·주문(注文)·영흥(靈興)·장봉(長峰)의 5개 진(鎭)의 전최(殿最)는 경기감영(京畿監營)에서 구관(句管)하게 하고, **남양(南陽)**·장봉·인천(仁川)은 목장(牧場)이 이미 태복시(太僕寺)에서 복계(覆啓)하여 당해 아문에 획부(劃付)하였으니 목관(牧官)을 모두 감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府啓曰，統禦使減下後，畿沿水軍，已屬海防衙門矣，海西·湖西水軍，使之一體節制，德積·德浦·注文·靈興·長峰五鎭殿最，令畿營句管，**南陽**·長峰·仁川牧場，既自太僕覆啓，劃付於該衙門，牧官竝減下，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65책, 고종 21년 1884년 05월02일(윤)>

### 정치/군사

#### 海寇의 방비에 관하여 突騎에게 지급할 군마가 부족하여 어렵다는 것을 아뢰다

사복시 관원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비변사의 계사에 의하면, '봉조하 남구만(南九萬)의 올린 논의에, 「정예한 돌기(突騎)를 선발하여 바다를 건너 물에 오른 보적(步賊)을 막게 해야 한다는 말은 바로 나의 뜻에 맞는다. 서둘러 강구하여 거행하지 않을 수 없으니 우선 속히 논의하여 처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른바 해구(海寇)는 비록 반드시 온다는 형세는 보이지 않으나 조정에서 이를 우려하고 있으니 그 대비와 방어하는 방법을 진정 여려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가지 일도 건백(建白)하여 설치한 것이 없으니 그지없이 황공하옵니다. 그윽히 생각해 보면 해구가 만약에 침범하는 일이 있게 된다면 바람을 타고 한 걸음에 바다 건너기를 육지와 같이 하는 경우 연해 읍진(邑鎭)의 약간의 전선(戰船)과 허약하고 적은 속오군(東伍軍)으로서 어떻게 막아 차단할 희망이 있겠습니까? 불행히 해안(海岸)으로 올라오면 미리 마군(馬軍)이 있어야만 달릴 수 있는 장기(長技)로서 돌격하여 제재함은 그 형편이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 마군은 한갓 그 이름만이 남아있고 모두 잔약하므로 전진(戰陣)의 쓰임에 대비할 수 없습니다. 근년 함경도에 친기위(親騎衛)를 설치하고 남(南)·북관(北關)에 각각 3백인을 두었는데 규모와 체제(體制)가 매우 갖추어졌고, 선발도 정밀하여 사병은 날래고 말은 건장하였으니 위급한 사태에 사용할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은즉 그 제도는 점점 누그러져서 전만 못하다 하니 올린 논의에서 요청 한 바에 의하여 본도의 감사 및 남·북 병사(南北兵使)에게 분부하여 몸소 점검하여 늙고 병약한 자는 곧 도태시키고, 다시 정장(精壯)을 모집하여 옛 인원수를 보충하고, 승용마(乘用馬)도 잔약한 것은 역시 제거하고 수시로 징용(徵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서관(西關)의 감(監)·병영(兵營) 소속의 기병(騎兵)은 그 수가 수천 명이 되는데 탈 말을 자력(自力)으로 마련하여 치돌(馳突)할 만한 것이 적으니, 이를 믿기가 어려운 듯 합니다. 역시 본도의 감사와 병사에게 분부하여 친기위절목(親騎衛節目)에 의하여 도내의 능력과 용맹이 있는 병사를 특별히 선발하고 수시로 연습하여 갑작스런 사태에 대비하되, 그 액수에 있어서는 6~7백으로 한정하여 사세(事勢)를 살피면서 시행하게 하고, 거행한 내용을 우선 계문할 것입니다. 해서(海西)에는 어영청의 별마대(別馬隊)와 금위영의 별효위(別驍衛) 각 8백여명이 있습니다. 군병은 꽤 모두 건장하고 기예도 좋으나 승용마(乘用馬)는 본래 매우 잔약하니, 이에 반드시 특별한 선처(善處)가 있어야만 힘이 될 수 있겠습니다. 본 군문에서 감영·병영과 협의 결정하여 옛 인원수에 따라 더 선발하되 건장(健壯)한 데에 힘 써 적이 침입할 수 있는 곳에 징발(徵發)하여 대기(待期)해야 합니다. 친기위의 제도는

매년 시재(試才)하여 우등(優等)한 자를 승진시키거나 임용함은 대체로 고무(鼓舞)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근래 먼 지방의 무사(武士)들은 실망하고 침울해 하니 설치한 본 뜻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북도의 친기위와 관서에 신설한 뒤에 우등한 자를 뽑아서 특별히 임용할 것을 당초의 절목에 의하여 일체 시행해야 합니다. 또 생각컨대 전마(戰馬)는 본래 매우 적으며, 지방의 병사가 비록 스스로 힘을 다하여 갖춘다 하더라도 대부분 제대로 달리지 못하니 이 문제가 가장 난처한 일입니다. 여러 목장의 말을 나누어 주어 전마로 갖추게 한다면 일이 매우 편이하나 목장의 말의 수가 두루 지급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생각컨대 볼 때 나누어 주는 것을 뒤에 예로 삼아서는 부당하며, 일이 긴박하므로 아껴서도 옳지 않습니다. 사복시로 하여금 여쭙어 처리하게 하는 것이 의당하기에 감히 아쉽니다.'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곧 3도 및 본 군문에 즉시 거행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지금 이 친기위(親騎衛)가 탈 말은 싸움터에 나가 적을 방어하는데 필요이므로 건장하여 잘 달릴 것이 아니면 적합치 않습니다. 각도의 목장마(牧場馬)로서 현존 숫자에서 4살[禾] 이상을 따지면 불과 2천 7백여 필입니다. 근래 말 종자는 대부분 나빠서 비록 제주(濟州)의 경우를 들어서 말하더라도 세공(歲貢) 수백필 가운데 전마(戰馬)로 적합한 것은 역시 거의 없으니, 군병에게 나누어 줄 때에 늘 구차스러움이 걱정입니다. 그러므로 금군(禁軍) 및 훈련도감의 마병(馬兵)이 타는 것은 자비(自備)를 제외하고 대부분 체구가 작아 보기에 매물스럽고 다른 목장의 경우 더욱 심합니다. 그 가운데 울산(蔚山)·강산(江山)·강화(江華)·**남양(南陽)**·철산(鐵山) 등 목장의 말이 가장 나오나 그 수를 합하여 계산하면 1천필이 못 됩니다. 해마다 끌어내어 나누어 기르고, 가려서 변마(邊馬)로 세우며, 또 연하 친병(輦下親兵)에게 나누어 주는 데에도 오히려 부족함이 있으니, 양서에 신설되는 친기위 여러 백명이 탈 것에는 실은 미칠 희망이 없습니다. 건장한 것을 가려서 주지 않는다면 죽히 적진(賊陣)으로 달려 들 수 없어 도리어 실상(實狀)이 없이 되니, 일이 난처하여 걱정이 됩니다. 감히 형세가 이러함을 대강 아뢰고, 우선 당해 도에서 선정(船定)하는 문제를 거행하고 계문하기를 기다려서 다시 헤아려 여쭙어서 처리할 것을 감히 아쉽니다."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司僕寺官員，以提調意啓曰，備邊司啓辭，奉 朝賀南獻議抄選精銳之突騎，以當越海下陸 之步賊云者，正合予意，不可不急講舉行，爲先斯 速議處事命下矣，所謂海寇，雖未見其有必至 之形，而朝家既以是爲憂，則其所備禦之策，固 當預先措劃，而迄未有一事建白而設置者，不勝惶恐，竊念海寇，若或有來犯之事，則乘風一蹕，涉 海如陸，以沿海邑鎮若干戰船，單寡束伍，豈能抵 當遮遏之望，不幸登岸，則預有馬軍而後，以其馳 驟之長可以衝而制之，其勢然矣，我國外方馬軍，徒存其名，悉皆疲殘，必無以備戰陣之用，頃年咸 鏡道新設親騎衛，南北關，各置三百人，規制甚備，抄擇亦精，士驍馬健，緩急可用，近聞其制頗弛，漸 不如前，宜依獻議所請，分付本道監司及南北兵 使，親自點察，亟汰老孱，更募精壯，以充其舊額，而 所騎之駑弱者，亦令斥去，以爲隨時徵用之地，西 關則監兵營所屬騎兵，其數累千，而所騎亦是自 備，鮮有可以馳突者，此則似難爲恃，亦爲分付本 道監兵使，一依親騎衛節目，道內材勇之士，別爲抄選，時行練習，以待應卒，而其額則似當以六七 百爲限，使之量察事勢而行之，舉行形止，爲先 啓聞，海西有御營廳別馬隊，禁衛營別驍衛，各八 百餘名軍兵，則頗皆壯實，技藝亦善，而所騎之馬，本甚罷駑，此須有別樣善處而後，可以得力，令本 軍門與監兵營，通議商確，或因舊加選，專以精健 爲務，俾爲受敵處徵發之用，親騎衛之制，每年試 才優等者，必加調敘，蓋爲聳動之地，而近來遠外 武士缺望鬱抑，有非設立本意，今後則北道親騎 衛與關西新設後，取其優等，另加調用事，宜依當 初節目，一體施行，且念戰馬本甚罕少，外方軍士，雖自盡力備立，

而率多不堪馳驅，此事最甚難處，若以諸牧場馬分給，以備戰騎，事甚便好，而場馬之數，恐難遍給，然念一時分給，不當仍爲後例，事係緊切，不當有所靳固，令司僕寺稟處宜當，敢啓，答曰，依啓，着令三道及本軍門，劃卽舉行事，命下矣，今此親騎衛所騎之馬，係是臨陣禦敵之用，若非壯健善於馳突者，莫可以各道牧場馬見存之數，計其四禾以上，不過二千七百餘匹，而近來馬種，舉皆駑劣，雖以濟州言之，歲貢數百匹之中，可合戰馬者，亦且無幾，分給軍兵之際，每患苟簡，故禁軍及都監馬兵所騎，除其自備之外，率多體少，所見埋沒，至於他牧場，尤有甚焉，其中蔚山·江華·**南陽**·鐵山等牧場之馬最勝，而其數合以計之，未滿千匹，年年捉出分養，擇立邊馬，又爲分給輦下親兵，猶有不足之患，則兩西新設親騎衛數百千名所騎，實無波及之望，若不擇給壯健者，亦不足以馳突賊陣，反爲無實之歸，事涉難處，殊甚可慮，敢此略陳形勢之如許，而姑待該道抄選一款，舉行啓聞後，更爲商量稟處之意，敢啓，答曰，知道。  
<비변사등록 60책, 숙종 36년 1710년 12월 15일(음)>

### 정치/군사

#### 총융사 최진해가 극심한 흉작 때문에 남양의 輪操를 정지를 청하다

또 아뢰기를, “이는 총융사(摠戎使) 최진해(崔鎭海)의 장계입니다. 본영의 금년 봄 윤조(輪操)는 **남양(南陽)**에서 할 차례입니다. 예에 의해 거행하도록 묘당에서 품처하기를 청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제신(諸臣) 가운데에서 아뢰라.” 하였다. 좌참찬 홍봉한이 아뢰기를, “금년 본영의 윤조가 장단(長湍)에서 할 차례라면 장단은 조금 풍년이 들어 폐지해서는 안 되지만 들으면 **남양**에서 할 차례라고 합니다. **남양**의 흉작은 우심(尤甚)에 들었으니 이 점이 매우 염려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정지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又所啓，此摠戎使崔鎭海狀啓也，本營今春 輪操，**南陽**當次，依例舉行事，請令廟堂稟處矣，上曰，諸臣中奏之，左參贊洪鳳漢曰，今年本營輪操，若當次於長湍，則湍是稍豐，不可廢矣，而聞是**南陽**當次云，**南陽**失稔，入於尤甚，是甚可慮矣，上曰，停止可也。

<비변사등록 140책, 영조 37년 1761년 02월02일(음)>

## 2. 경제(經濟)

### (1) 재정

#### 경제/재정

**摠戎使 軍陣에 보낼 江都의 쌀과 콩을 沿海의 경기 각 읍에 나누어 주길 청하다**

아뢰기를, "강도(江都)의 미곡 5백 2석과 콩 70석을 충용사 군병의 군량으로 쓰기 위해 벌써 배에 실어 지금 수원(水原)과 진위(振威) 중간에 정박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척이 미처 정박하기 전에 군병을 이미 해산시켰으므로 도로 신고 가야 할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전에 본부에서 미곡 4·5천 석을 연해의 경기 각 읍에 나누어 주어 굶주린 백성을 구제할 뜻을 벌써 탑전(榻前)에서 아뢰어 결정하였습니다. 이 쌀과 콩을 우선 수원·남양(南陽)·진위 등의 읍에 나누어 주는 것이 편리할 것 같으니 경기감사로 하여금 별도로 차사원(差使員)을 정해 수량을 감독하여 받은 다음 제때에 나누어 주도록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啓曰, 江都米五百二石·太七十石, 以摠戎軍兵糧餉, 已爲載船, 今番回泊於水原·振威之間矣, 船隻未及到泊之前, 軍兵已罷, 勢將還載以去, 前日本府米四五千石, 分給沿海畿邑, 以賑飢民之意, 曾已榻前稟定, 以此米太, 爲先分給於水原南陽振威等邑, 似爲便當, 令京畿監司別定差使員, 斗量監捧, 趁卽分給事行移何如, 答曰, 依啓.

<비변사등록 10책, 인조 24년 1646년 04월 07일(음)>

#### 경제/재정

**불시에 나온 배·감에 관한 淸差의 요구대로 배와 감을 마련하는 일을 아뢰다**

아뢰기를, "지금 의주부윤 및 평안감사의 장계를 보니, 배·감에 관한 청차(淸差:청에서 차출해 보낸 사람)가 불의에 나왔습니다. 배는 본도 및 황해도에서 구해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뜻을 역시 황해감사에게 통고하여 7, 8백 개를 수합해 20일 안으로 서둘러 평안감영에 수송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홍시는 양서에 없는 물건이므로, 전부터 남양(南陽)·강화(江華) 및 홍청도 부근 등의 고을에 배정하여 수송하게 하였습니다. 지금은 이달 15일이 기한이니, 비록 귀신이 운송한다 하더라도 제때에 도착할 수는 없습니다. 홍시 2천개를 호조에서 값을 주고 시중에서 수집하여 서둘러 들여보내게 하고, 또 회자(回咨)를 승문원으로 하여금 짓게 하여 홍시와 일시에 부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아뢴대로 하라 배는 우선 굶어모아 구하는 대로 봉성(鳳城)으로 들여보내어, 부근의 여러 고을에서 수합하느라 정신없이 움직인다는 기색을 보여야 한다. 홍시 역시 뒤따라 서둘러 들여보내어, 멀리에서 마련하기가 쉽지 않음을 보이는 것이 옳다. 또 회자에는 배와 감의 산지가 원근인 달라 함께 들여보내지 못해 고민이 된다는 뜻도 언급하는 것이 좋다."하였다.

啓曰, 今見義州府尹及平安監司狀啓, 則梨·柿·淸差不意出來, 生梨則本道及黃海道可以辦出, 以此意亦爲行會黃海監司處, 收合七·八百箇, 須及二十日內急速輸送平安監營, 而紅柿則兩西所無之物, 自前分定南陽·江華及洪淸附近等邑, 使之輸送矣, 今則本月十五日之限, 雖神運鬼輸, 必未及期, 紅柿二千箇, 使戶曹給價收取市中, 急急入送, 且回咨令承文院撰出, 紅柿一時付送何如, 答曰, 依啓, 生梨則爲先拮据, 隨所得入送鳳城, 以示, 收合近境, 遑遑動念之色, 紅柿則亦爲追後急速入送, 以示遠辦未易之意可也, 回咨中梨柿所產, 遠近不同, 以致參差入送,

惶悶之意亦及可也.

<비변사등록 14책, 효종 1년 1650년 11월 13일(음)>

**경제/재정**

**統營의 벼 3만 석을 각처에 나누어 들 곳을 아뢰다**

아뢰기를, "이번 12월 15일 인견 때 호조판서 이시방(李時昉)이 아뢰기를 '통영(統營)의 곡물이 이제 마땅히 올라 올 것이니, 비변사로 하여금 나누어 보낼 곳을 지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께서 '묘당으로 하여금 짐작해 나누어 두는 일을 속히 거행하게 하라'라고 전교하셨습니다. 통영의 벼 3만 석을 경기·충청 두 도의 연해 각 읍에 나누어 들 숫자를 별단에 써 들일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당하였다.

비변사의 통영 벼 3만 석을 각처에 나누어 들 별단(別單)

경기(京畿)

수원(水原) 벼 2천 석

남양(南陽) 벼 1천 5백 석

부평(富平) 벼 1천 석

안산(安山) 벼 5백 석

풍덕(豐德) 벼 5백 석

김포(金浦) 벼 5백 석

통진(通津) 벼 1천 5백 석

교하(交河) 벼 5백 석

영종(永宗) 벼 2천석. 힘을 합쳐 개색(改色)을 담당함,

이상 1만 석임.

충청도(忠淸道)

홍주(洪州) 벼 1천 석

서천(舒川) 벼 5천 석

임천(林川) 벼 5백 석

면천(沔川) 벼 1천 석

남포(藍浦) 벼 7백 석

덕산(德山) 벼 1천 석

결성(結城) 벼 1천 석

해미(海美) 벼 5백 석

아산(牙山) 벼 1천 3백 석

보령(保寧) 벼 1천 석

당진(唐津) 벼 5천 석

안흥진(安興鎭) 1만 석. 서산(瑞山)·태안(泰安)과 힘을 합쳐 개색(改色)을 담당함.

이상 2 만석 이다.

啓曰, 今十二月十五日引見時, 戶曹判書李時昉所啓, 統營穀物, 今當上來, 令備邊司, 指押分送之處何如, 上曰, 令廟堂, 斟酌分置事, 速爲舉行事傳數矣, 統營租三萬石, 京畿·忠淸兩道沿海各邑分置之數, 別單書入之意, 敢啓, 答曰, 知道,

備邊司, 統營租三萬石, 分置各處別單,

京畿,

水原租二千石,  
 南陽租一千五百石,  
 富平租一千石,  
 安山租五百石,  
 豐德租五百石,  
 金浦租五百石,  
 通津租一千五百石,  
 交河租五百石,  
 永宗租二千石同力改色次,  
     以上一萬石,  
 忠清道  
 洪州租一千石,  
 舒川租五百石,  
 林川租五百石,  
 沔川租一千石,  
 藍浦租七百石,  
 德山租一千石,  
 結城租一千石,  
 海美租五百石,  
 牙山租一千三百石,  
 保寧租一千石,  
 恩津租五百石,  
 唐津租一千石,  
 安與鎭一萬石, 瑞山·泰安同力改色次,  
     以上二萬石

<비변사등록 17책, 효종 5년 1654년 12월 23일(음)>

### 경제/재정

#### 領議政 金壽恒 등이 환자곡을 허위로 기록한 폐단의 원인과 경계시킬 일 등을 청하다

이달 초3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영의정 김수항(金壽恒)이 아뢰기를, “근래에 수령이 환상곡을 허위로 기록한 폐단은 전적으로 수령이 변변치 못한 데에서 연유할 것만은 아닙니다. 각 고을에서 이미 받은 실제 수량을 감영에 보고하더라도 감영에서는 그 문서를 마감짓지 못하게 하고 반드시 전량을 다 받은 것으로 억록(抑勒)하여 마감하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폐단이 있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각 도에 경계시키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고, 우의정 남구만(南九萬)이 아뢰기를, "허위로 기록하게 된 근본 원인은 대체로 이에서 연유한 것이니 만약 수량을 책정하여 분부하지 않고 그저 수량대로 다 받지 말라고만 한다면 빙거(憑據)할 데가 없어 반드시 준행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혹은 절반, 혹은 수를 정하여 한결같이 원곡(元穀)을 받는 규례대로 시행하라고 각 도의 감·병·통·수영(監兵統水營)과 각 고을에 일일이 알려 각기 조례를 정하여 시행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분부하고 경계시키는 것이 좋겠다."하였다.

김수항이 또 아뢰기를 "대사헌 이민서(李敏敍)의 상소를 비국에 계하하였으나 이 일은 문자로 범연히 회계할 일이 아니기에 감히 이렇게 아뢰입니다. 상소에서 논한 근처 여러 섬과 연안(延安) 배천(白川)에 진보를 설치하는 일은 소신(小臣)이 강도(江都)의 지세(地勢)를 직접 보지 않아서 과연 어떠한지는 알 수 없으나 일찍이 유수를 지내고 지형을 익히 아는 사람도 합당하다고 말하였습니다. 다만 여러 섬(島)의 지형이 비록 좋더라도 전부터 신설한 진보는 설치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설치한 뒤에 재력이 미치지 못하면 유지하기가 가장 어려웠던 것이니 반드시 미리 유지할 도리를 강구해 두어야만 영구한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매음도(煤音島)는 바로 사복사에서 말을 기르는 장소로서 말이 꽤 많은데, 이와 같은 데에 진보를 설치한다면 목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지만 지형이 과연 진보 설치하기에 알맞다면 어찌 이에 구애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새로운 유수 윤계(尹墀)가 이제 겨우 부임하였으니 시험삼아 여러 섬의 지형을 직접 살펴보고 진보 설치의 편부(便否)를 상고한 뒤에 서울로 올라와 면전에서 여쭙게 하고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상소에서 논한 바는 참으로 좋으나 전부터 설치할 수 없었던 것은 사세가 타당하지 못한 데서 연유하였던 것이다. 시험삼아 새 유수로 하여금 직접 살펴보고 아뢰게 하는 것이 좋겠다."하였다.

좌참찬 윤지완(尹趾完)이 아뢰기를 "장봉(長峰)과 위문(位文) 두 섬은 지형으로 논하자면 진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마는 다만 염려되는 것은 군병을 적게 배치하면 힘이 될 수 없고 군병을 많이 두려면 형편이 닿지 않는 점입니다. 차라리 봉수(烽燧)를 설치하여 변경(邊警)을 알리는 장소로 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신의 천박한 생각으로는 강도의 급선무는 진강(鎭江)의 목장을 혁파하고 둔전을 만들어 백성을 모집하고 단속하는 일보다 더 급하고 유익한 일은 없다고 여겨집니다. 목장 안의 경작할 만한 곳에는 4~5백호는 수용할 수 있다 합니다. 4~5백호면 남정(男丁)이 적어도 1천여 명은 넘을 것인데 1천여 명의 자제들이 모두 부형을 보호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족히 수만의 객병(客兵)을 당할 것입니다. 전후의 수신(守臣)이 일찍이 이 일로 논청(論請)하였으나 사복사에서 그때마다 효종조에 목장을 설치한 것이 방색(防塞)에 뜻이 있었던 것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하여서 지금까지 시행되지 못한 것이니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하였고, 청성부원군 김석주가 아뢰기를, "전후하여 강도를 맡은 사람들이 매양 진강의 목장을 혁파하여 둔전을 만들고 백성을 모집하여 경작하게 할 것을 청하였으나 말의 품종이 가장 좋고 또 기내(畿內)에 가까이 있어 때때로 점검하기가 편리하였던 까닭에 효종조 때부터 혁파하지 못하도록 각별히 경계시켜 묘당에서도 윤희를 청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근래에는 이 목장의 말의 품종이 전보다 많이 떨어져 신이 사복시를 맡고 있을 때에 옛 말들을 **남양(南陽)의 대부도(大部島)**로 옮기고 특별히 제주(濟州)의 야생마 자웅(雌雄)과 달마(澁馬) 등의 품종을 들여다가 기르게 하고 감목관으로 하여금 각별히 보살피게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6,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나아진 보람이 있음은 듣지 못하였으니 이 점이 한탄스럽습니다. 지금 만일 가까운 다른 곳에서 좋은 말을 길러내어 진강의 품종을 대신하게 한다면 조정에서도 어찌 시종 고집스럽게 백성을 모집하여 경작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진강목장의 말의 품종이 다른 목장보다 특이하였기 때문에 효종조에 각별히 경계시켰던 것이고, 또 뜻한 바도 있었던 것이다. 지금에 와서 갑자기 파하기는 어려운 일이나 이익과 손해를 비교하여 꼭 진보를 설치해야 한다면 목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도 무방할 듯하다. 사복사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하였다.

우참찬 윤지완(尹趾完)이 아뢰기를 "해서(海西)의 한정(閑丁)을 조사해 낸 뒤에 청성부원군

김석주가 신에게 한정(閑丁)을 얻어 마병(馬兵)의 정원을 늘릴 것을 권하기에 신이 답전에서 1천명만 얻기를 청하였더니 그때의 대신이 정리를 한 뒤에 직절하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아뢰는 바 있었습니다. 지금은 금위영에 마병을 신설하는 일이 있으나 군역을 많이 늘리기로 감히 바라지 못하는 일입니다. 어영청의 마병 중에는 이미 출신(出身)이 있으나 그대로 향오(行伍)에 편입되어 있는 자가 있는데, 비단 그들만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마병들도 모두가 불평스런 심정을 갖고 있으니 이들을 군관으로 올리고 한정으로 보충하고 싶습니다. 출신(出身)의 숫자는 25인에 불과하나 출신의 마병은 본래 보(保)를 주는 규례가 없으므로 당초에 주었던 보인(保人)을 새로 들어와서 보가 없는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하겠으나 지금 만일 한정으로 대신 충정하여 준다면 호보(戶保)도 아울러 1백 50인은 있어야 하겠으니 이 숫자를 얻고자 하여 감히 이렇게 아뢰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국에서 훈련도감과 금위영에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 좋겠다."하였다.

今八月初三日,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金所啓, 近來守令還上虛錄之弊, 不專由於守令之無狀, 各邑雖以所捧實數, 報監營而自監營, 不許磨勘其文書, 必以准捧勒令磨勘, 致有此弊, 今後切勿如是之意, 申飭諸道可矣, 右議政南曰, 虛錄根本, 蓋由於此, 然若無定數分付之事, 而只令勿爲准捧, 則事無依據, 亦難必其遵行, 或折半或定分數, 一從元穀收捧之例施行事, 諸道監兵統水營及各邑一一知委, 使之定式施行可矣, 上曰, 以此分付申飭可也.

又所啓大司憲李敏敍上疏啓下備局, 而此事不可以文字, 泛然回啓, 故敢此陳達矣, 疏中所論近處諸島及延白設鎮等事, 小臣未見江都形勢, 雖未知其如何, 而曾經留守, 慣知形勢之人, 亦以爲合宜矣, 但諸島形勢雖好, 從前新設之鎮, 非設置之難, 既設之後, 物力不逮, 接濟最難, 必預先講接濟之道然後, 可爲永久之計矣, **煤音島**則乃是太僕牧馬之所, 而馬匹頗多, 如是設鎮, 則牧馬之場, 亦當移定於他處, 形勢果合設鎮, 則亦豈必以此爲拘乎, 新留守尹堦, 今纔到任, 試令親審諸島形勢, 參量設鎮便否後, 上來面稟商議定奪似當矣, 上曰, 疏中所論固好, 而但自前不得施行, 蓋由於事勢之難便矣, 試令新留守親審面稟可也, 左參贊尹趾完曰, 長峯·位文兩島, 則論其形勢, 不可不設鎮, 而但念小置兵則不足得力, 多置兵則勢所不能, 寧設烽燧, 以爲報警之所致爲便好矣, 臣之淺慮, 江都急務, 莫先於罷鎮江牧場, 作爲屯田, 募民團束之爲大益也, 場內可耕之處, 可容四五百戶云, 四五百戶男丁, 少不下千餘名, 以千餘子弟, 皆有衛父兄之心, 則足以當數萬客兵矣, 前後守臣, 亦嘗以此論請, 而太僕輒以孝宗朝設場之有意防塞, 而到今仍寢不行, 誠爲可惜矣, 清城府院君金曰, 前後受任江都之人, 每以革罷鎮江牧場, 作爲屯田, 募民許耕爲請, 而以其馬種最好, 且近在畿內, 時時檢察爲便, 故自孝宗朝, 各別申飭, 俾勿革罷而廟堂, 亦不敢請許矣, 年來此場馬種, 比前頗衰, 臣於待罪太僕時, 曾於**南陽大部島**中, 徙其舊馬而別捉濟州山馬雌雄及獐馬等種而牧之, 使其監牧, 各別看養矣, 今至六七年, 未聞有成就之效, 此可歎也, 今若於傍近他場, 養得好馬, 以代鎮江之種, 則朝家亦豈終始堅執, 不許募民之耕乎, 上曰, 鎮江牧場馬種, 異於他場, 故孝宗朝各別申飭, 意有所在, 到今猝罷, 雖涉重難, 而較其利害, 不可不設鎮, 則牧場移於他處, 似爲便好, 與司僕商議稟定可也, 右參贊尹趾完所啓, 海西閑丁查出之後, 清城府院君金, 勸臣請得查丁, 而以增馬兵之額, 臣於榻前請得千餘人, 其時大臣以整頓後, 量宜劃給之意陳達矣, 今則有禁衛營馬兵新設之舉, 多得增額, 固不敢望, 而本廳馬兵中有已出身, 仍存行伍者, 不但渠輩稱冤, 馬兵皆有不平之意, 欲以此類陞爲軍官, 以閑丁代定出身之數, 不過二十五人, 而出身馬兵, 則元無給保之規, 故當初所給之保人, 或移給新入無保之人, 今若以閑丁代定, 則戶保竝當爲一百五十人, 願得此數敢此仰達矣, 上曰, 自備局與訓局禁衛營一體劃給可也.

<비변사등록 38책, 숙종 10년 1684년 08월 06일(음)>

## 경제/재정

右議政 閔黯 등이 水原과 南陽의 곡물을 永宗鎭 役員의 급료로 劃給하는 문제 등을 청하다  
이번 6월 초3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우의정 민암(閔黯)이 아뢰기를, "영종진(永宗鎭)의 부근 고을에서 방출곡 2천 석을 인천부(仁川府)에 옮겨 주어 그 모곡(耗穀)을 취해 역원들의 급료로 주도록 할 것을 일찍이 결정하였습니다. 문서를 갖다 상고하니 각 고을 환상곡의 수량이 얼마 안되고 또 인천에 방출된 곡물이 너무 많아 앞으로 민폐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러가 영종진의 급료로서 1년에 꼭 지급될 수량을 계산해보니 미태조(米太租)를 합하여 80여 석이었습니다. 부근의 고을 중 수원(水原)과 남양(南陽)이 조금 넉넉하니 이 수량대로 해마다 획급하게 하고 영종진에서 배를 보내 운반해 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훈련대장 이의징(李義徵)이 아뢰기를, "도감에서 군기를 만드는 장인들이 장기간 군문에 있으므로, 그들을 공제하는 반찬거리의 새우젓 20동이를 교동현(喬桐縣)에서 세를 거두어 상납해 왔는데 그 유래가 오래되었습니다. 요전에 병조판서 민종도(閔宗道)가 탐전에 품달한 일로 인해 이를 영구히 혁파시켰으므로 공제하던 반찬거리가 달리 나올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선에서 세로 거두는 새우젓을 얻어 보충해 쓰려고 하였으나 지금은 소속된 곳도 없고 선척도 아주 없으므로, 현재 역을 서는 장인들에게 식량만을 지급하고 반찬은 지급하지 못하니 참으로 보살피 주는 도리가 못됩니다. 강화에 성을 쌓을 때 삼남에 배정하여 돌을 운반할 배 30척을 새로 만들어 온 이래로 세 군문에 10척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지금 성 쌓는 역사가 끝났으니 마땅히 요전에 결정된 대로 모두 강화에 옮겨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강화에는 그전에 준 선척의 수량이 많으니 30척의 배를 다 주지 않더라도 부족할 근심이 없습니다. 훈련도감에 준 배 10척 내에 4척은 그대로 도감에 두게 하고, 받기를 원하는 어부에게 직접 주어 그 선세의 새우젓을 거두어 장인들에게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좌의정 목래선(睦來善)이 아뢰기를, "이 선척을 강화에 이송할 것은 신이 결정했던 것입니다. 훈련대장이 4척의 배를 얻으려는 것은 장인들을 공제할 소용을 위한 것입니다. 이후로는 각 군문에서 잇따라 얻으려는 요청을 하지 못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4척은 훈련원에 소속시키되 각 군문에서 얻으려는 요청을 하지 못하도록 분부하라." 하였다.

今六月初三日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右議政閔所啓，永宗鎭附近處，糶穀二千石，移給仁川府，取其耗穀，以爲員役放料事，曾已定奪矣，取考文書，則各邑還穀其數零星，且仁川糶穀太多，亦將爲民弊，故退計永宗料米，一年應下之數，則米太租竝八十餘石，而附近官中，水原·南陽稍優，依此石數，逐年劃給，使本鎭送船運去，事涉便當矣，上曰，依爲之，訓練大將李義徵所啓，都監軍器造成工匠等長立軍門，其供饋饌物所用白蝦二十甕，自喬桐縣，收稅上納，其來已允矣，頃因兵曹判書閔宗道，陳達榻前，永爲革罷，故所饋之饌，他無出處，欲得漁船收稅蝦，以爲補用之地，而此時無屬處船隻絕無，卽今立役匠人，只給其糧，未給其饌，誠非撫恤之道，江都築城時，卜定三南運石船三十隻，新造以來，三軍門各十隻分授矣，今則城役已畢，所當依前日定奪，盡數移給江都，而江都則曾前所授船隻，其數既多，三十隻雖不盡得，亦無不足之慮，都監所授船十隻內四隻仍存，都監逢授漁人之願受者，取其稅蝦，以給工匠何如，左議政陸曰，此船隻移送江都事，臣曾已定奪矣，訓將之欲得四隻者，蓋爲饋餉將士之需，而此後則各軍門，勿爲續續請得事，分付似好矣，上曰，四隻則許屬訓局，各軍門勿爲請得事分付可也。

<비변사등록 46책, 숙종 18년 1692년 06월 04일(음)>

### 경제/재정

#### 諸宮家와 각 衙門에서 折受한 곳 중 存置할 곳과 혁파할 곳을 아뢰다

아뢰기를, "여러 궁가(宮家)와 각 아문(衙門)에서 절수(折受)한 곳으로 백성의 폐해가 되고 있는 곳을 여러 도(道)로 하여금 계문(啓聞)하게 하여 혁파하는 일로 이미 전교가 있었으므로 각도의 장계가 도착되기를 기다려 묘당의 여러 신하들과 이제야 비로소 검토 확정하였습니다. 무진년(숙종 14년(1688)) 이후에 절수한 곳은 모조리 혁파한 뒤에 호조에서 돈을 주어 전답(田畓)을 사게 하고 이 뒤로는 영원히 절수하지 않기로 올해년(숙종 21년(1695))에 탐전에서 결정한 바 있었으나 지금 각 도의 장계와 어사(御史)의 서계(書啓)를 보니 무진년 이후에 새로 절수한 곳이 술하게 많았는데 이는 여러 궁가의 도장(導掌)의 무리가 탐전에서 결정한 본의를 알지 못하고 잘못된 전례를 답습한 데서 말미암은 일이라 하겠으나 조정 명령의 행해지지 않음이 이와 같으니 참으로 걱정될 일입니다. 민폐로 말하자면 신구(新舊)의 절수를 막론하고 모두가 민폐가 있다고 도(道)마다 말하고 있으나 기왕 모조리 혁파할 수 없는 바에는 그 개중에서 어떤 것은 파하고 어떤 것은 파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사세가 무진년으로 한계를 삼아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신궁(新宮)이 무진년 이후에 많이 생기고 또 이미 연속 절수하여 더러는 10년이 되는 것도 있으므로 이 역시 다 혁파할 수는 없으니 참작하는 도리가 있어야 마땅할 듯합니다. 그 중에는 혹은 매입(買入)한 것도 있고 혹은 면세(免稅)로 절수한 것도 있으며 혹은 종전에 다른 궁가에서 절수한 것을 신궁에 넘겨준 것도 있으니 이는 모두 그대로 두어야 하겠습니까. 새로 설치한 궁가에는 염분(鹽盆) 세 자리[坐]와 시장(柴場) 한 곳은 정급(定給)하라고 일찍이 결정을 내리신 일이 있었으니 이것들도 혁파하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장(漁場)이라 일컫는 데에 이르러서는 연해의 뭇 섬과 뭇 포구를 경계도 정하지 아니한 채 통틀어 절수하였다 칭하고 염한(鹽漢)·어인(漁人)·상선(商船) 등에게서 함부로 세금을 징수하는 일이 있어 외방의 가장 큰 폐단이 되어 있으니 이런 것은 참작하여 혁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각 도의 장계와 어사의 서계 속에서 조열(條列)한 것 중에서 존치(存置)할 곳과 혁파할 곳을 일일이 후록(後錄)하여 예제(睿裁)를 청하는 바입니다. 대체로 절수가 외방에 폐해를 끼치는 것은 오로지 중간에서 차인(差人)이 작란을 쳐서 남잡하게 된 데서 연유한 것이므로 지금 과감하게 변통할 때를 당하여 불가불 엄히 과조(科條)를 세워 후일을 징계해야 되겠습니까. 면세궁둔(免稅宮屯)은 매 부(負)마다 쌀 2승(升) 3홉씩을 걷고 영작궁둔(永作宮屯)은 매 부마다 벼[租] 2두(斗)씩을 걷되 인정(人情) 및 잡비와 선가(船價)·마가(馬價) 등도 모두 그 속에 포함시키기로 일찍이 순무사(巡撫使)의 서계로 인하여 명백하게 결정을 지은 바 있으니 지금은 마땅히 그 내용을 다시 밝혀 한결같이 그 사목(事目)에 의존하여 받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차인의 무리가 혹 선가·마가·잡비 등의 명목으로 사목의 규정 외에 더 받거나 혹 따로 큰 말[斗]과 되[升]를 만들어 부당하게 받거나 혹 많은 사람과 말을 거느리고 가서 그들의 접대를 둔민(屯民)들에게 강요하거나 하다가 적발되면 본 고을에서는 즉시 감영에 보고하고 감영에서는 우선 잡아 가둔 뒤에 계문(啓聞)하여 과죄하기로 외방에 주지시켜야 하겠습니까. 어전(漁箭)에도 반드시 세액을 확정하여 받도록 하여야만 함부로 받는 폐단이 없을 것이나 어전의 크고 작음이 일정하지 않고 지역의 호부(好否)도 다르니 일정한 조례로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각기 그 고을 수령과 궁가의 차인이 함께 검토하여 1년에 받아야 할 액수를 책정하여 본사에 보고하고 시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 염분(鹽盆)은 외방에

서 수세하는 규례가 매 자리마다 1년에 소금 10석씩을 받는 것이 자래로 통용되어 온 준례이므로 그대로 규정을 정하되 정량 이외에 더 받는 자는 즉시 감영에 보고하여 잡아 가두고 계문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시장(柴場)은 주위 수십 리(里)의 땅을 한번 절수한 뒤에는 그 지역 내의 민호(民戶)나 전결(田結)까지 모두 궁가에 소속되고 본 읍에서는 손도 쓸 수 없으니 이 점이 폐단 중에서도 큰 폐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뒤로는 지역 내의 민호 중에서 20호에 한하여 산지기라 칭호하고 궁가에 소속시켜 수목을 보호하게 하고 여타의 주민은 일반민과 같이 본 고을에 응역(應役)하게 하되 연호(烟戶)의 잡역만은 침책하지 말고 나무를 베고 솥글을 문을 때에 부역하게 하여야 하겠으며, 지역 내 평지에 현재 경작하고 있는 전답은 전부 본 고을에 소속시키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이대로 조례를 정하면 종전의 적폐를 없앨 수 있을 것이니 각 군문과 각 아문에 모두 이대로 준행하라는 뜻으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후록(後錄)

경기

(…) **남양(南陽)**

와돌(臥鬲) 어장(漁場) 한 곳과 제부적(諸夫赤) 어장 한 곳, 중복포(中伏浦) 어장 한 곳, 소탕(所湯) 어장 한 곳 대석부(大石部)의 입포(立浦) 어장 한 곳, 둔지곶(屯知串) 어장 한 곳, 영흥(靈興)의 갑죽(甲竹) 어장 한 곳 등은 명안공주방(明安公主房)에서 매득(買得)하였고,

홀리곶(訖里串) 어장 한 곳과 부황(夫黃) 어장 한 곳은 인평대군방(麟坪大君房)에서 절수하였으며, 대부(大部) 어장 한 곳은 명선공주방(明善公主房)에서 절수하였고, 영전(營田) 어장 한 곳은 파평군방(坡平君房)에서 절수하였으며,

결오리(結五里) 어장 한 곳은 승선군방(崇善君房)에서 절수하였고, 우음도(弓音島) 어장 한 곳과 결오리 어장 한 곳, 사종(沙宗) 어장 한 곳, 판포(板浦) 어장 한 곳, 방하포(方下浦) 어장 한 곳, 무음도(無音島) 어장 한 곳 등은 수진궁(壽進宮)에서 절수하였다.

이상 각처의 어장은 혹은 절수한 지 오래인 것도 있고 혹은 값을 주고 산 것도 있어 다 혁파하기는 어려우며, 인평대군방의 어장 두 곳과 승선군방의 어장 한 곳은 두 궁가(宮家)에 물으니 **남양** 땅에는 원래 어장이 없었다고 하였으므로 모두 혁파하게 하고 파평군방은 대수(代數)가 오래된 궁가이니 절수한 어장은 혁파하는 것이 마땅하다.

호조의 염분(鹽盆) 74좌 내수사의 염분 47좌 길성위방(吉城尉房)의 염분 12좌 숙안공주방(淑安公主房)의 염분 2좌 낙선군방(樂善君房)의 염분 6좌 인흥군방(仁興君房)의 염분 11좌 훈련도감의 염분 49좌 대부감목관(大部監牧官)의 염분 40좌 용동궁(龍洞宮)의 염분 17좌 화량진(花梁鎭)의 염분 18좌 사복시의 염분 6좌 능원대군방(綾原大君房) 염분 2좌 본궁(本宮)의 염분 11좌 세곶면(細串面)의 각 처에 소속된 10여 좌는 방금 수진궁(壽進宮)에서 절수하고자 한 바

이상 각처의 염분 중에서 호조와 본궁은 말할 것이 없겠고 내수사의 염분 47좌는 본사에 물어보니 본사에 소속된 염분은 4좌 뿐이라고 하였으니 나머지 43좌는 분명히 모록(冒錄)이므로 즉시 혁파하여 호조에 소속시키고, 길성위방은 대수가 오래된 궁가인만큼 염분 12좌는 자못 과람하다 하겠으니 절반을 혁파하게 하며, 낙선군방의 염분 6좌는 그 궁방에 물어보니 당초에 절수한 것이 1좌 뿐이라고 하였으니 5좌는 모록이므로 이 역시 즉각 혁파하며, 인흥군방의 염분 11좌도 역시 과람하다 하겠으니 그 중에서 5좌를 혁파하고, 용동궁의 염분 17좌는 본 궁방에 물어보니 당초에 절수한 것은 1좌 뿐이라고 하였으니, 16좌는 모록이므로

이 역시 혁파하며, 세곶면의 염분 10여 좌를 수진궁에서 절수하고자 한 곳은 그 궁에 물어 보니 절수할 경내에서 막을 치고 소금을 굽고 있었기에 그대로 그 궁에 소속시키기로 입계(入啓)하고 관문(關文)을 발송하였는데 막을 치고 소금을 굽는 곳이 비록 절수한 경내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소속이 있으니 빼앗아서 딴 곳에 주는 것은 부당하므로 소속이 있는 염분은 모두 본래대로 소속시키고 소속이 없이 영구히 목지 않을 염분만 그 궁에 소속시킴이 마땅하다.(…)

강희(康熙) 47년 12월 30일 우부승지 신 허윤(許琿)이 차지(次知)하여 아뢰니 모두를 그대로 시행하라 하였으나 품재(稟裁) 중에서 소안(所安) 횡간(橫看) 두 섬은 원래 민전(民田)이 아닌데 혼동하여 혁파하는 것은 자못 의의가 없다 하겠으니 그대로 두고 신설한 궁가(宮家)에 시장(柴場) 한 곳을 정해 주는 것은 일찍이 결정이 있었던 바 연령군방(延齡君房)의 시장은 낭천(狼川) 한 곳 뿐인데 이미 혁파하였으니 그 궁가로 하여금 달리 가합한 곳을 다시 망정(望定)하게 하라고 하였다.

啓曰, 諸宮各衙門折受處爲民害者, 使諸道啓聞革罷事, 既有傳教教是白乎等以, 待各道狀啓, 與廟堂諸臣, 今始商確勘定是白在果, 戊辰以後折受, 一併革罷後, 自戶曹給銀, 使之買得, 此後則永勿折受事, 乙亥年良中, 榻前定奪, 而今觀各道狀啓, 及御史書啓, 則戊辰以後新折受處, 其數夥然, 此由於該宮導掌輩, 不識定奪本意, 因循謬規之致, 而朝令之不行如此, 誠爲可慮, 以民弊言之, 則毋論新舊折受, 各道皆以民弊爲言, 而既不可盡罷, 則有難取舍於其間, 勢將以戊辰爲限, 而新宮, 多出於戊辰以後, 既已連次折受, 或至於十年之久, 亦難盡爲革罷, 似當有參酌之道, 其中或有買得者, 或有以免稅交出者, 或有曾前他宮折受, 而移給新宮者, 此則竝當仍存是白遣, 新設宮家鹽盆三坐·柴場一庫定給事, 曾有定奪, 此則亦不當革罷, 至於稱以漁場, 沿海諸島諸浦, 不定界限, 泛稱折受, 鹽漢漁人商船良中, 濫徵稅納, 最爲外方貽弊之端, 此則不可不參量革罷是白乎等以, 就各通狀啓及御史書啓中所條列者, 可存可罷, 一一後錄, 以取睿裁爲白齊, 大抵折受之貽弊外方, 專由於中間差人之橫拏濫傷, 今當大段變通之日, 不可不嚴立科條, 以懲日後是白置, 免稅宮屯, 每負收米二升三合, 永作宮屯之處, 則每負收租二斗, 人情雜費船馬價, 皆入其中事, 曾因巡撫使書啓, 明白定奪, 今宜更爲申明, 使之一遵事目收捧, 而差人輩或稱以船馬雜費事目外加捧是白去乃, 或別造大斗斛濫捧是白去乃, 或多率人馬, 責其支供於屯民是白如可, 有所現發, 則自本邑, 卽報巡營, 自巡營, 爲先捉囚後啓聞科罪事, 知委外方爲白乎旡, 漁箭設置, 必須酌定收稅之數, 然後可無濫傷之患, 而大小不同, 地形亦異, 難准以一定之式, 令各其該邑守令與宮差眼同, 商確酌定, 其一年應捧之數, 穀本司施行爲白乎旡, 鹽盆設置, 外方收稅之規, 每坐每年鹽十石收捧, 自是通行之例, 以此定式爲白乎矣, 定數外濫捧者, 卽報巡營, 以爲捉囚啓聞之地爲白乎旡, 柴場設置周回數十里之地, 稱以柴場, 一番折受之後, 則場內民戶田結, 皆屬於該宮, 使本邑不敢下手, 此爲弊端之大者, 今後則場內限二十戶, 稱以山直, 屬之該宮, 使之禁護樹木, 其餘場內居民段, 與凡民一體應役於本官, 而烟戶雜役岔, 使之勿侵, 以爲刈柴埋炭時赴役之地爲白乎旡, 場內平地, 時起田畝段, 盡屬本邑, 宜當, 以此定式則可除從來積弊是白去乎, 各軍門各衙門, 竝以依此遵行之意, 分付何如,

京畿(…) 臥丕漁場一庫, 諸夫赤漁場一庫, 中伏浦漁場一庫, 所湯漁場一庫, 大石部立浦漁場一庫, 屯知串漁場一庫, 靈興甲竹漁場一庫, 以上, 明安公主房買得,

訖里串漁場一庫, 夫黃漁場一庫, 以上, 麟坪大君房折受,

大部漁場一庫, 明善公主房折受,

營田漁場一庫, 坡乎君房折受,

結五里漁場一庫, 崇善君房折受,

巧音島漁場一庫，結五里漁場一庫，沙宋漁場一庫，板浦漁場一庫，方下浦漁場一庫，無音島漁場一庫，以上，壽進宮折受，

以上各處漁場段，或係久遠折受，或有給價買得者，有難盡爲革罷，而麟坪大君房漁場二庫，及崇善君房漁場一庫段，問於兩宮，則南陽地元無漁場是如爲白置，使之竝爲革罷爲白乎旃，坡平君房段，係是久遠宮家折受漁場，亦當革罷，

曹鹽盆七十四坐，內需司鹽盆四十七坐，吉城尉房鹽盆十二坐，淑安公主房鹽盆二坐，樂善君房鹽盆六坐，仁興君房鹽盆十一坐，訓練都監鹽盆四十九坐，大部監牧官鹽盆四十坐，龍洞宮鹽盆十七坐，花梁鎮鹽盆十八坐，司僕寺鹽盆六坐，綾原大君房鹽盆二坐，本宮鹽盆十一坐，細串面各處所屬十餘坐，自壽進宮方欲折受，

處鹽盆中，戶曹及本宮段，在所不論是白遣，內需司鹽盆四十七坐段，問於本司，則所屬鹽盆只是四坐云，其餘四十三坐段，明是冒錄，卽爲革罷，屬之戶曹，吉城尉房，係是久遠宮家，鹽盆十二坐，殊涉太濫，使之折半革罷，樂善君房鹽盆六坐段，問於該宮，則當初折受，只是一坐云，冒錄五坐，亦卽革罷，仁興君房鹽盆十一坐，亦似太濫，其中五坐段，革罷，龍洞宮鹽盆十七坐段，問於本宮，則當初折受，只是一坐云，冒錄十六坐，亦爲革罷，細串面鹽盆十餘坐，壽進宮將欲折受處段，問於該宮，則折受基內，設幕煮鹽，故仍屬該宮事，入啓行關是如爲白有在果，設幕煮鹽，雖在於折受基內，而既有屬處，則不當奪給，有屬處鹽盆段，皆令仍給本所，無屬處永起鹽盆盆，許屬該宮，宜當，(…)

康熙四十七年十二月三十日右副承旨臣許玠次知啓，竝依此施行，而稟裁中，所安·橫看兩島段，元非民田則混同革罷，殊無意義，仍存爲旃，新設宮家柴場一庫定給，曾有定奪是在如中，延齡君房柴場，只有狼川一處，而既已革罷，一體令該宮，他可合處，更爲望定爲良如教

<비변사등록 59책, 숙종 34년 1708년 12월 30일(음)>

## 경제/재정

### 收租 結數가 감축된 해당 監司와 守丞의 처리 등을 廟堂에서 稟處하게 할 것을 청하다

호조에서 진달하기를, "병신년의 각 도(道) 수조안(收租案)을 계산하여 고찰해 보니 경기의 경우 남양부(南陽府)의 7, 8, 9분재(分災) 중에는 원수(元數) 속의 실결(實結)이 122결 42부 9속이 들어있고 본부(本府)의 원수조에서 세를 낸 것은 겨우 17결 25부 6속이니 감축된 것이 자그마치 122결 42부 9속이고, 양천현(陽川縣)은 분재 중에 실결이 17결 94부 6속이 들어있고 본현의 원수조에서 세를 낸 것은 겨우 14결 27부 1속이니 감축된 것이 역시 17결 94부 6속이나 되며, 안성(安城)에 있어서는 수조, 실답이 566결 14부 9속이나 쌀을 내는 것이 150석 14두 5승 9홉 6작이 되어야 하는데 수조안에는 105석 14두 5승 9홉을 낸 것으로 되었으니 감량된 것이 45석인데 이는 168결 72부에서 거둔 조세입니다. 강원도 수조 결수가 감축된 것은 양양(襄陽)이 66결 59부 7속이고, 원주(原州)가 55결 62부 6속이며, 고성(高城)이 25결 36부 2속이고, 울진(蔚珍)이 19결 21부 7속이며, 영월(寧越)이 7결 23부 1속이고, 평해(平海)가 2결 59부 8속이며, 흡곡(歙谷)이 1결 43부 2속이었습니다. 막중한 전정(田政)을 상세히 검찰하지 못하여 이렇듯 수조 결수를 감손하여 기록한 일이 있으니 지극히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당해 감사와 각 읍 수령은 불찰의 잘못을 면할 수 없으므로 마땅히 경책하는 도리가 있어야 하겠고, 감축된 결에서는 도로 조세를 내야 마땅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방 대흥년을 겪은 터에 지금에 와서 추가로 거두는 것은 민간에서 소요로울 폐단이 있을 것 같고, 기왕 심사한 뒤에 그만두고 받지 않은 것도 법례에 위반되는 일이니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그렇게 하라고 하령하였다.

戶曹達曰, 丙申年, 各道收租案, 自本曹打算考驗, 則京畿南陽府七八九分災元數中, 實結爲一百二十二結四十二負九束, 而本府元收租出稅, 只是十七結二十五負六束, 則其所減縮, 多至一百二十二結四十二負九束, 陽川縣分災中, 實結爲十七結九十四負六束, 而本縣元收租出稅, 只是十四結二十七負一束, 則其所減縮, 亦至十七結九十四負六束, 至於安城則收租實畝, 五百六十六結十四負九束, 出米當爲一百五十石十四斗五升九合六夕, 而以一百五十石十四斗五升九合出稅於收租案其所減數, 四十五石, 此是一百六十八結七十二負所收之稅也, 江原道收租結數所減, 襄陽六十六結五十九負七束, 原州五十五結六十二負六束, 高城二十五三十六負二束, 蔚珍十九結二十一負七束, 寧越七結二十三負一束, 平海二結五十九負八束, 歙若一結四十三負二束矣, 莫重田政, 不能詳檢, 有此收租結數減錄之舉, 事極可訝, 當該監司及各邑守令, 難免不察之失, 宜有警責之道, 減縮結, 所當還爲出稅, 而纔經大殺, 到今還徵, 似有民間騷擾之弊, 既查之後, 置而不微, 亦違法例, 令廟堂, 稟處何如, 令曰, 依.

<비변사등록 70책, 숙종 43년 1717년 12월 11일(음) >

### 경제/재정

右議政 趙泰采 등이 남양부 등의 失結숫자와 처리에 대해 논의하다.

이 달 19일 약방에서 입진하여 우의정 조태채(趙泰采)가 함께 입시하였을 때에 우의정 조태채가 아뢰기를, (...) 또 아뢰기를, "호조에서 병신년의 각 도 수조안(收租案)을 계사하고 고찰해 보니 경기 남양부(南陽府)의 분재(分災) 중에는 실결이 감축된 숫자가 122결 42부 9속이나 되고, 양천현(陽川縣)의 분재 중에는 실결이 감축된 숫자가 17결 94부 6속이나 되며 안성(安城)은 실답(實畝)의 출세(出稅) 감축이 쌀로 45석에 이르고 있으며, 강원도 각 읍의 수조 결수의 감축은 양양(襄陽)이 66결 59부 7속이고, 원주(原州)가 55결 62부 6속이며, 고성(高城)은 25결 36부 26속이고, 울진(蔚珍)은 19결 21부 7속이며, 영월(寧越)은 7결 23부 1속이고, 평해(平海)는 2결 59부 8속이며, 흡곡(歙谷)은 1결 43부 2속이나 됩니다. 막중한 전정(田政)을 잘 검토하지 않아 이토록 결수를 감축해서 기재한 일이 있게 하였으니 당해 감사와 각 읍 수령은 불찰의 실수를 면할 수 없으므로 경책하는 도리가 있어야 마땅합니다. 감축된 결수에서는 추가로 조세를 내게 하여야하나 방금 대흥년을 겪었는데 이제와서 추가로 거두면 민간에서 소요를 일으킬 염려가 있을 듯하고 기왕 사혁한 뒤에 털어 두고 논하지 않은 것도 법례에 어긋나는 일이므로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라는 일로서 달하(達下) 하셨습니다. 모든 재상(災傷)의 착오가 10부 이상이면 파직하고 30부 이상이면 나문(拿問)하는 것이 본래의 법례인데 이번에 여러 고을의 분재 중에 실결의 감축된 것이 영월, 평해, 흡곡을 제외하고는 많은 곳은 1백여 결에 달하고 적어도 15결에 밀돌지 않았으니 다소를 막론하고 법에 의거하여 감죄(勘罪)할 일이나 다만 이는 당해년의 전결과는 차이가 있고 또 두 도의 수령으로 죄를 범한 자가 열 사람이나 되며 그때의 수령이 혹 지금은 감사로 있는 사람도 있는데 겨우 대흥년을 치룬 끝에 허다한 수령을 일시에 체개하고 파직하는 것은 이역시 폐단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이 있는 바에 감히 말감(末減:가장 가벼운 죄로 처벌함)하자는 뜻으로 아래에서 양청할 수는 없는 일인데 수상의 뜻도 난처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여쭙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법에 의거하여 감죄하는 것이 옳은 일이나 기왕 당년의 전결과는 차이가 있고 허다한 수령을 일시에 바꾸는 폐단도 생각지 않을 수 없으므로 우선 말감하여 모두 중하게 추고하는 것이 좋겠다."하였다. (...)

十二月十九日藥房入診, 右議政趙同爲入侍 時, 右議政趙所啓, (...) 又所 啓, 戶曹, 以丙申年

各道收租案，打算考驗，則京畿南陽府分災中，實結減縮之數，至於一百二十二結四十二負九束，陽川縣分災中，實結減縮之數，至於十七結九十四負六束安城則實畚出稅之減縮米，至於四十石，江原道各邑收租結數之減縮，則襄陽六十六結五十九負七束，原州五十五結六十二負六束，高城二十五結三十六負二束，蔚珍十九結二十一負七束，寧越七結二十三負一束，平海二結五十九負八束，歙若一結四十三負二束，莫重田政，不能詳檢，有此結數減錄之舉，當該監司及各邑守令，難免不察之失，宜有驚責之道，減縮結數，所當還爲出稅，而纔經大殺，到今還徵，似有民間騷擾之弊，既查之後，置而不論，亦違法例，令廟堂稟處事，達下矣，凡災傷差錯，十卜以上，罷職，三十卜以上，拿問者，自是法例，而今此諸邑分災中，實結之減縮者，寧越·平海歙若外，多至百餘結，少不下十五結，則所當毋論多少，依法勘罪而第此與當年田結有間，且兩道守令之犯科者，至於十人之多，而其時守令中，或有方任監司者矣，纔經大殺之餘，許多守令，一時遞罷，亦甚，有弊，而其在法例，不敢以末減之意，自下仰請，首相之意，亦以爲難處，故敢此陳稟，上曰，依法勘罪，是矣，而既與當年田結有間，許多守令，一時遞易之弊，亦不可不念，姑爲末減，竝從重推考，可也，趙曰，災傷差錯，本非道臣之責，而此則給災之際，不能詳審，以致如此，營門亦有不察之失，其時兩道監司，竝推考何如，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70책, 숙종 43년 1717년 12월 20일(음) >

#### 경제/재정

右議政 趙泰采가 摠戎廳 軍糶의 柴草·雉鷄價 除減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이 달 25일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접하여 입대하였을 때에 우의정 조태채(趙泰采)가 진달하기를, (…) 또 진달하기를, "지난번 경기감사의 보고서로 인하여 여주(驪州), 죽산(竹山), 안산(安山), 남양(南陽), 용인(龍仁), 풍덕(豐德) 등 6읍의 남한산성과 대흥산성(大興山城)의 이전곡을 겨울에 뱃길로 실어 나르기 어렵기 때문에 봄이 되는 즉시 본 장소에 실어다 바치라는 뜻으로 제사(題辭)하여 보냈는데 막중한 군항을 마냥 미룰 수는 없는 일이니 만일 봄이 풀린 뒤에까지 실어다 바치지 않은 고을이 있으면 당해 수령을 각별히 논죄하겠다는 뜻으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하령하기를, "진달한 바대로 분부하는 것이 좋겠다."하였다.

今十二月二十五日，大臣·備局堂上引接入對時，右議政趙所達，(…) 又所達，頃因京畿監司報狀，驪州·竹山·安山·南陽·龍仁·豐德六邑，南漢·大興移轉，以永路難運之故，開春即時，輸納本所之意題送，而莫重軍餉，不可遷就，如有開春後未即輸納之邑，則當該守令，各別論罪之意，分付何如，令曰，依所達分付可也。

<비변사등록 70책, 숙종 43년 1717년 12월 28일(음) >

#### 경제/재정

右議政 金興慶 등이 江都 移轉米 중 못 받는 것이 많으니 退捧의 허가를 청하다

○ 이번 12월 23일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우의정 김흥경이 아뢰기를, "남양부사(南陽府使) 최종주(崔宗周)의 상소를 재가를 받아 비변사에서 아뢰어 처치하여야 하겠습니까. 그 상소에서 강도(江都)의 이전미(移轉米) 중에서 계축조(癸丑條)는 의당 받아야 하지만 임자조(壬子條)는 추호도 받을 가망이 없다고 말하고 우선은 정봉(停捧: 납세 중지)하고 명년 가을에 가서 받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듣자니 남양부는 우심(尤甚)에 들어 있고 농사도 대흉이라 합니다. 사세가 기왕 이와 같다면 지금 비록 받으라고 독책

한다 해도 받아내기가 어렵겠고 연말(年末)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우선은 퇴봉(退奉:기일을 연기하여 받음)을 허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대신과도 상의하였던가?” 하여, 김홍경이 아뢰기를, “아직은 확정짓지 않았으나 신의 생각으로는 사세가 불가불 정퇴(停退)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상소를 비변사에 내린 지 이미 오래고 그 고을 수재(守宰:수령)가 벌써 바뀌었는데도 아직까지 그 가부(可否)를 의정하지 않았다니 묘당이 이러하고서 무슨 일을 하겠는가?” 하였다.

좌참찬 김취루(金取魯)가 아뢰기를, “이전미를 매양 흉년이 들어 받지 못하겠다고 하면 선뜻 정퇴를 허가하는 것은 실로 근래의 고폐(痼弊)가 되어 있으나 듣건대 **남양**은 농사가 대흥을 맞아 우심읍에 들어있고 본관마저 이제는 갈려서 돌아왔으며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지금 비록 독촉하여 받는다 해도 결국은 받지 못하게 될 터이므로 우선은 소청한대로 참작하여 청하는 대로 시행하는 것만 같지 못할 것입니다.” 하여, 이조판서 송인명(宋寅明)이 아뢰기를

“연말이 이미 박두하였으니 이럴 때에는 비록 독촉하여 받는다 해도 필시 받은 것이 없을 터이니 정봉해도 사실 무방하겠으나 다만 수령이 한편으로는 독촉하여 받고 한편으로는 시험삼아 정봉을 청한 것을 조정에서 경솔하게 정봉을 허가한다면 이미 받은 것이 중간에서 감색(監色)의 손에서 녹아버릴 수도 있으니 이것이 걱정입니다. 혹 감영으로 하여금 자세히 살펴서 다시 보고하게 한 뒤에 처리하는 것이 무방하지 않을까요?”

하니, 김홍경이 아뢰기를, “당초의 절목(節目)에서 초실과 우심을 막론하고 임자(壬子)·계축(癸丑) 양년의 이전곡은 모두 다 받기로 규정하였으나 **남양**은 우심읍이므로 민간의 사정이 실제로 받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상소가 이러한 것이니 필시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호조판서 이정제(李廷濟)가 아뢰기를 “**남양**은 고을 사정이 바야흐로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걱정입니다. 최종주는 틀림없이 받지 못하게 되었기에 상소를 올린 것일 터이니 받은 것이 없을 듯합니다. 지금은 설[歲時]이 이미 급박하여 실로 변통하기 어렵습니다.” 하여, 이조참의 이종성(李宗城)이 아뢰기를, “올 가을에 재가를 받은 절목 중에는 남한산성과 강도(江都)의 구환자(舊還上)는 모두 6천 석을 받는 것으로 하한(下限)을 삼고 이 수량에 미치지 못하면 수령을 논죄하기로 하고 각 읍 중에서 이전곡을 가장 수납(輸納)하지 못한 자는 본소(本所:남한과 강도를 지칭)에서 지명(指名) 장문(狀聞)하여 나처(拿處:나문하여 처리함)하기로 하였으나 조령(朝令)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열읍에서는 모두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 생겨 전연 생각을 움직이게 하지 않습니다. 최종주의 상소는 우선 덮어두고 강도에서 지명하여 청죄한 뒤에 책벌을 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조참의의 말이 옳다. 덮어두는 것이 좋겠다. 호조판서는 경기(京畿)의 구관당상이 아니던가? 자신이 구관당상이 되어서 가까운 경기의 일도 어찌 알지 못하는가? 생각기에는 경기의 일에 있어서는 틀림없이 남이 모르는 일을 진달하리라고 여겼더니 되려 다른 당상과 다른 것이 없으니 참으로 잘못이다. 호조판서를 추고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今十二月二十三日, 大臣·備局堂上引見入 侍時, 右議政金所啓, **南陽府使**崔宗周上疏, 啓下備局當爲稟處矣, 其疏以江都移轉癸丑條 則當徵捧, 而壬子條則萬無可捧之勢, 姑許停退, 待 明秋徵捧爲言, 蓋聞**南陽**入於尤甚, 而年事大歉云, 事勢既如此, 則今雖督納, 勢難徵捧, 而歲前餘日無 多, 姑許其退捧, 未知何如, 上曰, 與諸臣相議乎, 金 曰, 姑未商確, 而臣意則事勢似

不可不停退矣，上曰，疏下備局既久，且其邑宰已遞，而猶未議定其可否，廟堂如此，何事可做乎，左參贊金取魯曰，移轉之每以年凶難捧，輒許停退，實爲近來痼弊，而聞南陽則年事大歉，入於尤甚，而本倅今已遞歸，歲前餘日無多，今雖督捧，終歸難捧，則不如姑依其疏請，參酌許施矣，吏曹判書宋寅明曰，歲除已迫，此時雖令督捧，未必有所捧，停捧固無妨，而第守令或一邊督捧，一邊試爲停止之請者，朝家若輕許停捧，則已捧之數從中消花於監色之手，此爲可慮，或令監營量宜更報後處之無妨耶，金曰，當初節目，勿論稍實·尤甚，壬·癸兩年移轉，竝皆徵捧事定式，而南陽即尤甚邑也，民間事勢實無以徵捧，故其疏如此，而似必未捧矣，戶曹判書李廷濟曰，南陽邑事方到無可奈何之境，實爲可念矣，崔宗周必以難捧故陳疏，似無所捧，今則歲時已迫，實難變通矣，吏曹參議李宗城曰，今秋啓下節目中南漢·江都舊還，皆以六千石徵捧爲限，不滿此數，則守令論罪，各邑移轉之最不輸納者，令本所指名狀聞，以爲拿處矣，朝令數變之故，列邑皆生僥倖之望，全不動念，崔宗周上疏今姑置之，待江都指名請罪後，責罰爲宜矣，上曰，吏議之言是矣，置之可也，戶判非京畿句管堂上乎，身爲句管，至近京畿之事，豈不知耶，意謂畿邑事則必陳達他人不知之事矣，反與他堂無異，誠非矣，戶判推考可也。  
<비변사등록 96책, 영조 10년 1734년 12월25일(음)>

## 경제/재정

**豐德府使 金應三가 입시하여 松都로 移居된 豐德民의 刷還을 變通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이번 3월 11일 명릉에 행차하여 환궁할 때 주정(晝停)을 위해 막차(幕次)에 들어간 후에 경기감사 정석오(鄭錫五)와 풍덕부사(豐德府使) 김응삼(金應三), 장단부사(長湍府使) 유세복(柳世復), 양주목사(楊州牧使) 유만중(柳萬重), 남양부사(南陽府使) 정홍제(鄭弘濟), 고양군수(高陽郡守) 조명재(曹命宰) 등을 함께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풍덕부사 김응삼이 아뢰기를

“병진년(영조 12, 1736) 양정(良丁)을 수괄하기 위하여 어사를 파견할 때 풍덕 백성들 중 송도(松都)에 이거(移居)한 사람이 600여명이나 되었는데 그들을 모두 도고(逃故)한 사람 대신 보충하였으므로 이들을 대리고 돌아감을 탐전에서 재결하자 부내(府內)의 백성들은 하늘에 비는 소리가 도로에 가득하여 그 덕에 감복하였습니다. 그 뒤에 재촉이 한 두 번이 아니나 지금까지 한 사람도 돌아오는 사람이 없어 조정의 명령이 빈 말이 되고 말았으며 그 백성들의 환호하는 소리가 원망하는 소리로 변하였습니다. 그 신포(身布)를 거둬들일 때 송도(松都)로 이거한 백성들은 몸을 숨겨 나타나지 않으므로 공문을 보내 재촉하는 것도 매우 불편하여 결국 신포를 징수하지 못하고 부득이 그들의 이웃과 친족들에게 신포를 징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거민들의 신포를 천만번 나누기도 극히 어려운데 하물며 그 600명의 이웃과 친족들에게 어찌 징수할 수 있겠습니까? 남아 있는 백성들도 모두 도망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 도망한 사람들은 10가 중 5·6가 되고 있으니 내일 도망할 사람들이 또 10가 중에 10가가 될 것이니 이로 미뤄보면 그 형세는 장차 온 부중(府中)이 모두 비어버린 상태에 놓일 것이니 지금 태평성대를 당하여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조정에서 이 고을이 공허한 상태를 자세히 살펴 특별히 변통해야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자, 임금은 이르기를, “지금 아뢴 말을 임금께 아뢰는 조항으로 만들어 묘당에서 아뢰어 처리하게 하는 것이 가할 것이다.” 하였다.

今三月十一日，明陵舉動還宮時，晝停入幕次 後，京畿監司鄭錫五·豐德府使金應三·長湍府使柳世復·楊州牧使柳萬重·南陽府使鄭弘濟·高陽郡守 曹命宰，同爲引見入侍時，豐德府使金應三所啓，丙辰良丁御史時，豐德之民，移居松都者，六百餘名，盡數充定於逃故之代，仍爲

刷還事，榻前定奪，一府民人之祝天感德蹈舞懼之聲，載於道路矣，其後催促非止一二，而迄無一人還來者，朝家命令，作一空紙，居民之懼聲，變作呼冤之地矣，當其收布時，松都移居民，隱避不現，移文推捉，亦多難便，終不得收布，萬不得已徵布於隣族，而居民之身布，千萬分極難，況且六百餘名隣族之侵徵乎，餘存之民，皆懷逃散之心，今日之逃，十居五六，明日之走，又居於十數之十，以此推之，則勢將至於一府之空虛，當今聖世，豈有如許之事乎，自朝家詳察一邑空虛之勢，特爲變通何如，上曰，所達出舉條，令廟堂稟處可也。

<비변사등록 106책, 영조 16년 1740년 03월13일(음) >

## 경제/재정

### 左議政 申晩 등이 摠戎廳 束伍가 需米를 疊納하는 것을 청하다

또 아뢰기를, “일찍이 수원부사(水原府使) 김효대(金孝大)가 아뢰바 총융청의 군수보(軍需保)를 종도록 변통하는 일에 대하여 후임 비국과 총융사가 같이 입시하였을 때에 품처하라는 명이 계셨습니다. 수원은 기보(畿輔)의 중진(重鎭)인데 속오군(束伍軍)이 군수미(軍需米)를 겹쳐 내는 것은 매우 가엾고 민망한 일이므로 이정(釐正)하지 않을 수 없으나 갑자기 좋은 방도로 변통할 길이 없습니다. 총융사가 지금 입시하였으니 하문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총융사의 뜻은 어떠한가?” 하였다.

좌참찬 홍봉한(洪鳳漢)이 말하기를, “수원은 옛날에는 외도감(外都監)이라 칭하여 군역은 많고 백성은 적어 온갖 폐단이 함께 생겼습니다. 지금 부사 김효대가 성의를 다하여 시정하려 하나 조정에서 특별히 돌보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성과를 올릴 수 있겠습니까? 전번에 재신(宰臣) 김상복(金相福)이 진달하여 본부 결전(結錢)을 면제하기까지 한 것은 대체로 백성을 위한 성의에서 나온 것이나 신의 생각은 오히려 그렇지 않다고 여깁니다. 본부가 비록 관방(關防)의 중지(重地)라 하지만 양주(楊州)와 고양(高陽)에 비유하면 크게 다름이 있습니다. 양주와 고양에서 면하지 못한 역을 수원만 유독 면하였다면 사체에 여하할 뿐더러 장단(長湍)과 남양(南陽)도 삼진(三鎭) 가운데 들었으니 억울하다는 탄식이 없지 않을 것이며 만일 점차로 원례(援例)하여 감면해 준다면 장차 지탱하여 감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조정에서 법을 정함에는 일정하게 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더구나 본부의 토지는 서울 사대부와 토호들의 전답이 대부분이어서 결전을 감면한 혜택이 온전히 백성에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므로 백성이 군역(軍役)을 면하지 못한 원망은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만일 종도록 변통하려면 결전은 다른 고을과 같이 일체로 징수하고 군보를 겸역(兼役)하는 따위는 모조리 감하거나 없애고 이어 결전으로 받은 것으로 적당히 급대(給代)해 준다면 비로소 군민을 위한 막대한 혜택이 될 것이며 수성(隋城)도 폐해를 없애고 잔폐(殘弊)에서 소생할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재신에게 말하니 재신도 그와 같이 한다면 그 혜택이 더욱 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비국의 당상가운데 김선행(金善行)이 또한 수원을 거쳤는데 마침 같이 입시하였으니 하문(下問)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재신의 뜻은 어떠한가? 각자 소견을 말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사직 김상복(金相福)은 말하기를, “신이 연전에 수원을 맡아 능행(陵幸)에 도차원(都差員)으로 입시하였는데 상께서 고을의 폐단을 하문하셨기에 신이 수원의 결전(結錢)에 대하여 양달한바 있습니다. 수원은 기보의 중진으로 지난 갑술년(甲戌年)에 특별히 1필을 감하고 총융청에 소속된 뒤에는 수미군(需米軍)으로 6두를 냈는데 거의 모두 속오군(束伍軍)을 겸하였습니다. 대개 수미와 속오는 그 수량이 둘 다 많으므로 둘로 나누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도(諸道)에서 군포를 감면한 뒤에 수원의 군병은 군수미도 내고 속오도 겸한

것은 도리어 치우친 고통이 있으므로 실로 향우(向隅)의 탄식이 있으며, 또한 수원은 경오년(庚午年)의 감포(減布)에 들지 아니하였으므로 급대도 할 수 없는데 수원의 결전으로 다른 고을의 재감한 대충을 주는 것은 실로 원통하고 억울합니다. 신이 이러한 뜻으로 진달하니 상께서 대신과 제신에게 하문하신 뒤에 특교(特敎)로써 수원의 결전을 탕감하였습니다. 총융사 홍봉한은 그때에도 총융사를 겸대(兼帶)하고 있었는데 소견이 오늘 주청한 바와 같았습니다. 지금 만일 다시 결전을 받아들이고 군수미를 감면한다면 반드시 잘 구획하여 백성이 실혜(實惠)를 입게 된 뒤에라야 넉넉히 구휼해 준 덕의가 종시(終始)토록 아랫 백성에게 퍼질 것입니다.”

하고, 사직 김선행(金善行)은 말하기를, “대저 속오의 겸역은 비단 수원뿐만 아니라 모든 고을도 이와 같은데 이는 근래에 군정(軍丁)이 매우 어려움으로 각 고을에서 속오는 내는 것이 없다고 칭탁하고 이렇듯 겸역의 침징(侵徵)이 있으나 속오의 1년 소비(所費)는 군포를 내는 무리가 1년에 내는 것에 비하면 도리어 배나 많으니 속오로서 겸역하는 자를 신은 항상 민망하게 여깁니다. 수원에 있어서는 속오로서 수미를 겸한 자가 매우 많아 3천여 명이 넘으므로 백성이 지탱할 수가 없으며 군용(軍容)이 날로 조잔해지고 도고(逃故)는 날로 증가하는 것이 오로지 여기에 연유하는데 조정에서 중진(重鎭)의 군정(軍情)을 깊이 생각하여 유독 수원에만 결전을 면제해 준 정사가 있기까지 하였으나 결전을 받지 않는다 하여 그것이 반드시 군민(軍民)의 혜택이 되지는 아니합니다. 대개 수원은 거의 서울 사대부가의 전답이므로 결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서울 사대부가에서 그 이익을 많이 받을 따름이지 원래 거주한 군민에게 무슨 큰 이익이 있겠습니까? 육도(六道)에서 통행하는 역(役)을 유독 수원에만 감면하는 것도 균역의 뜻이 아닐 뿐더러 또 실혜라고 말할 것도 없으니 신의 생각으로도 다시 결전을 받아들이고 영구히 속오의 겸역을 없애며 균역청에서 결전을 받아들이는 수량으로 수미(需米)를 없애는 대신으로 출급한다면 비로소 막대한 혜택이 될 것이며 본 읍의 큰 폐단과 보충하기 어려운 군액(軍額)도 구원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기웁니다.”

하니, 임금의 이르기를, “과연 주달한 바와 같다면 이는 익하(益下)의 정사(政事)이다. 그러나 일을 시작하는 데에는 반드시 신중해야 한다. 균역청에서 묘당과 상의하여 절목으로 계하하게 하라.” 하였다.

홍봉한이 말하기를, “수원의 금년 결전은 양전(量田)을 하였으므로 마땅히 다른 예대로 감면해 주어야 하는데 군정(軍政)의 변동은 금년부터 하여 수원의 백성에게 속히 혜택을 입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又所啓，曾因水原府使金孝大所啓，摠戎廳 軍需保，從長變通事，有日後備局摠戎使同爲入侍時，稟處之命矣，水原，卽畿輔重鎭，而東伍之疊 納需米，事甚矜悶，不可不釐正，而猝無好樣變通之道，摠戎使方入侍，下詢處之何如，上曰，摠戎 使之意何如，左參贊洪鳳漢曰，水原，古稱外都監，軍 多民少，百弊俱生，時府使金孝大，雖欲殫誠釐革，朝 家若不別爲顧念，則何以責效乎，向來宰臣金相福 陳達，至免本府結錢，蓋出爲民之誠意，而臣意則尙 以爲不然，本府雖是關防重地，比諸楊州·高陽，大有 間焉，而楊高所不免之役，水原之獨免，事體既涉如何，長湍·南陽，亦在三鎭之中，而不無向隅之歎，其若 次次援減，將不勝其支當，朝家定法，貴乎一切，況 本府土地，多是京士夫與土豪之田畝，結錢所免之 惠，未必專歸於小民，而小民軍役難應之冤，固自如 也，今若從長變通，結錢則依他邑，一體徵捧，軍保兼 役之類，一併減罷，仍以結錢所捧，量宜給代，則始可 爲軍民莫大之惠，而隋城，亦可有祛弊蘇殘之望矣，以此言于宰臣，則亦以爲如此，則其惠尤大云，而備 堂中金善行，又經水原，俱適入侍，下詢處之何如，上曰，宰臣之意何如，各陳所見，可也，司直金相 福曰，臣頃年待罪水原，以陵幸都差員入

侍, 而自上下詢邑弊, 故臣以水原結錢事, 有所仰達矣, 水原以畿輔重鎮, 在昔甲戌, 特減一疋, 及屬摠廳之後, 需米軍納六斗, 而幾皆兼束伍, 蓋需米束伍, 其數兩多, 有難分而二之也, 今於諸道減疋之後, 水原之軍納需米, 而兼束伍, 反爲偏苦, 實有向隅之歎, 而且水原, 不入於庚午減布, 無可給代者, 則以水原結錢, 給他邑所減之代, 實爲冤抑, 故臣以此意陳達, 而自上詢問大臣·諸臣後, 以特教, 減水原結錢, 摠戎使洪鳳漢, 其時亦帶摠戎使, 所見如今日所奏矣, 今若欲更捧結錢, 而減需米, 則必須善爲區劃, 民蒙實惠, 然後優恤之德意, 終始下布矣, 司直金善行曰, 大凡束伍兼役, 非但水原, 他各邑亦如此, 而此乃近來軍丁甚難, 故各邑諉以束伍無所納, 而有此兼役之侵, 然束伍一年所費, 比之於收布輩一年所納, 則反爲倍多, 束伍兼役者, 臣常以爲可矜矣, 至於水原束伍而兼需米者, 其數甚多, 殆過三千餘名, 故民不能支堪, 軍容之日漸凋弊, 逃故之日益增加, 專由於此, 而朝家深念重鎮軍情, 至有獨免結錢之政, 而結錢之不捧, 未必盡爲軍民之惠, 蓋水原, 近於京故土地太半, 是京士夫家田畝也, 不捧結錢, 則京士夫多蒙其利而已, 有何大蓋於原居軍民乎, 六道通行之役, 獨令水原得免, 既非均役之意, 而又無實惠之可言, 臣意亦以爲今若還捧結錢, 永罷束伍兼役, 而自均廳, 以其結錢所捧之數, 出給需米所罷之代, 則始可爲莫大之惠澤, 而本邑之大弊, 軍額之難充, 亦可以捄得矣, 上曰, 果若所奏, 此益下之政也, 然作事必慎, 令均廳議于廟堂, 節目啓下, 鳳漢曰, 水原今年結錢, 以其量田, 自當依他例減給, 而軍政變通, 自當今年爲之, 使水原之民, 速蒙惠澤矣, 上曰, 依爲之.

<비변사등록 135책, 영조 34년 1758년 11월09일(음)>

## 경제/재정

### 領議政 洪鳳漢 등이 軍餉 및 還上을 未捧한 守令·邊將을 처리하는 문제 등을 청하다

또 아뢰기를, “이는 각도(各道)의 군향(軍餉) 환자[還上]의 봉미봉(捧未捧) 장계(狀啓)입니다. 군향(軍餉)을 미봉(未捧)한 수령(守令)과 변장(邊將)으로서 거말(居末)은 나문(拿問)하고 거이(居二)는 결장(決杖)하고 거삼(居三)은 추고(推考)하고, 환자[還上]의 미봉에 있어 거말은 결장하고 거이는 추고하는 것이 본래 규식(規式)으로 정해져 있으나, 외방(外方)에서는 결장한 자는 대신 나문하는 것으로 새 규식이 있습니다. 경상도 원회미(元會米)의 거말은 남해현감(南海縣監) 이언휴(李彦休), 거이는 자인현감(慈仁縣監) 김방(金墜)이요, 군향의 거말은 남해현감 이언휴, 거이는 적량첨사(赤梁僉使) 이운홍(李運弘), 거삼은 곤양군수(昆陽郡守) 이명시(李命時)이며, 군포작미(軍布作米)의 거말은 남해현감 이언휴, 거이는 자인현감 김방, 거삼은 김해부사(金海府使) 구승환(具昇煥)이요, 전병선가미(戰兵船價米)의 거말은 남해현감 이언휴, 거이는 기장현감(機張縣監) 신경문(申敬文), 거삼은 김해부사 구승환이며, 사군목작미(射軍木作米)의 거말은 자인현감 김방이요, 별회미의 거말은 남해현감 이언휴입니다. 전라도 신환자[新還上]의 거말은 무안현감(務安縣監) 이보온(李普溫), 거이는 나주목사(羅州牧使) 유언술(兪彦述), 거삼은 고창현감(高敞縣監) 이충국(李忠國)이요, 신군향(新軍餉)의 거말은 나주목사 유언술, 거이는 고창현감 이충국, 거삼은 장성부사(長城府使) 최홍보(崔弘輔)입니다. 충청도 신환자의 거말은 태안군수(泰安郡守) 이광택(李光宅), 거이는 서천군수(舒川郡守) 이찬휘(李繼徽)요, 신군향의 거말은 태안군수 이광택, 거이는 비인현감(庇仁縣監) 김광려(金光礪), 거삼은 남포현감(籃浦縣監) 이몽신(李夢臣)입니다. 경기(京畿) 신환자의 거말은 인천부사(仁川府使) 최경흥(崔景興), 거이는 안성군수(安城郡守) 박호원(朴好源), 거삼은 남양부사(南陽府使) 이명운(李明運)이요, 군향의 거말은 인천부사 최경흥, 거이는 음죽현감(陰竹縣監) 박동최(朴東最), 거삼은 수원부사(水

**原府使** 정상순(鄭尙淳)이며, 구환자(舊還上)의 거말은 과주목사(坡州牧使) 이명중(李明中), 거이는 가평군수(加平郡守) 이태원(李泰遠), 거삼은 양주목사(楊州牧使) 정광한(鄭光漢)이며, 평안도(平安道) 신군향(新軍餉)에 대해 거말은 상토첨사(上土僉使) 이춘형(李春馨), 거이는 고산리첨사(高山里僉使) 박재대(朴載大), 거삼은 용천부사(龍川府使) 구세인(具世仁)이고, 환자에 대해 거말은 양하만호(楊下萬戶) 이창원(李昌元), 거이는 미곶첨사(彌串僉使) 오도형(吳道亨), 거삼은 위원군수(渭原郡守) 심위(沈緯)이며, 별군향(別軍餉)의 거말은 강계부사(江界府使) 이윤덕(李潤德), 거이는 남평만호(南平萬戶) 민징수(閔徵洙)입니다. 황해도 구환자의 거말은 소이만호(所已萬戶) 김유하(金由河)입니다. 함경도(咸鏡道) 환자와 교제곡(交濟穀)의 거말은 명천부사(明川府使) 민혜수(閔惠洙), 거이는 경성판관(鏡城判官) 임일원(任一源)입니다. 강원도(江原道) 구환자의 거말은 홍천현감(洪川縣監) 홍계우(洪啓祐), 거이는 금성현령(金城縣令) 송재중(宋載中)이요, 통영(統營)의 군향에 대해 거말은 임피현령(臨陂縣令) 송익수(宋翼洙)입니다. 군향(軍餉)과 군작미(軍作米)·교제곡(交濟穀)·사군목작미(射軍木作米)·전쟁신가미(戰兵船價米)의 미봉(未捧) 거말은 비록 사령(赦令)이 있으나, 일찍이 탕척(蕩滌)한 예가 없습니다. 아울러 사목(事目)에 의해 당해 수령과 변장은 나문(拿問)하여 처리하고, 군향·군작미·교제곡의 거이와 거삼, 환자·원회미·별회미·별군향의 거말·거이·거삼의 수령과 변장은 유지(有旨)가 있기 이전의 일이므로 아울러 전례에 의해 분간(分揀)해야 하겠습니까. 군향과 환자의 봉미봉 장계는 본래 정한 기한이 있으나 전라 도신(全羅道臣)과 통제사(統制使)가 시한을 넘겨 봉계(封啓)한 것은 자못 계완(稽緩)에 해당하니 추고(推考)하여 경책(警責)하고, 당해 도회관(都會官)도 예에 의하여 나문해서 처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홍봉한이 말하기를, “나주(羅州)와 남해(南海)는 한 도(道)에서 흥작이 가장 흑심한 곳이므로 그 거말은 형세가 그럴 수 밖에 없으나 법례(法例)가 매우 엄하여 논의될 수 없고, 민혜수에 있어서는 지금 통신사(通信使)를 수행하고 있어 일을 마치고 복명(復命)하기를 기다려야 비로소 거행할 수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유언술은 금년이 상년(常年)과 다르고, 선치(善治)로 가자(加資)되었으니 공과(功過)가 서로 맞아 특별히 분간하고, 민혜수는 일을 마친 뒤에 거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傳曰, 今覽京畿道臣各邑賑政啓本, 南陽, 則七巡, 二千五百十四口, 八巡, 一千九百九十二口, 九巡, 一千九百八十七口, 初付之民, 若付還穀, 則其勢固然, 而十巡, 復以一千九百九十二口, 巧符於八巡, 其故焉在, 通津, 六巡, 七百四口, 七巡, 六百六十九口, 八巡, 六百七十, 安山, 六·八·九巡, 四百八十餘口, 惟七巡, 四百九十餘口, 陰竹, 六·八巡, 七十餘口中, 七巡, 三百八十口, 振威, 六巡, 六百六十二口, 七巡, 六十口, 八巡, 六百二十六口, 其中人口零星, 差等者, 不是異事, 或少 或多不一者何, 或以事勢而然, 則容或可也, 若不精抄, 而若此, 不謹可知, 令道臣詳查以聞.

<비변사등록 144책, 영조 39년 1763년 08월06일(음)>

## 경제/재정

### 領議政 洪鳳漢 등이 京畿道 各 邑의 農形 및 조치를 논의하다

이번 10월 19일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이 아뢰기를, “이는 경기감사 심성진(沈星鎭)의 분등(分等) 장계입니다. 양천(陽川), 양주 등 6개 읍을 우심에 두고, 가평(加平) 등 17개 읍을 지차에 두었으며, 양주(楊州) 등 14개 읍을 초실에 두고, 이어 구환자(舊還上)·구군향(舊軍餉)·구증미(舊拯米)·노비신공(奴婢身

貢)·구미수(舊未收)는 우심·지차·초실을 논하지 말고 내년 가을까지 정퇴하고, 패선(敗船)의 증곡(拯穀)은 신구를 논하지 말고 내년 가을에 가서 징봉(徵奉)하며, 선인(船人)이 소비하여 원적관(原籍官)에 옮겨 보낸 것은 모두 정퇴하고, 남한(南漢)·북한(北漢)·평창(平倉)·강도(江都)·대흥(大興)의 군향(軍餉)은 우심·지차음을 논하지 말고 본읍에 수봉하여 유치(留置)했다가 내년 가을에 가서 실어다 바치며, 작년에 분수(分數)하여 정퇴한 환자는 우심과 지차음은 특별히 정퇴하게 하고, 추노(推奴)와 징채(徵債)는 내년 가을까지 정퇴할 것을 아울러 묘당에서 품처하기를 청하였습니다. 분등은 장청에 의해 시행하고, 각종 구포(舊逋)는 우심읍에서 3분의 2를 정퇴하고, 지차음은 절반을 정퇴하고, 초실읍은 3분의 1을 정퇴하며, 패선의 증곡은 우심읍은 전량을 정퇴하고, 지차음은 절반을 정퇴하고, 선인이 소비하여 원적관에 옮겨 보낸 것은 장청에 의해 시행해야 하겠습니까. 각처의 군향은 지금처럼 조금 풍년이 든 해에 어찌 그 수봉, 유치 여부를 논의할 수 있습니까? 이는 모두 본처(本處)로 실어다 바쳐 군향을 실하게 하고, 작년에 정퇴한 환자로서, **남양(南陽)·수원(水原)**·양천(陽川) 3개 읍은 4분의 1을 징봉하고 그 나머지는 아울러 수에 맞추어 수봉하며, 추노와 징채는 내년 가을까지 특별히 방색(防塞)하여 일분(一分)이나마 민폐를 덜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今十月十九日,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洪所啓, 此京畿監司沈星鎭分等狀 啓也, 陽川等六邑, 置之尤甚, 加平等十七邑, 置之之次, 楊州等十四邑, 置之稍實, 仍以爲舊還上·舊軍餉·舊拯米·奴婢身貢·舊未收, 毋論尤甚·之次·稍實, 限明秋停退, 敗船拯穀, 毋論新舊, 待明秋徵奉, 船人無面移送原籍官者, 一併停退, 南北漢平倉·江都·大興軍餉, 毋論尤甚·之次邑, 捧留本邑, 待明秋輸納, 昨年分數停退還上, 尤甚·之次邑, 特令停退, 推奴徵債, 限明秋停退事, 竝請令廟堂稟處矣, 分等, 依狀請施行, 各樣舊逋, 尤甚邑三分二停退, 之次邑折半停退, 稍實邑三分一停捧, 敗船拯穀, 尤甚邑全數停退, 之次邑折半停退, 船人無面移送原籍官事, 依狀請施行, 各處軍餉, 如今稍豐之年, 何可議其捧留與否耶, 此則, 一併輸納本處, 以實軍餉, 昨年停退之還, **南陽·水原·陽川**三邑, 則四分一停捧, 其餘竝令準捧, 推奴徵債, 限明秋特爲防塞, 以除一分民弊何如, 上曰, 依爲之.

<비변사등록 144책, 영조 39년 1763년 10월20일(음)>

## 경제/재정

**還穀이 줄어든 邑과 너무 많은 邑의 문제를 變通 방안을 논의하라고 전교하다**

전교하기를, “지금 환상의 수봉을 마쳤다는 경기 감사의 장문(狀聞)을 보면 김포(金浦)·**남양(南陽)**·고양(高陽)·가평(加平)의 원곡(元穀)은 1천 석(石)이 넘으나 유고(留庫)된 것은 2백여 석에 지나지 않아 비록 더 나누어 주었다고 하더라도 어찌 이럴 수 있겠는가? 창고가 거의 비다시피 하였으니 의아스런 일이다. 전교(傳敎)로 인한 외에 혹 수봉치 못한 것이 있는가? 그 까닭은 무엇인가? 교동(喬桐)에 있어서는 다른 군(郡)에 없는 대여(貸與) 명목이 있는데 그 유용은 너무도 수상하다. 아, 땅을 가진 굶주린 백성이 오로지 이에 의뢰하는 데에 있어 범연히 보아 넘길 수 없다. 비국(備局)에서 사문(查問)하여 등대(登對) 때에 아뢰게 하라. 일찍이 알고 있었다. 이로 보면 곡물의 다과(多寡)가 것처럼 현격히 다르니 아, 궁핍한 군(郡)의 백성들이 어찌 삶을 꾸려 나갈 수 있겠는가? 곡물이 많은 곳에는 백성들이 그 폐해를 입는다 이러함에도 많은 곳에서 적은 곳을 구제하지 않고 곡물을 다른 도(道)로 운반한다는 것은 어찌 이럴 수 있겠는가? 아, 서른여섯 고을에서도 오히려 서로 융통하지 못하는데 다른 도에 요구할 수 있겠는가? 지난번 독운어사(督運御史)가 그림을 그려

올린 것을 보고 이는 내가 이미 하교한 것으로서 어찌 그 곡물을 아까워하겠는가? 곡물을 운반할 때에 곡물이 어찌 스스로 걸을 수 있겠는가? 백성을 시켜 곡물을 운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비록 그림이 짙은 종이이기는 하나 쌀을 지고 운반하는 그 고통을 직접 보는 듯하다. 교동 독운어사 이석재(李碩載)의 아뢰므로 하여 통진(通津)이 곡물이 적어 경기 감사에게 입시를 명하여 하순(下詢)한 것은 이러해서이다. 이러한 곳을 어떻게라도 처리해야만 곤궁한 고을의 백성들을 살릴 수 있고 곡물이 많은 백성도 어깨를 쉴 수 있을 것이다. 그 중 1만 석 가까운 곡물을 모두 수봉한 것은 비록 그 수봉에 부지런하긴 하였으나 7천 석을 징수할 때에 그 고을 백성들이 어찌 견디어 냈겠으며, 금년 봄 나누어 줄 때에 백성들이 어찌 원하여 받은 것이겠는가? 많은 곳에서 덜어 적은 곳에 보태어주는 일은 바로 이러한 때에 시행하여야 한다. 아, 하찮은 일이라도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그 고을에서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어찌 늘그막에 정사에 힘을 기울이는 뜻이겠는가? 어물어물 넘길 일로 본다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먼저 그 편의 여부를 물어보려고 하니 대신·유사당상·경기감사는 석강에 같이 입시하라.” 하였다.

傳曰，今覽畿伯畢糶狀聞，金浦·**南陽**·高陽·加平元 穀過千石，而留庫不過二百餘石，雖加分給，其豈若此，幾乎傾庫，其涉訝之，因傳教外，或有仍未捧者，其 故何也，至於喬桐，他郡所無貸下之名，其那用者，極 涉殊常，噫有土飢民，專賴於此，其在爲民綜核之道 不可泛看，令備局查問，登對時以奏，曾已知矣，以此 觀之，穀之多寡，若是顯殊，吁嗟殘郡，民何聊生，其於 穀多之處，民受其弊，若此而不以多濟少，運穀他道，豈有是理，噫三十六官，猶不能那運，徵求於他道，頃 覽督運御史圖形以進，此則予已下教，豈惜其穀，運 穀之際，穀豈自步，用民運穀故也，雖圖尺紙，負米運 轉，若觀其苦，因喬桐御史李碩載所奏，以通津穀少，命畿伯入侍下詢者，此也，此等之處，何樣處之，然後 殘郡之民，可以賴活，穀多之郡，民可息肩，其中有近 萬石畢捧者，其捧雖勤，七千石徵捧之際，其郡之民，何以支堪，今春分糶，民豈願而受之耶，損其多而益 其寡，正宜此時，噫么麼之事，不顧民爲，其官不爲闊 狹，則亦豈暮年勵政之意乎，視若因循，甚事可做，其 欲先問便否，大臣·有司堂上·畿伯，夕講，同爲入侍。

<비변사등록 147책, 영조 41년 1765년 02월08일(음)>

## 경제/재정

行副護軍 鄭汝稷 등이 **南陽**의 舊環刀를 남양에 劃給하여 改造하도록 하는 문제를 청하다

○ 같은 날 입시하였을 때에 행부호군 정여직(鄭汝稷)이 아뢰기를, “신이 금년 가을 **남양(南陽)**의 습조(習操) 때에 본부의 군기(軍器)를 보았더니 그 중에 환도(環刀) 1천 9백 자루가 모두 부서지고 짧고 적어서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놀랍고 이상한 일이라 그 곡절을 물었더니 병인년 춘조(春操) 때에 이미 탈(頰)이 있는 것을 장문으로 보고하여 그 당시에 부사(府使)와 감색(監色)이 모두 무겁게 감죄(勘罪) 되었습니다. 환도는 본부에서 차차로 오래된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을 갖추도록 법식을 정하였으며 그 뒤에 새 것으로 갖추어진 숫자가 현재 9백 60자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후(前後) 부사(府使)들이 이 숫자를 구환도(舊環刀) 속에서 빼지 않았기 때문에 노후되고 무디어져서 쓸 수 없는 물건이 창고에 쌓여서 보기가 괴이할 뿐만 아니라 세월이 흐른 뒤에는 반드시 새 것과 헌 것이 서로 뒤섞일 염려도 있습니다. 당초의 정한 법식에 의거하여 구환도 1천 9백 자루 안에서 새로 마련한 9백 60자루를 가려내고 그대로 본부에 획급(劃給)하여 철물(鐵物)을 첨가하여 개조(改造)하게 하여 연속적으로 묶은 것은 버리고 새것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편의함에 맞을까 합니다.”

하고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이 말하기를,

“당초에 법식을 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지금껏 이력저력 끌어온 것은 순전히 검칙(檢飭)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매년 개조된 숫자를 연말에 비국에 보고하여 근만(勤慢)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리하라. 구도(舊刀)는 수령에게 주어서 새것을 갖추도록 하라.” 하였다.

同日入侍時，行副護軍鄭汝稷所啓，臣於今 秋南陽習操時，取見本府軍器，則其中環刀一千九百柄，俱是短少破傷不堪用者，故事甚驚怪，問其委 折，則丙寅春操時，已爲執頭狀聞，其時府使及監 色，竝從重勘罪，而環刀則令本府，次去舊新備事，定式矣，其後新備之數，今爲九百六十柄，而前後府 使，不除此數於舊環刀中，故朽鈍無用之物，積在庫 中，非徒所見之駭異，年久之後，必有新舊相混之慮，依當初定式，舊環刀一千九百柄內，除出新備九百 六十柄之數，仍爲劃給本府，使之添鐵改造，以爲連 續去舊新備之地，恐合便宜矣，領議政洪曰，當初 非不定式，而尙此因循者，全無檢飭之舉故也，從今 以後，每年改造之數，歲末報備局，以爲考勤慢之地，何如，上曰，依爲之，舊刀給守令，使之備新.

<비변사등록 148책, 영조 41년 1765년 11월14일(음)>

### 경제/재정

領議政 徐命善이 湖西와 湖南의 拯劣米를 停退하는 것을 허락해 주기를 청하다

이번 11월 10일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했을 때 영의정 서명선(徐命善)이 아뢰기를, “방금 경기감사 정호인(鄭好仁)의 등보(騰報)를 보니 광주(廣州) 등 6읍에 있는 패선 증미(敗船拯米:빠진 배에서 건진 쌀)는 도합 9백 51석인데 모두 오래 묵은 것이고, 남양(南陽)에 있는 증열미 3백 17석은 지난해 무술년 것입니다. 각년(各年)의 구환(舊還)을 이미 정퇴(停退)하라고 하였으니, 같은 구포(舊逋)인데 이것만은 징수하라는 것은 동등하게 베푸는 혜택에 흠이 될까 두렵습니다. 광주 등 읍의 오래 묵은 증미도 특별히 정퇴를 허락하고 남양에 있는 무술년 증미는 3분의 2를 정퇴하도록 묘당에서 품처하기를 청하였습니다. 호서와 호남의 증열미를 정퇴하여 달라는 청을 이미 특교로 모두 시행하도록 허락하였으니 이제 경기도 달리할 수 없습니다. 장청대로 시행을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 하라 하였다. (…)

今十一月初十日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 時，領議政徐所啓，卽見京畿監司鄭好仁 騰報，則以爲廣州等六邑所在敗船拯米，合爲九百 五十一石，皆是年久條，南陽所在拯米三百十七石，卽戊戌條也，各年舊還，既令停退，則同是舊逋，而獨 爲責徵，恐欠一視之澤，廣州等邑年久條拯米，特 許停退，南陽所在戊戌條拯米，三分二停退事，請令 廟堂稟處矣，湖西·湖南拯劣米停退之請，既因 特教，竝許準施，則今於畿甸，宜無異同，依狀請許施 何如，上曰，依爲之. (…)

<비변사등록 160책, 정조 3년 1779년 11월11일(음)>

### 경제/재정/상공

京畿監司 沈頤之 등이 耗穀 조항을 덜어내서 元穀 조항에 보태는 일 등을 아뢰다

○ 같은 날 입시 때에 좌의정 이복원이 아뢰기를, “이는 경기감사 심이지(沈頤之)의 장계입니다. 금년 봄 강화도의 쌀을 이송할 때에 수원(水原)의 7백 석(石)과 남양(南陽)의 4백 석을 운송하는 데 따른 배와 말의 잡비가 88석이나 되는데, 이것을 원곡(元穀) 중에서 가져다 쓰고는 아직 구처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번 두 고을에서 받아갈 1천 1백 석에서 기한 연장치를 제하고 나면 그 모곡(耗穀)이 가까스로 78석이 되는데, 이미 계미년과 을유년의 선

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모곡 조항에서 덜어내어 주어서 원곡을 가져다 쓴 수량에 보태는 일을 묘당(廟堂)에 하순(下詢)하여 처리하도록 할 것을 말하였습니다. 원곡은 다시 더 줄일 수도 없고 또 전례가 근거할 수 있는 만큼, 소청대로 시행하라는 뜻으로 분부하는 것이 어찌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그리하라 하였다. (…)

同日入侍時，左議政李所啓，此京畿監司沈頤之所啓也，以爲今春江都米移運時，**水原**七百石，**南陽**四百石，船馬雜費，爲八十八石，而取用於元穀中，尙未區處矣，今此兩邑所受一千一百石，除其停退，則耗條僅爲七十八石，既有癸未·乙酉已例，今番亦以耗條除給，以補元穀取用之數事，下詢廟堂處之爲辭矣，元穀不可仍減，前例亦有可據，依所請施行之意，分付何如，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166책, 정조 8년 1784년 01월13일(음)>

## 경제/재정/상공

### 內司各宮奴婢貢捧未捧別單

○ 내사와 각궁 노비공의 봉미봉 별단[內司各宮奴婢貢捧未捧別單]

기해(己亥)에서 병오(丙午)까지의 미납읍(未納邑)

태안(泰安):내사(內司)의 노(奴) 2구(口), 기해(己亥)에서 을사(乙巳) 병오(丙午)까지의 공전(貢錢)은 이달에 내사에 내고 수표(手標)를 받았음.

온양(溫陽):내사의 노 3구, 읍미납(邑未納:고을에서 바치지 않음), 관문차(關問次:관문으로 사문 중), 해유 무탈 회통(解由無頃回通)은 서실(闕失:분실(紛失))하였음.

옥구(沃溝):내사의 노 3구, 읍미납, 관문차, 해유무탈회통은 현납(現納:제출)하였음.

금성(金城):명례궁(明禮宮)의 노 1구, 읍미납, 관문차 해유무탈회통은 현납.

평창(平倉):어의궁(於義宮)의 비(婢) 1구, 읍미납, 관문차.

영천(榮川):용동궁(龍洞宮)의 노 3구 비 2구, 기해(己亥)에서 을사(乙巳)까지는 이납(已納)하고 수표를 받았음.

곡산(谷山):용동궁의 노 4구, 기해(己亥)에서 임인(壬寅)까지의 3년은 이납하고 수표를 받고 계묘(癸卯)에서 을사(乙巳)까지는 이납하였으나 수표는 없음.

안주(安州):옥상궁(毓祥宮)의 노 1구, 기해(己亥)에서 을사(乙巳)까지는 이납.

경자(庚子)에서 을사(乙巳)까지의 미납읍(未納邑)

양근(楊根):명례궁의 노 3구 비 1구와 수진궁(壽進宮)의 노 7구, 이납하고 자문[尺文]을 받았음.

과천(果川):명례궁의 노 7구와 수진궁의 노 2구, 수진궁에 바치는 것은 미수가 있고 명례궁에 바치는 것은 내사에 냈음.

**수원(水原)**:명례궁의 노 2구, 이납하고 수표를 받았음.

용인(龍仁):수진궁의 노 15구 비 5구, 읍미납 관문차 13분의 1 미납.

부평(富平):수진궁의 노 7구 비 6구, 읍미납 관문차 3분의 1 미납.

광주(廣州):수진궁의 노 18구 비 12구, 경자(庚子)에서 을사(乙巳)까지는 이납.

삭녕(朔寧):수진궁의 노 3구, 이납, 1구는 사유를 달고 바치지 않음.

고양(高陽):수진궁의 노 3구 비 2구, 이납, 해유무탈회통은 서실하였음.

안산(安山):수진궁의 노 2구 비 5구, 이납, 해유무탈회통은 서실하였음.

**남양(南陽)**:수진궁의 노 3구 비 1구, 절반 미납.

김포(金浦):수진궁의 노 2구, 읍미납, 관문차, 해유무탈회통은 서실하였음.  
 신창(新昌):수진궁의 노 1구, 이납, 해유무탈회통은 현납하였음.  
 영암(靈巖):수진궁의 노 1구 비 1구, 읍미납, 관문차, 해유무탈회통은 서실하였음.  
 전주(全州):수진궁의 노 5구 비 3구, 읍미납, 관문차, 해유무탈회통은 서실하였음.  
 남평(南平):수진궁의 노 5구, 읍미납, 관문차, 해유무탈회통은 서실하였음.  
 흥덕(興德):수진궁의 노 1구, 읍미납, 관문차.  
 익산(益山):수진궁의 노 5구 비 1구, 읍미납, 관문차, 해유무탈회통은 서실하였음.  
 무안(務安):수진궁의 노 1구 비 1구, 읍미납, 관문차.  
 정읍(井邑):수진궁의 노 1구 비 2구, 읍미납, 관문차.  
 금성(金城):수진궁의 노 2구, 읍미납, 관문차, 해유무탈회통은 서실하였음.  
 신축(辛丑)에서 을사(乙巳)까지의 미납읍  
 고성(高城):명례궁의 노 2구 비 1구, 이납으로 사속(司屬)이 자복(自服)하였음.  
 철원(鐵原):수진궁의 노 1구 비 1구, 이납으로 사속이 자복하였음.  
 임인(壬寅)에서 을사(乙巳)까지의 미납읍  
 평택(平澤):수진궁의 노 2구, 고을에서는 상납하였는데 저인(邸人)이 바치지 않음. 해유무탈회통은 서실하였음.  
 봉산(鳳山):수진궁의 노 3구 비 2구, 이납하고 수표를 받았음.  
 울진(蔚珍):명례궁의 노 1 비 1구, 읍미납, 관문차, 해유무탈회통은 서실하였음.  
 계묘(癸卯)에서 을사(乙巳)까지의 미납읍  
 중화(中和):수진궁의 비 2구, 이납하고 자문을 받았음.  
 신축(辛丑) 임인(壬寅) 을사(乙巳) 미납읍  
 안변(安邊):수진궁의 노 5구, 읍미납, 관문차, 해유무탈회통은 현납하였음.  
 신축(辛丑) 임인(壬寅) 미납읍  
 문천(文川):수진궁의 노 22구 비 12구, 읍미납, 관문차.  
 임인(壬寅) 계묘(癸卯) 미납읍  
 길주(吉州):용동궁의 노 8구, 비 4구, 이납하고 수표를 받았음.  
 홍천(洪川):수진궁의 노 2구, 이납하고 수표를 받았음.  
 계묘(癸卯) 갑진(甲辰) 미납읍  
 결성(結城):명례궁의 노 2구, 이납.  
 갑진(甲辰)에서 을사(乙巳)까지의 미납읍  
 덕산(德山):명례궁의 노 2구, 이납하고 수표를 받았음.  
 경자(庚子) 미납읍  
 해주(海州):수진궁의 노 1구, 이납하고 수표를 받았음.  
 가평(加平):수진궁의 노 9구, 이납으로 사속이 자복하였음.  
 을사(乙巳) 미납읍  
 장연(長淵):용동궁의 노 1백 6구 비13구, 절반은 본읍(本邑)과 도장(導掌)이 바치지 않음.  
 관문차.  
 안악(安岳):육상궁의 노 1구 비 9구와 명례궁의 노 8구, 이납하고 자문을 받았음.  
 웅진(甕津):수진궁의 노 2구, 이납으로 사속이 자복하였음.  
 부안(扶安):수진궁의 노 3구 비 2구, 읍미납, 관문차.  
 원주(原州):어의궁의 노 1구, 읍미납, 관문차.

갑진(甲辰) 미납읍

함흥(咸興):명례궁의 노 65구 비 60구, 읍미납, 관문차, 해유무탈회통은 현납하였음.

內司各宮奴婢貢捧未捧別單

己亥至丙午未納邑

泰安 內司奴二口自己亥至乙巳丙午貢錢今 朔納司受手標

溫陽 內司奴三口邑未納關問次解由 無頃回通闕失

沃溝 內司奴三口邑未納關問次解由 無頃回通現納

金城 明禮宮奴一口邑未納關問次解由 無頃回通現納

平昌 於義宮婢一口邑未納關問次

榮川 龍宮洞奴三口婢二口自己亥至乙巳 已納受手標

谷山 龍宮洞奴四口自己亥至壬寅三年已 納受手標癸卯至乙巳已納無手標

安州 毓祥宮奴一口自己亥至乙巳已納

庚子至乙巳未納邑

楊根 明禮宮奴三口婢一口壽進宮奴七口 已納受尺文

果川 明禮宮奴七口壽進宮奴二口壽進 宮納有未收明禮宮納于內司

**水原** 明禮宮奴二口已納受手標

龍仁 壽進宮奴十五口婢五口邑未納關 問次十三分一未納

富平 壽進宮奴七口婢六口邑未納關問 次三分一未納

廣州 壽進宮奴十八口婢十二口自庚子至 乙巳已納

朔寧 壽進宮奴三口已納一口懸頃不納

高陽 壽進宮奴三口婢二口已納解由無 頃回通闕失

安山 壽進宮奴二口婢五口已納解由無 頃回通闕失

**南陽** 壽進宮奴三口婢一口折半未納

金浦 壽進宮奴二口邑未納關問次解 由無頃回通闕失

新昌 壽進宮奴一口已納解由無頃回通 現納

靈岩 壽進宮奴一口婢一口邑未納關問 次解由無頃回通闕失

全州 壽進宮奴五口婢三口邑未納關問 次解由無頃回通闕失

南平 壽進宮奴五口邑未納關問次解 由無頃回通闕失

興德 壽進宮奴一口邑未納關問次

益山 壽進宮奴五口婢一口邑未納關問 次解由無頃回通闕失

務安 壽進宮奴一口婢一口邑未納關問 次

井邑 壽進宮奴一口婢二口邑未納關問 次

金城 壽進宮奴二口邑未納關問次解 由無頃回通闕失

辛丑至乙巳未納邑

高城 明禮宮奴二口婢一口已納司屬自服

鐵原 壽進宮奴一口婢一口已納司屬自服

壬寅至乙巳未納邑

平澤 壽進宮奴二口自官上納而邸人不納 解由無頃回通闕失

鳳山 壽進宮奴三口婢二口已納受手標

蔚珍 明禮宮奴二口婢一口邑未納關問 次解由無頃回通闕失

癸卯至乙巳未納邑

中和 壽進宮婢二口已納受尺文  
     辛丑壬寅乙巳未納邑  
 安邊 壽進宮奴五口邑未納關問次解 由無頃回通現納  
     辛丑壬寅未納邑  
 文川 壽進宮奴二十二口婢十二口邑未納 關問次  
     壬寅癸卯未納邑  
 吉州 龍洞宮奴八口婢四口已納受手標  
 洪川 壽進宮奴二口已納受手標  
     癸卯甲辰未納邑  
 結城 明禮宮奴二口已納  
     甲辰至乙巳未納邑  
 德山 明禮宮奴二口已納受手標  
     庚子未納邑  
 海州 壽進宮奴一口已納受手標  
 加平 壽進宮奴九口已納司屬自服  
     乙巳未納邑  
 長淵 龍洞宮奴一百六口婢十三口折半本 邑導掌不納關問次  
 安岳 毓祥宮奴一口婢九口明禮宮奴八口 已納受尺文  
 甕津 壽進宮奴二口已納司屬自服  
 扶安 壽進宮奴三口婢二口邑未納關問 次  
 原州 於義宮奴一口邑未納關問次  
     甲辰未納邑  
 咸興 明禮宮奴六十五口婢六十口邑未納 關問次解由無頃回通現納  
 <비변사등록 171책, 정조 11년 1787년 10월28일(음)>

## 경제/재정

### 江民이 호소하는 弊端에 대해서는 해당 衙門에서 보고하게 할 것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신 김문순(金文淳)이 일찍이 한성부의 당상으로 있을 때에 하교에 의하여 우윤 임시철(林蕃喆)과 함께 강상(江上)으로 나뉘서 나가 퇴압(頽壓)된 민호(民戶)로 수리(修理)해야 할 것을 일일이 살펴본 뒤에 팔강(八江)의 부로(父老)들을 초집(招集)하고 제반 질고(疾苦)를 물어보니 퇴압된 민호는 거의 모두 은혜를 입어 안정을 찾아 한 사람도 거처를 잃고 떠도는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 그 하나는 각강(各江) 염선(鹽船)의 선인(船人) 김중철(金重哲) 등이 말하기를 ‘소금을 생산하는 곳에서는 관(官)에서 세금을 받는 일이 없는데 재작년에 남양(南陽) 관청에서 세곡선가(稅穀船價)라 핑계하고 전에 없던 염세(鹽稅)를 만들어 매 석당 1푼[分]씩 받고 있는데 1년을 통산(通算)하면 몇 천냥이 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이번 이 폐막을 물은 거조는 민은(民隱)을 진념하시느니 덕의(德意)에서 나온 것이므로 크고 작고를 물론하고 다 입록(入錄)하였는데 그 중에는 세액(稅額)에 관계된 일, 쟁송(爭訟)에 관계된 일, 창시(創始)에 관계된 일, 사결(查決)에 관계된 일 등이 있어 상세히 그 내력과 전말을 상고한 연후에라야 결절(決折)할 수 있으므로 각해(各該衙門)와 경기감영으로 하여금 상세히 조사 구핵(究覈)하고 논리(論理)하여 보고하게 한 뒤에 품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司啓曰，臣文淳，曾任京兆堂上時，依下教，與 右尹林著喆，分往江上，頽壓民戶之修葺者，一一審 察，仍又招集八江父老，詢問諸般疾苦，則頽壓民戶，舉皆蒙恩安頓，無一人失所，棲屑之歎，(…) 其 一，各江鹽船船人金重哲等，以爲產鹽之處，官無收 稅之事矣，再昨年南陽官諉之稅穀船價，創設無前 之鹽稅，每石收捧一分，通計一年，將至累千云矣，今 此詢瘼之舉，寔出於軫念民隱之德意，無論巨 細，盡爲入錄，而其中有事關稅額者，有事關爭訟者，有事關創始者，有事關查決者，詳考其來歷顛末，然 後可以決折，令各該衙門及畿營，詳細查究，論理報來後，稟處何如。

<비변사등록 175책, 정조 13년 1789년 12월12일(음)>

### 경제/재정

八江의 백성들이 호소한 弊瘼에 대해 조목조목 回啓하며各司와 該道에 分부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팔강(八江)에서 민막(民瘼)을 물은 일의 초기(草記)에 대한 비지(批旨)에서 ‘장마칠에 민막을 물어보라는 명이 있었는데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다한 지금에야 비로소 초기를 올렸다. 금년만 넘긴다면 이는 백성을 속이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각사(各司)와 해도(該道)에 왕복하여 하루 이틀 이내에 정연(整然)하게 구별 논리(論理)하여 하나로 귀일(歸一)시켜 품처하라’ 는 명이 계셨습니다. 하교에 의해 각사의 감결을 받아 해도에 공문을 발송, 상세하게 조사하여 첩보토록 하였는데 각처의 보고가 이제 모두 도착하였습니다.

(…) 그 하나는 남양부(南陽府)에서 염선(鹽船)에 세를 거두는 일입니다. 경기감사의 보고에는 ‘본부(本府)는 매년 결역미(結役米)의 흠축(欠縮)이 1백여 석이 되고 세·대동(稅大同)을 적재하여 발송할 때에 선가(船價)가 지극히 박하여 선인(船人)들이 싫어하고 회피하였기 때문에 염선이 소금을 살 때에 매 석(石)에 1푼[分]의 세를 받고 시선(柴船)에 나무를 팔 때에 매 냥(兩)에 1푼의 세를 받으면 5백~6백 금(金)이 될 터이니 그 돈으로 해마다 쇠선(刷船:관에서 징발한 백성의 배)의 값을 쳐 주고 그 나머지는 민고(民庫)에 넣겠다는 뜻으로 작년에 그 고을 부사(府使) 왕한정(王漢禎)이 유향(儒鄉:유생과 향청)의 제소(齊訴)로 인하여 논보(論報)한 바가 있었는데 연해읍(沿海邑)에는 모두 물산(物産)에 세를 받는 규례가 있었으나 본부는 소금을 굽는 곳이면서도 일찍이 이 규례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고을 예대로 세를 받아 민폐를 줄이라는 뜻으로 제사(題辭)하여 보냈습니다.’ 하였습니다. 민고의 결손이 날로 증가하고 세곡(稅穀)을 운반할 배를 빌리기는 점점 어려워지며 백성과 고을의 피폐함은 갈수록 지탱하기 어려운 경지에 이르니 감영과 고을에서 이것으로써 폐단을 구제하는 방편으로 삼은 것은 혹 괴이치 않다 하겠으나 이 일은 고을 백성에 있어서는 비록 폐단을 줄이는 일이 된다 하더라도 강민(江民)에 있어서는 없었던 일을 만들어서 행하는 것이 됩니다.

이번 이 폐막을 묻고 민은(民隱)을 구휼하시는 아래에서는 의당 모조리 혁파해야 하겠으나 고을의 형편은 헤아리지 않고 한갓 강민의 소원에만 따르는 것도 사리(事理)에 통달하지 못한 논의입니다. 이 일은 그 도의 도신에게 분부하여 본부(本府)의 결역미 축조(縮條)와 세곡을 운반하는 선가(船價) 등의 폐단을 감영과 고을에서 왕복하면서 난상, 토의(爛商討議)하여 좋은 방도로 논열(論列)하여 날날이 본사에 보고하여 염세(鹽稅)와 시세(柴稅)를 그대로 두든지 혁파하든지 양단간(兩端間)에 처결하도록 하는 것이 사의에 합당할 듯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각사(各司)와 해도(該道)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八江詢瘼事草記批旨, 潦節詢瘼有命, 而過秋涉冬, 今始草記, 苟踰今年, 是無異於欺民, 往復各司及該道, 一兩日內, 秩秩區別論理, 指一稟處之命矣, 依下教, 捧甘各司, 發關該道, 使之詳查牒報矣, 各處所報, 今纔齊到, (….) 其一, **南陽府**鹽船收稅事也, 京畿監司所報以爲, 本府每年結役米所縮, 爲百餘石, 稅大同裝發時, 船價至薄, 船人厭避鹽口所買, 每石收稅一分, 柴船所賣, 每兩收稅一分, 則將爲五六百金, 歲給刷船之價, 以其所餘, 補此民庫事, 昨年該府使王漢禎, 因儒鄉齊訴, 有所論報, 而沿邑皆有物產收稅之規, 本府以煮鹽之處, 曾無此規, 故依他例收稅, 以掇民弊之意, 題送云, 民庫之虧欠日增, 稅穀之賃船漸艱, 民邑之弊, 轉至難支之境, 營邑之以此爲矯揉之方者, 容或無怪, 而此事在邑民, 雖爲掇弊, 在江民, 係是創行, 今此詢瘼恤隱之下, 事當一併革罷, 而不揆邑勢, 徒循民情, 亦是不通之論, 此則分付該道道臣, 本府結米縮條稅穀船價之弊, 營邑往復爛商, 從長論列, 枚報本司, 以爲柴鹽稅存罷間處決之地, 恐合事宜, 以此意, 分付於各司及該道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175책, 정조 13년 1789년 12월21일(음)>

### 경제/재정

**左議政 蔡濟恭이 慶尙左水使을 大棗浦로 옮기자는 狀請을 덮어두는 문제를 논의하다**

이번 10월 20일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좌의정 체제공이 아뢰기를, (….) 또 아뢰기를, “지난번 강계(江界) 백성의 폐막(弊瘼)을 물은 초기(草記)로 인하여 **남양부(南陽府)**의 시·염·선세(柴鹽船稅) 일관(一款)을 영읍에서 충분히 상의하여 날날이 보고하고 놔둘지 없앨지 간에 결정해 처리하라는 뜻으로 복계(覆啓)하여 행회(行會)하라 하였습니다. 경기 전 감사 서유방(徐有防)의 아뢰 바를 보니 해 부사 이언신(李彦薰)의 첩보(牒報)를 날날이 들고 ‘결미(結米) 축조(縮條) 일은 상정(詳定)을 설치한 뒤에 각 궁(宮)에서 면세(免稅)하여 상납(上納)한 것이 2백여 결인데 민고(民庫)에서 받은 6두(斗)와 잡역(雜役)이 모두 면세상납조에 들어있으므로 나중에 부채(負債)가 1천여 금(金)이 되며, 세곡(稅穀) 선가(船價)의 일은 본부(府)의 대동(大同)을 꾸려 떠날 때에 매 1백 석에 단지 8석을 주었으므로 뱃놈[船漢]이 죄에 저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상납을 지체하여 상선(商船)은 염(鹽) 1석에 세(稅) 1푼[分], 시선(柴船)은 전(錢) 1냥에 세 1푼을 민고에 봉입하며 대동 선가에 더 주어 제반 공역(公役)에 보태 썼는데 시행한 지 한두 해에 주객이 모두 편하므로 강계 백성을 불러서 상세하게 질문하였더니 아마도 하속배(下屬輩)들이 조종한 까닭인지 싶은데 과연 폐막을 물은 날에 양대(仰對)한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읍(沿邑)의 물산이 나는 곳에는 모두 수세(收稅)의 법규가 있어 이 자잘한 세를 취하여 매우 고질적인 폐단을 구하는 것은 편의한 정사를 하는 데에 해롭지 않습니다.’ 하였습니다. **남양**에서는 이미 절급하다고 하며 상선에서 세를 거두는 것 또한 자잘하다고 하는데 이 자잘한 것을 거두어서 절급한 것을 구하는 것이 비록 편의(便宜)한 정사를 하는데 해롭지는 않으나 단지 균역(均役) 절목(節目)을 생각하면 지극히 엄중한 것이므로 모든 염분(鹽盆)과 상선에 대해 비록 1푼의 돈이라도 균역청이 아니면 감히 첩징(疊徵)할 수 없는 것인데 지금 만약 그 거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으로 그 과외(科外)의 징렴(徵斂)을 허락한다면 균역청절목이 어찌 점차로 어그러지지 않을 것을 알겠습니까? 도신을 종종추고하고, 염·시의 수세(收稅)는 속히 혁파하게 하라는 뜻으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

또 아뢰기를, “광주(廣州)의 양면(兩面)을 **수원(水原)**에 이속(移屬)한 후에 수어청(守御廳)의 수미(收米) 가운데 축이 난 것을 지난날 연중(筵中)에서 관서(關西)의 소미(小米)로 혹은 본청의 첨향조(添餉條)에서 추이하여 채워 보충하라는 뜻으로 하교한 바가 있었습니

다. 관서의 쌀은 계속 이어 옮겨주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침향조를 지방(支放)에 옮겨주는 것은 비록 민망스럽다 하지만 이것을 보충해 쓰는 외에 다시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감히 아쉽니다.” 하니, 임금의 그리하라 하였다.

今十月二十日,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左議政蔡所啓, (…) 又所啓, 頃因江民詢瘼草記, 南陽府柴鹽船稅一款, 營邑爛商枚報, 以爲存罷問決處之意, 覆啓行會矣, 卽見京坻前監司徐有防所報, 則枚舉該府使李彥薰牒報, 以爲結米縮條事, 詳定設施之後, 各宮免稅上納爲二百餘結, 民庫所捧六斗, 雜役併入於免稅上納條, 故後來負債爲千餘金, 稅穀船價事, 本府大同裝發時, 每百石只給八石, 故船漢抵罪謀避, 上納愆期, 商船鹽一石稅一分, 柴船錢一兩, 稅一分捧入民庫, 添給大同船價, 補用諸般公役, 行之一二年, 主客俱便, 招致江民, 詳細質問則以爲, 意以下屬輩操縱之致, 果於詢瘼, 日有所仰對云, 而沿邑物產之處, 俱有收稅之規, 取此零瑣之稅, 以掇至痼之弊, 不害爲便宜之政, 爲辭矣. 南陽事勢, 旣云切急, 商船斂稅, 亦曰零瑣, 收此零瑣, 以掇切急, 雖不害爲便宜之政, 但念均役節目, 至爲嚴重, 凡於鹽盆及商船, 雖一分錢, 非均廳則莫敢疊徵, 今若以其所收之不多, 許其科外徵斂, 則均廳節目, 安知不漸次虧壞乎, 道臣從重推考, 鹽柴收稅, 亟令革罷之意, 分付何如. 上曰, 依爲之. (…) 又所啓, 廣州兩面移屬水原之後, 守廳收米之見縮者, 頃日筵中, 以關西小米, 或本廳添餉條, 推移充補之意, 有所下教矣, 關西米則有難續續移畫, 添餉條之移施於支放, 雖曰可悶, 以此補用之外, 更無他策, 故敢達矣, 上曰, 依爲之.

<비변사등록 177책, 정조 14년 1790년 10월21일(음)>

#### 경제/재정

京畿監司가 南陽 등에 지급할 植木 비용 현황을 보고하니 本府納條에서 會減하라고 전교하다

○ 경기감사 서정수(徐鼎修) 계본에 남양(南陽) 등 4읍은 스스로 갖추어 식목을 하는데 그 그루 수를 살펴 값을 주고 회감한 실제 수효를 개록(開錄)할 것에 대하여 전교하기를, “식목에 쓰는 것은 사면이 자별하니 해청에 신칙하여 본부납조(本府納條)에서 즉시 회감하게 하라. 그 나머지 이른바 스스로 갖추는 수효는 반드시 실제 수효로 보고해 오지 않아서 다시 보고해 오게 한 것은 방만함에 가깝다. 다만 이것에 의해 제급(除給: 덜어 내서 줌)할 것을 묘당에서 해도에 신칙하도록 하라.” 하였다.

以京畿監司徐鼎修啓本, 南陽等四邑, 自備植木, 考其株數, 給價會減實數開錄事, 傳曰, 植木所用, 事面自別, 申飭該廳, 俾卽會減於本府納條, 其餘所謂自備之數, 必不以實報來, 更令報來, 近於屑越, 第令依此卽爲除給事, 令廟堂申飭該道.

<비변사등록 180책, 정조 16년 1792년 04월07일(윤)>

#### 경제/재정

南漢山城은 府尹이 民戶를 뽑아 停退 代捧하고 北漢山城도 代捧하게 하라고 전교하다

○ 답하기를, “남한산성은 모두가 향곡을 받는 민호인데 본도에서 환곡은 정퇴하고 향곡은 정퇴하지 않기 때문에 유독 똑같이 대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 옳은 일이겠는가. 더구나 성곶(聲串)과 월곡(月谷) 등의 면은 흉년이 특히 심하게 들었는데 다른 면들이 남양(南陽) 등 고을보다 조금 낫다는 이유로 거론하지 않는 데에 두는 것은 옳지 못하다. 특별히 부윤에게 직접 민호를 뽑게 하고, 가장 우심한 민호와 우심한 민호에 대해서 절반이나 혹은 3분의 1을 정퇴하거나 대봉하는 것을 이에 견주어 조정하라고 도신에게 분부하라.

그리고 북한산성은 형편이 남한산성과 달라서 비록 그들에게는 필시 다른 말이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이곳은 가장 바치기 어려운 곳이니, 대몽하게 해 주라고 역시 분부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答曰，南城無非餉戶，而本道停還不停餉，獨未沾一視之澤豈可乎，況聲串·月谷等面之偏歎，不可以諸面之稍勝於南陽等邑，置之勿論之科，特令府尹親執抄戶，最尤甚戶·尤甚戶折半或三之一停退代捧，視此闊狹事，分付道臣，北漢則事勢異於南城，雖曰於渠輩必無二辭，此則最難捧處，許令代捧事，亦爲分付可也。

<비변사등록 182책, 정조 18년 1794년 10월14일(음)>

### 경제/재정

#### 京畿監司 李在學이 이번 輦路에 포함된 南陽의 還耗를 면제하는 문제를 아뢰다

○ 이번 8월 18일 화성 행궁(華城行宮)에 입시하였을 때에 경기감사 이재학(李在學)이 아뢰기를, “이번에 이렇게 건감하는 혜택을 10개 읍에서 두루 입어 필시 민정이 고무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수원의 구포(鷗浦) 주민 역시 구환 문권을 불태우고 신환의 모조(耗條)를 면제하는 은혜를 입었는데, 구포는 바로 수원과 남양의 접경 지역으로서 남양 지방 역시 이번 거동이 지나는 길에 들어있으므로 감히 이렇게 아뢰입니다.” 하니, 임금의 그리하라 하였다.

今八月十八日，華城行宮入侍時，京畿監司李在學所啓，今此蠲惠之澤，普被十邑，民情想必鼓舞，而水原鷗浦之民，亦蒙舊還焚券，新還除耗之恩矣，鷗浦乃是水原·南陽接界之地，而南陽地方，亦入於今番輦路，故敢此仰達矣，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186책, 정조 21년 1797년 08월18일(음)>

### 경제/재정

#### 남양부사가 청한 牟還의 換作을 粧帖대로 분부하기를 청하다

5월 25일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영의정 심환지(沈煥之)가 아뢰기를 “이는 경기감사 이조승(李祖承)의 장계입니다. 남양부사(南陽府使) 신대윤(申大尹), 장단부사(長湍府使) 구종(具綜), 양근군수(楊根郡守) 정주성(鄭周誠)의 첩정을 낱낱이 들어 말하기를, ‘세 고을의 모환(牟還)은 본래 수량이 많아서 과연 민폐가 없지 않은데, 더구나 지금은 보리농사가 흉년이 들었으니 본색(本色)으로 받는 것은 길이 없습니다. 지금 만약 환작(換作)하여 대봉(代捧)하게 하면 공적으로는 별달리 손해되는 바가 없고 백성들에게는 크게 힘을 퍼줄 수 있습니다. 상항(上項)의 남양부 회부모(會付牟) 7백 71석 영(零), 양근군의 회부모 1천 석을 작조(作租:명색을 벼로 만듦)하고, 장단부의 영진(營賑) 이모(耳牟:귀리) 1천 1백 78석 영을 작작(作稷:명색을 기장으로 만듦)하도록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농사일은 비록 예측할 수는 없지만 두 고을의 모환(牟還)이 오랫동안 민폐가 된 것은 일찍이 익히 들은 바입니다. 한번 환작하면 실로 힘을 퍼주는 방법이 될 것이니, 청한 바에 따라 모두 작조해서 추수하기를 기다려 준봉(準捧)하게 하소서. 기장과 귀리는 모두 걸곡식으로서 어떤 긴밀한 관계가 없고, 장단 근처의 여러 고을에서는 또한 기장이 많아서 폐단이 되는 근심이 없지 않으니, 이 역시 한결같이 모두 작조한 후 준절(準折:비준하여 정함)하여 대봉하도록 일체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

今五月二十五日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領議政沈所啓，此京畿監司李祖承狀啓也，枚舉南陽

府使申大尹·長湍府使具綜·楊根郡守鄭周誠牒呈，以爲三邑牟還，自來數多，果不無民弊，而況今麥事失稔，本色準捧，實無其路，今若換作代捧，則於公別無所損，於民大爲紓力，上項南陽府會付牟七百七十一石零，楊根郡會付牟一千石作租，長湍府營賑耳牟一千一百七十八石零作稷事，請令廟堂稟旨分付矣，秋事雖難預料，而兩邑牟還之久爲民弊，曾所稔聞，一番換作，實爲紓力之道，依所請竝作租，待秋準捧，稷與耳牟，俱是皮穀之無甚關緊者，而長湍近處諸邑，亦不無稷多爲弊之患，此亦一竝作租後，準折代捧之意，一體分付何如，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192책, 순조 1년 1801년 05월26일(음)>

## 경제/재정

### 領議政 徐邁修가 京畿道 南陽 등 3읍의 징수할 수 없는 舊還을 처리하는 문제를 아뢰다

○ 12월 15일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여 이·병방승지(吏兵房承旨)가 포폄 계본(褒貶啓本)을 가지고 함께 입시하였을 때에 영의정 서매수(徐邁修)가 아뢰기를, “지난번 경기감사 서형수(徐澄修)의 장계로 인하여 본도(本道)의 구 환곡(舊還穀)은 임자년조(壬子年條: 정조 16, 1792)를 수봉(收捧)하라고 복계(覆啓)하고 행회(行會)하였습니다. 지금 당해(當該) 감사(監司)의 장계를 보니, ‘임자년의 구 환곡은 비록 2천여 석에 지나지 않지만 단지 남양(南陽) 등 세 고을에만 있기 때문에 매년 받아야 할 수가 자못 많습니다. 또 임자년에서 지금까지 14년이 되어 유망(流亡)과 한 절호(絶戶: 상속자가 없어진 집)가 마을마다 즐비하여 족징(族徵) 이외에는 귀속시킬 곳이 없으나, 몇 고을에서 아직까지 받지 못한 것은 4~5백 석 안팎에 지나지 않을 듯합니다. 탕감(蕩減)의 은전(恩典)을 참으로 감히 아래에서 양청하지 못할 바지만 병진년(丙辰年: 정조 20, 1796)의 예대로 형편대로 분수(分數)하라는 특은(特恩)을 입는다면, 그 가운데에서 도저히 받기 어려운 부류는 조령(朝令)을 선포하고 그대로 독촉을 정지하도록 묘당에서 품처하게 해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청한 바 세 고을의 구 환곡 2천 3백여 석 내에서 이미 받은 것을 제외하면 그 밖에 아직 받지 못한 것은 4~5백 석을 넘지 않는다 하지만, 기왕 지적하여 징수할 곳이 없으면 다만 허부(虛簿: 허위 장부)를 끌어안고 구 환곡으로 남겨 두는 것은 아마도 무실(懋實: 실제에 힘씀)의 정사(政事)가 아닐 듯하니, 마땅히 변통하는 도리가 있어야 하겠기에 감히 이렇게 양달 하옵니다.” 하니, 임금

이 이르기를, “기왕 대신의 연주(筵奏)가 있었으니 탕감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선혜청의 수조안(收租案)은 반드시 세초(歲初)에 각도(各道)에 관문(關文)을 발송해야만 군박(窘迫)할 염려가 없는데 본청(本廳)에는 현재 당상(堂上)이 없습니다. 마감(磨勘)하고 행회(行會)하고 하는 것은 일이 시급하여 날을 허비할 수 없으니, 호조참판(戶曹參判) 박종경(朴宗慶)을 선혜청당상에 환차(還差)하고 신칙하여 즉시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今十二月十五日，大臣·備局堂上引見，吏兵房承旨持褒貶啓本，同爲入侍時，領議政徐所啓，頃因京畿監司徐澄修狀啓，本道舊還，以壬子條收捧之意，覆啓行會矣，卽見該監司狀啓，則以爲壬子舊還，雖不過二千餘石，只在南陽等三邑之故，每年當捧數頗夥然，且壬子于今十有四年流亡絶戶，村村相望，族徵以外，歸屬無處，而數邑未捧，似不過四五百石內外，蕩減之典，固非敢自下仰請，而依丙辰年例，如蒙從便分數之特恩，則就其中萬分難捧之類，可以宣布朝令，仍許停督事，請令廟堂稟處矣，所請三邑舊還二千三百餘石內，除其已捧，則其外未捧不過四五百石，既無指徵之處，則徒擁虛簿，留作舊還，恐非懋實之政，宜有關狹之道，故敢此仰達矣，上曰，既有大臣筵奏，蕩減，可也。

又所啓，惠廳收租案，必於歲初發關各道，然後庶無窘迫之患，而本廳時無堂上，磨勘行會，事

係時急，不容曠日，戶曹參判朴宗慶，惠廳堂上還差，申飭使卽舉行，何如，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196책, 순조 5년 1805년 12월16일(음)>

### 경제/재정

#### 南陽 등 8군의 牟還을 作租하여 징수하도록 할 것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경기감사 김이도(金履度)의 장계를 보니, ‘남양(南陽) 등 8읍의 보리 환자가 너무 많아 주민과 읍이 모두 괴로우니 회부된 보리 중 남양의 5백 섬, 교동(喬桐)의 1천 섬, 죽산(竹山)의 5백 섬, 통진(通津)의 2천 섬, 양근(楊根)의 7백 섬, 용인(龍仁)의 1천 섬을 모두 벼로 바꾸고, 안산(安山)의 6백 25섬은 콩으로 바꾸며, 삭녕(朔寧)의 4백 섬은 조로 바꾸어 가을에 거둬들이도록 묘당에서 품처하게 해주십시오.’ 고 하였습니다. 경기 내의 보리농사는 삼남과 달리 저축이 많으면 백성에게 폐해가 되므로 바꾸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은 해가 없고, 조정에서도 역시 허락을 주저한 적이 없었던 것은 토질에 맞는지 주민이 원하는지를 고려해서입니다. 남양 등 6읍의 보리를 벼로 바꾸는 일, 안산의 보리를 콩으로 바꾸고 삭녕의 보리를 조로 바꾸는 일을 모두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京畿監司金履度狀啓則以爲，南陽等八邑，牟還過多，民邑俱病，會付牟中，南陽五百石，喬桐一千石，竹山五百石，通津二千石，楊根七百石，龍仁一千石，竝作租，安山六百二十五石，作太，朔寧四百石，作粟，待秋收捧事，請令廟堂稟處矣，畿內牟農，與三南有異，多儲則爲弊於民，換作之請，無歲無之，而朝家亦未嘗靳許者，蓋諒其土宜，與民願也，南陽等六邑，以牟換租，及安山牟作太，朔寧牟作粟，竝依狀請施行事，分付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198책, 순조 7년 1807년 05월06일(음)>

### 경제/재정

#### 京畿監司 權常愼의 災實分等狀啓에 대해 回啓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방금 경기감사 권상신(權常愼)의 재실 분등 장계를 보니, 남양(南陽) 등 4개 읍은 우심에, 여주(驪州) 등 23개 읍진은 지차에, 양주(楊州) 등 8개 읍은 초실에 두고 이어 아뢰기를, ‘사목재(事目災) 4백 결 외에 부족재(不足災) 4천 3백 79결 87부 7속을 더 획급(劃給)해 주도록 허락하고, 후록(後錄)한 여러 조항도 모두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후록의 첫째는 남양의 우심면리는 작년 정봉조와 정퇴조의 전량을 계속 정지하게 하고, 이 밖의 차승 면리(差勝面里)는 정봉조는 4분의 1을 징봉(徵捧)하게 하고 정퇴조는 5분의 1을 징봉하게 하며, 인천(仁川) 등 3개 읍의 우심 면리는 작년 정봉조는 4분의 1, 정퇴조는 5분의 1을 징봉하게 하고, 지차 면리는 정봉조는 3분의 1을 징봉하게 하고, 정퇴조는 4분의 1을 징봉하게 하며, 여주 등 23개 읍진의 우심 면리는 작년 정봉조는 3분의 2를 징봉하게 하고, 정퇴조는 절반을 징봉하게 하며, 양주 등 8개 읍은 정봉조는 물론하고, 정퇴조는 3분의 2를 징봉하게 해 달라는 일입니다. 둘째는 환곡에 대해 남양의 우심 면리는 3분의 1을, 이 밖의 차승 면리는 4분의 1을 정퇴하게 하고, 인천 등 3개 읍의 우심 면리는 4분의 1, 지차 면리는 5분의 1을 정퇴하였다가 내년 가을을 기다려 환봉(還捧)하게 해 달라는 일입니다. 셋째는 환향(還餉)에서 우심읍의 우심 면리는 3분의 1, 우심읍의 지차 면리와 지차읍의 우심 면리는 4분의 1을 상당곡으로 준절하여 대봉하였다가 내년 가을을 기다려 도로 본색으로 만들게 해 달라는 일입니다. 넷째는 작년에 대봉하게 한 환곡은 계속 대봉하게 하였다가 내년 가을을 기다려 도로 본색으로 만들게 해 달

라는 일입니다. 다섯째는 대흥(大興), 임진(臨津), 장산(長山) 등의 향곡은 본읍(本邑)에 봉류(捧留)하되 또한 환향(還餉)의 예에 따라 분수(分數)하여 대봉하게 하였다가 내년 가을을 기다려 도로 본색으로 만들게 하고, 북한산성(北漢山城) 평창(平倉)의 향미(餉米)는 봉류해 두지 못하도록 이미 연전에 정탈한 바가 있으므로 감히 우러러 칭하지 못하겠다는 일입니다. 여섯째는 각년(各年)의 구환(舊還)은 우선 봉납하지 말게 해 달라는 일입니다. 일곱째는 금위(禁衛) 어영(御營) 두 영의 강도유향미태(江都留餉米太)는 규례대로 쌀은 매석(每石)에 5냥으로, 콩은 매석에 2냥으로 대봉하였다가 내년 가을을 기다려 도로 본색으로 만들게 해 달라는 일입니다. 여덟째는 수어(守禦) 총융(摠戎) 두 영의 수첩 군관(守楨軍官)과 장초군(壯抄軍)·아병(牙兵) 등의 신미(身米)를 근래의 규례대로 매두(每斗)에 4전(錢)씩 대전으로 거두어들이게 하고, 각양 군관(軍官)으로 전부터 납미(納米)했던 자도 일체로 대봉하게 해 달라는 일입니다. 아홉째는 각 아문에 납부할 각양 신포는 지금의 백성들 형편으로는 실로 아울러 독촉하기가 곤란하니, 작년 정퇴조를 우심읍의 우심호(尤甚戶)는 전 수량을, 우심읍의 지차호(之次戶)·지차읍의 우심호는 절반을 계속 정퇴하였다가 내년 가을을 기다려 준봉(準捧)하게 해 달라는 일입니다. 열번째는 증미태(拯米太)는 모두 정퇴하도록 허락해 달라는 일입니다. 열한번째는 노비를 추쇄하고 빚을 징수하는 것은 내년 가을까지 방색해 달라는 일입니다. 옛날에 이른바 ‘비록 풍년을 만난 해라 하더라도 재해를 입은 데가 많다’ 한 것은 대개 풍처(豐處)에서는 풍작을 이루었더라도 재처(災處)에서는 치우치게 재해를 입었기 때문인데 올해 경기의 농사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더구나 올해는 풍처에서 반드시 순풍(純豐)을 이루지 못하였고 재처에서는 혹독한 재해를 입음이 많았으니, 재해와 풍작을 비교하면 재해의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한강(漢江) 이남(以南) 연읍(沿邑)의 바닷가 각면(各面)에 있어서는 처음에는 이른 가뭄으로 병을 앓다가 두 번째는 해일(海溢)에 손상을 입었고 또 7월의 거센 해풍(海風)에 몽땅 손실을 입었는데 이에 **남양** 등 여러 고을에서는 간간이 온 들판 전체가 재해를 입은 곳이 많습니다. 도신이 고을에 대해서는 분등을 하고 재해를 입은 곳에 대해서는 가청(加請)을 하였는데 그 형세를 돌아보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요청한 분등은 그대로 시행하고, 재결(災結)은 호조의 사목재로는 진실로 그 태반이 부족할 것이나 5천 결에 가깝게 획급하기를 청한 것은 아무래도 절약(節約)에는 흠이 있다 하겠습니까. 작년 가을의 재결은 차치물론(且置勿論)하고라도 본도(本道)에서 가장 많았던 재결은 임자년(壬子年: 정조16, 1792)과 갑인년(甲寅年: 정조18, 1794)보다 더함이 없고 다음으로는 신해년(辛亥年: 정조15, 1791)인데 신해년에도 4천여 결이었으니, 만약 올해의 재결을 위로 신해년의 재충(災摠)과 비교해 본다면 지나친 데서 형평(衡平)을 잃었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 원래 획하한 4백 결 이외에 다시 3천 4백 79결 영을 추가로 획급하여 원래 획하한 것과 합하면 3천 8백여 결이 되니, 이것으로 고르게 표재(俵災)하게 해야 하겠습니까. 작년의 환향은 겨울 초기에 도신의 장계로 인하여 기한을 물린 것을 정퇴(停退)라고 하고 세말(歲末)에 특별 하교로 인하여 정지하도록 허락한 것을 정봉(停捧)이라고 하였으나 정퇴와 정봉을 논할 것 없이 모두 작년에 받아들여야 했던 것이라면 올해에 마저 받아야 함은 다시 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우심의 4개 읍 가운데 **남양** 백성들의 형세가 더욱 절박한 지경에 있는 것은 대개 여러 해 거듭된 기근이 **남양**이 가장 심하였고 작년 가을의 대흉도 **남양**이 가장 혹심하였는데 올해 치우치게 입은 재해도 **남양**보다 심한 곳이 없기 때문인데 더구나 해면(海面)의 전황(全荒)은 호남의 연해읍(沿海邑)보다도 심하여 현금의 고통은 필시 빨빨이 흩어지는 데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도신이 장계에서 **남양**을 집어내어 별도로 구휼해야 한다고 한 것은 실로 사실에서 벗어난 말

이 아닐 것이니, 우심 면리와 차승 면리는 분수하여 징봉하게 해 달라는 청은 그대로 시행하며 인천 등 3개 읍의 우심 면리의 징봉조는 3분의 1을 징봉하게 하고, 정퇴조는 4분의 1을 징봉하게 하며, 지차 면리에서 정봉조는 절반을 징봉하게 하고, 정퇴조는 3분의 1을 징봉하게 하며, 여주 등 23개 읍진의 우심 면리의 정봉·정퇴 두 조항은 모두 3분의 2를 징봉하게 하고, 지차 면리의 정퇴조는 4분의 3을 징봉하게 하고, 정봉조는 전량을 징봉하게 하며, 양주 등 8개 읍은 기왕 초실에 두었으니, 정봉과 정퇴의 전수량을 징봉하게 해야 하겠습니까. 당년의 신환(新還)에 있어서는 **남양**과 인천 등 3개 읍에 대해 분수하여 정퇴를 청한 것과 우심읍과 지차읍에 대해 준절하여 대봉하게 해 달라는 것은 모두 지나치게 청한 것이 아니며 작년의 대봉을 계속 대봉하게 해 달라는 것도 형세로 볼 때 옳은 것 같고 대흥, 임진, 장산의 성향(城餉)을 본읍에 봉류하게 하는 것과 곡물을 분수하여 대봉하게 하는 것은 바로 작년에 이미 시행했던 것이니 모두 그대로 시행하게 해야 하겠습니까. 북한산성의 성향을 우심의 4개 읍은 작년의 예대로 본읍에 봉류하게 하고, 지차읍은 비록 준납(準納)하게 하더라도 재해를 입은 백성들이 직접 산창(山倉)으로 수납하는 것은 폐해를 염려해야 하니 모두 평창에 수납하게 하고 초실읍은 물론하며 구환은 초실읍과 지차읍에서는 의당 분수하여 징봉해야 하겠으나 각 아문의 곡식은 전부 교동(喬桐)에 있는데 교동이 비록 지차읍이지만 여러 해 흉작을 겪은 뒤이라 역시 거론하기가 어려우니 양호(兩湖)의 예대로 계속 정지하게 하며 금위 어영 두 영의 강도유향미태는 작년의 예대로 대전하게 하고, 수어 충용청 두 영의 각양 군관과 장초군·아병 등의 신미와 납미 역시 대전으로 거두게 하며 각 아문의 작년에 정퇴한 신포는 우심읍과 지차읍은 분등(分等)하고 분호(分戶)한 다음 분수하여 계속 정퇴하게 하고, 증미태는 정퇴하게 하며, 노비를 추쇄하고 빚을 징수하는 것을 방색하는 것은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京畿監司權常愼災實分等狀啓，則**南陽**等四邑置之尤甚，驪州等二十三邑·鎭置之次，楊州等八邑置之稍實，仍以爲，事目災四百結外，不足災四千三百七十九結八十七負七束，特許加劃，後錄諸條，竝請令廟堂稟旨分付矣，其一，**南陽**尤甚面里，昨年停捧·停退條全數仍停，外此差勝面里，停捧條四分一·徵捧，停退條五分一徵捧，仁川等三邑尤甚面里，昨年停捧條四分一徵捧，停退條五分一徵捧，之次面里，徵捧條三分一徵捧，停退條四分一徵捧，驪州等二十三邑·鎭尤甚面里，昨年停捧條三分二徵捧，停退條折半徵捧，楊州等八邑，停捧條勿論，停退條三分二徵捧事也，其一，還穀**南陽**尤甚面里三分一，外此差勝面里四分一停退，仁川等三邑尤甚面里，四分一，之次面里，五分一停退，待明秋還捧事也，其一，還餉尤甚邑之尤甚面里，三分一，尤甚邑之之次面里之次邑之尤甚面里，四分一以相當穀準折代捧，待明秋還作本色事也，其一，昨年代捧還穀，仍爲代捧，待明秋還作本色事也，其一，大興·臨津·長山等餉穀，捧留本邑，而亦依還餉例，分數代捧，待明秋還作本色，北漢平倉餉米，無得捧留之意，既有年前定奪，不敢援例仰請事也，其一，各年舊還，姑許勿捧事也，其一，禁·御兩營江都留餉米太，依例以米每石五兩·太每石二兩代捧，待明秋還作本色事也，其一，守·摠兩營守堞軍官·壯抄牙兵等身米，依近例每斗以四錢，代錢收納，各樣軍官之自前納米者，一體代捧事也，其一，各衙門所納各樣身布，目今民勢，實難竝督，昨年停退條尤甚邑之尤甚戶，全數，尤甚邑之之次戶·之次邑之尤甚戶，折半仍停，待明秋準捧事也，其一，拯米太竝許停退事也，其一，推奴徵債限明秋防塞事也，古所謂雖當占豐之歲，亦有多災之時，蓋由於豐處雖豐，災處偏災之故，而今年畿農，政如此矣，況今年則豐處，未必純豐，而災處多被酷災，以災較豐，則災分數居多，而至如漢南沿邑之濱海各面，始病於早早，再傷於海溢，又爲卒瘁於七月之風，**南陽**等數邑，間多舉一坪全災之處，道臣之邑則分等，災則加請，顧其勢蓋不得不然，所請分等依施，災結則地部事

目，固慮其大半不給，而若其近五千結之請劃，則終欠節約矣，昨秋災結，且置無論，本道最多之災，莫過於壬子·甲寅，次之爲辛亥，而辛亥爲四千餘結，若以今年災，上比辛亥摠，則失之於過矣，元劃下四百結外，更以三千四百七十九結零加劃，與元劃合爲三千八百餘結，使之以此均俵，昨年餉還，冬初因道啓，退限者，謂之停退，歲末以特教，許停者，謂之停捧，無論停退停捧，俱是昨年當捧，則今年畢納，無容更議，而但今尤甚四邑中，**南陽**民勢，尤在於十分地頭，蓋屢年存饑，**南陽**最劇，昨秋大無，**南陽**最酷，而加以今年偏被之災，無如**南陽**之爲甚，況海面全荒，甚於湖南沿邑，見今瘡痍，必至渙散，道啓之拈出**南陽**，別加存恤，實非過實之語，尤甚差勝面，分數徵捧之請，依施，仁川等三邑尤甚面里，停捧條三分一徵捧，停退條四分一徵捧，之次面里，停捧條折半徵捧，停退條三分一徵捧，驪州等二十三邑鎮尤甚面里，停捧·停退兩條竝三分二徵捧，之次面里，停退條四分三徵捧，停捧條全數徵捧，楊州等八邑，既是稍實，停捧·停退，全數徵捧，當年新還，則**南陽**及仁川等三邑之分數請停，尤甚之次邑之準折代捧，俱非過當之請，昨年代捧之仍爲代捧，其勢似然，大興·臨津·長山城餉之捧留本邑，穀物之分數代捧，卽是昨年已施者，竝爲依施，北漢城餉尤甚四邑，依昨年例，捧留本邑，之次邑則雖使之準納，而災民之直輸山倉，爲弊宜念，竝令收納于平倉，而稍實邑則勿論，舊還，當於稍實·之次邑分數徵捧，而各衙門穀，全在於喬桐，喬桐雖是之次邑，屢歲經歉之餘，亦難舉論，依兩湖例仍停，禁·御兩營江都留餉米太，依昨年例代錢，守·摠兩營各樣軍官·壯抄牙兵身米納米，亦令代錢，各衙門昨年停退身布，尤甚·之次邑分等·分戶·分數仍停，拯米太停退，推奴徵債防塞，竝依狀請許施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00책, 순조 10년 1810년 10월19일(음)>

## 경제/재정

京畿監司 趙鐘永이 各營支放穀의 給代를 청하니 各營이 區處하도록 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경기감사 조종영(趙鐘永)의 보고를 보면, ‘장단(長湍)에 있는 송도 유영미(松都留營米) 및 북한산성미(北漢山城米)는 신미년(辛未年:순조11, 1811)에 받아들이지 못한 것에 들어가 금년부터 모조를 제하고 배년(排年)하여 받아들이고 **남양(南陽)**에 있는 총융청미(摠戎廳米) 및 화성(華城)의 겸제조(兼濟租)와 교동(喬桐)의 수영조(水營租)는 기사년(己巳年:순조9, 1809)의 정퇴와 탕감에 들어갔으나 모조는 지방(支放)에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각 당해 영에서 전처럼 독촉하여 납부하게 하였습니다. 장단의 배년하여 받아들이는 것과 송도 유영미의 모조는 3백 29석 영(零)이요, 북한산성의 모조는 24석 영(零)이며, **남양**의 정퇴와 탕감한 총융청미는 금년의 모조와 아울러 1백 86석 영(零)이요, 겸제조는 금년의 모조와 아울러 1백 79석 영(零)이며, 수영조는 금년의 모조와 아울러 19석 영(零)인데 다른 고을의 전례에 따라 모두 아무 아문의 곡식으로 준절하여 급대(給代)하기를 청한다 하였습니다. 두 고을에 있는 각 영(營)의 곡식은 모두 모조를 취하여 지방(支放)하는 것인데, 원래 곡식이 혹 탕감에 줄어들고 모조가 혹 배년 수봉에 감축되어 급대의 획급을 청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형세이나 지금 본도의 곡식 장부로 실로 좋은 방도로 구획(區劃)할 수 없습니다. 송도 유영곡은 금년부터 시작하여 본 곡식을 수에 맞게 받아들일 때까지 본부의 가분(加分)된 모조 가운데에서 매년 가져다 쓰도록 하고, 총융청 및 화성·교동에서 관리하는 모조에 있어서는 수량이 미미하니 각 당해 영에서 형편에 따라 구처하고 아직 당해 고을에 납부하도록 요구하지 말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京畿監司趙鐘永所報，則以爲長湍所在松營米及北漢米，入於辛未未捧，自今年除

耗排捧, **南陽**所在摠廳米及華城兼濟租, 喬桐水營租, 入於己已停退蕩減, 而耗條, 皆是支放所需, 故自各該營, 依前責納, 長湍排捧松營米耗一百二十九石零, 北漢米耗二十四石零, **南陽**停減摠廳米, 竝今年耗一百八十六石零, 兼濟租竝今年耗一百七十九石零, 水營租竝今年耗十九石零, 依他邑已例, 竝以某衙門穀, 準折給代爲辭矣, 兩邑所在各營穀, 皆是取耗支放者, 而元穀, 或縮於蠲蕩, 耗條, 或減於排捧, 給代請劃, 勢所固然, 而以今本道穀簿, 實無以從長區劃, 松營則自今年爲始, 本穀準捧間, 就本府加分耗中, 使之每年取用, 至於摠廳及華城, 喬桐所管耗條, 數既零星, 自各該營, 方便區處, 姑勿責納於該邑之意, 分付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08책, 순조 19년 1819년 12월02일(음)>

### 경제/재정

#### 京畿 暗行御史 李是遠의 別單에 대해 回啓하다

○ 비변사의 계사에, “경기 암행어사 이시원(李是遠)의 별단(別單)을 보면 (...) 그 하나는 여주(驪州)의 방역청(坊役廳)은 바로 다른 읍의 민고(民庫)입니다. 이른바 뒤쫓아 마련한 명색이니 엄하게 금단하여 지금부터 이후로는 민고로서 여주·**남양(南陽)** 등 제읍(諸邑)처럼 모두 연말에 장부를 순영(巡營)에서 마감하는 일입니다. 민고의 출입(出入: 지출과 수입)을 순영에서 마감하는 것은 역시 다른 도(道)의 이례(已例)가 있습니다. 이를 도신에게 주어 붙여 재처(裁處)하게 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삭녕군(朔寧郡)의 괘렴(卦斂)하는 폐단은 병술년(丙戌年: 순조26, 1826)에 수계(繡啓)로 인하여 혁파(革罷)하였는데 남은 것이 52결(結) 영(零)이 있어 이것이 해읍 백성의 뼈에 사무치는 폐막이 되고 있으므로 예 그대로 배정(排定)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가총(加摠) 52결 영은 분수(分數)하고 조사해 줄여 백성을 급한데에서 구하는 효과가 있게 하며, 해군에 또 유(油: 기름)·청(淸: 풀) 값을 전결에 배정하는 것이 있는데 곧 이는 원래부터 잘못된 규례이므로 지금 이미 혁파하였습니다. 위 두 가지 일은 이정절목(釐整節目)에 의하여 혹 고치는 일이 없게 하는 일입니다. 해결(該結)의 폐단은 원래부터 문란하여 중간에 변통하였으나 도리어 폐단이 생겼습니다. 지금 이 수의(繡衣)의 예대로 배정하자는 것 역시 오래 시행하여 폐단이 없기를 보장하기 어려우니 모름지기 한 번 조사해야만 비로소 쌓인 폐단을 분명히 시정할 수 있으며, 유·청을 전결에 배정하는 것 역시 잘못된 징수에 관계되니 아울러 도신으로 하여금 철저히 조사하게 하여 영원히 실제 효과가 있게 해야 하겠습니다. (...)

司啓辭, 卽見京畿暗行御史李是遠別單, (...) 其一, 驪州坊役廳, 卽他邑民庫也, 所謂追磨鍊名色, 嚴加禁斷, 從今以後, 有民庫之如驪州·**南陽**等諸邑, 皆令歲終, 勘簿於巡營事也, 民庫出入之磨勘於巡營, 亦有他道已例, 此則付之道臣, 量宜裁處, (...)

<비변사등록 222책, 순조 34년 1834년 02월02일(음)>

### 경제/재정

#### 沿海邑의 還上穀을 감하여 받는 일을 아뢰다

아뢰기를, "이달 19일 옥당에서 뵈기를 청하여 입시하였을 때 부응교 이민적(李敏迪)이 아뢰기를, '경기(京畿)는 나라의 근본이니 너그럽게 보살펴야 마땅합니다. 금년에 연해읍(沿海邑)의 기황(飢荒)은 삼남(三南)과 다를 바가 없는데 환자곡[還上穀]의 상납을 독촉하여 떠돌아다니는 백성이 많다 합니다. 군향(軍餉)이 매우 중요하나 백성의 이산(離散)도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지금까지 받지 못한 것은 이제 다시 독촉한다 해도 헐벗은 처지에 결코 상납할 힘이 없으니 변통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께서 '묘당으로 하

여금 참작해서 처리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얼마 전 경기감사 정지화(鄭知和)의 장계로 말미암아 본사에서는 연해의 피해는 더욱 심하고 민력(民力)은 강도(江都)의 이전미(移轉米)를 실어다 바치느라 이미 탕진(蕩盡)하여 상평청(常平廳)이나 호조의 회록(會錄)에 붙여질 각종 곡물은 원 수량대로 받기 어려울 것이라 여겨, 피해가 더 심한 김포(金浦), 통진(通津), 교하(交河), 양천(陽川), 부평(富平), 인천(仁川), 교동(喬桐)등 7읍은 3분의 1로, 기타 **수원(水原)**, **남양(南陽)**, 고양(高陽), 풍덕(豐德) 등은 피해가 더욱 심한 면(面)만 3분의 2로 감하여 받기로 이미 복계(覆啓)하여 윤희를 받들어 감사에게 분부하였습니다. 감히 아됩니다."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啓曰, 今十一月十九日玉堂請對入侍時, 副應教李敏迪所啓, 京畿國之根本, 理宜優恤, 今年沿海之邑飢荒, 無異於三南, 而督捧還上, 民多流離云, 軍餉固重, 赤子之失所, 亦不可不念, 且到今不得捧者, 則今雖更催赤立之餘, 決無備納之勢, 合有變通之道矣, 上曰, 令廟堂參酌稟處事命下矣, 頃因京畿監司鄭和和狀啓, 本司以沿海被災尤甚, 而民力已竭, 於江都移轉之輸納常平廳戶曹會付各穀, 勢難准捧, 尤甚被災金浦, 通津·交河·陽川·當平·仁川·喬桐等七邑則三分之一, 其餘**水原·南陽·高陽·豐德**等邑則尤甚被災面, 三分之二減數收捧之意, 已爲覆啓蒙允, 分付于道臣矣, 敢啓, 答曰, 知道.

<비변사등록 21책, 현종 2년 1661년 11월 23일(음)>

## 경제/재정

### 各道糶弊矯揉別單을 수정하여 들이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각도(各道)의 적폐(糶弊)를 바로잡는 일을 별단(別單)으로 계하(啓下)받은 뒤에 행회(行會)하겠다고 이미 연석(筵席)에서 아뢰었습니다. 별단을 수정해서 올립니다만은 다만 생각하건대, 군정(軍政)과 전정(田政)도 백성들의 고통에 관계되는 만큼 도신이 된 사람이 폐단을 바로잡을 방도를 갖추어 진달하는 것은 진실로 그만둘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이번에 하문(下問)하실 때에 적폐를 먼저 언급하셨으므로 육도(六道)와 사도(四都)에서는 적폐만 진달하였는데, 유독 양서(兩西)에서만 군정과 전정의 폐단까지 아울러 거론하였는데, 이는 덮어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별단(別單)

경기(京畿)

장단(長湍) 구풍덕(舊豐德)의 향미(餉米) 중에 옮겨 온 1천 1백 50여 석을 이전(移轉)하여 도로 보내게 해 주소서. 남창(南倉)의 향미를 5백 석에 한하여 구풍덕으로 도로 보낸다.

통진(通津) 강도(江都)에서 이전한 금위영(禁衛營)의 미(米) 4백 16석과 태(太) 4백 16석을 이전하여 도로 보내게 해 주소서. 미와 태는 4백 석에 한정해서 이전대로 조적(糶糶)하고, 그 나머지 4백 30여 석은 상정가(詳定價)로 대전(代錢)해서 금위영에 상납(上納)한다.

**남양(南陽)** 조(租) 2천 9백 40석과 미 7백 32석을 농사가 풍년이 들거든 모조(耗條)를 제하고 배봉(排奉)하게 해 주소서. (…)

司啓曰, 各道糶弊矯揉, 別單啓下後行會事, 纔已筵奏矣, 別單修正以入, 而第念軍·田兩政, 亦係民隱, 則爲道臣者, 備陳矯揉之方, 固所不可已者也, 但今番下詢, 先及糶弊, 故六道四都, 只陳糶弊而惟獨兩西, 竝舉軍·田兩弊, 此則置之何如, 答曰, 允.

別單

京畿

長湍 請舊豐德之餉米, 移來一千一百五十餘石, 移轉還送.

南倉餉米，限五百石，還送舊豐德。

通津 請江都移轉禁營米四百十六石，太四百十六石，移轉還送。

米太 限四百石依前糶糶，其餘四百三十餘石。

以詳定作錢上納於禁衛營。

南陽 請租二千九百四十石，米七百三十二石，待年豐除耗排捧。(…)

<비변사등록 240책, 철종 4년 1853년 01월18일(음)>

## 경제/재정

### 貢人들의 弊虞에 대해 물은 결과를 보고하고 그 대책을 논의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공인(貢人)들의 폐단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도록 본부(本府)에 계하(啓下)하셨습니다. 생각을 들어보니, 봉상시(奉常寺)의 공인들은 말하기를, ‘공물(貢物)의 석수(石數)가 1만 3천 석인데, 병인년(丙寅年:고종3, 1866)에 소용에 따라 감합(勘合)한 이후부터 해마다 이익이 없는 적이 많아서 지금의 형세로는 책임지고 물품을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감합하는 한 가지 조항은 특별히 병인년 이전의 규례대로 지출해 주는 일입니다.’ 하였습니다. 근래에 각 공인들의 형세가 위태로워 지탱하기가 어려우니, 쇠뇌의 끝 같고 장대의 꼭대기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물에 대해서는 제수(祭需)를 진배(進排)하는 것이 더욱이나 중대하여 조정의 염려도 원래부터 각별하였으나, 감합은 삭감한 것이 가장 많고 주어야 할 값은 적체된 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정식에 따라 마련해서 계속하여 부족함이 없는 것은 바로 또한 이 무리들이 삼가 두려워하며 성실히 힘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거동하시는 길에 폐단을 물으신 것은 특별히 가엾게 여겨서 도우려는 성상의 뜻에서 나온 것이니, 별도로 각별히 바로잡아 구제하는 은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공물의 공가(貢價)를 지금부터 이후로는 특별히 규례에 의해 지급해서 지탱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호조와 선혜청에 분부하게 하소서. 제용감(濟用監)의 공인들은 말하기를, ‘각 항목의 물건으로서 진배할 것이 너무 많은데, 소용에 따라 감합한 후로는 남아 있는 것과 더 쓴 것을 상계(相計)할 수 없으므로 해마다 빚을 저서 형세가 지탱하고 보전하기 어려우니, 특별히 별도로 가엾게 여겨서 도와주시는 일입니다.’ 하였습니다. 해당 공인들이 관장하는 물건은 해마다 더 쓴 것이 있고 남는 것이 있는데, 더 쓴 것과 남는 것을 상계할 수 없다면 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오히려 말할 것도 없거니와 부채만 늘어나는 것은 형편상 불가피한 일입니다. 지금부터는 남는 것과 더 쓴 것을 서로 통틀어 상계하기를 예전 규례에 비추어 시행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폐단이 없게 하소서. 염계(鹽契)의 공인들은 말하기를, ‘공가는 본래 순미(純米)로 받았었는데, 돈으로 대신 지불받는 것이 곧바로 근래의 규례가 되었으니, 물가가 곱절 내지 닷 곱절 이상 되자 없어지는 비용이 더욱 많아서 가산을 탕진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근기(近畿) 지방의 소금 생산지인 남양(南陽)·인천(仁川)·안산(安山) 등지에서 약간의 세금을 거두어 비용에 보충하는 일입니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잔약한 공물로서, 그들이 받는 바를 가지고 공급하는 바에 응한다는 것으로 실행할 수 없는 일이며, 소금을 생산하는 읍에서 세금을 거두어 비용에 보충한다는 것은 구차한 정사입니다. 거행을 논의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으니, 공가를 규례에 의하여 순미로 지출함으로써 조금이라도 힘을 펴는 방도로 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府啓曰，貢人詢瘼所懷，啓下本府矣，取見其所懷，則奉常寺貢人等，以爲貢物石數一萬三千石，而自丙寅隨用勘合以後，每年無利夥多，以今事勢，責應無路，勘合一款，特依丙寅以前例上下

事也，挽近各貢事勢之岌嶮難支，可謂弩末竿頭也，至於此貢，則享需進排，尤爲綦重，朝家軫念，由來迥別，而勘合則刪減最多，應下則積壓未受，尙能依式措備，繼而無乏者，卽亦此輩之謹畏誠勤然也，今茲蹕路俯詢，特出於矜恤之聖意，則合有別般矯揉之澤，該貢貢價，從今以往，特依舊例上下，以爲支保之地事，分付戶惠廳，濟用監貢人等，以爲各項物種，進排浩多，而隨用勘合之後，遺在加用，不得相計，年年負債，勢難支保，特賜別般矜恤事也，該貢所管物種，每年有加用者，有遺在者，而其用其在，不得相計，則渠輩之沾溉，尙矣勿論，債負之夥多，勢所必致，自今遺在加用，互相通計，照舊規施行，毋至有呼冤之弊，鹽契貢人等，以爲受價本以純米，而代錢上下，便成近例，物價倍蓰，浮費尤多，轉至蕩敗之境，就近畿鹽產邑南陽·仁川·安山等地，從略收稅，以爲補用事也，此是至殘之貢也，以其所受，應其所供，誠行不得者，而產鹽邑之收稅補用，苟且之政也，不當舉議，貢價依舊以純米上下，俾爲一分紓力之道，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61책, 고종 14년 1877년 07월21일(음)>

### 경제/재정

#### 京畿 暗行御史 李建昌의 別單에 대해 보고하고 그 대책을 논의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경기 암행어사 이진창(李建昌)의 별단(別單)을 보니 (...) 그 하나는 남양부(南陽府)의 잡역(雜役)은 결마다 6두(斗) 수봉하여 2두는 관고(官庫)에 들이고 1두는 민고(民庫)에 들였으니 그 비용을 의당 관고에서 맡아야 하나 이전의 도신이 관고를 없애고서 민고를 만든 것은 폐단을 생각해야 하니 하나같이 병인년(丙寅年:고종3, 1866)의 선례대로 하여 관고와 민고를 물론하고 합하여 창고로 만들어서 그대로 관고라고 명칭하고, 그 부족한 것은 관(官)에서 갚아주도록 절목(節目)을 만들어 내되 도신에게 신칙하여 시행하게 하고, 결역전(結役錢) 1냥을 수봉함은 바로 대부도(大阜島)의 포료조(砲料條)이나 이전의 습성이 매우 교활하여 요를 주는 것에 실질이 없으니 해부에서 금년의 결역전을 수봉하게 하지 말고, 포료를 우선 정지하게 하여 묘당에서 도신에게 분부하여 대부도의 포료를 영원히 혁파하게 하는 일입니다. 관고와 민고의 합하여 하나의 창고로 만든은 이미 수관(繡關:암행어사의 관문)으로 행회하였으나 대부도의 포료 명색은 사실 섬의 민호(民戶)가 지탱하기 어려우니 이제부터 혁파함이 사실 사리에 맞겠으니 이것으로 본도(本道)에 알리소서. (...)

府啓曰，卽見京畿暗行御史李建昌別單，則 (...) 其一，南陽府雜役，每結六斗收捧，二入官庫，一入民庫，則其所費用，宜責官庫，而前道臣之罷官庫而爲民庫者，弊所當念，故一依丙寅己例，無論官庫民庫，合爲一庫，仍稱官庫，其所不足，自官報給事，成出節目矣，令道臣申飭施行，結役錢一兩收捧，卽大阜島砲料條，而吏習濫猾，給料無實，使該府今年結役錢，勿爲收捧，砲料姑爲停止，令廟堂分付道臣，大阜砲料，永爲革罷事也，官庫民庫之合爲一庫，既有繡關行會，而大阜砲料名色，實是島戶之難支，自今革罷，實合事宜，以此知委本道，(...)

<비변사등록 264책, 고종 20년 1883년 06월02일(음)>

### 경제/재정

#### 竹山 등의 稅納을 詳定價로 代納하게 하고 南陽은 軍布를 蕩減할 것 등을 청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기내(畿內)의 몇몇 고을에 대한 결세(結稅)의 상정(詳定)은 오로지 만부득이한 정사에서 연유한 것이며, 작년 가을에 다시 본색(本色)으로 책징(責徵)한 것은 비단 토지에 대한 부세(賦稅)가 법의 근본 취지에 있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지탱하기도

지극히 어려워서 그러한 것이었으니, 지금의 일의 대체에 있어서 변통하는 것은 진실로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海道(該道)의 도신(道臣)이 장계와 계문으로 간청하기를 그치지 않으니, 백성들의 정황과 고을의 형세가 마련해낼 수 없다는 것을 자연히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죽산(竹山)·양지(陽智)·여주(驪州)·포천(抱川) 네 고을의 세납(稅納)은 이미 시행한 전례에 의거하여 모두 갑신년(甲申年:고종21, 1884)부터 시작해서 3년에 한하여 상정가(詳定價)로 대납하게 하고, 풍덕(豐德)과 삭녕(朔寧)은 지난번에 계품(啓稟)하여 행회(行會)하였지만 두 고을의 세납 역시 전례에 의거하여 상정가로 대납하게 하되, 풍덕은 기한이 아직 2년 남았으니 다시 논할 필요가 없으며, 삭녕(朔寧)은 만기의 기한이 갑신년에 있었으니 또 2년을 연장하여 시종 은혜를 보여야 합니다. 또 **남양(南陽)** 한 고을은 해마다 책응(策應)이 지극히 번거롭고 많으므로 특별히 생각해 주어야 마땅하니, 군포(軍布)를 탕감하고 대동(大同)을 상정가로 대납하는 것을 모두 단지 금년 조에만 시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윤희한다. **남양**은 책응이 번거롭고 많다는 것을 조정에서 잘 알고 있다. 상정가로 대납하는 것을 특별히 1년 더해서 백성을 돌보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府啓曰,畿內幾邑之結稅詳定, 宣由於萬不獲已之政, 而昨秋更以還責本色者, 不但壤賦法意之攸重, 爲其支調之極艱而然, 則到今事體, 固不當低昂, 而該道臣以報以啓, 申懇不已, 其民情邑勢之無奈措辦, 自可推知, 竹山·陽智·驪州·抱川四邑稅納, 依已施之例, 竝甲申爲始, 限三年詳代, 豐德·朔寧, 向雖有啓稟行會, 兩邑稅納, 亦依已例詳代, 而豐德之限, 尙餘兩載, 不須更論, 朔寧則限滿止在甲申, 又展二年, 庸示終始之惠, 且**南陽**一邑, 課歲策應, 極其浩繁, 合有別般軫念, 軍布之蕩減, 大同之詳代, 竝只以今年條施行事, 分付何如, 答曰, 允, **南陽**之策應浩繁, 朝家之稔悉者也, 詳代特加一年, 以示恤民之意. <비변사등록 266책, 고종 22년 1885년 03월23일(음)>

### 경제/재정

**驪州 등을 제외하고 許代했던畿甸의 各邑은 모두 時價로 代納하게 할 것을 청하다**

선혜청(宣惠廳)의 초기(草記)에, “정식 부세(賦稅)에 대한 법의 취지가 얼마나 엄중한데, 근래 경기의 몇 개 고을에서 연도를 한정하여 대납하도록 청한 것이 비록 백성들을 돌보아 주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현재 경비(經費)가 궁색한 것도 염려스럽습니다. 여주(驪州)와 **남양(南陽)** 이외에 대납을 허락한 각 고을에 대하여 모두 시가(時價)로 대신 바치게 하여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고하기를, “묘당에 가서 상의하라.” 하였다. 宣惠廳草記, 正賦法意, 何等嚴重, 而近來畿甸幾邑之限年請代, 雖出於恤民, 目下經費之窘絀, 亦涉可悶, 驪州·**南陽**外許代各邑, 竝令以時價代納, 以爲牽補之地何如, 傳曰, 就議廟堂. <비변사등록 266책, 고종 22년 1885년 04월06일(음)>

### 경제/재정

**允許받은 일에 대해 草記로 올린 宣惠廳堂上 魚允中을 譴削할 것을 청하다**

○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지난번 경기감사가 장계를 올려 청한 것으로 인하여, 죽산(竹山) 등 7개 고을의 결세(結稅)에 대하여 연도를 한정해서 상정가(詳定價)로 대납하도록 복계(覆啓)하여 윤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혜청(宣惠廳)에서 올린 초기(草記)를 보니, 여주(驪州)와 **남양(南陽)** 이외에 대납을 허락한 각 고을에 대하여 모두 시가로 대신 바

치게 하자고 하였습니다. 나라의 재정이 어려운 데 대하여 누군들 우려하지 않겠습니까마는 궁핍한 백성들에 대한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묘당(廟堂)에서 참작하고 헤아린 것이 어찌 부세를 맡아 보는 관리보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해청(該廳)에서 직접 구별하도록 청하고서는 마음대로 넣고 빼고 하였으니, 일의 체모를 손상시킨 것이 이보다 더 심한 바가 없습니다. 당해 당상관 어윤중(魚允中)에게 견책하고 벼슬을 삭탈하는 법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府啓曰，頃因畿伯狀請，竹山等七邑結稅限年詳代之意，覆啓蒙允，而卽見惠廳草記，驪州·**南陽**外許代各邑，竝以時價代納爲辭矣，國計艱絀，孰不憂悶，而軫念窮鄙，亦由不容不已者，則廟堂斟酌，豈下於掌賦之臣，而該廳之直請區別，擅自存拔，事體乖損，莫此爲甚，該堂上魚允中，施以譴削之典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66책, 고종 22년 1885년 04월06일(음)>

## (2) 교통

### 경제/교통

**쌀을 운송하는 小船을 담당한 沙工 姜仁同이 도망갔으니, 그와 처자를 구금하길 청하다**

아뢰기를, "방금 경기감사가 급하게 보고한 것을 보니, 공청도의 선운선(先運船) 압령차사원(押令差使員) 서천만호(舒川萬戶)가 남양(南陽)에 이르러 알린 내용 안에 '본도의 대·중·소의 선박이 모두 35척으로 초 10일 당진(唐津)의 난지도(蘭芝島)에 모두 모여 나누어 싣고 13일에는 바람을 기다렸습니다. 14일 아침 각 선박이 돛을 올려 항해하여 남양땅 덕물도(德物島)에 도착하여 정박하고 점검했더니, 아산(牙山)의 사공 강인동(姜仁同)과 무상(舞上) 안덕남(安德男)이 격가(格價)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받았으나 빈 배로 올라오다 이곳의 점열에서 빠졌으니 매우 놀랍습니다. 각 선박의 사공 최내(崔內)·갑산(甲山) 등을 추문(推問)했더니, 「강인동의 소선은 난지도 서쪽에서 곧바로 외양(外洋)을 향하여 항해했으니 서로 바라볼 뿐이었는데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으며, 강인동은 원래 마산 태생의 사람이 아니고 본래 황해도 웅진(甕津) 땅 마산촌(馬山村)에 사는 사람으로서 격군 역시 태반이 한 동네 사람이니 도망한 것이 틀림 없다」고 하였습니다.'고 했으니 일이 매우 놀랍습니다. 황해도 감사로 하여금 급히 그의 처자를 몰래 붙잡아 굳게 가두었다가 강인동 등의 선박이 그곳에 돌아오기를 기다려 즉시 잡아 가두고 아뢰라는 뜻을 알리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啓曰, 卽接京畿監司馳報, 公清道先運船押領差使員舒川萬戶, 到南陽傳通內, 本道大中小船並三十五隻, 初十日唐津蘭芝島, 都會分載, 十三日待風, 十四日朝各各船作綜, 行船南陽地德物島到泊照點, 則牙山沙工姜仁同·舞上安德男格價, 則依他受出, 以空船上來, 到此闕點, 極爲驚駭, 推問各船沙工崔內甲山等, 則姜仁同小船, 自蘭芝島西邊外洋, 直向放船, 相望而已, 至今不現, 姜仁同, 元非牙山胎生人, 本以黃海道甕津地馬山村居生之人, 格軍亦是太半同村之人, 逃亡明白云, 事甚痛駭, 令黃海監司急急密捕其妻子, 堅囚, 待姜仁同等船隻還到本土, 卽爲譏捕囚禁啓聞之意行會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9책, 인조 23년 1645년 03월 23일(음)>

### 경제/교통

**領議政과 左議政 등을 江都의 馬場 철폐에 대해 논의하다**

인견할 때 영의정이 아뢰기를, "엿드려 강화유수 조계원의 장계를 보니, 논의하여 처리할 일이 많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유수는 강도(江都)의 형세를 두루 보니 어떻던가?"하였다. 조계원이 말하기를, "대개는 이미 장계에 언급하였고 그 나머지 곡절을 모두 아뢰긴 어렵습니다. 천연의 요새는 비록 행하긴 하나 방비가 매우 어렵습니다. 완전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인력의 다소와 세월의 원근을 신의 얄은 소견으로 헤아릴 바는 못되나, 한갓 자연적인 험준함만 믿고 인사(人事)를 닦지 않으면 장차 버린 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하였다.

좌의정이 말하기를, "낮에는 높은 곳에 올라 살펴보게 하고 밤에는 봉화(烽火)로 서로 응하게 하며 진(陣)을 설치할 곳을 선택하여 대군(大軍)과 소군(小軍)으로 하여금 형세에 따라 서로 돕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창고도 편의에 따라 설치하고 화약의 경우도 반드시 불을 붙여 보고 미리 사방에 창고를 설치하여 군기(軍器) 역시 편의에 따라 옮겨 놓으면 연해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변란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원은 자주 올 수 없으니, 해야

할 일을 지금 분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군기는 비록 부중(府中)에 들지라도 난리에 임하여 옮겨 쓸 수 있다. 창고는 전에 이미 서쪽과 남쪽에 만든 일이 있다."하였다.

조계원이 말하기를, "앞서 두 창고가 있었으나 병자년 (1636 인조14) 이후에 없어지고 그 터만 남아 있습니다."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창고는 어려운 일이 아니니 빨리 만드는 것이 좋겠다."하였다.

병조판서가 아뢰기를, "우리나라는 형세로 볼 때 강도에 비길 만한 곳이 없습니다. 우선 목장을 철폐하되, 세력이 있고 교활한 자의 불법 점유를 금하고 각 섬의 장관(將官)도 맡은 구역을 주고 강화에 들여보낼 기·보병(騎步兵)도 미리 맡은 구역을 나누어 주는 것이 옳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적을 막는 방법은 성(城)과 병(兵)에 있는 것이 아니오, 오로지 장수에게 있다. 나의 소견으로는 장수를 논의하는 것이 우선 앞서야 한다."하였다.

영의정이 말하기를, "강화목장의 맡은 1천여 필입니다. 강화에 소속된 섬은 다섯이요, 남양(南陽)에 소속된 섬은 넷이요, 인천에 소속된 섬은 셋입니다. 말이 혹은 1백여 필, 혹은 5, 60필, 혹은 3, 4백필인데, 홍청도의 광활한 섬을 택하여 본부(本府)의 말을 옮겨놓아야 합니다. 병자년에 옮겨 놓지 않고 목장을 축소하였으므로, 2백 필이 쓰러져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만약 전과 같이 한다면 말의 손실이 클 것입니다. 가을 수확기를 기다려서 옮겨 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목장을 철폐하고 백성에게 경작을 허용함은 비록 좋긴 하나, 철폐한 뒤 백성은 들어가지 않고 사대부가 불법 점유하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만약 강도에 손바닥만한 땅도 황폐해진 곳이 없다면 목장을 철폐하는 것도 좋으나, 그렇지 않으면 마정(馬政)도 중요한 일이므로 경솔히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하고, 이어 물기를, "강도에 과연 죽거나 황폐한 곳이 없는가?"하니, 계원이 말하기를, "병자호란 전에는 목거나 황폐한 곳이 없었으나, 지금은 백성들이 모두 편한 대로 좋은 곳을 가려서 경작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묵었습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목장을 철폐하면 물의 백성이 구름 모이듯 할 수 있겠는가?"하니, 계원이 말하기를, "빈 땅을 경작하게 하고 부역이 없으면 백성들이 보겠으나, 구름 모이듯 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논밭으로 일구어 만들지 못한 것이 얼마나 되는가?"하였고, 이에 조계원이 말하기를, "2백여 섬지기입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목장을 경작하도록 함은 잘못이다. 목자(牧子)의 경우는 경작할 수도 있으나, 관계 없는 백성이 모두 경작하여 먹으면 물과 풀이 좋지 않아 말은 점점 수척할 것이다. 이 폐단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하니, 영의정이 말하기를, "이는 곧 이서(李曙)가 있을 때에 재결한 일입니다. 사복시의 지출이 매우 많습니다. 전에는 사복시에서 거달(巨達: 말치는 일을 맡은 하예)을 고용하여 시켰으나, 지금은 견마(牽馬)하는 사람들을 늙어 부릴 수 없습니다. 거달을 제원(諸員: 雜職의 하나)으로 세우면 난리에 임하여 도망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각처의 목장에 배를 준비하는 문제에 대하여 전에 과연 하교가 있었다. 이는 곧 일구어 논밭으로 만든 곳을 지적하여 말한 것이다. 야금야금 경작하여 들어가서는 안된다. 감목관(監牧官)이 충실하지 못하면, 그 법을 범한 사실을 이곳에서 어찌 알겠는가?"하니, 영의정이 말하기를, "자주 신척하겠습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매양 말을 점검한 수를 보면 점점 전보다 줄어드니 괴이쩍은 일이다."하니, 영의정이 말하기를, "한 번 말을 점검한 뒤에 죽는 말의 수가 매우 많습니다. 아마도

이는 목장 안으로 몰아넣을 때 상처를 입어 그런 듯합니다. 원 숫자가 부실하고 점검한 수도 정확한 것이 아니니 걱정입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일구어 논밭으로 만든 곳이 많으므로 이러한 폐단이 있는 것이다."하였다. 이시백이 말하기를, "오랜 세월을 두고 경영하는 것은 정녕 하루 아침의 위급한 변란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목장을 철폐하는 경우 사대부의 불법 점유를 금지시키는 일은 조계원이 진정 책임자입니다. 강도(江都)를 보장(保障)으로 삼은 바에야 어찌 말을 아껴서야 되겠습니까? 신의 어리석은 생각에는, 목장을 철폐하고 계원에게 소속시켜 백성을 불러모아 농사를 지으면서 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여이징이 말하기를, "목장의 가장 큰 폐단은 말이 밭으로 뛰어들어가 손해가 많은 점입니다. 그리고 목장 안에 한두개의 큰 냇가가 있어 백성들이 모두 관개(灌溉)하는 곳으로 삼으려 하니, 목장의 철폐는 진정 옳습니다. 경작을 허용한 사람에게 군병(軍兵)으로서 호령하면 크게 보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목장을 철폐하면 물의 백성이 옮겨 들어가겠는가?"하니, 조계원이 말하기를

"물의 백성이 옮겨 들어가는 일은 늦을지 빠를지 미리 헤아릴 수 없으나, 민정(民情)은 모두 혁파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이 하직하던 날 감히 아뢴 바 있었으며, 이번에 가서 보니 시골 백성들은 철폐된다는 말을 듣고 환하게 기뻐하는 빛이 있었습니다. 만약 혁파되는 경우 지방의 백성이 반드시 와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1년 안에 모두 들어와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갈 것인지는 신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지방의 백성이 옮겨 들어가 농사를 지으면서 사는 일이 없다면 특별히 혁파하는 본 뜻이 없는 것이다."하니, 계원이 말하기를, "목장을 철폐해야 한다는 논의는 무오년(1618 광해군10)부터 있어 왔습니다. 지금 비록 이를 철폐한다 하더라도 어찌 보장에 큰 도움이야 되겠습니까? 다만 백성들이 모두 '이 목장을 철폐하지 않으면 공자가 사람을 귀히 여기고 말을 천히 여긴 뜻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지금 만약 철폐하면, 신이 비록 잘 다스리지 못할지라도 어찌 사대부의 불법 점유를 허용하겠습니까? 나누어 준 뒤에 자세히 장부에 기록해 두면 어느어느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곳 백성에겐 결코 지급하여서는 안된다. 이러한 논의는 선조(先朝) 때부터 있었는데, 불가한 점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마정(馬政)의 중요함이고, 둘째는 사대부의 불법 점유요, 세째는 관원이 책임이 아닌 경우이다. 이 세 가지 걱정이 없다면 혁파하는 것이 좋겠다. 유수(留守)는 이를 마땅히 잘 해야 한다. 이번 유수 때 철폐된 목장의 말을 해서의 빈섬으로 옮기도록 하라."하니, 영의정이 말하기를, "계원이 만약 잘 하지 못하면 도로 옮겨두는 것도 좋습니다 창고를 설치하여 군량을 비축하고 군기를 만드는 문제는 속히 거행하도록 하되, 창고의 설치는 해조에서 재력을 공급하여 본부로 하여금 만들도록 할 것이나, 가을 수확기를 기다려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유수가 올라왔으니, 그가 말하는 바를 듣고 지급하는 것이 옳다. 군기는 군기시에서 만들어 보내도록 하라. 전부터 보낸 병기가 적지 않은데, 대포는 파열된다 하니 앞으로 만들어 보낼 병기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하였다. (...)

引見時，領相所啓，伏見江華留守趙啓遠狀啓，多有議處之事矣，上曰，留守，遍覽江都形勢，何如，啓遠曰，大概已載狀啓，而其餘曲折，難可盡陳，天塹雖險，防備甚難，如欲作萬全之地，則人力之多少，歲月之久近，非臣淺見，所可逆料，徒恃天險，不修人事，則將未免棄地，左相

曰, 晝則登高瞭望, 夜以烽火相應, 相置陳之地, 使大軍小軍, 形勢相倚, 倉亦隨便列置, 如火藥, 必須點火, 預作庫間於四面, 軍器, 亦隨便移置, 可爲沿海倉卒之用矣, 啓遠, 不可數來, 可爲之事, 趁今分付, 可矣, 上曰, 軍器雖置府中, 臨亂可以移用, 倉則在前, 已有西南造作之事矣, 啓遠曰, 前有兩倉, 丙子之後, 無之, 而有其基矣, 上曰, 倉則不難速造, 可也, 兵判所啓, 我國形勢, 既無江都之比, 先罷牧場, 以禁豪猾之冒占, 各島將官, 亦可招授信地, 騎步之應入江華者, 亦預爲分授信地, 可矣, 上曰, 禦敵之道, 不在城與兵, 專在於將, 以予所見, 論將當先, 領相曰, 江華牧場馬, 千有餘匹, 江華之屬島, 五, **南陽**之屬島, 四, 仁川之屬島, 三, 馬或百餘匹, 或五六十匹, 或三四百匹, 本府馬匹, 宜擇洪清道廣闊之島, 移置矣, 丙子年間, 不爲移置, 而縮其場, 以致二百匹之斃, 今若依前爲之, 馬多損矣, 待秋成移置, 何如, 上曰, 罷牧而許民, 雖可矣, 既罷之後, 民不入而士大夫, 冒占則有何益乎, 若使江都, 無片土之荒, 則罷牧, 亦可, 不然則馬政, 亦重, 不可率爾爲之, 仍問曰, 江都, 果無陳荒處耶, 啓遠曰, 丙子亂前, 無陳荒之處, 而今則民皆任便擇好耕之, 餘皆陳廢矣, 上曰, 罷牧場, 則陸民, 可以雲集耶, 啓遠曰, 耕空地而無賦役, 則民可來而雲集, 難保其必然, 上曰, 未起耕, 幾何, 啓遠曰, 二百餘石落只矣, 上曰, 牧場之許耕, 非矣, 牧子, 雖或可耕, 不干之民, 盡爲耕食, 則水草不好, 馬漸瘦瘠, 未知此患, 始於何時, 領相曰, 此乃李曙在時, 定奪之事也, 司僕寺用處, 甚多, 前則司僕巨達雇, 立爲之, 今則牽馬輩, 殘老不可用, 巨達, 以諸員定立, 似無臨亂逃散之弊矣, 上曰, 各處牧場船隻措備之事, 前果有教, 而此乃指已起耕處也, 不可漸漸入耕, 監牧官, 不賢則其所犯禁, 在此何知乎, 領相曰, 頻頻申飭矣, 上曰, 每見點馬之數, 漸縮於前, 此可怪也, 領相曰, 一番點馬之後, 死馬之數, 甚多, 意是驅入場內時, 致傷而然也, 元數既不實, 點閱之數, 亦非真的, 可慮可慮, 上曰, 起耕多, 故, 有此患也, 時白曰, 千百年經營, 政爲一日之急也, 若罷牧場, 則禁士夫之冒占, 啓遠, 固能之矣, 既以江都, 爲保障, 則何恤乎馬乎, 臣愚, 以爲罷牧場而屬之啓遠, 使之募民耕食, 可也, 爾徵曰, 牧場之爲弊, 最大, 馬奔逸則田畝多損, 場內, 有一二大川民, 皆欲作灌溉之所, 罷之誠是, 而許耕之人, 以軍爲號, 則大有益於保障, 上曰, 牧場罷則陸民, 移入耶, 啓遠曰, 陸民移入之遲速, 不可預料, 而民情, 皆欲革罷, 故, 臣下直之曰, 敢有陳達, 而今往見之, 則鄉民, 聞革罷之言, 欣欣然有喜色, 若革則外方之民, 必來耕食, 而一年之內, 盡入耕食, 則臣亦難料, 上曰, 若無陸民之移入耕食, 則殊無革罷之本意矣, 啓遠曰, 牧場當罷之議, 自戊午年有之矣, 今雖罷之, 豈有大益於保障, 而但民情, 皆以爲不罷此場, 非孔子貴人賤馬之意, 今若罷之, 臣雖無狀, 豈許士夫之冒占乎, 分授之後, 詳細懸錄, 則某某人耕食, 可以灼知矣, 上曰, 其地民, 決不可給, 此論, 自先朝有之, 而有不可者, 三, 一則馬政爲重, 二則士夫冒占, 三則官員非人, 無三者之患, 則罷之, 可矣, 此留守, 當善爲之, 此留守時, 罷之馬, 則移於海西空島, 領相曰, 啓遠, 若不善爲, 則還爲移置, 亦可, 至於設倉峙糧造軍器, 速令舉行, 設倉則自該曹給財力, 令本府造作, 待秋成爲之, 可矣, 上曰, 依爲之, 留守上來, 聽其所言, 給之可矣, 軍器則自軍器寺造送, 自前所送兵器, 不爲不多, 而大砲裂破云, 此後則造送兵器, 不可如是爲之, (…)

<비변사등록 13책, 인조 27년 1648년 04월 23일(음)>

## 경제/교통

行戶曹判書 睦來善 등이 충청도에서 고의적으로 敗船한 일에 대해 논의하다

이달 초3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 입시하였을 때에 행호조판서 목래선(睦來善)이 아뢰기를, "금년은 여러 도의 조운선(漕運船)이 이미 모두 무사히 올라왔으니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다만 그 중에 충청도 결성현(結城縣)에서 바로 상납(上納)한 배가 **남양(南陽)** 경내

에서 전복되었다고 하나 배에 탄 감색(監色) 이하 12명은 모두 살아서 육지로 올라왔다고 하니 그것부터가 의심스러운 형적이 있습니다. 한편 듣자니 결성 출신으로 현재 서울에서 벼슬하고 있는 사람이 사사로운 곡식을 그 배에 실었는데 패선했다는 기별을 듣고 몸소 **남양**의 뱃사람 집에 찾아가 그 곡물을 추심하다가 땅을 파고 묻어 둔 곳을 발견하고 찾아 왔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보면 함께 실었던 나라의 곡식도 고의적으로 패선했어 훔친 정상을 은폐할 수 없습니다. 지방관은 다만 패선했던 사유만 보고했을 뿐이고 몇 달이 지나도록 조사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있으니 매우 놀랄 일입니다. 신이 또 충청감사 장계를 보니 연산(連山)의 세곡선(稅穀船)을 본 현에서 3월에 올려 보냈는데 5월 보름 후에야 감색과 격군 등 3명이 본 현에 나타나서 패선했던 사유를 보고하고 김포(金浦) 바닷가에서 두 사람이 건져 주었다고 증거를 제시했는데 한 사람은 소경이고 한 사람은 귀머거리라 합니다. 그런데도 이들로 증빙하려 함이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 본 현에서 감색을 김포군수로 압송하였더니 김포군수가 눈 멀고 귀머귀는 자들에게 대충 물어보고는 패선했던 것이 확실하다고 답하였습니다. 연산현에서도 다시는 더 공문을 발송하여 그 허실을 밝히려 들지 않고 다만 김포군의 조사 공문만 믿고 사실로 인정하여 심지어 '복선했던 것이 명백무의(明白無疑)합니다'라는 말로 본도에 첩보했으니 그 살피지 못함이 심합니다. 또 실어 보낸 세곡과 대동미가 역시 진흙청과 서로 교환한 곡물인데도 본도 감사의 계본(啓本)에 '해조로 하여금 복계케 하십시오'라고 한 것은 역시 살피지 못함이 심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매우 놀라운 일이다. **남양부사**, 김포군수, 연산현감을 모두 잡아와 국문하도록 처리하고 충청감사도 살피지 못한 잘못을 면할 수 없으니 먼저 파직한 뒤에 추고하라."하였다.

今七月初三日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行戶曹判書陸來善所啓，今年諸道漕船，既盡無事上來，誠爲多幸，而但其中忠清道結城縣直上納之船，稱以致敗於**南陽**地，而騎船監色以下十二名，則皆得全生下陸，已有可疑之跡矣，且聞結城出身時仕於京中者，以其私穀，添載其船，得聞敗船之奇，親往**南陽**船人之家，推尋其穀物，則掘土埋置，現發，推來云，以此觀之，則同載國穀，故敗偷食之狀，昭不可掩，而地方官只報敗船之由，已過數月，推覈形止，尙不更報，事極可駭矣，臣又伏見忠清監司狀啓，則連山稅船，自本縣三月上送，而五月望後，監色·格軍等三各，始爲自現於本縣，告其敗船之由，而以金浦水遣二人之極出爲證，一則盲人，一則聾者，以此爲證，殊甚無據，自本縣，捉送其色吏於金浦郡，則金浦郡守泛問聾瞽，答以敗船的實，則連山縣亦不更爲移文，明覈其虛實，只憑金浦郡之查移，遽以爲信，至以致敗實狀，明白無疑等語，牒報本道，其不能致察甚矣，且其載送稅穀反大同米，亦是賑恤廳相換之穀，而本道監司啓本，令該曹，覆啓云者，亦甚不察矣，上曰，事極可駭，**南陽府使**·金浦郡守·連山縣監，竝拿問處置，忠清監司亦難免不察之失，先罷後推.

<비변사등록 35책, 숙종 5년 1679년 07월 04일(음)>

## 경제/교통

**牧子를 侵微한 南陽의 해당 守丞 등을 처벌하고 侵微당한 牧子를 頗下할 것을 청하다**

사복시(司僕寺) 관원이 제조(提調)의 뜻으로 아뢰기를, "본시(本寺)에 소속된 각 목장(牧場)의 목자(牧子)의 역(役)이 가장 괴롭고 무거운데 비록 그들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역시 다른 역(役)에 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목(事目)에 분명하게 있으니, 이는 마정(馬政)이 중하기 때문입니다. 올해년과 병자년의 기근과 여역(癘疫)을 거친 후 흩어져 도망한 목자의 숫자가 절반이나 되니 마정이 허술한 것도 역시 이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기묘년에 조정에

서 각사(各司)에 불법으로 소속된 무리를 조사해 내어 군액(軍額)을 태정(汰定)하는 즈음에 각 목장의 목자로 역에 응해야 할 자들도 역시 많이 뒤섞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경진년 10월 사이에 서산(瑞山)의 목자 김효일(金孝逸) 등이 본시에 상언(上言)함으로 인해 본시에 있는 목자의 안(案)을 베껴 제도(諸道)에 보내어, 그 가운데 이름이 들어 있는 자 및 목자의 자손으로 장부(帳簿)에 실려 있는 자는 하나하나 탈하(傾下:사고로 처리함)하여, 본디의 역에 그대로 두고, 탈하한 후 혹 대신을 정하는 것을 책임지우거나 혹은 신역(身役)을 겹쳐서 징수하는 자는 해당 관리를 중률(重律)로 다스리겠다는 뜻을 복계(覆啓)하여 윤희받아 제도에 알렸었습니다. 이제 **남양(南陽)** 목자들이 와서 본시에 호소함으로 인해 그 목장에 조사해 물었더니, 목자 가운데 기묘년에 다른 역으로 옮겨 정한 자 6명을 탈하(傾下)하지 않았고, 신사년에 옮겨 정한 자가 또 1명이 있어 모두 침징(侵徵)을 당하고 있습니다. 조정의 명령이 이미 내린 후에 이미 정한 무리를 탈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거기다 더 다른 역을 옮겨 정하여 목장 목자들이 이로 인해 흩어지는 폐단이 있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일의 놀라움이 이보다 더 심함이 없어서, 그대로 둘 수 없으니, **남양**의 해당 수령(守令)을 우선 파직하고, 감색(監色)은 영문(營門)에서 잡아다가 엄히 형추(刑推)하여 다스리며, 침징당한 목자에게 정한 역은 즉시 탈하하여 마장(馬場)을 보살피고 지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司僕寺官員，以捉調意啓曰，本寺所屬各牧場牧子之役，最爲苦重，雖其子枝，亦勿定他役者，明有事目，所以重馬政也，自經乙丙飢疫之後，牧子散亡之數居半，馬政之疏虞，亦由於此，而已卯自廟堂，查出各司冒屬之類，汰定軍額之際，各場牧子應役者，亦多混入，庚辰十月間，因瑞山牧子金孝逸等，上言本寺，以本寺所在牧子案，謄送諸道，其中名付之人及牧子子枝之載在帳籍者，一一傾下仍存，本役傾下後，或責其代定，或疊徵身役者，當該官吏繩以重律之意，覆啓蒙允，知委諸道矣，今因**南陽**牧子等來訴本寺，查問於本場，則牧子中己卯移定他役者六名，既未傾下，辛巳移定者，又有一名，竝皆被侵，朝令既下之後，已定之類，不惟不爲傾下，又從而加有移定，本場牧子等因此至有渙散之弊云，事之可駭，莫此爲甚，不可仍以置之**南陽**，當該守令爲先罷職，監色則捉致營門，嚴刑推治，被侵牧子所定之役，則使之卽爲傾下，以爲看守馬場之地何如，傳曰，允。

<비변사등록 52책, 숙종 28년 1702년 01월 15일(음)>

## 경제/교통

### 領議政 崔錫鼎 등이 海西의 大同法 시행에 대한 상반된 의견에 대해 논의하다

이번 2월 8일에 대신에 비국 당상이 인견 입시할 때, 영의정 최석정이 아뢰기를, (...) 지중 추부사 김우항은 아뢰기를, "이미 설치한 진(鎭)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배가 정박하는 곳이 만약 편리하지 않으면 예조판서가 아뢴 바에 따라 육군 첨사를 설치하고 이 첨사로 하여금 목자(牧子)를 단속하게 함이 좋겠습니다. 반드시 가볍게 혁파할 수 없을 듯합니다."

하고, 동지돈녕부사 김석연은 아뢰기를, "이미 요해처로서 만약 배가 노를 감추고 정박할 곳이 없다면 목자(牧子)가 많이 있다고 하니 예조판서의 아뢴 바에 따라 육군 첨사를 설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하고, 이조참의 윤덕준은 아뢰기를

**"항금(杭金)은 신이 비록 직접 가서 눈으로 보지 못하였으나, 수원(水原)·남양(南陽)·면천(沔川)·서산(瑞山) 사이에 지역이 끝난 첫머리를 두루 보았는데 항금의 처지가 극히 긴요합니다. 강도(江都) 자연(紫燕)이 이곳과 가장 가깝게 서로 바라볼 수 있는 곳입니다. 대**

저 국가에서는 옛날에는 왜구(倭寇)로써 염려하였고 지금 염려하는 바는 해랑도(海浪島)에 있습니다. 해랑(海浪)에 사변이 있게 되면 적이 어느 곳에 이를지 알지 못하며 안흥에서부터 닢을 내리고 배를 항금 앞 포구에 멈출 것입니다. 그러나 항금은 곧 안쪽 포구가 궁벽한 곳입니다. 많은 적이 오는 것은 반드시 그 뜻이 경도(京都) 및 자녀의 옥백(玉帛)에 있는데 그들은 소재지에는 땅이 좁고 사람이 적어 반드시 이익을 구할 것입니다. 이미 수군 첨사라 말하였으면 전선(戰船), 기계(器械) 및 이백명의 수전(水戰) 군사를 마땅히 준비하여 보내 주어야 하겠지만 갑자기 준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배를 감출 곳도 없으니 이것이 매우 난처한 일입니다. 적의 배가 여기서 정박하지 않으면 육군 첨사를 또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첨사를 설치하지 말고 감목관(監牧官)을 별장(別將)으로 고쳐 목자(牧子)를 특별히 더 단속하고 고기 잡는 배도 단속하고 오로지 후망(候望)의 일을 맡겨야 하겠습니다. 사변이 있게 되면 육로로 본도에 보고하고 삼영(三營) 수로에는 고기 잡는 배로 자연(紫燕)·강도(江都)에 통보함이 편리할 듯합니다."하였다.

이기하는 아뢰기를, "첨사 별장을 정탈하셨습니다. 국가에서 마땅히 군병과 기계(器械)를 증가시켜야 하지만 이 일절(一節)은 어렵습니다. 해서(海西) 십일진(十一鎭)도 다 유명무실합니다. 첨사 별장을 논하지 않을 수 없지만 전선이 없으니 수군첨사라 할 수 없으며, 병마 첨사로 정하여 이로 하여금 경보(警報)하도록 함이 의당할 것입니다. 요해처라 말한 곳에 이미 설치한 것을 혁파하는 것은 신은 옳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변장은 의지할 곳이 없음이 많습니다. 토졸이 혹 30명, 혹 50명이 되니 능히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돌아보는 일은 없고 어찌 설치할 뜻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인엽은 아뢰기를, "진(鎭)을 설치하는 것은 감목을 두는 것보다 낫습니다. 진보(鎭堡)의 모양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는 듯합니다. 기계(器械), 식량을 조정에서 요리하여 주지 않으면 군병들이 갑자기 관득(辦得)하기 어렵습니다. 요즘 목자(牧子) 중 군대에 적합한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본도 감사로 하여금 자세히 헤아려 계문(啓聞)하게 한 후 품처함이 의당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배가 정박할 곳이 없으면 수군첨사는 비록 설치할 수 없지만, 육군 첨사는 설치하여 모양을 이룰 수 있는지를 감사에게 물어본 후 품처함이 좋겠다."하였다.

今二月初八日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領議政崔所啓(…)知中樞府事金宇杭曰，既設之鎭，更不必看審，船舶處若不便，則依禮判所達，設陸軍僉使，使之團束牧子爲好，似不必輕罷矣，同知敦寧府事金錫衍曰，既已要害處而若無舟楫藏泊之所，則多有牧子云，依禮判所達，設置陸軍僉使似好矣，吏曹參議尹德駿曰，杭金，臣雖未得身到目見，而水原·南陽·沔川·瑞山之間地盡之頭，臣嘗歷覽，則杭金處地，極其緊要，江都紫燕，最近相望之地也，大抵國家，舊以倭寇爲慮，卽今所慮，在於海浪，海浪有變則未知賊到何處，而由安興則必下碇停船於杭金前浦矣，然杭金，卽內浦窮僻之處，大賊之來，必意在京都及子女玉帛，所在地褊人寡，必子規利，既曰，水軍僉使，則戰船器械，及送二百名水戰之軍，當準備以給，而不但猝辦之難，藏船無所，此甚難處，賊船不卸於此，則陸軍僉使，又不必設，臣意則不設僉使，監牧官改以別將，牧子另加團束，漁採船亦爲團束，專責候望之事，有變則陸報本道，三營水路則以漁採船通報紫燕·江都，似便矣，李基夏曰，僉使·別將(定脫)奪矣，自國家當添軍兵器，此一節爲難矣，海西十一鎭，亦皆有名無實，僉使·別將，非所不論，無戰船則雖不可爲水軍僉使，定以兵馬僉使，使之報警宜矣，謂之要害處而既設於罷，臣知其不可，但邊將，率多無依處，士卒或三十，或五十，不能成樣，自國家，無顧念事則豈有設置之意乎，李寅燁曰，設鎭則勝於置監牧，而俾成鎭堡貌

樣，似難容易，器械糧餉，自朝家不可料理，而軍兵難可猝辦，卽今牧子中可合作隊者，其數幾何，使本道監司，詳量啓聞後，稟處宜矣，上曰，無船泊處，則水軍僉使，雖不可設置，陸軍僉使則可以設置，保成貌樣事，問于監司後稟處可也。

<비변사등록 59책, 숙종 34년 1708년 02월 11일(음)>

#### 경제/교통

##### 江華留守 閔鎮遠 등이 鎭江牧場을 폐지하지 않고 옮겨 설치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지난달 29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강화유수 민진원(閔鎮遠)이 아뢰기를, "무자년 겨울에 신이 비국 당상으로 입시하였을 때에, 박권(朴權)이 진강목장(鎭江牧場)의 폐지문제를 아뢰어 윤허를 받은 바 있으나 그 후 사복시의 낭청이 명을 받들고 적간(摘奸)하러 나갔다가 목장을 폐지해서는 불가하다는 뜻으로 품계하였으며, 박권(朴權)이 또 장계를 올려 그 불가함을 역설하였으나 비국에서 아직도 회계(回啓)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문제가 수년 동안 미결(未決)로 되어 있으므로 본부에는 장애되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 대신에게 하문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 이 이르기를, "진강목장 문제를 박권(朴權)이 경연의 자리에서 폐지를 요청하여 윤허하였었다. 그러나 그 후 사복시의 낭청이 품계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결로 되어 있다. 이 문제를 어찌해야 하겠는가?"하였다. (…)

이여(李翕)는 아뢰기를, "삼남에 비록 폐지된 목장은 많으나 멀리 옮기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수원(水原)·남양(南陽) 등 강화(江華) 가까운 곳에 어찌 옮길 만한 곳이 없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낭청의 품목(稟目) 가운데 '소와 말이 어찌 위급에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말도 있다."하였다. (…)

今六月二十九日，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江華留守閔鎮遠所啓，戊子冬臣以備局堂上入侍時，朴權以罷鎭江場事，陳達蒙允，其後司僕郎廳承命摘奸，以不可罷場之意稟目，朴權，又爲狀啓，力辨其不可，而自備局尙未回啓，此事數年未決，故本府多有窒礙之端，今日下詢大臣而處之，何如，上曰，鎭江場事，朴權於筵中請罷，旣已許之，而其後以司僕郎廳稟目之故，至今未決，此事何如，(…)李曰，三南雖多廢場，有難遠移，水原南陽等江華近處，豈無可移處乎，上曰，郎廳稟目中，亦有牛馬，豈不得力於緩急一款語矣，(…)

<비변사등록 60책, 숙종 36년 1710년 07월 02일(음)>

#### 경제/교통

##### 鎭江牧場의 폐지 문제에 있어서 말을 분산함으로써 유지시킬 것을 청하다

사복시 관원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지난 6월 29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강화유수 민진원(閔鎮遠)이 아뢰기를, '무자년 겨울에 신이 비국당상으로 입시하였을 때에 박권(朴權)이 진강목장(鎭江牧場)의 폐지문제를 아뢰어 윤허를 받았습니다. 그 후 사복시 낭청이 명을 받들어 적간(摘奸)하고 목장을 폐지해서는 옳지 않다는 뜻으로 품계하였는데, 박권(朴權)이 또 장계를 올려 그 불가함을 역설하였으나 비국에서 아직도 회계치 못하여 이 문제는 수년을 미결로 되어 있으므로 본부(本府)에 장애되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 대신에게 하문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진강목장 문제를 박권(朴權)이 경연(經筵)의 자리에서 폐지를 요청하여 이미 윤허하였으나 그 후 사복시 낭청의 품목(稟目)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미결로 되어 있다. 이 문제를 어찌해야 하겠는가?' 하셨습니다. 영의정 이여(李翕)가 아뢰기를, '그 장계는 아직도 있습니다. 문제는 반드시

상의가 있어야만 결정할 수 있으므로 아직 여쭙어 결정치 못하였습니다. 사복시 낭청이 적간하고 서계(書啓)하여 목장을 폐지함은 매우 어렵다고 말하였습니다. 신도 일찍이 사복시 제조를 지냈는데, 본시(本寺)에서 그 목장을 가장 소중하게 여김은 대체로 당초의 설립이 효묘조(孝廟朝)에 있었고, 뜻하는 바가 있어 다른 목장의 경우와 다릅니다. 그러므로 가벼이 폐지할 수는 없으나, 이미 강도(江都)를 위급한 사태에 의귀(依歸)할 곳으로 삼았으니, 만약 이 <진강(鎭江)>이 보장(保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존망(存亡)과 관계되는 바가 이 일보다 큰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강도 수비(守備)의 허와 실이 과연 진강 목장의 폐지 여부에 매여 있는지 신은 정확히 알지 못하나, 목장으로 말하면 비록 진강(鎭江)을 폐지하더라도 양마(良馬)는 그 종자가 있고 토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 수초(水草)가 풍부한 곳을 선택하여 옮겨 놓는다면 그 말의 종자는 어느 곳인들 양마를 생산하지 않겠습니까? 또 강도는 목장 말이 뛰어나와 해를 끼치는 일이 많아 농민이 유지, 감당할 수 없다 하니, 이도 한 폐단입니다. 진강목장의 말을 앞서의 결정에 의하여 다른 섬으로 옮겨 놓는 것이 불가할 것이 없을 듯 싶습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당초 보음도(浦音島)에 옮겨 놓으려 하였었다.'하셨습니다. 우의정 김창집(金昌集)이 아뢰기를, '국가에서 강도를 보장의 중요한 곳으로 삼았으니, 목장이 강도에 해가 있다면 폐지하는 것이 실로 옳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효묘(孝廟)께서 이 목장을 설치함은 실은 대계(大計)에서 나왔으므로 바깥 논의들은 그 폐지를 어렵게 여기는 까닭인 것입니다. 다만 목장 근처에 민전(民田)이 매우 많은데 말떼가 뛰어나와 화곡(禾穀)을 짓밟으며 비록 방한(防閑)을 더 하였으나 역시 금할 수 없었으니, 백성에 해가 되는 바이며, 또 목장을 수축하는 역사(役事)로 민폐가 또한 매우 적지 않습니다. 지금 만약 이 목장을 내어주면 입주하는 인민이 반드시 많을 것이니 어찌 강도(江都)에 한 큰 도움이 아니겠습니까? 당초 위에서 내어주라 명하셨으나 그 후 사복시의 적간으로 인하여 낭청의 한 장 품목(稟目)으로 성명(成命)을 도로 거둬온 일의 체통에 있어 거북스럽습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사복시 낭청이 보음도와 진강목장 두 곳을 적간한 뒤 품계에 의하면 보음도는 말을 방목(放牧)하기에 불편하다 하였다.'하셨습니다. 병조참판 박권(朴權)이 아뢰기를, '앞서 목장을 폐지하라는 명령이 있는 뒤에 이인엽(李寅燁)이 목장은 보음도로 옮길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에 강도의 어산(魚產)이 오로지 이 섬에 의지하고 있는데 만약 이 섬을 잃는 경우 본부는 유지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아뢰었습니다. 그 후 정옥선(鄭鬪先)도 목장에 적합하지 않다고 품계하였습니다.'하였으며, 영의정 이여(李翕)는 아뢰기를, '보음도가 목장에 적합지 않다 함은 수초가 부족해서입니까?'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백성의 집과 분묘·전답이 이 섬에 많이 있으므로 이것이 고민이라 한다.'하셨습니다. 민진후(閔鎭厚)가 아뢰기를, '과거에는 보음도에 사는 백성이 꽤 번성하였으나 근래 줄어들어 수십 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목장을 설치하고 그 분묘를 몽개며 그 경작을 폐지하면 백성들은 반드시 안주할 수 없습니다. 목장을 폐지함은 대체로 백성을 모으려는 것인데 도리어 백성에게 해가 되게 하면 어찌 염려할 일이 아니겠습니까?'하였고, 박권(朴權)이 아뢰기를, '신이 앞서의 장계에 아뢰바 있었는데, 보음도가 이미 이러하다면 사복시의 폐지한 목장도 많이 있습니다. 말떼를 비록 일시에 모두 옮기기는 어려우나, 그 가운데 병든 말 및 새끼를 낳지 못하는 것은 서울로 올려오고 그 나머지 양마를 폐지한 목장 가운데의 한 곳에 옮겨 보낸다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하였으며, 영의정 이여(李翕)는 아뢰기를, '삼남에 비록 폐지한 목장이 많으나 멀리 옮기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수원(水原)과 남양(南陽) 등 강화(江華) 가까운 곳에 어찌 옮길 만한 곳이 없겠습니까?'하였습니다. 임금이 이르기를, '낭청의 품목 가운데 「소와 말이 어찌 위급한 사태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

까?」라는 한 말도 있었다.'하시니, 형조판서 유득일(兪得一)이 아뢰기를, '당초 목장을 옮기도록 윤희하신 성상의 뜻은 대체로 보장(保障)을 소중하게 여기신 데에서 나왔습니다. 신이 사명을 받들고 강도에 갔을 때에 본즉 진강의 목장 말이 화곡을 밟고 뜯어먹어 민폐가 역시 많았습니다. 다만 사복시 제조의 말을 들은즉 다른 섬에 말을 옮기는 경우 부상하거나 폐사(斃死)하는 일이 많다하니 이러하다면 이도 애석한 일입니다. 그러나 바깥 논의는 모두 효종대왕(孝宗大王)께서 대지(大志)가 있어서 이 목장을 설치하셨다고 하니, 비록 이 목장의 말이 과연 모두 양마인지는 모르나 갑자기 옮기고 폐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만약 높이 목책(木柵)을 설치하고 그 방한(防閑)을 높여서 뛰쳐나와 민전(民田)을 짓밟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하였습니다. 임금이 이르기를, '당초 인견했을 때에 하교하였다.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에 이러한 말이 있다. 「태조대왕(太祖大王)께서 타시던 8준마(駿馬) 가운데 한 말은 곧 진강(鎭江)에서 산출된 것으로서 말 종자가 아주 좋았다.」고 하였으니, 폐지하긴 매우 어렵다. 그러나 강도가 보장의 지역으로 되어 있으므로 당초에 특별히 폐지토록 한 것이다. 그 후 품목을 보니 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있었으므로 지금까지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강도에서 말을 기르는 것이 유리한가, 백성을 모으는 것이 유리한가? 지금 그 경중을 참작하여 결정하라.'하시니, 우의정 김창집(金昌集)이 아뢰기를, '성상께서 말을 기르고 백성을 모으는 일 가운데 어느 것이 유리하느냐고 하교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 백성을 모으는 일이 어찌 말을 기르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이로써 논한다면 그 폐지 여부는 결정될 수 있습니다.'하였고, 행사직 이연강(李彦綱)은 아뢰기를, '말을 옮기는 일이 비록 매우 어려우나 보장의 지역에 유익하다면 사복시에 폐지한 목장이 많으니 어찌 옮길 만한 곳이 없겠습니까? 당초에 내어준은 타당함을 얻었는데, 어찌 당해 시(寺)의 한 낭청의 말로 인하여 그 편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하였으며, 유득일(兪得一)은 아뢰기를, '강도의 손익(損益)이 반드시 목장을 폐지하느냐, 폐지하지 않느냐에 매여 있다면 폐지하는 것이 사실 옳으나 이 목장의 설치는 그 유래도 오래이고, 성조(聖祖)의 대지(大志)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모두 지금까지 한스럽게 여깁니다. 마정(馬政)은 비록 작은 일이나 옮기고 폐지함은 아마도 매우 어려운 듯 싶습니다.'하였고, 영의정 이여(李翕)는 아뢰기를 '강도의 보장(保障)을 들어서 말씀하면 말을 기르는 일보다 백성을 모으는 일이 <나음은> 어찌 분명하지 않겠습니까?'하였으며, 박원은 아뢰기를, '말때가 뛰쳐나오는 폐단은 백성들이 유지, 감당하지 못합니다. 백성의 해를 제거하는 일에 있어 폐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백성들에게 입주를 허용한다면 수백 호를 수용할 수 있으니 어찌 보장에 크게 유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하였고, 민진원(閔鎭遠)은 아뢰기를, '말을 기르는 일과 백성을 모으는 것의 이해는 현격히 다릅니다. 신이 전에 유수로 있을 때에 이를 모르는 것이 아니었으나, 이 목장은 국가에서 소중하게 여기므로 감히 폐지를 요청하지 못하였습니다. 무자년의 하문하신 때에 이르러 비로소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아뢰었었습니다. 다만 바깥 논의는 대부분 효묘(孝廟)께서 대지가 있으셔서 마정(馬政)을 밝히려고 여기에 목장 설치한 것이며, 복수와 설치(雪恥)는 지금 비록 바라기 어려우나 이 목장을 그대로 둔다면 뒷 사람들은 그래도 당시의 대지(大志)가 깃들여 있음을 알 것이니, 실로 예(禮)를 아껴서 고삭(告朔)의 양(羊)을 그대로 둔 뜻에 맞습니다. 이는 의리가 삼엄하여 사소한 이해로 말할 일은 아니나 이해를 들어서 말한다면 어찌 현격하지 않겠습니까?'하였으며, 박권(朴權)은 아뢰기를 '효묘조에서 이미 뜻이 있어 목장을 설치하였으므로 지금 폐지하기 어렵다 함은 실로 옳습니다. 그러나 진강목장은 효묘께서 조치하신 것 가운데 한 가지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장(營將)과 금군(禁軍)을 설치한 일 등에서도 성조께서 복수하고 설치하

시려는 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찌 한 목장으로서는 예를 아껴 고삭의 양을 그대로 둔 일에 비길 수 있겠습니까?' 하였고, 영의정 이여(李畬)는 아뢰기를 '인심은 늘 성조의 대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한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이 목장을 폐지해서는 불가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뜻과 일을 계술(繼述)함은 스스로 그 방법이 있는 것이요, 굳이 한 목장을 폐지하느냐 않는냐에 있는 것은 아니며 또 비록 그 목장은 옮기더라도 그 말은 그대로 두면 무엇이 손상되겠습니까?' 하였으며, 우의정 김창집(金昌集)은 아뢰기를, '사복시에 폐지한 목장이 많이 있으니, 마땅히 가까운 곳의 폐지한 목장에 옮길 것이며, 신구(新舊)의 말을 한 곳에 뒤섞어 두면 말떼가 많이 손상된다 하니 구마(舊馬)의 수가 적으면 다른 목장에 옮겨 둔 뒤에 진강목장의 말을 비로소 옮겨 보내는 것이 타당할 듯 싶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당초의 결정에 의하여 목장을 옮기고 백성을 모아 경작하여 먹게 할 것을 분부하라.' 하였습니다. 민진원(閔鎭遠)이 아뢰기를, '사복시에서 먼저 그 장소를 결정한 뒤에라야만 거행할 수 있습니다.' 하였고, 영의정 이여(李畬)가 아뢰기를, '목장의 말을 옮길 만한 곳을 사복시로 하여금 다시 살피게 하여서 여쭙어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자, 임금이 이르기를, '아된 대로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진강목장은 이미 보장의 중요한 곳을 위하여 민호(民戶)를 모을 계획으로서 폐지하는 일이 있게 되었으니 다시 감히 논의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옮겨 설치하기에 적합한 곳을 살핀 뒤에 품정(稟定)하여 그 사이에 이해와 득실을 깊이 헤아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강 열은 소견을 아뢰고 헤아려 처리하시기를 기다립니다. 진강에 목장을 설치할 당초에는 주위가 40리로서 곧 도적(圖籍)에도 실려 있으나 점점 삭감되어 지금은 20리쯤 됩니다. 길상산(吉祥山) 아래에서 어득천(魚得川)까지를 한계로 삼았으니, 이른바 진강산(鎭江山) 아래의 지난날 말떼가 유식(游息)하던 곳은 이미 백성들이 경작하여 먹게한 땅이요, 주위도 20리 쯤 되는데, 그 가운데 전답(田畓)은 대체로 수백석지기입니다. 현재 말떼가 있는 곳은 다만 길상산 아래 뿐인데 통칭하여 진강장(鎭江場)이라 합니다. 이른바 길상산은 동남의 바닷가 한 모퉁이에 자리하여 산은 많고 들은 적습니다. 비록 광활하고 평탄하지는 않으나, 수초는 풍족하여 목양(牧養)하기에 적의하고, 산은 높고 골은 깊어서 족히 바람과 추위를 피하고 유식(游息)하기에 편의합니다. 이러므로 방목한 말은 체구가 크고 뼈대가 굵어서 여러 목장에서 으뜸이 됩니다. 지난 선묘조(宣廟朝)의 병신년간(丙申年間: 숙종 29년(1596))에 비로소 폐지하였으나, 본시의 계사에 이르기를, '길상산에서 양구(良駒)가 산출되어 근일 내·외구(內外廐)에 약간의 양재(良才)가 있는 것은 모두 진강 목장의 말인데 옮겨 방목한 뒤에 잇달아 죽은 것이 1백여 필이 넘습니다. 양마(良馬)의 종자가 끊어지기 전에 본 목장에 도로 방목하도록 하소서.'라고 하니, 진강목장은 마침내 '복설(復設)하라.'고 하교하셨습니다. 인조조(仁祖朝)에 또 폐지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역시 '이러한 논의는 선조(先祖) 때부터 있었으나, 불가한 경우가 세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마정(馬政)이 소중하고 둘째는 사부(士夫)들의 불법 점유요, 셋째는 관원이 적임이 아니다.'라고 하교하셨습니다. 효묘조(孝廟朝) 무술년간(戊戌年間: 숙종 9년(1658))에 옛 목장을 복설할 때의 성교(聖敎)에 이르기를, '태조께서 타시던 8준마의 하나도 강화에서 산출된 것이니, 결코 이 목장을 폐지해서는 옳지 않다.'고 하시고, 또 이르기를, '조정에서 폐지토록 한 것은 실로 우연이 아님에도 그 후 수신(守臣)이 대부분 준수하지 않았으니, 특히 당초의 본의를 잃었다. 지금 한 모퉁이를 빌어서 방목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삼 백성들이 불법 점유하고, 겸병(兼竝)하는 땅을 내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조정의 성교 내용으로 보면, 언제나 진강목장의 마종(馬種)이 가장 우량함을 아껴서 선뜻 목장의 폐지를 어렵게 여기셨으며, 앞뒤에 잠깐

폐지했다가 곧 복설함은 대체로 이에서 나왔습니다. 대략 을축년간(乙丑年間: 숙종 11년(1685))에 이르러서는 다만 목장을 물려 쌓도록 하였고, 끝내 한 목장을 모두 폐지하도록 허용하지 않았으니 역시 이렇기 때문입니다. 지금에 와서 수신(守臣) 및 묘당의 여러 신하가 아울러서 폐지해야 한다는 아뢰은, 오로지 이 목장을 폐지하고 민호(民戶)를 모아서 보장(保障)을 튼튼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였으므로 이점이 성상께서 특별히 윤허하신 바입니다. 그 내장(內場)의 말을 방목하는 평지로서 논을 만들 수 있는 곳은 10여 섬지기에 지나지 않고, 산허리 이하로서 밭을 만들 수 있는 곳은 역시 1백여 섬지기에 불과한데 이는 토질(土質)이 꽤 비옥(肥沃)합니다. 또 산 밖에 60~70 섬지기의 한 들[坪]에 있는데 거의가 자갈밭이며, 외장(外場)의 둔전(屯田)과 둔답(屯畓)에 이르러서는 아울러서 117섬지기인데 거의 목였으니, 그 척박함을 이로써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목자 60명이 절수(折受)한 전답은 아울러서 217섬지기인데 이를 합하여 계산하면 대략 5백여 섬지기가 됩니다. 이 안에서 이른바 산 밖의 들 60~70섬지기의 자갈 밭과 둔전답 1백여 섬지기의 척박하여 묵은 것은 백성을 모아 경작하여 먹게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목자가 절수(折受)한 전답 2백여 섬지기는 목자 60명의 매명(每名)마다 받은 바는 논 30두락(斗落), 밭 23두락으로서 60명이 그 가속과 자손을 합하면 인구의 수는 1백여 명에 밀돌지 않을 듯 싶습니다. 지금 만약 목자(牧子)로 하여금 말이 읍기는 곳으로 따라가게 하고 다른 백성을 모아 들인다면 2백여 섬지기의 땅에 들일 인구는 역시 목자의 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묵은 것을 버리고 새것을 취한다면 폐단이 있으니, 목자를 그대로 두어 위급에 임하여 동원하는 편의만 못하고, 절수(折受)한 전답은 새로이 모집하여 더 모으는 일에 별로 보탬이 되는 바 없습니다. 이로써 논한다면 전답을 만들어서 생업(生業)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다만 내장(內場)의 평지와 산허리 이하 1백여 섬지기의 땅 뿐이니, 이에 의하여 백성을 모집한다면 그 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외방으로부터 그 본토(本土)를 버리고 온 가족이 읍겨 들어온 자는 반드시 부실(富實)한 백성이 아니요, 대부분 가난하고 역(役)을 기피하려는 부류일 것이니, 반드시 넉넉하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매호(每戶)에 얻은 바는 목자가 받은 50여 두락의 예보다 많아야만 생활이 되어 안주(安住)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이 1백여 섬지기의 전답으로 모을 수 있는 것은 겨우 수십호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장에 보탬이 될 수 있겠습니까? 논의하는 자들은 늘 이 목장을 폐지하는 것이 강도(江都)의 급선무라 하여 많은 전답을 만들고 널리 군정(軍丁)을 모을 수 있는 일처럼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이에 이와 같은 실상을 성상께서 진실로 모두 밝게 아시지 못한 것입니다. 당초 주위가 40리인 목장의 절반을 본부(本府)에 떼어 준 뒤에, 나머지 그 절반인 20리의 땅에서 경작하고 백성을 모을 수 있는 것이 이와 같이 영성(零星)한데, 본래 양마(良馬)가 산출된다하여 여러 조정에서 소중히 여긴 목장을 어찌 모두 폐지하고 말겠다는 것입니까? 비록 읍길 곳을 들어서 말하더라도 전일 본시(本寺)의 낭청이 이미 살펴보고 품계하였지만, 보음도(浦音島)는 민호(民戶)의 입주가 50 여호요, 전답을 개간한 것이 60여 결인데 이 가운데에는 역시 궁가(宮家) 및 향교(鄕校)의 면세전(免稅田)도 있어 그 두락(斗落)의 수효를 계산하면 2백여 섬지기가 되며 송가도(松家島)의 경우는 민호의 주거가 150여호요, 전답은 6~7백 섬지기입니다. 지금 이 두 섬에 말을 읍긴다면 그 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전답을 묵혀야 합니다. 진강(鎭江)의 경작할 수 있는 1백여 섬지기와 새로이 모을 수 십호의 백성을 위하여 50여호와 150여호가 안주하여 생업에 종사하는 백성을 몰아내고, 이미 개간된 2백여 섬지기와 7백여 섬지기의 전답을 묵히면 그 이해는 분명할 뿐만 아니라 몰려난 백성은 거주를 잃고 낭패하여 흩어져 다른 곳으로 가거나 진강으로 읍겨 들어가면 저곳에서 잃은 것은 많고 이곳에서 얻은 것은

적습니다. 무릇 강도(江都) 부근의 여러 섬 백성들은 모두 위급에 임하여 동원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가까운 섬의 백성은 버려두고 한갓 진강에 모아들이는 일만을 무겁게 여집니까? 그리고 이 두 섬의 지형이 과연 목양(牧養)에 적합하다면 다른 것은 돌볼 것이 없으나 산과 골에 바람과 추위를 피하고 유식(游息)할 곳이 없어 진강에 비길 수 없고, 억지로 말을 옮기면 부상하거나 폐사하기가 쉬우며 먼 곳 다른 섬의 경우 그 옮겨보내기 어려움은 더욱 심합니다. 일찍이 효묘조의 임진년간(壬辰年間)에 진강의 목장을 폐지한 뒤 말을 여러 섬에 옮길 즈음에 원래의 수자 9백 47필 안에서 폐사된 것이 430여 필에 달하였고, 또 경인년에 목장을 폐지하고 **매음도(煤音島)**로 말을 옮길 때에 거리가 멀지 않았음에도 원래의 수자 1백필 안에서 폐사된 것이 역시 70필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지난 일의 분명한 증거로서 지금도 반드시 폐단이 없이 옮겨 방목할 수는 없는 일이니 이것이 걱정입니다. 혹 한 때의 변통으로 풀어놓으면 예부터 내려오는 양마의 종자는 이로부터 아주 끊어진 것이니 어찌 애석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강도에 새로이 쌓은 선두포(船頭浦)는 1천 섬지기에 가까운 땅이라 합니다. 이곳을 우선 개간하여 백성을 모으는 것이 무엇이 부족하여 이 목장을 지레 폐지하려 합니까? 대체로 이 내장(內場)의 경작 할 수 있는 1백여 섬지기의 땅은 그 수가 많지 않으나 토질이 모두 비옥합니다. 그러므로 불법점유를 피하는 자들이 모두 침을 흘려 백성을 모아 들이는 것이 편의하다고 핑계대고 목장을 폐지하자는 논의를 선동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인묘(仁廟)께서 '사부(士夫)가 불법점유한다.'는 하교와, 효묘(孝廟)께서 '섬 백성이 불법점유하고 겸병(兼竝)한다.'는 하교 및 앞뒤 성려(聖慮)가 미치신 바는 진실로 지당하십니다. 나라의 기강이 헤이되고 인심이 간사하기 오늘날과 같지 않은 옛날에도 오히려 간사한 폐단을 막기 어려워하였습니다. 근년의 일을 들어서 말씀하면 **자연도(紫燕島)**의 목장 폐지는 비록 백성들에게 경작하여 먹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 모두 사부가(士夫家)에서 가명으로 불법점유한 땅으로 되어 삼분병작(三分竝作)의 예가 되었으니 섬의 가난한 백성은 그 세를 공(公)과 사(私)에 나누어 바치므로 한갓 고생만 할 뿐 생활할 수 없으니, 민정(民丁)을 모아 관방(關防)을 튼튼히 하는 본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진강목장의 폐지는 마침내 성조(聖祖)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될 것이요, 자연도와 같은 형태로 될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말을 기르는 문제도 국가의 막중한 정책입니다. 폐지해서는 안될 목장을 갑자기 폐지함은 보장(保障)에 별로 실효(實效)는 없고, 마침내 사가(私家)의 장토(庄土)가 될 것이니 실로 올바른 계책이 못됩니다. 근래 각 도 여러 목장의 말은 대부분 덩치가 작아 쓸모가 없습니다. 금번 나누어 기르기 위하여 상납한 것을 보면 전혀 군병의 전마(戰馬)로 적합한 것이 없습니다. 이중에서 금군(禁軍)이 탈 말을 가려서 지급하려 하나 역시 얻을 수 없으니 일이 매우 한심스럽습니다. 오직 진강목장의 말이 가장 몸통이 크고 재능이 있어 그래도 옛 종자를 잃지 않았습니다. 앞뒤로 붙들어 내어 나누어 기르고, 본시(本寺)에 세우거나 군병에게 지급한 것이 많으니 그 관계되는 바가 어떠하겠습니까? 송가도와 매음도의 민호(民戶)·전답과 진강 내장(內場)을 서로 바꾸는 경우, 다소와 득실(得失)의 구분은 이상에서 아뢴 바와 같으니, 각각 옛날 그대로 두는 것만 못하고, 또한 편의에 따라 조치하는 방법입니다. 이른바 북일장(北一場)은 비록 진강보다는 약간 작으나 목자(牧子) 및 장곶(長串)의 토졸(土卒) 등이 개간한 전답이 거의 1백여 섬지기에 달할 것이며, 이 외에 경작할만 한 땅도 적지 않아 수십호의 백성을 모아들일 수 있으니 진강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을축년에 이 목장을 폐지하고 강화(江華)에 지급할 것을 결정하여, 분부하였습니다. 그후 분부에서 이와 같은 사정은 헤아리지 않고 토질이 약간 낫다하여 반드시 진강을 얻으려고 끝내 북일장은 취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만약 을축년의

결정에 의하여 북일장을 폐지하고, 급하여서 백성을 모을 바탕을 삼고, 그 말은 부근의 여러 섬에 나누어 두면 진강을 폐지하지 않고 좋은 종자를 절종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여러 조정에서 이 목장을 중하게 여긴 뜻에도 어긋나지 않고 강도(江都)의 보장을 튼튼히 하는 계획에도 어긋나지 않아 이쪽이나 저쪽에 편의할 듯 싶습니다. 이 문제의 이해·득실이 대단한 데에 이르지 않는다면 성명(成命)이 된 마당에 신 등이 고집을 부려서는 옳지 않으나, 거듭 생각할 때에 끝내 불편한 바가 있으므로 오래도록 상의하고, 감히 이를 구체적으로 아뢰입니다. 다시 묘당에 하문하여 좋은 방법에 따라 선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司僕寺官員, 以提調意啓曰, 今六月二十九日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江華留守閔鎮遠 所啓, 戊子冬, 臣以備局堂上入侍時, 朴權以 罷鎮江場事, 陳達蒙允, 其後司僕郎廳, 承命 摘奸, 以不可罷場之意, 稟目, 朴權又爲狀啓, 力 辨其不可, 而自備局尙未回啓, 此事數年未決, 故本府多有窒礙之端, 今日下詢大臣而處之, 何如, 上曰, 鎮江場事, 朴權於筵中請罷, 既已許之, 而其後 以司僕郎廳稟目之故, 至今未決此事何如, 領議 政李曰, 其狀啓尙有之, 而事須商議然後可 決, 故姑未稟定矣, 司僕郎廳摘奸書啓, 以罷場重 難爲言, 臣亦曾經司僕提調, 本司最重其場, 蓋當 初設立, 在於孝廟朝, 而意有所在, 與他場有別, 故不可輕罷, 然既以江都爲緩急依歸之所, 而若 以此可以得力於保障, 則存亡所關, 孰有大於此 事者乎, 江都守備虛實, 果係於鎮江罷場與否, 則 臣未能的知, 而以馬場言之, 則雖罷鎮江, 良馬自 有其種, 非係土地, 若擇水草豐饒處, 移置其馬種, 則何處不可產良馬乎, 且江都多牧馬放逸作害, 農民不能支堪云, 此亦一弊也, 鎮江場馬, 依前定 奪, 移置他島, 似無不可矣, 上曰, 當初欲移置于甫音島矣, 右議政金曰, 國家 以江都爲保障重地, 馬場若有害於江都, 則罷之 固宜, 而蓋孝廟之設此場, 實出於大計, 故外議所 以難其罷也, 但馬場近處, 民田甚多, 而馬群逸出, 蹂躪禾穀, 雖加防閑, 亦不能禁, 所以爲民害也, 且 馬場修築之役, 民弊亦甚不貲, 今若出給此場, 則 人民入居者必多, 豈非江都之一大助乎, 當初自 上既命出給, 而其後因司僕摘奸, 以郎廳一張 稟目, 還寢成命, 事體殊常矣, 上曰, 司僕郎廳, 摘奸甫音島鎮江場兩處後稟目, 而 甫音島則放馬不便云矣, 兵曹參判朴權曰, 前日 罷場命下之後, 李寅燁請移牧場於甫音島, 臣 以江都魚產等, 專靠於此島, 若失此島, 則本府難 支之意, 仰達矣, 其後鄭勛先, 亦以不合牧場爲稟 目矣, 領議政李曰, 甫音島之不合於牧場云者, 以水草之不足乎, 上曰, 民之廬舍墳墓田畝, 多在此島, 故以是爲悶云矣, 閔鎮遠曰, 昔日則甫音島居民頗盛矣, 近來凋 弊, 不過數十戶, 若設牧場, 夷其墳墓廢其耕作, 則 民必不奠居, 牧場之罷, 蓋爲聚民, 而反以害民, 則 豈不可慮乎, 朴權曰, 臣之前日狀啓中, 有所陳 達, 而甫音島既如此, 則司僕廢牧場, 亦多有之, 馬 群雖難一時盡移其中, 病馬及不能孳長者, 上來 京中, 其餘良馬, 移送於廢場中一處, 何難乎, 領議 政李曰, 三南雖多廢場, 有難遠移, 水原南陽等 江華近處, 豈無可移處乎, 上曰, 郎廳稟目中, 亦有牛馬, 豈不得力於緩急一款 語矣, 刑曹判書兪得一曰, 當初許移牧場者, 聖 意蓋出於重保障之地也, 臣於奉使江都時見之, 鎮江場馬躪吃禾穀, 民弊亦多, 而但聞太僕提調 之言, 移馬他島, 則多有傷斃之患云, 若爾則此亦 可惜, 而外議皆以爲孝宗大王有大志, 設此牧 場云, 雖未知此場之馬, 果皆良馬, 而深以猝然移 罷爲重難矣, 今若高設木柵, 峻其防閑, 俾不得逸 出蹂躪於民田, 則似好矣, 上曰, 當初引見時下教矣, 龍飛御天歌有此語矣, 太祖大王所御八駿中一馬, 卽鎮江之產, 馬種至 佳, 罷之重難, 而江都爲保障之地, 故當初特爲罷 之矣, 其後見稟目有馬可得力之語, 故至今不能 決定矣, 江都牧馬爲利乎, 募民爲利乎, 今當參酌 其輕重而決之矣, 右議政金曰, 聖上以牧馬 與募民, 誰可爲利爲教, 以利害言之, 則募民豈 不有愈於牧馬乎, 以此論之, 其罷否可決矣, 行司直 李彥綱曰, 移馬雖重難, 若有益於保障地, 則司僕 固多廢場, 豈無可移處乎, 當初出給似爲得宜, 何 可以該寺一郎廳之言, 定其便否乎, 兪得一曰, 江 都損益, 必係於牧場之

罷不罷，則罷之固可，而此場之設，其來亦久，聖祖大志之未成，人皆至今恨痛，馬政雖是小事，移罷恐似重難矣，領議政李曰，以江都保障言之，則牧馬與聚民，豈不較然乎，朴權曰，馬群放逸之弊，民不支堪，其在除民害之道，不可不罷，且若許民入居，則可容數百戶，豈不大益於保障乎，閔鎮遠曰，牧馬募民，利害懸絕，臣之曾前在任時，非不知此，而以此場，為國家所重，故不敢請罷矣，及至戊子下詢時，始以宜罷陳達矣，但外議多以為孝廟，既有大志，欲修明馬政，有此設置，則復讐雪恥，今雖難望，而此場若存，則後人猶知當時大志之所寓，實合於愛禮存羊之義，此則義理森嚴，不可以區區利害言之，而若以利害言之，則豈不懸乎，朴權曰，孝廟朝，既已有意設場，則今難罷之云者，誠是矣，而鎮江場，不過孝廟措置中一事耳，如設置營將禁旅等事，亦可見聖祖復雪之大志，奚必以一牧場為愛禮存羊之比乎，領議政李曰，人心每以聖祖大志之不成，為痛恨，故謂此場不可罷，然繼志述事，自有其道，不必在於一牧場之罷不罷，且雖移其場，若存其馬，則有何所傷乎，右議政金曰，司僕多有廢場，當取近場移之，而混置新舊馬於一處，則馬群多傷云，舊馬數少，則移置他場後，鎮江馬始為移送，似或得宜矣，上曰，依當初定奪，牧場移設募民耕食事，分付，閔鎮遠曰，司僕先定其處所，然後可以舉行矣，領議政李曰，牧馬可移處，令司僕更審稟處何如，上曰，依為之事，命下矣，鎮江場，既為保障重地，募聚民戶之計，而有此革罷之舉，則更不敢容議，惟當審察其可合移設處所後，稟定而其間利害得失，亦有不可不深加商量者，故略陳淺見，以俟裁處焉，鎮江設場，當初周回四十里，乃是圖籍所載，而漸至減削，今為二十里許，以吉祥山下至魚得川為限，所謂鎮江山下舊日馬群游息之所，已作許民耕食之地，周回亦至二十里許，其中田畝大略為果百石落，即今馬群所在處，只是吉祥山下，而通稱鎮江場，所謂吉祥山，處於東南濱海一隅，山多野少，雖不廣闊平坦，水草則有裕，宜於牧養，山高谷深，足以避風避寒，便於游息，以此所放之馬，體大骨駿，甲於諸場，輿在宣廟朝丙申年間，始雖革置，本寺啓辭中，有曰吉祥山產良駒，近日內外廐，稍有良才者，盡是鎮江場馬，而移放之後，相繼而死者，已過百餘匹，趁良馬未絕種前，還放本場云云，則以鎮江場終當復設為教，仁祖朝，又有革罷之議，故亦以此論自先朝有之，而有不可者三，一則馬政為重，二則士夫冒占，三則官員非人為教，孝廟朝戊戌年間復設舊場時，聖教有曰，太祖所御八駿之一，亦江華之產，決不可廢此場，又曰，朝廷之許罷，實非偶然，而厥後守臣，多不遵守，殊失當初本意，今借一偶未可放牧乎，島民冒占兼竝之地，未可出給乎，以此累朝聖教辭意觀之，每惜鎮江馬種之最良，輒以罷場為難，前後乍罷旋復者，蓋出於此，而及至當寧乙丑年間，只令退築，而終不許盡罷一場者，亦以此也，到今守臣及廟堂諸臣，竝陳當罷之意，而專以罷此場募聚民戶，以重保障為言，故此聖上之特為勉許者也，第其內場牧馬處，平地可以作畝者，不過十餘石落，山腰以下可以作田者，亦不過百餘石落，此則土品頗饒，又有山外一坪六七石之地，舉皆磽确，至於外場屯田畝竝一百十七石零，則幾盡陳廢，其為瘠薄可見，其中又有牧子六十名，折受田畝竝二百七十石零，合以計之，大略為五百餘石落，內所謂山外坪六七石之磽确者，屯田畝百餘石之瘠薄陳廢者，不合於募民耕食，牧子折受田畝二百餘石，則牧子六十名，每名所受畝三十斗·田二十三斗，而六十名竝其家屬子枝，則人口之數，似不下百有餘名，今若使牧子隨往移馬之處，而募入他民，則二百餘石之地，所得人口，亦無過於牧子之數，若曰去舊取新，有弊不如仍存牧子，臨急調用之為便，則折受田畝，別無所補於新募加聚之道，以此論之，則其可以作田作畝為其生業者，只在於內場平地及山腰以下百餘石之地，就其募民其數幾何，自外處棄其本土舉家移入者，必非富實之民，率多窮殘避役之類，必從優劃給，每戶所得，視諸牧子所受五十餘斗之例，有加然後庶可資活安接，則惟此百餘石之田畝所募聚，僅可為數十戶之民，此何足為有無輕重於保障乎，議者每以罷此場，為江都急先務，有若可以多作田畝廣聚軍丁者然，故其間如許實狀，聖鑑固有所未盡俯

燭者矣，初以周回四十里之場，折半移屬本府之後，所餘存一半二十里之地，可合起耕募民者，既若是零星，則素稱良馬所產累朝所重之牧場，何必盡罷乃已乎，雖以移設處所言之，前日本寺郎廳，已爲看審稟目，而甫音島則民戶入居者，五十餘戶，田畝起耕者六十餘結，其中亦有宮家及鄉校免稅之田，計其落種當二百餘石，松家島則民居一百五十餘戶，田畝七八百石，今若移馬於此兩島，則勢將驅出其民，陳廢其田矣，爲其鎮江可耕百餘石之地，新募數十戶之民，而驅出五十餘戶與一百五十餘戶安業之民，陳廢二百餘石與七八百石已墾之田畝，其爲利害不啻較然，而被其驅出之民，失所狼狽，或散而之他，或移入鎮江，則失於彼者多，得於此者少，凡係江都附近諸島之民，無非緩急之所可調用，則又何必棄近島之民，而徒以鎮江之募入爲重哉，然此兩島地勢，果合於牧養，則不暇他顧，而無山谷可以避風避寒，游息之所不可比擬於鎮江，則強爲移馬，適足爲損傷殞斃之歸，而遠外他島，則其所移送之難，尤有甚焉，曾在孝廟朝，壬辰年間鎮江罷場後，馬匹移置諸島之際，元數九百四十七匹內致斃者，至於四百三十餘匹，又於庚寅年，罷場移馬煤音島之時，相距不遠，而元數一百匹內致斃者，亦至七十四，此爲已事之明驗，今亦必不能無弊，移放爲是之慮，或一時區處散盡，則自古良馬之種，自此永絕，豈不可惜，江都新築船頭浦，可爲近千石落種之地云，於此爲先起耕募民，何患不足，而必徑罷此場乎，蓋此內場可耕百餘石之地，其數不多，而土品無非膏沃，故欲售冒占之計者，莫不流涎，托以募入之便，煽動罷場之議，其來已久，仁廟士夫冒占之教，孝廟島民冒占兼竝之教，前後聖慮所及，誠爲至當，在昔國綱解弛，人心之巧詐，不至如今日，而猶恐奸弊之難防，試論近事，紫燕島之罷場，雖云許民耕食，皆爲士夫家假名冒占之地，作爲三分竝作之例，島中殘民，分納其稅於公私，徒自勞苦，而無聊生，烏在乎募聚民丁，以重關防之本意哉，今茲鎮江之罷場，畢竟亦名聖祖所慮，而同歸於紫燕之一套必矣，牧馬一款，亦係國家莫重之政，則遽罷不當罷之場，別無實效於保障，而終作私家之莊土，實非得計，而近來各道諸場之馬，率皆體少無用，以今番分養上納者見之，絕無可合於軍兵戰馬，以此禁軍所騎，雖欲擇給，亦不可得，事極寒心，惟有鎮江之馬，最爲體大有才，猶不失舊種，前後捉出分養，或立本寺，或給軍兵者多矣，其所關係，爲如何哉，松家煤音島民戶田畝，與鎮江內場互相移易，則多少得失之分，如上所陳，不如各仍其舊之爲愈，而亦自有從便處置之道，所謂北一場，雖云差少於鎮江，牧子及長串士卒等起耕田畝，將至百餘石，此外可耕之地，亦不爲少，足以爲募得數十戶之民，與鎮江無甚差別，故乙丑年以此場罷給江華事，定奪分付之後，自本府不量如許事勢，爲土品之差勝，必欲得鎮江，終不取北一場，以至於今矣，若依乙丑定奪，罷給北一場，以爲募民之資，以其馬分置於附近諸島，則鎮江可不罷，良種可不絕，既無違於累朝重此場之意，亦無失於江都重保障之計，以此以彼，恐合便宜，茲事得失利害，不至大段，則成命之下，臣等不宜爭執，而反覆思惟，終有所不便者，久久商確，敢此備盡論列，更詢廟堂從長善處，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60책, 숙종 36년 1710년 08월 02일(음)>

## 경제/교통

左議政 宋寅明 등이 京畿의 陳田에서 徵稅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또 아뢰기를, (...) 송인명이 말하기를, “심리사는 또 순천(順天)의 세 대동(大同)을 실은 배가 남양(南陽)에 이르러 패선(敗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감색(監色)·사공·격군 등 13명이 8개월째 수금되면서 여러 차례 형신(刑訊)을 받았고 옥바라지 할 사람이 없어 곧 죽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3년에 10차의 다스림에는 차지 않았으나 원적(原籍)의 고을로 보내는 것이 옳겠습니까. 사목(事目)에 기한을 정한 것은 고의로 패선시키는 행위를 응징하려는 것이나 죄가 아니게 뜻하지 않게 걸린 경우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까? 심리사를 별달리 보낸 것은 죄수를 잘 살피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이 소청은 시행토록 허용하여도 무방할 듯싶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심리한다는 뜻이 있으니 비록 연한은 차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별히 시행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又所啓, (…)  
宋曰, 審理使又陳順天稅大同所載船, 至南陽 敗船, 監色·沙格等十三名, 八朔嚴囚, 累次刑訊, 養獄 無人, 死亡無日, 雖未準三年十次之治, 宜還送原籍 官矣, 事目定限, 欲懲故敗, 而亦安知必無非罪橫罹 者耶, 別遣審理, 既出欽恤之意, 今此所請, 許施恐無 妨矣, 上曰, 有審理之意, 雖不滿年限, 特爲許施可 也, (…)

<비변사등록 113책, 영조 21년 1745년 04월09일(음)>

## 경제/교통

### 右議政 蔡濟恭 등이 강화도 吉祥 목장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다

이번 5월 26일에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켰을 때 우의정 채제공(蔡濟恭)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전 군수 이윤복(李胤馥)의 상소로 인하여 용천부(龍川府) 서남 수십 리에 통(筒)을 쌓는 것의 편리함 여부를 이치를 논하여 장문하라는 뜻으로 복계하라고 분부하였습니다. 평안감사 정창성(鄭昌聖)의 장계를 보니 해 부사 이동식(李東植)의 백성이 원하지 않는다는 상황을 갖추어 진술한 첩정을 매거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본부 서남쪽에 넓고 텅 빈 해판(海坂)이 두 곳 있는데 한 곳에 통을 쌓아 물을 댄다면 민가 1백여 호, 염부(鹽釜) 70여 좌(坐)가 훼손되고 흠어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수원(水源)이 원래 길게 흐르지 않고 지세가 또한 가장 높아서 통을 쌓아 논을 만든다는 것은 애초에 논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 곳은 이미 상류에 수원(水源)이 없고 또 지형이 치우치게 높아서 또한 물을 끌어들이지 못할 곳이 아닙니다. 묘당에서 품처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도신이 이미 본 수령의 첩정을 매거하고 백성의 바라지 않는 상황을 갖추어 진술하였는데 도 두 곳의 지형이 이미 물을 끌어들이지 못할 곳이 아니며, 허다한 민가와 염분(鹽盆) 또한 철거할 수 없으니 통을 쌓는 한 가지 사안은 논할 바가 아닙니다. 그냥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지난번에 유학(幼學) 조익(趙익)의 상소로 인하여 강화(江華) 길상 목장(吉祥牧場)에 경작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수신(守臣)에게 형편을 자세히 살펴서 이치를 논하여 장문하라는 뜻으로 복계하라고 행회하였습니다. 강화유수 윤승렬(尹承烈)의 장계를 보니 아뢰기를 ‘목장에 직접 가서 형편을 살펴보았더니 본 목장의 주위는 거의 20 리에 이르는 데, 논을 뜰 만한 땅이 거의 5, 60섬지기나 되고, 밭을 일굴 만한 땅도 수백 섬지기를 밑돌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 목장의 말이 예전에는 4백여 필(匹)이나 되었으나 지금은 1백 36필에 불과하니 그 점점 줄어든 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본 목장의 동쪽은 포구가 평탄하게 되어 만조 때에는 비록 1천척이라도 쉽게 물에 뜰 수 있어서 실로 남쪽에서 오는 배들이 화물을 물으로 내리는 첫 번째 노정(路程)입니다. 또한 인천(仁川)·부평(富平)·남양(南陽)·수원(水原) 사이에서 배를 타고 강도로 올 때에도 역시 이 길을 경유합니다. 그러나 무신년(戊申年)에 난이 일어났을 때 병사를 나누어 노둔(露屯)시킬 때 이 한 쪽을 먼저 한 것에서 이곳이 본부의 관방(關防)에 있어서 가장 요해임을 말할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본부 소관의 목장이 있는 매음(煤音)·장봉(長峰)·신도(信島) 등의 섬이 목장 터가 자못 넓고 물과 풀도 풍부하여 마필을 이송하는데 대부분 여유가 있습니다. 각 섬에 분배하는 것과 목자(牧子)를 구처하는 것을 본시(本寺)에서 편리한 대로 거행하게 하고, 해 목장에 특별히 백성을 모집하여 들어가서 경작하도록 허가할 것을 묘당에서 품처하게 하소서.’ 하

였습니다. 전후 수신과 태복시(太僕寺)에서 길상 목장의 일로 편리함 여부를 쟁론한 것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합외에서 들으니, 사복시(司僕寺)의 한 제조가 본도에 백성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유사당상에게 말을 전하기를 ‘대신의 의론이 이미 이와 같으니 더 논의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수신의 장계 내용을 보니 말이 이미 줄어들었고 세 섬에 이송하는 것은 넉넉히 여유가 있으며, 논을 뜨고 밭을 일구면 2, 3백 섬지기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하물며 관방의 요해로서 본 목장만한 것이 없으니 평소에는 양식을 넉넉히 마련할 수 있고 위급한 때는 힘을 얻을 수 있어서 공으로나 사로 어렵게 여길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남쪽에서 오는 배들이 화물을 물으로 내리는 첫 번째 노정(路程)이고 본부 관방의 가장 요해이며, 말도 5백여 필에서 겨우 1백여 필이 있다고 하니 해시(寺)의 득실에 손익이 없을 듯하다. 하물며 토지를 열고 개간하는 것이 섬 주민의 염원인 점이겠는가! 또 허락한다면 땅의 이익과 백성의 화합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장청대로 시행하여 별다른 장애의 단서가 아니고서는 다시 쟁난(爭難)하지 말도록 해시(該寺)에 말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今五月二十六日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右議政蔡所啓, 頃因前郡守李胤馥上疏, 龍川 府西南數十里築筒便否, 論理狀聞之意, 覆啓分 付矣, 卽見平安監司鄭昌聖狀啓, 則枚舉該府使 李東植牒呈, 備陳民情不願之狀, 仍以爲本府西南 面, 有兩處空曠海坂, 而一處若使築筒灌水, 則民家 百餘戶·鹽釜七十餘坐, 將未免撤毀渙散, 且水源元 兆長流, 地勢亦爲最高, 築筒作畚, 初非可論, 一處既 無上流之水源, 又是地形之偏高, 則亦非導水作畚 處, 請令廟堂稟處矣, 道臣既枚舉本倅牒呈, 備陳 民情之不欲, 且其兩處地形, 既非導水之處, 許多民 家鹽盆, 又不可撤去, 則築筒一款, 非所可論, 置之何 如, 上曰, 依爲之.

又所啓, 頃因幼學趙■上疏, 江華吉祥牧場許 耕便否, 令守臣, 審察形便, 論理狀聞之意, 覆啓行會矣, 卽見江華留守尹承烈狀啓, 則以爲躬往 牧場, 看審形便, 則本場周廻, 幾至二十里, 可以作畚 者, 殆將五六百石落, 可以墾田者, 不下數百石落, 而 本牧場馬, 昔爲四百餘匹, 今不過一百三十六匹, 可 想其漸就耗縮, 且本場東面浦口平開潮滿之時, 雖 千艘, 可以容易乘水, 實爲南來帆檣下陸初程, 且多 仁富南水之間, 乘舟向江都, 則亦由是路, 而粵在戊 申警備之日, 分兵露屯, 先此一面, 其爲本府大關防 最要者, 不言可知, 本府所管牧場煤音·長峰·信島等島, 場地頗廣, 水草亦豐, 馬匹移送, 多有餘裕, 各島 分排及牧子區處, 令本寺, 從便舉行, 該牧場, 特許募 民入耕事, 請令廟堂, 稟處矣, 前後守臣, 與太僕, 以 吉祥牧場事, 爭論便否, 非止一再, 而俄於閣外聞之, 則司僕一提調, 以本島之不可許民, 送言於有司堂 上云, 大臣之議, 既如此, 難以更議, 第以守臣狀辭見 之, 馬既耗損, 移送三島, 綽有餘裕, 作畚墾田, 可得 三 數百石落, 又況關防要害, 無過本場, 則時平可以裕 食, 警急可以得力, 以公以私, 恐不必持難矣, 上曰, 南來帆檣, 下陸初程, 爲本府大關防最要害, 半千馬 匹, 餘只百餘, 在該寺, 得失似無損益, 況關土開墾, 島 民之情願, 又如許, 則地利人和, 政謂此也, 依狀請施 行, 除非別般窒礙之端, 更勿爭難之意, 言于該寺可 也.(…)

<비변사등록 174책, 정조 13년 1789년 05월27일(음)>

## 경제/교통

### 礪山 등 세 읍의 稅船을 침몰시킨 監色과 沙格을 논죄하지 말라고 전교하다

○ 같은 날 입시하였을 때에 호조 판서 조경진(趙鼎鎭)이 아뢰기를, “여산(礪山), 장흥(長興), 순천(順天) 세 고을의 세선(稅船)이 지난해 여름에 태안(泰安)에서 침몰하였는데, 지

난번에 호서의 도신이 격식을 갖추어 장문한 뒤에 검색과 사격 등이 배가 침몰한 정황을 추후에 사실을 철저히 조사하여 논계하라고 하였으므로 해도에서 철저히 조사한 장문을 기다려 다시 품처하겠다는 내용으로 복계하여 윤희를 받았습니다. 지금 경기 감사 서정수가 진달함으로 인하여 **남양(南陽)** 경내에서 해남현의 대동미를 실은 배를 침몰시킨 검색과 사격에게 유지(宥旨)를 내리기 이전의 일이라 하여 이미 방송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이번 이여산 등 세 고을의 세선이 침몰당한 것도 유지를 내리기 이전에 해당되니,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는 정사에 있어서 달리 해서는 안 될 듯 합니다. 그러므로 감히 이렇게 우러러 아뢰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당초에 해조에서 회계(回啓)한 것은 제대로 살피지 못한 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니, 어찌 유지를 내리기 이전의 일과 합하여 조사하기를 청한단 말인가. 경은 추고하고 검색과 사격은 해남현의 예를 따라 논죄하지 말라.” 하였다.

同日入侍時，戶曹判書趙鼎鎮所啓，礪山·長興·順天三邑稅船，昨年夏致敗於泰安地，頃因湖西道臣具格狀聞，以監色沙格等敗船情節，追後究覈論啓事，待該道究覆狀聞，更爲稟處之意，覆啓蒙允矣，今因京畿監司徐鼎修陳達，**南陽**境致敗海南縣大同船，監色沙格，以宥旨前事，既有放送之命，今此礪山等三邑稅船致敗，亦在宥旨前，則其在一視之政，恐不可異同，故敢此仰達矣，上曰，當初該曹回啓，難免不審，豈可以有旨前事，混請查覈乎，卿則推考，監色沙格，依海南例，勿論可也。

<비변사등록 178책, 정조 15년 1791년 06월20일(음)>

#### 경제/교통

##### **大阜島僉使를 兼監牧官에 下批하도록 該曹에 分부할 것을 청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남양(南陽)의 대부도(大阜島)**는 지금 해방아문(海防衙門)에 소속되어 있는데, 목장(牧場)과 관계되어 있으므로 내버려 두는 것은 걱정스러우니, 해도(該島)의 첨절제사(僉節制使)를 겸감목관(兼監牧官)으로 하비(下批)하도록 해조(該曹)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府啓曰，**南陽大阜島**，今屬於海防衙門，而係是牧場，拋置可悶，該島僉使，以兼監牧官下批之意，分付該曹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66책, 고종 22년 1885년 04월26일(음)>

### (3) 농수산업

#### 경제/농수산업

長湍府使 李楠 등이 長湍 등지에 都事를 보내 陳田을 摘奸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 같은 날 입시하였을 때에 장단부사 이적이 아뢰기를, (...) 남양부사(南陽府使) 김성우(金聖遇)도 말하기를, “본부(本府) 또한 개량(改量)하여 진전(陳田)에 붙인 것이 허다하나 분향면(分鄉面)이 더욱 심하여 이징(里徵)의 폐단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대신의 의견은 어떠한가?” 하였다.

우의정 신만(申晩)이 말하기를, “일찍이 이러한 곳에는 본도(本道)의 도사(都事)를 보내서 적간하여 사실을 조사한 예가 있었으니 지금도 그 예대로 거행하여 도신이 상세히 장문(狀聞)한 뒤에 묘당에서 품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지금 도신이 아뢴 바를 들으니 장단뿐만 아니라 부평·진위·과천도 그렇다고 하고, 또 두 수령이 아뢴 바를 들으니 양주와 남양 두 고을도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한다. 추수(秋收) 즉시 도사를 보내서 상세히 간심(看審)하게 한 뒤에 도신이 장문하기를 기다려 등대하여 품처하라.” 하였다.

同日入侍時, 長湍府使李楠所啓, (...) 南陽府使金聖遇曰, 本府亦多量 付陳田, 而分鄉一面尤甚, 不無里徵之弊矣, 上曰, 大臣之意何如, 右議政申曰, 曾於此等處, 有發遣 本道都事摘奸查實之規, 今亦依此舉行, 道臣詳細 狀聞後, 自廟堂稟處似好矣, 上曰, 今聞道臣所奏, 非徒長湍, 富平·振威·果川亦然云, 而又聞二令所奏, 楊·南兩邑, 亦有此等云, 秋成即時遣都事詳細看審 後, 待道臣狀聞登對稟處.

<비변사등록 131책, 영조 32년 1756년 08월08일(음)>

#### 경제/농수산업

메밀을 代播하는 해당 고을에 需要가 부족하면 附近 邑에서 次次 移用할 것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어제 아침부터 밤이 지나도록 주룩주룩 쏟아져 근일에 우택의 수심이 거의 몇 치[寸]가 넘었으니 너무나 다행스럽다. 그러나 필시 때에 늦은 곳이 있을 터이니 부지런히 다른 곡식을 대신 파종하게 하는 것이 어찌 비가 내린 전후가 다르겠는가? 경기감사를 불러 그 사이에 거행한 상황을 묻고 경상감사도 주좌(籌坐)에서 불러보고 상세히 강구하도록 하라.’ 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비변사에 와서 기다리게 하여 난숙하게 강구하였는데 경기감사 이재학(李在學)은 말하기를 ‘다른 곡식을 대신 파종하는 일로 이미 조열(條列)하여 각 고을에 알렸는데, 근일 비가 내린 뒤에 모내기가 한창이므로 다음 달 초순전에는 옮기고 옮기지 못한 것이 비로소 판단이 될 것이나 지금 헤아려본 바로는 필시 옮겨 심지 못한 곳이 많을 것이니 일에 앞선 우려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파종에 적합한 곡식을 각 고을에서 미리 헤아려 보고하게 하였으니 그 보고가 일제히 도착한 뒤에라야 거기에 들어갈 수량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곡식을 막론하고 본 고을에서 구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때 그때 구해 주겠으나 메밀은 가장 긴요한 곡종으로 각 고을 창고에 유치된 수가 더러는 많기도 하고 더러는 적기도 하는데, 남양(南陽)·안산(安山)·진위(振威)·안성(安城)·양성(陽城)·양지(陽智) 등과 같은 고을에는 애당초 함 섬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수량을 헤아려 분배(分排)하되, 더러는 물길에 따르고 더러는 부근에 따라 점차로 이전(移轉)할 계획입니다마는 도내의 창고에 유치된 것을 합한 수량이 3천 6백여 석이니 그 수는 본래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5백 석을 수원으로

이송(移送)하면 3천 석으로 33고을에 분배해야 하니 매우 부족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는 창고에 유치 중인 메밀이 많으므로 1천 석을 구획하는 뜻으로 금방 묘당에 논보(論報)하였으니 묘당에서 관문을 보내어 알리면 지금 당장 상류의 각 고을에 지시하여 즉시 배를 구하여 실어다가 배분하여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경상감사 이의강(李義綱)은 말하기를 ‘본도의 모를 옮겨 심지 못한 곳의 많고 적음과 근일 우택이 얼마나 되는지를 상세히 알 수 없으나 지금 다른 곡식을 대신 파종하는 일은 한 시각이 급합니다. 본도 각 고을에 있는 메밀을 회부(會付)로 보면 분급(分給)과 유고(留庫)를 아울러 1만 4천여 석이 되지만 본색(本色)으로 창고에 유치되었는지는 기필하기 어렵고 또 길의 멀고 가까움과 전이(轉移)의 편리함과 불편함 역시 멀리서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야흐로 감영에 머물고 있는 서리에게 영(令)을 전하여 가도사(假都事)로 하여금 화급히 각 고을에 알려 경내의 대신 파종할 곳과 모를 옮겨 심지 못한 곳의 많고 적음을 비교 작량하고 메밀 본색의 실제 수량과 이전하는 거리를 성책(成冊)으로 만들어 도계소(到界所)로 보고하게 하여 헤아려 분배하고 급속히 대신 파종하도록 하였으나, 나머지의 다른 일은 감영에 도착한 뒤에 상세히 살펴서 거행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영남(嶺南)에서 거행한 바는 사세로 보아 참으로 옳습니다마는 이미 하루 이틀 내에 사조(辭朝)하게 하라는 명이 계셨으니 그가 부임(赴任)하기를 기다려 거행한 상황을 즉시 일에 따라 논보하라는 뜻으로 별도로 대면하여 신칙하고, 경기 감영에서 원주에 메밀을 청원한 것은 일에 앞서 염려하는 도리에 있어서 논보를 기다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동의 메밀은 본래 그곳 토질에 적합한 곡식이고 원주의 메밀은 그 수량 역시 넉넉하니 수원에 3백 석을 구획하는 외에 7백 석을 더 구획하도록 관문을 보내어 그들에게 준비하여 기다리게 하고 당해 도에서 왕복하기를 기다렸다가 즉시 실어 보내어 늦어져서 미치지 못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되, 당해 고을의 수요가 만일 이를 인하여 부족하다면 이웃 고을에 있는 메밀을 짐차로 옮겨다 쓰도록 하라는 뜻으로 일체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傳曰，昨日自朝過夜之需然滂沱，近日雨澤，水深幾過數寸，萬萬幸甚，而必有後時處，則勸令代播豈在於得雨前後，招問畿伯，以其間舉行形止，嶺伯亦爲招見於籌坐，詳細講究事，命下矣，使之來待籌司，爛加講確，則京畿監司李在學以爲，代播一節才已條列，知委於各邑，而近日得雨之後，移秧方張，來月初旬前，已移·未移始可判斷，而以今所料必多有未移處，先事之慮不可少緩，故宜播之穀，使各邑預爲料量以報，待其齊到，可知其容入數爻，勿論某樣穀，自本邑可以覓給者，則固當臨時覓給，而木麥以最繁之種，各邑留庫之數或多或少，如南陽·安山·振威·安城·陽城·陽智等邑，則初無一石，故的量分排，或從水路，或從附近，次次移轉爲計，而道內留庫都數爲三千六百餘石，其數本自不敷，其中五百石移送於水原，則以三千石分排於三十三邑，甚有不足之患，原州木麥留庫既多，以一千石區劃之意，今方論報廟堂，自廟堂發關知委，則卽當行會於水上各邑，趁今覓船運來，以爲分排移送之道云，慶尙監司李義綱以爲，本道未移之多寡，近日雨澤之幾何，未得詳知，而目今代播一時爲急，本道各邑所在木麥，以會付觀之，竝分留雖爲一萬四千餘石，而難期其本色留庫，且程途之遠近，轉移之便否，亦不得遙度，今方傳令於留營吏，使假都事星火知委於各邑境內代播處，較量未移之多少，木麥本色之實數，移轉之程途，修成冊報來于到界所，以爲料量分排，使之急速代播，他餘事件，到營後詳察舉行云矣，嶺南舉行事勢誠然，而既有一兩日內辭朝之命，待其赴任舉行形止，卽爲隨事論報之意，另加面飭，畿營之以原州木麥爲請，其在先事之慮，不必遲待論報，且關東木麥本其土宜之穀，原州木麥其數亦優，水原三百石區劃外，七百石加區劃發關，使之備待，待該道往復，隨卽裝送，俾無稽滯未及之弊，該邑所需如或因此不足，則附近邑所

在木麥次次移用之意，一體分 付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187책, 정조 22년 1798년 05월27일(음) >

### 3. 사회(社會)

#### (1) 가족

##### 사회/가족

##### 京畿道臣에게 인구 수를 상세히 조사하게 하라고 전교하다

○ 전교하기를, “지금 경기 도신의 각 고을 진정 계본(賑政啓本)을 보니 **남양(南陽)**은 일곱 번째 돌림[巡]에 2천 5백 14구(口), 여덟 번째 돌림에 1천 9백 92구, 아홉 번째 돌림에 1천 9백 87구였는데, 처음 접수된 주민에게 환곡을 주는 것은 사세가 참으로 그러하나 열 번째 돌림에 다시 1천 9백 92구가 되어 교묘하게도 여덟 번째 돌림과 부합한 것은 그 까닭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통진(通津)은 여섯 번째 돌림에 7백 4구, 일곱 번째 돌림에 6백 69구, 여덟 번째 돌림에 6백 70구이고, 안산(安山)은 여섯·여덟·아홉 번째 돌림에 4백 80여 구이나 오직 일곱 번째 돌림은 4백 90여 구이며, 음죽(陰竹)은 여섯·여덟 번째 돌림의 70여 구 중에서 일곱 번째 돌림만 3백 80구이고, 진위(振威)는 여섯 번째 돌림에 6백 62구, 일곱 번째 돌림에 60구, 여덟 번째 돌림에 6백 26구인데 그 중에 인구가 영성(零星)하여 차등이 있는 것은 괴이한 일이 아니지만 더러는 적고 더러는 많아 일정하지 않은 것은 왜 그러느냐? 혹 사세가 그렇다면 그것은 그래도 가하겠으나 만약 정밀하게 가려내지 않아 이와 같다면 조심성 있게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도신에게 상세히 조사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傳曰，今覽京畿道臣各邑賑政啓本，**南陽**，則七巡，二千五百十四口，八巡，一千九百九十二口，九巡，一千九百八十七口，初付之民，若付還穀，則其勢固然，而十巡，復以一千九百九十二口，巧符於八巡，其故焉在，通津，六巡，七百四口，七巡，六百六十九口，八巡，六百七十，安山，六·八·九巡，四百八十餘口，惟七巡，四百九十餘口，陰竹，六·八巡，七十餘口中，七巡，三百八十口，振威，六巡，六百六十二口，七巡，六十口，八巡，六百二十六口，其中人口零星，差等者，不是異事，或少或多不一者何，或以事勢而然，則容或可也，若不精抄，而若此，不謹可知，令道臣詳查以聞。

<비변사등록 144책, 영조 39년 1763년 08월06일(음)>

## (2) 윤리 · 풍속

### 사회/윤리 · 풍속

#### 京畿 지역의 백성들에게 種子를 지급해주는 일에 대해 아뢰다

아뢰기를, "며칠전 경기감사가 장계로 기민(畿民)을 위해 종자를 요청하였으므로, 통영의 종조(種組)를 고대(苦待)한다는 뜻으로 겨우 알렸습니다. 근일 굶주린 백성이 비가 좀 내리자 씨 뿌리는 일이 급하여 매일 와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도(江都)의 문서를 상고하면, 정해년 겨울의 회계(會計)에 정조(正租)가 1천 8백여 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둘러 이 비 1천여 석을 덜어내어 우선 흉년이 매우 심한 안산(安山)·부평(富平)·인천(仁川)·김포(金浦)·통진(通津)·양천(陽川)·남양(南陽)에 나누어 주어 제때에 씨앗을 뿌리도록 하여, 파종 시기를 놓치는 걱정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啓曰, 數日前京畿監司爲畿民狀啓, 請種子, 而苦待統營種租之意, 纔已行會矣, 近日畿民因小雨, 急於耕種, 逐日來訴, 取考江都文書, 則丁亥冬會計, 有正租一千八百餘石, 急急除出, 此租千餘石, 爲先分給安山·富平·仁川·金浦·通津·陽川, 南陽尤甚凶荒處, 及時落種, 俾免失時之患, 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12책, 인조 26년 1648년 03월 29일(음)>

### 사회/윤리 · 풍속

#### 右副承旨 柳命堅이 입시하여 水原을 즉시 구휼하여 군병을 보존케 할 것을 청하다

이달 초2일 소대(召對)가 있어 입시하였을 때에 우부승지 유명견(柳命堅)이 아뢰기를, "신이 연전에 수원(水原)을 맡은 일이 있는데 그 때에도 연달아 흉년을 만났습니다. 얼핏 듣자니 적지(赤地)가 된 참상은 금년이 그 때보다 심하여 연해(沿海)의 28개면 백성들은 떠돌이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되었다 합니다. 군과 민을 똑같이 구휼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異論)이 없을 줄 아오나 수원은 군액(軍額)의 수요가 훈련도감보다도 많고 위급한 일이 있을 때 의탁하려고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조정에서 제 때에 진휼하지 않아 조직된 군병이 하루아침에 흩어진다면 더구나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전하께서 특별히 총융사에게 하유하셔서 비국의 여러 대신들과 상의하고 별도로 조치하여 즉시 구휼함으로써 대오에 편성된 군병을 보존케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경기의 남양(南陽) 등 연해 군읍도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나 신이 듣기로는 수원이 더욱 심하다 하기에 감히 이렇게 아뢰는 바입니다."

하니, 우찬성 윤휴(尹鑄)가 아뢰기를, "신의 생각은 유명견(柳命堅)과는 다릅니다. 옛 사람은 곡물이나 백성을 옮기는 것을 왕정(王政)의 발단이라 했었으나 우선은 곡물을 옮겨 당장 흩어지려는 위급을 구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임금께서 별도로 전교하셔서 조정의 덕의(德意)를 보이심이 마땅합니다. 군병을 맡은 사람에게 주관하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 수원만 따로 할 것이 아니라 경기의 극심한 고을은 모두 우선적으로 진구(賑救)해야만 비로소 왕자(王者)의 일시(一視:다같이 보살핌)라는 정사에 합당할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금년에도 경기 지방에 흉년이 들었으나 수원이 더욱 심하여 편성된 군병이 흩어지려 한다 하니 어떤 곡식으로라도 우선 구휼하고 기타 아주 심한 고을도 경중을 가려 진구하도록 똑같이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하였다.

今十月初二日召對入侍時, 右副承旨柳命堅所啓, 臣於年前待罪水原, 連值凶歉, 而仄聞今歲赤地之慘, 甚於往年, 沿海二十八面之民, 將未免流離云, 軍民一體賑恤之策, 似無異同, 然水原軍額之數不下於訓局, 卽緩急所恃之地, 朝家若不及時軫恤, 團束之軍一朝流散, 則尤極可慮,

自上特諭摠戎使，使與備局諸大臣相議，別樣區劃，趁卽賑救，使編伍之軍，得以保存宜當，畿內南陽等沿海之邑，不無被災，而臣之所聞水原尤甚云，故敢此仰達，右贊成尹鑄曰，臣意則與柳命堅異矣，古人以移粟移民爲王政之末，而第宜姑先移粟以救，卽今流散之急，而此等事自上別爲傳教，以示朝廷德意宜當，何必使主兵之人句管乎，且不獨水原爲別，畿內尤甚之邑，並爲急先賑救，然後方可合於王者一視之政矣，上曰，今年畿甸失稔，而水原尤甚，團束之軍，將至流散云，以某樣穀物，急先賑救，其他尤甚邑，亦爲分輕重賑救事，一體講究可也。

<비변사등록 35책, 숙종 5년 1679년 10월 03일(음)>

### 사회/윤리 · 풍속

#### 宣惠廳 各種 貢物價의 釐正을 別單에 써서 들일 것을 청하다

영돈녕부사 민유중(閔維重)이 아뢰기를 (….) 또 아뢰기를, "남양(南陽)의 노인 이상서(李尙緒)가 지난해 경강(京江)에 와서 정장(呈狀)하여 양식을 구걸(求乞)하였습니다. 호적을 상고해 보니 금년 1백 3세이므로 그 아들을 불러 물으니 역시 실제 나이가 1백 3세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실상을 알고자 하여 본도에 공문을 보내어 조사, 보고하도록 하니 그 보고에 이르기를 이상서는 사족의 서출(庶出)로서 병오년(현종 7년(1666))에 나이 80으로서 통정첩(通政帖)을 받았으나 그 당시 나이는 86세였으며, 또 을묘년(숙종 1년(1675))에 나이 89세로서 가선첩(嘉善帖)을 받았습니다. 각 년도의 호적을 상고하면 금년에 1백 3세가 되고 동리 사람에게 물으니 모두 '신사생(선조 14년(1581))이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호적 및 본읍의 보고로서 보면 1백 3세인 듯하나 병오년에 나이 80으로 자급을 더해 받은 한 가지 조항은 의문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병오년에 나이 80이었다고 말하더라도 금년에는 97세가 됩니다. 지금 본읍에 분부하여 특별히 진휼미로 먹을 것을 지급하도록 할 것이며 진휼사목(賑恤事目)에는 비록 거론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노인에게는 조정에서 노인을 우대하는 은전이 있어야 할 듯합니다. 그러므로 감히 아뢰습니다."하니, 임금의 말하기를, "특별히 자급을 더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영의정 김수항(金壽恒)이 아뢰기를, "이미 가선첩을 받았으니 지금 자헌(資憲)으로 올려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헌은 당상가선의 예로 가하는 데 비할 일이 아니니 가볍게 시행할 수 없습니다."하니, 상이 말하기를, "나이가 이미 1백세를 넘었으니 우대하는 은전이 없을 수 없다. 먹을 것을 지급하도록 하고 특별히 자급을 높이는 것이 좋겠다."하였다.

領敦寧府事閔維重所啓, (….) 又所啓, 南陽老人李尙緒, 頃日來接京江, 呈狀乞糧, 考見一戶籍, 則今年一百三歲也, 招問其子, 亦以實年一百三歲爲對, 而欲知其實狀, 行關本道, 使之查報, 則其所報以爲尙緒以土族庶出, 丙午年, 以年八十, 受通政帖, 而其時年八十六歲, 又於乙卯, 以年八十九, 受嘉善帖, 考閱各年戶籍, 則今年爲一百三歲, 問於其洞里, 皆以爲辛巳生云, 以戶籍及本邑所報見之, 則似是一百三歲, 而丙午年, 以年八十加資此一款, 不無可疑, 而雖以丙午年年八十言之, 今年猶爲九十七歲矣, 今當分付本邑, 別以賑米題給食物, 而賑恤事目中雖不舉論, 如此老人似或朝家優老之典, 故敢達, 上曰, 特爲加資未知何如, 領議政金曰, 旣受嘉善帖, 則今當陞受資憲, 而資憲, 非堂上嘉善例加之, 比(此)不可輕施也, 上曰, 其年旣過百歲, 則不可無優異之典, 食物題給, 特爲超資可也.

<비변사등록 37책, 숙종 9년 1683년 03월 15일(음)>

### 사회/윤리 · 풍속

#### 正言 韓重熙 등이 京畿 尤甚邑을 三南과 같이 分災하는 문제를 아뢰다

이번 9월 16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정언 한중희(韓重熙)가 아뢰기를 (…) 또 아뢰기를, "이것도 총융사 이우항의 장계입니다. 본청에 소속된 **수원(水原)·남양(南陽)**·장단(長湍) 3영(營)의 속오군(東伍軍)은 봄 가을의 순력 조련과 시사(試射)·시방(試放)을 연달아 흉년이 든 때문에 4년 동안 중지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전례대로 거행하여야 하겠으나 통진(通津)의 문수산성(文殊山城) 조련과 군병의 시사·시방 등의 일은 지난 경진년에 순력하였을 때에도 비국의 복계로 인하여 산성의 조련은 실시하지 않았으니 이번에도 이 예대로 군병의 시사 시방만 행하도록 묘당으로 하여금 품의 처리하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경기의 금년 농사는 6~7월에 비가 내린 뒤에는 그래도 흉년은 면할 듯한 가망이 있었는데 8월 이후에는 소문이 갑자기 변하여 결국 실농이 되고 말았으니 경기 백성들의 거둬들인 고난이 지극히 염려스럽습니다. 총융사가 순력하는 것은 어려울 듯하나 군정을 폐지하는 것도 몹시 민망스러운 일입니다. 전에도 이러한 때에는 종사관이나 중군(中軍)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고 이어 시사와 시방을 행하였다 합니다. 이번에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였고, 우의정 이유가 아뢰기를, "경기의 군정은 연달아 흉년이 들어 중지한 지 이미 오래인데 금년의 농사가 또한 부실하니 총융사의 순력 조련은 비록 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혹 종사관을 보내서 점검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하니, 임금의 대답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

今九月十六日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正言韓重熙所啓，(…)又所啓，此亦摠戎使李宇恒狀啓也，本廳所屬**水原·南陽**·長湍三營東伍，春秋巡歷操鍊試射放等事，連因凶歉，四年拋棄，今年當前例舉行，而通津·文殊山城之操，及軍兵試射放等事，則曾於庚辰巡歷時，因備局覆啓，不行城操，今亦依此例，只行軍兵試射放事，令廟堂稟處矣，今年畿甸農事，六七月得雨後，猶有兌凶之望，八月後所聞頓變，終歸於失稔，畿民重困，誠極可慮，摠戎使巡歷則似難，而軍政拋廢，亦甚可悶，在前如此時，令從事或中軍點視，仍行試射放云，今亦使之依此施行似宜矣，右議政李曰，畿內軍政，連值凶歉，廢棄已久，而今年年事，亦且不實，摠戎使巡歷操鍊，雖不可行，或遣從事官點視似當矣，上曰，依爲之，李曰，既停摠戎使巡歷，則文殊城操，自當停止矣，上曰，然矣。(…)

<비변사등록 55책, 숙종 30년 1704년 09월 16일(음)>

### 사회/윤리·풍속

**行副護軍 閔鎮遠이 釐正廳 업무에 밝은 吏曹判書 李寅燁이 罷職을 재론할 것을 청하다**

이번 9월 29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행부호군 민진원(閔鎮遠)이 아뢰기를, "옛그제 연중(筵中)에서 소신(小臣)은 이정청(釐正廳)의 일을 그대로 살피자는 명을 받들었습니다. 이정청의 일은 이제 이미 1년이 넘었고 전후로 신칙한 바가 한 두번이 아니었으니 의당 진즉 봉행하였어야 하나 다만 난처한 사단이 있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양달하옵니다. 작년에 신더러 이익수(李益壽)와 함께 이정청의 일을 구관(句管)하라고 계하하셨으나 이정청의 그 맡은 문서를 당초에 구관한 자가 미처 결말을 짓지 못하였고, 신은 연달아 외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 두서를 알지 못합니다. 비록 구관한 사람도 그 이해와 편부(便否)를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신처럼 전연 알지 못하는 처지에서이겠습니까? 처음부터 담당하여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은 이조판서 이인엽(李寅燁)이어서 매사를 이인엽에게 물어보아야만 거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인엽과 하루 밤을 공해(公廩)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그와 상의하여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였는데, 그때에 이인엽이 사람의 비방을 듣게 되어 여러 달

을 인협하여 들어가 있었고 계속해서 신과 이익수가 모두 수원(水原) 전결(田結)의 일로 연달아 대죄(待罪) 중에 있다가 결국은 그 일로 파직되었기 때문에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이인엽이 또 인협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어제 낭청을 보내서 사석(私席)에서 상의하자는 뜻으로 타진하였더니 대답이 본직(本職)을 내놓기 전에는 절대로 공사(公事)에 간섭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인엽의 출사(出仕)가 언제 있을 지는 알 수 없으나 성명(成命)이 내린 처지에서 이토록 지연(遲延)하게 되었기 때문에 황공하여 감히 양달하옵니다."

하였고, 영의정 최석정이 아뢰기를, "지난번 두 사람이 함께 구관하라고 결정하여 계하하였으나 민진원이 전관(專管)하기가 어려워 이렇듯 양달하게 된 것입니다. 대체로 이정청에서 여군(餘軍)을 미처 다 조치하지 못한 자들을 여러 관사에서 매우 시급히 얻고자 하므로 지금 먼저 이 일을 처지하려고 가려내서 초(草)를 잡는 중입니다. 이익수는 지금 강 밖에 멀리 떨어진 곳에 나가 있으니 이는 서신으로 문의해도 어려울 것이 없겠고, 이인엽에 있어서는 비록 전조(銓曹)에 불안한 점이 있어 이 일에 간여하고 싶어 하지 않으나 다른 관사(官司)도 지금 보살피고 있으니 이정청의 일이라고 해서 인협하고 보살피지 않을 수는 없을 듯합니다. 만일 사사로 상의하여 한다면 공석(公席)에서 수응(酬應)하는 것과는 다름이 있으니 함께 구관하여 빨리 처리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하니, 임금의 대답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영의정 최석정이 아뢰기를, "금년의 흉황은 비록 을병(乙丙:을유년과 병술년) 양년과는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경기 호서 이외의 다른 도도 면흉(免凶)한 곳이 없습니다. 전에는 흉년이 들면 백성들의 요역(徭役)을 많이 견감해 주었습니다. 금년에는 비록 전처럼 모두 감해 주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 경중(輕重)을 참작해서 일찍 분부하는 기조가 없을 수 없겠기에 감히 이렇게 양달하는 바입니다. 제도(諸道)의 우심읍(尤甚邑)에는 당년조의 제반 신역(身役)을 특별히 3분의 2를 감하고 지차(之次)와 초실읍(稍實邑)은 다 받도록 하되 구미수(舊未收)의 신평(身布)에 있어서는 다 받기 어려울 것 같으나 작년조는 거의 절반을 받았으니 이는 형편을 보아가면서 받는다 하더라도 병술년 <재작년에 해당함> 이전조는 우선 중지하는 것이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신이 여러 대신 및 재신(宰臣)과 상의하여 보니 소견이 대체로 같았고, 몇몇 재신은 말하기를 '만일 감해 주기로 한다면 겨우 3분의 1을 감하게 되니 비록 적다고 할지 모르나 이것도 합산하면 많은 수량이고 타도의 농사는 경기에 비하면 차등이 없을 수 없으니 경기의 우심처 이외에는 감해서 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기왕 우심읍을 분등(分等)하여 계문한 뒤에 경기에만 감해 주고 타도에는 미치지 않는다면 민정(民情)은 틀림없이 고르지 못하다고 할 것인데 조정의 정령(政令)은 마땅히 대체(大體)가 어떠한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또 제도에 비록 우심처가 있다 하더라도 경기는 다른 도와는 자별한 만큼 대동미(大同米)를 양감(量減)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차(之次) 이상은 비록 두루 미치기 어려우나 우심처만은 대동미를 2두씩 감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또 경기감사의 장계를 보건대 인천(仁川)의 답곡(畓穀)은 전연 수확할 것이 없으니 불가불 별도의 견감(鑄減)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순력(巡歷)할 때에 신에게 와서 말하기를 '인천·수원(水原)·남양(南陽) 등지가 우심 중에서 가장 우심하나 남양과 수원은 인천에 비하면 그래도 낫다.'고 하였습니다. 인천이 가장 우심한 것으로 미루어 알만 하니 인천은 특별히 3두를 감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입시한 재신(諸臣)에게 하순(下詢)하시는 것이 어땠겠습니까?"하니, 임금의 대답이 이르기를, "밖에 있을 때에 필시 상의하였을 것이나 여러 대신도 각각 소견을 말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행예조판서 조상우(趙相愚)는 아뢰기를, "밖에 있을 때에 원임대신 및 제재(諸宰)가 이미 상의하였는데 대신이 진달한 바가 참으로 좋습니다."하였고, 행형조판서 강현(姜鉉)은 아뢰기를, "밖에 있을 때에 신 역시 상의하였으니 다시 다른 이의(異議)는 없습니다."하였으며, 호조판서 김우항(金宇杭)은 아뢰기를, "밖에 있을 때에 이미 상의하였으니 신도 이의가 없습니다."하였고,

행부호군 민진원(閔鎭遠)은 아뢰기를, "여러 의논이 모두 금년의 흉황은 경기가 더욱 심하고 다른 도의 우심읍은 경기와 똑같이 견감할 수는 없으므로 마땅히 차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는데 이 말은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만 생각컨대 흉년에 백성을 돌보는 정사로는 전세(田稅)를 몇 말 감한다 하더라도 소민(小民)은 그 혜택을 입지 못하고, 신역(身役)을 견감해 주어야 가장 실혜(實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듯 비상한 흉황을 당하여 경비가 비록 다하였다 하더라도 구태어 차등하고 구별할 것은 없을 듯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경기와 타도의 우심읍의 신포는 똑같이 3분의 1을 감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대신이 참작하고 진달한 말이 좋은 것 같은데 제신도 이의가 없으니,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하였다.

今九月二十九日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行副護軍閔鎭遠所啓，日昨筵中，小臣，以釐正廳仍察事，承命矣，釐正廳事，今已經年，前後申飭，亦非一再，所當趁即奉行，而第有難處之端，故敢此仰達矣，上年臣與李益壽，同爲句管釐正廳事，啓下，而釐正廳許多文書，當初句管者，米及了當，臣則連在外職，故不知其頭緒，雖句管之人，猶難知其利害便否，況如臣之全未曉解者乎，自初擔當而精練者，乃吏曹判書李寅燁也，每事問於寅燁，然後可以爲之，故與寅燁，約以會宿於公廡，商議停當矣，其時寅燁，遭人言，累朔引入，繼而臣與益壽，皆以水原田結事，連在待罪中，終至坐罷，故未果矣，卽今寅燁，亦方引入，故昨送郎廳，問以私室同議之意，則答以本職未遞之前，決難參涉於公事云，寅燁出仕，未知當在何時，而成命之下，遷就至此，故惶恐敢達矣，領議政崔曰，頃日以兩臣同爲句管事，定奪啓下，而鎭遠難於專管，有此仰達矣，蓋釐正廳餘軍之未盡區處者，諸各司請得甚急，方欲先充此事，抄出起草，而益壽方在江外不遠之地，此則以書札問議非難，至於李寅燁則雖以不安於銓職，不欲可否於此事，而他司亦方察任，則釐正廳事，似不可引嫌不察矣，若私相往復而爲之，則與公會酬應有異，使之同爲句管，從速區處，似好矣，上曰，依爲之，領議政崔所啓，今年凶荒，雖與乙丙，稍異，畿湖之外，他道亦無免凶之處，在前凶年，則百姓徭役，多所蠲減，今年，雖難如前劃減，亦不可無參量 $\alpha\alpha$ ，趁早分付之道，故敢此仰達，諸道尤甚邑，則當年條諸般身役，特減三分之一，而之次·稍實邑則使之准捧，至於舊未收身布，則似難盡捧，而上年條則幾至一半收捧，此則雖當觀勢收捧，而丙戌以上條，則姑爲停捧，未知何如，臣與諸大臣及諸宰相議，則所見大抵相同，而數三宰臣，以爲若以所減言之，則僅三分之一，雖若爲少，而合以計之則亦多矣，他道年事，比京畿不無差間，京畿尤甚處外，似難減捧云，而臣之意，則以爲既以尤甚邑分等啓聞之後，只減於京畿而不及於他道，則民情必以爲不均，朝家政令，當看大體之如何矣，且諸道，雖有尤甚處，京畿，則與他道自別，大同米宜有量減之事，之次以上，雖難徧及，而尤甚處則大同米減二斗，似好矣，且見京畿監司狀啓，則仁川番穀，全無所收，不可不判樣蠲減云，且於出巡時，來言于臣曰，仁川·南陽·水原等邑，皆是尤甚之最者，而南陽·水原，若比於仁川，則反復爲勝云，仁川之爲其尤甚，推此可知，仁川特減三斗，似好矣，下詢于入侍諸臣，何如，上曰，在外時，必已相議矣，諸大臣，各陳所見，可也，行禮曹判書趙相愚曰，在外時，與原任大臣及諸宰，已爲商量，大臣所達，誠好矣，行刑曹判書姜鉉曰，在外時，亦已商確，更無他議矣，戶曹判書金宇杭曰，在外時，既已商確，臣亦無異議矣，行副護軍閔鎭遠曰，諸議，皆以爲今年凶荒，京畿尤甚，他道尤

甚邑，不當與京畿爲一體，蠲減之政，宜有差等云，此言固結矣，而但念凶歲恤民之政，田賦雖減數斗，小民未蒙其澤，而身役蠲減，最爲實惠，當此非常之凶荒經費，雖曰，匱竭，恐不必區別差等，臣意則京畿及他道尤甚邑身布，一體減三分之一，似好矣，上曰，大臣參量陳達之言，似好，諸臣亦無異辭，依此爲之可也。

<비변사등록 59책, 숙종 34년 1708년 10월 02일(음)>

### 사회/윤리 · 풍속

#### 吏曹判書 李晩成등이 北漢山城 환자의 減捧에 대해 논의하다

이번 11월 20일 삼복(三覆)에 입시하였을 때 이조판서 이만성(李晩成)이 아뢰기를, (...) 공조판서 조태채(趙泰采)가 아뢰기를, "금년 경기의 흉작은 수원(水原)과 남양(南陽)같은 곳이 우심하여 받아들인 환자가 겨우 3분의 1에 이를 뿐입니다. 이같은 고을은 비록 균량이라도 절반만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금천(衿川)에서는 경리청의 환자를 다 거둬들었다고 하니 다른 고을도 힘에 따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고, 이만성은 아뢰기를, "만약 여러 고을로 하여금 힘에 따라 받아들이게 하고 한계를 정해서 분부하지 않는다면 수령들이 봉행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하였다. (...)

今十一月二十日三覆入侍時，吏曹判書李晩成所啓，(...) 工曹判書 趙泰采曰，今年畿甸凶荒，如水原南陽尤甚還穀之捧，僅至三分之一，如此之邑，則雖軍餉，折半收捧，宜矣，至於衿川經理還上，已盡收捧云，他邑，亦使隨力捧之，何如，晩成曰，若使諸邑，隨力捧之不爲定限分付，則，守令難於奉行矣，(...)

<비변사등록 69책, 숙종 42년 1716년 11월 22일(음) >

### 사회/윤리 · 풍속

#### 收租 結數가 감축된 해당 監司와 守令의 처리 등을 廟堂에서 稟處하게 할 것을 청하다

호조에서 진달하기를, "병신년의 각 도(道) 수조안(收租案)을 계산하여 고찰해 보니 경기의 경우 남양부(南陽府)의 7, 8, 9분재(分災) 중에는 원수(元數) 속의 실결(實結)이 122결 42부 9속이 들어있고 본부(本府)의 원수조에서 세를 낸 것은 겨우 17결 25부 6속이니 감축된 것이 자그마치 122결 42부 9속이고, 양천현(陽川縣)은 분재 중에 실결이 17결 94부 6속이 들어있고 본현의 원수조에서 세를 낸 것은 겨우 14결 27부 1속이니 감축된 것이 역시 17결 94부 6속이나 되며, 안성(安城)에 있어서는 수조, 실답이 566결 14부 9속이나 쌀을 내는 것이 150석 14두 5승 9홉 6작이 되어야 하는데 수조안에는 105석 14두 5승 9홉을 낸 것으로 되었으니 감량된 것이 45석인데 이는 168결 72부에서 거둔 조세입니다. 강원도 수조 결수가 감축된 것은 양양(襄陽)이 66결 59부 7속이고, 원주(原州)가 55결 62부 6속이며, 고성(高城)이 25결 36부 2속이고, 울진(蔚珍)이 19결 21부 7속이며, 영월(寧越)이 7결 23부 1속이고, 평해(平海)가 2결 59부 8속이며, 흡곡(歙谷)이 1결 43부 2속이었습니다. 막중한 전정(田政)을 상세히 검찰하지 못하여 이렇듯 수조 결수를 감손하여 기록한 일이 있으니 지극히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당해 감사와 각 읍 수령은 불찰의 잘못을 면할 수 없으므로 마땅히 경책하는 도리가 있어야 하겠고, 감축된 결에서는 도로 조세를 내야 마땅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방 대흉년을 겪은 터에 지금에 와서 추가로 거두는 것은 민간에서 소요로울 폐단이 있을 것 같고, 기왕 심사한 뒤에 그만두고 받지 않은 것도 법례에 위반되는 일이니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그렇게 하라고 하령하였다.

戶曹達曰，丙申年，各道收租案，自本曹打算考驗，則京畿南陽府七八九分災元數中，實結爲一

百二 十二結四十二負九束，而本府元收租出稅，只是十 七結二十五負六束，則其所減縮，多至一百二十二 結四十二負九束，陽川縣分災中，實結爲十七結九 十四負六束，而本縣元收租出稅，只是十四結二十 七負一束，則其所減縮，亦至十七結九十四負六束，至於安城則收租實畚，五百六十六結十四負九束，出米當爲一百五十石十四斗五升九合六夕，而以一 百五十石十四斗五升九合出稅於收租案其所減數，四十五石，此是一百六十八結七十二負所收之稅 也，江原道收租結數所減，襄陽六十六結五十九負 七束，原州五十五結六十二負六束，高城二十五 三十六負二束，蔚珍十九結二十一負七束，寧越七 結二十三負一束，平海二結五十九負八束，歙若一 結四十三負二束矣，莫重田政，不能詳檢，有此收租 結數減錄之舉，事極可訝，當該監司及各邑守令，難免不察之失，宜有警責之道，減縮結，所當還爲出稅，而纔經大殺，到今還徵，似有民間騷擾之弊，既查之 後，置而不徵，亦違法例，令廟堂，稟處何如，令曰，依。

<비변사등록 70책, 숙종 43년 1717년 12월 11일(음) >

### 사회/윤리 · 풍속

右議政 趙泰采 등이 입시하여 남양부 등의 失結숫자와 처리에 대해 논의하다.

이 달 19일 약방에서 입진하여 우의정 조태채(趙泰采)가 함께 입시하였을 때에 우의정 조태채가 아뢰기를, (...) 또 아뢰기를, "호조에서 병신년의 각 도 수조안(收租案)을 계사하고 고찰해 보니 경기 남양부(南陽府)의 분재(分災) 중에는 실결이 감축된 숫자가 122결 42부 9속이나 되고, 양천현(陽川縣)의 분재 중에는 실결이 감축된 숫자가 17결 94부 6속이나 되며 안성(安城)은 실담(實畚)의 출세(出稅) 감축이 쌀로 45석에 이르고 있으며, 강원도 각 읍의 수조 결수의 감축은 양양(襄陽)이 66결 59부 7속이고, 원주(原州)가 55결 62부 6속이며, 고성(高城)은 25결 36부 26속이고, 울진(蔚珍)은 19결 21부 7속이며, 영월(寧越)은 7결 23부 1속이고, 평해(平海)는 2결 59부 8속이며, 흡곡(歙谷)은 1결 43부 2속이나 됩니다. 막중한 전정(田政)을 잘 검토하지 않아 이토록 결수를 감축해서 기재한 일이 있게 하였으니 당해 감사와 각 읍 수령은 불찰의 실수를 면할 수 없으므로 경책하는 도리가 있어야 마땅합니다. 감축된 결수에서는 추가로 조세를 내게 하여야하나 방금 대흥년을 겪었는데 이제와서 추가로 거두면 민간에서 소요를 일으킬 염려가 있을 듯하고 기왕 사책한 뒤에 덜어 두고 논하지 않은 것도 법례에 어긋나는 일이므로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라는 일로서 달하(達下) 하셨습니다. 모든 재상(災傷)의 착오가 10부 이상이면 파직하고 30부 이상이면 나문(拿問)하는 것이 본래의 법례인데 이번에 여러 고을의 분재 중에 실결의 감축된 것이 영월, 평해, 흡곡을 제외하고는 많은 곳은 1백여 결에 달하고 적어도 15결에 밀돌지 않았으니 다소를 막론하고 법에 의거하여 감죄(勘罪)할 일이나 다만 이는 당해년의 전결과는 차이가 있고 또 두 도의 수령으로 죄를 범한 자가 열 사람이나 되며 그때의 수령이 혹 지금은 감사로 있는 사람도 있는데 겨우 대흥년을 치룬 끝에 허다한 수령을 일시에 체개하고 파직하는 것은 이역시 폐단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이 있는 바에 감히 말감(末減:가장 가벼운 죄로 처벌함)하자는 뜻으로 아래에서 양청할 수는 없는 일인데 수상의 뜻도 난처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여쭙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법에 의거하여 감죄하는 것이 옳은 일이나 기왕 당년의 전결과는 차이가 있고 허다한 수령을 일시에 바꾸는 폐단도 생각지 않을 수 없으므로 우선 말감하여 모두 중하게 추고하는 것이 좋겠다."하였다. (...)

十二月十九日藥房入診，右議政趙同爲入侍 時，右議政趙所啓，(...) 又所 啓，戶曹，以丙申年各道收租案，打算考驗，則京畿南陽府分災中，實結減縮之數，至於一百二十二結四 十二負九

束, 陽川縣分災中, 實結減縮之數, 至於十 七結九十四負六束安城則實畝出稅之減縮米, 至 於四十石, 江原道各邑收租結數之減縮, 則襄陽六 十六結五十九負七束, 原州五十五結六十二負六束, 高城二十五結三十六負二束, 蔚珍十九結二十 一負七束, 寧越七結二十三負一束, 平海二結五十 九負八束, 歛若一結四十三負二束, 莫重田政, 不能 詳檢, 有此結數減錄之舉, 當該監司及各邑守令, 難 免不察之失, 宜有驚責之道, 減縮結數, 所當還爲出 稅, 而纔經大殺, 到今還徵, 似有民間騷擾之弊, 既查 之後, 置而不論, 亦違法例, 令廟堂稟處事, 達下矣, 凡災傷差錯, 十卜以上, 罷職, 三十卜以上, 拿問者, 自 是法例, 而今此諸邑分災中, 實結之減縮者, 寧越·平 海歛若外, 多至百餘結, 少不下十五結, 則所當毋論 多少, 依法勘罪而第此與當年田結有間, 且兩道守 令之犯科者, 至於十人之多, 而其時守令中, 或有方 任監司者矣, 纔經大殺之餘, 許多守令, 一時遞罷, 亦 甚, 有弊, 而其在法例, 不敢以末減之意, 自下仰請, 首 相之意, 亦以爲難處, 故敢此陳稟, 上曰, 依法勘罪, 是矣, 而既與當年田結有間, 許多守令, 一時遞易之 弊, 亦不可不念, 姑爲末減, 竝從重推考, 可也, 趙曰, 災傷差錯, 本非道臣之責, 而此則給災之際, 不能詳 審, 以致如此, 營門亦有不察之失, 其時兩道監司, 竝 推考何如, 上曰, 依爲之, (…)

<비변사등록 70책, 숙종 43년 1717년 12월 20일(음) >

#### 사회/윤리·풍속

領議政 李光佐가 南陽이 흉년이니 操練과 上番의 정지 및 點呼의 別도 시행을 청하다

○ 또 아뢰기를, “총융청 속오군(東伍軍)의 순찰여부와 장초아병(壯抄牙兵)의 상번(上番)에 관한 일을 장계로 올려 그 취지를 아뢰라고 분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총융청의 병사들은 용인(龍仁)과 남양(南陽), 장단(長湍) 등지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은 해변지역으로 흉년을 면치 못하여 조련(操練)을 시행하기 어려우며 상번도 폐단이 있으므로 임시 정지하고 점호(點呼)도 영장(營將)으로 하여금 별도로 시행하게 하여 각별히 폐단을 없애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라고 하자, 임금은 그대로 하라고 일렀다.

又所啓, 摠戎廳東伍軍兵, 巡歷與否及壯抄牙 兵上番事, 狀請稟旨分付, 而摠廳兵, 多在於龍仁· 南陽·長湍等地, 南陽等處, 亦皆海邊, 不免慘凶, 有難 行操, 上番亦是有弊, 竝姑爲權停, 而巡點則使營將, 別爲舉行, 而各別省弊施行之意, 另加分付何如, 上曰, 依爲之.

<비변사등록 102책, 영조 13년 1737년 08월29일(음)>

#### 사회/윤리·풍속

京畿監司 李命坤 등이 京畿에 京賑米 發賣를 중지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 같은 날 입시하였을 때에 경기감사 이명곤(李命坤)이 아뢰기를, “도내의 농사형편과 해일의 실패는 연거푸 장문을 하였으니 이제 다시 진술할 필요는 없겠으나 민정(民情)은 시급히 품정하지 않을 수 없는 바가 있기에 감히 이렇게 청대(請對)하였습니다. 경진청미(京賑廳米)를 발매(發賣)하는 일에 대하여 신이 순행할 때에 국가의 덕의(德意)를 알렸더니 각 읍의 백성들이 기뻐서 송축하지 않는 자가 없었으나 당초 획급관문(劃給關文) 중에 ‘가을에는 본창(本倉)에 도로 저장한다.’ 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각 읍에서는 내년 가을에 값을 받는 것으로 오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격을 납부한 뒤에 내어준다는 영(令)을 듣고부터는 백성들은 모두 실망하여 받아가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수령들이 와서 신을 만나서는 민정의 절박함을 갖추어 진술하였습니다. 1석의 값이 2냥 6전으로 정하여졌으니 아침저녁으로 진흙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무엇으로 그 값을 챙겨내겠습니까? 일이 이미 이와 같이

되었으니 신도 강제로 받아오게 할 수 없습니다. 수령들은 비록 한두 가지의 변통을 청하는 자가 있었으나 이런 것은 신으로서 감히 양달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은 난처하다. 기왕 먹으라고 하였다가 지금 또 가져가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도로 정지하겠느냐?” 하였다.

좌의정 조현명이 말하기를, “당초 건의할 때에 정우량(鄭羽良)이 말하기를, 도신(道臣)이 가져가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신이 조정에서 이미 덕의(德意)를 보였으니 가져가는 여부는 도신이 하는 대로 일임하자는 뜻으로 말씀을 올렸는데 지금 이미 원치 않는다고 하니 그만둔들 무슨 방해될 것이 있겠습니까?” 하여, 임금이 말하기를, “나의 생각으로는 처음에는 혹 가져가지 않을 사람이 있을 것이나 역시 가져갈 사람도 반드시 있을 것으로 여겼는데 지금은 전부 가져가지 않는다고 하느냐?”

하니, 이명곤이 말하기를, “민간에서 이 발매미(發賣米)를 실어온다는 말을 듣고 바야흐로 술을 씻어 놓고 고대하다가 일의 형편이 잘못 되어서 끝내 도로 정지가 될 지경에 이른다면 민정이 억울해질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백성을 보살피려는 지극한 뜻도 아래에 미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양(南陽)**과 **수원(水原)** 등에서는 지금 이미 기민(飢民)을 가려내서 겨울이 오기 전에 설진(設賑)을 하려 한다고 하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발매의 일이 만약 도로 정지가 된다면 도내에 있는 영진곡(營賑穀)을 너넉하게 획급하여 지금 나누어주어서 곧 흠어지려는 백성을 접제(接濟)하게 하는 것이 사의(事宜)에 합당할 것 같습니다.” 하였다.

조현명이 말하기를, “영진곡을 획급한다 하더라도 봄이 되기 전에는 조정에서 설진(設賑)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형세가 이와 같으니 발매의 일은 우선 보류하여 명년 봄을 기다리고 영진곡은 묘당에서 품처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同日入侍時，京畿監司李命坤所啓，道內農形及海溢形止，連已狀聞，今不必更陳，而民情有不可不急時稟定者，敢此求對矣，京賑米發賣事，臣發巡時傳布朝家德意，則各邑民人莫不歡欣頌祝，而當初劃給關文中，有待秋還儲本倉之語，故各邑誤認以明秋捧價矣，及聞即今納價後受出之令，民皆失望不願受出，守令之來見臣者，備陳民情之切迫矣，一石之價定以二兩六錢，則朝夕待賑之民，何以辦出其價耶，事勢既如此，臣亦不得強令受出，守令雖有一二變通之請，而此則臣不敢仰達矣，上曰，此事難矣，既令食之，而今又以不願持去，更爲還寢耶，左議政趙曰，當初建白時鄭羽良言，道臣不肯持去云，故臣以朝廷既示德意，持去與否一任道臣所爲之意仰達，今既不願，置之何妨乎，上曰，予意則初以爲或有不持去者，而亦必有持去者矣，今則全數不爲持去耶，命坤曰，民間聞此發賣米不可運來之說，方洗鼎苦待，而若以事勢之難便，終至還寢之境，則非但民情之抑鬱，朝家恤民之至意，無以下究，且**南陽水原**等邑，今已抄飢，趁冬前欲爲設賑云，臣意以爲發賣事若至還寢，道內所在營賑穀，從優劃給，及今分俵，使之接濟將散之民，似爲得宜矣，趙曰，營賑穀雖可劃給，而春前則朝家不許設賑矣，上曰，形勢如此，發賣事姑留之，以待明春，營賑穀則令廟堂稟處可也。

<비변사등록 118책, 영조 23년 1747년 10월28일(음)>

#### 사회/윤리 · 풍속

左議政 申晩 등이 근래 國役을 많이 담당한 京畿邑에 給災를 주는 문제를 논의하다

이번 10월 13일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좌의정 신만(申晩)이 아뢰기를,

“이는 경기감사 김상복(金相福)의 재실분등장계(災實分等狀啓)입니다. 도내의 실농한 실정

을 갖추어 전달하고 **남양(南陽)** 등 13읍을 우심(尤甚)에 두고, 교하(交河) 등 12읍은 지차(之次)에 두었으며, 삭녕(朔寧) 등 10읍을 초실(稍實)에 두고 이어 이르기를, ‘북한(北漢)·평창(平倉)·대흥(大興)의 군향(軍餉)은 우심·지차·초실을 막론하고 모두 본읍(本邑)에 봉류(奉留)하였다가 내년 가을에 수납(輸納)하고 남·북한(南北漢)과 강도(江都)의 이전미(移轉米) 미수(未收)는 그대로 봉류하며, 구환자[舊還上]·구군향(舊軍餉)·구이전(舊移轉)과 노비신공(奴婢身貢)의 구미수(舊未收)는 우심읍과 지차읍은 내년 가을까지 정퇴(停退)하고, 초실읍은 최근의 일년조(一年條)만 분수(分數)하여 받으며, 당년(當年)의 환자는 본색(本色)으로 전량을 다 받기 어려우니 우심·지차·초실을 막론하고 전례대로 대봉(代捧)하고, 패선(敗船:치패한 배)에서 건진 증미(拯米)는 신구(新舊)를 막론하고 특별히 정퇴하여 내년 가을에 징수하고, 선인(船人)으로 무면(無面:돈을 촉냄)하여 원적관(原籍官:본적지 관장)에 이수(移囚)된 자도 똑같이 정퇴(停退)하며 추노(推奴)와 징채(徵債)도 내년 가을 한하고 일체 방색(防塞)하는 일 등을 청컨대 아울러 묘당에서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분등은 장정한대로 시행하게 하고 경기도내의 금년 농사는 대체로 흉작이니 무릇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는 도리에 있어서는 조금도 소홀하게 할 수 없으니, 북한·평창·대흥의 군향은 특별히 봉류하게 하되 북한산성의 장교(將校)의 요하(料下:급료)는 모두 향모(餉耗:군향의 모곡)로 지급해야 하므로 모조(耗條)는 근례(近例)에 따라 본소(本所)에 수납하게 하며 남·북한과 강도의 이전미 미수는 당년에 받아들이는 것과는 달라서 해마다 봉류할 수 없으므로 이는 즉시 수납하게 하고, 각종 구미수(久未收)는 우심읍은 정봉(停捧)하고 지차읍은 절반을 정봉하고, 초실읍은 물론하며 환자 대봉(代捧)은 매우 중난한 일이나 사세가 본색(本色)으로 전량을 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참작하는 도리가 없을 수 없으니 초실읍은 그냥 두고 우심읍은 절반을, 지차읍은 3분의 1을 특별히 대봉하게 하되 반드시 정실곡(精實穀)으로 받았다가 내년 가을에 본색으로 도로 만들게 하며 증미와 선인이 축낸 쌀을 정퇴하는 일과 추노(推奴) 징채(徵債)를 내년 가을까지 방색하는 일 등은 모두 소청한대로 허시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리하라. 양주(楊州)와 고양(高陽) 두 고을은 근년(近年) 이래로 국역(國役)을 가장 많이 담당하였으니 우심읍의 예에 따라 거행하라.” 하였다.

今十月十三日,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左議政申所啓, 此則京畿監司金相福災實分等狀啓也, 備陳道內失稔之狀, **南陽**等十三邑, 置之尤甚, 交河等十二邑, 置之之次, 朔寧等十邑, 置之稍實, 仍以爲北漢平倉大興軍餉, 毋論尤甚·之次·稍實, 奉留本邑, 待明秋輸納, 南·北漢·江都移轉未收, 仍爲奉留, 舊還上·舊軍餉舊移轉, 奴婢身貢舊未收, 尤甚·之次邑, 則限明秋停退, 稍實邑則最近一年條, 分數徵捧, 當年還上, 難以本色準捧, 毋論尤甚之次·稍實, 依前例代捧, 敗船拯米, 勿論新舊, 特令停退, 待明秋徵捧, 而船人無面移囚原籍官者, 亦一體停退, 推奴徵債, 限明秋一切防塞事, 竝請令廟堂稟處矣, 分等依狀請施行, 畿內今年穡事, 大體失稔, 凡係矜恤之道, 難容少忽, 北漢平倉大興軍餉, 特許奉留, 而北漢將校料下, 皆以餉耗上下, 耗條則依近例使之輸納本所, 南·北漢·江都移轉未收, 則與當年所受有異, 不可每每奉留, 此則卽令輸納, 各樣久未收, 尤甚邑停捧, 之次邑折半停捧, 稍實邑, 勿論, 還上代穀, 事甚重難, 而其勢既難以本色準捧, 則不可無參量之道, 稍實邑置之, 尤甚邑折半, 之次邑三分一, 特許代捧, 而必以精實穀捧上, 待明秋還作本色, 拯米船人無面停退, 及推奴徵債, 限明秋防塞事, 竝依所請許施爲宜, 以此分付何如, 上曰, 依爲之, 楊·高兩邑, 近年以來, 最當國役, 依尤甚邑例舉行.

<비변사등록 137책, 영조 35년 1759년 10월15일(음)>

사회/윤리 · 풍속

領議政 洪鳳漢 등이 京畿 各邑의 分等과 舊逋를 停捧하는 문제 등을 논의하다

○ 10월 23일 대신과 비국 당상·선혜청 낭청·균역청 낭청을 함께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영의정 홍봉한이 아뢰기를, “이는 경기감사 채제공(蔡濟恭)의 장계입니다. 남양(南陽) 한 읍을 우심에 두고 부평(富平) 등 8읍을 지차에 두고 광주(廣州) 등 18읍을 초실에 두고, 이어서 금년에 민정(民丁)들이 바쳐야 할 것이 보통 해에 비해 배나 될 뿐만 아니니 묵은 환상·묵은 군향·묵은 증미(拯米)·묵은 신포·노비신공(奴婢身貢)으로서 오래된 미수를 초실과 지차·우심을 물론하고 명년 가을까지 연기하고 패선(敗船)에서 건진 곡물은 새 것이나 묵은 것을 논하지 말고 명년 가을에 가서 수봉하고, 뱃사람이 축낸 것으로서 원적관(原籍官)으로 이송한 것도 일체 연기하며, 추노와 징채는 명년 가을까지 방지하도록 묘당에서 품처하기를 청하였습니다. 본도는 금년처럼 조금 풍년이 든 해에 굳이 분등할 것은 없으나 억지로 한다면 이 분등은 매우 정간(精簡)한듯하니 이에 의해 시행하고, 각종 묵은 포흠은, 초실읍은 수대로, 지차읍은 절반을, 우심읍은 3분의 1을 수봉하고, 오래된 건진 곡물은 이 역시 묵은 포흠으로서 일체 시행하고, 당년조는 거론할 것이 없으며, 뱃사람이 축내어 원적관에서 받아들일 것은 특별히 수봉 정지하고, 추노와 징채는 명년 가을까지 방지해서 백성을 소요하게 하는 폐단을 없애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임금이 8도를 봄에 있어 어찌 다르게 할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경기는 기보(畿輔)의 중요한 땅이다. 보리농사가 크게 흉작인데다 가을 농사가 또 생각 밖이다. 이 분등이 아주 정간하다. 우심읍의 묵은 포흠은 수봉 정지하고, 지차읍은 다른 도의 예에 의해 거행하라고 분부하고, 다른 나머지 일은 그리하라.” 하였다.

今十月二十三日, 大臣·備局堂上·惠郎·均郎同爲 引見入侍時, 領議政洪所啓, 此京畿監司蔡濟恭狀啓也, 南陽一邑, 置之尤甚, 富平等八邑, 置之次, 廣州等十八邑, 置之稍實, 仍以爲, 今年民丁 當納, 不啻倍常, 舊還上·舊軍餉·舊拯米·舊身布·奴婢 身貢舊未收, 毋論稍實·之次·尤甚, 限明秋停退, 敗船 拯穀, 毋論新·舊, 待明秋徵捧, 而船人無面移送原籍 官者, 一體停退, 推奴徵債, 限明秋防塞事, 請令廟堂 稟處矣, 本道如今年稍豐之歲, 不必分等, 而如欲強 而爲之, 則今此分等, 似極精簡, 依此施行, 各樣舊逋, 稍實邑準數, 之次邑折半, 尤甚邑三分一徵捧, 拯穀 舊年條, 則此亦舊逋, 一體施行, 當年條, 不可舉論, 船 人無面之原籍官當捧者, 特爲停捧, 推奴徵債, 限明 秋防塞, 以除擾民之弊, 何如, 上曰, 人君視八道何 異, 況畿甸, 以畿輔重地, 麥農大歉, 秋農又違所料, 今 者分等, 其甚精也, 尤甚邑舊逋停捧, 之次邑, 一依他 道例舉行事, 分付, 他餘事, 依爲之.

<비변사등록 140책, 영조 37년 1761년 10월25일(음)>

사회/윤리 · 풍속

領議政 洪鳳漢 등이 營賑穀을 劃給하여 南陽에 設賑하게 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 이번 1월 26일 약방의 입진에 예조판서와 유신(儒臣:홍문관 관원)이 함께 입시하였을 때에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이 아뢰기를, “방금 경기감사 홍계희(洪啓禧)의 장문(狀聞)을 보면 남양(南陽)에 진휼을 베푸는 연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인하여 영진곡(營賑穀) 7백 석을 청하였습니다. 본 읍은 참혹한 흉년을 여러 번 당하여 일찍 진휼을 베풀지 않을 수 없으나 한 고을의 진곡(賑穀)이 어찌 이처럼 많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도신은 결코 지나치게 주지 않을 것이고 남으면 도로 기록할 것이니 그 소청대로 특별히 시행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까?” 하니, 임금의 그리하라 하였다.

今正月二十六日藥房入診，禮判·儒臣同爲入侍時，領議政洪所啓，卽見京畿監司洪啓禧狀聞，則備陳南陽設賑之由，仍請營賑穀七百石矣，本邑累被慘歉，不可不趁早設賑，一邑賑穀，何至此多，而道臣決不過給，餘當還錄，依其所請，特爲許施何如，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141책, 영조 38년 1762년 01월27일(음)>

#### 사회/윤리·풍속

領議政 洪鳳漢 등이 南陽도 京畿 尤甚邑과 일체로 還耗를 蕩減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또 아뢰기를, “지난번 제도 우심읍의 결전(結錢) 대신에 환모(還耗)를 탕감할 때에 남양(南陽)도 그 속에 들어 있었으나 거조(舉條)에 누락되어 신은 실로 황공스럽습니다. 경기 우심읍은 남양 한 곳뿐이니 굳이 원거조(元舉條) 속에 찌를 붙여 첨서(添書)할 것 없이 곧바로 일체 시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의 그리하라 하였다.

又所啓，向者諸道尤甚邑結錢代還耗蕩減時，南陽亦入其中，而漏於舉條，臣實惶恐，京畿尤甚，只一南陽元舉條中，不必付標添書，直以一體施行之意，分付何如，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141책, 영조 37년 1761년 04월25일(음)>

#### 사회/윤리·풍속

領議政 申晩 등이 京畿道를 災實分等狀啓에 따라 給災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 이번 10월 3일 대신이 입시하였을 때에 영의정 신만(申晩)이 아뢰기를, “이는 경기감사 김기대(金器大)의 분등장계(分等狀啓)입니다. 남양(南陽) 등 10읍을 우심(尤甚)에, 인천(仁川) 등 16읍을 지차(之次)에, 지평(砥平) 등 11읍을 초실(稍實)에 두었으며, 면분등(面分等)도 이미 연품(筵稟)하였기 때문에 우심과 지차 등 3등으로 나누어 개록(開錄)하고, 인하여 말하기를, ‘금년 피해(被災)는 을·병년(乙丙年)과 경진년(庚辰年)보다 더 심한데 해조의 급재(給災)는 겨우 3천 9백여 결로서 마땅히 주어야 할 수량에 비하면 10분의 3~4에도 미치지 못하니 경진년의 예에 준하여 더 획급하고, 백성들이 바라는 모든 것을 후록(後錄)에 조열(條列)하니 묘당에서 품처하게 하기를 청합니다.’ 하였습니다. 분등은 장계의 사연대로 시행하고, 재결(災結)의 일은 호조에서 준 것이 과연 부족합니다. 금년 한강(漢江) 남쪽 제읍의 피해는 거의 호중(湖中)과 다름이 없으니 각별히 진휼하는 도리가 있어야 하겠으나 도신이 청한 경진년의 예는 그 수량이 너무 많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대략 을해년(乙亥年)의 예에 준하여 4천 결을 더 주고 자세히 조사하여 나누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여 감히 아뢰옵니다.” 하니, 임금의 그리하라 하였다. (...)

今十月初三日大臣入侍時，領議政申所啓，此京畿監司金器大分等狀啓也，南陽等十邑，置之尤甚，仁川等十六邑，置之次，砥平等十一邑，置之稍實，而面分等已爲筵稟，故尤甚·之次分三等開錄，而仍以爲今年被災，殆有甚於乙丙庚辰，而該曹給災，只爲三千九百餘結，比諸當給之數，十不滿三四，依庚辰例加劃，凡係民情之所冀望者，後錄條列，請令廟堂稟處矣，分等依狀辭施行，而災結事，地部所給，果爲不足，今年漢南諸邑被災，殆無異於湖中，合有各別軫恤之道，而道臣所請庚辰例其數，未免過多，臣意則略倣乙亥例，加給四千結，使之詳查分俵爲宜，敢達，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142책, 영조 38년 1762년 10월05일(음)>

#### 사회/윤리·풍속

**左議政 洪鳳漢 등이 京畿 각읍에 給災를 더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이번 11월 2일 좌상과 우상, 예조판서·평안 전 감사가 함께 입시하였을 때에 좌의정 홍봉한(洪鳳漢)이 아뢰기를, “이는 경기감사 김기대(金器大)의 장계인데 말하기를, ‘각 읍의 재보(災報)가 이제 다 도착하였는데 조정에서 전후하여 급재(給災)한 것을 통틀어 계산해도 부족한 수량이 매우 많아서 다시 더 주는 일을 묘당에서 품처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경기는 남양(南陽)과 수원(水原) 두 고을 이외에도 우심읍이 있기는 하지만 그 재해를 입은 바가 삼남의 더 없이 참혹함에는 이르지 않았고 견문한 바로 헤아려 보아도 역시 참작할 바가 있는데 도신이 또 이처럼 장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연 그대로 둘 수는 없으니 전의 급재 외에 8백 결을 더 주어 분배하여 마감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1천 결을 채워서 가급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今十一月初二日, 左·右相·禮曹判書·平安前道臣, 同爲入侍時, 左議政洪所啓, 此京畿監司金器大狀啓也, 以爲各邑災報, 今已齊到, 以朝家前後所給之災, 通共計之, 則其不足之數甚多, 更爲加給事, 令廟堂稟處矣, 京畿南水兩邑外, 雖有尤甚之邑, 其所被災, 不至於三南之孔慘, 參以聞見, 亦有可以商量者, 道臣又此陳請, 亦不可全然置之, 前給災外, 加給八百結, 使之分排磨勘, 何如, 上曰, 準千結加給可也.

<비변사등록 142책, 영조 38년 1762년 11월06일(음)>

**사회/윤리·풍속**

**領議政 申晩 등이 재해를 입은 정도에 따라 均廳의 身布 給代를 減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 이번 11월 9일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임금이 이르기를, (...) 홍봉한이 말하기를, “경기는 삼남에 비해 조금 덜하지만 남양(南陽)과 수원(水原) 두 고을에 있어서는 재황이 삼남의 우심읍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두 고을은 일체로 시행해야 마땅할 듯합니다.” 하였다.

신만이 말하기를, “기전(畿甸)의 남양과 수원 두 고을은 호남의 예대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리하라. 경기안집사(京畿安集使)가 이미 돌아왔으니 남양과 수원 역시 호남의 예대로 거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今十一月初九日,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上曰, (...) 洪曰, 京畿則比諸三南稍緩, 而至於南陽·水原兩邑, 災荒無異三南, 尤甚此兩邑, 似當一體施行矣, 申曰, 畿甸之南陽·水原兩邑, 亦依湖南例施行, 似宜矣, 上曰, 依爲之, 京畿安集使, 旣已回還, 南陽·水原, 亦依湖南例, 舉行可也.

<비변사등록 142책, 영조 38년 1762년 11월12일(음)>

**사회/윤리·풍속**

**畿伯이 아뢴 말에 의거하여 給災를 더 내리도록 하라고 전교하다**

○ 이번 11월 27일 약방의 입진에 경기감사가 입시하였을 때에 전교하기를, “지금 기백(畿伯)이 아뢴 바를 들으니 광주(廣州)에 더 준 30결(結)은 분표(分俵)한 이외의 것이라 한다. 아, 기왕에 어사더러 간심(看審)하라고 명하고서 어떻게 백성을 속이겠느냐? 특별히 더 주어라. 대신이 아뢴 바를 다시 듣건대 이밖에도 수원(水原)·남양(南陽)·교동(喬桐)·양천(陽川)·김포(金浦)·안산(安山)·부평(富平) 등은 분표하기에 부족하여 아직껏 작부(作夫)하지 못하고 있다 한다. 아, 기전(畿甸)은 근본의 땅인데 백수(白首)의 복정(復政)에 어떻게 차마 보고만 있겠느냐? 옛날 인종황제(仁宗皇帝:北宋의 제4대 황제)는 유사(有司)에게

문지도 않았는데 목금 유사의 신하도 견지(堅持)하지 않는 것을 더군다나 임금에 있어서이  
라? 광주에 허시한 것과 일체로 5백 결을 더 주어 도신으로 하여금 상세히 분표하여 내가  
백성을 위한 뜻을 보이게 하라. 또 요청한 진곡(賑穀)은 내일 저녁 입시에 대신과 유사당상  
이 함께 등대(登對)하여 품처하고, 청한 바는 거조(舉條)에 내라.” 하였다.

今十一月二十七日藥房入診，京畿監司入侍時，傳曰，今聞畿伯所奏，廣州加許三十結，既在  
分俵外云，噫，既命御史看審，豈期民哉，特爲加給，大臣所奏更聞，此外水原·南陽·喬桐·  
陽川·金浦·安山·富平，以分俵不足，尙未作夫云，噫，畿甸根本之地，白首復政，豈忍愒  
視，昔仁宗皇帝不問有司，而自今有司之臣，亦不堅持，況爲人君者乎，與廣州所許者，一  
體加給五百結，令道臣詳細分俵，以示予爲民之意，所請賑穀，明日夕入侍，大臣有司堂上，同爲  
登對稟處，所請舉條啓下。

<비변사등록 142책, 영조 38년 1762년 11월27일(음)>

### 사회/윤리·풍속

기근에 政府의 六曹 物膳을 절반만 올리게 하고 外方의 物膳은 올리지 말라고 전교하다

또 전교하기를, “지금 경기 감사가 우선 기민(饑民)을 초록한 장문(狀聞)을 보면 수원(水原)  
이 2천 명에 가깝고 부평(富平)은 1천 명에 가까우며, 남양(南陽)은 1천 50여 명, 광주  
(廣州)는 2천 30여 명, 그 나머지는 혹 3백 명, 1백 명이 넘기도 하며, 양천(陽川)·과천  
(果川)과 같이 가난한 고을도 2~3백 명이 넘어 도합 1만 1백 10명에 이른다. 아, 시작이 이  
러하니 궁핍한 봄철임을 알만하다. 몸소 구제하고 싶어도 비록 경기의 가까운 곳이라 하더  
라도 궁궐과 오두막집은 마치 하늘과 땅처럼 현격하니 그 어찌 구제할 수 있겠는가? 지금  
장문을 보고 기민을 상상할 때 옥식(玉食)이 어찌 달 수 있겠는가? 그리고 경기가 이러하니  
삼남(三南)을 미루어 알만하다. 비록 굳은 마음은 없으나 이러한 해에 어찌 풍성하게 할 수  
있겠는가? 열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하유(下諭)하여도 때를 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  
록 윤희는 하였으나 하례(賀禮)를 받기에는 계면쩍다. 외방(外方)의 방물(方物)과 물선(物  
膳)을 비록 바치지 말라고 명령하였으나 의정부(議政府)와 육조(六曹)의 물선을 이번에는  
절반으로 감축하여 봉진(封進)하도록 하고 장원서(掌苑署)의 물선은 바치지 말게 하여 내가  
비록 받기는 하나 절감에 힘쓴다는 뜻을 보이라.” 하였다.

傳曰，今覽畿伯先抄飢民狀聞，水原近二千，富平近一千，南陽一千五十餘口，廣州二千三十餘  
口，其餘或過三百，或過二百，或過一百，以陽·果川之殘邑，過二三百，都合過一萬百十也，  
噫初頭若此，窮春可知，躬欲濟活，而雖近畿，九重蔀屋，便若霄壤，其何能爲，觀今狀聞，  
想像飢民，何甘玉食，且畿甸若此，三南可知，雖無苦心，此等之歲，豈云豫大，十件中一諭，  
可謂知時，然其雖許矣，受賀亦歉然，外方方物物膳，雖令勿捧，政府六曹物膳，今番減半封  
進，掌苑署物膳勿捧，以示予雖受，務爲節省之意。

<비변사등록 147책, 영조 41년 1765년 01월10일(음)>

### 사회/윤리·풍속

左議政 洪麟漢 등이 京畿의 災實分等狀啓와 敗船의 拯劣米를 停退하는 문제 등을 논의하다  
이번 10월 4일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여 입시켰을 때 승지가 경기감사 윤시동(尹蓍東)의  
장계를 읽어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였다. 좌의정 홍인한  
(洪麟漢)이 말하기를

“이것은 경기감사의 재실 분등 장계(災實分等狀啓)인데 남양(南陽) 등 9개 읍은 우심(尤

甚)에 광주(廣州) 등 21읍·진(邑鎭)은 지차(之次)에, 과주(坡州) 등 7개 읍은 초실(稍實)에 두었습니다. 분등은 이대로 시행해야 하겠습니다. 또 청한 바가 있는데 하나는 신환(新還)을 대봉(代捧)하는 일입니다. 종전에는 흉년이 들면 답곡(畓穀) 대신 전곡(田穀)을 받게 한 예가 많았는데 하물며 전곡 대신 답곡을 받음에 있어서이겠습니까? 도신이 백성을 위하는 뜻을 엿볼 수 있고, 곤궁한 백성을 지보(支保)하는 도리도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의 그리하라 하였다. (…)

今十月初四日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承旨, 讀奏京畿監司尹蕃東狀啓, 上曰, 大臣之意何如, 左議政洪曰, 此即畿伯災實分等狀啓, 而南陽等九邑, 置之尤甚, 廣州等二十一邑鎭, 置之次, 坡州等七邑, 置之稍實, 分等, 依此施行, 而又有 所請, 一則新還代捧事也, 曾前歉歲, 畓穀代田穀許 捧, 已多其例, 況此田穀代畓穀乎, 道臣爲民之意, 可以見矣, 窮民支保之道, 亦不可不念, 依狀請施行何 如, 上曰, 依爲之, (…)

<비변사등록 157책, 영조 51년 1775년 10월05일(음)>

### 사회/윤리·풍속

#### 京畿監司尹蕃東이 災害를 당한 廣州 등의 고을에 接濟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 같은 날 입시했을 때 경기감사 윤시동(尹蕃東)이 아뢰기를, “어사가 모두 산골 근처 제읍(諸邑) 중 재해가 우심(尤甚)한 곳에는 내년 봄에 진구(賑救)할 방도를 논의해야 한다고 청했는데 지금 좌도(左道)의 어사 이덕사(李德師)의 서계에는 또 광주(廣州)·수원(水原)·남양(南陽)·안산(安山) 등 바닷가의 재해를 당한 곳을 접제(接濟)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신의 감영에서 당부(當否)를 구별하여 그 고을 수령에게 신칙하여 각별히 정하게 가리게 하여 내년 봄에 작량(酌量)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의 그리하라 하였다.

윤시동이 말하기를, “접제할 곡물은 묘당과 의논하여 추후 장문(狀聞)하겠습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임금의 그리하라 하였다.

同日入侍時, 京畿監司尹蕃東所啓, 前後御史皆以近峽諸邑, 被災尤甚處, 明春當議賑救之道, 爲請 今此左道御史李德師書啓, 亦以廣州·水原·南陽·安山濱海被災處, 宜有接濟爲言, 自臣營區別當否, 申飭該邑守令, 使之各別精抄, 待明春商量舉行, 何 如, 上曰, 依爲之, 蕃東曰, 接濟穀物, 則就議廟堂, 追後狀聞之意, 敢此仰達, 上曰, 依爲之.

<비변사등록 157책, 영조 51년 1775년 10월28일(음)>

### 사회/윤리·풍속

#### 領議政徐命善이 남양의 가뭄 문제를 논의하다

○ 같은 날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했을 때 영의정 서명선(徐命善)이 아뢰기를, (…) 또 아뢰기를, “올해 농사는 기전(畿甸)이 가장 심하게 흉년이 들었고, 기전 가운데 남양(南陽)이 더욱 심합니다. 구제하고 안주시키는 책임은 전적으로 수령에게 있는데, 듣자니 부사 강유(姜游)가 요즘 신병 때문에 관아에 나오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하니, 지금 우선 바꾸어 차정하고 해조에서 오늘의 정사에서 각별히 가려서 차출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의 그리 하라 하였다. (…)

同日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徐 所啓, (…) 又所啓, 今年穡事, 畿甸最歉, 而畿甸之中, 南陽爲尤甚, 接濟安集之責, 專在於守令, 而聞府使姜游, 近以身病, 多有廢衙之時云, 今姑改差, 令該曹今日 政, 各別擇差何如, 上曰, 依爲之. (…)

<비변사등록 165책, 정조 6년 1782년 08월10일(음)>

### 사회/윤리 · 풍속

刑曹判書 鄭昌聖이 南陽과 水原 두 고을의 流民을 안정시키는 문제를 논의하다

○ 같은 날 입시하였을 때에, 형조 판서 정창성(鄭昌聖)이 아뢰기를, “신이 현재 경기구관(京畿句管)을 맡고 있습니다. 올해 기전은 가장 흉년이 든 가운데 남양(南陽)과 수원(水原) 두 읍이 더욱 심하여 소민(小民)들이 이미 사방으로 흩어진 자가 있는데 모두 가을 농사는 가망이 없고 동북 지방은 크게 풍년이 들었으므로 먹거리를 취할 계획으로 바가지를 들고 간다고 합니다. 지금 경상이 이러하니 앞으로 닥칠 일을 알 만합니다. 이미 흩어진 뒤에 불러 모으는 것보다 어찌 떠나가기 전에 다독거리는 것만 하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도신 및 당해 읍의 수령에게 특별히 신칙하여 각별히 효유하고 임금의 덕의를 선포하여 도로 모여 안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유민(流民)을 위로하여 안정시키기 위한 방도로는 역시 성심으로 해야 합니다. 전에 동북 지방의 유민을 안심하고 모이게 할 때 수령이 혹 이교(吏校)를 별달리 정하여 공문을 보내 데러오니 흡사 추격하여 체포하는 것과 같아 소요스런 폐단을 면치 못하였으니, 감싸 보살피 주려고 하는 성상의 뜻에 어긋났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거나 옥박지르지 말게 하고 되도록 잘 처리할 것을 생각한 신칙하는 실상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내용으로 말을 만들어 행회(行會)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리하라. 경이 주달한 내용은 실로 눈앞의 절급한 일이다. 묘당에서는 이러한 내용으로 말을 만들어서 당해 도신을 각별히 엄하게 신칙하라. 성심을 다하여 안주시키지 않다가 뒤에 적발이 되는 일이 있을 경우 도백에서부터 수재(守宰)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조치가 있을 것이다. 남양·수원 두읍은 비록 가장 우심한 까닭에 이러한 소문이 들리는 것이지만 이 밖에 도내 여러 읍들은 태반이 우심한 지역이다. 유민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일로 다른 경우를 들어 알 수 있다. 일체 엄하게 신칙하여 행회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同日入侍時，刑曹判書鄭昌聖所啓，臣方待 罪京畿句管，而今年畿甸，最爲失稔之中，南水兩邑尤甚，小民已有流散者，皆以爲秋事既無可望，東北方爲大登，故乃以取食之計，作此持瓢之行云，卽景 如此，來頭可知，與其招集於既散之後，曷若懷綏於 未去之前乎，臣謂另飭道臣及該邑守令，各別曉諭，宣布德意，俾卽還集安堵之地，至於勞徠之道，亦 須誠心爲之，向來東北流民安集之時，爲守令者，或 別定吏校，移文推捉，殆同追捕者然，不免搔擾之弊端，殊乖懷保之聖意，今番切勿定限督迫，宜思某 條善處，然後方有申飭之實效，竝以此意，措辭行會 何如，上曰，依爲之，卿之所奏，實爲目下切急之務，自廟堂以此意措辭，各別嚴飭該道臣處，如不悉心 安集，致有從後現發之舉，自道伯以至守宰，當別樣 有處分，南·水兩邑，雖以最尤甚之故，有此傳說之入 耳，外此道內諸邑，太半是尤甚，流民之散四，亦足反 隅，一體嚴飭之意，行會可也。

<비변사등록 165책, 정조 6년 1782년 08월10일(음)>

### 사회/윤리 · 풍속

京畿監司의 分等狀啓와 湖西 漂人의 送還에 관해 아뢰다

○ 이번 10월 6일 비국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유사당상 서유린(徐有隣)이 아뢰기를, “경기감사 이재협(李在協)의 분등장을 보니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높은 메마른 곳이나

마을 공동소유의 기름진 땅이나 여물지 않은 곳이 없어 설령 저것을 털어 이것에 보태준다 해도 구별하기 어려워 분등을 하지 않았습시다. 호조에서 반하(頒下)한 사목 가운데도 기왕에 재명(災名)이 없으니 당연히 원총(元摠)에 준해야 하겠는데 흉년 끝이라 종자와 양식이 부족하고 한참 농사철에 유행병이 또 극성스러워 이따금 애당초 세를 붙이지 못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바닷가 제읍은 건파(乾播)한 것이 절반이 넘는데 마르고 습한 것이 적절치 못해 처음부터 호미질도 못한 것 역시 많습니다. 또 도내에는 묵은 탈이 그 수효가 적지 않으니 우선 열읍에서 일제히 보고하기를 기다려 참작해서 신청하겠습니다. 작년에 강도미(江都米)를 청해서 이전한 것도 있고 또 강도에 직접 청한 것도 있는데 그 수효가 2천 50석입니다. 남한산성의 군향태(軍餉太) 1천 5백 석 가운데 5백 25석은 각 고을이 원치 않아 그대로 본소에 9백 75석을 놓아두고 있는데 이획(移劃)해서 나누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바다를 건너 수납하고 산길을 돌아 운반하는 것이 모두 극히 어려우니 올봄에 1만 석을 옮긴 예에 따라 본읍에 봉류(捧留)하고 도내에서 가장 오래된 증열미(拯劣米)는 단지 영종진(永宗鎭)에 임오조(壬午條)가 있는데 기왕에 탕감됐고 남양(南陽)·김포(金浦)·교하(交河)·부평(富平) 등 4읍에 또 작년에 증열미 8백 50석과 콩 1백 12석이 있는데 우선은 정퇴하고 추노징채도 명년 가을까지 한정해 방색(防塞)할 것을 묘당에서 품처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재결(災結)은 재상(災傷)으로 탈난 것이 적은데 비록 풍년이라 하더라도 면하지 못하는 바고 본도의 농사가 이같이 풍년이면 필경 재결의 총수도 생각건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하는 청을 기다려 헤아려 허락해야 하겠습니다. 강도미 봉류는 경기백성들이 두 해 동안 살아가는 밑천으로 오로지 강도미에 의존해 흉년에 취식(取食)하고 풍년에 봉류하겠다는 것은 결코 갑작스레 허락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올봄에 이전한 1만 포 모조(耗條)는 먼저 수송하고 본미(本米)는 뒤에 운납할 것을 전 도백이 연석에서 품의해 윤택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에 따라 먼저 모조는 수송하고, 본미는 1만 포와 아울러 뒤에 일체로 남한산성으로 수송해야 하겠습니다. 군향태 봉류는 당초에 조정에서 획급을 허락한 것은 실로 백성의 굶주림을 세세하게 배려한데서 나온 것으로 한때 편의대로 하는 정사입니다. 이 같은 풍년이 든 해에 봉류를 허락하기 어려움이 있지만 본도가 굶주림이 거듭된 나머지 백성들의 뜻도 불가불 원할 것이니 각 읍의 백성에게서 받은 콩은 우선은 먼저 광주경(廣州境) 송과창(松坡倉)에 봉류했다가 명년 봄 남한산성의 군향곡을 받는 백성에게 환곡으로 나누어 주고 이어 가을을 기다려 남한산성에 환봉하면 피차의 사정이 같이 편할 것이니 이렇게 명령해 알려주어야 하겠습니다. 증열미 정퇴는 이와 같은 때에 또 기한을 물려 주면 다만 경비로 들어갈 것도 당연히 생각할 뿐 아니라 간사한 작폐가 날로 번지고 배편으로 운반하기 극히 어려운 때에 바닷가 백성들이 공곡(公穀)을 먹는 것은 이롭게 여기고 기한을 물리고 감액된 것을 다 행으로 여겨 조운선을 호송하며 뱃길을 안내하는 절차에 반드시 힘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니 말류의 폐를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작년조(昨年條)와 최구년조(最久年條)는 판연히 달라 갑자기 정퇴를 의논하는 것은 논할 바가 아니니 이것은 준봉(準捧)해야 하겠습니다. 추노징채는 백성들 고통에 관계되니 장청대로 시행할 것을 아울러 분부하되 분등장계 중 청한 여러 조항을 후록으로 열거해서 보고할 것을 일찍이 전교로 행회했는데, 본도 장본은 정식을 따르지 않은 것이 매우 미안스러우니 당해 도백을 추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그리하라. 증열미를 각 고을에 봉류하자는 것은 곧 작년과 재작년에 우심한 고을 때문에 그럴 것이다. 몇 고을에서는 반드시 받은 것의 다과가 같지 않을 것이고 비록 풍년이 든 해

일지라도 일시에 준봉하기 어려우니 몇 고을을 비교한 가운데 많지도, 적지도 않은 것은 총량을 마땅히 준봉할 것이고 그 나머지는 정되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호서(湖西)에서 표류인을 이미 그 소원대로 수로를 따라 송환했습니다. 곧 승문원(承文院)에서 자문(咨文)을 찬출하도록 해서 금군(禁軍)을 따로 정해 기발로 용만부(龍灣府)에 보내서 봉성장처(鳳城將處)로 보내도록 하고 다시 북경에 전송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今十月初六日備局堂上引見入侍時，有司 堂上徐有隣所啓，即見京畿監司李在協分等狀 啓，則以爲，奉天高燥之處，洞沓膏腴之地，無不登稔，設或有彼遜於此者，難於區別，不爲分等，地部頒下 事目中，既無災名，當準元摠，而荐歉之餘，種糧不足，方農之時，癘疫又熾，往往有初不付種之患，沿海諸 邑，乾播過半，而乾濕不適，初不入鋤者，亦甚夥然，又 如道內舊頃，其數不少，姑俟列邑齊報，參量陳請，昨 年江都米，或有陳請移轉者，又有直請於江都者，其數爲二千五十石，南漢餉太一千五百石內，五百二十五石，以各邑之不願，仍置本所九百七十五石，移 劃分俵，越海輸納，山路轉運，俱極難便，依今春一萬 石移轉，例捧留本邑，道內最久拯劣米，只有永宗壬 寅條，既已蕩滅，而南陽·富平·金浦·交河等四邑，又有 昨年拯劣米八百五十石零·太一百十二石零，姑爲 停退，推奴徵債，限明秋防塞事，請令廟堂稟處矣，災結事，小少災頃，雖曰豐歲之所不免，而本道年事，若是豐稔，畢竟災摠，想不夥然，待其陳請，參量許施，江都米捧留事，畿民之兩年資活，專賴江都，取食於 儉歲，捧留於豐年，已是行不得之事，且餉穀事體，不 輕而重，決難遽然許施，而今春移轉一萬包，耗條，爲 先輸送，本米，從後運納事，前道臣筵稟蒙允，此 亦依此例，先以耗條輸送，本米則竝與一萬石，從後 一體南漢餉太捧留事，當初朝家許劃，實出於曲 軫民饑，一時便宜之政，如此豐稔之時，有難許以捧留，而本道之荐飢餘，民情亦不可不願，各邑民人所 受太，姑先捧留於廣州境松坡倉，待明春分糶於城 餉所受民人處，仍爲待秋還捧於山城，則彼此事勢，俱爲便當，以此知委，拯米停退事，如今之時，又爲停 退，則非但經費所需之在所當念，當此奸弊日滋，漕 轉極難之時，沿海民人，利其公食，幸其停減，必不致 力於護送指路之節，末流之弊，不可勝言，且昨年條 與最久年條判異，遽議停退，非所可論，此則使之準 捧，推奴徵債，係是民隱，依狀請施行事，竝爲分付，而 分等狀啓中，所請諸條，列書後錄以聞事，曾已因 傳教行會，則本道狀本之不遵定式，殊甚未安，該道 道臣推考何如，上曰，依爲之，拯米當捧各邑，即昨 年再昨年尤甚邑，而然於數邑，必有所受多寡之不 同，雖值登稔之歲有難一時準捧，較數邑之中，以不 多不少，摠量宜徵捧，其餘停退可也。

又所啓，湖西漂人既已依所願，從水路還送矣，即令槐院，撰出咨文，別定禁軍，騎撥下送于灣府，使之傳給鳳城將處，以爲轉致北京之地何如，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167책, 정조 8년 1784년 10월06일(음)>

## 사회/윤리 · 풍속/풍속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한 南陽人 金五成에 대해 사실대로 장계로 보고하게 하다

○ 경기감사 서용보(徐龍輔)가 장계를 올려 화성(華城)의 성역(城役)에 쓸 재목이 남양(南陽)에 이르러 바람을 만나 표실(漂失)했는데, 동임(洞任) 김오성(金五成)이 물에 빠진 사람의 목숨을 살린 일을 아뢰는 것에 대해, 전교하기를, “지극히 가상한 일이다. 남양 사람 김오성의 일에 대해 유수에게 하유하여 사실에 의거하여 장계로 보고하게 하라.” 하였다.

以京畿監司徐龍輔狀啓，華城城役所用材木，到南陽逢風漂失，洞任金五成拯活人命事，傳曰，極爲可嘉，南陽人金五成事，下諭于留守處，使之據 實狀聞。

<비변사등록 182책, 정조 18년 1794년 09월10일(음)>

사회/윤리 · 풍속

左議政 金履素가 京畿道の 災實分等에 대해 논의하다

○ 이번 10월 9일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좌의정 김이소(金履素)가 아뢰기를, “이것은 경기감사 서용보(徐龍輔)의 재실분등장계입니다. **남양(南陽)** 등 11개 읍진(邑鎭)을 우심에, 광주(廣州) 등 25개 고을을 지차에, 초실 명색은 거론하지 않았습니 다. 이어서 ‘사목재(事目災)이외에 부족한 재결(災結) 4천 7백 65결(結) 82부(負) 2속(束) 을 특별히 더 획득해 주소서. 교동과 풍덕에서 작년에 정퇴해 준 신공으로 바치는 벼를 한 꺼번에 아울러 독촉하는 것과 북한산성과 평창의 금년 향곡을 전례대로 실어다 바치게 하는 것은 백성들의 폐막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리기 외람한 듯하여 감히 전례에 따라 진청(陳請)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기록하는 여러 조항에 대해서는 모두 묘당 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하소서. 우심읍과 지차읍 및 우심 면리(面里)와 지차 면리를 막론 하고 의지할 데 없고 바치기 어려운 부류만 뽑아서 가장 우심한 민호에 대해서는 당년 환자 와 신포를 3분의 1까지, 지차인 민호에 대해서는 4분의 1까지 정퇴해 주는 일입니다.

- 1. 새 환자는 우심읍과 지차읍을 막론하고 3분의 1까지 대봉하게 해주는 일입니다.
- 1. 대흥(大興) 장산(長山) 임진(臨津)의 향곡을 우심읍과 지차읍은 본읍에 봉류하였다가 내 년 가을에 본래의 장소에 도로 바치게 하되 모곡은 근래의 예에 따라 1석당 5냥씩으로 쳐서 실어 보내게 하는 일입니다.
- 1. 금위영과 어영청에서 강도(江都)에 남겨둔 향곡 중에서 쌀은 근래의 예에 따라 1석당 5 냥을 대봉하게 하고, 콩은 1석당 2냥을 대봉하게 하여 실어다 바치는 일입니다.
- 1. 강도의 쌀에 대한 모조(耗條)는 1석당 5냥으로 쳐서 대납하는 일입니다.
- 1. 장단(長湍)등 4개 고을에서 금년에 전세(田稅)와 대동세(大同稅)로 바치는 대미(大米)는 소미(小米)로 대봉하게 하고, 연천(漣川) 1개 고을은 전서(田黍:밭에 심는 조)가 가장 흉년 이 들었으니 대동으로 바치는 소미는 팔과 콩으로 대신하거나 본읍의 소미로 상납하는 일입 니다.
- 1. 수어청과 총융청의 수첩군관(守堞軍官), 장초아병(壯抄牙兵), 별파진(別破陣) 등의 신공 으로 바치는 쌀은 1두(斗) 당 4전 씩 돈으로 대봉하게 하되, 이 밖에 어느 아문 어느 군문 에 바치던 것을 막론하고 전부터 쌀로 바치던 것에 대해서도 일체로 시행하는 일입니다.
- 1. 패선(敗船)의 증미(拯米)를 내년 가을까지 정퇴하는 일입니다.
- 1. 우심읍진에는 내년 가을까지 배소(配所)로 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 1. 추노(推奴)와 징채(徵債)를 내년 가을까지 막는 일입니다.

하였습니다. 분등은 장정한 대로 시행하도록 하고 금년 경기의 농사가 삼남보다 조금 낮다 고 하기도 합니다마는 대체로 흉년인 점에 있어서는 그리 차이가 없습니다. 사목재 이외에 4천 7백 60여 결을 더 청한 것은 헤아리던 바를 참작해 볼 때 과람한 것은 아니니 특별히 청한 대로 따라 주어서 한 사람의 백성도 백징을 당하는 폐단이 없게 하고, 면리를 분등하 는 것은 재년(災年)에 있어서는 그만 둘 수 없는 정사라고 하지만 만약 가장 긴급하고 가장 절실한 실무를 논한다면 초호(抄戶:기구(飢口)를 뽑는 일)만한 일이 없으니 이번에 청한 바 는 실로 마땅하니, 이대로 분수하여 정밀하게 뽑아서 정퇴하게 하고 혹시라도 허와 실이 서 로 뒤 섞이거나 가난한 자와 부자가 서로 뒤섞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새 환 자의 3분의 1을 대봉하게 하는 일 및 대흥·장산·임진의 향곡을 본읍에 봉류하고 모곡은 1

석당 5냥으로 쳐서 실어 보내는 일, 금위영과 어영청에서 강도에 남겨둔 향곡 중에서 쌀은 1석당 5냥으로 대봉하고 콩은 2냥으로 대봉하게 하여 실어다 바치는 일, 장단 등 4개 고을의 전세와 대동세로 바치는 대미를 소미로 대봉하게 하는 일, 연천에서 대동세로 바치는 소미를 팔과 콩으로 대신하게 하거나 본읍의 소미로 상납하게 하는 일, 수어청과 충융청의 수첩군관·장초아병·별과진 등이 신공(身貢)으로 바치는 쌀을 1두당 4전 씩 돈으로 대봉하게 하고 이 밖에 각 아문과 각 군문에 전부터 바치던 쌀에 대해서도 일체로 시행하게 하는 일은 모두 금년의 새로운 청이 아니고 본래 흉년에는 이미 으레 하던 것이 대부분이니 허락을 아낄 것은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증렬미(拯劣米)를 정퇴해 주는 것과 아울러 우심한 읍진에 배소를 정하지 않고 추노와 징채를 막는 조항들도 일체로 시행하라고 허락하고 교통과 풍덕에서 작년에 정퇴해 주었던 신공으로 바치는 베를 그대로 정퇴하는 것과 북한산성의 향곡을 본읍에 봉류하는 것은 특례에 관계되니 거듭 엄하게 밝힌 절목이 있어서 도신이 감히 진정하지 못한 것은 사리에 맞는 일이라고 하겠으니, 이것은 거론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의 그리하라 하였다.

今十月初九日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左 議政金所啓，此京畿監司徐龍輔災實分等狀 啓也，**南陽**等十一邑鎮置之尤甚，廣州等二十五邑 置之之次，稍實名色不爲舉論，仍以爲，事目災外不足災四千七百六十五結八十二負二束特許加劃，喬桐·豐德昨年停退身貢布之一時竝督，北漢·平倉 今年餉穀之如例輸納事關民瘼，言涉猥越，不敢循 例陳請，而後錄諸條，竝令廟堂稟旨分付爲請矣，其一，毋論尤甚·之次邑及尤甚·之次面里只抄其無 依難捧之類，最尤甚戶當年還布限三分一，之次戶 限四分一停退事也，其一，新還毋論尤甚，之次邑限 三分一代捧事也，其一，大興·長山·臨津餉穀尤甚，之 次邑捧留，本邑待明秋還納，本所耗穀依近例每石 以五兩輸送事也，其一，禁·御兩營江都留餉米依近 例以五兩代捧·太以二兩代捧輸納事也，其一，江都米耗條每石以五兩代納事也，其一，長湍等四邑今 年田大同大米，以小米代捧，漣川一邑田黍最 歉所 納大同小米代豆太，以本色小米上納事也，其一，守· 摠兩營守堞軍官·壯抄牙兵·別破陣等身米每斗四 錢式代捧，此外某衙門·某軍門自前納米者，一體施 行事也，其一，敗船極 拯米太限明秋停退事也，其一，尤 甚邑鎮限明秋勿定配所事也，其一，推奴徵債限明 秋防塞事也，分等依狀請施行，今年畿農或云稍勝 於三南，而大體歉荒無甚異同，則事目災外四千七 百六十餘結之加請，參以所料，不至過濫，特許準請，俾無一民白徵之弊，面里分等雖是災年不可已之 政，若論其最繁最切之實務，則莫如抄戶，今此所請，實爲得宜，使之依此分數，精抄停退，無 或虛實相蒙，貧富相混，新還三分一代捧及大興·長山·臨津餉穀 捧留本邑耗，則每石以五兩輸送事，禁·御兩營江都 留餉，米以五兩代捧·太以二兩代捧輸納事，長湍等 四邑田大同大米，以小米代捧事，漣川大同小米代 豆太，以本色小米上納事，守·摠兩營守堞軍官·壯抄 牙兵·別破陣等身米每斗四錢式代捧，此外各衙門· 各軍門自前納米者，一體施行事，皆非今年創請， 自 多歉歲已例，恐不可靳持，竝與拯劣米停退，尤甚邑 鎮勿定配所，推奴徵債防塞諸條，一體 許施，至於喬 桐·豐德昨年停退，身貢布之仍停，北漢餉穀之捧留 本邑，或係特例，或有節目之申嚴，道臣之不敢陳請，可謂得體，此則勿論何如，上曰，依爲之。

<비변사등록 182책, 정조 18년 1794년 10월09일(음)>

### 사회/윤리 · 풍속

#### 京畿監司 權常愼의 災實分等狀啓에 대해 回啓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방금 경기감사 권상신(權常愼)의 재실 분등 장계를 보니, **남양**

(南陽) 등 4개 읍은 우심에, 여주(驪州) 등 23개 읍진은 지차에, 양주(楊州) 등 8개 읍은 초실에 두고 이어 아뢰기를, ‘사목재(事目災) 4백 결 외에 부족재(不足災) 4천 3백 79결 87부 7속을 더 획급(劃給)해 주도록 허락하고, 후록(後錄)한 여러 조항도 모두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후록의 첫째는 남양의 우심면리는 작년 정봉조와 정퇴조의 전량을 계속 정지하게 하고, 이 밖의 차승 면리(差勝面里)는 정봉조는 4분의 1을 징봉(徵捧)하게 하고 정퇴조는 5분의 1을 징봉하게 하며, 인천(仁川) 등 3개 읍의 우심 면리는 작년 정봉조는 4분의 1, 정퇴조는 5분의 1을 징봉하게 하고, 지차 면리는 정봉조는 3분의 1을 징봉하게 하고, 정퇴조는 4분의 1을 징봉하게 하며, 여주 등 23개 읍진의 우심 면리는 작년 정봉조는 3분의 2를 징봉하게 하고, 정퇴조는 절반을 징봉하게 하며, 양주 등 8개 읍은 정봉조는 물론하고, 정퇴조는 3분의 2를 징봉하게 해 달라는 일입니다. 둘째는 환곡에 대해 남양의 우심 면리는 3분의 1을, 이 밖의 차승 면리는 4분의 1을 정퇴하게 하고, 인천 등 3개 읍의 우심 면리는 4분의 1, 지차 면리는 5분의 1을 정퇴하였다가 내년 가을을 기다려 환봉(還捧)하게 해 달라는 일입니다. 셋째는 환향(還餉)에서 우심읍의 우심 면리는 3분의 1, 우심읍의 지차 면리와 지차읍의 우심 면리는 4분의 1을 상당곡으로 준절하여 대봉하였다가 내년 가을을 기다려 도로 본색으로 만들게 해 달라는 일입니다. 넷째는 작년에 대봉하게 한 환곡은 계속 대봉하게 하였다가 내년 가을을 기다려 도로 본색으로 만들게 해 달라는 일입니다. 다섯째는 대흥(大興), 임진(臨津), 장산(長山) 등의 향곡은 본읍(本邑)에 봉류(捧留)하되 또한 환향(還餉)의 예에 따라 분수(分數)하여 대봉하게 하였다가 내년 가을을 기다려 도로 본색으로 만들게 하고, 북한산성(北漢山城) 평창(平倉)의 향미(餉米)는 봉류해 두지 못하도록 이미 연전에 정탈한 바가 있으므로 감히 우리러 청하지 못하겠다는 일입니다. 여섯째는 각년(各年)의 구환(舊還)은 우선 봉납하지 말게 해 달라는 일입니다. 일곱째는 금위(禁衛) 어영(御營) 두 영의 강도유향미태(江都留餉米太)는 규례대로 쌀은 매석(每石)에 5냥으로, 콩은 매석에 2냥으로 대봉하였다가 내년 가을을 기다려 도로 본색으로 만들게 해 달라는 일입니다. 여덟째는 수어(守禦) 총융(摠戎) 두 영의 수첩 군관(守堞軍官)과 장초군(壯抄軍)·아병(牙兵) 등의 신미(身米)를 근래의 규례대로 매두(每斗)에 4전(錢)씩 대전으로 거두어들이게 하고, 각양 군관(軍官)으로 전부터 납미(納米)했던 자도 일체로 대봉하게 해 달라는 일입니다. 아홉째는 각 아문에 납부할 각양 신포는 지금의 백성들 형편으로는 실로 아울러 독촉하기가 곤란하니, 작년 정퇴조를 우심읍의 우심호(尤甚戶)는 전 수량을, 우심읍의 지차호(之次戶)·지차읍의 우심호는 절반을 계속 정퇴하였다가 내년 가을을 기다려 준봉(準捧)하게 해 달라는 일입니다. 열번째는 증미태(拯米太)는 모두 정퇴하도록 허락해 달라는 일입니다. 열한번째는 노비를 추쇄하고 빚을 징수하는 것은 내년 가을까지 방색해 달라는 일입니다. 옛날에 이른바 ‘비록 풍년을 만난 해라 하더라도 재해를 입은 데가 많다’ 한 것은 대개 풍처(豐處)에서는 풍작을 이루었더라도 재처(災處)에서는 치우치게 재해를 입었기 때문인데 올해 경기의 농사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더구나 올해는 풍처에서 반드시 순풍(純豐)을 이루지 못하였고 재처에서는 혹독한 재해를 입음이 많았으니, 재해와 풍작을 비교하면 재해의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한강(漢江) 이남(以南) 연읍(沿邑)의 바닷가 각면(各面)에 있어서는 처음에는 이른 가뭄으로 병을 앓다가 두 번째는 해일(海溢)에 손상을 입었고 또 7월의 거센 해풍(海風)에 몽땅 손실을 입었는데 이에 남양 등 여러 고을에서는 간간이 온 들판 전체가 재해를 입은 곳이 많습니다. 도신이 고을에 대해서는 분등을 하고 재해를 입은 곳에 대해서는 가청(加請)을 하였는데 그 형세를 돌아보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요청한 분등은 그대로 시행하고, 재결(災結)은 호조의

사목재로는 진실로 그 태반이 부족할 것이나 5천 결에 가깝게 획급하기를 청한 것은 아무래도 절약(節約)에는 흠이 있다 하겠습니까. 작년 가을의 재결은 차치물론(且置勿論)하고라도 본도(本道)에서 가장 많았던 재결은 임자년(壬子年:정조16, 1792)과 갑인년(甲寅年:정조18, 1794)보다 더함이 없고 다음으로는 신해년(辛亥年:정조15, 1791)인데 신해년에도 4천여 결이었으니, 만약 올해의 재결을 위로 신해년의 재충(災摠)과 비교해 본다면 지나친 데서 형평(衡平)을 잃었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 원래 획하한 4백 결 이외에 다시 3천 4백 79결 영을 추가로 획급하여 원래 획하한 것과 합하면 3천 8백여 결이 되니, 이것으로 고르게 표재(俵災)하게 해야 하겠습니까. 작년의 환향은 겨울 초기에 도신의 장계로 인하여 기한을 물린 것을 정퇴(停退)라고 하고 세말(歲末)에 특별 하교로 인하여 정지하도록 허락한 것을 정봉(停捧)이라고 하였으나 정퇴와 정봉을 논할 것 없이 모두 작년에 받아들여야 했던 것이라면 올해에 마저 받아야 함은 다시 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우심의 4개 읍 가운데 **남양** 백성들의 형세가 더욱 절박한 지경에 있는 것은 대개 여러 해 거듭된 기근이 **남양**이 가장 심하였고 작년 가을의 대홍도 **남양**이 가장 혹심하였는데 올해 치우치게 입은 재해도 **남양**보다 심한 곳이 없기 때문인데 더구나 해면(海面)의 전황(全荒)은 호남의 연해읍(沿海邑)보다도 심하여 현금의 고통은 필시 뿔뿔이 흩어지는 데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도신이 장계에서 **남양**을 집어내어 별도로 구휼해야 한다고 한 것은 실로 사실에서 벗어난 말이 아닐 것이니, 우심 면리와 차승 면리는 분수하여 징봉하게 해 달라는 청은 그대로 시행하며 인천 등 3개 읍의 우심 면리의 징봉조는 3분의 1을 징봉하게 하고, 정퇴조는 4분의 1을 징봉하게 하며, 지차 면리에서 징봉조는 절반을 징봉하게 하고, 정퇴조는 3분의 1을 징봉하게 하며, 여주 등 23개 읍진의 우심 면리의 징봉·정퇴 두 조항은 모두 3분의 2를 징봉하게 하고, 지차 면리의 정퇴조는 4분의 3을 징봉하게 하고, 징봉조는 전량을 징봉하게 하며, 양주 등 8개 읍은 기왕 초실에 두었으니, 징봉과 정퇴의 전수량을 징봉하게 해야 하겠습니까. 당년의 신환(新還)에 있어서는 **남양**과 인천 등 3개 읍에 대해 분수하여 정퇴를 청한 것과 우심읍과 지차읍에 대해 준절하여 대봉하게 해 달라는 것은 모두 지나치게 청한 것이 아니며 작년의 대봉을 계속 대봉하게 해 달라는 것도 형세로 볼 때 옳은 것 같고 대홍, 임진, 장산의 성향(城餉)을 본읍에 봉류하게 하는 것과 곡물을 분수하여 대봉하게 하는 것은 바로 작년에 이미 시행했던 것이니 모두 그대로 시행하게 해야 하겠습니까. 북한산성의 성향을 우심의 4개 읍은 작년의 예대로 본읍에 봉류하게 하고, 지차읍은 비록 준납(準納)하게 하더라도 재해를 입은 백성들이 직접 산창(山倉)으로 수납하는 것은 폐해를 염려해야 하니 모두 평창에 수납하게 하고 초실읍은 물론하며 구환은 초실읍과 지차읍에서는 의당 분수하여 징봉해야 하겠으나 각 아문의 곡식은 전부 교동(喬桐)에 있는데 교동이 비록 지차읍이지만 여러 해 흉작을 겪은 뒤이라 역시 거론하기가 어려우니 양호(兩湖)의 예대로 계속 정지하게 하며 금위 어영 두 영의 강도유향미대는 작년의 예대로 대전하게 하고, 수어 총융청 두 영의 각양 군관과 장초군·아병 등의 신미와 납미 역시 대전으로 거두게 하며 각 아문의 작년에 정퇴한 신포는 우심읍과 지차읍은 분등(分等)하고 분호(分戶)한 다음 분수하여 계속 정퇴하게 하고, 증미대는 정퇴하게 하며, 노비를 추쇄하고 밭을 징수하는 것을 방색하는 것은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京畿監司權常愼災實分等狀啓，則**南陽**等四邑置之尤甚，驪州等二十三邑·鎭置之次，楊州等八邑置之稍實，仍以爲，事目災四百結外，不足災四千三百七十九結八十七負七束，特許加劃，後錄諸條，竝請令廟堂稟旨分付矣，其一，**南陽**尤甚面里，昨年停捧·停退條全數仍停，外此差勝面里，停捧條四分一·徵捧，停退條五分一徵捧，仁川等三邑尤甚面里，昨年停捧

條四分一徵捧，停退條五分一徵捧，之次面里，徵捧條三分一徵捧，停退條四分一徵捧，驪州等二十三邑·鎮尤甚面里，昨年停捧條三分二徵捧，停退條折半徵捧，楊州等八邑，停捧條勿論，停退條三分二徵捧事也，其一，還穀南陽尤甚面里三分一，外此差勝面里四分一停退，仁川等三邑尤甚面里，四分一，之次面里，五分一停退，待明秋還捧事也，其一，還餉尤甚邑之尤甚面里，三分一，尤甚邑之之次面里之次邑之尤甚面里，四分一以相當穀準折代捧，待明秋還作本色事也，其一，昨年代捧還穀，仍爲代捧，待明秋還作本色事也，其一，大興·臨津·長山等餉穀，捧留本邑，而亦依還餉例，分數代捧，待明秋還作本色，北漢平倉餉米，無得捧留之意，既有年前定奪，不敢援例仰請事也，其一，各年舊還，姑許勿捧事也，其一，禁·御兩營江都留餉米太，依例以米每石五兩·太每石二兩代捧，待明秋還作本色事也，其一，守·摠兩營守堞軍官·壯抄牙兵等身米，依近例每斗以四錢，代錢收納，各樣軍官之自前納米者，一體代捧事也，其一，各衙門所納各樣身布，目今民勢，實難竝督，昨年停退條尤甚邑之尤甚戶，全數，尤甚邑之之次戶·之次邑之尤甚戶，折半仍停，待明秋準捧事也，其一，拯米太竝許停退事也，其一，推奴徵債限明秋防塞事也，古所謂雖當占豐之歲，亦有多災之時，蓋由於豐處雖豐，災處偏災之故，而今年畿農，政如此矣，況今年則豐處，未必純豐，而災處多被酷災，以災較豐，則災分數居多，而至如漢南沿邑之濱海各面，始病於早早，再傷於海溢，又爲卒痒於七月之風，南陽等數邑，間多舉一坪全災之處，道臣之邑則分等，災則加請，顧其勢蓋不得不然，所請分等依施，災結則地部事目，固慮其大半不給，而若其近五千結之請劃，則終欠節約矣，昨秋災結，且置無論，本道最多之災，莫過於壬子·甲寅，次之爲辛亥，而辛亥爲四千餘結，若以今年災，上比辛亥摠，則失之於過矣，元劃下四百結外，更以三千四百七十九結零加劃，與元劃合爲三千八百餘結，使之以此均俵，昨年餉還，冬初因道啓，退限者，謂之停退，歲末以特教，許停者，謂之停捧，無論停退停捧，俱是昨年當捧，則今年畢納，無容更議，而但今尤甚四邑中，南陽民勢，尤在於十分地頭，蓋屢年荐饑，南陽最劇，昨秋大無，南陽最酷，而加以今年偏被之災，無如南陽之爲甚，況海面全荒，甚於湖南沿邑，見今瘡痍，必至渙散，道啓之拈出南陽，別加存恤，實非過實之語，尤甚差勝面，分數徵捧之請，依施，仁川等三邑尤甚面里，停捧條三分一徵捧，停退條四分一徵捧，之次面里，停捧條折半徵捧，停退條三分一徵捧，驪州等二十三邑鎮尤甚面里，停捧·停退兩條竝三分二徵捧，之次面里，停退條四分三徵捧，停捧條全數徵捧，楊州等八邑，既是稍實，停捧·停退，全數徵捧，當年新還，則南陽及仁川等三邑之分數請停，尤甚之次邑之準折代捧，俱非過當之請，昨年代捧之仍爲代捧，其勢似然，大興·臨津·長山城餉之捧留本邑，穀物之分數代捧，卽是昨年已施者，竝爲依施，北漢城餉尤甚四邑，依昨年例，捧留本邑，之次邑則雖使之準納，而災民之直輸山倉，爲弊宜念，竝令收納于平倉，而稍實邑則勿論，舊還，當於稍實·之次邑分數徵捧，而各衙門穀，全在於喬桐，喬桐雖是之次邑，屢歲經歉之餘，亦難學論，依兩湖例仍停，禁·御兩營江都留餉米太，依昨年例代錢，守·摠兩營各樣軍官·壯抄牙兵身米納米，亦令代錢，各衙門昨年停退身布，尤甚·之次邑分等·分戶·分數仍停，拯米太停退，推奴徵債防塞，竝依狀請許施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00책, 순조 10년 1810년 10월19일(음)>

#### 사회/윤리·풍속

京畿監司 權常愼이 청한 災結 중에서 400結을 추가로 劃給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경기감사 권상신(權常愼)이 올린 상소에 대한 비답 내에, 상소의 내용은 묘당에서 채택하여 시행할 것이 있다면 청한 바에 따라 시행하게 하겠다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그 소본(疏本)을 가져다 보니, 제읍(諸邑)의 재해를 입은 백성들의 실정을 갖

추어 진달하고, 이어 이르기를, ‘본도의 재결(災結)은 원래 획급해 준 4백 결 이외에 추가로 획급해 준 것이 3천 4백 79결 영이므로, 삭감한 것이 9백 결에 이를 정도로 많아 손을 묶고 표재(俵災)하는 일을 중지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찌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정해진 수량대로 획급해 주시고, 우심읍, 지차읍, 초실읍의 정봉조와 정퇴조를 계속 정퇴하게 하는 것도 모두 청한 바대로 채워 주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도신이 재결을 청하고 정퇴를 청한 것은 비록 각각 백성들의 실정을 알고서 되도록 걱정하게 했음을 알 수 있으나 재결은 조정에서 획급할 적에 부득불 당년의 농사를 참고하고 각년의 재총(災摠)과 비교하여 충분히 재량해 결정하여 혹시라도 과불급의 탄식이 없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과연 신해년(辛亥年:정조15, 1791)에 비총(比摠)하여 다소 축소하였으므로 그다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터인데 이번 상소의 진술이 이처럼 간절하고 지극하니 반드시 절박하여 그만둘 수 없는 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다시 4백 결을 획급하고 정퇴에 있어서는 **남양(南陽)** 한 고을에는 이미 청한 바에 따라주었고 인천(仁川) 등 3개 읍 이하는 각각 분수를 정하여 삭감해 준 일이 있습니다. 대개 본도의 원곡은 거의 진흙 밀천과 정퇴해 주는 것으로 다 들어가고 남은 것이 많지 않으니 내년 봄 환곡을 나누어 줄 적에 도말(塗抹:찍어 바름. 대충 맞춤)할 수 없을까 걱정일뿐더러 만약 혹 불행히 이듬해에 쓸 일이 있으면 결코 다시는 조처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만약 목전에 거두어들이기 어려운 것만 생각하고 똑같은 예로 시행하게 한다면 닥쳐올 걱정은 오늘날 백성들의 실정과 같을 뿐만이 아닐 것인데 더구나 전에 소원에 따라 시행해 준 일이 너그러움에 없었음에 있어서이겠습니까. 한결같이 전에 회계한 대로 시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 京畿監司權常愼上疏批旨內, 疏辭, 令廟堂如有採施者, 從其所請施行事, 命下矣, 取見其疏本, 則備陳諸邑被災之民情, 仍以爲, 本道災結元劃四百結外, 加劃爲三千四百七十九結零, 其所減削, 至於九百結之多, 束手停俵, 誠爲罔措, 準數劃下, 尤甚·之次·稍實邑, 停捧·停退條之仍停者, 竝準所請爲辭矣, 道臣之請災·請退, 雖知其各悉民情, 務從稱停, 而災結則朝家許劃, 不得不參以當年穡事, 較之各年災摠, 十分裁定, 俾或無過不及之歎, 故果以辛亥比摠, 略加摠節, 庶可爲不甚差爽, 而今此疏陳, 若是懇至, 可見其必有所迫不獲已者, 更以四百結許劃, 至於停退, 則**南陽**一邑, 既準所請, 自仁川等三邑以下, 各有分數之減, 蓋本道元穀, 幾盡入於賑資及停退, 而餘者無多, 明春分還, 已憂其莫可塗抹, 若或不幸有嗣歲之用, 則決知其更無可措矣, 今若只爲目下之難捧, 一例準施, 則來後之憂, 不但如今日之民情而已, 況前所從施者, 未嘗不優手, 一依前回啓施行之意, 分付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00책, 순조 10년 1810년 11월07일(음)>

## 사회/윤리 · 풍속

### 京畿監司 權常愼의 災實分等狀啓에 대해 回啓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경기감사 권상신(權常愼)의 재실분등장계(災實分等狀啓)를 보니, 교동(喬桐) 등 17개 읍진(邑鎭)은 우심(尤甚)에 두고 양주(楊州) 등 13개 읍은 지차(之次)에 두고 여주(驪州) 등 5개 읍은 초실(稍實)에 두었습니다. 이어 호조에서 획급한 재결(災結) 3백 결 이외의 부족재(不足災) 7천 3백 58결 82부(負) 3속(束)을 특별히 더 획급하게 하고 후록(後錄)한 여러 조항을 아울러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기를 청한다 하였습니다. 후록한 그 하나는, 기사년(己巳年:순조9, 1809)에 정퇴하거나 정봉한 우심읍·지차읍·초실읍을 막론하고 모두 그대로 정봉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우심읍인 **남양(南陽)** 등 4개 읍의 경오년(庚午年:순조10, 1810) 정퇴곡을 그대로 정퇴하였다가 내년 가을에 가서

거두어들이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올해 각읍의 모작조(麩作租)를 모두 그대로 정지하였다가 내년 보릿가을이 되거든 본색(本色)으로 도로 바치게 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작년 우심읍과 지차읍에서 납부해야 할 각 아문의 기사년 신포(身布)에 대해 신포(新布)와 구포(舊布)를 모두 독촉하기는 실로 어려운 일이니 우선 계속 정지하게 하였다가 내년 가을이 되거든 징봉(徵捧)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환곡에 대해 우심읍에는 3분의 1을, 지차읍 및 초실읍의 우심면리(尤甚面里)는 4분의 1을 상당한 곡식으로 준절(準折)하여 대봉(代捧)하고, 작년 우심읍과 지차읍에서 대봉한 것은 이전대로 대봉 하였다가 모두 내년 가을이 되거든 도로 본색으로 만들게 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대흥(大興)·임진(臨津)·장산(長山) 등의 향곡(餉穀)에 대해서는 작년의 예에 따라 본읍에 봉류(捧留)하고 역시 다른 환향(還餉)의 예대로 분수(分數)하여 대봉 하였다가 내년 가을이 되거든 본색으로 만들게 하며 북한산성의 향미(餉米)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삼가 처분을 기다린다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각년(各年)의 구환을 우선 거두지 말게 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금위영과 어영청 두 영과 강도(江都)의 유향미태(留餉米太)를 전례에 따라 돈으로 대봉하였다가 내년 가을이 되거든 도로 본색으로 만들게 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수어청과 충융청 두 영의 군관(軍官)과 아병(牙兵) 등의 신미(身米)를 예에 따라 1두(斗)에 4전(錢)씩 대전(代錢)으로 수납하고, 각양 군관으로서 전부터 납미(納米)하던 것도 일체 대전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증미태(拯米太)를 모두 정퇴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노비를 추쇄하고 채무를 징수하는 것을 내년 가을까지 막는 일입니다. 올해는 경기의 농사가 처음에는 삼남과 함께 거의 풍년이 들것이라 예상했는데 끝에 가서 4도(道)와 더불어 모두 재해로 손상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실로 가을 이후 농사가 상처를 입지 않은 곳이 없고 타작을 하게 되어서는 크게 기대에 어긋났습니다. 이에 한남(漢南:한강 남쪽)의 약간 고을 이외에 과연 흉작인 곳이 많지만 한 도를 총체적으로 논하면 혈농(穴農:구메농사)입니다. 근년 이래 어찌 일찍이 이와 같은 해가 없었겠습니까마는 지금은 거듭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실정이 배나 어렵고 다급한 상황입니다. 도신의 분등에 과연 참작할 점이 있으니 장계한 대로 시행하게 하겠습니다. 본도(本道)의 재결(災結)에 대해서는 기사년은 사실 별도로 논해야겠고 최근 들어 가장 많은 경우는 갑인년(甲寅年:정조18, 1794)만한 때가 없음에도 5천여 결에 차지 않았습니. 이번의 7천여 결을 추가로 청한 것은 과연 지나치게 많은 것이 됩니다. 무릇 재결을 청하고 재결을 획급하는 일은 반드시 비총(比摠)을 위해서인데 이는 재정(災政)을 중요하게 여기고 백성들의 형편을 구휼해 주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지만 경솔한 생각으로 가감(加減)해서는 옳지 않습니다. 올해는 갑인년의 비총에 비해 조금이나마 분수를 줄여 4천 결을 추가로 획급하여 고르게 분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년의 구환(舊還)을 분등하여 계속 정지하는 일은 이미 흉년을 만난 제도(諸道)에 허용하였으므로 지금 차이를 두기가 어렵고 백성들의 실정으로 보면 과연 모두 바치게 하기 어려우니, 우심읍은 3분의 2를, 지차읍은 절반을, 초실읍은 3분의 1을 정퇴하겠습니다. 경오년의 환곡은 바로 작년에 응당 거두어야 할 것으로서 구환과 함께 똑같이 논할 수 없습니. 다만 우심읍에 대해서만 절반을 특별히 정퇴하게 하겠습니다. 당년(當年)의 모작조는 가을 이후에 조(租)로 준봉(準捧:정해진 수량대로 거둬)해야 하는데 이번에 또 정퇴하였다가 도로 본모(本牟)로 만들기를 청하였는데 비록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처음에 모작조로 청하고 조에 거두지 못하고 곧바로 조작모(租作牟)를 청한 것은 사체로 볼 때 제대로 살피지 못한 일에서 면하기 어려우니 도신을 추고하고 본모는 보릿가을을 기다렸다가 준봉하겠습니다. 작년 우심읍과 지차읍에서 납부해야 할 각 아문의 기사년 신포에 대해서는 특별히 계속 정지하게 하

고, 신환(新還)의 대봉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도에 허용하였으니 이 역시 칭한 대로 분수(分數)하여 대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흥(大興) 등 세 곳 산성(山城)의 향곡(餉穀)에 대해서 우심읍은 전체 수량을, 지차읍은 절반을 전처럼 봉류(捧留)하였다가 적절히 대곡(代穀)으로 하고 초실읍은 내버려 두겠습니다. 북한산성의 향환(餉還)에 대해서는 연전에 수신(帥臣)이 이미 연석에서 아뢰어 금하였고 또 전체적으로 대흥이 든 해와는 다르며 해마다 경솔하게 논의해서는 옳지 않으므로 수량에 맞추어 납부하게 하겠습니다. 본소(本所) 기사년 이전의 구환과 기사년조에 대해서는 이미 정되하게 하였으니 아울러 내년까지 기한을 물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금위영과 어영청 두 영과 강도(江都)의 유향미태는 전례대로 대전 하고, 수어청과 총융청 두 영의 군관과 아병의 신미에 대해서는 1두에 4전씩 수납하는 예로 대전 해서 보내도록 하고, 각양 군관의 납미도 대전하게 하고, 증열미의 정봉 및 노비를 추쇄하고 채무의 징수를 막는 일은 일체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윤허한다. 이대로 하되 백성에게 폐단을 끼치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司啓曰，卽見京畿監司權常愼，災實分等狀啓，則喬桐等十七邑鎮，置之尤甚，楊州等十三邑，置之之次，驪州等五邑，置之稍實，仍以爲地部所劃災三百結外，不足災七千三百五十八結八十二負三束，特許加劃，後錄諸條，竝請令廟堂，稟旨分付矣，其一已巳停退停捧條，無論尤甚之次稍實邑，竝許仍停事也，其一尤甚南陽等四邑，庚午停退穀仍停，待明秋收捧事也，其一今年各邑麩作租，竝許仍停，待明年麥秋，本色還捧事也，其一昨年尤甚之次邑，所納各衙門已巳身布，實難新舊竝督，姑許仍停，待明秋徵捧事也，其一還穀尤甚邑，限三分一，之次邑及稍實邑之尤甚面里，限四分一，以相當穀準折代捧，昨年尤甚之次邑代捧者，仍前代捧，竝令待明秋還作本色事也，其一大興·臨津·長山等餉穀，依昨年例，捧留本邑，亦依他還餉例，分數代捧，待明秋還作本色，北漢餉米之捧留，極涉重難，恭俟處分事也，其一各年舊還，姑許勿捧事也，其一禁·御兩營江都留餉米太，依已例，以錢代捧，待明秋，還作本色事也，其一守摠兩營軍官牙兵等身米，依例以每斗四錢，代錢收納，各樣軍官之自前納米者，一體代錢事也，其一拯米太，竝許停退事也，其一推奴徵債，限明秋防塞事也，今年畿農，始則與三南，庶占登熟，末乃竝四道，渾稱災損者，實緣秋後痒稼，靡所不至，及到滌場，大違所期，漢南若以邑外，果多失稔，而摠論一路，卽是穴農，近年以來，何嘗無如此之歲，而今則特以荐歉之故，民情倍爲艱急，道臣分等，果有斟量，依所啓施行，本道災結，已巳固當別論，而挽近最多，無如甲寅，亦不滿五千餘結，今此七千餘結加請，果爲過多，凡請災劃災，必爲比摠，蓋出於重災政恤民勢之意，而有不可率意加減，今年則比甲寅摠，少減分數，以四千結加劃，俾爲均排之地，已巳舊還分等仍停，已許於遇歉諸道，今難異同，而民情則果難竝捧，尤甚邑三分二，之次邑折半，稍實邑三分一停退，庚午還，卽是昨年應捧，不可與舊還，一例較論，只令尤甚邑折半特停，當年牟作租，當於秋後，以租準捧，而今又請退，還作本牟，雖緣難捧之故，而初請以牟作租，租未捧而旋請以租作牟者，事面難免不審，道臣推考，本牟則待麥秋準捧，昨年尤甚之次邑各衙門已巳身布，特令仍停，新還代捧，已許於他道，此亦依所請分數許代，大興等三處山餉，尤甚邑全數，之次邑折半，依前捧留，而量宜代穀，稍實邑置之，至於北漢餉還，年前帥臣，已爲筵奏，防塞且異，全歉之歲，不可每歲輕議，使之準納，本所已巳以前舊還，已巳條，已令許停，竝爲待明年退限，禁御兩營江都留餉米太，依例代錢，守摠軍官牙兵身米，以每斗四錢之例，許令代送，各樣軍官納米，亦令代錢，拯劣米停捧及推徵防塞，一體許施，何如，答曰，允。依此爲之，俾無爲民之弊，可也。

<비변사등록 201책, 순조 11년 1811년 10월08일(음)>

## 사회/윤리 · 풍속

### 京畿監司 李存秀의 災實分等狀啓에 대해 回啓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재실분등(災實分等)에 대한 경기 감사 이존수(李存秀)의 장계를 보면 양주(楊州) 등 12읍진(邑鎭)을 초실(稍實)에 두고, **남양(南陽)** 등 12읍을 지차(之次)에 두고, 교동(喬桐) 등 11읍을 우심(尤甚)에 두고, 사목(事目)의 재결 2백 50결 외에 부족한 재결 4천 14결(結) 62부(負) 8속(束)을 특별히 획급하도록 하고 후록(後錄)한 여러 조목을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기를 청한다 하고 교동을 안정시킬 방도를 이를 이어 등문(登聞)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올해 경기의 농사는 다른 도와 비교할 때 가장 좋습니다. 근년의 조금 풍년과 비교하면 무진년(戊辰年)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단지 바닷가 여러 고을과 한강 이북의 두어 군(郡)은 가뭄 피해를 치우치게 입었고 그 사이에 참혹한 흉년을 당한 곳이 많으나 이 역시 전체 경내가 풍년과 흉년이 각각 차이가 나고 들판이 가로막힌 곳에서의 득실은 서로 반반이며 한 고을 전체가 거의 포기상태인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흉년이 거듭된 나머지 백성의 궁핍은 현재 심합니다. 도신의 장계에서 우심에 둔 것은 부득이한 데에서 나온 것으로 3등으로 진달한 바를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결은 기사년(己巳年) 이후 가장 많은 총수로서 신미년은 5천결이었는데 올해의 농사는 신미년과 크게 달라 이번엔 더 청한 수가 신미년에 비해서 아무래도 많은 것 같으니 부족한 재결 3천결을 특별히 획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새 환곡은 우심읍의 우심면은 3분의 1을, 지차면과 지차읍의 우심면은 4분의 1을 정퇴하되 아울러 내년 가을에 가서 도로 수봉하는 일입니다. 새 환곡을 정퇴하는 일은 다른 도에 허용하지 않았으니 내버려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신미년에 정퇴한 환곡을 지차읍의 지차면은 절반을 그대로 정퇴하고 우심면과 여러 우심읍은 모두 그대로 정퇴하는 일입니다. 작년엔 정퇴한 것은 새 환곡이었고 새 환곡은 정퇴할 수 없으니 내버려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묵은 환곡은 초실한 12읍진의 기사년(己巳年) 것과 인천(仁川)의 경오년(庚午年) 것은 준봉(準捧)하도록 기하고 지차읍 초실면의 기사년·경오년 것은 절반을 그대로 정퇴하고 지차읍과 우심·지차면과 우심읍은 모두 그대로 정퇴하며 기사년 이전의 묵은 환곡은 3등읍을 막론하고 모두 그대로 정퇴하는 일입니다. 묵은 환곡은 우심과 지차읍에만 도신의 장계에 의하여 등급을 나누어 그대로 정퇴하고 기사년 이전의 묵은 환곡은 3등읍 모두 정퇴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각 군문(軍門)과 각 아문(衙門)의 군포(軍布)와 신포(身布)로서 작년 이전에 정퇴한 것은 모두 그대로 정퇴하고, 작년 겨울에 정퇴하고 올 봄에 독촉을 그만둔 것[住催]은 초실읍은 절반을 그대로 정퇴하고 우심과 지차읍은 모두 그대로 정퇴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군포와 신포로서 정퇴한 지 오래된 것은 모두 그대로 정퇴하고 작년엔 정퇴한 것과 올 봄에 독촉을 그만둔 것은 단지 우심읍에만 절반을 그대로 정퇴하고 지차의 고을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는, 금위영·어영청 두 영(營)의 강도(江都)에 둔 군향미와 콩을 이전의 예에 의하여 돈으로 대신 수봉했다가 내년 가을에 도로 본색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이미 수신(守臣)이 장청하여 시행할 수 없으므로 지금 다시 논의할 것은 없습니다. 그 하나는, 수어청·총융청 양 영(營)의 성첩(城堞)을 지키는 군관(軍官)·장초(壯抄)·아병(牙兵) 등의 신미(身米)를 근래의 예에 의하여 매 두(斗)에 4전씩 대신 납부하도록 하고 각종 군사가 납부하는 제반 쌀을 일체 돈으로 대신하는 일입니다. 수어청·총융청 양 영의 각종 신미와 각종 납부해야 할 쌀은 우심읍에만 근래의 예에 의하여 돈으로 대신하여 수봉하고 초실과 지차읍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는 대흥(大興)·임진(臨津)·장산(長山) 등의 향곡(餉穀)을 본읍(本邑)에 수봉해 두었

다가 내년 가을에 도로 본소(本所)에 납부하되 임진·장산도 백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진(鎭)에 가까운 곳은 본진에 납부하고 읍에 가까운 곳은 본읍에 납부하며, 북한산성 평창(平倉)의 향곡 가운데 납부해야 할 고을 가운데 김포(金浦)·통진(通津)·적성(積城) 세 고을은 본읍에 수봉하여 두었다가 내년 가을에 도로 납부하는 일입니다. 대흥 등 3곳의 성향(城餉)은 백성이 원하는 바에 따라 본읍에 납부하도록 하되 진에 가까운 곳은 논하지 말고 북한산성의 향곡은 사목(事目)에 따라 모두 본성(本城)에 납부해야 하고 김포 등 세 고을은 모두 흉년이어서 멀리 운송하여 납부하는 것은 백성의 폐단이 근심스러우니 절반에 한하여 읍창(邑倉)에 수봉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북한산성의 향곡 가운데 고양(高陽)에서 연례적으로 받아야 할 것과 작년에 더 청한 것 도합 4천 5백 석 안에서 3천 석을 전례에 의하여 갖추어 납부하도록 하고 1천 5백 석은 내년에 나누어 줄 것 가운데에서 미리 받은 형식으로 옮겨 시행했다가 내년 가을에 가서 산창(山倉)에 수에 맞게 봉납하는 일입니다. 고양에서 받은 산성의 향곡 4천 5백 석 가운데 1천 5백 석은 원래 나누어 줄 것 외에 더 청한 것으로서 내년 가을에 봉납 해야 할 것에 옮겨 시행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울봄 대동(大同)의 정퇴를 우심읍 가운데 풍덕(豐德) 등 5읍은 상정가(詳定價)로 돈으로 대신하고, 유정지공(惟正之供:정규 조세)을 돈으로 납부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내년 본도에 획급할 저치조(儲置條)에 옮겨 계감(計減)하는 일입니다. 대동의 법의 뜻은 지극히 엄격하여 사목 외에는 옮겨갈 수 없으니, 내버려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도내(道內)의 호적과 군안을 내년 가을에 가서 마감하는 일입니다. 군적과 군안의 기한을 미루는 일은 흉년을 맞은 다른 도에는 허용했지만 기전(畿甸)은 흉년을 면했으니 기한 내에 마감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교동은 이전에 없는 가장 참혹한 흉년이니 개창(開倉:관아의 창고를 열고 곡식을 냄)을 기다려 가까운 읍의 먼저 수봉한 곡식을 수천 석에 한하여 들여보내 얼음이 녹기 전 진흥의 자원으로 삼을 생각이며 풍덕에서 당한 재해는 교동과 다르지 않으니 두 고을의 환상을 절반에 한하여 정퇴하였다가 내년 가을에 수봉(收捧)하고, 올해의 신포도 정퇴하도록 하겠으며, 풍덕의 모양을 이룬 두 면(面)은 다른 우심읍의 예에 따라서 신포는 정퇴하지 않는 일입니다. 교동은 연이어 2년 큰 흉년을 당하여 거의 한 도(島)가 텅 빌 지경이어서 관방(關防)의 땅이 매우 근심스러워 특례로 진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의 환곡과 신포를 특별히 절반을 정퇴하게 하고 풍덕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는, 통진 등 연해 세 고을의 증렬미(拯劣米:물에서 건져낸 쌀)와 콩은 근래의 예에 따라 모두 정퇴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증렬미를 물리어 수봉하는 일은 다른 도에 시행했으니 일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노비를 추쇄하고 부채를 징수하는 것을 내년가을까지 막는 일입니다. 노비를 추쇄하고 부채를 징수하는 것을 막는 일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京畿監司李存秀災實分等狀啓，則楊州等十二邑鎭，置之稍實，**南陽**等十二邑，置之之次，喬桐等十一邑，置之尤甚，仍以爲事日災二百五十結外，不足災四千十四結六十二負八束，特許準劃，後錄諸條，竝請令廟堂，稟旨分付，喬桐奠接之方，繼此登聞爲辭矣，今年畿農，較諸道最優，比近年稍登，可謂戊辰後初有之歲也，但濱海諸邑，漢北數郡，偏被旱災，間多慘歉，而此亦市境之內，豐凶各異，隔坪之地，得失相半，未或有舉一邑全棄者，然而荐歉之餘，民窮方棘，道啓之置諸尤甚，蓋出於不得不爾，三等所陳，依此施行，災結則己巳後最多摠，卽是辛未五千結，而今年穡事，絕異於辛未，則今此加請之數，幾比於辛未者，終涉過多，不足災三千結，特爲許劃，其一，新還尤甚邑尤甚面三分之一，之次面及之次邑尤甚面四分之一停退，竝待

明秋還捧事也，新還停退，既不許於他道，置之，其一，辛未停退還穀，之次邑之次面折半仍停，尤甚面與尤甚諸邑，一竝仍停事也，昨年停退，卽是新還，而新還既不得許停，置之，其一，舊還稍實十二邑鎮己巳條，仁川庚午條，期於準捧，之次邑稍實面己巳·庚午條，折半仍停，之次邑尤甚之次面與尤甚邑，一竝仍停，己巳以前舊還，無論三等邑，一竝仍停事也，舊還，只於尤甚之次邑，依道啓分等仍停，己巳前舊還，竝三等邑停退，其一，各軍門各衙門軍布身布，昨午以前停退條，竝令仍停，昨冬停退，今春住催者，稍實邑折半仍停，尤甚之次邑，竝許仍停事也，軍布身布舊停退條，竝仍停，昨年停退及今春住催，只於尤甚邑折半仍停，之次邑勿論，其一，禁·御兩營江都留餉米太，依已例以錢代捧，待明秋還作本色事也，已於守臣狀請，不得許施，今無容更議，其一，守摠兩營守堞軍官壯抄牙兵等身米，依近例，每斗以四錢式許令代納，各樣軍之諸般納米者，一體代錢事也，守·摠兩營諸色身米及各樣納米，只於尤甚邑，依近例代錢以捧，稍實之次邑勿論，其一，大興·臨津·長山等餉穀，捧留本邑，待明秋還納本所，而臨津·長山，亦從民願，近鎮者納于本鎮，近邑者納于本邑，北漢平倉餉穀中應納邑中金浦·通津·積城三邑，捧留本邑，待明秋還納事也，大興等三處城餉，從民願許納本邑，而近鎮者勿論，北漢餉穀，固當從事目，竝納本城，而金浦等三邑，果皆全歉，遠地輸納，民弊切悶，限折半捧留邑倉，其一，北漢餉穀中高陽年例應受及昨年加請條，合四千五百石內三千石，使之依例備納，一千五百石，以明年分給條中，預受樣移施，待明秋準納山倉事也，高陽所受城餉四千五百石中，一千五百石，卽元分外加請者，移施於明秋應納條施行，其一，今春大同停退，尤甚邑中豐德等五邑，以詳定價代錢，而惟正之供，不可錢納移施，計減於本道明春劃下儲置條事也，大同法意至嚴，事目外不得移易，置之，其一，道內戶籍軍案，待明秋磨勘事也，軍籍案退限，雖許於週歉他道，畿甸既爲免歉，使之限內磨勘，其一，喬桐最是無前慘歉，待開倉以近邑先捧穀，限數千石入送，以爲解冰前賑濟之資計料，而豐德被災，無異喬桐，兩邑還上，限折半停退，待明秋收捧，今年身布，亦許停退，豐德兩面成樣處，依他尤甚邑例，身布則勿許停退事也，喬桐連二年大無，舉一島將空，關防之地，悶急尤切，不可不拔例存恤，當年還布，特令折半停退，豐德則勿論，其一，通津等沿海三邑拯劣米太，依近例，竝許停退事也，拯米退捧，已施於他道，一體施行，其一，推奴徵債，限明秋防塞事也，推徵防塞，亦爲許施，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02책, 순조 12년 1812년 10월06일(음)>

#### 사회/윤리·풍속

京畿監司의 장계에 따라 南陽의 溺死한 사람에게 身布와 還布를 蕩減해 주라고 전교하다  
 南陽부(南陽府)에서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다는 경기 감사 이존수(李存秀)의 장계에 전교하기를, “많은 사람이 일시에 물에 빠져 죽었으니 불쌍하고 측은하다. 원래의 홀진 외에 별반으로 살펴서 도와주고 생전의 신역·환곡·군포가 있다면 모두 탕감하도록 분부하라.” 하였다.

以京畿監司李存秀狀啓, 南陽府人物滄死事, 傳曰, 許多人物之一時滄死, 極爲矜惻, 元恤典外別加顧助, 如有生前身還布, 竝蕩減事分付.

<비변사등록 203책, 순조 13년 1813년 08월12일(음)>

#### 사회/윤리·풍속

京畿監司 李存秀의 災實分等狀啓에 대해 回啓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경기 감사 이존수(李存秀)의 재실 분등(災實分等)에 대한 장계를 보면 통진(通津) 등 12읍을 우심에 두고 양주(楊州) 등 17읍진을 지차에 두고 가평(加

평) 등 6읍을 초실에 두고 이어 지부(地部)에서 획하한 재결 2백 50결 외에 부족한 재결 3천 8백 72결 40부 8속을 특별히 준획하도록 하고 후록한 여러 조항을 모두 묘당에서 품처하도록 청한다 하였습니다. 그 하나는, 도내 각읍 경오년(庚午年) 이전의 환곡·군포와 작년 우심 계읍(諸邑)의 신미년 환곡·군포를 모두 그대로 정퇴하고 기사년(己巳年)의 구환(舊還)과 기사년 이전의 구환을 모두 그대로 정퇴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환곡을 쌀과 벼로 납부해야 할 것을 우심과 지차읍은 절반을, 초실읍은 3분의 1을 상당한 밭곡식으로 준절하여 대봉하고 내년 가을에 도로 본색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교동(喬桐)의 작년에 정퇴한 환곡·군포를 그대로 정퇴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북한산성 평창(平倉)의 성향(城餉)을 납부해야 할 고을 가운데 우심의 통진(通津) 등 9읍의 군향미를 모두 본읍에 봉류(奉留)하고 내년 가을에 도로 본래 장소에 납부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대흥(大興)·임진(臨津)·장산(長山) 등 3곳에서 납부할 군향곡을 본읍에 봉류(奉留)하고 내년 가을에 도로 본래 장소에 납부하며, 부근 고을 백성이 본래 장소에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원하는 대로 하게 하며, 모미(耗米)는 근례에 따라 돈으로 대신 운송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 양영(兩營)의 강화도 유향미(留餉米)를 전례에 의해 돈으로 대봉하고 내년 가을에 도로 본색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수어청(守禦廳)·총융청(摠戎廳) 양영의 장초(壯抄) 아병(牙兵)과 각종 군관 등 신역(身役)으로 내는 쌀을 근례에 따라 한 말에 4전씩 대봉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장단(長湍) 등 5읍의 전결조(田結條)로 납부하는 대동미(大同米)를 특별히 전미(田米)로 대납케 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남양(南陽)** 등 4읍의 증열미태(拯劣米太:물에서 건진 쌀과 콩)를 근래의 예에 의하여 그대로 정퇴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노비의 추쇄(推刷)와 부채의 징수를 내년 가을까지 막는 일입니다. 금년 경기 농사는 봄부터 여름까지 계속해서 가물다가 비가 왔을 때는 절후(節候)는 이미 늦었고 곡식에 병이 드는 재해는 거의 갖추지 않았으며 일찍 모를 낸 것은 사이사이 하얗게 마른 것이 많았고 늦게 쫓은 것은 또 모두 퍼렇게 성숙하지 않아 연안과 들판의 논 농사는 실하게 먹을 것이 거의 없습니다. 도신의 장계에 기사년(己巳年:순조9, 1809)의 흉년도 올해보다 더한 것이 없다고 한 것은 사실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오직 밭농사가 흉년을 면한 것이 실로 산협 백성들의 다행입니다. 도신이 분등한 것에는 아마도 십분 재량한 바가 있을 것이니 청한 바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재결을 더 청한 수가 기사년에 비교하여 3분의 1에 불과하니 정밀하고 간략하다 하겠으니 사목(事目) 외의 부족한 재결 3천 8백 72결 영을 특별히 더 획급하고 구환 구포(舊布)에 새 환자를 아울러 독려한다는 것은 지금 백성의 힘으로 결코 마련할 가망이 전혀 없으니 청한 바대로 그대로 정퇴하겠습니다. 환곡을 흉년을 당해서 대봉을 청하는 것은 백성을 너그러게 하려는 뜻에서 나왔기에 주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초실읍을 아울러 대봉을 청한 것은 분수에 다소 지나친 것 같으니 우심과 지차읍에만 특별히 절반을 대봉케 하고 내년 가을에 도로 본색으로 만들며 교동은 방어 요새로 거듭해서 흉년을 만나 작년에 환곡과 군포를 정퇴하도록 한 것은 곧 특례로 구휼하려는 뜻입니다. 올 추수가 작년보다 조금 낮고 또 준봉하려고 한다면 해도(海島)의 민심이 쉽게 소란스럽게 될 것이니 특별히 그대로 정퇴하도록 하고 통진 등 9읍의 군향미(軍餉米)를 작년의 예에 따라 절반을 본읍에 봉류(奉留)하고 내년 가을에 다시 본래 장소로 납부하며, 대흥 등 3곳의 성향(城餉)을 근례에 따라 본읍에 봉류하고 내년 가을에 다시 본래 장소로 납부하게 하되 근처 백성이 직접 납부하기를 바라거나 모미(耗米)를 돈으로 대신 보내는 것도 역시 허시하여 재해를 당한 백성이 멀리서 수송하는 폐단을 제거하며 금위영·어영청 두 군영의 강화도 유향미를 청한 바대로 돈으로 대봉하고 내년 가을에 도로 본색으로 만들며, 수어

청·충용청 양영 제읍의 신역으로 내는 쌀과 각종 납미(納米)를 작년의 예에 의하여 우심읍에만 돈으로 대봉하고, 초실과 치차읍은 막론하고 장단 등 5읍에서 대동(大同)을 전미(田米)로 대신 납부하는 것은 유정지공(惟正之供)과 관련되어 사체가 매우 엄중해서 변통할 수가 없으니 그대로 두겠습니다. **남양** 등 4읍의 증열미태를 그대로 정되하고 노비를 추쇄하고 부채를 내년 가을까지 막는 일도 모두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京畿監司李存秀災實分等狀啓，則通津等十二邑置之尤甚，楊州等十七邑鎮置之次，加平等六邑置之稍實，仍以爲地部劃下災二百五十結外，不足災三千八百七十二結四十負八束，特令準劃，後錄諸條，竝請令廟堂稟處矣，其一，道內各邑庚午以前還布及昨年尤甚諸邑辛未還布，竝姑仍停，己巳還及己巳以前舊還，竝許仍停事也，其一，還穀之米租當納者，尤甚之次邑折半，稍實邑三分一，以相當田穀準折代捧，竝待明秋還作本色事也，其一，喬桐昨年停退還布仍停事也，其一，北漢平倉城餉所納邑中，尤甚通津等九邑餉米，竝許捧留本邑，待明秋還納本所事也，其一，大興·臨津·長山等三處所納餉穀，捧留本邑，待明秋還納本所，而附近邑民之願納本所者，依願許之，耗米則依近例代錢輸送事也，其一，禁·御兩營江都留餉米，依已例以錢代捧，待明秋還作本色事也，其一，守·摠兩營壯·抄·牙兵及各樣軍官等身米，依近例每斗以四錢代捧事也，其一，長湍等五邑田結條所納大同米，特許田米代納事也，其一，**南陽**等四邑拯劣米太，依近例仍停事也，其一，推奴徵債限明秋防塞事也，今年畿農，自春徂夏，一直旱乾，及其得雨，節候已晚，而凡屬痒稼之災，殆無不備，早移者間多白枯，晚插者又皆青立，沿野畝農，食實無幾，道啓中己巳之歉，無過於今年者，誠非過語，惟是田農之免歉，實爲峽民之幸，道臣分等，必有所十分裁量，依所請施行，災結加請之數，比之己巳，不過爲三之一，可謂精約，事目外不足災三千八百七十二結零，特爲加劃，舊還舊布之與新還竝督，以今民力，萬無拮据之望，依所請仍停，還穀之遇歉請代，蓋出裕民之意，固難靳許，而至於稍實邑之竝請代捧，差過分數，只就尤甚之次邑，特許折半代捧，待明秋還作本色，喬桐以關防之地，荐遭歉荒，昨年還布之許令停退，乃是拔例軫恤之意，而若以今年秋事之稍勝於昨年，又欲準捧，則海島民情，易致繹騷，特爲仍停，通津等九邑餉米，依昨年例限折半捧留本邑，待明秋還納本所，大興等三處城餉，依近例捧留本邑，待明秋還納本所，而近民之自願直納，耗米之以錢代送，亦爲許施，以除災民遠輸之弊，禁·御兩營江都留餉米，依所請以錢代捧，待明秋還作本色，守·摠兩營諸邑身米及各樣納米，依昨年例，只於尤甚邑，代錢以捧，稍實之次邑，勿論長湍等五邑，大同之田米代納，係是惟正之供，事體至嚴，有不敢闊狹，置之，**南陽**等四邑拯劣米太仍停事，推奴徵債限明秋防塞事，竝爲依施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03책, 순조 13년 1813년 10월14일(음)>

## 사회/윤리 · 풍속

### 京畿監司 李愚在의 災實分等狀啓에 대해 回啓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경기 감사 이우재(李愚在)의 재실 분등(災實分等) 장계를 보니 ‘교동(喬桐) 등 3읍진(邑鎭)을 우심에 두고 **남양(南陽)** 등 7읍을 지차에 두고 양주(楊州) 등 24읍을 초실에 두었습니다. 이어서 호조에서 획하한 사목재(事目災) 4백결에 부족한 재결 4천 4백 48결 50부 5속을 특별히 준획하도록 하고 후록한 여러 조항을 아울러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기를 청한다.’ 하였습니다.

그 하나는 우심 읍진의 신환(新還)은 3분의 1은 정되하고 4분의 1은 상당곡(相當穀)으로 준절(準折)하여 대봉(代捧)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우심·지차 읍진은 신사년과 임오년에 정퇴한 환향(還餉) 전수를 잉정(仍停)하고 초실읍은 임오년의 정퇴조를 잉정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신사년과 임오년 환향의 대봉곡을 모두 이전대로 대봉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통진(通津)에 있는 충융청의 평창(平倉)에서 이전한 미곡으로서 본읍에 봉류(奉留)하고 모조(耗條)는 대전(代錢)으로 수납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대흥(大興) 임진(臨津) 장산(長山) 등의 향곡(餉穀)을 모두 본읍에 봉류하도록 하되, 부근의 백성 중에 자원하여 본소(本所)로 바치려는 사람은 원에 의하여 시행토록 하고 모조의 대전을 본소에 바치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신사년에 정퇴한 각 아문의 군포(軍布)를 우심 읍진을 전수를 잉정하고 지차 고을은 절반을 잉정하며, 신사년 이전 각 년의 목은 군포는 3등읍 모두 잉정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금위영과 어영청 두 군영(軍營)의 강도(江都) 유향 미태(留餉米太)를 돈으로 대봉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수어청과 충융청 두 군영의 장초군(壯抄軍)과 아병(牙兵) 및 각종 군관(軍官) 등의 신미(身米)를 한 말에 4전씩 대봉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연해 각 읍의 증미태(拯米太)를 잉정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추노와 징채를 중지하는 일입니다.

분등은 장계의 요청대로 시행하고, 금년 경기 농사는 약간 손실이 있다고 하나 연해 각읍에 약간의 손실이 있는 정도에 불과한데 요청한 재결이 이와 같이 공정을 결하였으니 원래의 획하 외에 2천 6백결을 특별히 가획하도록 하여 고르게 분배하도록 해야 하겠습니까. 우심 명색은 구별하지 않을 수 없지만 참혹한 흉년이 든 해와는 실로 차이가 있으므로 신환(新還)의 정퇴는 논의할 바가 아니오, 4분의 1만을 준절하여 대봉하도록 하고 작년의 정퇴조는 곧 신환이니 3등 읍을 막론하고 모두 준봉하도록 해야겠으며, 신사년조는 초실읍은 절반을 받아들이되, 대봉곡(代奉穀)을 연달아 계속 대봉하면 곡부(穀簿)가 점차 어지러워질 염려가 있으니 초실읍의 양년조를 모두 본색(本色)으로 다시 만들고, 지차읍은 작년조만을 계속 대봉하도록 하고, 충융청의 향미(餉米)를 봉류(奉留)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사목(事目)이 본래 엄정할 뿐만 아니라 또 새로이 칙령(飭令)을 반포하였으니 논의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읍의 사세가 계속 흉년이 든 해와 다름이 없으니 평창(平倉)에 바칠 것은 산성(山城)에 견주어 차이가 있으니, 특별히 봉류하도록 하여 민력(民力)을 완화시키도록 하고 모조(耗條)는 지방(支放)에 관계되니 본색(本色)으로 수납하게 하며, 각처의 향곡을 본읍에 봉류하는 일 및 근처 백성들이 모조의 대전(代錢)을 직접 납부하는 일 등은 모두 시행토록 하고 신구(新舊)의 군포(軍布)를 모두 독촉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은 아니나 다년간 영수(營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은 역시 고민이 됩니다. 각년의 목은 군포를 잉정하도록 하고 신사조는 우심읍 외에는 모두 준납하도록 하겠으며 금위영과 어영청 소관의 강도(江都) 유향(留餉)과 수어청과 충융청에 바칠 각종 신미(身米)를 모두 돈으로 대봉하도록 하며, 증미태(拯米太)는 잉정하고 추노와 징채의 중지도 시행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 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京畿監司李愚在災實分等狀啓，則喬桐等三邑鎮，置之尤甚，**南陽**等七邑，置之次，楊州等二十四邑，置之稍實，仍以爲地部劃下事目災四百結，外不足災四千四百四十八結五十負五束，特許準劃，後錄諸條，竝請令廟堂，稟旨分付矣，其一，尤甚邑鎮，新還三分一，停退四分一，相當穀準折代奉事也，其一，尤甚之次邑鎮，辛巳·壬午停退還餉，全數仍停，稍實邑壬午停退條仍停事也，其一，辛巳·壬午還餉代奉穀，竝仍前代奉事也，其一，通津所在摠廳

平倉移轉米, 捧留本邑, 耗條則代錢輸納事也, 其一, 大興·臨津·長山等餉穀, 竝許捧留本邑, 附近民之自願輸納本所者, 依願許施, 耗條代錢, 輸納本所事也, 其一, 辛巳停退各衙門軍布, 尤甚邑鎮, 全數仍停, 之次邑折半仍停, 辛巳以前各年舊布, 三等邑一併仍停事也, 其一, 禁·御兩營, 江都留餉米太, 以錢代捧事也, 其一, 守·摠兩營壯·抄·牙兵各樣軍官等身米, 每斗四錢代捧事也, 其一, 沿海各邑拯米太, 仍停事也, 其一, 推奴徵債防塞事也, 分等依狀請施行, 今年畿農之稍遜云者, 不過沿海各邑之若爾傷損, 則所請災結之至此有欠稱停, 元劃外二千六百結, 特許加劃, 使之均俵, 尤甚名邑, 雖不得不區而別之者, 而其實與慘歉之歲有異, 則新還停退, 非所可議, 只許四分一, 準折代捧, 昨年停退條, 便是新還, 無論三等邑, 竝令準捧, 辛巳條, 稍實邑折半收捧代捧穀之連年仍代, 將有穀簿漸紊之慮, 稍實邑兩年條, 竝還作本色, 之次邑, 只令昨年條仍代, 摠廳餉米之母得捧留, 非但事日之本嚴, 又有新頒飭令, 有難議到, 而該邑事勢, 與荐歉無異, 平倉所納, 比山城有間, 特許捧留, 俾爲紓力, 耗條則既係支放, 使之本色輸納, 各處餉穀, 捧留本邑, 與近民之直納耗條之代錢, 竝爲準施, 軍布之新舊竝督, 非不爲難, 而營需之多年闕用, 亦係可悶, 各年舊布, 許令仍停, 而辛巳條則尤甚邑外, 竝令準納, 禁·御所管江都留餉, 守·摠所納各樣身米, 竝許以錢代捧, 拯米太仍停, 推奴徵債防塞, 亦爲許施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11책, 순조 23년 1823년 10월13일(음)>

#### 사회/윤리·풍속

##### 南陽 등 邑의 붕괴 사망사고에 대해 恤典 외에 더 보살펴 주라고 진교하다

○ 남양(南陽) 등의 고을에서 민가가 무너지고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다는 일로 올린 경기감사 이희준(李義準)의 장계에 대해 진교하기를, “어제 충청도관찰사의 장계를 보고 여러 고을에서 재해를 입은 것이 많아 겨우 관하하였는데, 또 경기도관찰사의 장문을 보니 민호가 물에 떠내려가고 사람이 빠져 죽은 것이 또 이처럼 많다고 한다. 지극히 불쌍하고 측은하다. 원래의 홀전 외에 특별히 더 도와주고, 거처할 방도를 묘당에서 엄히 신칙하고 말을 만들어서 한 사람이라도 흠어지는 폐단이 없게 하며, 엄사한 사람에게 만약 생전의 신역·환곡·군포가 있으면 모두 탕감하도록 분부하라.” 하였다.

以京畿監司李義準狀啓, 南陽等邑民家頽壓人物滄死事, 傳曰, 昨見錦伯狀啓, 列邑被災夥然, 纔已判下矣, 又見畿伯狀聞, 民戶之漂頽, 人物之滄死, 又若是過多, 極爲矜惻, 元恤典外, 別加顧助, 奠接之方, 廟堂嚴飭措辭, 無一人渙散之弊, 滄死人如有生前身還布, 竝蕩減事分付.

<비변사등록 220책, 순조 32년 1832년 07월24일(음)>

#### 사회/윤리·풍속

##### 돈을 내어 진흙을 도운 남양부 대부도 김익진에게 침사를 제수할 것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경기감사 이희준(李義準)의 보고를 보니, 남양부(南陽府) 대부도(大阜島)에 사는 절충(折衝) 김익진(金益振)이 돈 2천 냥을 바쳐서 자원하여 진흙을 돕겠다고 하였다 합니다. 대개 흉년에 진흙을 돕는 사람에게는 상격(常格)을 넉넉하게 더하여 격려하여 권장하지 않은 적이 없으나, 간혹 유사에서 즉시 봉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신뢰하는 바가 없게 됩니다. 이는 주부자(朱夫子)가 바쳐서 도운 인호(人戶)에게 상을 주도록 아뢰기를, 백성들에게 신의를 얻어야 장래에 혹시라도 재해로 손상됨이 있으면 쉽게 권유할 수 있다고 한 까닭입니다. 이번에 대부도의 백성들이 바친 2천 께미의 돈은 곡물의 본색과 비교하면 비록 차이가 있지만 섬에 사는 산업(產業)으로 논하면 이것도 적지

않으니, 일이 지극히 가상합니다. 넉넉하고 특별한 상을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며 풍문을 듣고 흥기함이 있게 할 부류이니, 절충 김익진을 해조에서 좋은 곳의 임기 만료가 가까운 첨사에 자리를 만들어 임명해서 보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京畿監司李義準所報，則南陽府大阜島居折衝金益振，納錢二千兩，自願補賑云矣，凡係荒年，補賑之人，未嘗不優加賞格，使之激勸，而或因有司之未卽奉行，以致民人之無所徵信，此所以朱夫子奏乞推賞獻助人戶，謂其庶幾取信於民，將來或有災傷，易爲勸諭者也，今此大阜民所納二千緡錢，較諸穀物本色，雖曰有間，論以島居產業，此亦不些，事極嘉尙，合施優異，俾有聞風興起之類，折衝金益振，令該曹善地瓜近僉使，作窠差送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20책, 순조 32년 1832년 10월20일(음)>

### 사회/윤리 · 풍속

#### 경기감사와 광주유수가 진휼을 도운 자의 명단을 작성하고 포상을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경기감사와 광주유수(廣州留守)가 연속 보고한 바를 보면 또 진휼을 도운 각 사람을 열거 기록하여 상을 주도록 청하였습니다. 성명·거주·이력(履歷) 및 납부한 수효를 별단(別單)에 써서 들었는데, 원중진(元重晉)은 비단 보조한 것이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일찍이 북관(北關)의 진휼을 도와 이미 6품의 정직(正職)을 거쳤으니, 전후하여 의연(義捐)한 것은 실로 넉넉히 장려해야 합당합니다. 또 그 계제(階梯:벼슬의 경력)가 이력이 전혀 없는 자와는 아주 달라 관방(官方)에 장애가 되지 않는 듯하니 상당하는 수령에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서 즉시 우선 차송(差送)하고, 그 다음의 박치복(朴致福)은 전직 변장(邊將)이니 다른 예에 의해 상당하는 중군(中軍)에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서 즉시 차송하도록 하며, 그 다음의 이재식(李在植)·김인신(金仁臣)은 도내의 임기에 가까운 첨사(僉使)에 자리를 만들어 차송하고, 그 다음 황득수(黃得壽)·최문직(崔文織)·장시은(張時殷)·홍석우(洪錫祐) 등은 모두 오위장(五衛將)에 임용하고, 박이욱(朴彝郁)은 납부한 것이 비록 적지 않지만 그 아버지 박상(朴尙)이 진휼을 도움으로 하여 상을 받아 이미 중군에 제수 되었으므로 한 집안에서 모두 외직(外職)에 차출되는 것은 결국 지나친 일이니, 역시 오위장으로 시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진휼을 도운 사람의 별단(別單)

안변(安邊)에 사는 전 별제(前別提) 원중진(元重晉)이 광주(廣州)에 돈 7천 냥을 바침

한산(韓山)에 사는 전 첨사(前僉使) 박치복(朴致福)이 광주에 돈 6천 냥을 바침

장수(長水)에 사는 가선대부(嘉善大夫) 이재식(李在植)이 광주에 돈 4천 냥을 바침

영암(靈巖)에 사는 가선대부 김인신(金仁臣)이 양지(陽智)에 돈 1천 냥을 바침

포천(抱川)에 돈 1천 냥을 바침

용인(龍仁)에 돈 1천 냥을 바침

송도(松都)에 사는 가선대부 황득수(黃得壽)가 적성(積城)에 돈 1천 냥을 바침

마전(麻田)에 돈 5백 냥을 바침

연천(漣川)에 돈 5백 냥을 바침

의주(義州)에 사는 가선대부 최문직(崔文織)이 음죽(陰竹)에 돈 1천 냥을 바침

시흥(始興)에 돈 5백 냥을 바침

의주에 사는 가선대부 장시은(張時殷)이 남양(南陽)에 돈 1천 5백 냥을 바침

의주에 사는 가선대부 홍석우(洪錫祐)가 남양에 바친 돈 1천 5백 냥을 바침

안성(安城)에 사는 가선대부 박이옥(朴彝郁)이 본군(本郡)에 돈 5천 냥을 바침

司啓曰，連接京畿監司·廣州留守所報，則又以補賑各人，列錄請賞矣，姓名居住履歷，及所納數爻，別單書入，而元重晉，非但捐助最多，曾以北關補賑，已經六品正職，則前後出義，實合優獎，且其階梯，與全無履歷者迥異，似不至有礙官方，相當守令，待窠卽先差送，其次朴致福，係是邊將前銜，依他例相當中軍待窠，卽爲差送，其次李在植·金仁臣，道內瓜近僉使，作窠差送，其次黃得壽·崔文織·張時殷·洪錫祐等，竝以五衛將調用，朴彝郁，則所納雖爲不少，其父向以補賑被賞，已除中軍，則一家之內，竝差外職，終涉過當，亦以五衛將施行事，分付何如，答曰，允.

補賑人別單

安邊居前別提元重晉，廣州納錢七千兩.

韓山居前僉使朴致福，廣州納錢六千兩.

長水居嘉善李在植，廣州納錢四千兩.

靈巖居嘉善金仁臣，陽智納錢一千兩.

抱川納錢一千兩.

龍仁納錢一千兩.

松都居嘉善 黃得壽，積城納錢一千兩.

麻田納錢五百兩.

漣川納錢五百兩.

義州居嘉善崔文織，陰竹納錢一千兩.

始興納錢五百兩.

義州居嘉善張時殷，南陽納錢一千五百兩.

義州居嘉善洪錫祐，南陽納錢一千五百兩.

安城居嘉善朴彝郁，本郡納錢五千兩.

<비변사등록 221책, 순조 33년 1833년 02월07일(음)>

## 사회/윤리 · 풍속

### 海溢을 당한 通津 등지의 사람들에게 원래의 恤典 외에 더 보살펴 줄 것을 청하다

비변사의 계사에, “경기감사 김도희(金道喜)의 장계를 보니, ‘지난 달 16일에 해일(海溢)로 남양(南陽) 등 7읍진(邑鎭)에서 재해(災害)를 입은 형지(形止)와 이달 2일에 해일로 양성(陽城)에서 재해를 입은 형지를 아울러 사실을 모아 지금 비로소 등문합니다.’ 하였습니다. 각 읍진(邑鎭)에서 홍수가 난 재앙이 매우 놀랍고 가여우나, 그 가운데 통진(通津)·김포(金浦)·영종(永宗)에서 떠내려가고 쓰러진 민호(民戶)가 다른 데에 비하여 비교적 많은데, 통진은 빠져죽은 사람 또 더욱 많아서 모두 특례로 감면하여 돌보아주는 은전(恩典)이 없을 수 없으니 사망한 사람의 신역·환곡·군포를 탕감하고, 재해를 입은 민호의 각종 세역(稅役)을 감면하는 것은 아울러 교동(喬桐)과 강화(江華)에서 이미 시행한 예(例)대로 일체로 거행하소서. 그 밖의 여러 읍(邑)에서 무너지고 쓰러진 민호 또한 원래의 홀전 외에 별도로 더 돌보고 도와주어 연명하여 살아가고 거주할 곳을 정해 주며, 염정(鹽井)이 훼손되고 선척(船隻)이 부서진 것 또한 구별하여 감세(減稅)하게 하여 백지(白地)로 거두는 원망이 없게 하며, 어부(漁夫)와 뱃사람으로 간 곳을 모르는 자도 착실하게 수색해 찾되, 만일 과연 물에 빠진 것이 확실하다면 홀전을 또한 즉시 다른 예대로 시행하소서. 전답(田畓)

의 파손된 곳이 이와 같이 크고 많아 앞으로의 백성의 근심이 눈에 넘칠 뿐만 아니니 무너져 터진 독을 각별하게 수축(修築)하며, 물에 잠기고 모래에 덮인 땅은 착실하게 개간(開墾)하도록 각 읍진에서 양식(糧食)을 주어 힘을 돕고 별도로 더 권하고 감독하여 영원히 버리는 데로 돌아가지 말도록 하라고 아울러 분부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司啓辭，卽見京畿監司金道喜狀啓，則去月十六日海溢，南陽等七邑鎮被災形止，今月初二日海溢，陽城被災形止，竝爲撫實，今始登聞爲辭矣，各邑鎮懷襄之災，殊甚驚惻，其中通津·金浦·永宗漂頽之戶，比他較多，而通津則人命滄溺，又復夥然，俱不可無拔例蠲恤之典，死亡人之身還布蕩減，被災戶之各樣稅役蠲免，竝依喬沁已施之例，一體舉行，其外諸邑頽壓之戶，亦於元恤典外，別加顧助，以爲延活奠接之地，鹽井之毀設，船隻之破碎者，亦令區別減稅，俾無白徵之冤，漁夫船人之不知去處者，使之着實搜訪，如果的知其滄溺，則恤典亦卽依他例施行，田畝受損，若是浩多，來頭民憂，不啻溢日，潰決之堰，各別修築，沈覆之地，着意墾闢，自各其邑鎮，給糧助力，另加勸督，毋令歸於永棄之意，竝爲分付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23책, 헌종 1년 1835년 06월24일(윤)>

### 사회/윤리 · 풍속

#### 京畿監司 金道喜의 災實分等 狀啓와 그에 대한 대책을 보고하다

비변사의 계사에, “경기감사 김도희(金道喜)의 재실분등장계(災實分等狀啓)를 보니 우심읍 명색은 거론하지 않고, 양주(楊州) 등 26읍진(邑鎭)을 지차(之次)에, 장단(長湍) 등 8읍을 초실(稍實)에 두고, 이어 사목 재(事目災) 2백 결 외에 부족한 재 3천 4백 76결 30부 5속을 특별히 채워주며, 후록한 여러 조항을 아울러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하기를 청하였습니다. 그 하나는 작년에 정퇴한 환향(還餉)을 2백 석 이상인 지차읍은 전수(全數)를 그대로 정퇴하고 4백 석 이상의 초실읍은 3분의 1을 그대로 정퇴하며, 2백 석에 차지 못한 것은 두 분 등의 고을 막론하고 아울러 준봉(準捧)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신환곡은 초실읍은 4분의 1을, 지차읍은 3분의 1을 상당하는 곡식으로 대신 받았다가 내년 가을에 가서 도로 본색(本色)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북한산성(北漢山城) 평창(平倉)의 향곡(餉穀)을 지차읍은 4분의 3을 본 읍에 봉류(捧留)하고, 모조(耗條)는 이례(已例)대로 매 석에 5냥씩 돈으로 대봉(代捧)하여 실어 보내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대흥(大興)·임진(臨津)·장산(長山) 등의 향곡은 본 읍에 봉류하고 부근 백성이 스스로 원하여 본소(本所)에 실어다 바치려는 자는 원하는 대로 허시하고, 모조는 이례(已例)대로 돈으로 대봉하여 실어 보내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수어(守禦)·총융(摠戎) 양 영(兩營)의 장초병(壯抄兵)·아병(牙兵)·군관(軍官) 등의 신미(身米)는 이례대로 매 두(斗)에 4전씩 돈으로 대봉하여 실어 보내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금위·어영 양 영의 강도(江都) 유향미·태(留餉米太)는 돈으로 수봉(收捧)하였다가 내년 가을에 도로 본색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임진(壬辰)·계사년(癸巳:순조33, 1833) 양 년에 정퇴한 군포 및 신사년(辛巳年:순조21, 1821) 이전의 각 년(各年)의 구포(舊布)는 아울러 그대로 정퇴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연해 각읍의 증렬미·태(拯劣米太)는 아울러 우선 정퇴하였다가 내년 가을에 가서 봉납(捧納)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남양(南陽)·영종(永宗)에 갈려 있는 패선(敗船) 죄인을 원적관(原籍官)으로 넘겨 보내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각 읍에 있는 각 아문(衙門)과 각 궁방(宮房)의 둔토(屯土)를 사실대로 수세(收稅)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추노(推奴)와 징채(徵債)를 내년 가을까지 방색하는 일입니다. 금년 기전(畿甸)의 농사는 처음에는 크게 풍년의 가망이 있었으나

나중에는 태풍이 불고 장마가 저서 처음 예상과는 달랐지만 나은 곳과 못한 곳을 절장보단(絶長補短)하면 중간 정도의 풍년은 족히 되었는데, 우심 명색을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도 족히 재손(災損)이 심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도신의 장계에서 분등(分等)한 것은 필시 헤아린 바가 있었을 것이니 장계에서 칭한 대로 시행해야 하겠습니다. 재결(災結)을 더 칭한 수(數)가 얼핏 보아서는 비록 조금 지나친 것 같지만 흘러온 구재(舊災)의 가감(加減)할 수 없는 것을 제하면 당년(當年)의 신재(新災)는 2천 곁에 차지 않으므로 다시 더 삭감할 필요가 없으니, 원래 획급한 외에 부족한 재 3천 4백 76결 영(零)을 특별히 준획(準劃)해야 하겠습니다. 조적(糶糶)의 법의(法意)는 매우 엄중하고 작년에 정퇴한 것은 바로 신환(新還)과 다름없으니 금년과 같은 흉년을 면한 해에 고분고분 따라서 그대로 정퇴해서는 안 되고, 지차읍 중에는 오래도록 거둬 기근이 든 곳이 많이 있으니 백성의 형세가 어렵고 괴로움 역시 염려해야 하겠으나, 다만 도신의 장계에서 2백 석 안팎으로 혹은 정퇴하고 혹은 받고 하는 한계로 삼은 것은 핵실(核實)하는 정사(政事)에 흠이 있는 듯하니, 도신에게 고을의 형세와 백성들 사정 사이에서 자세하게 구별하여 다만 융통하지 않을 수 없는 곳에서만 다시 분수를 정하여 계문(啓聞)하게 하여 알맞게 헤아려 정퇴하되, 초실읍은 아울러 거론하지 말고, 4백 석 이상은 단지 두 고을만 있고 또 거둬 흉년을 거친 곳이니 지차읍의 예대로 다시 구별을 가하여 아뢰게 해야 하겠습니다. 대봉은 정퇴와는 조금 다르니 칭한 대로 시행하게 하며, 성향(城餉)은 소중하므로 해마다 봉류(奉留)해서는 안 되나 흉년 뒤의 백성 사정은 모른체하고 돌보지 않을 수 없으니, 장계에서 칭한 대로 4분의 1은 본색으로 실어다 바치고 그 나머지는 모두 본읍에 봉류하게 하며, 모조는 지방(支放)에 쓰이는 것으로서 자래로 크게 흉년이 든 해가 아니면 일찍이 돈으로 대봉한 예가 없으니 본색으로 실어 보내게 하며, 대흥 등 세 곳의 향곡은 모두 본읍에 봉류하게 하되 부근의 백성은 자원에 따라 직접 상납하게 하고, 모조는 돈으로 대봉하여 실어보내게 하며, 수어·총융 양 영의 제색(諸色) 신미(身米)와 금위·어영 양 영의 강도 유향미·태를 돈으로 대봉하는 것은 아울러 그대로 시행하게 하며, 임진·계사년에 정퇴한 군포를 해를 이어서 그대로 정퇴하는 것은 참으로 매우 걱정되는 일이나 눈앞의 백성의 형세는 신구(新舊)를 아울러 독책하기 어려워니 신사년 이전의 각년의 구포는 모조리 정퇴하게 하며, 증렬미·태를 내년 가을까지 정퇴하는 일과 각 둔토는 사실대로 수세하는 일, 패선 죄인을 원적관으로 넘겨 보내는 일 등은 모두 각년에 이미 시행한 예가 많으니 추노와 징채를 방색하는 일과 아울러 일체로 허시(許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司啓辭，卽見京畿監司金道喜災實分等狀啓，則尤甚名色，不爲學論，楊州等二十六邑鎮置之之次，長湍等八邑置之稍實，仍以爲事目災二百結外，不足災三千四百七十六結三十負五束，特許準劃，後錄諸條，竝請令廟堂稟旨分付矣，其一，昨年停退還餉，之次邑二百石以上全數仍停，稍實邑四百石以上三分一仍停，未滿二百石者，無論兩等邑，竝準奉事也，其一，新還，稍實邑四分一，之次邑三分一，以相當穀代捧，待明秋還作本色事也，其一，北漢平倉餉穀，之次邑四分三捧留本邑，耗條依已例，每石五兩代錢輸送事也，其一，大興臨津長山等餉穀，捧留本邑，附近民之自願輸納本所者，依願許施，耗條依已例，代錢輸送事也，其一，守·摠兩營壯·抄牙兵，軍官等身米，依已例每斗四錢，代錢輸送事也，其一，禁·御兩營江都留餉米太代錢收捧，待明秋還作本色事也，其一，壬癸兩年停退軍布及辛巳以前各年舊布，竝許仍停事也，其一，沿海各邑拯劣米太，竝姑停退，待明秋捧納事也，其一，南陽永宗在囚敗船罪人，移送原籍官事也，其一，各邑所在各衙門各官房屯土，從實收稅事也，其一，推奴徵債限明秋防塞事也，今歲畿甸之農，始有大登之望，晚後風澇，雖愆初料，長短相補，不失中熟，觀於尤甚名色之不爲學論，

亦足驗其災損之不深，道啓分等，必有斟量，依狀請施行，災結加請之數，驟看雖似稍夥，而除却流來四災之加減不得者，當年新災不滿二千結，有不必要更加剋削，元劃外不足災三千四百七十六結零，特許準劃，糶糴法意，至爲嚴重，昨年停退，便是新還，如今免歉之歲，不宜曲循仍停，而之次邑中多有積被荐飢之處，民勢艱棘，亦所當念，但道啓之以二百石內外，爲或停或捧之限者，恐有欠於核實之政，令道臣詳細區別於邑勢民情之間，只就其不得不關狹處，更定分數啓聞，以爲量宜許停之地，稍實邑則不當竝論，而四百石以上只有兩邑，又是荐經歉荒者，亦令依之次邑例，更加區別，以啓代捧，則與停退稍異，許令依請施行，城餉所重，有不宜逐年捧留，而歉餘民力，亦難以忽然不恤，依狀請，以四分一本色輸納，其餘則皆許捧留本邑，耗條則係是支放所需，自非大歉之年，曾無代錢之例，使之本色輸送，大興等三處餉穀，皆許捧留本邑，而附近民之從自願直納，耗條之代錢輸送，守·摠兩營諸色身米及禁·御兩營江都留餉米太之以錢代捧，竝爲依施，壬癸停退之軍布，連年仍停，誠甚可悶，而目下民勢，亦難責之以新舊竝督，與辛巳以前各年舊布，一竝許停，拯米太之限明秋停退，各屯土之從實收稅，敗船罪人之移送原籍官，俱多各年已行之例，竝與推徵防塞，一體許施，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24책, 헌종 2년 1836년 10월09일(음)>

#### 사회/윤리·풍속

京畿監司 洪學淵이 新還을 극심한 邑面里의 3분의 1 등은 특별히 停退해 줄 것 등을 청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경기감사 홍학연(洪學淵)의 분등장계(分等狀啓)를 보니 파주(坡州) 등 16읍을 우심(尤甚)에, 양주(楊州) 등 15읍진을 지차(之次)에, 삭녕(朔寧) 등 3읍을 초실(稍實)에 두고 후록한 여러 조항을 아울러 묘당에서 품지하여 분부하게 하기를 청하고, 굶주린 자를 가려서 진휼(賑恤)하고 재(災)를 매기는 등의 일은 추후에 등문(登聞)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하나는 신환향(新還餉)은 우심 읍의 우심 면리(面里)는 절반, 우심 읍의 지차 면리와 지차 읍의 우심 면리는 3분의 1, 우심 읍의 초실 면리와 지차 읍의 지차 면리와 초실 읍의 우심 면리는 4분의 1을 정퇴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응당 받아야 하는 환곡은 우심 읍은 3분의 2, 지차 읍과 초실 읍의 우심 면리는 절반, 지차 면리는 3분의 1을 상당(相當)하는 곡식으로 준절하여 대봉하였다가 내년 가을에 가서 본색(本色)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각양 군포(軍布)는 우심 읍은 절반, 지차 읍은 3분의 1을 정퇴하여 내년 가을에 가서 수봉(收捧)하고, 임진년(壬辰年:순조32, 1832)·계사년(癸巳年:순조33, 1833)의 정퇴 조(停退條)와 신사년(辛巳年:순조21, 1821) 이전의 각 년(各年)의 구포(舊布)는 3등 읍을 모두 그대로 정퇴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북한산성(北漢山城)의 평창(平倉) 성향(城餉)을 우심 읍과 지차 읍은 전수(全數)를 봉류(捧留)하고, 모조(耗條)는 돈으로 대봉하여 실어 보내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대흥(大興)·임진(臨津)·장산(長山) 등의 향곡은 아울러 본 읍에 봉류하게 하되 역시 분수(分數)하여 대봉하게 하고, 부근 백성이 자원(自願)하여 실어다가 바치고자 하는 자는 원하는 대로 시행하며, 모조는 돈으로 대봉하여 실어 보내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금위(禁衛)·어영(御營) 양 영(兩營)의 강도(江都) 유향미·태(留餉米太)는 돈으로 대봉하여 내년 가을에 가서 도로 본색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수어(守禦)·총융(摠戎) 양 영의 장초·아병(壯抄牙兵)과 군관(軍官) 등의 신미(身米)는 매두(斗)에 4전(錢)씩 돈으로 대봉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각 아문(衙門)과 각 궁방(宮房)의 둔토(屯土)는 사실대로 수세(收稅)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연해(沿海) 각 읍의 증렬미·태(拯劣米太)를 금년조(今年條)는 돈으로 대봉하고, 갑오년(甲午年:순조34, 1834) 이후의 각년 조(各年條)는 아울러 그대로 정퇴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고양(高陽)과

남양(南陽)의 패선(敗船) 죄인은 원적관(原籍官)에 넘겨 보내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추노(推奴)와 징채(徵債)를 내년 가을까지 방색하는 일입니다. 분등은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며, 신환곡(新還穀)의 정퇴를 청한 것은 재민(災民)을 위해 어쩔 수 없는 데에서 나왔으나, 본도(本道)의 환곡 총수가 매우 부족한데 만일 금년 겨울 받아야 할 것을 다 받지 못하면 필시 내년 봄에 가서 배순(排巡)을 잇기 어려울 것이니, 진휼하여 구제하는 외에 농민이 무엇을 믿겠습니까? 이 한 가지 일은 갑작스럽게 의논하기 어려움이 있으나, 다만 지금 백성의 형세가 가난한 자와 부자가 모두 곤핍하여 약간의 산읍(山邑)을 제외하고는 한 도(道)를 통틀어 전흉(全凶)이므로 수량과 같이 상납을 독촉하는 것은 사실 불쌍하고 걱정스러운 바이지만, 청한 바의 분수가 조금 과다한 듯하니 우심 읍의 우심 면리는 3분의 1, 우심 읍의 지차 면리와 지차 읍의 우심 면리는 4분의 1을 특별히 정퇴하여 힘을 펴도록 하며, 상당하는 곡식으로 준절하여 대봉하는 것은 비록 지난(持難)할 것이 없다 하더라도 각 군포를 분등하여 정지를 청한 것은 아무래도 어렵고 신중하게 할 바가 있지만 근거할 만한 전례가 있으므로 특별히 시행하여야 하겠으니, 각 년의 구포(舊布)를 그대로 정퇴하는 일과 함께 일체로 허락하며, 신군포(新軍布)는 우심읍은 3분의 1, 지차읍은 4분의 1을 시행하고, 성향(城餉)을 실어다가 바치는 것은 비록 재세(災歲)의 민정(民情)에 관계된다 하더라도 북한산성의 사세가 사실 전량을 고을에 유고(留庫)하기는 어려우니 작년의 예(例)대로 4분의 3을 봉류(捧留)하게 하고, 각읍의 모조는 지방(支放)의 소용에 관계되니 아울러 본색으로 실어다가 바치게 하며, 양주는 금년에 받아야 할 것이 바로 원총(元摠)의 4분의 1이므로 다시 분수하게 할 수가 없으니 수량대로 성(城)으로 바치게 하며, 그 나머지 여러 조항은 모두 흉년에 항상 있는 예이니 아울러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되, 그 가운데 패선 죄인 등을 가두고 심문하는 일은 곧 있을 터이므로 갑자기 이송할 수 없으니 덮어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司啓曰，卽見京畿監司洪學淵分等狀啓，則坡州等十六邑，置之尤甚，楊州等十五邑，鎮置之之次，朔寧等三邑，置之稍實，後錄諸條，竝請令廟堂，稟旨分付，而抄饑賑與執災等節，追後登聞爲辭矣，其一，新還餉尤甚邑尤甚面里折半，尤甚邑之次面里，之次邑尤甚面里三分一，尤甚邑稍實面里，之次邑之次面里，稍實邑尤甚面里四分一停退事也，其一，當捧還尤甚邑三分二，之次邑及稍實邑尤甚面里折半，之次面里三分一，以相當穀，準折代捧，待明秋還作本色事也，其一，各樣軍布尤甚邑折半，之次邑三分一停退，待明秋收捧，壬辰癸巳停退條及辛巳以前各年舊布三等邑，竝許仍停事也，其一，北漢平倉城餉，尤甚之次邑，全數捧留，耗條代錢輸送事也，其一，大興·臨津·長山等餉穀，竝許捧留本邑，亦令分數代捧，而附近民之自願輸納者，依願施行耗條代錢輸送事也，其一，禁·御兩營江都留餉米太，以錢代捧，待明秋還作本色事也，其一，守·摠兩營壯抄牙兵軍官等身米，每斗四錢，以錢代捧事也，其一，各衙門各宮房屯土，從實收稅事也，其一，沿海各邑拯劣米太今年條，以錢代捧，甲午以後各年條，竝許仍停事也，其一，高陽南陽敗船罪人，移送原籍官事也，其一，推奴徵債，限明秋防塞事也，分等依狀請施行，新還請停，出於爲災民不獲已之意，而本道還摠，既甚不敷，若使今冬應捧未準，必至明春排巡難繼，賑掇之外，農民將何所恃乎，此一款，有難遽議，而第今民勢，貧富俱困，除却若干峽邑，則便是通一道全歉，如數督納，實所矜悶，而所請分數，稍涉過多，尤甚邑尤甚面里三分一，之次面里之次邑尤甚面里四分一，特許停退，以爲紓力之地，相當穀之準折代捧，雖不必靳持，各軍布之分等請停，終有所難慎，而例有可據，惠當特施，與各年舊布仍停事，一體許之，而新軍布則以尤甚邑三分一，之次邑四分一施行，城餉轉輸，雖關災歲民情，而北漢事勢，實難全數邑留，依昨年例，許令四分三捧留，各邑耗條，係是支放之需，竝令本色輸納，楊州則今年當納，

卽是元摠四分之一，無足更爲分數，使之如數上城，其餘諸條，皆歎歲恒有之例，竝依狀請施行，而其中敗船罪人等，囚推屬耳，不可遽然移送，置之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26책, 헌종 4년 1838년 09월20일(음)>

## 사회/윤리·풍속

### 民邑의 弊瘼을 나열한 前 京畿監司 李啓朝의 狀啓와 그에 대한 대책을 보고하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경기 전 감사 이계조(李啓朝)의 장계를 보니, 민읍의 폐막을 조목별로 진술하고 이어 묘당에서 품처하기를 청한다 하였습니다. 그 하나는, 북한산성(北漢山城)의 성향(城餉)이 경기 백성들에게 고질적인 폐해가 되어 갈수록 더욱 고치기 어렵습니다. 이른바 분급(分給)은 전부터 붉게 썩어 완전치 못한 포(包)를 지금 헐가(歇價)의 돈으로 나누는 예로, 미(米) 1석의 대전(代錢) 5냥에서 잡비와 태가(駄價)를 덜어내고 2냥 8~9전이나 7~8전으로 대충대충 분급하고는 가을에 가서 본색(本色)으로 도로 수봉하는데, 험한 길에 운송하여 납부하려니 수심과 원망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백성들은 장차 사방으로 흩어질 것입니다. 북한산성의 향미(餉米)인 갑인년(甲寅年:정조18, 1794)의 첨분조(添分條) 7천 7백 98석 영(零) 및 원 이전 조(元移轉條) 6천 1백 70석 전체 수량을 각각 그 고을에 봉류(捧留)하고, 1석에 원모(元耗) 1두 5승 및 춘삼승(春三升)과 추일두(秋一斗)의 절반 조(折半條)를 대전으로 총융청(摠戎廳)에 실어 보내도록 영구히 정례(定例)로 삼는 일입니다. 성향의 법의가 실로 소중하지만 경기 백성들이 받는 폐해는 거의 보존이 어려운 지경입니다. 빙판길에 거둔 것을 올린다는 것은 실로 뼈에 사무치는 근심과 원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환(錢還)을 감분(減分)하여 점차 잉여를 취하는 묘한 지름길로 변해가니, 삼보(三輔) 중요한 지역의 백성들이 장차 어깨를 쉴 날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를 한번 바로잡지 않을 수 없는 일이지만 북한산성의 사세를 상세히 알지 못하니, 역시 선뜻 결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먼저 해청(該廳)에서 향모(餉耗)를 봉하(捧下)한 수량을 조목조목 구별해서 성책(成冊)을 작성하여 보고하게 한 다음, 다시 좋은 쪽으로 품처해야 하겠습니까. 그 하나는, 도내 임진년(壬辰年:순조32, 1832)의 한전재(旱田災)를 다시 임인년(壬寅年:헌종8, 1842)부터 5년 한정해서 감세(減稅)하고, 영구히 형지(形址)를 상실한 것은 개간할 수가 없으니 도로 기경(起耕)한 것 외의 나머지 재결(災結) 5백 96결 영을 영구히 감세하는 일입니다. 전정(田政)의 문란은 근래와 같은 적이 없습니다. 일단 재결로 잡혀 들어가면 대번에 영탈(永頤)로 돌아가므로 얼마 있지 않아 전결에서 수세(收稅)할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작년 겨울 영남과 호남에서 영탈로 잡힌 것에서 기경한 것을 조사하여 실결(實結)로 되돌리도록 하는 것 역시 연석에서 신칙한 일이 있었는데, 한전의 급재(給災)는 본래 법이 아니므로 임진년에 세금을 견감한 것은 이미 격례를 벗어난 일이었고, 그 후 기한을 물린 것도 꼭진히 생각한 데에서 나왔는데 3년 동안에 도로 기경한 것이 별로 없고 기한이 차기 전에 대번에 영탈로 하기를 청하니, 법의로 헤아려 볼 적에 어찌 탄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해 도신을 추고하고 내년 가을에 가서 철저히 조사해서 일일이 실결로 돌리도록 엄히 신칙해야 하겠습니까. 그 하나는, **남양(南陽)**은 바닷가 고을로 거주하는 백성들이 소금을 굽는 일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데, 근래 서울과 지방의 모리배가 궁방(宮房)이나 각 영문(營門)을 청탁해서 구문(口文)과 지세(地稅)를 무절제하게 토색질하므로 포호(浦戶)의 대부분이 뿔뿔이 흩어질 궁리를 하고 있으니, 감결을 받들도록 별달리 신칙해서 영구히 이런 폐단을 막는 일입니다. 해읍(該邑)의 염정(鹽井)에 대한 폐단은 과연 장계의 내용과 같습니다. 작년에는 염민(鹽民)이 일제히 호소하는 일로 인하여 본사(本司)에서 적발하여 수창(首倡)

한 무죄배 몇 놈을 형배(刑配)하였지만 또한 어찌 영원히 꺼리고 수그러들어 다시는 제멋대로 행동하는 일이 없기를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청한 바에 따라 감결을 받들도록 신칙하겠습니다만 근래 이러한 폐단은 **남양**의 한 염정뿐만이 아니요, 각도의 연해 포구(沿海浦口) 어업, 염전, 선박의 모임에 한잡(閑雜)한 모리배가 각궁(各宮)과 각사(各司)를 빙자해서 생민들을 침학하여 세금을 함부로 거두는 폐단을 자행하는 자가 이루다 셀 수 없으니, 역시 각도에 관문을 보내 신칙하되 이런 불법행위로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가 있다면 해도와 해읍에서 엄히 다스리고 통렬히 금해서 드러나는 대로 즉시 본사에 논보(論報)하며, 이와 같이 관문을 보내 신칙한 뒤에 또 다시 다른 길을 통해 듣게 되면 도신과 수령을 모두 논감하겠다고 통지해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양주목장(楊州牧場)에 가축이 점차 많아져 풀이 말라갈 때에는 거의 모두 뛰어나가 화숙(禾粟)을 먹어 손상을 입히므로 백성들이 해를 받고 있습니다. 굳이 폐해를 바로잡으려면 필수(匹數)를 조금 줄이는 것 만한 일이 없으니, 본시(本寺)에서 좋은 쪽으로 변통하는 일입니다. 목장의 말들이 새끼를 생산하는 일이 근래 더욱 많아지고 뛰어나가는 폐단을 무슨 수로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곡식의 손상을 더욱 심하게 입고 있고 농민들이 농사를 망치는 폐단이 많아 이를 바로잡을 방도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군수(軍需)에 관계된 일이므로 갑자기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해시(該寺)에서 좋은 쪽으로 논품(論稟)하게 한 뒤에 다시 품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병오년 4월 27일 비답이 내림.)

司啓曰，卽見京畿前監司李啓朝狀啓，則條陳民邑弊瘼，仍請令廟堂稟處矣，其一，北漢城餉之爲畿民痼瘼，去益難醫，所謂分給，由前而紅腐不完之包，今焉爲歇價錢分之例，米一石代錢五兩，除出雜費馱價，只以二兩八九錢或七八錢草草分給，而及秋本色還捧也，險路輸納，愁怨相聞，此若不矯，民將散四，北漢餉米甲寅添分條七千七百九十八石零，及元移轉條六千一百七十石，盡數捧留於各其邑，每石元耗一斗五升及春三升秋一斗折半條，代錢輸送摠廳，永久定例事也，城餉法意，固有所重，而畿民受弊，舉至難保，氷路上捧，實爲愁怨之切骨，錢還減分，漸成取剩之妙徑，三輔重地，民將無息肩之日矣，此不可不一番釐革，而未詳北漢事勢，亦難遽然硬定，先使該廳就餉耗捧下之數，條條區別，修成冊報來，更爲從長稟處，其一，道內壬辰旱田災，更自壬寅，限五年減稅，而永失形址，無以墾闢，還起外餘災五百九十六結零，永爲減稅事也，田政之紊亂，莫今日若，一入災報，輒歸永頃，不幾何而將結無所收矣，昨冬以嶺湖永頃之查起還實，亦有所筭飭，而旱田給災，本非經法，則壬辰蠲稅，已是格外，其後退限，又出曲念，而三年之間，還起者零星，限滿之前，遽請以永頃，揆以法意，寧不可歎，該道臣推考，待明秋到底查括，這這還實之意，嚴加申飭，其一，**南陽**以濱海之邑，居民煮鹽資生，而近來京外牟利之輩，藉托宮房或各營門，口文地稅，討索無節，浦戶舉懷離散，捧甘另飭，永杜此弊事也，該邑鹽井之弊，果如狀辭矣，昨年因鹽民齊訴，自本司摘發，首倡之無賴數漢，已爲刑配，而亦安保其永爲憚戢，更無恣橫乎，依所請甘飭，而近日此弊，非但**南陽**一鹽井而已，各道沿浦魚鹽舟楫之會，閑雜牟利之輩，憑藉各官各司，侵虐生民，恣行濫稅之弊者，不可勝數，亦爲關飭各道，如有似此非法擾民者，自該道該邑嚴繩痛禁，隨即論報本司，如是關飭之後，又復別岐及聞，則道臣守宰，竝爲論勘之意知委，其一，楊州牧場，畜產漸多，草枯之時，舉皆逸出，吃損禾粟，民受其害，苟求矯揉，莫如稍減，匹數令本寺從長變通事也，牧馬孳產，近益繁殖，逸出之弊，無術可揉，而穀種之受損滋甚，農民之失業居多，此不可不講其矯弊之道，而既係軍需，有難遽減，第令該寺從長論稟後，更爲稟處，何如，答曰，允，牧場事，既已革罷，不須舉論，丙午四月二十七日批下

<비변사등록 232책, 헌종 11년 1845년 12월26일(음)>

사회/윤리 · 풍속

총위영 소속 3진의 봄 훈련을 비변사에 품처하여 거행할 것을 아뢰다

○ 총위영(總衛營)이 아뢰기를, “본영에 속한 3진(鎭) 열읍 가운데 남양(南陽)의 속오군병(束伍軍兵) 등의 훈련을 작년 겨울에 조정의 명령으로 정지하였습니다. 올해 봄 훈련을 묘당에서 품처하게 하여 거행하라고 알리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總衛營啓曰, 本營所屬三鎭列邑中, 南陽束伍軍兵等操鍊, 昨秋因朝令停止矣, 今年春操, 令廟堂稟處, 使之知委舉行何如, 答曰, 允.

<비변사등록 234책, 헌종 13년 1847년 01월04일(음)>

사회/윤리 · 풍속

무너지거나 깔린 南陽府의 민가에恤典을 거행하라고 전교하다

남양부(南陽府)에서 민가가 물에 떠내려가고 무너졌다는 일로 올린 경기감사 서좌보의 장계에 대해 전교하기를, “들으니 매우 불쌍하고 가엾다. 원래의 홀전 외에 따로 더 돌보아 주고, 집을 지어 편히 살게 할 방도를 묘당에서 말을 만들어 분부하도록 하라.” 하였다.

以京畿監司徐左輔狀啓, 南陽府民家漂頽事, 傳曰, 聞甚矜惻, 元恤典外, 別加顧助, 結構奠接之方, 廟堂措辭分付.

<비변사등록 241책, 철종 5년 1854년 07월18일(음)>

사회/윤리 · 풍속

京畿監司 李載元의 災實分等 狀啓와 그에 대한 대책을 보고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경기감사 이재원(李載元)의 재실분등 장계(災實分等狀啓)를 보니, 초실(稍實) 명색은 거론하지 않았고, 파주(坡州) 등 19개 읍진(邑鎭)을 우심(尤甚)에 두었고, 양주(楊州) 등 16개 읍은 지차(之次)에 두었으며, 새로 재해를 입은 1만 2백 48결(結) 20부(負) 2속(束)에 대해서는 특별히 수량에 맞추어 획급해 주고, 후록(後錄)한 여러 조항을 아울러 묘당에서 품처하게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후록한 그 하나는, 우심읍 중에 남양(南陽) 등 12개 읍진의 향곡(餉穀)과 신포(身布)에 대해서는 다만 재민(災民)들이 응당 납부해야 할 것만을 뽑아 기록하여 특별히 우선 정퇴(停退)하였다가 내년 가을이 되거든 도로 받아들이도록 해 달라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대흥(大興), 임진(臨津), 장산(長山) 등의 향곡을 전례에 의거하여 전부 본읍(本邑)에 받아 두되 부근의 백성 가운데 자원하여 실어다가 바치고자 하는 자는 원하는 대로 시행하게 하고, 모조(耗條)는 모두 대전(代錢)으로 실어 보내게 해 달라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금위영과 어영청 두 영의 강화도 유항미태(江華島留餉米太) 및 수어청과 충융청 두 영의 장초아병(壯抄牙兵) 신미(身米)를 전례대로 대전으로 거두어들이게 해 달라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각 아문과 각 궁방(宮房)의 둔토(屯土)에 대해서는 정해진 총수(摠數)에 구애받지 말고 실제의 결수에 따라 세금을 거두게 해 달라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노비를 추쇄하고 빚을 징수하는 일을 내년 가을까지 막게 해 달라는 일입니다. 가뭄의 재앙으로 웅덩이와 보(洑)가 모두 바짝 마른 데다 서리까지 빨리 내려 농토가 거의 쓸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장계(狀啓) 가운데에는 비록 임신년(壬申年: 고종9, 1872)과 계유년(癸酉年: 고종10, 1873) 같은 흉년이라고 일컫고 있으나 별판과 들 사이에는 저절로 갑을의 다름이 있으므로, 올해 같은 해에는 재해를 살피는 정사에 대해 보통

해에 비하여 더욱더 신중하고도 어렵게 다루어야 합니다. 백성들의 고통은 구휼하지 않을 수 없고 나라의 재정에 대한 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을의 보고는 감사가 헤아려서 감해주고 관찰사의 보고는 의정부에서 재결하여 정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사목(事目) 이외에 5천 결을 추가로 획급하여 꼼꼼하고 실제에 맞게 나누어 주게 하소서. 등급을 나누는 것은 반드시 헤아린 것이 있을 것이니 그대로 시행하게 하소서. 환포(還布)를 정퇴하는 것과 향곡을 평창(平倉)에 유치(留置)하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때를 당하여 응당 관대한 정사가 있어야 하니 특별히 시행하게 하소서. 그 밖에 여러 조목은 전례가 많이 있으니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답하였다.

府啓曰，卽見京畿監司李載元災實分等狀啓，則稍實名色，不爲舉論，坡州等十九邑鎮，置之尤甚，楊州等十六邑，置之之次，新災一萬二百四十八結二十負二束，特許準劃，後錄諸條，竝請令廟堂稟處矣，其一，尤甚中南陽等十二邑鎮還餉身布，只抄災民等之當納，特姑停退，待明秋收捧事也，其一，大興臨津長山等餉穀，依已例全數捧留本邑，附近民之自願輸納者，依願許施，耗條竝以代錢輸送事也，其一，禁御兩營江都留餉米太，及守摠兩營壯抄牙兵身米，依已例代錢收捧事也，其一，各衙門各宮房屯土，勿拘定摠，從實收稅事也，其一，推奴徵債，限明秋防塞事也，旱魃攸虐，滌汎俱被焦涸，霜信遽促，場圃幾至蕭索，狀本中，縱稱壬癸之歉，原野間，自有甲乙之殊，如今之年，檢災之政，比諸常歲，尤愼且難矣，民隱不可不恤，國計亦不可不念，所以邑報，則道臣量減之，道啓，則廟堂裁定之者，此也，事目外五千結加劃，使之精實俵給，分等必有商度，依施，還布之停退，還穀之平留，當此艱窘之會，合有寬紓之政，特爲許施，其餘諸條，多有已例，依狀請施行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257책, 고종 13년 1876년 09월28일(음)>

---

## 연구진

- |       |                       |
|-------|-----------------------|
| 연구책임  | ● 최성환 / 수원학연구센터 연구위원  |
| 연구원   | ● 이동인 / 수원학연구센터 연구원   |
| 연구보조원 | ● 양지선 / 단국대학교 강사      |
| 연구보조원 | ● 나영훈 /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수료 |
| 연구보조원 | ● 최문수 /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과정 |
| 연구보조원 | ● 최덕환 /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과정 |
| 연구보조원 | ● 이진걸 /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 개인의 견해로서  
수원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전근대 수원 자료집

---

발행인	손혁재
발행일	2015년 3월 6일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443-8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345번길111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00

---

비매품 ISBN 979-11-85686-32-5

본 출판물의 판권은 수원시정연구원에 속합니다.